

무배당 흥Good 뉴키즈 자녀보험(26.01) 약관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동 약관은 무배당 흥Good 뉴키즈 자녀보험(26.01)_1종(해약환급금 지급형), 2종(납입후 해약환급금 지급형의 50%지급형), 3종(납입후 표준형환급률 동일지급형)에 적용할 수 있음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흥국화재

약관 이용 Guide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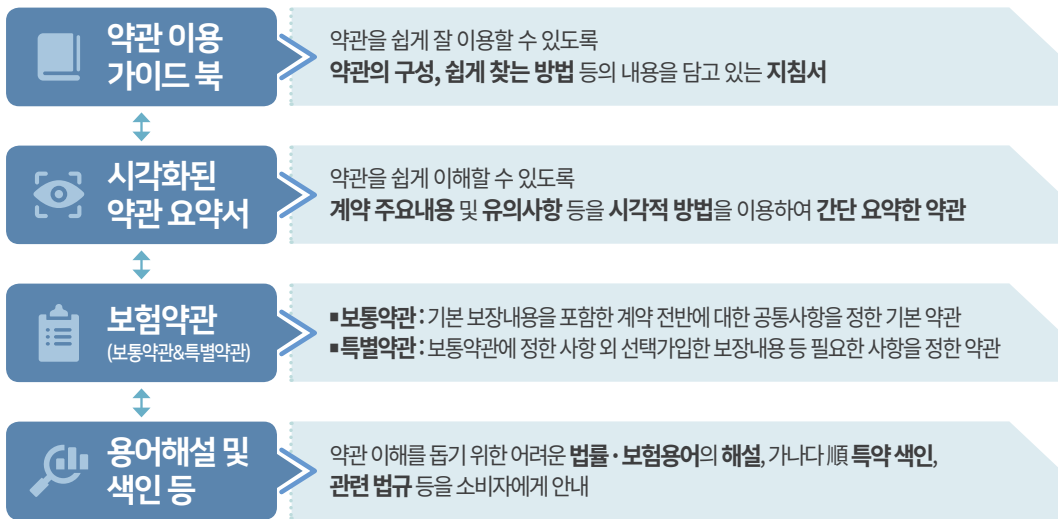
1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한 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3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



QR(Quick Response) 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 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해설 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지점/서비스망 찾기



4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보통약관 기준)

보험약관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쪽수 및 영상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을 수령한 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P 66 P 67	 영상 자료
*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 「보험금 지급사유 및 미지급사유」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				
2	청약 철회	제22조 청약의 철회	P 75	 영상 자료
3	계약 취소	제2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P 76	 영상 자료
4	계약 무효	제24조 계약의 무효	P 77	 영상 자료
5	계약 前 알릴 의무 및 위반효과	제17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19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P 72 P 73	 영상 자료
6	계약 後 알릴 의무 및 위반효과	제18조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제19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P 72 P 73	 영상 자료
7	보험료 연체 및 해지	제35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P 85	 영상 자료
8	부활(효력회복)	제36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37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P 86 P 86	 영상 자료
9	해약환급금	제3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제41조 해약환급금	P 86 P 88	 영상 자료
10	보험계약대출	제42조 보험계약대출	P 90	 영상 자료

5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아래 **7가지 꿀팁**을 활용하시면 약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시각화된 '**흥국화재 약관요약서**'를 활용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민원사례 등 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약관 요약서 P 7
- 2

'**약관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를 이용하시면 약관내용 중 핵심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체크항목 P 5
- 3

'**가나다順 특약 색인 (索引)**'을 활용하시면 본인이 실제 가입한 특약 약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 계약에 부가된 특약은 자유롭게 선택, 가입(의무특약 제외)할 수 있고 가입특약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음

➡ 특약 색인 P 1504
- 4

약관 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용어해설**, **약관본문 Box안 예시** 등을 참고하시면 약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 용어 해설 P 39
- 5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약관해설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QR코드 P 4
- 6

'**기타관계법령**' 항목을 활용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기타관계법령 P 1188
- 7

약관조항 등이 **음영·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경우 보험금 지급 등 약관 주요 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heungkukfire.co.kr), **고객 콜센터**(1688-1688)로 문의 가능

※ 보험상품 거래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FINE, 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



시각화된 흥국화재 약관 요약서

- I. 보험계약의 개요
- II.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 III.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 IV.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안내
- V. 자주 발생하는 민원 예상
- VI. 보험용어 해설



이 요약서는 그림·도표·아이콘·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약관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요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I. 보험계약의 개요



01. 상품의 주요 특징

성장 단계별 크고 작은 상해 및 질병에 대한 폭넓은 보장!

성장장애관련질환입원비(1~120일), 어린이심장관련특정질환진단비, 소아백혈병진단비, 선천이상 수술비등 질병부터 골절진단비, 갑스치료비, 응급실내원비 등 다양한 상해까지 보장(해당특약 가입시)

예비맘들을 위한 보장 강화

모성사망, 임신중독증(자간포함)진단비, 만기태아사망진단비, 임신출산질환입원비(1일~120일), 임신출산질환수술비, 임신관련특정혈액질환진단비, 유산입원비(4일~120일), 유산수술비, 출산전 선별검사결과 이상소견 진단비, 태반조기박리진단비, 양수색전증진단비(해당특약 가입시)

30세/40세 만기로 가입 후 전환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

단, 30세만기의 경우 1종(해약환급금 지급형) 가입자에 한하며, 40세만기의 경우 2종(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및 3종(납입후 표준형환급률 동일지급형) 가입자에 한함)

02. '상품명'으로 상품의 특징 이해하기

무배당 흥Good 뉴키즈 자녀보험

구분	해약환급구분	해약환급금 형태
1종	해약환급금 지급형	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 지급
2종	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약환급금 미지급
		- 납입기간 완료 후 해지시 경과기간별로 1종 해약환급금의 50% 지급
3종	납입후 표준형환급률 동일지급형	-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약환급금 미지급
		- 납입기간 완료 후 해지시 경과기간별로 표준형 ^{주)} 과 동일한 환급률 수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

주) 「표준형」이란 3종(납입후 표준형환급률 동일지급형) 보험료 산출에 기초가 되는 이율, 위험률, 사업비율 (해지율 제외) 등이 동일한 상품을 말합니다.

- ① 무배당 :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 ② 자녀보험 : 주로 자녀 대상으로 상해 및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03. 상품의 구조

구분	해약환급형태	순수보장형태	이율		갱신형담보*
			보장부분	적립부분	
1종	해약환급금 지급형 	보장/적립구분형			포함
2종	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순수보장성		-	포함
3종	납입후 표준형환급률 동일지급형 	순수보장성		-	포함
4종	해약환급금 지급형 	순수보장성		-	포함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04. 종별 가입가능 특별약관

보장명	태아	1종	2~3종	4종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	●	●	●
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	●	●	●	●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	●	●	●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3~100%)		●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	●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1~5급)(연간1회한)		●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연간1회한)	●	●	●	●
5대골절진단비	●	●	●	●
화상진단비		●	●	●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	●	●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	●	●	●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		●	●	●
상해수술비		●	●	●
골절수술비		●	●	●
골절수술비(1~5급)(연간1회한)		●	●	●

I. 보험계약의 개요

보장명	태아	1종	2~3종	4종
화상수술비		●	●	●
5대골절수술비		●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	●
일상생활폭력상해		●	●	
중대한화상및부식치료비		●	●	●
상해1~5종수술비Ⅳ		●	●	●
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	●	●	●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20일)	●	●	●	●
폭력피해(사망제외)보장		●	●	
일반상해입원비(1일-210일)	●	●	●	●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	●	●	●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선천기형포함)(1일-20일)	●	●	●	●
상해수술비(선천기형포함)	●	●	●	●
골절수술비(선천기형포함)	●	●	●	●
5대골절수술비(선천기형포함)	●	●	●	●
상해1~5종수술비Ⅳ(선천기형포함)	●	●	●	●
성장판손상골절진단비	●	●	●	
신화상진단비		●	●	●
신화상수술비		●	●	●
일반상해입원비(1일-20일)	●	●	●	●
아나필락시스진단비(연간1회한)(갱신형_10년)		●	●	
상해1~5종수술비(1사고당)		●	●	●
상해1~5종수술비(1사고당)(선천기형포함)	●	●	●	●
상해1~8종수술비(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	●	●
상해1~8종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	●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안면부)		●	●	
창상봉합술치료비(급여,연간3회한)	●	●	●	●
창상봉합술치료비(급여,안면부,연간3회한)	●	●	●	●
상해재활치료비(급여_연간20회한)		●	●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	●	●	●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갱신형_10년)		●	●	
골절철심제거수술비(급여_연간1회한)		●	●	●
골절철심제거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_연간1회한)	●	●	●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보장		●	●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보장(갱신형_10년)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60일)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60일)(갱신형_20년)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60일)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60일)(갱신형_20년)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갱신형_20년)		●	●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	●	●	●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	●	●	●
종합병원 상해수술비		●	●	●
상급종합병원 상해수술비		●	●	●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	●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지원비(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연간200만원이상)		●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지원비(요양병원)(간병인비용연간200만원이상)		●	●	
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	●	●	●

I. 보험계약의 개요

보장명	태아	1종	2~3종	4종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	●	●	●
상해수술비(치아파절 및 치아탈구제외)	●	●	●	
상해수술비(치아파절 및 치아탈구제외)(선천기형포함)	●	●	●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		●	●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선천기형포함)	●	●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		●	●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갱신형_20년)		●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		●	●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갱신형_20년)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갱신형_20년)		●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		●	●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		●	●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갱신형_20년)		●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		●	●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갱신형_20년)		●	●	
스쿨존내교통사고보장		●	●	
질병후유장해(3~100%)(감액없음)	●	●	●	●
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	●	●	●	●
질병후유장해(50%이상)(감액없음)	●	●	●	●
질병후유장해(20~100%)(감액없음)	●	●	●	●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	●	●	●	●
뇌출혈진단비(감액없음)	●	●	●	●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	●	●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감액없음)	●	●	●	●
허혈성심질환진단비(감액없음)	●	●	●	●
어린이심장관련특정질병진단비		●		
인슐린의존당뇨병진단비		●	●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	●	●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	●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	●	●	●	
암진단비(유사암제외)(면책없음, 감액없음)				●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	●	●	●	●
신통합암(전이포함)진단비 II (유사암제외)(감액없음)	●	●	●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감액없음)	●	●	●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면책없음, 감액없음)				●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210일)(감액없음)	●	●	●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210일)(면책없음, 감액없음)				●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감액없음)		●	●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면책없음, 감액없음)				●
질병1~5종수술비 IV	●	●	●	●
질병1~5종수술비 IV(납기후2배보장)		●	●	
암수술비(유사암제외)(최초1회한)(감액없음)	●	●	●	
암수술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	●	●	●	
유사암수술비(감액없음)	●	●	●	●
암수술비(유사암제외)(최초1회한)(면책없음, 감액없음)				●
암수술비(유사암제외)(면책없음, 감액없음)				●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감액없음)	●	●	●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면책없음, 감액없음)				●
전반발달장애진단비	●	●	●	
다발성소아암진단비(감액없음)	●	●	●	

I. 보험계약의 개요

보장명	태아	1종	2~3종	4종
소아백혈병진단비	●	●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	●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감액없음)	●	●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면책없음, 감액없음)				●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II (유사암제외)(감액없음)	●	●	●	
양성뇌종양진단비(감액없음)	●	●	●	●
질병입원비(1일-180일)	●	●	●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	●	●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		●	●	●
식중독입원비(4일-120일)	●	●	●	●
특정전염병치료비	●	●	●	
환경성질환입원비(1일-120일)	●	●		
생활질환입원비(1일-120일)	●	●		
희귀난치성질환입원비(1일-120일)	●	●	●	
질병수술비	●	●	●	●
질병1~5종수술비 II (동일질병당)	●	●	●	●
뇌혈관질환수술비(감액없음)		●	●	●
허혈성심질환수술비(감액없음)	●	●	●	●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수술비(감액없음)	●	●	●	●
특정순환계질환수술비(감액없음)	●	●	●	●
다발성3대혈관질환수술비(감액없음)	●	●	●	
70대특정질환수술비(감액없음)	●	●	●	●
치핵(치질)수술비(감액없음)	●	●	●	●
당뇨병수술비(감액없음)		●	●	●
충수염수술비(감액없음)		●	●	●
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감액없음)	●	●	●	
소아탈장수술비	●	●	●	
추간판장애수술비		●	●	●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	●	●	●	
시각질환수술비		●	●	
청각질환수술비		●	●	
성장장애관련질환입원비(1일-120일)	●	●	●	
척추측만증수술비		●	●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		●	●	
피부질환수술비(연간1회한)(감액없음)	●	●	●	
호흡기관련질환수술비	●	●	●	
재진단암III진단비		●	●	
재진단암III진단비 (갱신형_10년)		●	●	
재진단암III진단비(면책없음)				●
소아·청소년 특정 성인병 진단비(갱신형)		●		
ADHD진단비(갱신형)		●		
중증아토피진단비(갱신형)		●		
중증틱장애진단비(갱신형)		●		
성조숙증진단비(갱신형)		●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감액없음)		●	●	●
선천이상진단비	●	●	●	
특정선천이상진단비	●	●	●	
선천이상입원비(1일-120일)	●	●	●	
선천이상수술비	●	●	●	
특정선천이상수술비	●	●	●	
신생아입원비(1일-120일)	●	●	●	

I. 보험계약의 개요

보장명	태아	1종	2~3종	4종
5대기관질병수술비 II (감액없음)		●	●	
뇌성마비진단비	●	●	●	
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80일)	●	●	●	●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20일)	●	●	●	●
질병입원비(1일-210일)		●	●	●
7대희귀난치성질환진단비(감액없음)	●	●	●	
천식지속상태(급성중증천식)진단비		●	●	
질병중환자실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	●	●		●
질병수술동반입원비(선천이상포함)(1일-20일)	●	●	●	●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210일)	●	●	●	●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	●	●	●	●
신재진단암진단비 II (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포함,5회한)		●	●	
신재진단암진단비 II (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포함,5회한) (갱신형_10년)		●	●	
신재진단암진단비 II (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포함,5회한)(면책없음)				●
암직접치료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	●	●	
암직접치료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면책없음, 감액없음)				●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	●	●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II (갱신형_10년)		●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면책없음,감액없음)(갱신형_10년)				●
수족구진단비(연간1회한)	●	●	●	
수두진단비	●	●	●	
특정정신질환진단비(연간1회한)		●	●	
결핵진단비		●	●	●
악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진단비		●	●	
중기이상 만성폐질환진단비(감액없음)		●	●	●
말기만성폐질환진단비(감액없음)		●	●	●
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비(감액없음)		●	●	●
기흉진단비	●	●	●	
3대질병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	●	
3대질병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
3대질병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	●	
3대질병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
독감(인플루엔자) 입원비(1일-30일)(갱신형_10년)		●	●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치료비(연간1회한,10일면책)(갱신형_10년)		●	●	
질병입원비(1일-20일)		●	●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	●	●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30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
3대질병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	●	
3대질병통원비(연간30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
뇌혈관질환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	●	
허혈성심질환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	●	
3대질병 MRI 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II (연간1회한)(갱신형_10년)		●	●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 II (갱신형_10년)		●	●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면책없음,감액없음)(갱신형_10년)				●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 II (갱신형_10년)		●	●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면책없음,감액없음)(갱신형_10년)				●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토모테라피) II (갱신형_10년)		●	●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토모테라피)(면책없음,감액없음)(갱신형_10년)				●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이외의 암) II (갱신형_10년)		●	●	

I. 보험계약의 개요

보장명	태아	1종	2~3종	4종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이외의 암)(면책없음,감액없음) (갱신형_10년)				●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 II (갱신형_10년)		●	●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감액없음)(갱신형_10년)				●
항암정위방사선치료비 II (갱신형_10년)		●	●	
항암정위방사선치료비(면책없음, 감액없음)(갱신형_10년)				●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 진단비(감액없음)	●	●	●	
5대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	●	●	●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		●	●	
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	●	●	●	
요양병원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입원비(1일-90일)		●	●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20일)	●	●	●	
142대특정질병수술비(감액없음)	●	●	●	
질병1~8종수술비(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	●	
질병1~8종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	●	●	
심근병증(허혈성제외)진단비(감액없음)	●	●	●	
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감액없음)	●	●	●	
특정순환계질환(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진단비(감액없음)(1종)	●	●	●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2종)	●	●	●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3종)	●	●	●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4종)	●	●	●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5종)	●	●	●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진단비(감액없음)	●	●	●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진단비(감액없음)	●	●	●	
신생아난청진단비	●	●	●	
영구적중등도이상난청진단비(갱신형_10년)		●	●	
영구적중등도이상난청진단비(갱신형_10년)		●	●	
영구적고도이상난청진단비(갱신형_10년)		●	●	
뇌심장질환 CT,MRI,초음파,뇌파,뇌척수액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감액없음) (갱신형_10년)		●	●	
뇌심장질환 혈관조영술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	●	
8대기관 양성신생물(폴립포함)수술비(연간1회한)(감액없음)		●	●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		●	●	
뇌전증진단비(감액없음)		●	●	
특정귀어지럼증진단비(연간1회한)		●	●	
원형탈모증진단비		●	●	
특정폐혈증진단비		●	●	
급성신우신염진단비(감액없음)	●	●	●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선천성 포함)(감액없음)	●	●	●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선천성 제외)(감액없음)		●	●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면책없음)		●	●	
중증갑상선암진단비(감액없음)		●	●	
특정4대질환 헬리코박터제균치료비(최초1회한)		●	●	
카티(CAR-T) 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	●	
카티(CAR-T) 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갱신형_10년)				●
질병재활치료비(급여_연간20회한)(감액없음)		●	●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지원비 II (급여_연간1회한)		●	●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		●	●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 (갱신형_10년)		●	●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제외))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	●	●	●	
대장용종제거수술비(급여,용종개수당)		●	●	
특정안면마비진단비		●	●	

I. 보험계약의 개요

보장명	태아	1종	2~3종	4종
31주이내출생진단비	●	●	●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		●	●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치료비(급여_연간1회한)(갱신형)		●		
틱장애약물치료비(30일이상약물처방)		●	●	
성조숙증 II 약제치료비(급여_연간1회한)		●	●	
암후유장애(3~100%)(감액없음)	●	●	●	
암후유장애(3~100%)(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	●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	●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	●	
허혈성심질환진단비(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	●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진단비(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	●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진단비(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	●	
뇌혈관질환수술비(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	●	
허혈성심질환수술비(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	●	
질병수술비(납기후2배보장)		●	●	
특정순환계질환수술비(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	●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납기후2배보장)		●	●	
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		●	●	
혈전용해치료비 II (1회한)(감액없음)		●	●	
혈전용해치료비 II (연간1회한)(감액없음)		●	●	
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	●	
혈전용해치료비 II (1회한)(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	●	
혈전용해치료비 II (연간1회한)(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60일)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60일)(갱신형_20년)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60일)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60일)(갱신형_20년)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갱신형_20년)		●	●	
중증질환자(중복암 및 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		●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		●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갱신형_10년)		●	●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	●	●	●	
재발암 및 잔여암진단비(2년대기형)(감액없음)	●	●	●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_10년)	●	●	●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갱신형_10년)				●
통합 뇌질환진단비(감액없음)	●	●	●	
통합 심장질환진단비(감액없음)	●	●	●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	●	●	●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	●	●	●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	●	●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	●	
암주요치료비(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	●	●	
암주요치료비(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	●	
종합병원 질병수술비	●	●	●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	●	●	●	
전신마취암수술비(감액없음)	●	●	●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	●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비(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연간200만원이상)		●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비(요양병원)(간병인비용연간200만원이상)		●	●	

I. 보험계약의 개요

보장명	태아	1종	2~3종	4종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	●	●	●	●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	●	●	●	●
2대질병주요치료비(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	●	●	●	
2대질병주요치료비(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 (갱신형_10년)		●	●	
뇌혈관질환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	●	●
허혈성심질환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	●	●
뇌혈관질환 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	●	●
허혈성심질환 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	●	●
질병수술비(특정6대질병 II 제외)	●	●	●	
질병수술비(특정8대질병제외)	●	●	●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특정6대질병 II 제외)	●	●	●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 (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	●	●	●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 (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 (갱신형_10년)		●	●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 (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	●	●	●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 (갱신형_10년)		●	●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	●	●	●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 진단후10년) (감액없음)(갱신형_10년)		●	●	
순환계질환진단비(특정질병 및 2대질병제외)(감액없음)	●	●	●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III		●	●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III(선천이상포함)	●			
보험료납입지원보장(유사암진단)		●	●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		●	●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갱신형_20년)		●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		●	●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갱신형_20년)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180일)		●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180일)(갱신형_20년)		●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 정신, 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		●	●	●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	●	●	●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	●	●	
순환계질환진단비(특정질병제외)(감액없음)	●	●	●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		●	●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갱신형_20년)		●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		●	●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갱신형_20년)		●	●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	●	●	●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	●	●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1회한, 진단후10년)(면책없음, 감액없음)				●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	●	●	●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	●	●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1회한, 진단후10년)(면책없음, 감액없음)				●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감액없음)	●	●	●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감액없음)(갱신형_10년)	●	●	●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면책없음, 감액없음)				●
항암방사선치료비(감액없음)	●	●	●	
항암방사선치료비(면책없음, 감액없음)				●
항암약물치료비(감액없음)	●	●	●	
항암약물치료비(면책없음, 감액없음)				●

I. 보험계약의 개요

보장명	태아	1종	2~3종	4종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	●	●	●	●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	●	●	●
2대질병주요치료비(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	●	●
2대질병주요치료비(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	●	
암주요치료비 II (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	●	
암주요치료비 II (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	●	
암주요치료비 II (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	●	
암주요치료비 II (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	●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10년후10배보장)		●	●	
2대질병주요치료비(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10년후10배보장)		●	●	
혈전제거치료비(급여_연간1회한)(감액없음)		●	●	
폐렴진단비		●	●	
백반증진단비	●	●	●	
전이암진단비(감액없음)		●	●	
질병수술비(선천이상포함)	●	●	●	
11대특정감염병진단비(수족구포함)(연간1회한,10일면책)		●	●	
암진단비(유사암제외)(5회지급형)(감액없음)	●	●	●	
암진단비(유사암제외)(5회지급형)(감액없음)(갱신형_10년)	●	●	●	
플래티넘 건강 리셋월렛(3대질병고액치료,간병및상급병실입원)(갱신형_20년)		●	●	
플래티넘 건강 리셋월렛 II (3대질병고액및중환자실치료, 특정질병수술및동반입원)(갱신형_20년)		●	●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감액없음)	●	●	●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	●	●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
암주요치료비 II (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	●	
암주요치료비 II (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
암주요치료비 II (유사암)(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	●	●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 II (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	●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 II (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 II (유사암)(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	●	●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	●	●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 II (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	●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 II (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	●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 II (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	●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 II (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	●	
갑스치료비	●	●	●	●
5대장기이식수술비		●	●	●
각막이식수술비		●	●	●
인공관절수술비		●	●	●
상해질병입원비(1일-180일)	●	●	●	●
상해질병수술비	●	●	●	●
응급실내원비(응급)	●	●	●	●
신갑스치료비	●	●	●	●
상해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	●	●	●	●
상해질병수술비(선천기형포함)	●	●	●	●
보험료 페이백(5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장해(50%이상))		●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5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장해(50%이상))	●	●	●	

I. 보험계약의 개요

보장명	태아	1종	2~3종	4종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5대질환진단 및 상해·질병후유장해(50%이상))(면책없음)				●
인공와우이식수술비	●	●	●	
양전자 단층촬영(PET) 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	●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감액없음)	●	●	●	●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감액없음) (갱신형_10년)		●	●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감액없음)	●	●	●	●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감액없음) (갱신형_10년)		●	●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		●	●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 (갱신형_10년)		●	●	
특정팔근육염증진단비(감액없음)		●	●	
특정다리근육염증진단비(감액없음)		●	●	
8대장애훈련성포함)진단비	●	●	●	
시각기능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	●	●	●	
청각 및 평형기능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	●	●	●	
유치치아보존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		
영구치치아보존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		
영구치치아보철치료비 II (상해및질병)(갱신형)		●		
영구치치수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		
영구치상실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갱신형)		●		
치아촬영비(X-ray 및 파노라마)(상해및질병)(갱신형)		●		
치주질환치료비(갱신형)		●		
발치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		
과잉치 발치치료비(연간1회한)		●	●	
의료사고법률비용		●	●	●
유괴,납치,인질피해처리비용		●	●	
근시및원시치료비(갱신형)		●		
고도근시및원시치료비(갱신형)		●		
부정교합치료비(갱신형)		●		
출산위험 II	●	●	●	
저체중아육아비용	●	●	●	
부양자일반상해사망		●	●	
부양자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	●	
부양자질병사망(감액없음)		●	●	
부양자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		●	●	
모성사망		●	●	
임신출산질환임원비(1일-120일)		●	●	
임신출산질환수술비		●	●	
유산입원비(4일-120일)		●	●	
유산수술비		●	●	
임신중독증(자간포함)진단비		●	●	
임신관련특정혈액질환진단비		●	●	
만기태아사망진단비		●	●	
출산전 선별검사 결과 이상소견 진단비		●	●	
태반조기박리진단비		●	●	
양수색전증진단비		●	●	
임신성당뇨진단비		●	●	
다운증후군 출산진단비	●	●	●	
산후우울증치료비		●	●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진단비		●	●	
무배당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V(갱신형_1년) 특별약관		●	●	

II.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01.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보험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기간

면책기간

보험금
미지급

이 보험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 면책기간 적용 담보 예시

구분	담보명	면책기간
암관련특약	암진단비(유사암제외)	가입 후 90일 간 보장 제외(단, 가입자가 15세이상일 경우)

※ 일부 담보 예시로 실제 가입하신 담보 또한 면책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사례

A씨는 보험 가입 2개월 지난 시점에 위암진단 판정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민원 제기



→ 약관에 의거하여 15세이상 피보험자의 경우 암(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외)은 계약일 이후 90일의 면책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면책기간에 발생한 암진단(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90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일정기간(1년) 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감액지급

감액지급

50%
[1년 이내]

이 보험에는 **일정기간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감액지급)**되는 담보가 있습니다.

... 감액지급 적용 담보 예시

구분	담보명	감액기간 및 비율
뇌졸중진단특약	뇌졸중진단비	가입 후 1년 간 보험금 50%지급

※ 일부 담보 예시로 실제 가입하신 담보 또한 감액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 보장한도

보장한도
최초
1회한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 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 보장한도 적용 담보 예시

구분	담보명	보장한도
급성심근경색진단특약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최초1회 에 한해 보장
질병입원특약	질병입원비(4일-180일)	입원 4일째 부터 180일한도로 지급
비용관련특약	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	2,000만원 한도로 보장

※ 일부 담보 예시로 실제 가입하신 담보의 보장한도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부담금 차감

자기부담금
차감후
지급

이 보험에는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의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가 있습니다.

... 자기부담금을 차감하는 담보 예시

구분	담보명	자기부담금 차감 금액
배상책임관련특약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II	대인배상 : 없음 대물배상 : 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 일부 담보 예시로 실제 가입하신 담보의 자기부담금 설정 여부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2.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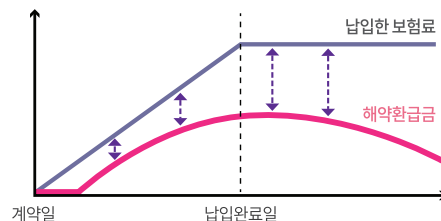
-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해약환급금
있음

! [1종, 4종]

주의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II.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해약환급금
0원
[납입기간 중 해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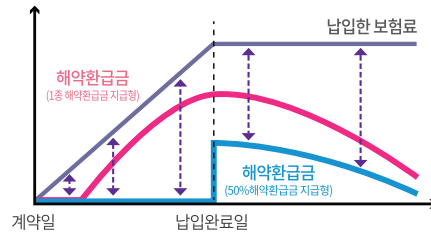
해약환급금
있음(1종의 50%)
[납입기간 후 해지시]



[2종 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주의

보험계약을 **납입기간 중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으며**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해지할 경우 **경과기간별로 1종(해약환급금 지급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해약환급금
0원
[납입기간 중 해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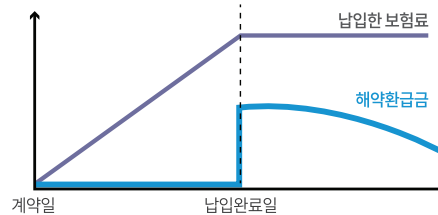
해약환급금
있음(표준환급률)
[납입기간 후 해지시]



[3종 납입후 표준형환급률 동일지급형]

주의

보험계약을 **납입기간 중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으며**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해지할 경우 **표준형 상품* 과 동일한 해약환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II.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 상품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률) 예시 >

(기준 : 100세 만기 20년납 5세 남자 상해1급, 단위: 원)
(가입담보: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1,000만원, 암진단비(유사암제외) 1,000만원, 유사암진단비 200만원, 뇌졸중진단비 1,0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1,000만원)

구분		1종 (해약환급금 지급형)		2종 (납입후 50%해약환급금 지급형)		3종 (납입후 표준환급률 지급형)		표준형* (3종 비교 안내용)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월보험료		13,066		10,426		10,938		13,222	
경과 기간 (년)	1	5,098	3.25%	-	0.0%	-	0.0%	-	0.0%
	3	223,728	47.56%	-	0.0%	-	0.0%	212,759	44.70%
	5	501,779	64.01%	-	0.0%	-	0.0%	496,295	62.56%
	7	793,832	72.33%	-	0.0%	-	0.0%	793,832	71.47%
	10	1,187,288	75.72%	-	0.0%	-	0.0%	1,187,288	74.83%
	19	2,590,426	86.95%	-	0.0%	-	0.0%	2,590,426	85.93%
	20	2,769,380	88.31%	1,384,712	55.34%	2,288,648	87.18%	2,769,380	87.27%
	40	4,611,466	147.06%	2,305,750	92.15%	3,807,426	145.04%	4,611,466	145.32%
	60	6,375,806	203.32%	3,187,918	127.4%	5,260,484	200.39%	6,375,806	200.92%
95	-	0.0%	-	0.0%	-	0.0%	-	0.0%	

* 「표준형」이란 3종(납입후 표준형환급률 동일지급형) 보험료 산출에 기초가 되는 이율, 위험률, 사업비율(해지율 제외) 등이 동일한 상품을 말합니다.

** 「표준형」은 3종(납입후 표준형환급률 동일지급형)의 비교 안내를 위한 상품으로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위 예시표의 월보험료, 환급금 및 환급률 수준을 비교하여 1종, 2종 또는 3종 중 하나의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03.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

◎ 이 보험에는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계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갱신형 계약은 **갱신할 때** **마다** 연령의 증가, 위험률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계약 예시

일반상해사망(갱신형), 암진단비(갱신형_5년),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_15년갱신형) 등과 같이 담보명에 "(갱신형)"이 포함된 보장

II.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04. 실손보상형 담보

◎ 이 보험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실손보상)하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①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계약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비용)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복 가입 시 비례 보상)
- ②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여러 개의 실손보상형 담보(또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상형 담보 예시

상해입원의료비,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II 등

※ 일부 담보 예시로 실제 가입하신 담보의 실손보상 여부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5.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① 보장성보험



- ① 이 보험은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며, **저축이나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②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 ③ 가입한 **특약**의 경우 보통약관과 **보험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약별 보험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금리연동형 보험(1종만 해당)



- ① 만기시 지급되는 환급금은 적립보험료에 이자를 부리하여 지급하여 드리며 이 때 적용하는 이율이 적립부분 공시이율(보장)이며 이는 매월 변동됩니다.
- ② 이 때 적용 적립부분 공시이율(보장)은 **계약체결 ·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③ 이 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입니다.
* 자산운용이익률,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경우 회사가 보증하는 적용이율의 최저한도
- ④ 2종(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3종(납입후 표준형환급률 동일지급형) 및 4종(계약전환형)은 순수보장성으로 판매하므로 적립부분 공시이율(보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II.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③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④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양자 및 산모인 특별약관과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납입면제에서 제외하며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셔야 합니다.
 1.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2.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단, 신생아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 면제 제외)
 3.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4.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5.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6. 상해로 장애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7.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애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위에서 정한 각 납입면제 사유별 진단확정은 약관에 정한 사항을 따릅니다.
- ②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가 될 자가 **출생전자녀(태아)인 경우 출생일 이전에 납입면제 사유 발생시 출생일부터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하여 드리므로, 출생전까지 납입하시는 **태아보장 보험료는 출생일 이전까지 납입하셔야 납입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③ 전환후 계약(제4종)에서는 **전환전 계약(제1종)에서의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환후 계약의 보험기간 중 **전환전 계약에서 이미 납입면제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로 납입면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입면제를 새롭게 적용**합니다.
- ④ 제1종(해약환급금 지급형)의 경우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 **적립보험료의 납입은 중지**합니다.

II.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5 태아가입 관련 사항



① 태아 가입시에는 자녀 **출생후 피보험자 변경통지**를 하셔야 하며, 출생한 자녀의 성별이 **보험가입시와 다른 경우 성별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한 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는 계약자가 이를 **회사에 납입**하셔야 합니다.

② 태아 출생 이후의 보험료는 성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6 특별약관 예약가입 제도



예약가입 대상 특별약관은 아래에서 정한 특별약관으로 하며, 예약가입 대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약관의 **실제 계약일부터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며, **그 때부터**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이 시작**됩니다.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예약가입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가입 대상 특별약관	예약가입 가능나이 (피보험자)	실제 최초계약일 (보장개시일)
부정교합치료비(갱신형)	태아, 0 ~ 2세	6세
근시및원시치료비(갱신형)	태아, 0 ~ 2세	6세
고도근시및원시치료비(갱신형)	태아, 0 ~ 2세	6세
소아 · 청소년 특정 성인병 진단비(갱신형)	태아, 0 ~ 2세	6세
ADHD진단비(갱신형)	태아, 0 ~ 2세	6세
영구치치아보존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태아, 0 ~ 5세	6세
영구치치아보철치료비 II (상해및질병)(갱신형)	태아, 0 ~ 5세	6세
영구치치수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태아, 0 ~ 5세	6세
영구치상실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태아, 0 ~ 5세	6세
치주질환치료비(갱신형)	태아, 0 ~ 5세	6세
중중턱장애진단비(갱신형)	태아, 0세	3세
유치치아보존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태아, 0 ~ 2세	3세
치아촬영비(X-ray 및 파노라마)(상해및질병)(갱신형)	태아, 0 ~ 2세	3세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갱신형)	태아, 0 ~ 2세	3세
성조숙증진단비(갱신형)	태아, 0 ~ 2세	3세
발치치료비(갱신형)	태아, 0 ~ 2세	3세
과잉치 발치치료비(연간1회한)	태아, 0 ~ 2세	3세
영구적중등도이상난청진단비(갱신형_10년)	태아, 0 ~ 5세	6세
영구적중등고도이상난청진단비(갱신형_10년)	태아, 0 ~ 5세	6세
영구적고도이상난청진단비(갱신형_10년)	태아, 0 ~ 5세	6세
원형탈모증진단비	태아, 0 ~ 1세	2세
성조숙증 II 약제치료비(급여_연간1회한)	태아, 0 ~ 4세	5세
턱장애약물치료비(30일이상약물처방)	태아, 0 ~ 2세	3세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치료비(급여_연간1회한)(갱신형)	태아, 0 ~ 1세	2세

III.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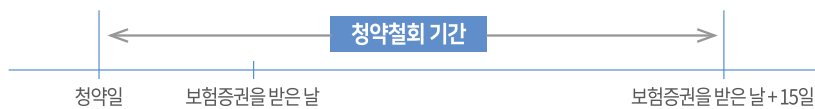
01.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통약관

제22조 청약의 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주의

- ① **청약일부터 30일**(만 65세 이상 보험계약자 & 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45일)을 **초과**한 경우
- ②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0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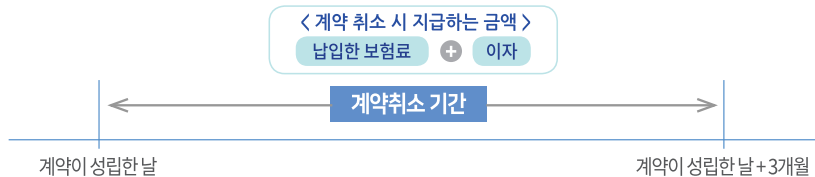


보통약관

제23조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03. 보험계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4조 계약의 무효

-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피보험자 지정)로 한 경우
- ✓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04. 보험계약前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보통약관

제17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19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 **해지** 가능
(회사)

보장 **제한** 가능
(회사)

- ! 주의 ①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前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②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민원 사례

A씨는 보험가입 후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부분을 사유로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을 받지 못함에 대해 민원 제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전자)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식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보험설계사에게
이야기 했다고요!!



청약서 질문표에는
다르게 기재하셨잖아요.



III.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05. 보험계약後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보통약관

제18조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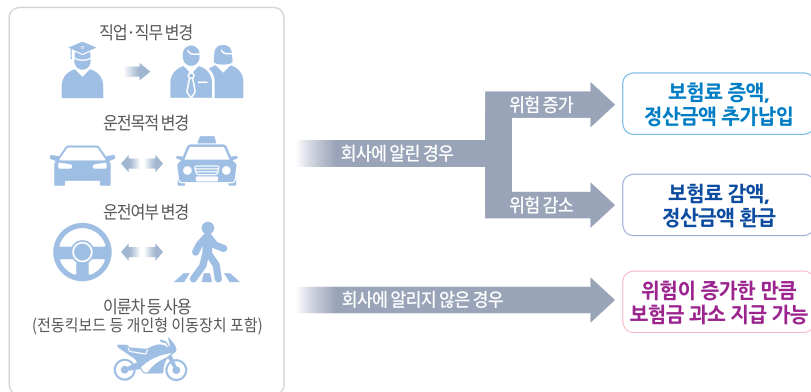
제19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 ①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 ②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06.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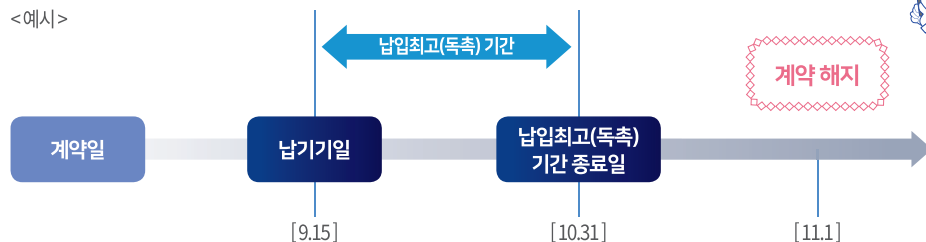
보통약관

제35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제2회이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 됩니다.

* 납입최고(독촉) 기간 :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

<예시>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07.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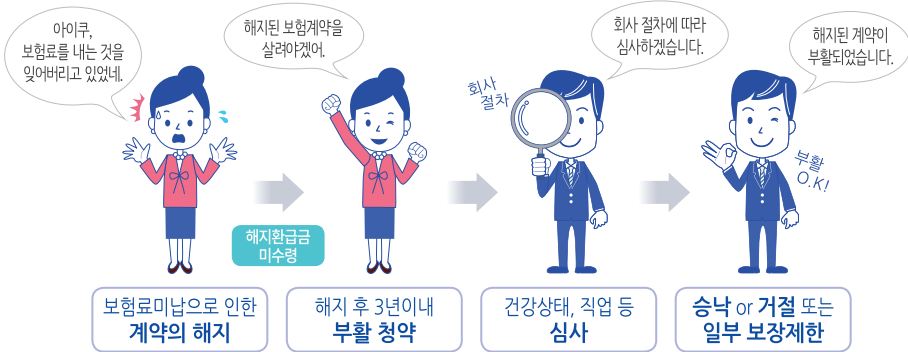
보통약관

제36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37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08. 보험계약대출

보통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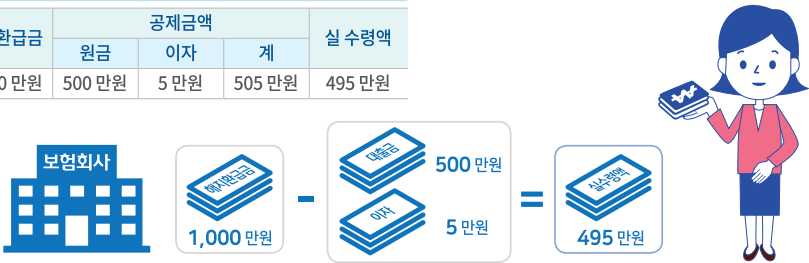
제42조 보험계약대출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1종에 한함)**

- 주의**
 ① **상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이자**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②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계약자는 대출신청 전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환급금 내역서				
해지환급금	공제금액			실 수령액
	원금	이자	계	
1,000 만원	500 만원	5 만원	505 만원	495 만원



Ⅳ.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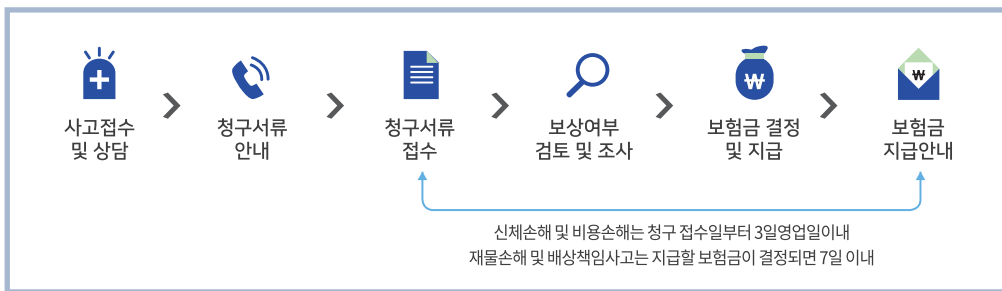


01.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보통약관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 **보험금**은 청구서류 서류접수일로부터 신체손해 및 비용손해는 **3영업일**,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사고는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방법

- 보험금 청구는 방문 없이 홈페이지(www.heungkukfire.co.kr), 유선접수(1688-1688), 우편접수, Fax로 가능하며, 우편접수시에는 아래의 접수처로 보험금 청구서(당사양식)를 첨부하여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우편접수 : (072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7 (영등포동2가) 흥국생명빌딩 9층 사고접수 담당자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예상지급기일 등은 담당자가 지정되면 문자를 통해 알려 드리며 담당자 지정 전에는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662조)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사항

- 장해진단서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한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 또는 소견을 요청드리며 진단 전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 의료심사

- 상해·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보험기간 치료비, 벌금, 배상책임 분담지급(비례보상 적용) 등

- 상해·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와 벌금, 배상책임 등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타사에 접수대행가능하며 타 보험사의 가입사항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IV.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안내

● 보험금 지급심사 지연안내 및 지연이자 지급

- 약관상 정해진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 지급예정일을 안내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약관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은 정상지급 또는 삭감 및 부지급(약관, 판례 등의 사유)될 수 있으며,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문자, 우편 등을 통해 안내드리며, 산정내역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립니다.
- 우편접수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신문로1가) 6층 소비자지원팀
- 전화상담 : 1688-1688(상담가능시간 : 09시~18시)
- 당사 홈페이지(www.heungkukfire.co.kr)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

02.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보통약관

제7조 보험금 등의 청구



주의

- 사고 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보험금 청구 전 보험회사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1688-1688로 문의바랍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구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수술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단사실 확인서류	공통
사망	● (사망진단서)					청구서 신분증
장해	● (장해진단서)					
진단	●				● (검사결과지 등)	
입원	△	●				
수술	△		●			
실손	△	● (입원시)	● (수술시)	● (통원시)		

Ⅳ.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안내

1. 상해/질병 사고

구 분		구비서류	발급처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주민등록 사본 -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 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재해사고시 : 사고입증서류(표아래 참고)	당사양식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사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가 첨부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 - 상속관계 확인서류(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 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경찰서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진료병원
의료비	입원	- 진단서[단,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 -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	진료병원
	통원	- 진단서·통원확인서(통원일자별)·처방전·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등 진단명, 통원일자 및 기간이 포함된 서류 - 3만원 이하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 → 단,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제외 ※ 처방전 :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2부 발행 가능(무료) - 보험급여지급확인서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 발급전 당사 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 만성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필름 첨부 ·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비장, 신장적출 :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	종합병원 (대학병원)
진단금		- 진단서 - 진단사실 확인서류 - [예시] 암 : 조직검사 결과지, 뇌졸중·심근경색 : 정밀검사결과지(CT, MRI, 심전도 등)	진료병원
골절		- 진단서·처방전·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등 진단명이 포함된 서류	진료병원
수술		- 진단서·수술확인서 등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진료병원
신생아 입원비		- 진단서[단,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 -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인큐베이터 사용시 해당기간 명시) ※ 진단서에 입원기간(인큐베이터 사용기간)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	진료병원

IV.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안내

유산/사산	- 진단서(유산), 사산증명서(사산)	
치아관련 담보	- 치아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확인서(아래 내용 포함) 가. 진료된 치아위치(또는 치아번호) 나. 진료내용 다.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등 - 치과치료 전후 해당 치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 진료비계산서(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이 포함된 치과 진료비 영수증 등)	진료병원
8대장애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장애정도결정서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시/군/구청 담당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진료병원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필요시 손해조사,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인감날인)/인감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척추체 등 운동장애 판정은 운동가능범위(AMA)방식을 적용하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의 경우 산정기준이 이와 다르며 운동장애의 경우에도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재해 입증서류 예시

1.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2.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3.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4.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5.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6.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2. 교통상해사고

구 분	구비서류	발급처
교통서류	-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 자녀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 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재해사고시 : 사고입증서류(표아래 참고)	당사양식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사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가 첨부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 (수익자 미지정시)추가 요청서류 - 상속관계 확인서류(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 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경찰서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진료병원

Ⅳ.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안내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 발급전 당사 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 사지절단 :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필름 첨부 ·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비장, 신장적출 :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		종합병원 (대학병원)
	의료비, 입원 일당 및 응급실 내원비	자동차 보험처리 - 사고처리확인서(자사 자동차보험 처리시 생략가능) 자동차 보험 미 처리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입(통)원확인서(진단명 필수기재)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경찰서 미신고시 기타사고 증빙서류제출(초진차트 등)	해당보험사 경찰서 진료병원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필요시 손해조사,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인감날인)/인감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척추체 등 운동장해 판정은 운동가능범위(AMA)방식을 적용하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의 경우 산정기준이 이와 다르며 운동장해의 경우에도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재해 입증서류 예시

1.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2.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3.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4.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5.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6.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빙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3. 배상책임사고

구 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재물·배상) - 피보험자의 가족관계확인서(중복보험 확인용도) - 보험금수취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 합의서
의료비	입원	- 진단서(20만원 미만시 입원확인서로 대체가능)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본인부담금 50만원 이하 또는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 - 초진기록지, 간호정보조사지
	통원	- 통원(진료)확인서 또는 병명 기재된 차트 - 일자별 영수증 및 약국영수증(병원처방전필수) * 카드 결제 영수증은 증빙서류가 아님 - 초진기록지

IV.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안내

대인	치료비	- 피해자 신분증 - 진단서 또는 초진차트(진단명 명시) - 치료비 영수증 - 입원확인서(입원시) - 상급병실 사용 확인서(법정전염병 또는 중환자로서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지급) - 개호소견서 - 향후 치료비 추정서(치료 현재시점 이후에 지속적 가료를 요하는 경우)
	휴업손해	- 피해자 소득 입증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3개월간 임금 대장, 근로계약서 등)
	후유장해	- 후유장해 진단서(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 발급時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포함) - 제적등본 - 통장사본 - 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時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 방법 포함) 첨부
대물		- 피해자 신분증 - 파손사진 - 피해물의 등록증(차량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 등) - 수리불가 확인서(수리 불가시) - 수리비 영수증

V. 자주 발생하는 민원 예상



01. 고지의무 관련 사례

- A씨는 보험가입 후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부분을 사유로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을 받지 못함에 대해 민원 제기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전자)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02. 가입 초기해약환급률 과소 관련 사례

- A씨는 보험가입 6개월 후 개인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것에 대한 민원 제기



유의사항

보험계약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03. 해약환급금 과소 관련 사례

- A씨는 2종(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을 20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는 구조로 가입하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오다 15년 후 개인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나 해약환급금이 없는 것에 대한 민원 제기



유의사항

2종(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3종(납입후 표준형환급률 동일지급형)은 납입기간 중에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는 반면 1종(해약환급금 지급형) 대비 낮은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 및
보험료 수준

1종(해약환급금 지급형) > 2종(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3종(납입후 표준형환급률 동일지급형)

04. 암진단비 면책관련 사례

- A씨는 보험 가입 2개월 지난 시점에 위암진단 판정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민원 제기



유의사항

약관에 의거하여 15세이상 피보험자의 경우 암(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외)은 계약일 이후 90일의 면책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면책기간에 발생한 암진단(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90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일정기간(1년) 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V. 자주 발생하는 민원 예상

05.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 관련 사례

- A씨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보험을 가입하고 몇 년 후 직업을 물품배달원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일반상해로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이 약정한 보험금보다 적은 것에 대해 민원 제기



유의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6. 자동갱신 및 갱신시 보험료 인상 관련 사례

- A씨는 갱신했던 보장에 대한 자동갱신 안내문을 받고 갱신했던 보장의 보험료가 많이 인상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민원제기



유의사항

자동갱신 보장은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만기일의 다음날에 자동 갱신되고, 갱신시 피보험자의 연령증가 및 해당 보장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인상폭은 계약당시에 예측한 해당 보장의 손해율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7. 질병손해 보장 관련 사례

- A씨는 질병보험에 가입 후 뇌졸중(I64)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민원 제기



유의사항

뇌졸중이라 하더라도 약관에서 정의된 뇌졸중(질병분류코드 상 I60, I61, I62, I63, I65, I66에 해당하는 뇌졸중)으로 진단시에만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외 I64, I67, I68, I69로 진단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VI. 보험용어 해설



용어	설명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신체손해/비용손해 보장>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재물손해/배상책임 보장>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 즉 피보험이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해당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보험료	· 보장보험료 :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 적립보험료 :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 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사업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 ※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보험금	<신체손해/비용손해 보장>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재물손해/배상책임 보장>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손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계약일	보험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계약자적립액	· 계약자적립액 = 보장부분 계약자적립액 +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 · 보장부분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장순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만기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적립순보험료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VI. 보험용어 해설

해약환급금

· 계약의 효력 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으로 아래와 같음

종 구분	납입기간 중	납입기간 후
1종(해약환급금형) 및 4종(계약전환형)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 (미상각 신계약비)을 차감한 금액	해약환급금
2종 (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없음	1종(해약환급금 지급형) 해약환급금의 50%
3종 (납입후 표준형환급률 동일지급형)	없음	경과기간별로 표준형 ^{주)} 과 동일한 환급률 수준의 해약환급금 지급

주) 「표준형」이란 3종(납입후 표준형환급률 동일지급형) 보험료 산출에 기초가 되는 이율, 위험률, 사업비율(해지율 제외) 등이 동일한 상품을 말합니다.

· 해약공제액(미상각 신계약비) : 신계약을 청약하고 승낙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체결비용이라 하며,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에서 균등하게 공제함. 그러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될 경우, 공제하지 못한 계약체결비용을 한꺼번에 공제하게 되는데 이를 해약공제액(미상각 신계약비)라 함

· 해약환급금 = 보장부분 해약환급금 + 적립부분 해약환급금(1종에 한함)



목 차

흥국화재 약관 이용 Guide Book

시각화 된 흥국화재 약관 요약서

I. 보험계약의 개요	8
II.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19
III.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26
IV.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안내	30
V. 자주 발생하는 민원 예상	36
VI. 보험용어 해설	39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64
제1조(목적)	64
제2조(용어의 정의)	64
제2관 보험금의 지급	66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6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66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67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67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	67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68
제9조(중도인출)	68
제10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69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70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	70
제13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71
제14조(주소변경통지)	71
제15조(보험수익자의 지정)	71
제16조(대표자의 지정)	71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72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72
제18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72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73
제20조(사기에 의한 계약)	74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74
제21조(보험계약의 성립)	74
제22조(청약의 철회)	75
제2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76
제24조(계약의 무효)	77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77
제26조(보험나이 등)	78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78
제28조(계약의 소멸시 계약자적립액의 청구)	79

제5관 보험료의 납입	79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79
제3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79
제31조(보험료의 납입면제)	79
제32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80
제33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84
제34조(보험료납입유예제도에 의한 보험료 대체납입)	84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85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86
제37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86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86
제3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86
제38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87
제39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87
제40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88
제41조(해약환급금)	88
제42조(보험계약대출)	90
제43조(배당금의 지급)	90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90
제44조(분쟁의 조정)	90
제45조(관할법원)	91
제46조(소멸시효)	91
제47조(약관의 해석)	91
제48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91
제4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91
제50조(개인정보보호)	92
제51조(준거법)	92
제5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92

특별약관

제1장. 상해관련 특별약관	94
1. 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 특별약관	94
1-1. 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 특별약관	94
1-2. 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태아) 특별약관	94
2.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 특별약관	95
2-1.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 특별약관	95
2-2.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태아) 특별약관	95
3.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96
4.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특별약관	98
4-1.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특별약관	98
4-2.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태아) 특별약관	98
5.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1~5급)(연간1회한) 특별약관	99
6.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연간1회한) 특별약관	101
6-1.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연간1회한) 특별약관	101
6-2.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연간1회한)(태아) 특별약관	101
7.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	101
7-1.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	101
7-2. 5대골절진단비(태아) 특별약관	101
8.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102
9.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103
9-1.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103

9-2.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태아) 특별약관	103
10.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104
10-1.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104
10-2.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태아) 특별약관	104
11.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 특별약관	105
12. 상해수술비 특별약관	108
13.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109
14. 골절수술비(1~5급)(연간1회한) 특별약관	111
15. 화상수술비 특별약관	113
16. 5대골절수술비 특별약관	115
17.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	116
18.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특별약관	118
19. 일상생활폭력상해 특별약관	119
20. 중대한화상및부식치료비 특별약관	120
21. 상해1~5중수술비Ⅳ 특별약관	121
22. 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123
22-1. 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123
22-2. 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태아) 특별약관	123
23.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125
23-1.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125
23-2.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20일)(태아) 특별약관	125
24. 폭력피해(사망제외)보장 특별약관	127
25. 일반상해입원비(1일-210일) 특별약관	128
25-1. 일반상해입원비(1일-210일) 특별약관	128
25-2. 일반상해입원비(1일-210일)(태아) 특별약관	128
26.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특별약관	129
26-1.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특별약관	129
26-2.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태아) 특별약관	129
27.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선천기형포함)(1일-20일) 특별약관	130
27-1.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선천기형포함)(1일-20일) 특별약관	130
27-2.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선천기형포함)(1일-20일)(태아) 특별약관	130
28. 상해수술비(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133
28-1. 상해수술비(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133
28-2. 상해수술비(선천기형포함)(태아) 특별약관	133
29. 골절수술비(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135
29-1. 골절수술비(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135
29-2. 골절수술비(선천기형포함)(태아) 특별약관	135
30. 5대골절수술비(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136
30-1. 5대골절수술비(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136
30-2. 5대골절수술비(선천기형포함)(태아) 특별약관	136
31. 상해1~5중수술비Ⅳ(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138
31-1. 상해1~5중수술비Ⅳ(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138
31-2. 상해1~5중수술비Ⅳ(선천기형포함)(태아) 특별약관	138
32. 성장판손상골절진단비 특별약관	140
32-1. 성장판손상골절진단비 특별약관	140
32-2. 성장판손상골절진단비(태아) 특별약관	140
33. 신화상진단비 특별약관	141
34. 신화상수술비 특별약관	142
35. 일반상해입원비(1일-20일) 특별약관	143
35-1. 일반상해입원비(1일-20일) 특별약관	143
35-2. 일반상해입원비(1일-20일)(태아) 특별약관	143
36. 아나필락시스진단비(연간1회한)(갱신형_10년) 특별약관	144
37. 상해1~5중수술비(1사고당) 특별약관	146
38. 상해1~5중수술비(1사고당)(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148
38-1. 상해1~5중수술비(1사고당)(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148

38-2. 상해1~5중수술비(1사고당)(선천기형포함)(태아) 특별약관	148
39. 상해1~8중수술비(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특별약관	150
40. 상해1~8중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특별약관	154
40-1. 상해1~8중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특별약관	154
40-2. 상해1~8중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태아) 특별약관	154
41. 상해흉터복원수술비(안면부) 특별약관	159
42. 창상봉합술치료비(급여,연간3회한) 특별약관	161
42-1. 창상봉합술치료비(급여,연간3회한) 특별약관	161
42-2. 창상봉합술치료비(급여,연간3회한)(태아) 특별약관	161
43. 창상봉합술치료비(급여,안면부,연간3회한) 특별약관	162
43-1. 창상봉합술치료비(급여,안면부,연간3회한) 특별약관	162
43-2. 창상봉합술치료비(급여,안면부,연간3회한)(태아) 특별약관	162
44. 상해재활치료비(급여,연간20회한) 특별약관	164
45. 중증의상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 특별약관	165
45-1. 중증의상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 특별약관	165
45-2. 중증의상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갱신형_10년) 특별약관	165
46. 골절철심제거수술비(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	167
47. 골절철심제거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	168
47-1. 골절철심제거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	168
47-2. 골절철심제거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연간1회한)(태아) 특별약관	168
48.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보장 특별약관	170
48-1.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보장 특별약관	170
48-2.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보장(갱신형_10년) 특별약관	170
49.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60일) 특별약관	172
49-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60일) 특별약관	172
49-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6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172
50.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60일) 특별약관	174
50-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60일) 특별약관	174
50-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6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174
5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 특별약관	177
5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 특별약관	177
51-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177
52.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180
52-1.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180
52-2.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태아) 특별약관	180
53.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182
53-1.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182
53-2.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태아) 특별약관	182
54. 종합병원 상해수술비 특별약관	183
55. 상급종합병원 상해수술비 특별약관	185
56.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특별약관	187
57.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지원비(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연간200만원이상) 특별약관	189
58.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지원비(요양병원)(간병인비용연간200만원이상) 특별약관	193
59. 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198
59-1. 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198
59-2. 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태아) 특별약관	198
60.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200
60-1.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200
60-2.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태아) 특별약관	200
61. 상해수술비(치아파절 및 치아탈구제외) 특별약관	202
62. 상해수술비(치아파절 및 치아탈구제외)(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204
62-1. 상해수술비(치아파절 및 치아탈구제외)(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204
62-2. 상해수술비(치아파절 및 치아탈구제외)(선천기형포함)(태아) 특별약관	204
63. 상해1~5중수술동반입원비 특별약관	205

64. 상해1~5중수술동반입원비(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209
64-1. 상해1~5중수술동반입원비(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209
64-2. 상해1~5중수술동반입원비(선천기형포함)(태아) 특별약관	209
65.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 특별약관	213
65-1.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 특별약관	213
65-2.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 (갱신형_20년) 특별약관	213
66.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 특별약관	216
66-1.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 특별약관	216
66-2.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216
67.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219
67-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219
67-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219
68.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 특별약관	221
68-1.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 특별약관	221
68-2.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221
69.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 특별약관	224
69-1.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 특별약관	224
69-2.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224
70. 스쿨존내어린이교통사고보장 특별약관	227
71.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 정신, 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 특별약관	229
7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 정신, 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특별약관	232

제2장. 질병관련 특별약관 235

1. 질병후유장해(3~100%)(감액없음) 특별약관	235
1-1. 질병후유장해(3~100%)(감액없음) 특별약관	235
1-2. 질병후유장해(3~100%)(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35
2. 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 특별약관	236
2-1. 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 특별약관	236
2-2. 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36
3. 질병후유장해(50%이상)(감액없음) 특별약관	237
3-1. 질병후유장해(50%이상)(감액없음) 특별약관	237
3-2. 질병후유장해(50%이상)(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37
4. 질병후유장해(20~100%)(감액없음) 특별약관	239
4-1. 질병후유장해(20~100%)(감액없음) 특별약관	239
4-2. 질병후유장해(20~100%)(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39
5.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240
5-1.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240
5-2.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40
6. 뇌출혈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242
6-1. 뇌출혈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242
6-2. 뇌출혈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42
7.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244
7-1.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244
7-2.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44
8.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246
8-1.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246
8-2.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46
9. 허혈성심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247
9-1. 허혈성심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247
9-2. 허혈성심질환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47
10. 어린이심장관련특정질병진단비 특별약관	248
11. 인슐린의존당뇨병진단비 특별약관	249
12.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특별약관	250
13.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특별약관	252

14.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 특별약관	253
14-1.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 특별약관	253
14-2.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53
15. 암진단비(유사암제외)(면책없음, 감액없음) 특별약관	255
16.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257
16-1.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257
16-2.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57
17. 신통합암(전이포함)진단비 II(유사암제외)(감액없음) 특별약관	258
17-1. 신통합암(전이포함)진단비 II(유사암제외)(감액없음) 특별약관	258
17-2. 신통합암(전이포함)진단비 II(유사암제외)(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58
18.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감액없음) 특별약관	265
18-1.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감액없음) 특별약관	265
18-2.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65
19.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면책없음, 감액없음) 특별약관	268
20.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210일)(감액없음) 특별약관	270
20-1.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210일)(감액없음) 특별약관	270
20-2.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210일)(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70
21.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210일)(면책없음, 감액없음) 특별약관	273
22.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감액없음) 특별약관	276
23.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면책없음, 감액없음) 특별약관	279
24. 질병1~5종수술비IV 특별약관	281
24-1. 질병1~5종수술비IV 특별약관	281
24-2. 질병1~5종수술비IV(태아) 특별약관	281
25. 질병1~5종수술비IV(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284
26. 암수술비(유사암제외)(최초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288
26-1. 암수술비(유사암제외)(최초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288
26-2. 암수술비(유사암제외)(최초1회한)(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88
27. 암수술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 특별약관	291
27-1. 암수술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 특별약관	291
27-2. 암수술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91
28. 유사암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294
28-1. 유사암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294
28-2. 유사암수술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94
29. 암수술비(유사암제외)(최초1회한)(면책없음, 감액없음) 특별약관	296
30. 암수술비(유사암제외)(면책없음, 감액없음) 특별약관	298
31.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00
31-1.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00
31-2.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300
32.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면책없음, 감액없음) 특별약관	302
33. 전반발달장애진단비 특별약관	303
33-1. 전반발달장애진단비 특별약관	303
33-2. 전반발달장애진단비(태아) 특별약관	303
34. 다발성소아암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04
34-1. 다발성소아암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04
34-2. 다발성소아암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304
35. 소아백혈병진단비 특별약관	306
35-1. 소아백혈병진단비 특별약관	306
35-2. 소아백혈병진단비(태아) 특별약관	306
36.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특별약관	308
37.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10
37-1.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10
37-2.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310
38.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면책없음, 감액없음) 특별약관	312
39.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II(유사암제외)(감액없음) 특별약관	314
39-1.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II(유사암제외)(감액없음) 특별약관	314

39-2.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II(유사암제외)(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314
40. 양성뇌종양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20
40-1. 양성뇌종양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20
40-2. 양성뇌종양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320
41. 질병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321
42.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323
43.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 특별약관	324
44. 식중독입원비(4일-120일) 특별약관	328
44-1. 식중독입원비(4일-120일) 특별약관	328
44-2. 식중독입원비(4일-120일)(태아) 특별약관	326
45. 특정전염병치료비 특별약관	330
45-1. 특정전염병치료비 특별약관	330
45-2. 특정전염병치료비(태아) 특별약관	328
46. 환경성질환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331
46-1. 환경성질환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331
46-2. 환경성질환입원비(1일-120일)(태아) 특별약관	331
47. 생활질환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332
47-1. 생활질환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332
47-2. 생활질환입원비(1일-120일)(태아) 특별약관	332
48. 희귀난치성질환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334
48-1. 희귀난치성질환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334
48-2. 희귀난치성질환입원비(1일-120일)(태아) 특별약관	334
49.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336
49-1.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336
49-2. 질병수술비(태아) 특별약관	336
50. 질병1~5중수술비 II(동일질병당) 특별약관	338
50-1. 질병1~5중수술비 II(동일질병당) 특별약관	338
50-2. 질병1~5중수술비 II(동일질병당)(태아) 특별약관	338
51. 뇌혈관질환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40
52. 허혈성심질환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43
52-1. 허혈성심질환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43
52-2. 허혈성심질환수술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343
53.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44
53-1.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44
53-2.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수술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344
54. 특정순환계질환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47
54-1. 특정순환계질환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47
54-2. 특정순환계질환수술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347
55. 다발성3대혈관질환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50
55-1. 다발성3대혈관질환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50
55-2. 다발성3대혈관질환수술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350
56. 70대특정질병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51
56-1. 70대특정질병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51
56-2. 70대특정질병수술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351
57. 치핵(치질)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55
57-1. 치핵(치질)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55
57-2. 치핵(치질)수술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355
58. 당뇨병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57
59. 충수염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58
60. 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60
60-1. 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60
60-2. 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360
61. 소아탈장수술비 특별약관	362
61-1. 소아탈장수술비 특별약관	362
61-2. 소아탈장수술비(태아) 특별약관	362

62. 주간판장배수술비 특별약관	363
63.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 특별약관	365
63-1.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 특별약관	365
63-2.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태아) 특별약관	365
64. 시각질환수술비 특별약관	366
65. 청각질환수술비 특별약관	368
66. 성장장애관련질병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370
66-1. 성장장애관련질병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370
66-2. 성장장애관련질병입원비(1일-120일)(태아) 특별약관	370
67. 척추측만증수술비 특별약관	371
68.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 특별약관	373
69. 피부질환수술비(연간1회환)(감액없음) 특별약관	374
69-1. 피부질환수술비(연간1회환)(감액없음) 특별약관	374
69-2. 피부질환수술비(연간1회환)(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374
70. 호흡기관관련질병수술비 특별약관	375
70-1. 호흡기관관련질병수술비 특별약관	375
70-2. 호흡기관관련질병수술비(태아) 특별약관	375
71. 재진단암III진단비 특별약관	377
71-1. 재진단암III진단비 특별약관	377
71-2. 재진단암III진단비(갱신형_10년) 특별약관	377
72. 재진단암III진단비(면책없음) 특별약관	383
73. 소아·청소년 특정 성인병 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388
74. ADHD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389
75. 중증아토피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391
76. 중증틱장애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392
77. 성조숙증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394
78.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95
79. 선천이상진단비 특별약관	397
80. 특정선천이상진단비 특별약관	398
81. 선천이상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399
81-1. 선천이상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399
81-2. 선천이상입원비(1일-120일)(태아) 특별약관	399
82. 선천이상수술비 특별약관	401
82-1. 선천이상수술비 특별약관	401
82-2. 선천이상수술비(태아) 특별약관	401
83. 특정선천이상수술비 특별약관	403
83-1. 특정선천이상수술비 특별약관	403
83-2. 특정선천이상수술비(태아) 특별약관	403
84. 신생아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404
85. 5대기관질병수술비II(감액없음) 특별약관	406
86. 뇌성마비진단비 특별약관	408
86-1. 뇌성마비진단비 특별약관	408
86-2. 뇌성마비진단비(태아) 특별약관	408
87. 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409
87-1. 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409
87-2. 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80일)(태아) 특별약관	409
88.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412
88-1.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412
88-2.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20일)(태아) 특별약관	412
89. 질병입원비(1일-210일) 특별약관	414
90. 7대희귀난치성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416
90-1. 7대희귀난치성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416
90-2. 7대희귀난치성질환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416
91. 천식지속상태(급성중증천식)진단비 특별약관	417
92. 질병중환자실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 특별약관	418

92-1. 질병중환자실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 특별약관	418
92-2. 질병중환자실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태아) 특별약관	418
93. 질병수술동반입원비(선천이상포함)(1일-20일) 특별약관	419
93-1. 질병수술동반입원비(선천이상포함)(1일-20일) 특별약관	419
93-2. 질병수술동반입원비(선천이상포함)(1일-20일)(태아) 특별약관	419
94.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210일) 특별약관	423
94-1.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210일) 특별약관	423
94-2.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210일)(태아) 특별약관	423
95.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 특별약관	425
95-1.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 특별약관	425
95-2.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태아) 특별약관	425
96. 신재진단암진단비Ⅱ(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포함, 5회한) 특별약관	427
96-1. 신재진단암진단비Ⅱ(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포함, 5회한) 특별약관	427
96-2. 신재진단암진단비Ⅱ(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포함, 5회한)(갱신형_10년) 특별약관	427
97. 신재진단암진단비Ⅲ(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포함, 5회한)(면책없음) 특별약관	432
98. 암직접치료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437
98-1. 암직접치료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437
98-2. 암직접치료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437
99. 암직접치료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440
100.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443
100-1.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443
100-2.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443
101.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447
102.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갱신형_10년) 특별약관	449
103.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면책없음,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454
104. 수족구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458
104-1. 수족구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458
104-2. 수족구진단비(연간1회한)(태아) 특별약관	458
105. 수두진단비 특별약관	459
105-1. 수두진단비 특별약관	459
105-2. 수두진단비(태아) 특별약관	459
106. 특정정신질환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460
107. 결핵진단비 특별약관	461
108.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진단비 특별약관	462
109. 중기이상 만성폐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463
110. 말기만성폐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464
111. 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465
112. 기흉진단비 특별약관	466
112-1. 기흉진단비 특별약관	466
112-2. 기흉진단비(태아) 특별약관	466
113. 3대질병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467
114. 3대질병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472
115. 3대질병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477
116. 3대질병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481
117. 독감(인플루엔자) 입원비(1일-30일)(갱신형_10년) 특별약관	485
118.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치료비(연간1회한,10일면책)(갱신형_10년) 특별약관	487
119. 질병입원비(1일-20일) 특별약관	490
120.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491
120-1.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491
120-2.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491
121.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30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494
122. 3대질병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496
123. 3대질병통원비(연간30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501
124. 뇌혈관질환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505

125. 허혈성심질환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507
126. 3대질환 MRI 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509
127.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연간1회한)(갱신형_10년) 특별약관	512
128. 항암양성지방방사선치료비Ⅱ(갱신형_10년) 특별약관	517
129. 항암양성지방방사선치료비(면책없음,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520
130.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Ⅱ(갱신형_10년) 특별약관	522
131.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면책없음,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525
132.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토모테라피)Ⅱ(갱신형_10년) 특별약관	527
133.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토모테라피)(면책없음,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530
134.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이외의 암)Ⅱ(갱신형_10년) 특별약관	533
135.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이외의 암)(면책없음,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537
136.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Ⅱ(갱신형_10년) 특별약관	541
137.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545
138. 항암정위방사선치료비Ⅱ(갱신형_10년) 특별약관	550
139. 항암정위방사선치료비(면책없음,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553
140.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555
140-1.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555
140-2.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555
141. 5대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556
141-1. 5대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556
141-2. 5대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556
142.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 특별약관	557
143. 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 특별약관	560
143-1. 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 특별약관	560
143-2. 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태아) 특별약관	560
144. 요양병원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입원비(1일-90일) 특별약관	563
145.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20일) 특별약관	565
145-1.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20일) 특별약관	565
145-2.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20일)(태아) 특별약관	565
146. 142대특정질병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567
146-1. 142대특정질병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567
146-2. 142대특정질병수술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567
147. 질병1~8종수술비(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특별약관	572
148. 질병1~8종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특별약관	576
148-1. 질병1~8종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특별약관	576
148-2. 질병1~8종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태아) 특별약관	576
149. 심근병증(허혈성제외)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581
149-1. 심근병증(허혈성제외)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581
149-2. 심근병증(허혈성제외)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581
150. 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583
150-1. 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583
150-2. 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583
151. 특정순환계질환(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진단비(감액없음)(1종) 특별약관	584
151-1. 특정순환계질환(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진단비(감액없음)(1종) 특별약관	584
151-2. 특정순환계질환(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진단비(감액없음)(1종)(태아) 특별약관	584
152.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2종) 특별약관	585
152-1.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2종) 특별약관	585
152-2.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2종)(태아) 특별약관	585
153.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3종) 특별약관	586
153-1.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3종) 특별약관	586
153-2.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3종)(태아) 특별약관	586
154.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4종) 특별약관	587
154-1.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4종) 특별약관	587

154-2.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4종)(태아) 특별약관	587
155.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5종) 특별약관	589
155-1.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5종) 특별약관	589
155-2.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5종)(태아) 특별약관	589
156.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590
156-1.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590
156-2.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590
157.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591
157-1.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591
157-2.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591
158. 신생아난청진단비 특별약관	592
159. 영구적중등도이상난청진단비(갱신형_10년) 특별약관	594
160. 영구적중등고도이상난청진단비(갱신형_10년) 특별약관	597
161. 영구적고도이상난청진단비(갱신형_10년) 특별약관	600
162. 뇌심장질환 CT, MRI, 초음파, 뇌파, 뇌척수액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603
163. 뇌심장질환 혈관조영술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605
164. 8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수술비(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607
165.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 특별약관	608
166. 뇌전증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611
167. 특정귀어지럼증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612
168. 원형탈모증진단비 특별약관	612
169. 특정폐혈증진단비 특별약관	614
170. 급성신우신염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615
172-1. 급성신우신염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615
172-2. 급성신우신염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615
171.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선천성 포함)(감액없음) 특별약관	616
173-1.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선천성 포함)(감액없음) 특별약관	616
173-2.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선천성 포함)(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616
172.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선천성 제외)(감액없음) 특별약관	617
173.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면책없음) 특별약관	618
174. 중증갑상선암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619
175. 특정4대질환 헬리코박터제균치료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621
176. 카티(CAR-T) 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623
177. 질병재활치료비(급여_연간2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627
178.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지원비 II(급여_연간1회한) 특별약관	629
179.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 특별약관	631
179-1.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 특별약관	631
179-2.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631
180.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제외))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 특별약관	634
181. 대장용종제거수술비(급여, 용종개수당) 특별약관	638
182. 특정안면마비진단비 특별약관	639
183. 31주 이내 출생진단비 특별약관	640
184.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 특별약관	641
185.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치료비(급여_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643
186. 틱장애약물치료비(30일 이상 약물처방) 특별약관	645
187. 성조숙증 II 약제치료비(급여_연간1회한) 특별약관	646
188. 암후유장해(3~100%)(감액없음) 특별약관	649
188-1. 암후유장해(3~100%)(감액없음) 특별약관	649
188-2. 암후유장해(3~100%)(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649
189. 암후유장해(3~100%)(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651
190.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655
191.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658
192. 허혈성심질환진단비(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660
193.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진단비(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662

194.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진단비(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664
195. 항암방사선악물치료비(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666
196. 뇌혈관질환수술비(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670
197. 허혈성심질환수술비(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673
198. 질병수술비(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675
199. 특정순환계질환수술비(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679
200.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682
201. 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687
202. 혈전용해치료비II(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689
203. 혈전용해치료비II(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691
204. 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694
205. 혈전용해치료비II(1회한)(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697
206. 혈전용해치료비II(연간1회한)(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699
207.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60일) 특별약관	703
207-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60일) 특별약관	703
207-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6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703
208.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60일) 특별약관	706
208-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60일) 특별약관	706
208-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6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706
209.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 특별약관	709
209-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 특별약관	709
209-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709
210. 중증질환자(중복암 및 재등특암)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 특별약관	712
211.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 특별약관	717
211-1.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 특별약관	717
211-2.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717
211-3.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갱신형_10년) 특별약관	717
212.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 특별약관	719
213. 재발암 및 잔여암진단비(2년대기형)(감액없음) 특별약관	722
214. 특정면역항암악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_10년) 특별약관	727
215. 통합 뇌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732
216. 통합 심장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733
217.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735
217-1.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735
217-2.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태아) 특별약관	735
218.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738
218-1.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738
218-2.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태아) 특별약관	738
219.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740
219-1.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740
219-2.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740
219-3.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740
220. 암주요치료비(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745
220-1. 암주요치료비(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745
220-2. 암주요치료비(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745
220-3. 암주요치료비(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745
221. 종합병원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749
221-1. 종합병원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749
221-2. 종합병원 질병수술비(태아) 특별약관	749
222.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751
222-1.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751
222-2.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태아) 특별약관	751
223. 전신마취암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754
223-1. 전신마취암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754
223-2. 전신마취암수술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754

224.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특별약관	758
225.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특별약관	760
226.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비(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연간200만원이상) 특별약관	763
227.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비(요양병원)(간병인비용연간200만원이상) 특별약관	768
228.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773
228-1.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773
228-2. 종합병원 2~3인실일 질병입원비(1일~30일)(태아) 특별약관	773
229.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775
229-1.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775
229-2.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태아) 특별약관	775
230. 2대질환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778
233-1. 2대질환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778
233-2. 2대질환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778
233-3. 2대질환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778
231. 뇌혈관질환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782
232. 허혈성심질환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784
233. 뇌혈관질환 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786
234. 허혈성심질환 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788
235. 질병수술비(특정6대질환Ⅱ제외) 특별약관	789
235-1. 질병수술비(특정6대질환Ⅱ제외) 특별약관	789
235-2. 질병수술비(특정6대질환Ⅱ제외)(태아) 특별약관	789
236. 질병수술비(특정8대질환제외) 특별약관	792
236-1. 질병수술비(특정8대질환제외) 특별약관	792
236-2. 질병수술비(특정8대질환제외)(태아) 특별약관	792
237.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특정6대질환Ⅱ제외) 특별약관	794
237-1.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특정6대질환Ⅱ제외) 특별약관	794
237-2.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특정6대질환Ⅱ제외)(태아) 특별약관	794
238.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 (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797
238-1.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 (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797
238-2.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 (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797
238-3.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 (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797
239.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 (감액없음) 특별약관	802
239-1.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 (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802
239-2.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 (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802
239-3.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 (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802
240. 순환계질환(특정질환 및 2대질환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807
240-1. 순환계질환(특정질환 및 2대질환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807
240-2. 순환계질환(특정질환 및 2대질환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태아) 특별약관	807
240-3. 순환계질환(특정질환 및 2대질환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 (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807
241. 순환계질환진단비(특정질환 및 2대질환제외)(감액없음) 특별약관	811
241-1. 순환계질환진단비(특정질환 및 2대질환제외)(감액없음) 특별약관	811
241-2. 순환계질환진단비(특정질환 및 2대질환제외)(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811
242. 질병1~5중수술동반입원비Ⅲ 특별약관	812
243. 질병1~5중수술동반입원비Ⅲ(선천이상포함) 특별약관	817

243-1.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선천이상포함) 특별약관	817
243-2.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선천이상포함)(태아) 특별약관	817
244. 보험료납입지원보장(유사암진단) 특별약관	821
245.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 특별약관	823
245-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 특별약관	823
245-2.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 (갱신형_20년) 특별약관	823
246.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 특별약관	827
246-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 특별약관	827
246-2.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827
247.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829
247-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829
247-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18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829
248.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 정신, 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 특별약관	832
249.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836
249-1.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836
249-2.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836
249-3.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836
250. 순환계질환진단비(특정질병제외)(감액없음) 특별약관	841
250-1. 순환계질환진단비(특정질병제외)(감액없음) 특별약관	841
250-2. 순환계질환진단비(특정질병제외)(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841
251. 카티(CAR-T) 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면책없음, 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842
252.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면책없음, 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846
253.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 특별약관	850
253-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 특별약관	850
253-2.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850
254.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 특별약관	854
254-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 특별약관	854
254-2.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854
255.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858
255-1.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858
255-2.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858
255-3.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858
256.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1회한, 진단후10년)(면책없음, 감액없음) 특별약관	863
257.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868
257-1.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868
257-2.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868
257-3.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 (갱신형_10년) 특별약관	868
258.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1회한, 진단후10년)(면책없음, 감액없음) 특별약관	872
259.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감액없음) 특별약관	875
259-1.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감액없음) 특별약관	875
259-2.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875
259-3.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875
260.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면책없음, 감액없음) 특별약관	878
261. 항암방사선치료비(감액없음) 특별약관	880
261-1. 항암방사선치료비(감액없음) 특별약관	880
261-2. 항암방사선치료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880
262. 항암방사선치료비(면책없음, 감액없음) 특별약관	882
263. 항암약물치료비(감액없음) 특별약관	884

263-1. 항암약물치료비(감액없음) 특별약관	884
263-2. 항암약물치료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884
264. 항암약물치료비(면책없음, 감액없음) 특별약관	886
265.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888
265-1.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888
265-2.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888
265-3.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888
266. 2대질환주요치료비(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892
266-1. 2대질환주요치료비(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892
266-2. 2대질환주요치료비(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892
267.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899
267-1.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899
267-2.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899
267-3.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899
268.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904
268-1.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904
268-2.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904
268-3.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904
269.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10년후10배보장) 특별약관	909
270. 2대질환주요치료비(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10년후10배보장) 특별약관	911
271. 혈전제거치료비(급여_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917
271-1. 혈전제거치료비(급여_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917
271-2. 혈전제거치료비(급여_연간1회한)(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917
272. 폐렴진단비 특별약관	919
273. 백반증진단비 특별약관	920
273-1. 백반증진단비 특별약관	920
273-2. 백반증진단비(태아) 특별약관	920
274. 전이암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921
275. 질병수술비(선천이상포함) 특별약관	924
275-1. 질병수술비(선천이상포함) 특별약관	924
275-2. 질병수술비(선천이상포함)(태아) 특별약관	924
276. 11대특정강염병진단비(수족구포함)(연간1회한, 10일면책) 특별약관	926
277. 암진단비(유사암제외)(5회지급형)(감액없음) 특별약관	928
277-1. 암진단비(유사암제외)(5회지급형)(감액없음) 특별약관	928
277-2. 암진단비(유사암제외)(5회지급형)(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928
277-3. 암진단비(유사암제외)(5회지급형)(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928
278. 플래티늄 건강 리셋웰렛(3대고액치료, 간병및상급병실입원)(갱신형_20년) 특별약관	933
279. 플래티늄 건강 리셋웰렛Ⅱ(3대질환고액및중환자실치료, 특정질병수술및동반입원)(갱신형_20년) 특별약관	949
280.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965
280-1.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965
280-2.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1회한)(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965
280-3.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965
281.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1회한)(면책없음, 감액없음) 특별약관	971
282.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976
283.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면책없음, 감액없음) 특별약관	982
284.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988
285.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993
286.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면책없음, 감액없음) 특별약관	999
287.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1004
288.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1008
289.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	

(연간1회환,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1013
289-1.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II(유사암제외) (연간1회환,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1013
289-2.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II(유사암제외) (연간1회환,진단후10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1013
289-3.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II(유사암제외) (연간1회환,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1013
290.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II(유사암)(연간1회환,진단후10년) (감액없음) 특별약관	1019
290-1.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II(유사암) (연간1회환,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1019
290-2.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II(유사암) (연간1회환,진단후10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1019
290-3.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II(유사암) (연간1회환,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1019

제3장. 상해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1025

1. 갑스치료비 특별약관	1025
1-1. 갑스치료비 특별약관	1025
1-2. 갑스치료비(태아) 특별약관	1025
2. 5대장기이식수술비 특별약관	1026
3. 각막이식수술비 특별약관	1027
4. 인공관절수술비 특별약관	1029
5. 상해질병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1030
6. 상해질병수술비 특별약관	1032
7. 응급실내원비(응급) 특별약관	1034
7-1. 응급실내원비(응급) 특별약관	1034
7-2. 응급실내원비(응급)(태아) 특별약관	1034
8. 신갑스치료비 특별약관	1035
8-1. 신갑스치료비 특별약관	1035
8-2. 신갑스치료비(태아) 특별약관	1035
9. 상해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 특별약관	1036
9-1. 상해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 특별약관	1036
9-2. 상해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태아) 특별약관	1036
10. 상해질병수술비(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1038
10-1. 상해질병수술비(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1038
10-2. 상해질병수술비(선천기형포함)(태아) 특별약관	1038
11. 보험료 페이백(5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장해(50%이상)) 특별약관	1040
12.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5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장해(50%이상)) 특별약관	1045
12-1.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5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장해(50%이상)) 특별약관	1045
12-2.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4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장해(50%이상))(태아) 특별약관	1045
13.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5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장해(50%이상))(면책없음) 특별약관	1049
14. 인공와우이식수술비 특별약관	1052
14-1. 인공와우이식수술비 특별약관	1052
14-2. 인공와우이식수술비(태아) 특별약관	1052
15. 양전자 단층촬영(PET) 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환)(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1055
16.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환)(감액없음) 특별약관	1056
16-1.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환)(감액없음) 특별약관	1056
16-2.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환)(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1056
16-3.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환)(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1056
17.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환)(감액없음) 특별약관	1059
17-1.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환)(감액없음) 특별약관	1059
17-2.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환)(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1059
17-3.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환)(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1059
18.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 특별약관	1061

18-1.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 특별약관	1061
18-2.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1061
19. 특정팔근육염증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1064
20. 특정다리근육염증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1065
21. 8대장애(선천성포함)진단비 특별약관	1066
21-1. 8대장애(선천성포함)진단비 특별약관	1066
21-2. 8대장애(선천성포함)진단비(태아) 특별약관	1066
22. 시각기능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 특별약관	1068
23. 청각 및 평형기능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 특별약관	1069
제4장. 치아관련 특별약관	1069
1. 유치치아보존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1071
2. 영구치치아보존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1075
3. 영구치치아보철치료비 II(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1080
4. 영구치치수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1084
5. 영구치상실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1087
6.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1089
7. 치아촬영비(X-ray 및 파노라마)(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1091
8. 치주질환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1093
9. 발치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1095
10. 과잉치 발치치료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1097
제5장.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1099
1. 의료사고법률비용 특별약관	1099
2. 유괴,납치,인질피해처리비용 특별약관	1100
3. 근시및원시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1101
4. 고도근시및원시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1102
5. 부정교합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1103
6. 출산위험 II 특별약관	1104
7. 저체중아육아비용 특별약관	1105
제6장. 부양자관련 특별약관	1107
0. 부양자관련 공통약관	1107
1. 부양자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1108
2. 부양자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특별약관	1108
3. 부양자질병사망(감액없음) 특별약관	1110
4. 부양자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 특별약관	1110
5. 모성사망 특별약관	1112
6. 임신출산질환임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1113
7. 임신출산질환수술비 특별약관	1114
8. 유산임원비(4일-120일) 특별약관	1116
9. 유산수술비 특별약관	1118
10. 임신중독증(자간포함)진단비 특별약관	1119
11. 임신관련특정혈액질환진단비 특별약관	1121
12. 만기태아사망진단비 특별약관	1122
13. 출산전 선별검사 결과 이상소견 진단비 특별약관	1123
14. 태반조기박리진단비 특별약관	1124
15. 양수색전증진단비 특별약관	1126
16. 임신성당뇨진단비 특별약관	1127
17. 다운증후군 출산진단비 특별약관	1128
18. 산후우울증치료비 특별약관	1129
19.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진단비 특별약관	1131
제7장. 무배당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V(갱신형_1년) 특별약관	1133
0. 배상책임 관련 공통약관	1133

1.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갱신형_1년) 특별약관	1139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1143
1. 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	1143
2. 피보험자 추가 특별약관	1149
3.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1150
4. 이륜자동차 운전중(탑승포함)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1151
5.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1152
6. 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	1153
7.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	1154
8. 보험금대리청구인 지정서비스 특별약관	1158
9. 계약전환 특별약관	1159
10.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특별약관	1165
11. 특별조건부(할증보험료법 / 보험금감액법) 특별약관	1167
12. 전자서명 특별약관	1169

별 표

【별표1】 장해 분류표	1170
【별표2】 기타관계법령	1188
【별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1216
【별표4】 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	1217
【별표5-1】 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Ⅱ	1218
【별표5-2】 골절 등급분류기준표	1219
【별표6】 골절 분류표	1220
【별표7】 5대골절 분류표	1221
【별표8】 화상 분류표	1222
【별표9-1】 골절 분류표Ⅲ	1223
【별표9-2】 골절 등급분류기준표Ⅱ	1224
【별표10】 중대한특정상해 분류표	1225
【별표11】 1-5종수술 분류표Ⅲ	1226
【별표12】 성장판부위골절 분류표	1231
【별표13-1】 신화상 분류표	1232
【별표13-2】 신화상 등급분류기준표	1233
【별표14】 아나필락시스 분류표	1234
【별표15】 뇌졸중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	1235
【별표16】 뇌출혈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	1236
【별표17】 뇌혈관질환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	1237
【별표18】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1238
【별표19】 허혈성심질환 분류표	1238
【별표20】 인슐린의존당뇨병 분류표	1239
【별표21】 중증세균성수막염 분류표	1239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1240
【별표22-2】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1241
【별표22-3】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1242
【별표23】 3대고액치료비암 분류표	1243
【별표24】 전반발달장애 분류표	1244
【별표25】 다발성소아암 분류표	1245
【별표26】 소아백혈병 분류표	1246
【별표27】 식중독 분류표	1247
【별표28】 특정전염병 분류표	1248
【별표29】 환경성질환 분류표	1249
【별표30】 생활질환 분류표	1250
【별표31】 희귀난치성질환 분류표	1251

【별표32】 병기구분 불가암 분류표	1255
【별표33】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	1258
【별표34】 다발성3대혈관질환 분류표	1259
【별표35-1】 19대특정질병 분류표	1260
【별표35-2】 19대특정질병 II 분류표	1262
【별표35-3】 22대특정질병 II 분류표	1265
【별표35-4】 6대특정질병 분류표	1269
【별표35-5】 다빈도4대질환 II 분류표	1271
【별표36】 치핵 분류표	1272
【별표37】 당뇨병 분류표	1273
【별표38】 총수염(맹장염) 분류표	1274
【별표39】 소아탈장 분류표	1274
【별표40】 추간판장애 분류표	1275
【별표41】 시각질환 분류표	1276
【별표42】 청각질환 분류표	1277
【별표43】 성장장애관련질환 분류표	1278
【별표44】 척추측만증 분류표	1279
【별표45】 모아모아병 분류표	1279
【별표46】 피부질환 분류표	1280
【별표47】 호흡기관련질환 분류표	1281
【별표48】 소아 . 청소년 특정 성인병 분류표	1282
【별표49】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분류표	1284
【별표50】 아토피성 피부염 분류표	1284
【별표51】 복합된 음성 및 다발성 운동 틱장애(데라투렛 증후군) 분류표	1285
【별표52】 성조숙증 분류표	1285
【별표53】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	1286
【별표54】 특정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	1287
【별표55】 주산기질환 분류표	1288
【별표56】 5대기관질환 분류표	1289
【별표57】 뇌성마비 분류표	1290
【별표58】 7대희귀난치성질환 분류표	1290
【별표59】 천식지속상태 분류표	1291
【별표60】 선천성 뇌질환 분류표	1291
【별표61】 수족구 분류표	1292
【별표62】 수두 분류표	1292
【별표63】 특정정신질환 분류표	1293
【별표64】 결핵 분류표	1294
【별표65】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 분류표	1294
【별표66】 신동합암(전이포함) II (유사암제외) 분류표	1295
【별표67】 만성폐질환 분류표	1297
【별표68】 만성폐쇄성폐질환 분류표	1298
【별표69】 기흉 및 신생아기흉 분류표	1298
【별표70】 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	1299
【별표71】 급여촬영 분류표	1300
【별표72】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1308
【별표73】 신김스치료 분류표	1309
【별표74】 인공와우이식수술 분류표	1310
【별표75】 양전자 단층촬영(PET) 검사(급여) 분류표	1310
【별표76】 치아관련질환 분류표	1311
【별표77】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분류표	1311
【별표78】 치아촬영(X-ray 및 파노라마) 분류표	1312
【별표79】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분류표	1313
【별표80】 발치치료 분류표	1314
【별표81-1】 장애의 대상	1315
【별표81-2】 심한장애의 대상	1316

【별표82】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 분류표	1316
【별표83】 임신및출산관련질환 분류표	1317
【별표84】 유산 분류표	1319
【별표85】 임신중독증(자간포함) 분류표	1320
【별표86】 임신관련특정혈액질환 분류표	1320
【별표87】 출산전 선별검사 결과에 따른 이상소견 분류표	1321
【별표88】 태반조기박리 분류표	1321
【별표89】 양수색전증 분류표	1322
【별표90】 임신성당뇨 분류표	1322
【별표91】 다운증후군 분류표	1323
【별표92】 산후우울증 분류표	1323
【별표93】 특정신체부위 분류표	1324
【별표94】 특정질병 분류표	1326
【별표95】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1327
【별표96】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 분류표	1327
【별표97-1】 4대혈관질환 분류표	1328
【별표97-2】 죽상경화증 분류표	1328
【별표98】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 분류표	1329
【별표99】 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 분류표	1330
【별표100】 1~5중수술 분류표Ⅳ	1331
【별표101-1】 28대특정질병 분류표	1337
【별표101-2】 39대특정질병 분류표	1339
【별표101-3】 31대특정질병 분류표	1343
【별표101-4】 16대특정질병 분류표	1347
【별표101-5】 다빈도4대질병Ⅱ 분류표	1350
【별표101-6】 24대특정질병 분류표	1351
【별표102】 1~8중 수술 및 시술 분류표	1353
【별표103】 1~8중 수술 및 시술 분류표Ⅱ	1374
【별표104】 심근병증(허혈성제외) 분류표	1395
【별표105】 주요심장염증질환 분류표	1395
【별표106】 특정순환계질환(1~5중) 분류표	1396
【별표107】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 분류표	1399
【별표108】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 분류표	1399
【별표109】 난청 분류표	1400
【별표110】 과잉치 분류표	1400
【별표111-1】 뇌심장질환 분류표	1401
【별표111-2】 급여 뇌심장질환 검사 분류표	1403
【별표111-3】 급여 뇌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조영술 분류표	1406
【별표112-1】 8대기관 양성신생물 분류표	1407
【별표112-2】 8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 수술(급여) 분류표	1408
【별표113】 갑상선기능항진증 분류표	1410
【별표114】 뇌전증 분류표	1410
【별표115】 특정귀어지럼증 분류표	1411
【별표116】 원형탈모증 분류표	1411
【별표117】 특정폐혈증 분류표	1412
【별표118】 급성신우신염 분류표	1412
【별표119】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선천성 포함) 분류표	1413
【별표120】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선천성 제외) 분류표	1413
【별표121】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 분류표	1414
【별표122】 특정4대질환 분류표	1415
【별표123-1】 카티(CAR-T) 보장 대상 암 분류표	1416
【별표123-2】 카티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분류표	1417
【별표124】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1417
【별표124-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	1418
【별표124-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수술	1419

【별표125】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1420
【별표125-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	1420
【별표125-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수술	1421
【별표125-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약제성분	1423
【별표126】 급어 창상봉합술 분류표	1424
【별표127】 급어 안면부 창상봉합술(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 분류표	1426
【별표128】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1428
【별표129】 급어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 분류표	1428
【별표130】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1429
【별표131-1】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분류표	1429
【별표131-2】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제외))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1430
【별표131-3】 특정소액암 분류표	1430
【별표131-4】 뇌·수막의 양성신생물 분류표	1431
【별표132】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1432
【별표133】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1451
【별표134-1】 외측상과염(테니스엘보) 분류표	1457
【별표134-2】 내측상과염(골프엘보) 분류표	1457
【별표134-3】 특정팔근육염증(테니스엘보,골프엘보제외) 분류표	1458
【별표135-1】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족저근막염) 분류표	1458
【별표135-2】 특정다리근육염증(족저근막염제외) 분류표	1459
【별표136】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 분류표	1460
【별표137】 골절철심제거술 분류표	1460
【별표138】 특정안면마비 분류표	1461
【별표139】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급여) 분류표	1461
【별표140】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분류표	1462
【별표141】 턱장애 분류표	1463
【별표142】 턱장애 약물분류표	1463
【별표143-1】 성조숙증Ⅱ 분류표	1464
【별표143-2】 성조숙증Ⅱ약제치료(급여) 분류표	1464
【별표144-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분류표	1465
【별표144-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466
【별표145-1】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1470
【별표145-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	1471
【별표146】 특정허혈성심질환 분류표	1473
【별표147】 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	1474
【별표148】 특정면역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분류표	1475
【별표149】 통합뇌질환 분류표	1476
【별표150】 통합심장질환 분류표	1477
【별표151】 시각기능검사(급여) 분류표	1478
【별표152】 청각 및 평형기능검사(급여) 분류표	1480
【별표153】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분류표	1482
【별표154】 전신마취 의료행위 분류표	1483
【별표155】 특정6대질환Ⅱ 분류표	1483
【별표156】 특정8대질환 분류표	1484
【별표157】 순환계질환(특정질환 및 2대질환제외) 분류표	1485
【별표158】 순환계질환(특정질환제외) 분류표	1487
【별표159】 특정급여치료Ⅰ 대상 수가코드 분류표	1489
【별표160】 특정급여치료Ⅱ 대상 수가코드 분류표	1492
【별표161】 특정순환계질환Ⅱ 분류표	1496
【별표162-1】 뇌졸중 혈전제거술(급여) 분류표	1498
【별표162-2】 특정허혈성심질환 혈전제거술(급여) 분류표	1498
【별표163】 폐렴 분류표	1499
【별표164】 백반증 분류표	1500
【별표165】 전이암 분류표	1500

보 통 약 관

※ 보통약관은 계약자가 이 보험을 가입시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는 약관을 말합니다.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 질병, 비용손해 등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수익자	회사에 보험금(신체손해 보장 및 비용손해보장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한합니다) 및 만기환급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장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한 경우는 포함합니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 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 ICD를 기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예시) 연단위 복리 계산법 * 연이율 10%로 100원을 3년동안 부리시 → [가입시] 100원(원금) → [1년후] 100원(원금) + 100원 × 10%(1년이자) = 총110원 → [2년후] 100원(원금) + 100원 × 10%(1년이자) + [100원(원금) + 100원 × 10%] × 10% = 총121원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이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보험업무」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노동절을 제외합니다. ※ 이와 연관된 법규는 【별표2】 기타관계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보험료	계약자가 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하며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장보험료	손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보장부분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경비를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적립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적립부분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경비를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적립부분 순보험료	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경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6. ‘갱신형’계약의 갱신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최초계약	‘갱신형’계약이 최초로 부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갱신계약	‘갱신형’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난 후 해당 계약이 갱신 된 경우를 말합니다.
갱신일	‘갱신형’계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후유장해(3~100%)보험금 :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가입금액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세부보장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가 될 자가 출생 전자녀(태아)인 경우 위 보장은 다음의 세부보장을 포함합니다.

보장	세부보장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보장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일반상해후유장해(3~100%)(태아)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예시 :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가입금액 100만원

○ 동일한 부위에 두개의 상해사고로 다음과 같이 진단을 받은 경우

- 하나의 상해사고로 30%후유장해 진단시
⇒ 30%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30만원)
- 또 다른 상해사고로 인해 동일한 부위에 60%후유장해 진단시
⇒ 60%후유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과 30%후유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차액 지급
(60만원 - 30만원 = 30만원)

- ⑦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진단 확정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31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31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공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화재손해 및 배상책임에 대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서류를 접수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별표3】 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그 의무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나 책임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제9조(중도인출)

<1종(해약환급금지급형) 가입자용>

- ① 회사는 보험계약일(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본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자가 출생 전자녀(태아)인 경우 출생

일)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보험년도마다 4회를 한도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보험년도

보험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26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2026년 8월 15일부터 2027년 8월 14일까지 1년입니다.

- ② 제1항의 중도인출금은 기본계약 해약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에 의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도인출금의 한도 예시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기본계약 해약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 총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80% = 80만원

→ 이미 신청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원리금 합계를 30만원으로 가정)

중도인출 가능액 = 80만원(총 중도인출 가능액) - 30만원 = 50만원

- ③ 계약자가 제1항의 중도인출금 신청에 따라 중도인출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기본계약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에서 해당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합니다.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이 보험의 보험료, 해약환급금 등의 산출에 대하여 수식으로 기재해 놓은 서류를 말합니다.

- ④ 중도인출시 기본계약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만기환급금 또는 해약환급금이 감소합니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2종(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3종(납입후 표준형환급률 동일지급형) 및 4종(계약전환형) 가입자용>

이 계약은 순수보장성보험으로 회사는 이 계약에 대하여 중도인출제도를 운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1종(해약환급금지급형) 가입자용>

- ① 이 상품의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보장)로 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www.heungkukfire.co.kr)의 “공시실”내 “상품공시/적용이율”에 공시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사업방법서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www.heungkukfire.co.kr)의 “공시실” 내 “상품공시”에서 공시합니다.

운용자산이익률

직전 1년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외부지표금리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통화안정증권 수익률,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 ③ 보험기간 중에 제1항의 공시이율(보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0.3%로 합니다.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보장)이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들어, 최저보증이율이 0.3%인 경우 공시이율(보장)이 0.1%로 낮아지더라도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보장)(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3%)로 적립됩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공시이율(보장)이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최저보증이율로 적립한 계약자적립액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2종(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3종(납입후 표준형환급률 동일지급형) 및 4종(계약전환형) 가입자용>

이 계약은 순수보장성보험으로 회사는 이 계약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1종(해약환급금지급형) 가입자용>

- ①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하고 계약자가 가입할 때 선택한 중도환급금 지급나이(피보험자의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나이가 도래하기 이전에 한하여 변경가능 합니다)가 되었을 때에 중도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제34조(보험료납입유예제도에 의한 보험료 대체납입)에 의해 납입유예 대체보험료가 있는 경우 및 이미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또한,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중도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③ 제2항의 공시이율(보장)이 보험기간 중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제10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로 합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중도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중도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중도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에 따릅니다.
- ⑥ 제1항의 중도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제1항의 중도환급금 지급시기 이후에 제9조(중도인출)의 중도인출은 신청할 수 없으며, 미지급된 중도환급금에 대하여는 차후 지급신청이 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2종(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3종(납입후 표준형환급률 동일지급형) 및 4종(계약전환형) 가입자용>

이 계약은 순수보장성보험으로 회사는 이 계약에 대하여 중도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

<1종(해약환급금지급형) 가입자용>

- ①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만기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보험료에서 적립부분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제1항의 만기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 기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보험계약대출

계약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하여 받는 대출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공시이율(보장)이 보험기간 중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제10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로 합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별표3】 참조)에 따릅니다.

<2종(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3종(납입후 표준형환급률 동일지급형) 및 4종(계약전환형) 가입자용>

이 계약은 순수보장성보험으로 회사는 이 계약에 대하여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3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이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보험업무」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계산법

* 3년동안 매년 100원의 금액을 일시에 받고자 할 때(평균공시이율10%)

→ 100원(현재 받을금액)

+ 100원(내년 지급예정 금액) ÷ (1 + 10%)(1년차 할인)

+ 100원(내년 지급예정 금액) ÷ (1 + 10%)(1년차 할인) ÷ (1 + 10%)(2년차 할인)

제14조(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보험수익자의 지정)

- ①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아래에서 정한 자로 합니다.
 1. 만기환급금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2.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3.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피보험자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때에는 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민법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되는 자를 말합니다.

제16조(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연대책임

두사람 이상이 각각 동일한 내용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 12. 31.>

【 제651조의 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 사례 >

보험계약 청약을 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8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 등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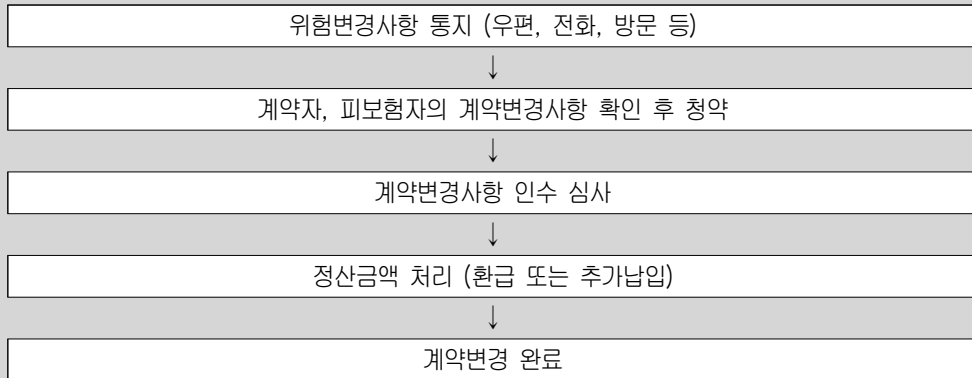
-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예)에 따른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일시납 또는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큰 기간(단, 잔여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의 분납 중 선택하여 정산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갱신형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분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 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 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보험요율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 등의 비율을 말하며, 보험료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 비용 등)을 기초로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준수하여 산출 됩니다.

-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8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갱신형 특별약관이 있는 경우 갱신형 보장의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

- 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갱신형 특별약관이 있는 경우 갱신형 보장의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41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8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⑧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보며,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20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1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계약자가 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료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장보험료는 손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보장부분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경비를 포함합니다)를 말하며, 적립보험료는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적립부분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경비를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 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⑥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특축)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⑦ 이 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용어의 정의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특별보험료를 추가로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제22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설명무의 중요사항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

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4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합니다. 보험료 할인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다만, 2종(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및 3종(납입후 표준형환급률 동일지급형)의 경우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변경,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보장의 추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설 명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사실을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변경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1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

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⑦ 제1항에 따라 계약의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의 변경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⑧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등을 감액 혹은 증액할 경우 최초 안내한 만기환급금 또는 해약환급금보다 적거나 많아질 수 있습니다.

설 명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26조(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4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단,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청약서류에 적힌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적힌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금 및 보험료 변경 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변경당시의 해약환급금을 정산합니다.

계약해당일

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계약일 : 2026년 4월 13일 → 계약해당일 : 매년 4월 13일

(단, 계약해당일 2월 29일이 없을 경우에는 2월 28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95년 10월 2일

예시1)

계약일 : 2026년 4월 13일

2026년 4월 13일
 - 1995년 10월 2일
 = 30년 6월 11일
 = 31세
 (6개월이상 끝수는 1년으로 계산)

예시2)

계약일 : 2026년 11월 13일

2026년 11월 13일
 - 1995년 10월 2일
 = 31년 1월 11일
 = 31세
 (6개월미만 끝수는 버림)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제28조(계약의 소멸시 계약자적립액의 청구)

계약의 소멸로 인하여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 ② 계약자가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④ 회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4종(계약전환형)의 보장개시일은 “전환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로 합니다.

제3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31조(보험료의 납입면제)

- ①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제32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32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단, 『신생아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3. 보험료 납입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4. 보험료 납입기간 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5.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6.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7. 보험료 납입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특별약관은 납입면제에서 제외됩니다.

- 「제2장.질병관련 특별약관 중 선천이상진단비 특별약관」
- 「제2장.질병관련 특별약관 중 특정선천이상진단비 특별약관」
- 「제2장.질병관련 특별약관 중 신생아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 「제2장.질병관련 특별약관 중 신생아난청진단비 특별약관」
- 「제2장.질병관련 특별약관 중 31주이내출생진단비 특별약관」
- 「제5장.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중 출산위험II 특별약관」
- 「제5장.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중 저체중아육아비용 특별약관」
-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 제6조(유산 또는 사산 등) 제1항에서 정한 특별약관
-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에서 정한 갱신형보장특약

- ③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가 될 자가 출생 전자녀(태아)인 경우 출생일 이전에 납입면제 사유 발생 시 출생일부터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하며, 출생 전까지의 태아보장 보험료는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후 계약(제4종)에서는 전환전 계약(제1종)에서의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 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환후 계약의 보험기간 중 전환전 계약에서 이미 납입면제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로 납입면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입면제를 새롭게 적용합니다.
- ⑤ 제1종(해약환급금지급형)의 경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 적립보험료의 납입을 중지합니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은 경우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3.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에서 정한 면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하지 않습니다.
 1. 「특정신체부위 분류표」(【별표93】참조)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부위(이하 “특정부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단,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특정질병 분류표」(【별표94】참조)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 “특정질병”이라 합니다)

제32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제31조(보험료 납입면제) 제1항 제1호의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형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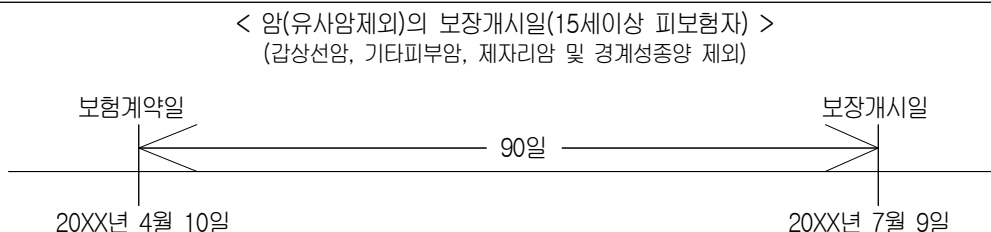
<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암보장개시일」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목을 따릅니다.

가.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나.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5.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9.계약전환 특별약관」에 의한 계약 전환시 제4호의 「암보장개시일」은 「전환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로 합니다.
 6. 제31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제31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7.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②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제31조(보험료 납입면제) 제1항 제2호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별표17】 「뇌혈관질환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에서 「뇌혈관질환」에 해당하는 1. 지주막하 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8. 기타 뇌혈관 질환,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10.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제1호의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용어설명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뇌혈관조영술]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희게 촬영되는 물질(조영제)을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γ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여하여 그 분포상태의 단면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촬영법

[양전자 방출 단층술(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뇌척수액 검사]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③ 「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제31조(보험료 납입면제) 제1항 제3호의 「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별표19】 「허혈성심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제1호의 「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허혈성심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④ 「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제31조(보험료 납입면제) 제1항 제4호의 「양성뇌종양」이라 함은 생명에 치명적이며 암이 아닌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 양성뇌종양을 말하며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두개내(머리내)의 종양을 포함합니다.
2. 제1호의 양성뇌종양은 신경외과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함의 원인이(수술로 인해)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3.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제외됩니다.
4. 「양성뇌종양」의 진단확정은 신경과 의사 또는 신경외과 의사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⑤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제31조(보험료 납입면제) 제1항 제5호의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이라 함은 '영구적인 재생불량성 빈혈'로서 피보험자가 근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혈, 면역억제제, 골수 촉진제와 같은 표준적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골수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질병 상태를 말합니다.
2. 제1호의 '영구적인 재생불량성 빈혈'이라 함은 만성 골수부전상태로써 호중구 수가 200/mm³ 미만이거나, 또는 골수세포충실성(bone marrow cellularity)이 25%이하 이고 동시에 다음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 ㄱ. 호중구 수가 500/mm³ 미만
 - ㄴ. 혈소판 수가 20,000/mm³ 미만
 - ㄷ. 망상적혈구 수가 20,000/mm³ 미만
3. 단, 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재생불량성 빈혈은 제외 됩니다.
4.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혈액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⑥ 제31조(보험료 납입면제)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따릅니다.

1. 제31조(보험료 납입면제) 제1항 제6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2. 제1호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료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가.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 나.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3.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4.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5.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결정된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6. 이미 이 계약에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납입면제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5호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지급률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에서 이를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⑦ 제31조(보험료 납입면제)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질병후유장해(50%이상)으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따릅니다.

1. 제31조(보험료 납입면제) 제1항 제7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2. 제1호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료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가.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
 - 나.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3.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4.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5.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결정된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6. 이미 이 계약에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납입면제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5호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지급률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지급률에서 이를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 ⑧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은 경우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1조(보험료 납입면제)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제33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1종(해약환급금지급형) 가입자용>

- ① 계약자는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2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내기 곤란한 경우에 가입한 보험 상품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처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로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41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항에 따라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최초 도래하는 납입일 15일 이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2종(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3종(납입후 표준형환급률 동일지급형) 및 4종(계약전환형) 가입자용>

이 계약은 순수보장성보험으로 회사는 이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제도를 운용하지 않습니다.

제34조(보험료납입유예제도에 의한 보험료 대체납입)

<1종(해약환급금지급형) 가입자용>

-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 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② 납입유예 기간은 해당 납입기일에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에서 제5항에서 정한 납입유예 대체보험료 전액의 대체납입이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하며, 최대 1년 이내로 합니다. 단, 납입유예 기간 중 납입유예 대체보험료 전액의 대체납입이 불가능할 경우 그때부터 납입유예 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납입유예 기간 중 최종 납입유예 대체보험료 대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안내하고 계약자는 최종 납입유예 대체보험료 대체 후 도래하는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납입유예 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해당납입기일에 납입유예 대체보험료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체납입합니다.
- ⑤ “납입유예 대체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제1항에 의한 납입유예를 신청한 경우 납입유예기간 동안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에서 대체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단, 납입유예 기간의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 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1. 위험보험료 : 보장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2. 부가보험료 : 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3.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 부가보험료의 일부로서 보험료의 수급에 필요한 경비를 말합니다.

<2종(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3종(납입후 표준형환급률 동일지급형) 및 4종(계약전환형) 가입자용>

이 계약은 순수보장성보험으로 회사는 이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납입유예제도를 운용하지 않습니다.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재촉하는 일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 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 ④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이라도 계약의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⑤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2.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안내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것
 3. 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전화 (음성녹음) 방법으로 전환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실시할 것
 4.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안내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5.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41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장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7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3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4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24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1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하기 전에 계약자가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출생예정일” 이후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 드립니다.(다만, 피보험자가 부양자인 “제6장.부양자관련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특약은 제외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1. 의사소견서(해지일 현재 임신주수와 태아가 아직 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 2. 기타 제1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회사가 인정한 서류
- ⑤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3항의 의사소견서 등을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제38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범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41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존속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권리는 소멸됩니다.

제39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41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40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41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1조(해약환급금)

< 상품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 100세 만기 20년납 5세 남자 상해1급, 단위: 원)									
(가입당보: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1,000만원, 암진단비(유사암제외) 1,000만원, 유사암진단비 200만원, 뇌졸중진단비 1,0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1,000만원)									
구 분	1종 (해약환급금 지급형)		2종 (납입후 50%해약환급금 지급형)		3종 (납입후 표준환급률지급형)		표준형* (3종 비교 안내용)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보험료	12,334		9,578		10,296		12,274		
경과 기간	1	0	0.0%	0	0.0%	0	0.0%	0	0.0%
	3	215,341	48.5%	0	0.0%	0	0.0%	221,227	50.1%
	5	499,854	67.5%	0	0.0%	0	0.0%	502,796	68.3%
	7	798,438	77.1%	0	0.0%	0	0.0%	798,438	77.4%
	10	1,194,144	80.7%	0	0.0%	0	0.0%	1,194,144	81.1%
	19	2,605,552	92.7%	0	0.0%	0	0.0%	2,605,552	93.1%
	20	2,785,534	94.1%	1,392,784	60.6%	2,330,736	94.3%	2,785,534	94.6%
	40	4,691,020	158.5%	2,345,522	102.0%	3,919,072	158.6%	4,691,020	159.2%
	60	6,491,736	219.3%	3,245,880	141.2%	5,416,940	219.2%	6,491,736	220.4%
	95	0	0.0%	0	0.0%	0	0.0%	0	0.0%

* 「표준형」은 3종(납입후 표준형환급률 동일지급형)의 비교 안내를 위한 상품으로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위 예시표의 보험료, 환급금 및 환급률 수준을 비교하여 1종, 2종 또는 3종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종(해약환급금지급형) 가입자용>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립부 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보장)이 보험기간중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제10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로 합니다.
- ③ 제1항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보험 계약대출금과 이자, 기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 ④ 제38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⑤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별표3】 참조)에 따릅니다.
- ⑥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2종(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가입자용>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단, 보험료 납 입기간 중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별표3】 참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 ④ 제38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2종(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가입자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2종(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1종(해약환급금지급형) 대비 낮은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 납입기간 후
없음	1종(해약환급금지급형) 해약환급금의 50%

- 2종(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1종(해약환급금지급형)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회사는 2종(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가입시 1종(해약환급금지급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안내하여 드립니다.

<3종(납입후 표준형환급률 동일지급형) 가입자용>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 내용의 상품(이하 「표준형」이라 함)대비 적습니다.
- ② 해지시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가 있는 경우, 해약환급금에서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의 「표준형」은 비교 안내를 위한 상품으로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 ④ 제38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⑤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참조)에 따릅니다.
- ⑥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3종(납입후 표준형환급률 동일지급형) 가입자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후 해지시 「표준형」의 해약환급률에 이 상품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주1)}를 곱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표준형」의 환급률^{주2)}이란 「표준형」의 해약환급금을 「표준형」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주3)}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주1) 이 상품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 감액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누적 보험료”를 말합니다.

주2) 「표준형」의 환급률 =
$$\frac{\text{「표준형」의 해약환급금}}{\text{「표준형」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주3) 「표준형」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 감액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표준환급금 지급형」 누적 보험료”를 말합니다.

[예시] 납입후 표준형환급률 동일지급형 VS 표준형 환급률 비교 예시

(기준 : 100세 만기 20년납 5세 남자 상해1급, 단위: 원)
 (가입담보: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1,000만원, 암진단비(유사암제외) 1,000만원,
 유사암진단비 200만원, 뇌졸중진단비 1,0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1,000만원)

구 분		3종 (납입후 표준형환급률 동일지급형)		표준형* (3종 비교 안내용)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보험료		10,938		13,222	
경과 기간	1	0	0%	0	0%
	3	0	0%	212,759	45%
	5	0	0%	496,295	63%
	7	0	0%	793,832	71%
	10	0	0%	1,187,288	75%
	19	0	0%	2,590,426	86%
	20	2,288,648	87%	2,769,380	87%
	40	3,807,426	145%	4,611,466	145%
	60	5,260,484	200%	6,375,806	201%
	95	0	0%	0	0%

* 「표준형」은 3종(납입후 표준형환급률 동일지급형)의 비교 안내를 위한 상품으로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4종(계약전환형) 가입자용>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별표3】 참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 ④ 제38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42조(보험계약대출)

<1종(해약환급금지급형) 가입자용>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종(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3종(납입후 표준형환급률 동일지급형) 및 4종(계약전환형) 가입자용>

이 계약은 순수보장성보험으로 회사는 이 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을 운용하지 않습니다.

제43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44조(분쟁의 조정)

-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4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6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 청구권 또는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3년간 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지급사유가 2026년 4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9년 4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등을 지급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제47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민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2조 제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48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할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제4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이라면 그 같은 일을 하지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것을 말한다.

제50조(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별표2】 기타관계법령을 참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51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5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 별 약 관

※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선택한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해당 특별약관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 종별로 부가 가능한 특별약관은 「가입자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손해관련 특별약관

1. 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 특별약관

1-1. 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 특별약관

1-2. 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보험금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조항은 계약전환 후 계약(4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③ 회사는 계약전환 후 계약(4종)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일반상해 후유장해(50%이상)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 특별약관

2-1.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 특별약관

2-2.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20%~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 보험금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 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예시 :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 가입금액 100만원

○ 동일한 부위에 두개의 상해사고로 다음과 같이 진단을 받은 경우

- 하나의 상해사고로 30%후유장해 진단시
⇒ 30%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30만원)
- 또 다른 상해사고로 인해 동일한 부위에 60%후유장해 진단시
⇒ 60%후유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과 30%후유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차액 지급
(60만원 - 30만원 = 30만원)

- ⑦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진단 확정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후유장해(3~100%)보험금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대중교통이용중교통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 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 ②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예시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3~100%) 가입금액 100만원

○ 동일한 부위에 두개의 상해사고로 다음과 같이 진단을 받은 경우

- 하나의 상해사고로 30%후유장해 진단시
⇒ 30%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30만원)
- 또 다른 상해사고로 인해 동일한 부위에 60%후유장해 진단시
⇒ 60%후유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과 30%후유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차액 지급
(60만원 - 30만원 = 30만원)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진단 확정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5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특별약관

4-1.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특별약관

4-2.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별표4】 참조)에 해당하는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를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1~5급)(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1~5급)(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II」 (【별표5-1】 참조)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고 「골절 등급분류기준표」 (【별표5-2】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골절 등급별 보험가입금액을 각각 연간1회 한하여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1~5급	각 등급별 보험가입금액 (각각 연간 1회한)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장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1급)(연간1회한) 보장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2급)(연간1회한) 보장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3급)(연간1회한) 보장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4급)(연간1회한) 보장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5급)(연간1회한) 보장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을 기준으로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1~5급)(연간1회한)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3항에서 정한 「연간」에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등급이 있는 경우, 그 보험금이 지급된 등급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을 기준으로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1~5급)(연간1회한)를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1~5급)(연간1회한)의 진단일자는 사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1~5급)(연간1회한) 가입금액

1급	2급	3급	4급	5급
10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사례1)

○ 하나의 상해사고로 다음과 같이 진단 후 수술을 받은 경우

: S72.0, S72.4

진단	진단명	골절등급
S72.0	대퇴골 경부의 골절	2
S72.4	대퇴골 하단의 골절	3

⇒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2급 보험금 지급(40만원)

(사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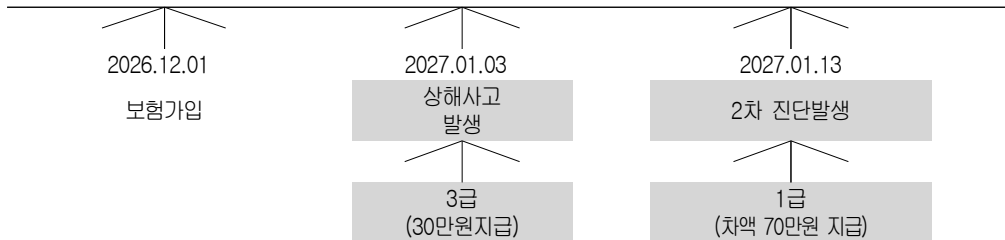
○ 하나의 상해사고로 다음과 같이 진단을 받은 경우

· 하나의 상해사고로 S02.2(비골의 골절) 진단시

⇒ 3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30만원 지급)

· 같은 상해사고로 인해 2차 진단 S06.4(경막외출혈) 발생시

⇒ 1급에 해당하는 보험금과 3급 보험금의 차액 지급 (100만원 - 30만원 = 70만원)



(사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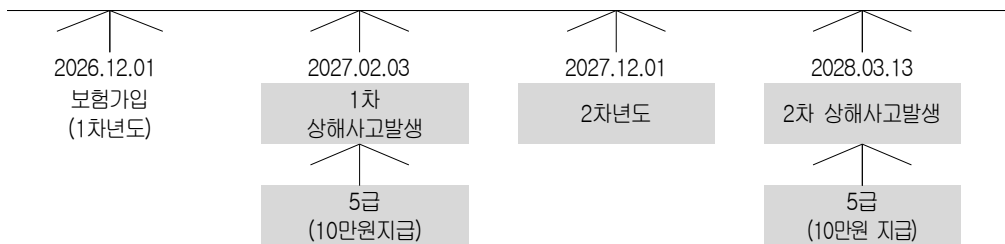
○ 다른 해 두 개 이상의 상해사고 발생시(등급별 각각 연간1회한)

· 첫 해 상해사고로 S62.5(엄지의 골절) 진단시

⇒ 5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10만원)

· 다음 해 상해사고로 S92.5(기타 발가락의 골절) 진단시

⇒ 5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10만원)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연간1회한) 특별약관

6-1.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연간1회한) 특별약관

6-2.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연간1회한)(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골절 분류표」 (【별표6】 참조)에 해당하는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연간1회한)를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단,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출생일을 계약일로하여 재계산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

7-1.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

7-2. 5대골절진단비(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5대골절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 분류표」 (【별표7】 참조)에 해당하는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5대골절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5대골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8.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화상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 분류표」(【별표8】 참조)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화상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화상」의 정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화상이라 함은 「화상 분류표」(【별표8】 참조)에 정한 화상(열상 포함)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9-1.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9-2.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0일한도)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를 계속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10-1.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10-2.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급 금액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0일한도)

제2조(「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를 계속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하 “수술동반입원”이라 합니다)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나.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1항에서 정한 수술을 받는 경우
다. 상기 가목 및 나목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20일한도)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꽃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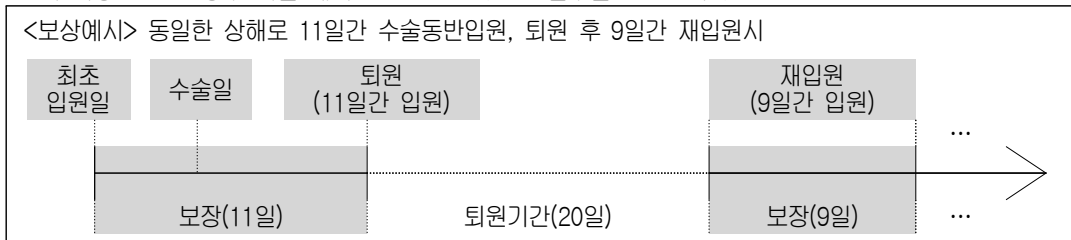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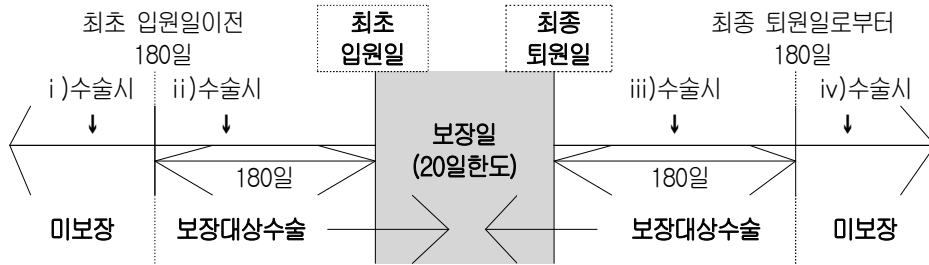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나목의 수술은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수술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 지급일수는 1회 “수술동반입원”당 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는 “수술” 이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수술동반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수술동반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를 계속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의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할 때에는 회사는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최초 입원일 이전 180일부터 최초 입원일 이내” 또는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기 이전” 수술이며,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를 제1항 내지 5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 보상 기준>



- i) 최초 입원일 이전 180일 전 수술시 미보장
- ii) 최초 입원일 이전 180일부터 최초 입원일 이내 수술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반상해 수술동반입원비를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1항 내지 5항에 따라 보장
- iii)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일 이전 수술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를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1항 내지 5항에 따라 보장
- iv) 최종입원 퇴원일의 180일 경과일 이후 수술시 미보장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동반입원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 상해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해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 우연, 외래의 상해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함)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상해수술비	1사고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3.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골절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 분류표」(【별표6】참조)에 해당하는 골절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골절수술비	1사고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골절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4. 골절수술비(1~5급)(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골절수술비(1~5급)(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Ⅲ」 (【별표9-1】 참조)에 해당하는 골절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골절 등급분류기준표Ⅱ」 (【별표9-2】 참조)에 해당하는 골절 등급별로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1~5급	각 등급별 보험가입금액 (각각 연간 1회한)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장
골절수술비(1급)(연간1회한) 보장 골절수술비(2급)(연간1회한) 보장 골절수술비(3급)(연간1회한) 보장 골절수술비(4급)(연간1회한) 보장 골절수술비(5급)(연간1회한) 보장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골절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을 기준으로 골절수술비(1~5급)(연간1회한)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3항에서 정한 「연간」에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등급이 있는 경우, 그 보험금이 지급된 등급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을 기준으로 등급별 골절수술비(1~5급)(연간1회한)를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골절수술비(1~5급)(연간1회한)의 진단일자는 사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 골절수술비(1~5급)(연간1회한) 가입금액

1급	2급	3급	4급	5급
10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사례1)

○ 하나의 상해사고로 다음과 같이 진단 후 수술을 받은 경우

: S72.0, S72.4

진단	진단명	골절등급
S72.0	대퇴골 경부의 골절	2
S72.4	대퇴골 하단의 골절	3

⇒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2급 보험금 지급(40만원)

(사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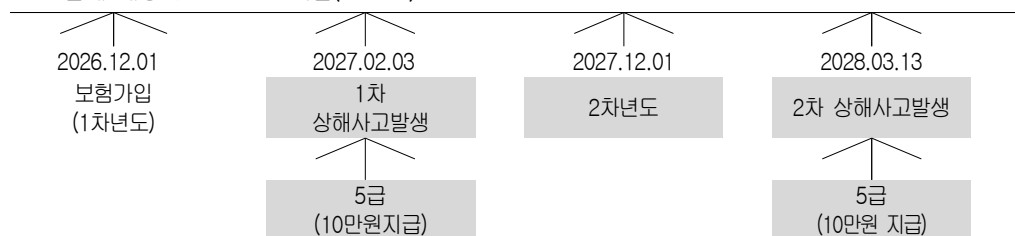
○ 다른 해 두 개 이상의 상해사고 발생시(등급별 각각 연간1회한)

· 첫 해 상해사고로 S62.5(엄지의 골절) 진단 후 수술을 받은 경우

⇒ 5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10만원)

· 다음 해 상해사고로 S92.5(기타 발가락의 골절) 진단 후 수술을 받은 경우

⇒ 5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10만원)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5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5. 화상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화상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 분류표」(【별표8】 참조)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화상수술비	1사고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화상」의 정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화상이라 함은 「화상 분류표」(【별표8】 참조)에 정한 화상(열상 포함)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리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화상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6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6. 5대골절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5대골절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 분류표」 (【별표7】 참조)에 해당하는 골절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5대골절수술비	1사고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5대골절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5대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7.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안면부	상지・하지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수술 1cm당 14만원	수술 1cm당 7만원(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제2조(용어의 정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안면부, 상지, 하지란 다음을 말합니다.

1.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2.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 부분을 말합니다.
3. 하지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꽃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성형수술은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시점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상해흉터복원수술비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 ③ 「상지」 또는 「하지」에 대하여는 3cm 이상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길이축장이 불가한 식피술(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cm는 최장직경으로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8.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1사고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손상」이라 함은 두부(頭部)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에 「중대한특정상해 분류표」(【별표10】참조)에 해당하는 기질적 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내장손상」이라 함은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심장(心腸), 폐(肺), 위(胃), 장(腸), 간장(肝臟), 췌장(膵臟), 비장(脾臟), 신장(腎臟), 방광(膀胱))의 기관에 「중대한특정상해 분류표」(【별표10】참조)에 해당하는 기질적 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개두(開頭)수술」이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개흉(開胸)수술」이란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하며,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갈비뼈), 흉골(복장뼈)의 절제술을 포함합니다.
- ⑤ 이 특별약관에서 「개복(開腹)수술」이란 복벽을 절개하여 복부를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하며, 개복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요도적 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료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중대한특정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중대한특정상해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9. 일상생활폭력상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상생활폭력상해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일상생활 중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함으로써 상해를 입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관할경찰서의 폭력사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일상생활폭력상해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친족에 의한 사고
 2. 피보험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을 받는 단체의 가입원으로서 그 단체의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제3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 중대한화상및부식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중대한화상및부식치료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제2조(「중대한화상및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대한화상및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중대한화상및부식치료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중대한화상및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대한화상및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이라 함은 「9의 법칙(The Rule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 「9의 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표면적 차트」 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신체 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정합니다.
- ② 「중대한화상및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및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대한화상및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대한화상및부식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조항은 계약전환 후 계약(4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계약전환 후 계약(4종)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대한화상및부식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1. 상해1~5종수술비Ⅳ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해1~5종수술비Ⅳ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 분류표Ⅲ」(【별표11】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수술종류	지 급 금 액	예 시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1종	보험가입금액	10만원
2종	보험가입금액의 2.5배 지급	25만원
3종	보험가입금액의 5배 지급	50만원
4종	보험가입금액의 25배 지급	250만원
5종	보험가입금액의 50배 지급	500만원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

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III」에서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1~5종수술 분류표III」 (【별표11】 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에서 이미 지급한 수술비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함은 같은 수술실에서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체간골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신체부위로 봅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1~5중수술비IV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 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2. 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22-1. 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22-2. 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0일한도)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하며,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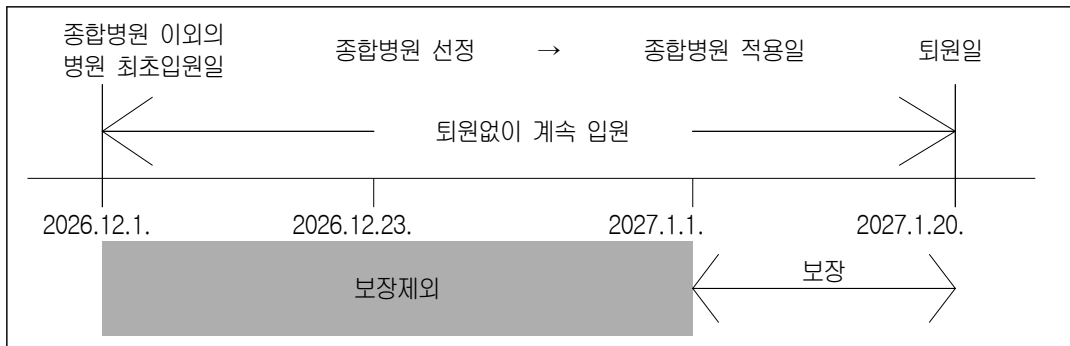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는 것
 2. 100 병상 이상 300 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 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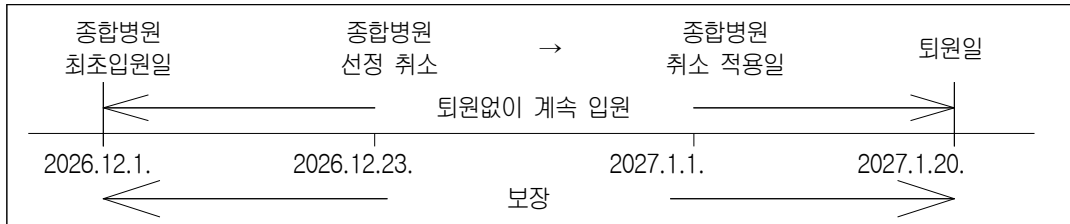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는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를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④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를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해당 「종합병원」 퇴원일까지 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를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를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을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3.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23-1.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23-2.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20일)(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2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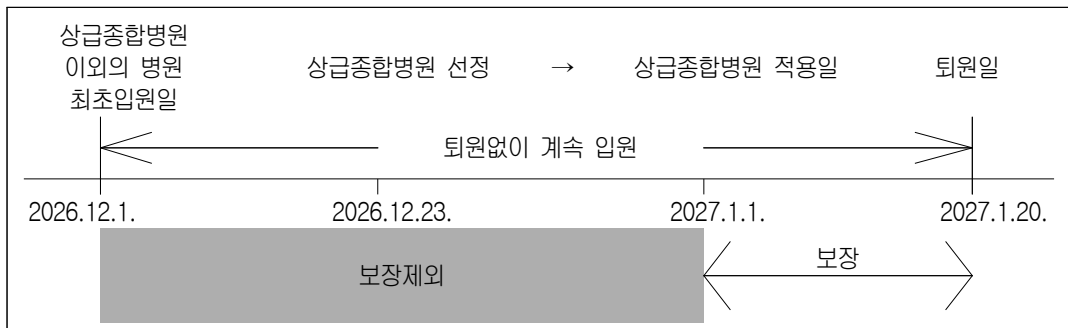
구 분	지 급 금 액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 (1일~12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20일한도)

제2조(용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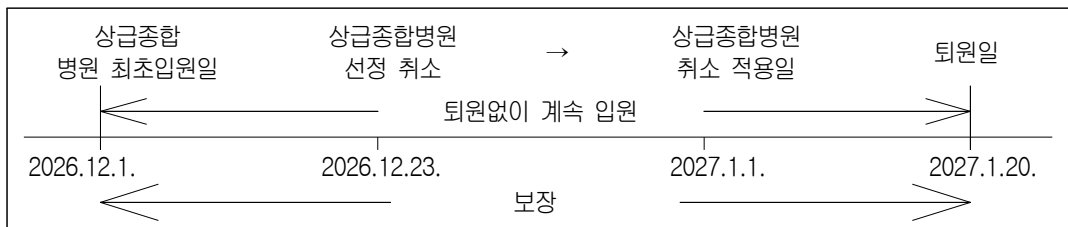
- ①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2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20일)를 계속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20일)를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해당 상급종합병원 퇴원일까지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20일)를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20일)를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20일)를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2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환금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4. 폭력피해(사망제외)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폭력피해(사망제외)보장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일상생활 중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하는 범죄에 의하여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폭력피해(사망제외)보장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범죄」라 함은 아래에서 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1. 형법 제25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2. 형법 제38장에서 정하는 강도죄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 등의 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의 상해와 폭행 및 제3호의 폭력 등으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처법」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2.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4.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7.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제4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 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5. 일반상해입원비(1일-210일) 특별약관

25-1. 일반상해입원비(1일-210일) 특별약관

25-2. 일반상해입원비(1일-210일)(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입원비(1일-21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일반상해입원비(1일-21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210일한도)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일반상해입원비(1일-21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21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일반상해입원비(1일-210일)를 계속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일반상해입원비(1일-21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6.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특별약관

26-1.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특별약관

26-2.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보험금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될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애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애에 대한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애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애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일반상해후유장애(80%이상)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조항은 계약전환 후 계약(4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계약전환 후 계약(4종)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일반상해후유장애(80%이상)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7.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선천기형포함)(1일-20일) 특별약관

27-1.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선천기형포함)(1일-20일) 특별약관

27-2.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선천기형포함)(1일-20일)(태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선천기형포함)(1일-2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로 인해 아래 각 목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이하 “수술동반입원”이라 합니다)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 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나.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1항에서 정한 수술을 받는 경우
 - 다. 상기 가목 및 나목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선천기형포함) (1일-2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20일한도)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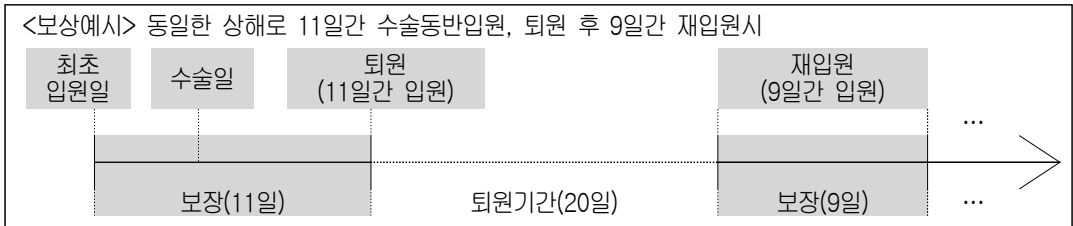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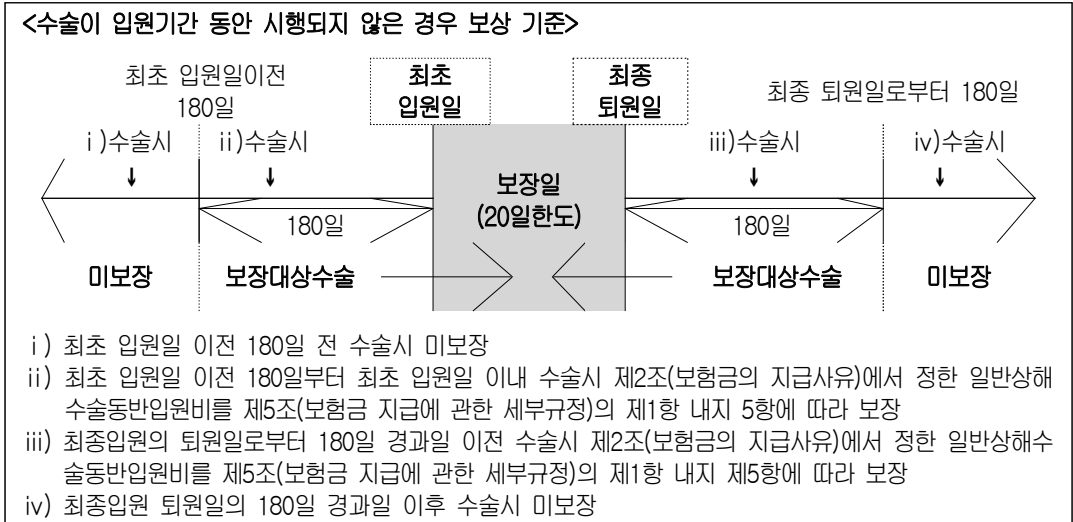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나목의 수술은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수술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 지급일수는 1회 “수술동반입원”당 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는 “수술” 이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수술동반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수술동반입원”에 대하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일반상해 수술동반입원비를 계속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의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할 때에는 회사는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최초 입원일 이전 180일부터 최초 입원일 이내” 또는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기 이전” 수술이며,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를 제1항 내지 5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동반입원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8. 상해수술비(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28-1. 상해수술비(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28-2. 상해수술비(선천기형포함)(태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해수술비(선천기형포함)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 우연, 외래의 상해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상해수술비(선천기형포함)	1사고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9. 골절수술비(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29-1. 골절수술비(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29-2. 골절수술비(선천기형포함)(태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골절수술비(선천기형포함)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 분류표」(【별표6】 참조)에 해당하는 골절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골절수술비(선천기형포함)	1사고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골절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0. 5대골절수술비(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30-1. 5대골절수술비(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30-2. 5대골절수술비(선천기형포함)(태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5대골절수술비(선천기형포함)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 분류표」(【별표7】 참조)에 해당하는 골절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5대골절수술비(선천기형포함)	1사고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5대골절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5대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1. 상해1~5종수술비Ⅳ(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31-1. 상해1~5종수술비Ⅳ(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31-2. 상해1~5종수술비Ⅳ(선천기형포함)(태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해1~5종수술비Ⅳ(선천기형포함)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 분류표Ⅲ」(【별표11】 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수술종류	지 급 금 액	예 시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1종	보험가입금액	10만원
2종	보험가입금액의 2.5배 지급	25만원
3종	보험가입금액의 5배 지급	50만원
4종	보험가입금액의 25배 지급	250만원
5종	보험가입금액의 50배 지급	500만원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Ⅲ」에서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꽃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1~5종수술 분류표III」 (【별표11】 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에서 이미 지급한 수술비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함은 같은 수술실에서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체간골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신체부위로 봅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1~5종수술비IV(선천기형포함)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

- 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2. 성장판손상골절진단비 특별약관

32-1. 성장판손상골절진단비 특별약관

32-2. 성장판손상골절진단비(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성장판손상골절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제2조(「성장판부위골절」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성장판부위골절」로 진단확정 되고, 동일부위에 「성장판 손상」에 대한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성장판손상골절진단비	1사고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성장판부위골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성장판부위골절」이라 함은 「성장판부위골절 분류표」(【별표12】참조)에 해당하는 상해를 말합니다.
- ② 「성장판 손상」의 진단확정은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X-ray, CT, MRI 등 영상검사결과를 기초로 내려져야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성장판부위골절상태가 발생하고 성장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성장판손상골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3. 신화상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신화상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신화상분류표」(【별표13-1】 참조)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신화상 등급분류기준표」(【별표13-2】 참조)에 해당하는 화상 등급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특별약관 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화상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지급금액	100만원	50만원	20만원	10만원	5만원

제2조(「화상」의 정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화상이라 함은 「신화상 분류표」(【별표13-1】 참조)에 정한 화상(열상 포함)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화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화상을 기준으로 신화상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신화상진단비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신화상진단비에서 이미 지급한 신화상진단비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4. 신화상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신화상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신화상분류표」 (【별표13-1】 참조)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신화상 등급분류기준표」 (【별표13-2】 참조)에 해당하는 화상 등급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특별약관 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화상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지급금액	100만원	50만원	20만원	10만원	5만원

제2조(「화상」의 정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화상이라 함은 「신화상 분류표」 (【별표13-1】 참조)에 정한 화상(열상 포함)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꽃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화상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화상을 기준으로 신화상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신화상수술비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신화상수술비에서 이미 지급한 신화상수술비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6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5. 일반상해입원비(1일-20일) 특별약관

35-1. 일반상해입원비(1일-20일) 특별약관

35-2. 일반상해입원비(1일-20일)(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입원비(1일-2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일반상해입원비(1일-2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20일한도)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일반상해입원비(1일-2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일반상해입원비(1일-20일)를 계속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일반상해입원비(1일-2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6. 아나필락시스진단비(연간1회한)(갱신형_1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아나필락시스진단비(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이하 「아나필락시스」라 합니다)로 진단 확정된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아나필락시스진단비(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② 제1항의 「아나필락시스」는 제2조(「아나필락시스」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아나필락시스쇼크를 말합니다.

제2조(「아나필락시스」의 정의 및 진단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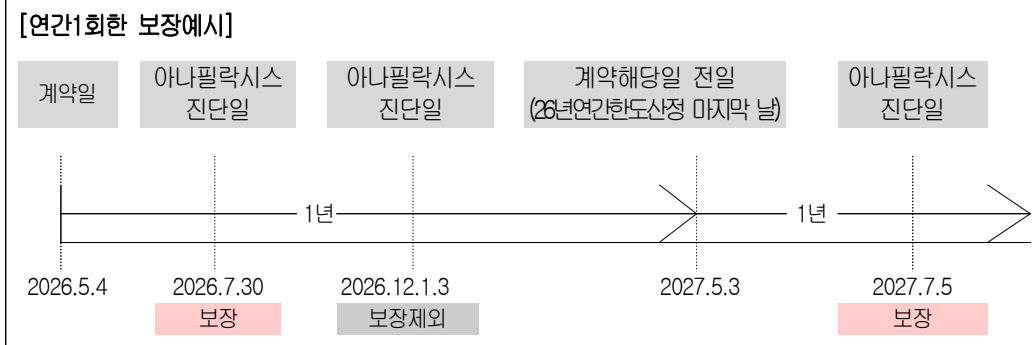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아나필락시스」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나필락시스 분류표」(【별표14】참조)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
- ② 「아나필락시스」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임상적 특징 또는 혈액, 항체, 항원검사, 유발검사 및 피부시험 등을 기초로 내려져야 합니다.

아나필락시스

항원-IgE항체 면역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알레르기 반응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상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제5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행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아나필락시스쇼크 진단확인서, 아나필락시스쇼크 진료기록부 사본, 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7. 상해1~5종수술비(1사고당)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상해1~5종수술비(1사고당)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 분류표Ⅲ」(【별표11】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수술종류	지 급 금 액	예 시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1종	보험가입금액	10만원
2종	보험가입금액의 2.5배 지급	25만원
3종	보험가입금액의 5배 지급	50만원
4종	보험가입금액의 25배 지급	250만원
5종	보험가입금액의 50배 지급	500만원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Ⅲ」에서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흡인(吸引)
 - 천자(穿刺) 등의 조치
 -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 미용성형 목적 수술
 -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1~5종수술 분류표III」 (【별표11】 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하나의 상해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1~5종수술비(1사고당)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에서 이미 지급한 수술비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1~5종수술비(1사고당)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8. 상해1~5종수술비(1사고당)(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38-1. 상해1~5종수술비(1사고당)(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38-2. 상해1~5종수술비(1사고당)(선천기형포함)(태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해1~5종수술비(1사고당)(선천기형포함)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 분류표Ⅲ」(【별표11】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수술종류	지 급 금 액	예 시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1종	보험가입금액	10만원
2종	보험가입금액의 2.5배 지급	25만원
3종	보험가입금액의 5배 지급	50만원
4종	보험가입금액의 25배 지급	250만원
5종	보험가입금액의 50배 지급	500만원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Ⅲ」에서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1~5종수술 분류표III」 (【별표11】 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하나의 상해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1~5종수술비(1사고당)(선천기형포함)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에서 이미 지급한 수술비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1~5종수술비(1사고당)(선천기형포함)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 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윤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9. 상해1~8종수술비(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해1~8종수술비(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 (【별표102】 참조)에서 정한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 및 시술코드」 당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1회의 입원당 1회의 「수술 및 시술」 또는 통원 1일당 1회의 「수술 및 시술」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상해1~8종수술비(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 장
상해1~8종수술비(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1종) 보장
상해1~8종수술비(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2종) 보장
상해1~8종수술비(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3종) 보장
상해1~8종수술비(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4종) 보장
상해1~8종수술비(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5종) 보장
상해1~8종수술비(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6종) 보장
상해1~8종수술비(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7종) 보장
상해1~8종수술비(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8종) 보장

제2조(「수술 및 시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 및 시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하며, 한의사는 제외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 (【별표102】 참조)에서 정한 수술 및 시술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 및 시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 및 시술코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처치 및 수술료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하고,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 분류체계에 따라 부여된 「ADRG(Adjacent DRG)」 중 회사가 정한 코드를 말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분류체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발·관리하는 한국형 입원환자분류체계로서, 진단과 시술명, 연령 등에 따라 입원환자를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은 KDRG 버전 4.4(2021.1.1 시행)의 ADRG 분류체계를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ADRG(Adjacent DRG)

환자의 주진단 범주(Major Diagnostic Category, MDC)와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외과계 그룹”과 “내과계 그룹”으로 분류한 후 의료행위^{주1)}와 진단명^{주2)}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주1) 의료행위 : 의료행위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말합니다.

주2) 진단명 : 진단명이란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분류번호를 말합니다.

주진단 범주(Major Diagnostic Category, MDC)

신체부위나 질병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질병군의 대분류를 말합니다.

수술 및 시술코드 확인 예시

- 수술 및 시술코드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biz.hira.or.kr>)의 모니터링 > 환자분류체계 > 입원환자분류체계 > 환자분류조회(또는 자료실 內 최신 환자분류프로그램)
- 확인 예시
 - 진단코드 입력: C20(직장의 악성신생물)
 - 수가코드 입력: Q2981(직장종양절제술(경향문접근))
 - 수술 및 시술코드 확인: G04100(경향문 및 경천골 접근 직장절제술(악성종양의 경우))
 - 별표확인 : G041(7중)

- ④ 제3항의 「수술 및 시술코드」에서 향후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 개정으로 동일한 수술 및 시술에 대해 「수술 및 시술코드」가 변경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의 체결시점에서 정한 「수술 및 시술코드」를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ADRG」가 신규 추가되는 경우 회사는 「1~8중 수술 및 시술 분류표」(【별표102】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수술 및 시술코드」를 결정합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수술 및 시술 받은 시점에서 부여된 의료행위, 진단명 및 주진단범주(MDC) 등을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의 “KDRG”기준에 적용합니다.
- 신의료수술 도입 등의 이유로 급여항목이 신규 추가되고 피보험자가 그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 회사는 주진단범주(MDC)와 의료행위를 확인한 후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에 정한 수술 및 시술코드를 기준으로 수술비(시술 포함)를 지급합니다.

【예시】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에 간이식에 해당하는 수술 및 시술코드는 A010(KDRG 버전4.4)이었으나, 피보험자가 간이식수술을 받은 시점의 수술 및 시술코드가 A080(KDRG 버전5.0)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A010(KDRG 버전4.4)에 해당하는 수술비(시술 포함)를 지급합니다.

- ⑤ 제3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에 급여항목으로 분류된 수술 및 시술이 향후 비급여항목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수술 및 시술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⑥ 제1항의 수술 및 시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호, 2021.1.22.)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 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2장(검사료) 및 제3장(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서 정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방사선 치료 대상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제3장(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의 사이버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감마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선형가속기(LINAC) 정위적 방사선 치료, 양성자치료는 수술 및 시술에 포함하여 보장합니다.

내 용	수가코드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1회당]-선형가속기이용	HD111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1회로 치료종결]-선형가속기이용	HD112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HD113
뇌정위적방사선수술-사이버나이프	HD114
뇌정위적방사선수술-선형가속기	HD115
양성자치료[1회당]	HD121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1회당]-사이버나이프이용	HD211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1회로 치료종결]-사이버나이프이용	HD212

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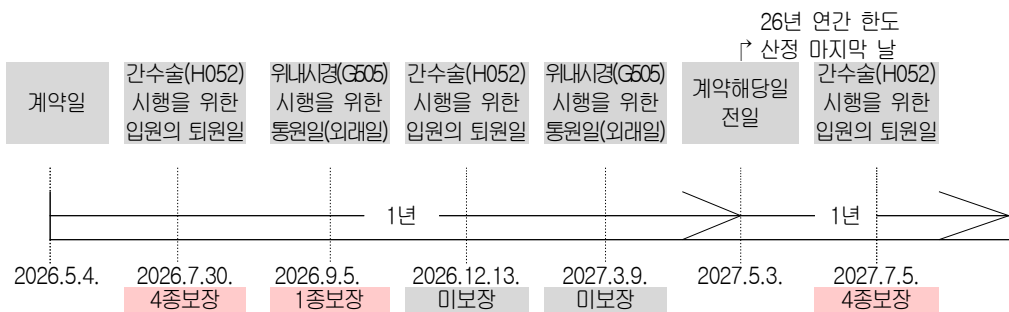
- ② 피보험자가 1회의 입원 또는 1회의 통원 중에 2가지 이상의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 퇴원일 또는 통원일을 기준으로 진단서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분류체계 등을 통해 확인되는 하나의 수술 및 시술코드에 한하여 수술비(시술 포함)를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ADRG는 1회의 입원 또는 1회의 통원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수술 및 시술을 받더라도 “KDRG”에서 정한 외과적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만 생성됩니다. 이 경우 외과적 우선순위는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별표102】 참조)의 수술 및 시술종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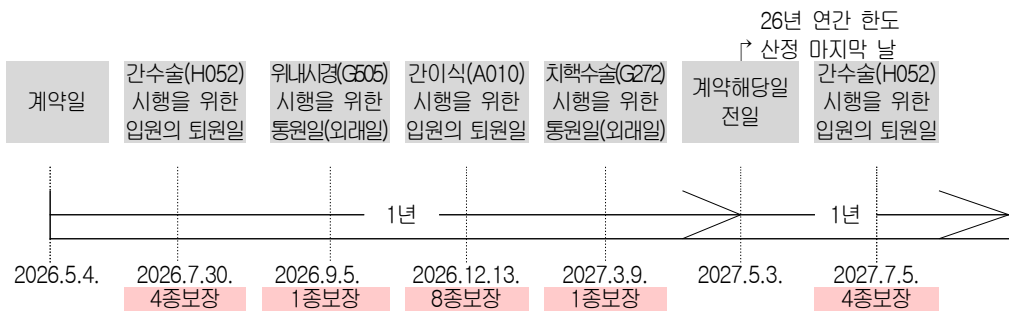
【보장예시1】

2026.7.30. 입원으로 인한 간수술(H052) ⇒ 26년 **첫 번째** 입원수술 ⇒ 4종보장
 2026.9.5. 통원으로 인한 위내시경(G505) ⇒ 26년 **첫 번째** 통원수술 ⇒ 1종보장
 2026.12.13. 입원으로 인한 간수술(H052) ⇒ 26년 **두 번째** 입원수술 ⇒ 미보장
 2027.3.9. 통원으로 인한 위내시경(G505) ⇒ 26년 **두 번째** 통원수술 ⇒ 미보장
 2027.7.5. 입원으로 인한 간수술(H052) ⇒ 27년 **첫 번째** 입원수술 ⇒ 4종보장



【보장예시2】

2026.7.30. 입원으로 인한 간수술(H052) ⇒ 26년 **첫 번째** 입원수술 ⇒ 4종보장
 2026.9.5. 통원으로 인한 위내시경(G505) ⇒ 26년 **첫 번째** 통원수술 ⇒ 1종보장
 2026.12.13. 입원으로 인한 간이식(A010) ⇒ 26년 **두 번째** 입원수술 ⇒ 8종보장
 2027.3.9. 통원으로 인한 치핵수술(G272) ⇒ 26년 **두 번째** 통원수술 ⇒ 1종보장
 2027.7.5. 입원으로 인한 간수술(H052) ⇒ 27년 **첫 번째** 입원수술 ⇒ 4종보장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퇴원없이 계속입원 중에 2가지 이상의 수술 및 시술코드가 부여되는 경우 또는 1일 2회 이상 통원하여 2가지 이상의 수술 및 시술코드가 부여된 경우에는 수술시술종류가 높은 하나의 수술 및 시술코드에 한하여 해당 종의 수술비(시술 포함)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통해 피보험자가 유방재건술과 유방절제술을 동시에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유방재건술(J051,J052)이 아니라 유방절제술(J061,J062)에 해당하는 수술 및 시술코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유방절제술(J061,J062)의 수술비(시술 포함)를 지급합니다.

설명

피보험자가 입원을 하고 “유방재건술”과 “유방절제술”을 동시에 받은 후 퇴원할 경우 생성되는 ADRG는 “유방재건술(J051)”입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제4항에 따라 “유방재건술(J051)”에 해당하는 3종의 수술비(시술포함)가 아니라 “유방절제술(J061)”에 해당하는 7종의 수술비(시술 포함)를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전하여 입원하거나 동일한 의료기관에 퇴원 후 다른 일자에 재입원하여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상해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계속입원 중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피보험자의 퇴원일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함)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1~8종수술비(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를 보장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고로 인하여 수술 및 시술한 경우, 진단서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을 통해 주진단범주(MDC)와 의료행위 등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수술 및 시술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제2조(「수술 및 시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 및 시술에 포함하여 보장합니다.

예시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 등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고로 인하여 아래의 진단명 및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회사는 제7항에 따라 “슬관절 및 하퇴골 골절 수술(I283)”에 해당하는 수술비(시술 포함)를 지급합니다.

·진단명 : 경골 하단의 기타 골절(S82.38)

·의료행위 :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하퇴골-경골(N1604)

- 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에서 해당 입원기간 또는 통원일에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급여항목이 발생하는 다른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 회사는 이 수술 및 시술코드에 해당하는 수술비(시술 포함)와 제7항의 수술 및 시술코드에 해당하는 수술비(시술 포함)를 각각 지급합니다.
- ⑨ 「복강경을 이용한 단순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N031)», 「개복에 의한 단순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N032)», 「분만및유산후관련장애통제(수술시행)(O110)」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조(「수술 및 시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6.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7. 정상임신, 출산(제왕절개 제외),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8.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9.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10.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으로 인한 경우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함)이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 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회사는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 (【별표102】 참조)의 주2)에 해당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수술 및 시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진단명, 진단코드, 수술명, 수술일자 포함), 진료비세부내역서(급여수가코드(EDI코드 포함)), 수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진료기록부 등)
(단,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에서 급여수가코드(EDI코드 포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 청구시 급여수가코드(EDI코드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수가코드

급여수가코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 등을 포함한 코드를 말합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0. 상해1~8종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특별약관

40-1. 상해1~8종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특별약관

40-2. 상해1~8종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태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해1~8종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II」 (【별표103】 참조)에서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 및 시술코드」 당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1회의 입원당 1회의 「수술 및 시술」 또는 통원 1일당 1회의 「수술 및 시술」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상해1~8종수술비(선천기형포함) (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 장
상해1~8종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1종) 보장
상해1~8종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2종) 보장
상해1~8종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3종) 보장
상해1~8종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4종) 보장
상해1~8종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5종) 보장
상해1~8종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6종) 보장
상해1~8종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7종) 보장
상해1~8종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8종) 보장

제3조(「수술 및 시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 및 시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하며, 한의사는 제외함)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II」(【별표103】참조)에서 정한 수술 및 시술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 및 시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 및 시술코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처치 및 수술료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하고,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분류체계에 따라 부여된 「ADRG(Adjacent DRG)」중 회사가 정한 코드를 말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분류체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발·관리하는 한국형 입원환자분류체계로서, 진단과 시술명, 연령 등에 따라 입원환자를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은 KDRG 버전 4.4(2021.1.1 시행)의 ADRG 분류체계를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ADRG(Adjacent DRG)

환자의 주진단 범주(Major Diagnostic Category, MDC)와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외과계 그룹”과 “내과계 그룹”으로 분류한 후 의료행위^{주1)}와 진단명^{주2)}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주1) 의료행위 : 의료행위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말합니다.

주2) 진단명 : 진단명이란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분류번호를 말합니다.

주진단 범주(Major Diagnostic Category, MDC)

신체부위나 질병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질병군의 대분류를 말합니다.

수술 및 시술코드 확인 예시

- 수술 및 시술코드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biz.hira.or.kr>)의 모니터링 > 환자분류체계 > 입원환자분류체계 > 환자분류조회(또는 자료실 內 최신 환자분류프로그램)
- 확인 예시
 - 진단코드 입력: C20(직장의 악성신생물)
 - 수가코드 입력: Q2981(직장중앙절제술(경향문접근))
 - 수술 및 시술코드 확인: G04100(경향문 및 경천골 접근 직장절제술(악성종양의 경우))
 - 별표확인 : G041(7종)

④ 제3항의 「수술 및 시술코드」에서 향후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개정으로 동일한 수

술 및 시술에 대해 「수술 및 시술코드」가 변경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의 체결시점에서 정한 「수술 및 시술코드」를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ADRG」가 신규 추가되는 경우 회사는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Ⅱ」(【별표103】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수술 및 시술코드」를 결정합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수술 및 시술 받은 시점에서 부여된 의료행위, 진단명 및 주진단범주(MDC) 등을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의 “KDRG”기준에 적용합니다.
- 신의료수술 도입 등의 이유로 급여항목이 신규 추가되고 피보험자가 그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 회사는 주진단범주(MDC)와 의료행위를 확인한 후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에 정한 수술 및 시술코드를 기준으로 수술비(시술 포함)를 지급합니다.

【예시】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에 간이식에 해당하는 수술 및 시술코드는 A010(KDRG 버전4.4)이었으나, 피보험자가 간이식수술을 받은 시점의 수술 및 시술코드가 A080(KDRG 버전5.0)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A010(KDRG 버전4.4)에 해당하는 수술비(시술 포함)를 지급합니다.

- ⑤ 제3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에 급여항목으로 분류된 수술 및 시술이 향후 비급여항목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수술 및 시술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⑥ 제1항의 수술 및 시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호, 2021.1.22.)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 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2장(검사료) 및 제3장(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서 정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방사선 치료 대상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제3장(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의 사이버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감마나이프(Gamma 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선형가속기(LINAC) 정위적 방사선 치료, 양성자치료는 수술 및 시술에 포함하여 보장합니다.

내 용	수가코드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1회당]-선형가속기이용	HD111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1회로 치료종결]-선형가속기이용	HD112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HD113
뇌정위적방사선수술-사이버나이프	HD114
뇌정위적방사선수술-선형가속기	HD115
양성자치료[1회당]	HD121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1회당]-사이버나이프이용	HD211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1회로 치료종결]-사이버나이프이용	HD212

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바에 따릅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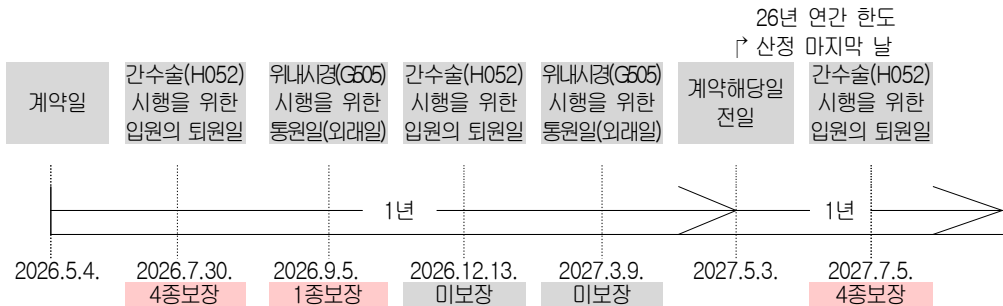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1회의 입원 또는 1회의 통원 중에 2가지 이상의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 퇴원일 또는 통원일을 기준으로 진단서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분류체계 등을 통해 확인되는 하나의 수술 및 시술코드에 한하여 수술비(시술 포함)를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ADRG는 1회의 입원 또는 1회의 통원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수술 및 시술을 받더라도 “KDRG”에서 정한 외과적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만 생성됩니다. 이 경우 외과적 우선순위는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Ⅱ」(【별표103】참조)의 수술 및 시술종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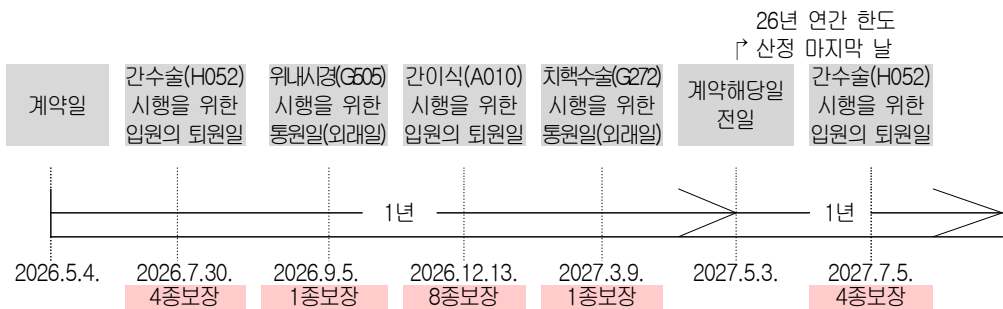
[보장예시1]

2026.7.30. **입원**으로 인한 간수술(H052) ⇒ 26년 **첫 번째** 입원수술 ⇒ 4중보장
 2026.9.5. **통원**으로 인한 위내시경(G505) ⇒ 26년 **첫 번째** 통원수술 ⇒ 1중보장
 2026.12.13. **입원**으로 인한 간수술(H052) ⇒ 26년 **두 번째** 입원수술 ⇒ 미보장
 2027.3.9. **통원**으로 인한 위내시경(G505) ⇒ 26년 **두 번째** 통원수술 ⇒ 미보장
 2027.7.5. **입원**으로 인한 간수술(H052) ⇒ 27년 **첫 번째** 입원수술 ⇒ 4중보장



[보장예시2]

2026.7.30. **입원**으로 인한 간수술(H052) ⇒ 26년 **첫 번째** 입원수술 ⇒ 4중보장
 2026.9.5. **통원**으로 인한 위내시경(G505) ⇒ 26년 **첫 번째** 통원수술 ⇒ 1중보장
 2026.12.13. **입원**으로 인한 간이식(A010) ⇒ 26년 **두 번째** 입원수술 ⇒ 8중보장
 2027.3.9. **통원**으로 인한 치핵수술(G272) ⇒ 26년 **두 번째** 통원수술 ⇒ 1중보장
 2027.7.5. **입원**으로 인한 간수술(H052) ⇒ 27년 **첫 번째** 입원수술 ⇒ 4중보장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퇴원없이 계속입원 중에 2가지 이상의 수술 및 시술코드가 부여되는 경우 또는 1일 2회 이상 통원하여 2가지 이상의 수술 및 시술코드가 부여된 경우에는 수술시술종류가 높은 하나의 수술 및 시술코드에 한하여 해당 종의 수술비(시술 포함)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통해 피보험자가 유방재건술과 유방절제술을 동시에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유방재건술(J051,J052)이 아니라 유방절제술(J061,J062)에 해당하는 수술 및 시술코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유방절제술(J061,J062)의 수술비(시술 포함)를 지급합니다.

설명

피보험자가 입원을 하고 “유방재건술”과 “유방절제술”을 동시에 받은 후 퇴원할 경우 생성되는 ADRG는 “유방재건술(J051)”입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제4항에 따라 “유방재건술(J051)”에 해당하는 3종의 수술비(시술포함)가 아니라 “유방절제술(J061)”에 해당하는 7종의 수술비(시술 포함)를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전하여 입원하거나 동일한 의료기관에 퇴원 후 다른 일자에 재입원하여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보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상해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계속입원 중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이 특

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피보험자의 퇴원일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에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1~8종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를 보장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고로 인하여 수술 및 시술한 경우, 진단서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을 통해 주진단범주(MDC)와 의료행위 등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수술 및 시술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제3조(「수술 및 시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 및 시술에 포함하여 보장합니다.

예시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 등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고로 인하여 아래의 진단명 및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회사는 제7항에 따라 “슬관절 및 하퇴골 골절 수술(1283)”에 해당하는 수술비(시술 포함)를 지급합니다.

·진단명 : 경골 하단의 기타 골절(S82.38)

·의료행위 : 사지골절정복술[복합골절포함]-관혈적-하퇴골-경골(N1604)

- 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에서 해당 입원기간 또는 통원일에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급여항목이 발생하는 다른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 회사는 이 수술 및 시술코드에 해당하는 수술비(시술 포함)와 제7항의 수술 및 시술코드에 해당하는 수술비(시술 포함)를 각각 지급합니다.
- ⑨ 「복강경을 이용한 단순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N031)», 「개복에 의한 단순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N032)», 「분만및유산후관련장애(수술시행)(O110)」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 및 시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6.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7. 정상임신, 출산(제왕절개 제외),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8.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9.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10.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으로 인한 경우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회사는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 II」(【별표103】참조)의 주2)에 해당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수술 및 시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진단명, 진단코드, 수술명, 수술일자 포함), 진료비세부내역서(급여수가코드(EDI코드 포함)), 수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진료기록부 등)
(단,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에서 급여수가코드(EDI코드 포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 청구시 급여수가코드(EDI코드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수가코드

급여수가코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 등을 포함한 코드를 말합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1. 상해흉터복원수술비(안면부)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해흉터복원수술비(안면부)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안면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와 같이 최대 수술길이에 따라 1사 고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최대수술길이	지급금액
상해흉터복원수술비(안면부)	1cm이상 ~ 5cm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30%
	5cm이상 ~ 10cm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60%
	10cm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최대 수술길이란 하나의 독립된 반흔(흉터)의 최대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길이측정이 불가한 식피술(피부이식수술)등의 경우에는 반흔(흉터)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측정된 최대 직선길이를 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의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성형수술은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시점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상해흉터복원수술비(안면부)는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 ③ 하나의 사고로 안면부 여러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여러부위의 수술 길이 중 최대 길이를 기준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2. 창상봉합술치료비(급여,연간3회한) 특별약관

42-1. 창상봉합술치료비(급여,연간3회한) 특별약관

42-2. 창상봉합술치료비(급여,연간3회한)(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창상봉합술치료비(급여,연간3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3회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창상봉합술(안면부)	창상봉합술(안면부 이외)
창상봉합술치료비 (급여,연간3회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에 한함)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에 한함)

제2조(용어의 정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제3조(「급여 창상봉합술」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급여 창상봉합술」이라 함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창상봉합술」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창상봉합술」이라 함은 「급여 창상봉합술 분류표」(【별표126】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하며 해당 진료행위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급여 창상봉합술」의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급여 창상봉합술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급여치료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의 「급여 창상봉합술」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

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3. 창상봉합술치료비(급여,안면부,연간3회한) 특별약관

43-1. 창상봉합술치료비(급여,안면부,연간3회한) 특별약관

43-2. 창상봉합술치료비(급여,안면부,연간3회한)(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창상봉합술치료비(급여,안면부,연간3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안면부창상봉합술(3cm이상)」를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3회한으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창상봉합술치료비(급여,안면부,연간3회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용어의 정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제3조(「급여 안면부창상봉합술(3cm이상)」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급여 안면부창상봉합술(3cm이상)」이라 함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창상봉합술」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창상봉합술」이라 함은 「급여 안면부창상봉합술(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 분류표」(【별표127】 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하며 해당 진료행위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급여 안면부창상봉합술(3cm이상)」의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급여 안면부창상봉합술(3cm이상)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급여치로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의 「급여 안면부창상봉합술(3cm이상)」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4. 상해재활치료비(급여_연간20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해재활치료비(급여_연간20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중에 제2조(「상해재활치료(급여)」의 정의)의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이하 「입원 상해재활치료(급여)」라 합니다) 또는 통원하여 제2조(「상해재활치료(급여)」의 정의)의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이하 「통원 상해재활치료(급여)」라 합니다)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상해재활치료비(급여_연간20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연간 20회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원 상해재활치료(급여)」와 「통원 상해재활치료(급여)」를 합산하여 연간 20회한으로 보장합니다.

제2조(「상해재활치료(급여)」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재활치료(급여)」라 함은 상해로 인한 구조적 손상과 기능적 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7장(이학요법료)에서 정한 급여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상해재활치료(급여)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의 「상해재활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해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제1항의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3조(「입원」 및 「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을 따릅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확인서("재활치료의 원인"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5.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 특별약관

45-1.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 특별약관

45-2.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갱신형_10년) 특별약관

45-1은 비갱신형으로,
45-2는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보험금(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 대상」으로 보험기간 중 등록되었을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보험금(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연간 1회한)

제2조(「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 대상」이라 함은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 대상 분류표」(【별표128】참조)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②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을 위한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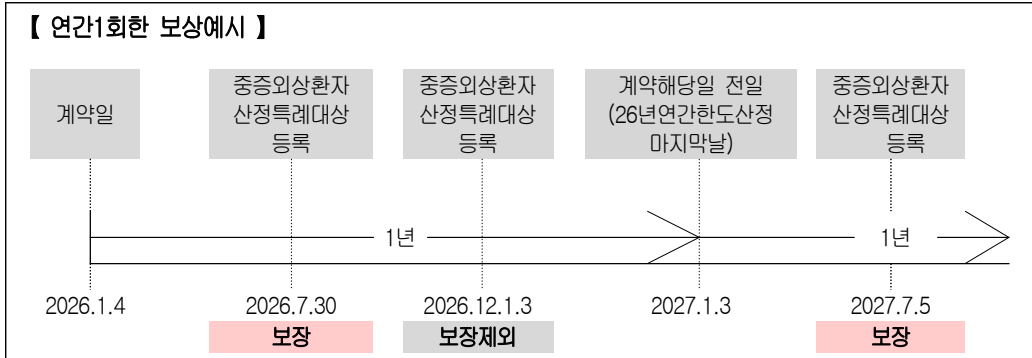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산정특례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증외상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및 적용기간

「중증외상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가 중증외상으로 확진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보험금은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되어 여러번 등록되더라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산정특례대상 등록일(해당 상병의 산정특례등록을 위하여 최초로 등록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법률(이하 「법률」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판단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중증외상 산정특례」와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도의 변경으로 「중증외상 산정특례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거나 급격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기초서류 변경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④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별약관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⑦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을 따릅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45-2.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갱신형_1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산정특례 등록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결과 통보방법에 따른 알림톡, 이메일 등),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적용영수증),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6. 골절철심제거수술비(급여_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골절철심제거수술비(급여_연간 1회한) :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 (【별표4】 참조)에 해당하는 골절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철심제거술」을 받은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골절철심제거수술비(급여_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골절(치아파절 제외)」라 함은 「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한 상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골절철심제거술」이라 함은 골절(치아파절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철심제거술 분류표」(【별표137】 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골절철심제거술」 의료행위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③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7. 골절철심제거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_연간1회한) 특별약관

47-1. 골절철심제거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_연간1회한) 특별약관

47-2. 골절철심제거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_연간1회한)(태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골절철심제거수술비(급여_연간 1회한) :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 (【별표4】 참조)에 해당하는 골절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철심제거술」을 받은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골절철심제거수술비(급여_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골절(치아파절 제외)」라 함은 「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 (【별표4】 참조)에서 정한 상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골절철심제거술」이라 함은 골절(치아파절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철심제거술 분류표」 (【별표137】 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골절철심제거술」 의료행위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③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8.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보장 특별약관

48-1.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보장 특별약관

48-2.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보장(갱신형_10년) 특별약관

48-1은 비갱신형으로,
48-2는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보장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으로 보험기간 중 「산정특례 신규등록」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보장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이라 함은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 분류표」(【별표145-1】참조)에서 정한 중증화상으로 진료를 받아 산정특례등록신청을 완료한 자를 말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②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산정특례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및 적용기간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가 중증화상으로 확진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제3조(「산정특례 신규등록」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산정특례 신규등록」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에 의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8조에 의한 산정특례 재등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중증화상 산정특례 재등록

법령에서 정한 중증화상 산정특례기간(1년) 종료 후 2년이내에 「중증화상」의 수술을 받는 경우(V306 제외)에는 산정특례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지급 산정의 기준일자는 산정특례대상 등록일(해당 상병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하여 최초로 등록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을 확인한 후 해당 「중증화상」의 진단확정일로 적용합니다.

제5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판단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중증화상 산정특례」와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도의 변경으로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거나 급격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기초서류 변경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④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별약관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⑦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을 따릅니다.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48-2.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보장(갱신형_1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보장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

- 술명 추가코드 등 기입), 산정특례 등록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결과 통보방법에 따른 알람톡, 이메일 등),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적용영수증),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9.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60일) 특별약관

49-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60일) 특별약관

49-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6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49-1은 비갱신형으로,
49-2는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6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3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6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6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60일한도)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3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2.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④ 법 제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2. 「치료감호법」 제16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지급일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각각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계속하여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제3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여부 및 사용일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49-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6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7.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0.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60일) 특별약관

50-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60일) 특별약관

50-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6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50-1은 비갱신형으로,
50-2는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6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3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6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6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60일한도)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하며,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제3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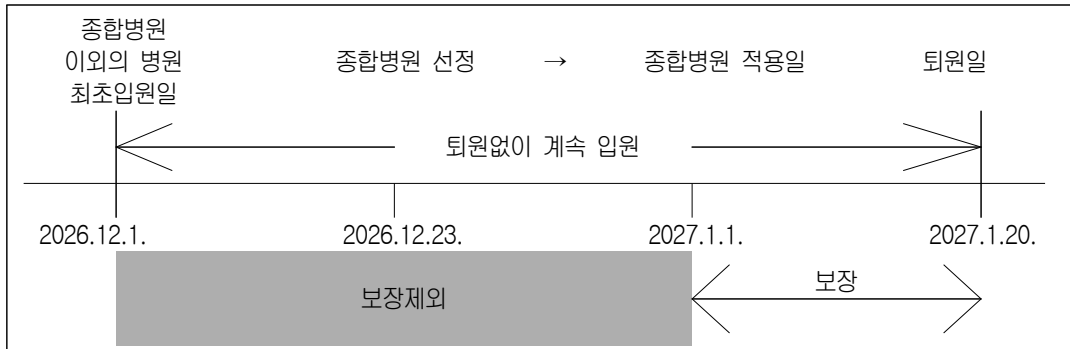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2.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④ 법 제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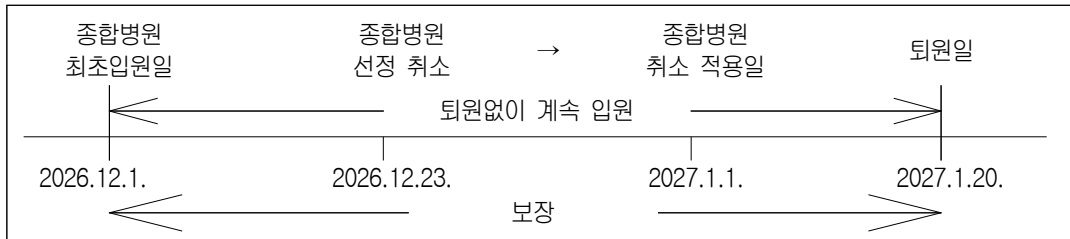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2. 「치료감호법」 제16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지급일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각각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계속하여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해당 「종합병원」 퇴원일까지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 수술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제3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여부 및 사용일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50-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6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7.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 특별약관

5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 특별약관

51-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51-1은 비갱신형으로,
51-2는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3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60일한도)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제3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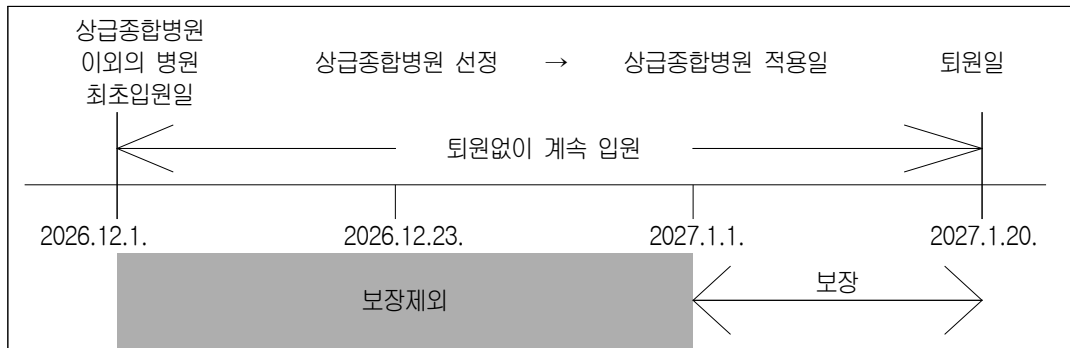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2.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④ 법 제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2. 「치료감호법」 제16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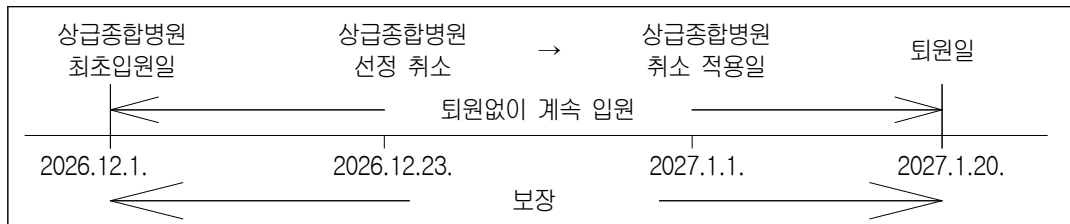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지급일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각각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계속하여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해당 「상급종합병원」 퇴원일까지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④ 제4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제1항 제2호의 사고

증명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여부 및 사용일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51-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갱신형 2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50조 특별약관 7.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2. 종합병원 1인실(특실폐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52-1. 종합병원 1인실(특실폐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52-2. 종합병원 1인실(특실폐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종합병원 1인실(특실폐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 1인실(특실폐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종합병원 1인실(특실폐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30일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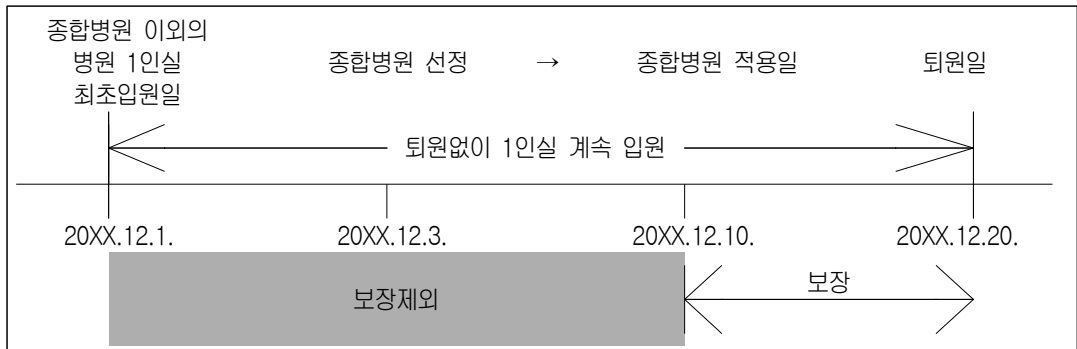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하며,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1인실」이라 함은 「특실」병실도 포함하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 비급여대상)에 따른 병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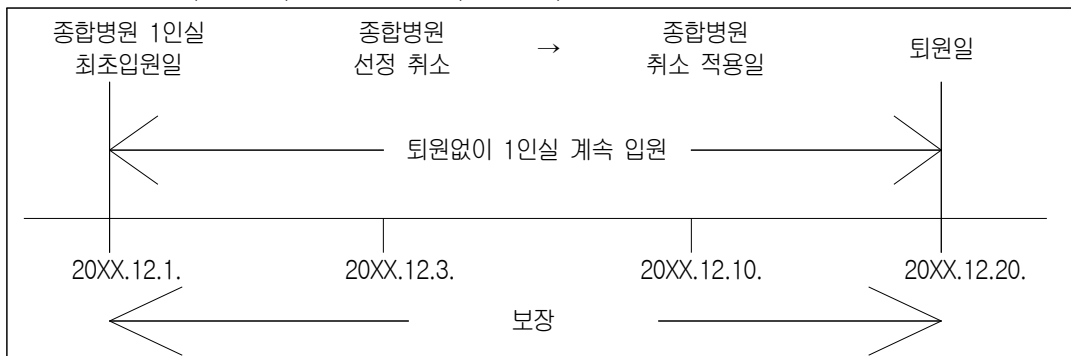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종합병원 1인실(특실폐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를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④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1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종합병원 1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1인실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해당 「종합병원 1인실」 퇴원일까지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거나 최초로 1인실 이외의 병실로 변경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3.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53-1.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53-2.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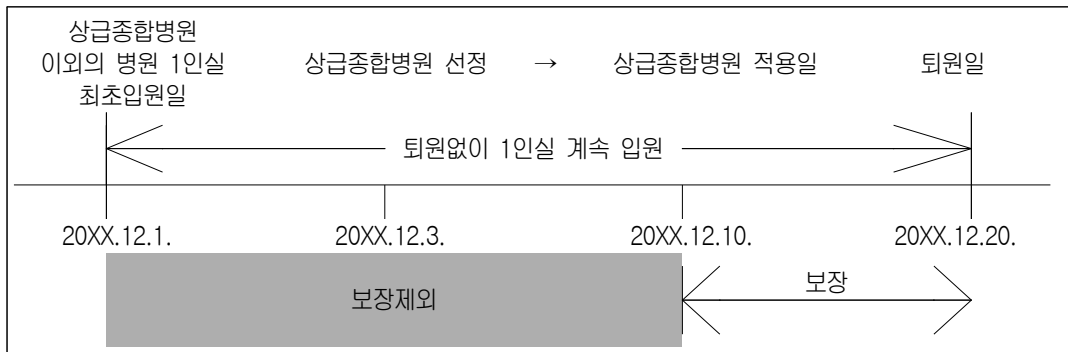
구 분	지 급 금 액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30일한도)

제2조(「용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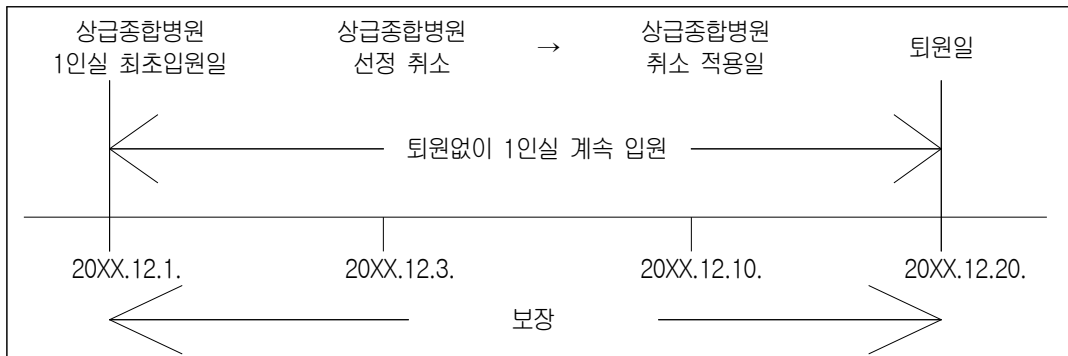
- ①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1인실」이라 함은 「특실」 병실도 포함하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병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를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④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1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1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1인실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해당 「상급종합병원 1인실」 퇴원일까지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거나 최초로 1인실 이외의 병실로 변경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4. 종합병원 상해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종합병원 상해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 우연, 외래의 상해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종합병원 상해수술비	1사고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하며,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5. 상급종합병원 상해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급종합병원 상해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 우연, 외래의 상해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상급종합병원 상해수술비	1사고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협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윤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6.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제외)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8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5일한도)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단,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제외)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을 이전하

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제외)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8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하며,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를 계속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를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 퇴원일까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를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정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를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를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7.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지원비(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연간200만원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지원비(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연간200만원이상)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지 급 금 액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5%
500만원이상 700만원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5%
7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35%
1,000만원이상 1,500만원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1,5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75%
2,000만원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제1항에서 간병인 사용금액은 1일당 25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단, 제3조(「요양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를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을 적용합니다.

제3조(「요양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 라목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제4조(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간병인이 피보험자의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 ③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병인의 주요 업무(예시)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족, 체위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 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제5조(「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라 함은 해당 상해의 진료를 위하여 병원 또는 의원
에 최초입원한 날이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
일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 간병인 사용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간병인 이용에 사용된 금액 외에 간
병에 쓰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년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상해로 최초입원한 날에 해당하
는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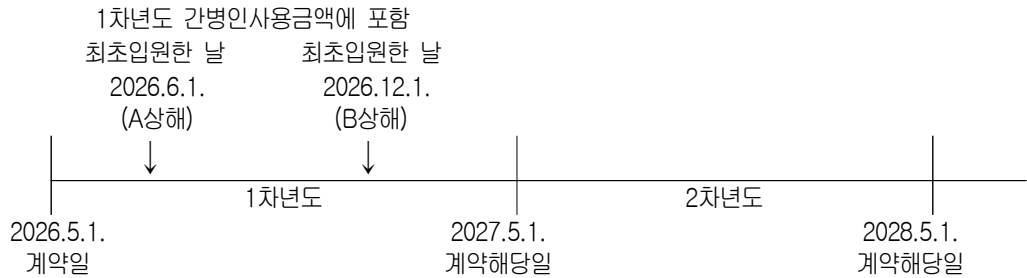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계산 예시 -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가입시]

예시1)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6년 5월 1일

A상해	- 입원기간 : 2026년 6월 1일 ~ 6월 30일(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6년 6월 11일 ~ 6월 17일(7일) - 간병인 사용금액 : 70만원 → 1일당 평균사용금액 10만원이므로 1일당 10만원 적용
B상해	- 입원기간 : 2026년 12월 1일 ~ 12월 30일(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6년 12월 4일 ~ 12월 13일(10일) - 간병인 사용금액 : 300만원 → 1일당 평균사용금액 30만원이므로 1일당 25만원 적용

- (A상해) : 1일당 평균 10만원 사용으로 1일당 10만원 적용
(10만원 X 7일 = 70만원)
- (B상해) : 1일당 평균 30만원 사용으로 1일당 25만원 적용
(25만원 X 10일 = 250만원)
- 1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A상해) 70만원 + (B상해) 250만원 = 320만원
- ⇒ **보험가입금액의 15% 지급. 1차년도 지급금액 : 3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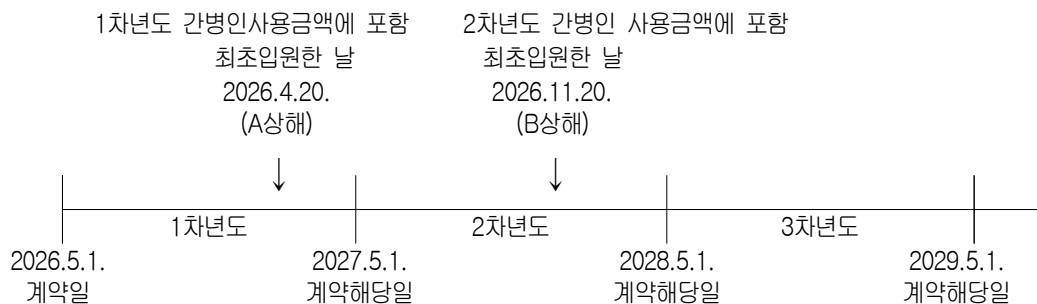
예시2)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6년 5월 1일

A상해	- 입원기간 : 2027년 4월 20일 ~ 5월 19일(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7년 4월 25일 ~ 5월 14일(20일) - 간병인 사용금액 : 400만원 → 1일당 평균사용금액 20만원이므로 1일당 20만원 적용
B상해	- 입원기간 : 2027년 11월 20일 ~ 12월 19일(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7년 11월 25일 ~ 12월 14일(20일) - 간병인 사용금액 : 600만원 → 1일당 평균사용금액 30만원이므로 1일당 25만원 적용

입원기간 중 보험년도 변경시 최초입원한 날의 보험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에 합산함.

- (A상해) : 1일당 평균 20만원 사용으로 1일당 20만원 적용
(20만원 X 20일 = 400만원)
- 1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A상해) 400만원
- ⇒ **보험가입금액의 15% 지급. 1차년도 지급금액 : 30만원**
- (B상해) : 1일당 평균 30만원 사용으로 1일당 25만원 적용
(25만원 X 20일 = 500만원)
- 2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B상해) 500만원
- ⇒ **보험가입금액의 25% 지급. 2차년도 지급금액 : 50만원**



예시3)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6년 5월 1일

A상해	- 입원기간 : 2027년 4월 20일 ~ 5월 2일, 2027년 6월 3일 ~ 6월 17일 - 간병인 사용기간 및 간병인 사용금액 : 총 640만원(20일) · 2027년 4월 21일 ~ 4월 28일(8일), 사용금액 400만원 · 2027년 6월 5일 ~ 6월 16일(12일), 사용금액 240만원 → 1일당 평균사용금액이 32만원이므로 1일당 25만원 적용
B상해	- 입원기간 : 2028년 3월 20일 ~ 4월 5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8년 3월 22일 ~ 3월 31일(10일) - 간병인 사용금액 : 300만원 → 1일당 평균사용금액이 30만원이므로 1일당 25만원 적용

같은 상해로 2회이상 입원시 최초입원한 날 보험년도의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에 합산함.

· (A상해) : 1일당 평균사용금액이 32만원이므로 1일당 25만원 적용

(25만원 X 20일 = 500만원)

→ 1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A상해) 5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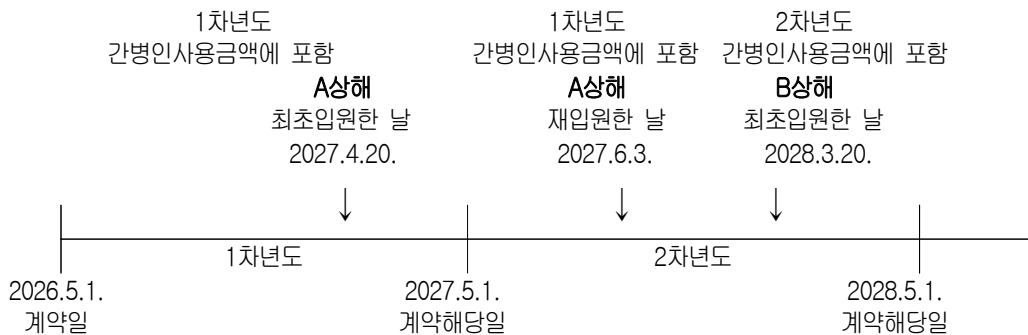
⇒ **보험가입금액의 25% 지급. 1차년도 지급금액 : 50만원**

· (B상해) : 1일당 평균 30만원 사용으로 1일당 25만원 적용

(25만원 X 10일 = 250만원)

→ 2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B상해) 250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2차년도 지급금액 : 20만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제5조(「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보험금 청구일의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보험금 청구일 이후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변경되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보다 증가한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추가로 지급합니다. 한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보다 감소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그 차액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을 적용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하여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지원비(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연간200만원이상)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의 직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8.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지원비(요양병원)(간병인비용연간200만원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지원비(요양병원)(간병인비용연간200만원이상)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

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지 급 금 액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5%
500만원이상 700만원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5%
7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35%
1,000만원이상 1,500만원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1,5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75%
2,000만원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제1항에서 간병인 사용금액은 1일당 25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요양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을 적용합니다.

제3조(「요양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 라목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제4조(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간병인이 피보험자의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 ③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병인의 주요 업무(예시)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 보조, 휴식돕기, 번기사용 보조 등

제5조(「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라 함은 해당 상해의 진료를 위하여 병원 또는 의원 에 최초입원한 날이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 일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 간병인 사용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간병인 이용에 사용된 금액 외에 간병에 쓰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년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상해로 최초입원한 날에 해당하는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계산 예시 -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가입시]

예시1)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6년 5월 1일

A상해	- 입원기간 : 2026년 6월 1일 ~ 6월 30일(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6년 6월 11일 ~ 6월 17일(7일) - 간병인 사용금액 : 70만원 → 1일당 평균사용금액 10만원이므로 1일당 10만원 적용
B상해	- 입원기간 : 2026년 12월 1일 ~ 12월 30일(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6년 12월 4일 ~ 12월 13일(10일) - 간병인 사용금액 : 300만원 → 1일당 평균사용금액 30만원이므로 1일당 25만원 적용

· (A상해) : 1일당 평균 10만원 사용으로 1일당 10만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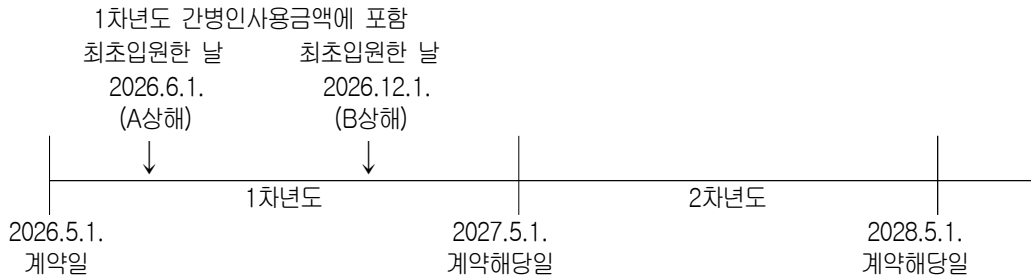
(10만원 X 7일 = 70만원)

· (B상해) : 1일당 평균 30만원 사용으로 1일당 25만원 적용

(25만원 X 10일 = 250만원)

→ 1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A상해) 70만원 + (B상해) 250만원 = 320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15% 지급. 1차년도 지급금액 : 30만원**



예시2)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6년 5월 1일

A상해	- 입원기간 : 2027년 4월 20일 ~ 5월 19일(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7년 4월 25일 ~ 5월 14일(20일) - 간병인 사용금액 : 400만원 → 1일당 평균사용금액 20만원이므로 1일당 20만원 적용
B상해	- 입원기간 : 2027년 11월 20일 ~ 12월 19일(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7년 11월 25일 ~ 12월 14일(20일) - 간병인 사용금액 : 600만원 → 1일당 평균사용금액 30만원이므로 1일당 25만원 적용

입원기간 중 보험년도 변경시 최초입원한 날의 보험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에 합산함.

· (A상해) : 1일당 평균 20만원 사용으로 1일당 20만원 적용

(20만원 X 20일 = 400만원)

→ 1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A상해) 4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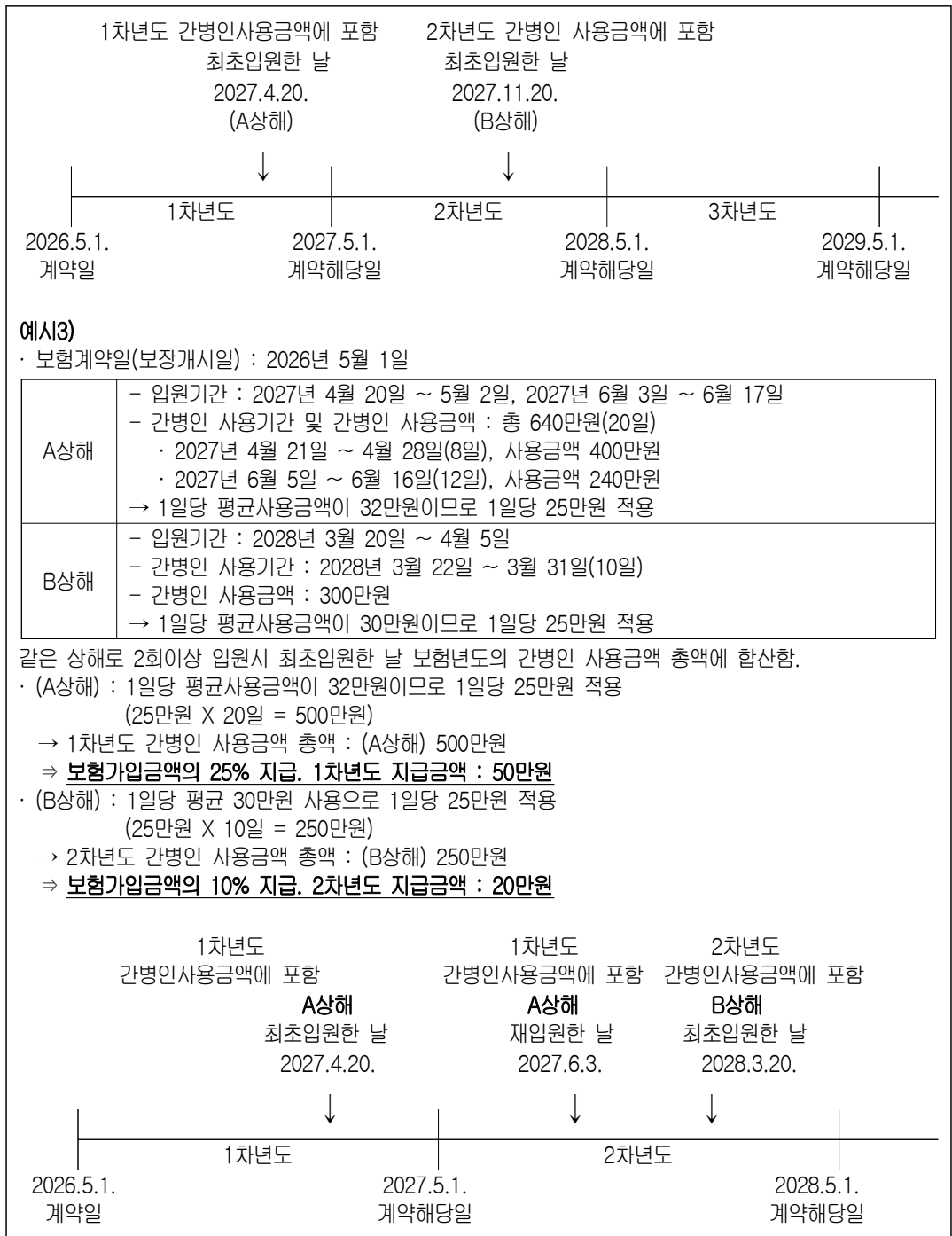
⇒ **보험가입금액의 15% 지급. 1차년도 지급금액 : 30만원**

· (B상해) : 1일당 평균 30만원 사용으로 1일당 25만원 적용

(25만원 X 20일 = 500만원)

→ 2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B상해) 500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25% 지급. 2차년도 지급금액 : 50만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제5조(「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보험금 청구일의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보험금 청구일 이후 「연간 간병인 사

용금액 총액」이 변경되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보다 증가한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추가로 지급합니다. 한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보다 감소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그 차액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을 적용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하여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자원비(요양병원)(간병인비용연간200만원이상)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1.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의 직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2. 사업자등록증
 - 3.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9. 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59-1. 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59-2. 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30일한도)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종합병원 2~3인실」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하며,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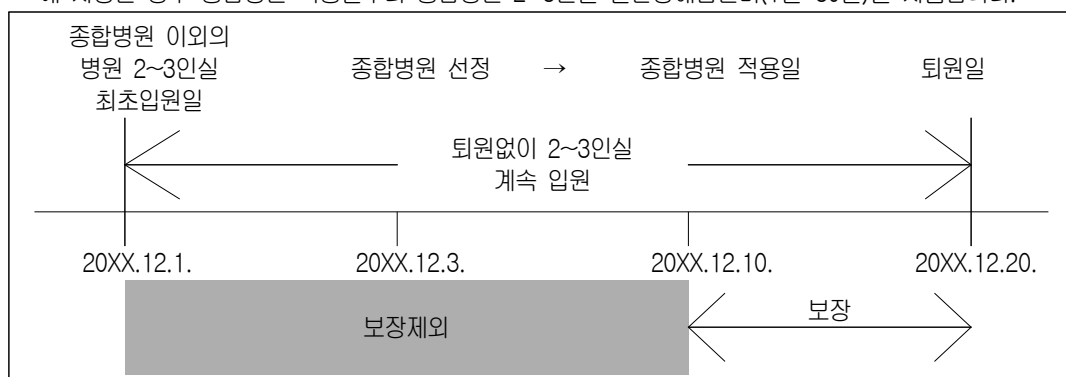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는 것
 2. 100 병상 이상 300 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 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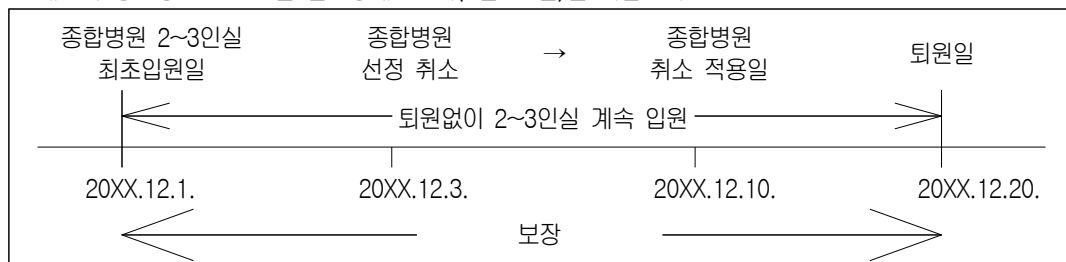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는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를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④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종합병원 2~3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해당 「종합병원 2~3인실」 퇴원일까지 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거나 최초로 2~3인실 이외의 병실로 변경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0.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60-1.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60-2.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장애를 가져와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30일한도)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상급종합병원 2~3인실」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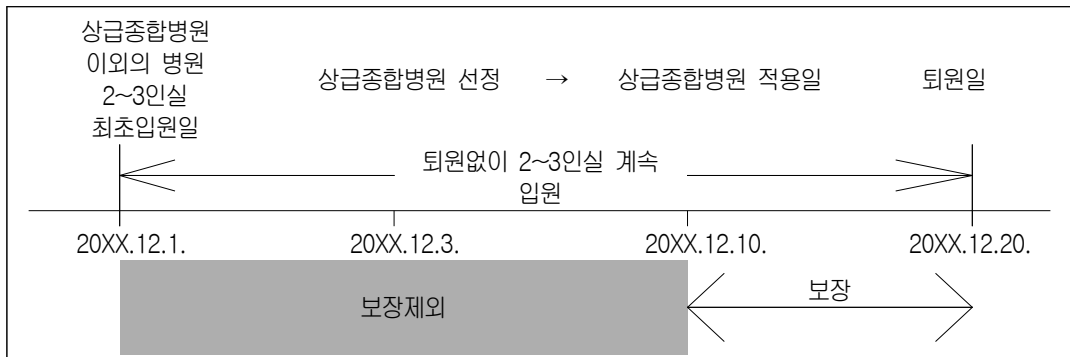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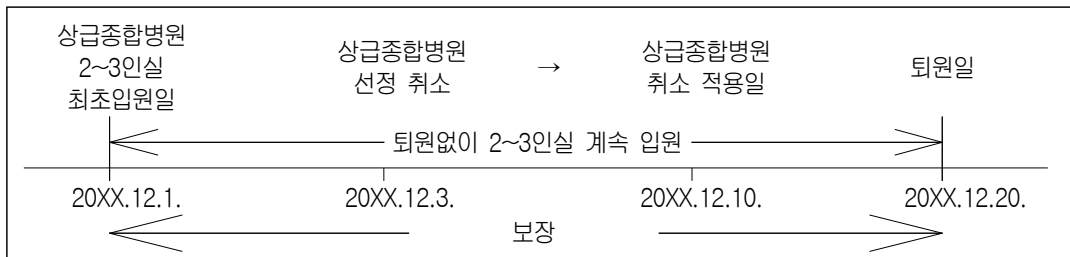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를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④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2~3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해당 「상급종합병원 2~3인실」 퇴원일까지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거나 최초로 2~3인실 이외의 병실로 변경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1. 상해수술비(치아파절 및 치아탈구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해수술비(치아파절 및 치아탈구제외)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 우연, 외래의 상해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상해수술비(치아파절 및 치아탈구제외)	1사고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아래의 상해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아의 파절(S02.5)
 2. 치아의 탈구(S03.2)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2. 상해수술비(치아파절 및 치아탈구제외)(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62-1. 상해수술비(치아파절 및 치아탈구제외)(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62-2. 상해수술비(치아파절 및 치아탈구제외)(선천기형포함)(태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해수술비(치아파절 및 치아탈구제외)(선천기형포함)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 우연, 외래의 상해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상해수술비(치아파절 및 치아탈구제외)(선천기형포함)	1사고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아래의 상해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아의 파절(S02.5)
 2. 치아의 탈구(S03.2)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3.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총 5개의 세부보장으로 나뉩니다.

보 장

- 1)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1종)(1일~2일) 보장
- 2)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2종)(1일~4일) 보장
- 3)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3종)(1일~6일) 보장
- 4)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4종)(1일~8일) 보장
- 5)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5종)(1일~10일) 보장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하 “수술동반입원”이라 합니다)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 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나.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수술을 받는 경우
- 다. 상기 가목 및 나목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1종)(1일~2일)	입원 1일당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2일한도)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2종)(1일~4일)	입원 1일당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4일한도)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3종)(1일~6일)	입원 1일당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6일한도)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4종)(1일~8일)	입원 1일당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8일한도)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5종)(1일~10일)	입원 1일당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10일한도)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별표11】 1~5종수술 분류표III」에서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④ 제3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⑤ 제3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⑥ 제3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종이내뿔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수술동반입원”당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세부보장별 입원일수 한도를 따릅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제1호 나목의 수술은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입원일수 한도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동반입원비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동반입원비에서 이미 지급한 수술동반입원비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함은 같은 수술실에서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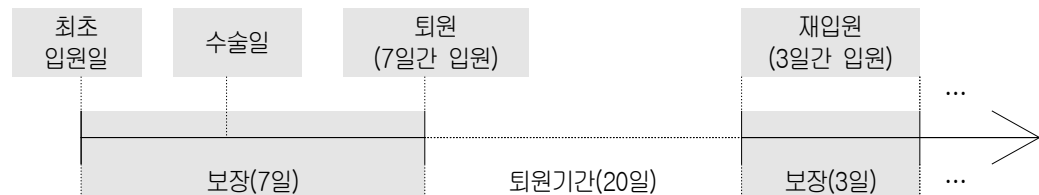
③ 제2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체간골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신체부위로 봅니다.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는 “수술” 이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보상예시> 동일한 상해(5종)로 7일간 수술동반입원, 퇴원 후 3일간 재입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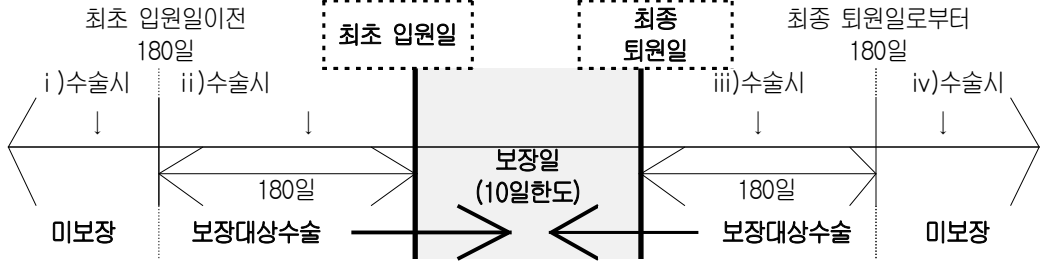


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수술동반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수술동반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따라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의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할 때에는 회사는 상해수술동반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최초 입원일 이전 180일부터 최초 입원일 이내” 또는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기 이전” 수술에 대해서는,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를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특히, 같은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먼저 한 수술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보장합니다.

<상해5종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 보상 기준>



- i) 최초 입원일 이전 180일 전 수술시 미보장
- ii) 최초 입원일 이전 180일부터 최초 입원일 이내 수술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1~5종수술동반입원비를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보장
- iii)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일 이전 수술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1~5종수술 동반입원비를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보장
- iv) 최종 퇴원일의 180일 경과일 이후 수술시 미보장

-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조(용어의 정의)의 제3항 내지 제6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제1항 내지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

- 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5조(특별약관의 소명)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명)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4.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64-1.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64-2.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선천기형포함)(태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총 5개의 세부보장으로 나뉩니다.

보 장
1)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1종)(1일~2일)(선천기형포함) 보장
2)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2종)(1일~4일)(선천기형포함) 보장
3)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3종)(1일~6일)(선천기형포함) 보장
4)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4종)(1일~8일)(선천기형포함) 보장
5)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5종)(1일~10일)(선천기형포함) 보장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선천기형포함)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하 “수술동반입원”이라 합니다)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 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나.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제3조(용어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수술을 받는 경우
- 다. 상기 가목 및 나목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상해1~5중수술동반입원비(1종)(1일~2일)(선천기형포함)	입원 1일당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2일한도)
상해1~5중수술동반입원비(2종)(1일~4일)(선천기형포함)	입원 1일당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4일한도)
상해1~5중수술동반입원비(3종)(1일~6일)(선천기형포함)	입원 1일당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6일한도)
상해1~5중수술동반입원비(4종)(1일~8일)(선천기형포함)	입원 1일당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8일한도)
상해1~5중수술동반입원비(5종)(1일~10일)(선천기형포함)	입원 1일당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10일한도)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별표11】 1~5중수술 분류표III」에서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④ 제3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⑤ 제3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⑥ 제3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선천기형포함)의 지급일수는 1회 “수술동반입원”당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세부보장별 입원일수 한도를 따릅니다.
- ②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제1호 나목의 수술은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입원일수 한도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선천기형포함)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동반입원비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동반입원비에서 이미 지급한 수술동반입원비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함은 같은 수술실에서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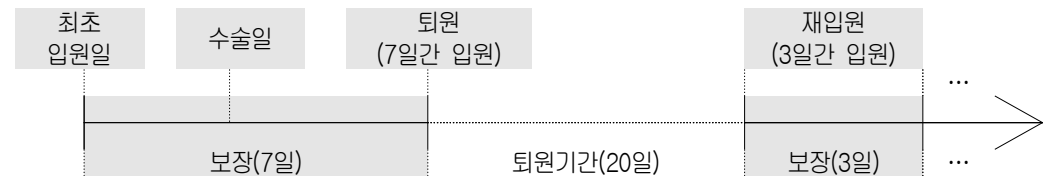
- ③ 제2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체간골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신체부위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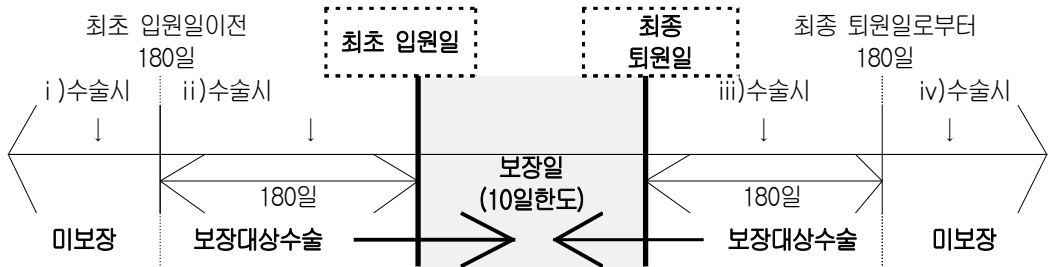
- ④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선천기형포함)는 “수술” 이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보상예시> 동일한 상해(5종)로 7일간 수술동반입원, 퇴원 후 3일간 재입원



- 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수술동반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수술동반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따라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선천기형포함)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의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할 때에는 회사는 수술동반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최초 입원일 이전 180일부터 최초 입원일 이내” 또는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기 이전” 수술에 대해서는,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선천기형포함)를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특히, 같은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먼저 한 수술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보장합니다.

<상해5종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 보상 기준>



- i) 최초 입원일 이전 180일 전 수술시 미보장
- ii) 최초 입원일 이전 180일부터 최초 입원일 이내 수술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1~5종수술동반입원비를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보장
- iii)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일 이전 수술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1~5종수술 동반입원비를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보장
- iv) 최종 퇴원일의 180일 경과일 이후 수술시 미보장

-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용어의 정의)의 제3항 내지 제6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제1항 내지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꺼름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5.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 특별약관

65-1.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

특별약관

65-2.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

(갱신형_20년) 특별약관

65-1은 비갱신형으로 운영하며,
65-2는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3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기 준	지 급 금 액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 (요양병원제외) (1일당8시간이상) (1일-180일)	간병인 사용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일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간병인의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24시간을 1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정으로 간병인을 8시간이상 24시간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1일로 간주하나, 8시간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3조(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간병인이 피보험자의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간병인의 주요 업무(예시)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 보조, 휴식돕기, 번기사용 보조 등

- ③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된 자에 한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의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24시간을 1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정으로 간병인을 8시간이상 24시간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1일로 간주하나, 8시간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보장예시1]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X년 4월 1일, 보험가입금액 : 5만원
- 입원기간 및 간병인 사용일 예시
 - 입원기간 : 202X년 4월 1일 ~ 202X년 4월 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X년 4월 10일 오후 8시 ~ 4월 13일 오전 11시

1일기준	202X년 4월		
	10일 오후 8시 ~ 11일 오후 8시 이전	11일 오후 8시 ~ 12일 오후 8시 이전	12일 오후 8시 ~ 13일 오후 8시 이전
간병인 사용시간	24시간	24시간	15시간
1일 8시간이상 사용여부	○	○	○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 지급금액
: 5만원 × 3일 : 15만원 지급

[보장예시2]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X년 4월 1일, 보험가입금액 : 5만원
- 입원기간 및 간병인 사용일 예시
 - 입원기간 : 202X년 4월 1일 ~ 202X년 4월 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X년 4월 10일 오전 9시 ~ 4월 12일 오후 3시

1일기준	202X년 4월		
	10일 오전 9시 ~ 11일 오전 9시 이전	11일 오전 9시 ~ 12일 오전 9시 이전	12일 오전 9시 ~ 13일 오전 9시 이전
간병인 사용시간	24시간	24시간	6시간
1일 8시간이상 사용여부	O	O	X

- 4월 12일 오전 9시 ~ 13일 오전 이전 기준의 경우 간병인 사용시간이 6시간으로 8시간 이상 미충족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 지급금액**
: 5만원 × 2일 : 10만원 지급

[보장예시3]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X년 4월 1일, 보험가입금액 : 5만원
- 입원기간 및 간병인 사용일 예시
 - 입원기간 : 202X년 5월 1일 ~ 202X년 11월 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X년 10월 26일 오후 9시 ~ 10월 29일 오전 8시

1일기준	202X년 10월		
	26일 오후 9시 ~ 27일 오후 9시 이전	27일 오후 9시 ~ 28일 오후 9시 이전 (180일째 입원일)	28일 오후 9시 ~ 29일 오후 9시 이전 (181일째 입원일)
간병인 사용시간	24시간	24시간	11시간
1일 8시간이상 사용여부	O	O	X

- 10월 28일부터 180일한도 초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 지급금액**
: 5만원 × 2일 : 10만원 지급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지급일수는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각각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계속하여 보장합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제3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주한 영수증으로, 사업자의 직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65-2.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6.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 특별약관

66-1.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 특별약관

66-2.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66-1은 비갱신형으로 운영하며,
66-2는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3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0일한도)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요양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3조(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간병인이 피보험자의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간병인의 주요 업무(예시)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 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 ③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된 자에 한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지급일수는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각각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계속하여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름

니다.

- ②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제3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의 직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66-2.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7.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67-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67-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67-1은 비갱신형으로 운영하며,

67-2는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3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0일한도)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3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2.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④ 법 제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2. 「치료감호법」 제16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지급일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각각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계속하여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제3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여부 및 사용일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67-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8.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 특별약관

68-1.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 특별약관

68-2.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68-1은 비갱신형으로 운영하며,
68-2는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3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기 준	지 급 금 액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 (1일-180일)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7만원 미만	사용일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7만원 이상	사용일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간병인 사용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인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간병인을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을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태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하며,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제3조(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간병인이 피보험자의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간병인의 주요 업무(예시)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 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 ③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제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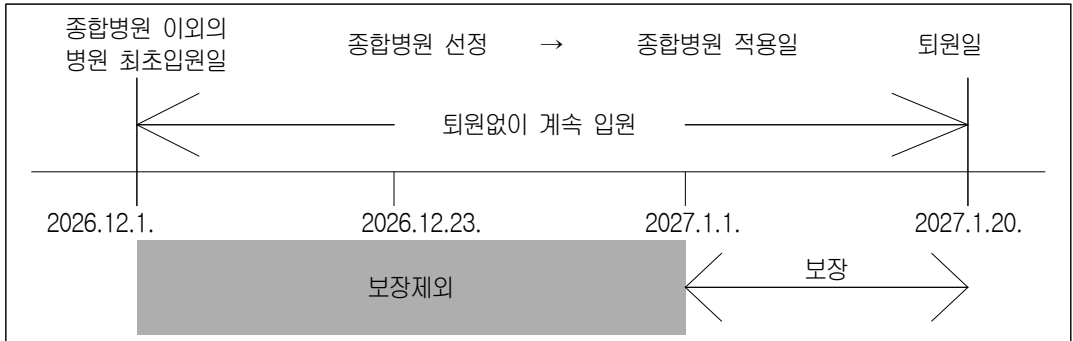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에서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간병인 사용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인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 계산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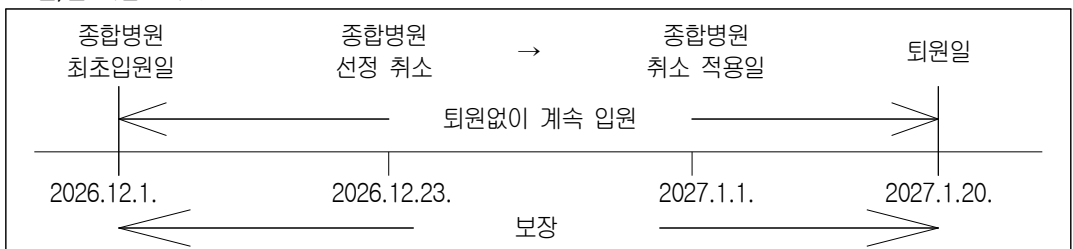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X년 4월 1일, 보험가입금액 : 2만원
- 입원기간 및 간병인 사용일 예시
 - 입원기간 : 2026년 4월 1일 ~ 2026년 4월 30일
 - 간병인 사용일 및 사용금액
 - 2026년 4월 10일 ~ 4월 17일 사용 : 총 사용일수 8일, 총사용금액 88만원, 1일당 평균 7만원 이상에 해당.
→ 2만원 × 8일 = 16만원 지급
 - 2026년 4월 20일 ~ 4월 24일 오전, 4월 24일 오후, 4월 25일 오후 ~ 4월 27일 사용 : 총 사용일수 8일, 총 사용금액 52만원, 1일당 평균 7만원 미만에 해당
→ 1만원 × 8일 = 8만원 지급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 지급금액
: 간병인 사용일수 16일, 보험금 16만원 + 8만원 = 24만원 지급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지급일수는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각각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계속하여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를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해당 「종합병원」 퇴원일까지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를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를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를 지급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등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제3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의 직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68-2.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9.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 특별약관

69-1.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 특별약관

69-2.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69-1은 비갱신형으로 운영하며,
69-2는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3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기 준	지 급 금 액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 (1일-180일)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7만원 미만	사용일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7만원 이상	사용일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간병인 사용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인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간병인을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을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제3조(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간병인이 피보험자의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간병인의 주요 업무(예시)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 보조, 휴식돕기, 번기사용 보조 등

- ③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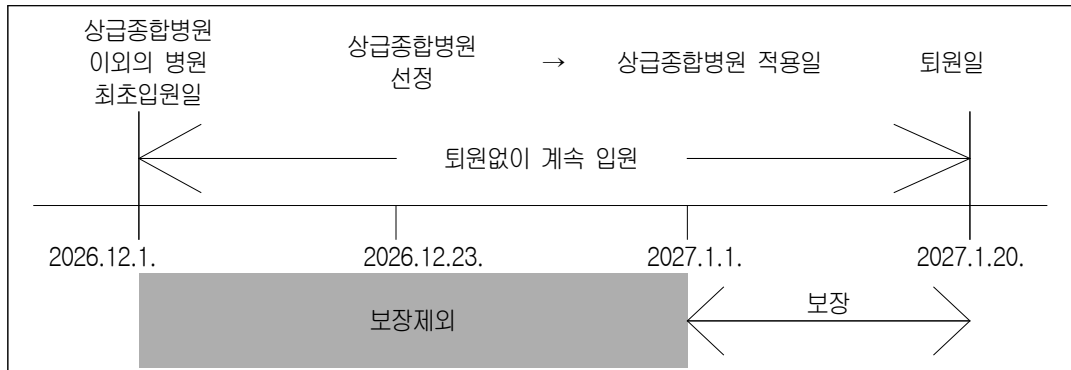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에서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간병인 사용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인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 계산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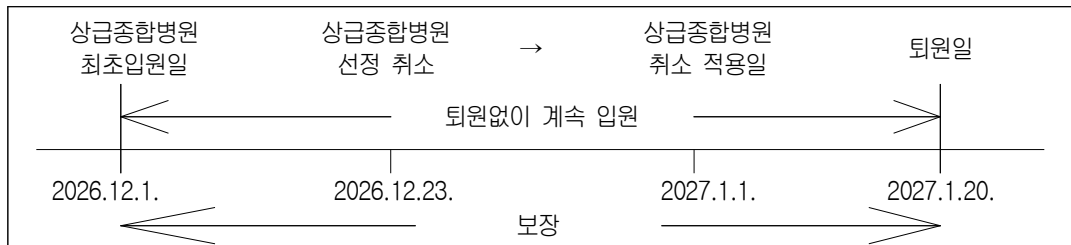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6년 4월 1일, 보험가입금액 : 2만원
- 입원기간 및 간병인 사용일 예시
 - 입원기간 : 2026년 4월 1일 ~ 2026년 4월 30일
 - 간병인 사용일 및 사용금액
 - 2026년 4월 10일 ~ 4월 17일 사용 : 총 사용일수 8일, 총사용금액 88만원,
1일당 평균 7만원 이상에 해당.
→ 2만원 × 8일 = 16만원 지급
 - 2026년 4월 20일 ~ 4월 24일 오전, 4월 24일 오후, 4월 25일 오후 ~ 4월 27일 사용
: 총 사용일수 8일, 총 사용금액 52만원, 1일당 평균 7만원 미만에 해당
→ 1만원 × 8일 = 8만원 지급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 지급금액
: 간병인 사용일수 16일, 보험금 16만원 + 8만원 = 24만원 지급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지급일수는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각각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계속하여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를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해당 「상급종합병원」 퇴원일까지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를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를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를 지급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등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제3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의 직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69-2.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갱신형 2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0. 스쿨존내어린이교통사고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스쿨존내어린이교통사고보장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이하 「스쿨존」이라 합니다) 내에서 아래의 교통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 가.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나.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등의 교통사고

구 분	지 급 금 액
스쿨존내어린이교통사고보장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자동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건설기계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 ②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제1항 제2호의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관할경찰서에서 교통사고로 접수된 경우를 말하며,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1.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8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1일당 8시간이상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기 준	지 급 금 액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 (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일당8시간이상) (181일이상)	간병인 사용 1일당 8시간이상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사용일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5일한도)

※ 간병인의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24시간을 1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정으로 간병인을 8시간이상 24시간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1일로 간주하나, 8시간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단, 181일째 입원일 이전에 간병인을 사용하여 181일째 입원일 이후 까지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 181일째 입원일을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으로 봅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단,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을 말합니다.

제4조(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피보험자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간병인이 피보험자의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간병인의 주요 업무(예시)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 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 ③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된 자에 한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의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24시간을 1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정으로 간병인을 8시간이상 24시간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1일로 간주하나, 8시간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단, 181일째 입원일 이전에 간병인을 사용하여 181일째 입원일 이후 까지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 181일째 입원일을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으로 봅니다.

[보장예시1]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X년 4월 1일, 보험가입금액 : 5만원
- 입원기간 및 간병인 사용일 예시
 - 입원기간 : 202X년 5월 1일 ~ 202X년 11월 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X년 5월 1일 오후 8시 ~ 10월 31일 오전 7시

1일기준	202X년 10월			
	28일 00시 ~ 24시 (181일째 입원일)	29일 00시 ~ 24시	30일 00시 ~ 24시	31일 00시 ~ 24시
간병인 사용시간	24시간	24시간	24시간	7시간
1일 8시간이상 사용여부	○	○	○	x

- 10월 28일이 181일째 입원일이므로 10월 28일 00시부터 보장
- 31일 00시 ~ 24시 이전 기준의 경우 간병인 사용시간이 7시간으로 8시간 이상 미충족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 지급금액
: 5만원 × 3일 : 15만원 지급

[보장예시2]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X년 4월 1일, 보험가입금액 : 5만원
- 입원기간 및 간병인 사용일 예시
 - 입원기간 : 202X년 5월 1일 ~ 202X년 11월 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X년 11월 15일 오전 9시 ~ 11월 17일 오후 3시

1일기준	202X년 11월		
	15일 오전 9시 ~ 16일 오전 9시 이전	16일 오전 9시 ~ 17일 오전 9시 이전	17일 오전 9시 ~ 18일 오전 9시 이전
간병인 사용시간	24시간	24시간	6시간
1일 8시간이상 사용여부	○	○	x

- 10월 28일이 181일째 입원일이므로 10월 28일부터 보장
- 17일 오전 9시 ~ 18일 오전 9시 이전 기준의 경우 간병인 사용시간이 6시간으로 8시간 이상 미충족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 지급금액
: 5만원 × 2일 : 10만원 지급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지급일수는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각각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보험금을 계속하여 보장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 퇴원일까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정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⑩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⑪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제3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의 직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

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4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 (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사용일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5일한도)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단,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을 말합니다.

제4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2.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④ 법 제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2. 「치료감호법」 제16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지급일수는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각각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계속하여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를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이외의 병원 퇴원일까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를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

던 중 해당 병원이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이외의 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정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를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를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제4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여부 및 사용일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장. 질병관련 특별약관

1. 질병후유장해(3~100%)(감액없음) 특별약관

1-1. 질병후유장해(3~100%)(감액없음) 특별약관

1-2. 질병후유장해(3~100%)(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후유장해(3~100%)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질병후유장해(3~100%)보험금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예시 : 질병후유장해(3~100%)(감액없음) 가입금액 100만원

○ 동일한 부위에 다른 질병으로 다음과 같이 진단을 받은 경우

- 하나의 질병으로 5%후유장해 진단시
⇒ 5%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5만원)
- 또 다른 질병으로 인해 동일한 부위에 60%후유장해 진단시
⇒ 60%후유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과 5%후유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차액 지급
(60만원 - 5만원 = 55만원)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 특별약관

2-1. 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 특별약관

2-2. 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후유장해(80%이상)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질병후유장해(80%이상)보험금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후유장해(80%이상)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조항은 계약전환 후 계약(4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계약전환 후 계약(4종)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후유장해(80%이상)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질병후유장해(50%이상)(감액없음) 특별약관

3-1. 질병후유장해(50%이상)(감액없음) 특별약관

3-2. 질병후유장해(50%이상)(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질병후유장해(50%이상)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질병후유장해(50%이상)보험금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후유장해(50%이상)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조항은 계약전환 후 계약(4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계약전환 후 계약(4종)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후유장해(50%이상)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질병후유장해(20~100%)(감액없음) 특별약관

4-1. 질병후유장해(20~100%)(감액없음) 특별약관

4-2. 질병후유장해(20~100%)(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후유장해(20~100%)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20~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질병후유장해(20~100%)보험금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예시 : 질병후유장해(20~100%)(감액없음) 가입금액 100만원

○ 동일한 부위에 다른 질병으로 다음과 같이 진단을 받은 경우

· 하나의 질병으로 30%후유장해 진단시

⇒ 30%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30만원)

· 또 다른 질병으로 인해 동일한 부위에 60%후유장해 진단시

⇒ 60%후유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과 30%후유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차액 지급
(60만원 - 30만원 = 30만원)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5-1.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5-2.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5-2.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은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태아)_신생아뇌출혈보장」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 세부보장을 포함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뇌졸중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뇌졸중」 및 「신생아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뇌졸중」 및 「신생아뇌출혈」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뇌졸중진단비	구 분	지 급 금 액
	뇌졸중진단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신생아뇌출혈진단시 (태아가입자에 한함)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

제2조(「뇌졸중」 및 「신생아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졸중」이라 함은 「뇌졸중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별표15】 참조)에서 「뇌졸중」에 해당하는 1. 거미막하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신생아뇌출혈」이라 함은 「뇌졸중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별표15】 참조)에서 「신생아뇌출혈」에 해당하는 1. 출산 손상으로 인한 두개내 열상 및 출혈, 2. 태아 및 신생아의 두개내 비외상성 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뇌졸중」 및 「신생아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 및 「신생아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 및 「신생아뇌출혈」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용어설명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뇌혈관조영술]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희게 촬영되는 물질(조영제)을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γ 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여하여 그 분포상태의 단면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촬영법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 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뇌척수액 검사]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어 뇌졸중진단비를 지급받은 이 후에 「신생아뇌출혈」로 진단 확정시에는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졸중진단비(단, 신생아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조항은 계약전환 후 계약(4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계약전환 후 계약(4종)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졸중진단비(단, 신생아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 뇌출혈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6-1. 뇌출혈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6-2. 뇌출혈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6-2. 뇌출혈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은 「뇌출혈진단비(감액없음)(태아)_신생아뇌출혈보장」과 「뇌출혈진단비(감액없음)」 세부보장을 포함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뇌출혈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뇌출혈」 및 「신생아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뇌출혈」 및 「신생아뇌출혈」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뇌출혈진단비	뇌출혈진단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신생아뇌출혈진단시 (태아가입자에 한함)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

제2조(「뇌출혈」 및 「신생아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출혈」이라 함은 「뇌출혈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별표16】 참조)에서 「뇌출혈」 해당하는 1. 거미막하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신생아뇌출혈」이라 함은 「뇌출혈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별표16】 참조)에서 「신생아뇌출혈」에 해당하는 1. 출산 손상으로 인한 두개내 열상 및 출혈, 2. 태아 및 신생아의 두개내 비외상성 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뇌출혈」 및 「신생아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뇌출혈」 및 「신생아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출혈」 및 「신생아뇌출혈」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용어설명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뇌혈관조영술]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희게 촬영되는 물질(조영제)을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γ 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여하여 그 분포상태의 단면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촬영법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 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뇌척수액 검사]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어 뇌출혈진단비를 지급받은 이후에 「신생아뇌출혈」로 진단 확정시에는 뇌출혈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출혈진단비(단, 신생아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조항은 계약전환 후 계약(4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계약전환 후 계약(4종)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출혈진단비(단, 신생아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7-1.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7-2.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7-2.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은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태아)_신생아뇌출혈 보장」과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 세부보장을 포함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뇌혈관질환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뇌혈관질환」 및 「신생아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뇌혈관질환」 및 「신생아뇌출혈」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뇌혈관질환진단비	뇌혈관질환진단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신생아뇌출혈진단시 (태아가입자에 한함)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

제2조(「뇌혈관질환」 및 「신생아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별표17】참조)에서 「뇌혈관질환」에 해당하는 1. 거미막하 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8. 기타 뇌혈관 질환,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10.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신생아뇌출혈」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별표17】참조)에서 「신생아뇌출혈」에 해당하는 1. 출산 손상으로 인한 두개내 열상 및 출혈, 2. 태아 및 신생아의 두개내 비외상성 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뇌혈관질환」 및 「신생아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및 「신생아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 및 「신생아뇌출혈」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용어설명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뇌혈관조영술]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희게 촬영되는 물질(조영제)을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γ 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여하여 그 분포상태의 단면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촬영법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뇌척수액 검사]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어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 받은 이후에 「신생아뇌출혈」로 진단 확정시에는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혈관질환진단비(단, 신생아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는 제외함)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함)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조항은 계약전환 후 계약(4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계약전환 후 계약(4종)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혈관질환진단비(단, 신생아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8.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8-1.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8-2.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별표18】참조)에 해당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조항은 계약전환 후 계약(4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계약전환 후 계약(4종)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 허혈성심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9-1. 허혈성심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9-2. 허혈성심질환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허혈성심질환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허혈성심질환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별표19】참조)에 해당하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 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허혈성심질환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조항은 계약전환 후 계약(4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계약전환 후 계약(4종)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허혈성심질환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어린이심장관련특정질병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어린이심장관련특정질병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어린이심장관련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어린이심장관련 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어린이심장관련특정질병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어린이심장관련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어린이심장관련특정질병」이라 함은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Kawasaki disease with heart complication)」과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Rheumatic fever with valvular impairment)」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Kawasaki disease with heart complication)」이라 함은 해당 전문의에 의해 가와사키병으로 진단되고 심초음파상 반드시 가와사키병으로 인한 심장관상동맥(심장동맥)의 확장이나 심장동맥류의 형성이 있어야 합니다.
- ③ 제1항에서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 열(Rheumatic fever with valvular impairment)」이라 함은 해당 전문의에 의해 류마티스열로 진단되고, 심초음파상 반드시 류마티스열에 의한 한 개 이상의 심장판

막 손상이 있어야 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어린이심장관련특정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어린이심장관련 특정질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어린이심장관련특정질병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인슐린의존당뇨병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인슐린의존당뇨병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인슐린의존당뇨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제1형당뇨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인슐린의존당뇨병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인슐린의존당뇨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인슐린의존당뇨병」이라 함은 체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감소됨으로써 대사에 장애가 생기고 혈당이 높아지는 질병으로 해당 전문의에 의해 「인슐린의존당뇨병 분류표」(【별표20】참조)에 해당하는 「인슐린의존당뇨병」으로 진단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인슐린의존당뇨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인슐린의존당뇨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인슐린의존당뇨병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이라 함은 '영구적인 재생불량성 빈혈'로서 피보험자가 근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혈, 면역억제제, 골수 촉진제와 같은 표준적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골수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질병 상태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영구적인 재생불량성 빈혈'이라 함은 만성 골수부전상태로써 호중구 수가 200/mm³ 미만 이거나, 또는 골수세포총실성(bone marrow cellularity)이 25%이하 이고 동시에 다음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호중구 수가 500/mm³ 미만
 2. 혈소판 수가 20,000/mm³ 미만
 3. 망상적혈구 수가 20,000/mm³ 미만
- ③ 단, 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재생불량성 빈혈은 보장에서 제외 됩니다.
- ④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혈액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조항은 계약전환 후 계약(4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계약전환 후 계약(4종)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3.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중증세균성수막염」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중증세균성수막염」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중증세균성수막염」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세균성수막염」이라 함은 세균성 감염(HIV 감염인 경우의 세균성 수막염은 제외)으로 인한 뇌수막 또는 척수막에 중대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중증세균성수막염 분류표」(【별표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1. 척수액에서 세균의 분리배양 되었거나, 척수액에서 세균은 배양되지 않았지만 임상적으로 환자가 명확한 수막 자극 증상이 있으면서 척수액 소견에 백혈구수 증가와 당 감소, 단백증가가 있고
 2. 동시에 아래와 같은 뇌영상 검사상의 이상 소견과 함께 그 결과로 “불가역적이면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핍”을 보여야 합니다. 이때 진단확정은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기록을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② 상기에서 '뇌영상 검사상의 이상 소견'이라 함은 자기공명영상(MRI), 전산화단층촬영(CT)등에서 경막하삼출(subdural effusion), 수두증(Hydrocephalus), 뇌종양(Brain abscess), 뇌경색(Cerebral infarction), 뇌위축(Brain atrophy), 경막하혈종(Subdural hematoma), 뇌기형(Megacisterna magna), 국소적 허혈(Focal infarction), 작은종괴(Mass), 뇌수막의 조영증강(Meningeal enhancement)의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이 소견들은 「중증세균성수막염」의 특징적 소견이 발병한 당시 새롭게 출현함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 ③ 상기에서 「중대하고 불가역적인 영구한 신경학적 결핍」이란 주관적인 자각증상(Symptom)이 아니라 신경학적인 검사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신경학적 증후(sign)로 나타난 장애로서 장애분류표상 신경계, 정신행동장애의 해당지급률 25% 이상인 장애상태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4.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 특별약관

14-1.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 특별약관

14-2.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암진단비(유사암제외)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2항의 「암」에서 제3항의 「유사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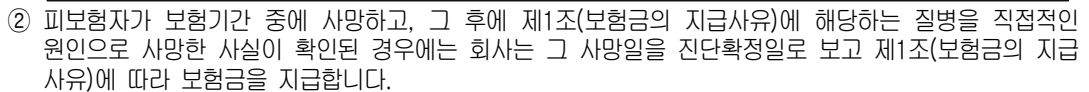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① 보통약관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진단비(유사암제외)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2.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다만, 회사가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형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형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254 -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진단비(유사암제외)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5. 암진단비(유사암제외)(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암진단비(유사암제외)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라 함은 제2항의 「암」에서 제3항의 「유사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22-2】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22-3】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다만,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진단비(유사암제외)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조항은 계약전환 후 계약(4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③ 회사는 계약전환 후 계약(4종)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진단비(유사암제외)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6.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16-1.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16-2.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유사암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유사암진단비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각각 1회한)

제2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1.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22-2】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22-3】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하며, 이 경우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 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항 따른 이 특별약관의 소멸사유에 해당하고,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각각 진단받아 유사암진단비 지급사유가 각1회씩 총4회 발생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조항은 계약전환 후 계약(4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계약전환 후 계약(4종)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각각 진단받아 유사암진단비 보험금 지급사유가 각1회씩 총4회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7. 신통합암(전이포함)진단비 II(유사암제외)(감액없음) 특별약관

17-1. 신통합암(전이포함)진단비 II(유사암제외)(감액없음) 특별약관

17-2. 신통합암(전이포함)진단비 II(유사암제외)(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총 8개의 세부보장으로 나뉩니다.

보 장

- 1) 신통합암진단비Ⅱ(특정암Ⅱ(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 2) 신통합암진단비Ⅱ(골및생식기관암(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 3) 신통합암진단비Ⅱ(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 4) 신통합암진단비Ⅱ(2대부위암)(감액없음) 보장
- 5) 신통합암진단비Ⅱ(2대부위암Ⅲ(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 6) 신통합암진단비Ⅱ(특정소화기관암(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 7) 신통합암진단비Ⅱ(2대부위암Ⅳ(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 8) 신통합암진단비Ⅱ(특정4대암)(감액없음) 보장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신통합암(전이포함)진단비Ⅱ(유사암제외)(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신통합암(전이포함)Ⅱ(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신통합암(전이포함)Ⅱ(유사암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세부보장에 따라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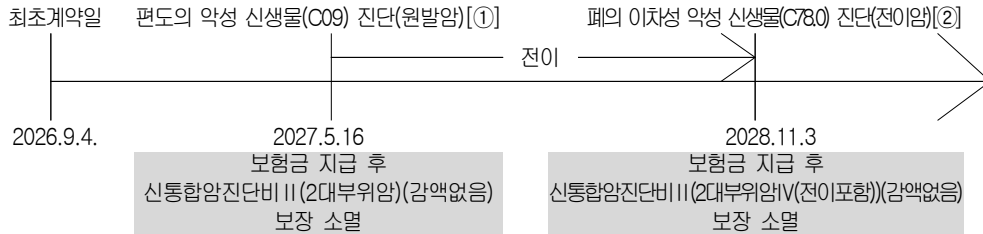
구 분	지 급 금 액
신통합암진단비Ⅱ(특정암Ⅱ(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신통합암진단비Ⅱ(골및생식기관암(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신통합암진단비Ⅱ(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신통합암진단비Ⅱ(2대부위암)(감액없음) 보장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신통합암진단비Ⅱ(2대부위암Ⅲ(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신통합암진단비Ⅱ(특정소화기관암(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신통합암진단비Ⅱ(2대부위암Ⅳ(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신통합암진단비Ⅱ(특정4대암)(감액없음) 보장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지급 예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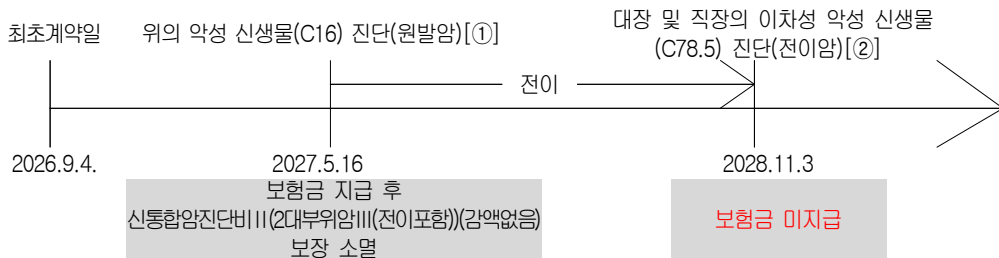
- ① : 2027.7.15. 진단확정된 특정암Ⅱ(전이포함)의 경우 특정암(전이포함)(감액없음)보장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특정암Ⅱ(전이포함)(감액없음)보장 소멸
- ② : 2027.12.09. 진단확정된 2대부위암의 경우 2대부위암보장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2대부위암(감액없음)보장 소멸
- ③ : 2028.8.5. 진단확정된 특정암Ⅱ(전이포함)의 경우 이미 2027.7.15. 특정암Ⅱ(전이포함)(감액없음)보장이 소멸되었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 ④ : 2029.4.21. 진단확정된 특정4대암의 경우 특정4대암보장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특정4대암(감액없음)보장 소멸

[보험금 지급 예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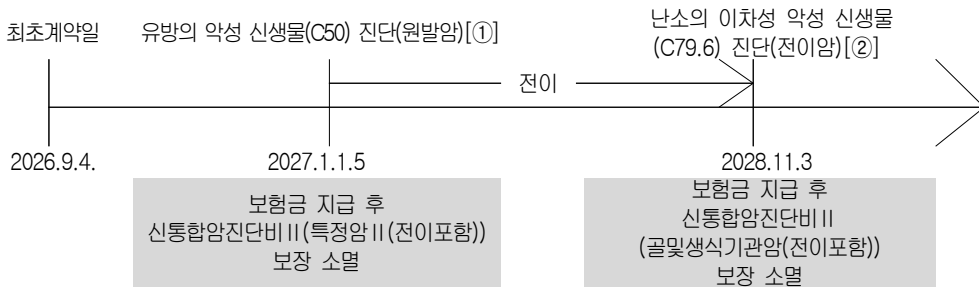
- ① : 2027.5.16. 진단확정된 편도의 악성 신생물(C09)(원발암)의 경우 2대부위암보장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2대부위암(감액없음) 보장 **소멸**
- ② : 2028.11.3. 진단확정된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0)(전이암)의 경우 2대부위암Ⅳ(전이포함) 보장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2대부위암Ⅳ(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소멸**

[보험금 지급 예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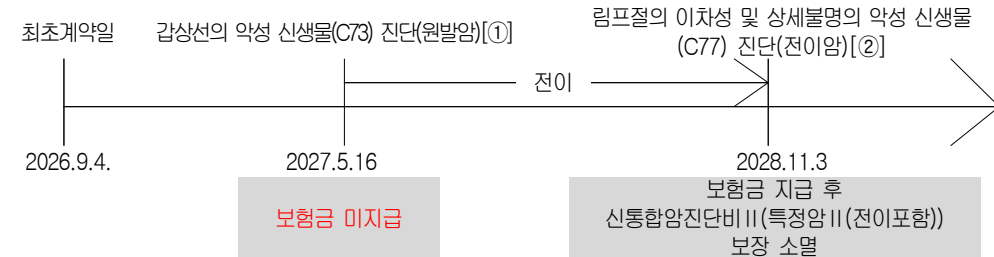
- ① : 2027.5.16. 진단확정된 위의 악성 신생물(C16)(원발암)의 경우 2대부위암Ⅲ(전이포함)보장 보험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2대부위암Ⅲ(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소멸**
- ② : 2028.11.3. 진단확정된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5)(전이암)의 경우 이미 2028.5.16. 2대부위암Ⅲ(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이 소멸되었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 예시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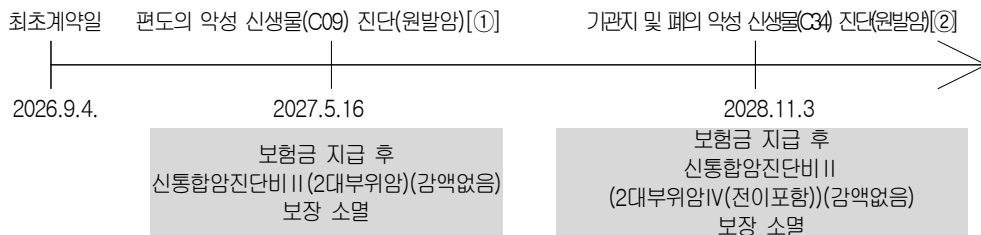
- ① : 2026.12.9 진단확정된 유방의 악성 신생물(C50)(원발암)의 경우 특정암Ⅱ(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으로 지급 후 특정암Ⅱ(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소멸**
- ② : 2028.11.3. 진단확정된 난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9.6)(전이암)의 경우 1년경과시점 이후에 진단된 것으로 골밀생식기관암(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골밀생식기관암(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소멸**

[보험금 지급 예시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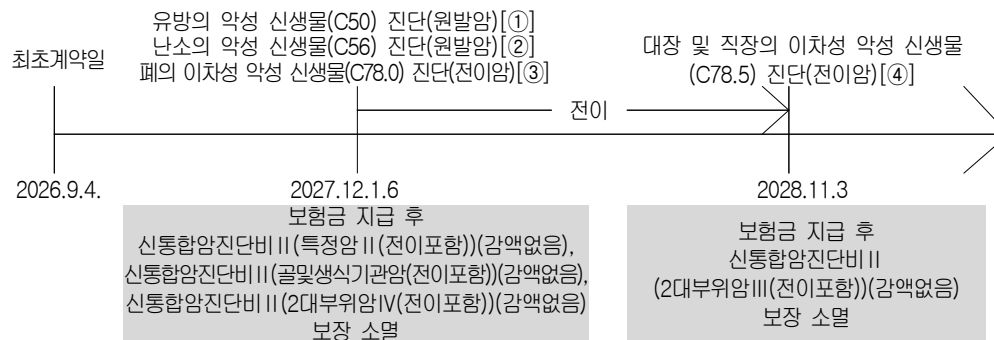
- ① : 2027.5.16. 진단확정된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C73)(원발암)의 경우 신통합암(전이포함)진단비II(유사암제외)(감액없음) 보장항목 제외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
- ② : 2028.11.3. 진단확정된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C77)(전이암)의 경우 특정암II(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특정암II(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소멸**

[보험금 지급 예시6]



- ① : 2027.5.16. 진단확정된 편도의 악성 신생물(C09)(원발암)의 경우 2대부위암보장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2대부위암(감액없음) 보장 **소멸**
- ② : 2028.11.3. 진단확정된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C34)(원발암)의 경우 2대부위암IV(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2대부위암IV(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소멸**

[보험금 지급 예시7]



- ① : 2027.12.16. 진단확정된 유방의 악성 신생물(C50)(원발암)의 경우 특정암II(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특정암II(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소멸**
- ② : 2027.12.16. 동시 진단확정된 난소의 악성 신생물(C56)(원발암)의 경우 골밀생식기관암(전이포함) 보장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골밀생식기관암(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소멸**
- ③ : 2027.12.16. 진단확정된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0)(전이암)의 경우 2대부위암IV(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2대부위암IV(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소멸**
- ④ : 2028.11.3. 동시 진단확정된 대장 및 직장암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5)(전이암)의 경우 2대부위암III(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2대부위암III(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소멸**

제2조(「신통합암(전이포함)Ⅱ(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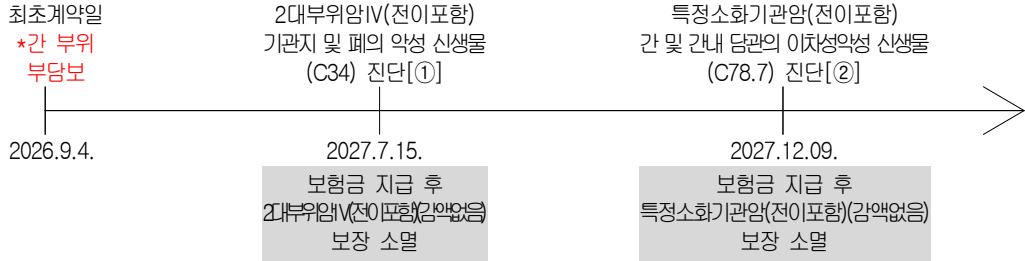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신통합암(전이포함)Ⅱ(유사암제외)」이라 함은 「특정암Ⅱ(전이포함)」, 「골밀생식기관암(전이포함)」, 「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전이포함)」, 「2대부위암」, 「2대부위암Ⅲ(전이포함)」, 「특정소화기관암(전이포함)」, 「2대부위암Ⅳ(전이포함)」, 「특정4대암」을 총칭하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특정암Ⅱ(전이포함)」, 「골밀생식기관암(전이포함)」, 「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전이포함)」, 「2대부위암」, 「2대부위암Ⅲ(전이포함)」, 「특정소화기관암(전이포함)」, 「2대부위암Ⅳ(전이포함)」, 「특정4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신통합암(전이포함)Ⅱ(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66】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아래 제4항의 「암」에서 제5항의 「유사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④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 ⑤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 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 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22-2】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22-3】 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제4항의 「암」중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제4항의 「암」에 한하여 적용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⑦ 제1항의 「특정암Ⅱ(전이포함)」, 「골밀생식기관암(전이포함)」, 「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전이포함)」, 「2대부위암Ⅲ(전이포함)」, 「특정소화기관암(전이포함)」, 「2대부위암Ⅳ(전이포함)」에는 제6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⑧ 「특정암Ⅱ(전이포함)」, 「골밀생식기관암(전이포함)」, 「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전이포함)」, 「2대부위암」, 「2대부위암Ⅲ(전이포함)」, 「특정소화기관암(전이포함)」, 「2대부위암Ⅳ(전이포함)」, 「특정4대암」,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입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정암Ⅱ(전이포함)」, 「골밀생식기관암(전이포함)」, 「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전이포함)」, 「2대부위암」, 「2대부위암Ⅲ(전이포함)」, 「특정소화기관암(전이포함)」, 「2대부위암Ⅳ(전이포함)」, 「특정4대암」,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⑨ 제8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특정암Ⅱ(전이포함)」, 「골밀생식기관암(전이포함)」, 「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전이포함)」, 「2대부위암」, 「2대부위암Ⅲ(전이포함)」, 「특정소화기관암(전이포함)」, 「2대부위암Ⅳ(전이포함)」, 「특정4대암」, 「암」,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보험금 지급 예시9]



- ① : 2027.7.15. 진단확정된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C34)(원발암)의 경우 2대부위암Ⅳ(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2대부위암Ⅳ(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소멸
- ② : 2027.12.09. 진단확정된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7)(전이암)이 ①항의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C34)(원발암)에서 전이된 경우 「제5장 제도성 특별약관의 2.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의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소화기관암(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특정소화기관암(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소멸**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조(「신통합암(전이포함)Ⅱ(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의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신통합암진단비Ⅱ(특정암Ⅱ(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신통합암진단비Ⅱ(골밀생식기관암(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신통합암진단비Ⅱ(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신통합암진단비Ⅱ(2대부위암)(감액없음) 보장」, 「신통합암진단비Ⅱ(2대부위암Ⅲ(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신통합암진단비Ⅱ(특정소화기관암(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신통합암진단비Ⅱ(2대부위암Ⅳ(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신통합암진단비Ⅱ(특정4대암)(감액없음) 보장」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보장이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모든 보장이 소멸 된 경우, 즉 총8회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8.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감액없음) 특별약관

18-1.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감액없음) 특별약관

18-2.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관련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제3조(「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제외)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암직접치료입원비 (요양병원제외) (1일-180일)	암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0일 한도)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180일 한도)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이하 「암관련질병」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22-2】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22-3】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관련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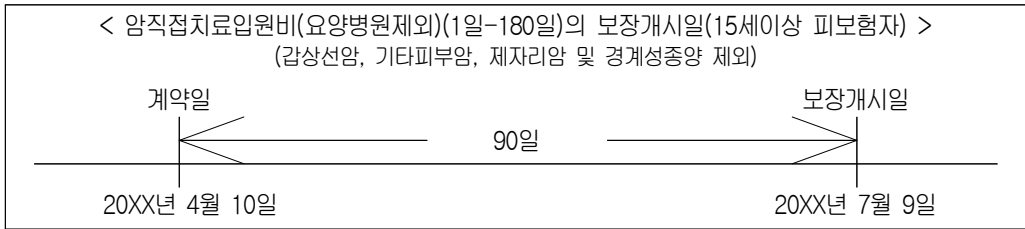
- ①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③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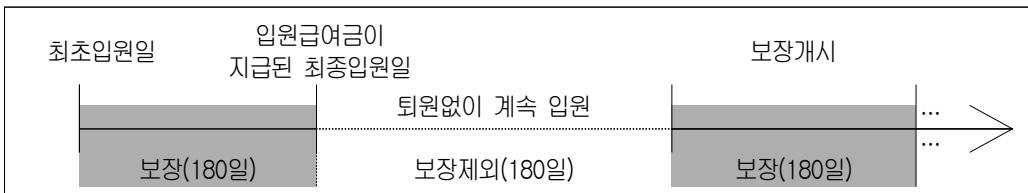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관련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은 제외하며, 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2.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③ 동일한 「암관련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관련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④ 다음과 같이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⑤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9.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관련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제3조(「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제외)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암직접치료입원비 (요양병원제외) (1일-180일)	암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0일 한도)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180일 한도)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이하 「암관련질병」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22-2】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22-3】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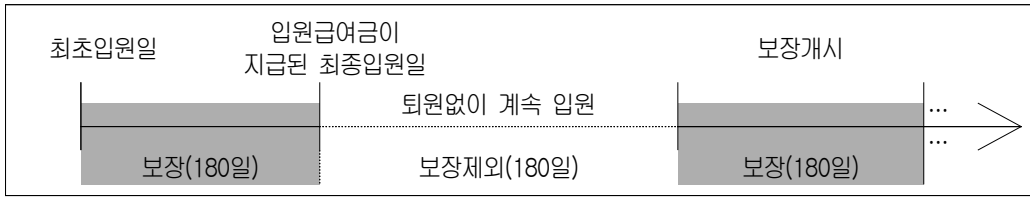
- ①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③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관련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은 제외하며, 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암관련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관련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다음과 같이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210일)(감액없음) 특별약관

20-1.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210일)(감액없음) 특별약관

20-2.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210일)(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21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관련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제3조(「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제외)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암직접치료입원비 (요양병원제외) (1일-210일)	암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210일 한도)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210일 한도)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이하 「암관련 질병」이라 함이다)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22-2】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22-3】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입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①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함입니다)를 말합니다.
- ②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③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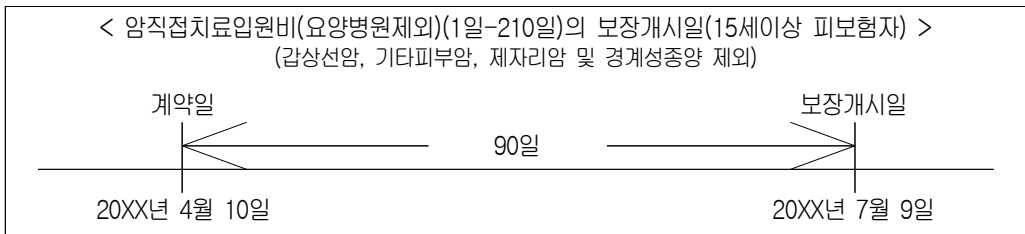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관련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에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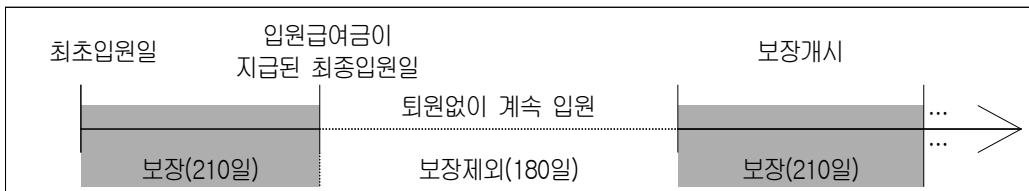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관련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은 제외하며, 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210일)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2.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21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21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③ 동일한 「암관련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관련질환」에 대한 입원이더라도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21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④ 다음과 같이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21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21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⑤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21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21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1.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210일)(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21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관련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제3조(「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제외)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암직접치료입원비 (요양병원제외) (1일-210일)	암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210일 한도)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210일 한도)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관련질병을 제거하거나 암관련질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를 말합니다. 하지만, 암관련질병이나 암관련질병 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는 ‘암관련질병의 직접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이하 「암관련질병」이라 함이다)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22-2】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22-3】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관련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①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함이다)를 말합니다.
- ②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

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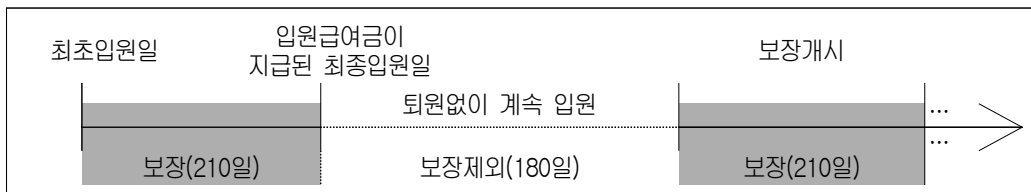
- ③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관련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은 제외하며, 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21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21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암관련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관련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21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다음과 같이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21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21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장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21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21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2.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관련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관련질병」으로 인해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1일째 입원일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요양병원 암입원비 (1일-90일)	암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90일 한도)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 (90일 한도)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이하 「암관련질병」이라 함이다)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별표22-1】 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별표22-1】 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별표22-2】 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별표22-3】 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관련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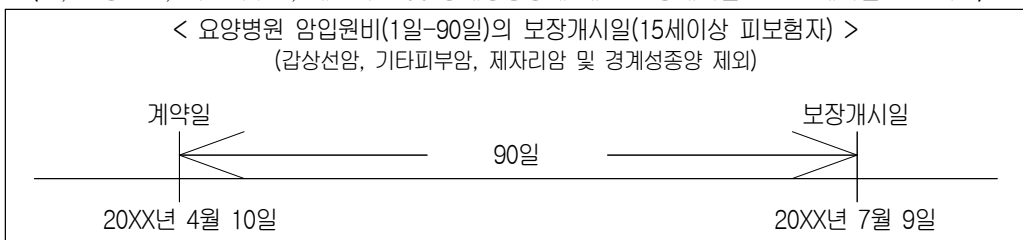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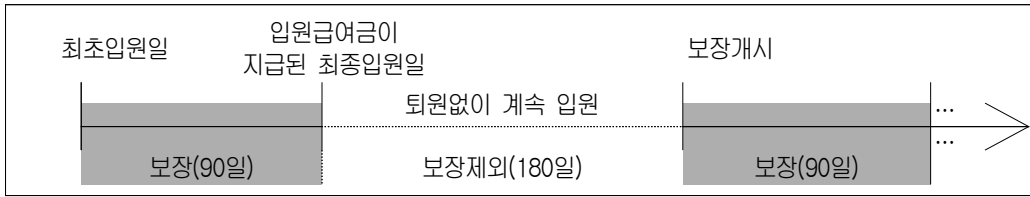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관련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2.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9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③ 동일한 「암관련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관련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④ 다음과 같이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의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의 누적 지급일수(이하 “누적 지급일수”라 합니다)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이 완치된 이후에 해당 질병을 다시 진단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⑥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8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3.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관련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관련질병」으로 인해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1일째 입원일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요양병원 암입원비 (1일-90일)	암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90일 한도)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 (90일 한도)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이하 「암관련질병」이라 함)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 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22-2】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22-3】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관련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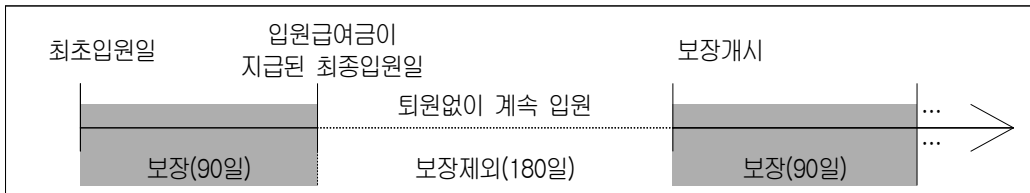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관련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9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암관련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관련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다음과 같이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의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의 누적 지급일수(이하 “누적 지급일수”라 합니다)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이 완치된 이후에 해당 질병을 다시 진단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4. 질병1~5종수술비Ⅳ 특별약관

24-1. 질병1~5종수술비Ⅳ 특별약관

24-2. 질병1~5종수술비Ⅳ(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1~5종수술비Ⅳ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Ⅳ」(【별표100】 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질병1~5종수술비Ⅳ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 장
질병1~5종수술비Ⅳ(1종) 보장
질병1~5종수술비Ⅳ(2종) 보장
질병1~5종수술비Ⅳ(3종) 보장
질병1~5종수술비Ⅳ(4종) 보장
질병1~5종수술비Ⅳ(5종) 보장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수술로 간주합니다.

1.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
2.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행한 레이저(Laser)수술.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꽃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1~5종수술 분류표Ⅳ」(【별표100】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에서 이미 지급한 수술비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함은 같은 수술실에서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체간골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신체부위로 봅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열거된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1. 일반적인 질병(제자리암, 경계성종양 포함) 치료목적의 수술
 - 가. 치료목적의 Mammotomy(맘모톰 유방양성병변절제술)
 - 나. 경질적 자궁, 난소, 난관 수술
 - 다. 망막박리 수술
 - 라.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 마. 냉동응고에 의한 안구 수술
 - 바. 중이내 튜브유치술
 - 사.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 아.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고주파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2. 악성신생물 치료목적의 수술
 - 가. 내시경 수술, 카테터(Catheter)·고주파전극 등에 의한 악성신생물 수술
 - 나. 기타 악성신생물수술(단,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 및 비관혈적 근치수술 제외)
 3. 악성신생물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 가. 악성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단, 5,000Rad 이상의 조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악성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Stereotactic radiotherapy)를 포함함)
 - 나.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 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4.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 기법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아래의 질병1~5종수술비IV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단,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은 보상합니다)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5. 비만(E66) 수술
6.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③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1~5종수술비IV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 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5. 질병1~5종수술비Ⅳ(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1~5종수술비Ⅳ(납기후2배보장)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Ⅳ」 (【별표100】 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납입기간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질병1~5종수술비Ⅳ	20년납 가입자	계약일로부터 10년미만 발생시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 100%
		계약일로부터 10년이상 20년미만 발생시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 150%
		계약일로부터 20년이상 발생시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 200%
	30년납 가입자	계약일로부터 15년미만 발생시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 100%
		계약일로부터 15년이상 30년미만 발생시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 150%
		계약일로부터 30년이상 발생시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 200%

[납입기간별 지급보험금 예시]

① 20년납 가입자, 1종 수술비 기준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
10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20년 이상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50%	보험가입금액의 200%	...
2026.4.10 (보험계약일)	2036.4.10.	2046.4.10.	

② 30년납 가입자, 1종 수술비 기준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
15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5년 이상 30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30년 이상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50%	보험가입금액의 200%	...
2026.4.10 (보험계약일)	2041.4.10.	2056.4.10.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 장
질병1~5종수술비Ⅳ(1종)(납기후2배보장) 보장
질병1~5종수술비Ⅳ(2종)(납기후2배보장) 보장
질병1~5종수술비Ⅳ(3종)(납기후2배보장) 보장
질병1~5종수술비Ⅳ(4종)(납기후2배보장) 보장
질병1~5종수술비Ⅳ(5종)(납기후2배보장) 보장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수술로 간주합니다.
 1.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
 2.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행한 레이저(Laser)수술.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1~5종수술 분류표Ⅳ」 (【별표100】 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에서 이미 지급한 수술비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함은 같은 수술실에서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체간골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신체부위로 봅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열거된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1. 일반적인 질병(제자리암, 경계성종양 포함) 치료목적의 수술
 - 가. 치료목적의 Mammotomy(맘모톰 유방양성병변절제술)
 - 나. 경질적 자궁, 난소, 난관 수술
 - 다. 망막박리 수술
 - 라.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 마. 냉동응고에 의한 안구 수술

- 바. 종이내 튜브유치술
- 사.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 아. 내시경(Fiv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고주파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 2. 악성신생물 치료목적의 수술
 - 가. 내시경 수술, 카테터(Catheter)·고주파전극 등에 의한 악성신생물 수술
 - 나. 기타 악성신생물수술(단,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 및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수술 제외)
- 3. 악성신생물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 가. 악성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단, 5,000Rad 이상의 조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악성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Stereotactic radiotherapy)를 포함함)
 - 나.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 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 4.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 기법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아래의 질병1~5종수술비IV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단,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단,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은 보상합니다)
-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 5. 비만(E66) 수술
- 6.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③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1~5종수술비IV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 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

- 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6. 암수술비(유사암제외)(최초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26-1. 암수술비(유사암제외)(최초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26-2. 암수술비(유사암제외)(최초1회한)(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수술비(유사암제외)(최초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암수술비(유사암제외)(최초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 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②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1.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22-2】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22-3】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암(유사암제외)」라 함은 제1항의 「암」에서 제2항의 「유사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④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8.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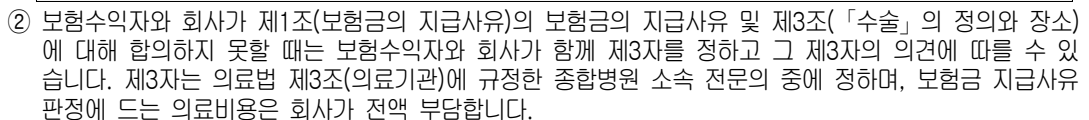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 용어의 정의

-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 암수술비(유사암제외)(최초1회한)의 보장개시일(15세이상 피보험자) >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사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수술비(유사암제외)(최초1회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7. 암수술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 특별약관

27-1. 암수술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 특별약관

27-2. 암수술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수술비(유사암제외)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암수술비(유사암제외)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 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②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1.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별표22-1】 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별표22-1】 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별표22-2】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별표22-3】 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암(유사암제외)」라 함은 제1항의 「암」에서 제2항의 「유사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④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8.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관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⑤ 제4항 제7호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⑥ 제4항 제7호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8. 유사암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28-1. 유사암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28-2. 유사암수술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유사암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유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유사암수술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1.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22-2】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22-3】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8.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⑤ 제4항 제7호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⑥ 제4항 제7호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으며, 제1항의 「수술」에서도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료원의 의사, 치과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환금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9. 암수술비(유사암제외)(최초1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수술비(유사암제외)(최초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암수술비(유사암제외)(최초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②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1.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22-2】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22-3】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암(유사암제외)」라 함은 제1항의 「암」에서 제2항의 「유사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④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리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8.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⑤ 제4항 제7호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⑥ 제4항 제7호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수술비(유사암제외)(최초1회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0. 암수술비(유사암제외)(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수술비(유사암제외)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유사암제외)」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암수술비(유사암제외)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②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1.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22-2】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22-3】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암(유사암제외)」라 함은 제1항의 「암」에서 제2항의 「유사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④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8.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⑤ 제4항 제7호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⑥ 제4항 제7호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꽃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1.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1-1.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1-2.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3대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3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3대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3대고액치료비암」이라 함은 「3대고액치료비암 분류표」(【별표23】참조)에 해당하는 1.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2.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3.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3대고액치료비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3대고액치료비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3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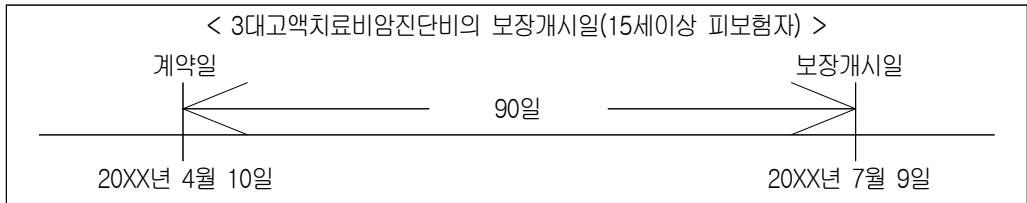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2.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3대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3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2.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3대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3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3대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3대고액치료비암」이라 함은 「3대고액치료비암 분류표」(【별표23】참조)에 해당하는 1.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2.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3.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3대고액치료비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3대고액치료비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3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조항은 계약전환 후 계약(4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계약전환 후 계약(4종)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3. 전반발달장애진단비 특별약관

33-1. 전반발달장애진단비 특별약관

33-2. 전반발달장애진단비(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전반발달장애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전반발달장애」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전반발달장애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전반발달장애」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전반발달장애」이라 함은 「전반발달장애 분류표」(【별표2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전반발달장애」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와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③ 회사가 「전반발달장애」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검사결과지(ADOS, ADI-R 등), 진료비계산서, 의사처방전 등 진단 확인이 가능한 서류)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전반발달장애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4. 다발성소아암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4-1. 다발성소아암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4-2. 다발성소아암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다발성소아암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다발성소아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다발성소아암」으로 진

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다발성소아암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다발성소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다발성소아암」이라 함은 「다발성소아암 분류표」(【별표25】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다발성소아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다발성소아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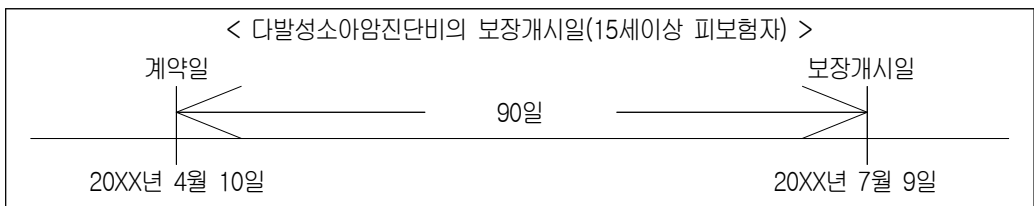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다발성소아암진단비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2.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다발성소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다발성소아암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5. 소아백혈병진단비 특별약관

35-1. 소아백혈병진단비 특별약관

35-2. 소아백혈병진단비(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소아백혈병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소아백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소아백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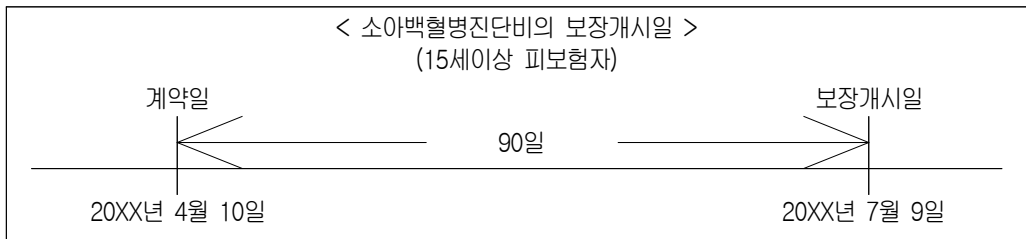
구 분	지 급 금 액
소아백혈병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소아백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소아백혈병」이라 함은 악성으로 변형된 조혈세포가 골수 및 림프조직에서 악성변형이 초래된 후 말초혈액으로 출현하고 다른 조직으로 침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으로 「소아백혈병 분류표」(【별표26】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소아백혈병」의 진단확정은 해당 전문의에 의해 임상학적으로 진단되고 병리전문의에 의해 골수조직검사 및 혈액검사로 진단되어야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소아백혈병진단비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2.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소아백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소아백혈병」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소아백혈병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6.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조혈모세포이식」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각종 혈액질환 및 악성종양 치료시 발생하는 골수부전상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기술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동종(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자가(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기술을 말합니다. 단,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기술은 제외합니다.
 1. 「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동종(allogenic)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자가(autologous)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있는 제대혈내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기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조항은 계약전환 후 계약(4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계약전환 후 계약(4종)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7.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7-1.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7-2.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 등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중 최초로 발생한 치료에 대해서 아래 구분에 따라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 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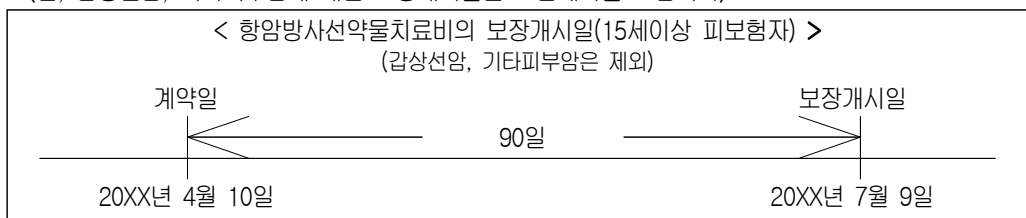
2.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스, 셀레니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항암방사선악물치료비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연령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보험계약일
2.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항암방사선악물치료비를 받은 후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악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항암방사선악물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악물치료비를 받은 후 「암」으로 항암방사선악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사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8.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등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중 최초로 발생한 치료에 대해서 아래 구분에 따라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 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스,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받은 후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받은 후 「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조항은 계약전환 후 계약(4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계약전환 후 계약(4종)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9.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II(유사암제외)(감액없음) 특별약관

39-1.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II(유사암제외)(감액없음) 특별약관

39-2.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II(유사암제외)(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총 8개의 세부보장으로 나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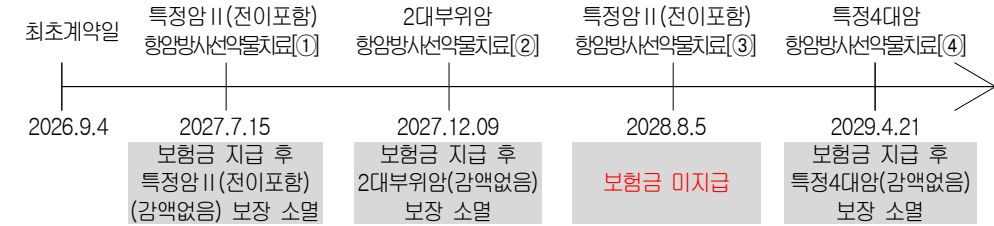
보 장
1)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특정암 II(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2)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골밀생식기관암(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3)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4)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2대부위암)(감액없음) 보장
5)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2대부위암III(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6)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특정소화기관암(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7)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2대부위암IV(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8)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특정4대암)(감액없음) 보장

-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II(유사암제외)(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신통합암(전이포함) II(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신통합암(전이포함) II(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신통합암(전이포함) II(유사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세부보장에 따라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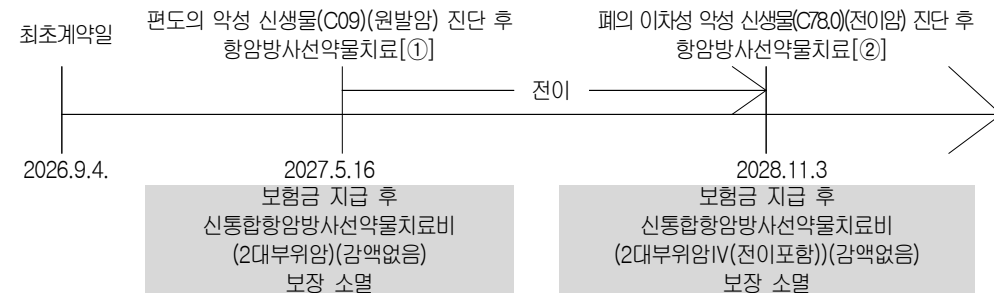
구 분	지 급 금 액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특정암 II(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골밀생식기관암(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전이포함)) 보장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2대부위암)(감액없음) 보장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2대부위암III(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특정소화기관암(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2대부위암IV(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특정4대암)(감액없음) 보장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지급 예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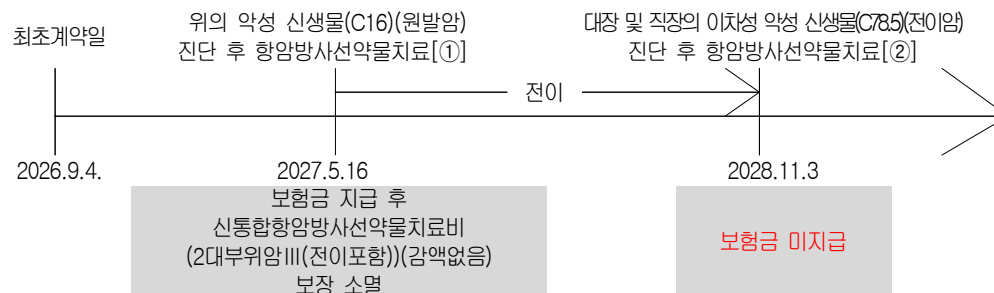
- ① : 2027.7.15.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특정암 II(전이포함))(감액없음)의 경우 특정암 II(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특정암 II(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소멸**
- ② : 2027.12.09.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2대부위암)(감액없음)의 경우 2대부위암보장 보험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2대부위암(감액없음) 보장 **소멸**
- ③ : 2028.8.5. 이미 2027.7.15.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특정암 II(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이 **소멸되었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 ④ : 2029.4.21.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특정4대암)(감액없음)의 경우 특정4대암보장 보험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특정4대암(감액없음) 보장 **소멸**

[보험금 지급 예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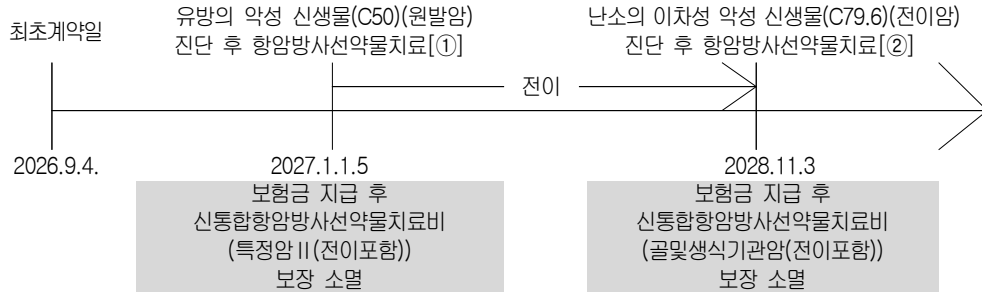
- ① : 2027.5.16. 편도의 악성 신생물(C09)(원발암) 진단 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2대부위 암보장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2대부위암(감액없음) 보장 **소멸**
- ② : 2028.11.3.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0)(전이암) 진단 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2대부위암IV(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2대부위암IV (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소멸**

[보험금 지급 예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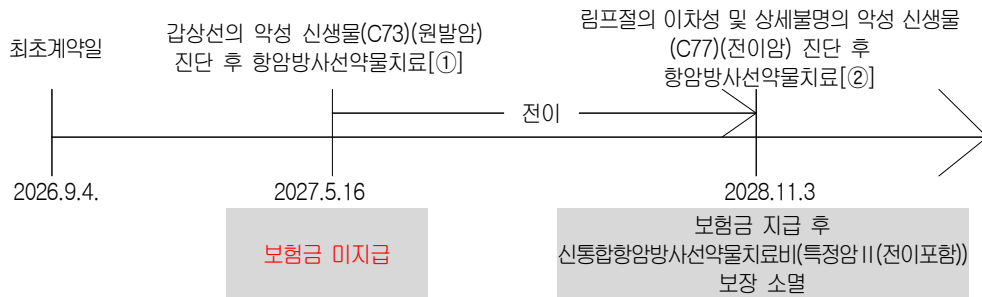
- ① : 2027.5.16. 위의 악성 신생물(C16)(원발암) 진단 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2대부위암 III(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2대부위암III(전이포함)(감액없음) 보 장 **소멸**
- ② : 2028.11.3.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5)(전이암) 진단 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 은 경우 이미 2027.5.16. 2대부위암III(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이 소멸되었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 예시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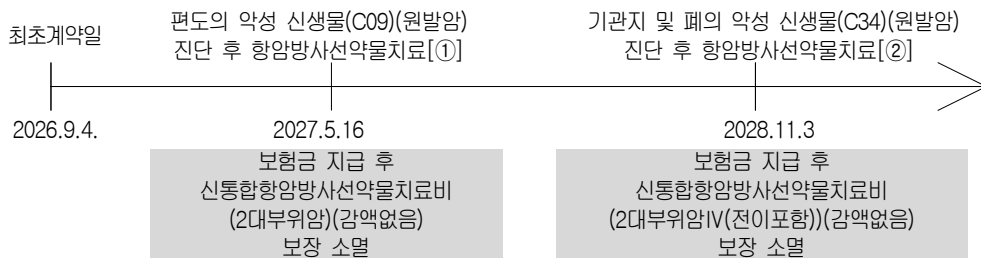
- ① : 2027.1.1.5 유방의 악성 신생물(C50)(원발암) 진단 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에 진단된 것으로, 특정암II(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특정암II(전이포함) 보장 소멸
- ② : 2028.11.3. 난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9.6)(전이암) 진단 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1년경과시점 이후에 진단된 것으로 골및생식기관암(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골및생식기관암(전이포함) 보장 소멸

[보험금 지급 예시5]



- ① : 2027.5.16.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C73)(원발암) 진단 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보장항목 제외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
- ② : 2028.11.3.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C77)(전이암) 진단 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특정암II(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특정암II(전이포함) 보장 소멸

[보험금 지급 예시6]



- ① : 2027.5.16. 편도의 악성 신생물(C09)(원발암) 진단 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2대부위암보장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2대부위암(감액없음) 보장 소멸
- ② : 2028.11.3.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C34)(원발암) 진단 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2대부위암IV(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2대부위암IV(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소멸

제2조(「신통합암(전이포함)Ⅱ(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신통합암(전이포함)Ⅱ(유사암제외)」이라 함은 「특정암Ⅱ(전이포함)」, 「골밑생식기관암(전이포함)」, 「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전이포함)」, 「2대부위암」, 「2대부위암Ⅲ(전이포함)」, 「특정소화기관암(전이포함)」, 「2대부위암Ⅳ(전이포함)」, 「특정4대암」을 총칭하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특정암Ⅱ(전이포함)」, 「골밑생식기관암(전이포함)」, 「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전이포함)」, 「2대부위암」, 「2대부위암Ⅲ(전이포함)」, 「특정소화기관암(전이포함)」, 「2대부위암Ⅳ(전이포함)」, 「특정4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신통합암(전이포함)Ⅱ(유사암제외)」분류표(【별표66】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아래 제4항의 「암」에서 제5항의 「유사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④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 ⑤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22-2】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22-3】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제4항의 「암」중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제4항의 「암」에 한하여 적용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⑦ 제1항의 「특정암Ⅱ(전이포함)」, 「골밑생식기관암(전이포함)」, 「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전이포함)」, 「2대부위암Ⅲ(전이포함)」, 「특정소화기관암(전이포함)」, 「2대부위암Ⅳ(전이포함)」에는 제6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⑧ 「특정암Ⅱ(전이포함)」, 「골밑생식기관암(전이포함)」, 「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전이포함)」, 「2대부위암」, 「2대부위암Ⅲ(전이포함)」, 「특정소화기관암(전이포함)」, 「2대부위암Ⅳ(전이포함)」, 「특정4대암」,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입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정암Ⅱ(전이포함)」, 「골밑생식기관암(전이포함)」, 「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전이포함)」, 「2대부위암」, 「2대부위암Ⅲ(전이포함)」, 「특정소화기관암(전이포함)」, 「2대부위암Ⅳ(전이포함)」, 「특정4대암」,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⑨ 제8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특정암Ⅱ(전이포함)」, 「골밑생식기관암(전이포함)」, 「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전이포함)」, 「2대부위암」, 「2대부위암Ⅲ(전이포함)」, 「특정소화기관암(전이포함)」, 「2대부위암Ⅳ(전이포함)」, 「특정4대암」, 「암」,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8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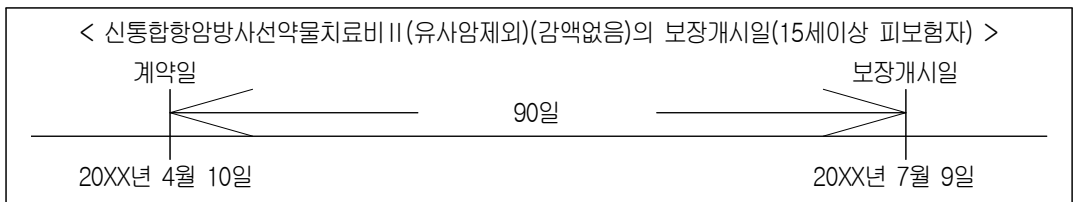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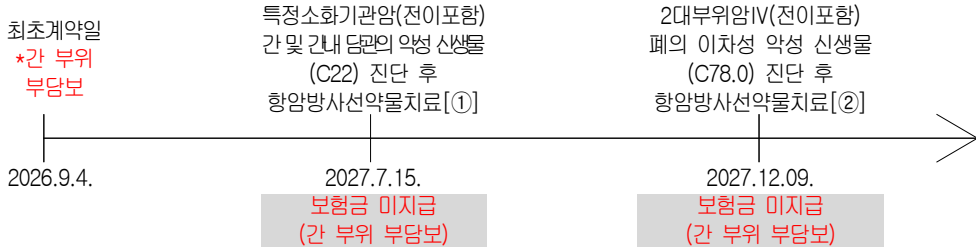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II(유사암제외)(감액없음)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2.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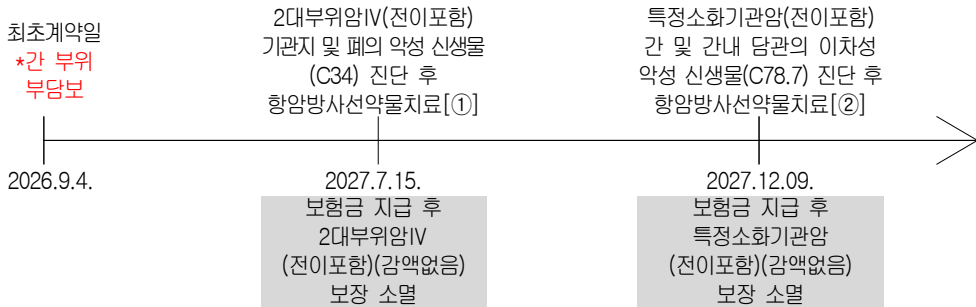
- ②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의 3.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면책기간동안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의 3.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정부위” 이외에서 발생한 암이 “특정부위”로 전이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7]



- ① : 2027.7.15.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C22)(원발암) 진단 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의 3.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험금 미지급**
- ② : 2027.12.09. 진단확정된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0)(전이암)이 ①항의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C22)(원발암)에서 전이된 경우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의 3.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 예시8]



- ① : 2027.7.15.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C34)(원발암) 진단 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2대부위암IV(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2대부위암IV(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소멸**
- ② : 2027.12.09. 진단확정된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7)(전이암)이 ①항의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C34)(원발암)에서 전이된 경우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의 3.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의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2항 제1호에 **도 불구하고** 특정소화기관암(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후 특정소화기관암(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소멸**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조(「신통합암(전이포함)II(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의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신통합항암방사선악물치료비(특정암Ⅱ(전이포함)) 보장」, 「신통합항암방사선악물치료비(골및생식기관암(전이포함)) 보장」, 「신통합항암방사선악물치료비(비뇨기관및특정내분비선암(전이포함)) 보장」, 「신통합항암방사선악물치료비(2대부위암)(감액없음) 보장」, 「신통합항암방사선악물치료비(2대부위암Ⅲ(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신통합항암방사선악물치료비(특정소화기관암(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신통합항암방사선악물치료비(2대부위암Ⅳ(전이포함))(감액없음) 보장」, 「신통합항암방사선악물치료비(특정4대암)(감액없음) 보장」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보장이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모든 보장이 소멸 된 경우, 즉 총8회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0. 양성뇌종양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40-1. 양성뇌종양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40-2. 양성뇌종양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양성뇌종양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양성뇌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양성뇌종양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양성뇌종양」이라 함은 생명에 치명적이며 암이 아닌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 양성뇌종양을 말하며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두개내(머리내)의 종양을 포함합니다.
- ② 제1항의 양성뇌종양은 신경외과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함의 원인이(수술로 인해)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③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④ 양성뇌종양의 진단확정은 신경과 의사 또는 신경외과 의사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양성뇌종양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조항은 계약전환 후 계약(4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계약전환 후 계약(4종)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양성뇌종양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1. 질병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입원비(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질병입원비(1일-18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0일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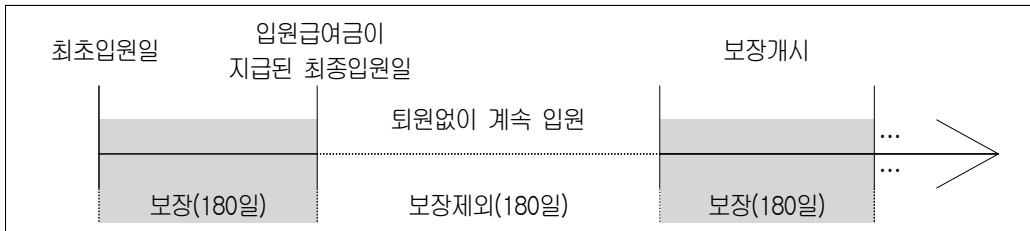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질병입원비(1일-18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③ 다음과 같이 질병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 중인 경우에는 질병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질병입원비(1일-18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비(1일-18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2.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의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0일한도)

제2조(「중환자실」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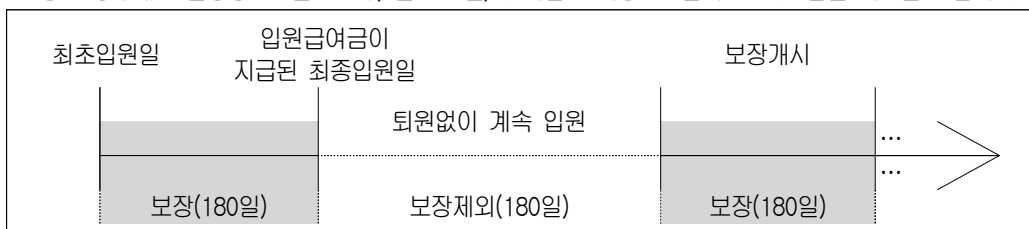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다음과 같이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회사는 질병중환자실입원

비(1일~18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3.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하 “수술동반입원”이라 합니다)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나.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1항에서 정한 수술을 받는 경우
다. 상기 가목 및 나목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보험가입금액(20일한도)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수술로 간주합니다.
 1.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2.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행한 레이저(Laser)수술.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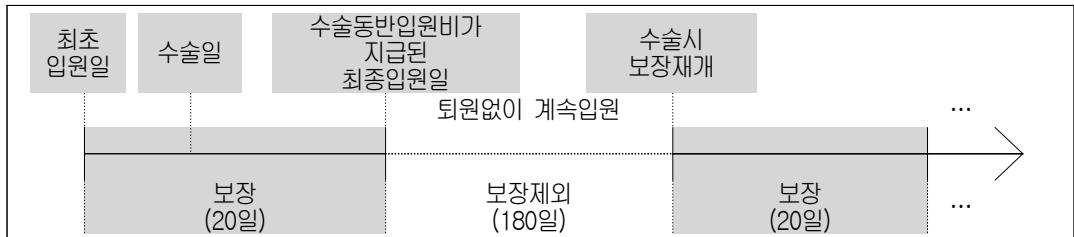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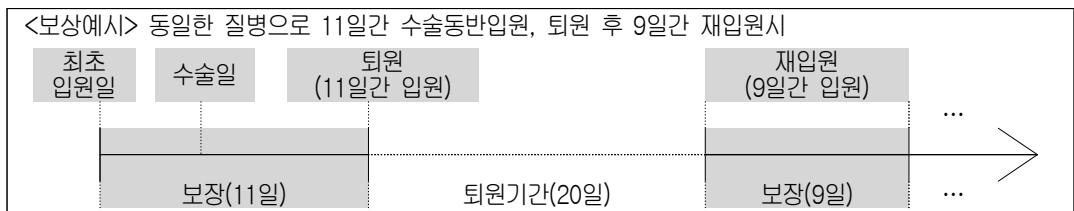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수술동반입원”당 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나목의 수술은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수술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는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보며, 새로운 입원일 이후 같은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수술동반입원”으로 보아 새로운 입원일 1일째 날부터 입원 1일당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를 지급합니다.
- ④ 다음과 같이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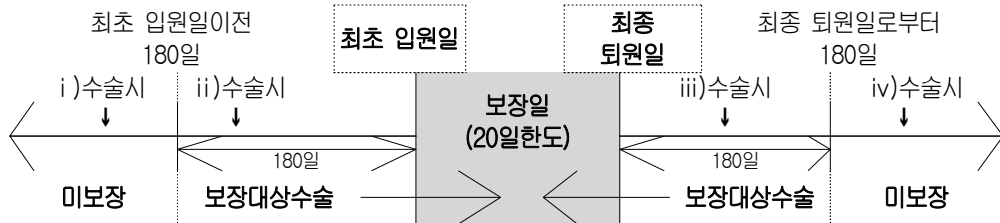


-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는 “수술” 이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수술동반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수술동반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의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할 때에는 회사는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⑧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최초 입원일 이전 180일부터 최초 입원일 이내” 또는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기 이전” 수술이며,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를 제1항 내지 6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특히, 같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먼저 한 수술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보장합니다.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 보상 기준>



- i) 최초 입원일 이전 180일 전 수술시 미보장
- ii) 최초 입원일 이전 180일부터 최초 입원일 이내 수술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수술 동반입원비(1일~20일)를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1항 내지 5항에 따라 보장
- iii)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일 이전 수술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를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1항 내지 5항에 따라 보장
- iv) 최종입원 퇴원일의 180일 경과일 이후 수술시 미보장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6. 성병
 7.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8.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9.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10.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1.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② 회사는 아래의 질병에 의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단,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5. 비만(E66) 수술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질환(I84, 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③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

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 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탈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 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외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 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4. 식중독입원비(4일-120일) 특별약관

44-1. 식중독입원비(4일-120일) 특별약관

44-2. 식중독입원비(4일-120일)(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식중독입원비(4일-12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식중독」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식중독」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식중독입원비(4일-120일)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20일한도)

제2조(「식중독」의 정의 및 진단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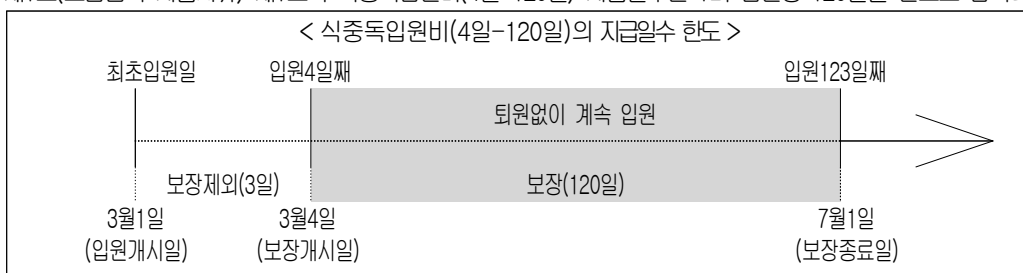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식중독」이라 함은 음식물을 먹고 생기는 구토, 설사, 복통을 주요 증세로 하는 급성질환으로써 「식중독 분류표」(【별표27】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식중독」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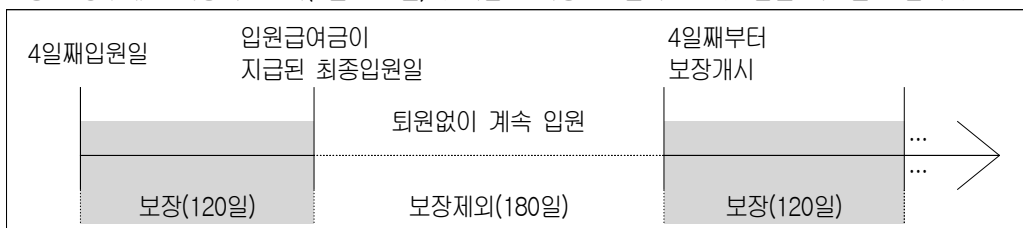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식중독」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식중독」으로 진단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식중독」의 치료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식중독」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식중독」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식중독」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식중독」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식중독입원비(4일-12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식중독」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식중독」에 대한 입원이라도 식중독입원비(4일-1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다음과 같이 식중독입원비(4일-1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식중독입원비(4일-1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식중독입원비(4일-12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식중독입원비(4일-12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5. 특정전염병치료비 특별약관

45-1. 특정전염병치료비 특별약관

45-2. 특정전염병치료비(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특정전염병치료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 중 제2조(「특정전염병」의 정의)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 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특정전염병치료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특정전염병」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전염병」이라 함은 「특정전염병 분류표」(【별표28】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6. 환경성질환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46-1. 환경성질환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46-2. 환경성질환입원비(1일-120일)(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환경성질환입원비(1일-12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환경성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환경성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환경성질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환경성질환입원비(1일-12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20일한도)

제2조(「환경성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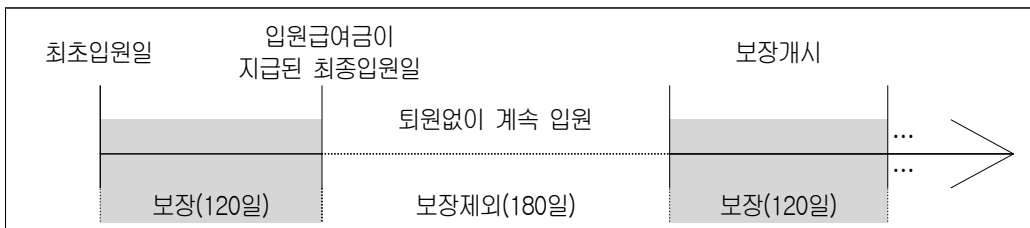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환경성질환」이라 함은 「환경성질환 분류표」(【별표29】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환경성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환경성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환경성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환경성질환」으로 진단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환경성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환경성질환」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환경성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환경성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환경성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환경성질환입원비(1일-12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환경성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환경성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환경성질환입원비(1일-1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다음과 같이 환경성질환입원비(1일-1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환경성질환입원비(1일-1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

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환경성질환입원비(1일~12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환경성질환입원비(1일~12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약화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료질환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7. 생활질환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47-1. 생활질환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47-2. 생활질환입원비(1일~120일)(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생활질환입원비(1일~12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생활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생활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생활질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생활질환입원비(1일-12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20일한도)

제2조(「생활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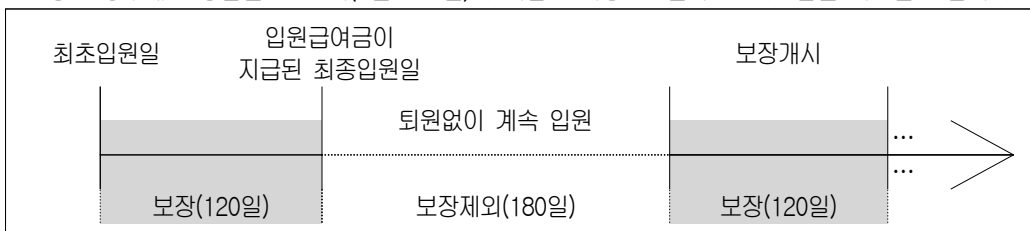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생활질환」이라 함은 「생활질환 분류표」(【별표30】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생활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생활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생활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생활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생활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생활질환」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생활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생활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생활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생활질환입원비(1일-12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생활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생활질환」의에 대한 입원이라도 생활질환입원비(1일-1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다음과 같이 생활질환입원비(1일-1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생활질환입원비(1일-1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생활질환입원비(1일-12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생활질환입원비(1일-12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4.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5.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6.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7.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8. 희귀난치성질환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48-1. 희귀난치성질환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48-2. 희귀난치성질환입원비(1일-120일)(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희귀난치성질환입원비(1일-12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희귀난치성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희귀난치성질환입원비(1일-12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20일한도)

제2조(「희귀난치성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희귀난치성질환」이라 함은 「희귀난치성질환 분류표」(【별표3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희귀난치성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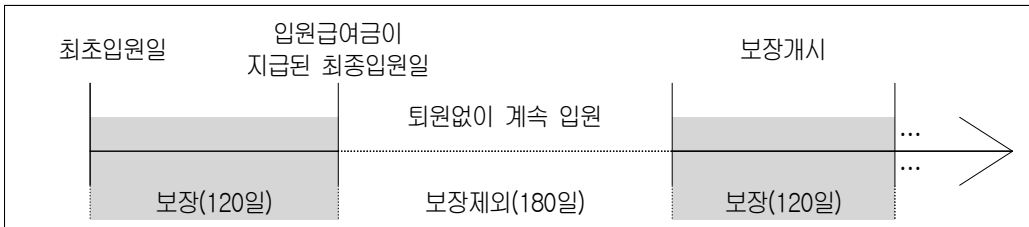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이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

는 이는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희귀난치성질환입원비(1일-12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입원이거나 희귀난치성질환입원비(1일-1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다음과 같이 희귀난치성질환입원비(1일-1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입원비(1일-1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입원비(1일-12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회사는 희귀난치성질환입원비(1일-12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4.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신체감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5.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6.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7.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9.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49-1.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49-2. 질병수술비(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질병수술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수술로 간주합니다.
 1.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2.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행한 레이저(Laser)수술.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하여 드립니다.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의 정의

같은 질병이라 함은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으로서, 치료 부위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치료의 목적이 동일한 질병일 경우 같은 질병에 해당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5. 비만(E66) 수술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

- 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0. 질병1~5종수술비Ⅱ(동일질병당) 특별약관

50-1. 질병1~5종수술비Ⅱ(동일질병당) 특별약관

50-2. 질병1~5종수술비Ⅱ(동일질병당)(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1~5종수술비Ⅱ(동일질병당)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Ⅲ」 (【별표11】 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질병1~5종수술비Ⅱ(동일질병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 장
질병1~5종수술비Ⅱ(동일질병당)(1종) 보장
질병1~5종수술비Ⅱ(동일질병당)(2종) 보장
질병1~5종수술비Ⅱ(동일질병당)(3종) 보장
질병1~5종수술비Ⅱ(동일질병당)(4종) 보장
질병1~5종수술비Ⅱ(동일질병당)(5종) 보장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수술로 간주합니다.
 1.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
 2.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행한 레이저(Laser)수술.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1~5종수술 분류표Ⅲ」(【별표11】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에서 이미 지급한 수술비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아래의 질병1~5종수술비Ⅱ(동일질병당)에 대해서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5. 비만(E66) 수술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③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1~5중수술비II(동일질병당)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 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1. 뇌혈관질환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뇌혈관질환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뇌

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뇌혈관질환수술비	수술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별표17】참조)에서 「뇌혈관질환」에 해당하는 1. 거미막하 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8. 기타 뇌혈관 질환,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10.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뇌혈관조영술]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희게 촬영되는 물질(조영제)을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γ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여하여 그 분포상태의 단면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촬영법

[양전자 방출 단층술(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 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뇌척수액 검사]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2. 허혈성심질환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52-1. 허혈성심질환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52-2. 허혈성심질환수술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허혈성심질환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허혈성심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허혈성심질환수술비	수술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이라 함은 「허혈성심질환 분류표」(【별표19】참조)에 해당하는 1. 협심증, 2. 급성심근경색증, 3. 후속심근경색증, 4.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5.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6. 만성 허혈심장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3.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53-1.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53-2.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수술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수술비	수술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별표17】 참조)에서 「뇌혈관질환」에 해당하는 1. 거미막하 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8. 기타 뇌혈관 질환,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10.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뇌혈관조영술]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희게 촬영되는 물질(조영제)을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γ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여하여 그 분포상태의 단면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촬영법

[양전자 방출 단층술(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 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뇌척수액 검사]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 ③ 이 특별약관에서 「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이라 함은 「허혈성심질환 분류표」(【별표19】참조)에 해당하는 1. 협심증, 2. 급성심근경색증, 3. 후속심근경색증, 4.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5. 기타 급성 허혈성심질환, 6. 만성 허혈성심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제3항의 「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4. 특정순환계질환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54-1. 특정순환계질환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54-2. 특정순환계질환수술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특정순환계질환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특정순환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급금액
특정순환계질환수술비	관혈수술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비관혈수술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혈수술 보장	비관혈수술 보장
특정순환계질환 관혈수술비 보장	특정순환계질환 비관혈수술비 보장

제2조(「특정순환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33】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특정순환계질환」 중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의 「특정순환계질환」 중 「심혈관질환(특정)」의 진단확정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⑤ 제1항의 「특정순환계질환」 중 「4대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내시경검사, 대동맥조영술(aortography), 전산화단층촬영(CT) 및 자기공명영상법(MRI) 등 검사결과 상기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하며, 「특정순환계질환」 중 「죽상경화증(뇌, 심장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력,증상과 함께 혈액, 심전도, 혈관 도플러, 경동맥 초음파검사 등 검사결과 상기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순환계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⑥ 제2항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뇌혈관조영술]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회계 촬영되는 물질(조영제)를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γ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여하여 그 분포상태의 단면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촬영법

[양전자 방출 단층술(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뇌척수액 검사]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리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관혈수술」이라 함은 병변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하며, 「대뇌내시경」,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하여 보상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을 말합니다.
 1. 「내시경수술」이라 함은 인체 내부를 특수의리기구를 이용한 직접영상(조영제 등을 통한 간접영상은 제외)을 통하여 보면서 시행하는 직접치료목적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제외합니다.
 2. 「카테터수술」인체의 일부(주로 혈관)와 외부를 연결해주는 도관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직접치료목적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도관을 이용한 약물주입'과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합니다.
 3. 「신의료수술」함은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어 있고 해당 부위에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행위를 말하며, 해당 부위에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적 방사선 조사'를 포함합니다. 다만,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도관을 이용한 약물 또는 방사성물질 주입'과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⑥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관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의사 처방전 등)
 3.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5. 다발성3대혈관질환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55-1. 다발성3대혈관질환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55-2. 다발성3대혈관질환수술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다발성3대혈관질환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다발성3대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다발성3대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다발성3대혈관질환수술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다발성3대혈관질환수술비」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다발성3대혈관질환수술비」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발성3대혈관질환 분류표」(【별표3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다발성3대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6. 70대특정질병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56-1. 70대특정질병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56-2. 70대특정질병수술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70대특정질병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70대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70대특정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19대 특정질병수술비	수술1회당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9대 특정질병수술비Ⅱ	수술1회당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22대 특정질병수술비Ⅱ	수술1회당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6대 특정질병수술비	수술1회당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다빈도4대질병수술비Ⅱ	수술1회당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② 회사는 제1항에 대하여 아래 각각의 세부보장으로 운영합니다.

구 분	세 부 보 장
1	19대 특정질병수술비
2	19대 특정질병수술비Ⅱ
3	22대 특정질병수술비Ⅱ
4	6대 특정 질병수술비
5	다빈도4대질병수술비Ⅱ

제2조(「70대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70대특정질병」이라 함은 「19대특정질병」, 「19대특정질병Ⅱ」, 「22대특정질병Ⅱ」, 「6대특정질병」, 「다빈도4대질병Ⅱ」 전부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19대특정질병」이라 함은 「19대특정질병 분류표」(【별표35-1】 참조)에 해당하는 아래의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1	관절염	2	백내장
3	생식기질환	4	급성상기도 감염
5	당낭당도질환	6	중이의 진주종
7	귀경화증	8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9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10	골 및 관절 연골의 양성신생물
11	조직의 양성신생물	12	수막의 양성신생물
13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14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15	골다공증	16	담석증
17	사타구니탈장	18	편도염
19	축농증	-	-

- ③ 제1항의 「19대특정질병Ⅱ」이라 함은 「19대특정질병Ⅱ 분류표」(【별표35-2】 참조)에 해당하는 아래의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1	복막의 질환	2	식도질환
3	위,십이지장질환	4	내이의 질환
5	단일신경병증	6	방광의 결석
7	비감염성장염 및 결장염	8	중이 및 유도의 질환
9	척추변형	10	척추병증
11	비뇨계통의 기타질환	12	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13	안면신경장애	14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15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16	사구체질환
17	신세뇨관-간질질환	18	특정부위의 탈장
19	특정장질환	-	-

- ④ 제1항의 「22대특정질병Ⅱ」 이라 함은 「22대특정질병Ⅱ 분류표」 (【별표35-3】 참조)에 해당하는 아래의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1	당뇨병질환	2	심장질환
3	고혈압질환	4	뇌혈관질환
5	간질환	6	위·십이지장궤양
7	동맥경화증	8	만성하부호흡기질환
9	폐렴	10	녹내장
11	황반변성	12	결핵
13	신부전	14	급성체장염
15	다발경화증	16	대동맥류
17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18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질환
19	췌장질환	20	파킨슨병
21	폐혈증	22	폐질환

- ⑤ 제1항의 「6대특정질병」 이라 함은 「6대특정질병 분류표」 (【별표35-4】 참조)에 해당하는 아래의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1	생식기의 양성종양	2	특정누적외상성질환
3	근육장애	4	어깨병변
5	윤활막 및 힘줄장애	6	눈 및 눈부속기관의 특정질환

- ⑥ 제1항의 「다빈도4대질환Ⅱ」 이라 함은 「다빈도4대질환Ⅱ 분류표」 (【별표35-5】 참조)에 해당하는 아래의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1	유방의 양성신생물	2	유방의 장애
3	후각특정질환	4	감상선질환

- ⑦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수술1회당 질병코드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보험금만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에서 이미 지급한 수술비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예시 : 세부보장별 가입금액

특정 질병수술비				
19대	19대Ⅱ	22대Ⅱ	6대	다빈도4대Ⅱ
10만원	20만원	100만원	5만원	5만원

(사례1)

- A18.14+(남성생식기관의 결핵)과 N51.1*(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고환 및 부고환의 장애)를 동시에 진단받고 수술한 경우

진단코드	세부담보별 보상분류	가입금액
A18.14+	22대특정질병수술비 II의 “12.결핵”	100만원
	19대특정질병수술비의 “3.생식기질환”	10만원
N51.1*	19대특정질병수술비의 “3.생식기질환”	10만원

⇒ 높은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100만원 지급

(사례2)

- K23.0*(결핵성 식도염)과 A18.82+(달리 분류되지 않은 소화기관의 결핵)을 동시에 진단받고 수술한 경우

진단코드	세부담보별 보상분류	가입금액
K23.0*	19대특정질병수술비 II의 “2.식도질환”	20만원
A18.82+	22대특정질병수술비 II의 “12.결핵”	100만원
	19대특정질병수술비 II의 “2.식도질환”	20만원

- K23.0*(결핵성 식도염)에 해당하는 2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면,
⇒ A18.82+(달리 분류되지 않은 소화기관의 결핵)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차액 지급 (100만원 - 20만원 = 80만원)

- ⑧ 제1항의 「70대특정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단, 뇌혈관질환의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심장질환 중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수술로 간주합니다.
 1.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2.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행한 레이저(Laser)수술.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료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7. 치핵(치질)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57-1. 치핵(치질)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57-2. 치핵(치질)수술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치핵(치질)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치핵」의 정의 및 진단확인)의 「치핵」으

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핵」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치핵(치질)수술비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치핵」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치핵」이라 함은 「치핵 분류표」(【별표36】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치핵」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8. 당뇨병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당뇨병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당뇨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당뇨병」으로 진단확정되고 「당뇨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당뇨병수술비	수술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당뇨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당뇨병」이라 함은 「당뇨병 분류표」(【별표37】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당뇨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수술로 간주합니다.
 1.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2.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행한 레이저(Laser)수술.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자막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당일로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9. 총수염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총수염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총수염(맹장염)」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총수염(맹장염)」으로 진단확정되고 「총수염(맹장염)」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총수염수술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총수염(맹장염)」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총수염(맹장염)」이라 함은 「총수염(맹장염) 분류표」(【별표38】참조)에 해당하는 총수의 질환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총수염(맹장염)」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총수염수술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조항은 계약전환 후 계약(4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계약전환 후 계약(4종)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총수염수술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0. 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60-1. 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60-2. 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희귀난치성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	수술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희귀난치성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희귀난치성질환」이라 함은 「희귀난치성질환 분류표」(【별표3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희귀난치성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1. 소아탈장수술비 특별약관

61-1. 소아탈장수술비 특별약관

61-2. 소아탈장수술비(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소아탈장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소아탈장」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소아탈장」으로 진단확정되고 「소아탈장」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소아탈장수술비	수술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소아탈장」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소아탈장」이라 함은 「소아탈장 분류표」(【별표39】참조)에 해당하는 1.사타구니 탈장, 2.대퇴 탈장, 3.배꼽 탈장, 4.복부 탈장, 5.기타 복부 탈장, 6.상세불명의 복부 탈장의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소아탈장」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환금급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2. 추간판장애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추간판장애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추간판장애」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추간판장애」로 진단확정되고 「추간판장애」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추간판장애수술비	수술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추간판장애」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추간판장애」라 함은 「추간판장애 분류표」(【별표40】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추간판장애」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3.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 특별약관

63-1.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 특별약관

63-2.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개흉심장수술」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개흉심장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개흉심장수술」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개흉심장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심장병의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심장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반드시 개흉술을 한 후 심장의 병변에 대해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 중재적 심장시술[(예)풍선판막성형술(BalloonValvuloplasty) 등]은 모두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4. 시각질환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시각질환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시각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시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시각질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시각질환수술비	수술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시각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시각질환」이라 함은 「시각질환 분류표」(【별표4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시각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수술로 간주합니다.
 1.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2.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행한 레이저(Laser)수술.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5. 청각질환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청각질환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청각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청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청각질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청각질환수술비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청각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청각질환」이라 함은 「청각질환 분류표」(【별표42】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청각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꽃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6. 성장장애관련질병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66-1. 성장장애관련질병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66-2. 성장장애관련질병입원비(1일-120일)(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성장장애관련질병입원비(1일-12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성장장애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성장장애관련질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성장장애관련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성장장애관련질병입원비(1일-12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20일한도)

제2조(「성장장애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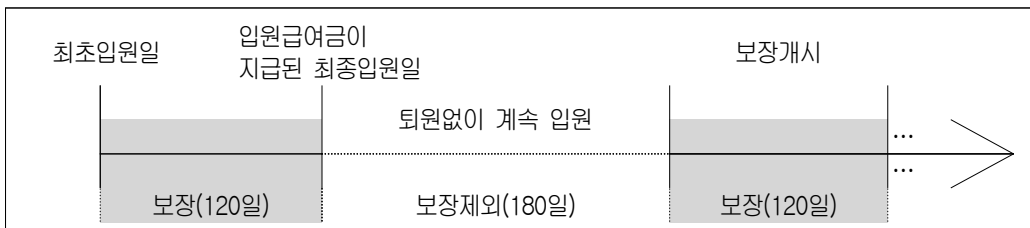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성장장애관련질병」이라 함은 「성장장애관련질병 분류표」(【별표43】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성장장애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성장장애관련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성장장애관련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성장장애관련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성장장애관련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성장장애관련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성장장애관련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성장장애관련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성장장애관련질병입원비(1일-12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성장장애관련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성장장애관련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성장장애관련질병입원비(1일-1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다음과 같이 성장장애관련질병입원비(1일-1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성장장애관련질병입원비(1일-1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

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성장장애관련질병입원비(1일-12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성장장애관련질병입원비(1일-12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7. 척추측만증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척추측만증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척추측만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척추측만증」으로 진단확정되고 「척추측만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척추측만증수술비	수술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척추측만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척추측만증」이라 함은 「척추측만증 분류표」(【별표4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척추의 선천변형(Q67.5)' 및 '선천성 골기형으로 인한 선천성 척추측만증(Q76.3)'에 해당하는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의 「척추측만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8.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모야모야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모야모야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모야모야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3조(「개두수술」의 정의와 장소)의 「개두수술」을 받은 때에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모야모야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모야모야병」이라 함은 속목동맥의 말단부 혹은 중간대뇌동맥의 기시부가 서서히 폐색되는 질환으로 「모야모야병 분류표」(【별표45】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모야모야병」의 진단확정은 임상증상(병력, 신경학적 검사 등)과 함께 영상학적 진단(CT, MRI/MRA, Cerebral angiography)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3조(「개두수술」의 정의 와 장소)

- ① 「개두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개두를 동반한 직접 혈관문합술(Direct revascularization), 간접 혈관문합술(Indirect revascularization), 병합 혈관문합술(Combined revascularization), 혈종제거술(Hematoma evacuation) 등의 수술을 한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9. 피부질환수술비(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69-1. 피부질환수술비(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69-2. 피부질환수술비(연간1회한)(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부질환수술비(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피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피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피부질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연간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피부질환수술비(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연간1회한)

제2조(「피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부질환」이라 함은 「피부질환 분류표」(【별표46】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피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0. 호흡기관관련질병수술비 특별약관

70-1. 호흡기관관련질병수술비 특별약관

70-2. 호흡기관관련질병수술비(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호흡기관관련질병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호흡기관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호흡기관관련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호흡기관관련질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호흡기관관련질병수술비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호흡기관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호흡기관관련질병」이라 함은 「호흡기관관련질병 분류표」(【별표47】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호흡기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1. 재진단암III진단비 특별약관

71-1. 재진단암III진단비 특별약관

71-2. 재진단암III진단비(갱신형_10년) 특별약관

71-1은 비갱신형으로,
71-2는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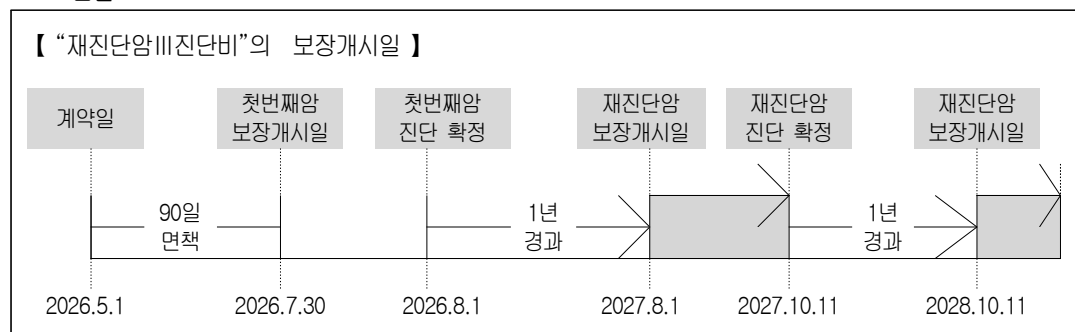
1. 재진단암III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재진단암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첫번째암」 및 「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의 「재진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재진단암III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재진단암III진단비”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첫 번째 「재진단암」 : 「첫번째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2. 두 번째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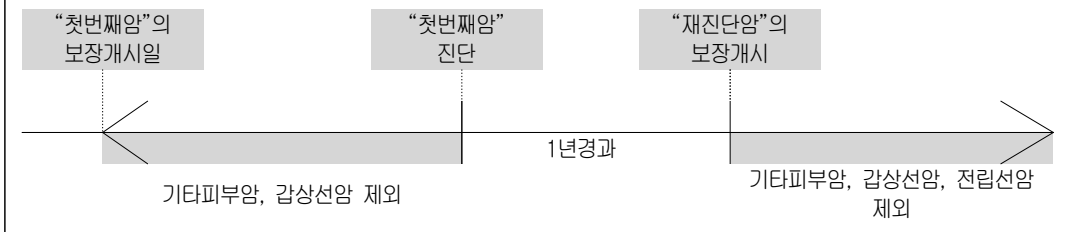


② 제1항 제1호의 「첫번째암」은 「첫번째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진단받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첫번째암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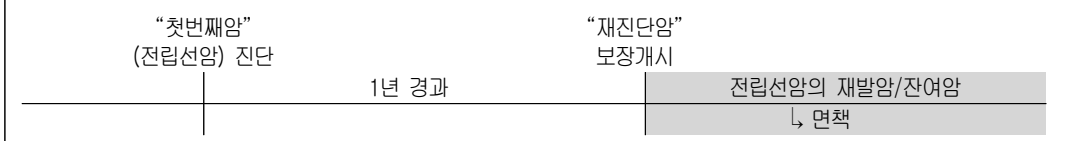
1.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 가.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나.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첫번째암」 및 「재진단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암」 예시】



- ③ 「재진단암」이란 다음 각 호의 「암」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새로운 원발암
 2. 전이암
 3. 재발암
 4. 잔여암
- ④ 제3항에서 「새로운 원발암」이란 원발부위에 발생한 암으로 「첫번째암」 또는 「재진단암」과 다른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이하 「새로운 원발암」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⑤ 제3항에서 「전이암」이란 원발부위의 암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침윤 또는 원격전이) 다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적인 분열과 성장과정을 거쳐 증식하는 「암」을 말합니다.
- ⑥ 제3항에서 「재발암」이란 「첫번째암」 또는 「재진단암」과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으로서 치료를 통해 몸에서 「첫번째암」 또는 「재진단암」의 암세포를 제거한 후 그 「첫번째암」 또는 「재진단암」으로 인하여 새롭게 「암」이 출현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명된 「암」을 말합니다.
- ⑦ 제3항에서 「잔여암」이란 제3조(「첫번째암」 및 「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 제1호의 「암」으로 발생한 암진단부위에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⑧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첫번째암」이 「전립선암」(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인 경우 그 「첫번째암」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년 후 「재진단암」의 보장은 개시하되, 원발부위가 「전립선암」인 「전립선암」의 「재발암」 및 「전립선암」의 「잔여암」에 대한 “재진단암III진단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첫번째암」이 「전립선암」인 경우 보장예시】



- ⑨ 「첫번째암」의 진단 확정에는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첫번째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⑩ 제9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첫번째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9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⑪ 「재진단암」의 진단 확정에는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진단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⑫ 제11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재진단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수술)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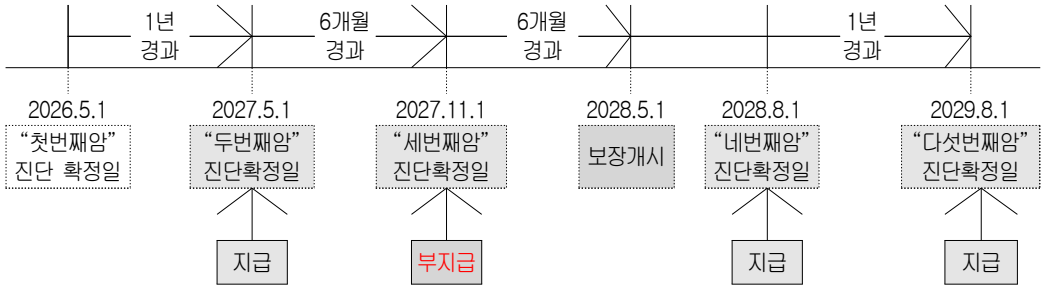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 치료시점에서 암세포의 잔존이 확인되지 않은 암에 대한 치료(보조적 또는 예방적암치료)는 제외 합니다.

<「제11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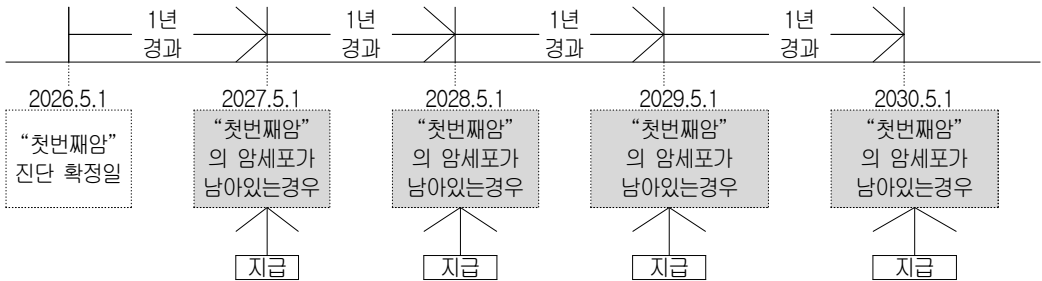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재진단암」진단비」의 보장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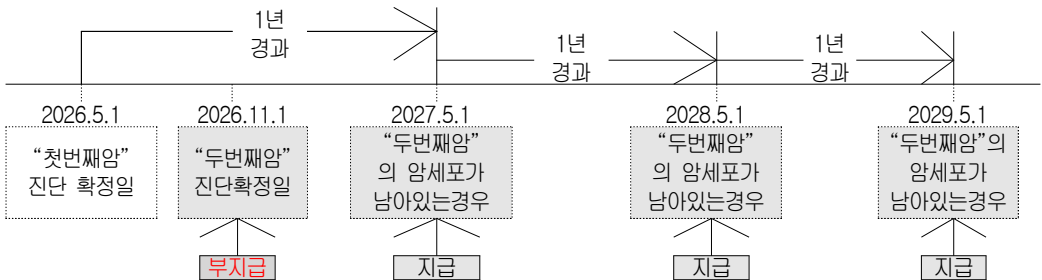
1. 제3항 제1호 ~ 제3호 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



2. 제3항 4호 잔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



3. 제3항 4호 잔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



제4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8.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내에 제3조 (「첫번째암」 및 「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재진단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첫번째암」 및 「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첫번째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된 특별약관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첫번째암」으로 진단확정 되지 않은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을 최초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2.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이미 「첫번째암」 또는 「재진단암」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을 직전 암의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제9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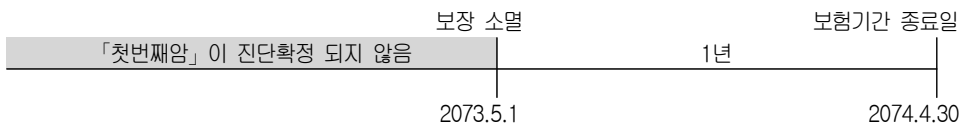
- ① 71-2. 재진단암Ⅲ진단비(갱신형_1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1. [갱신종료나이-1]세까지 「제2장 14.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강액없음) 특별약관」의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보험금이 지급되고, 잔여 보험기간이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년 이하인 경우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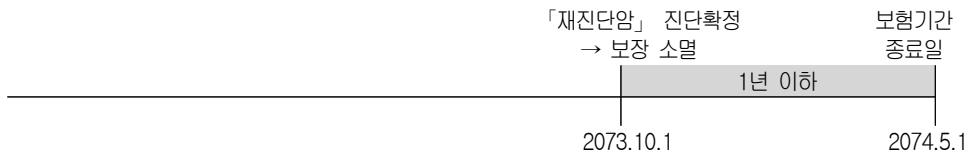
- ①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점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1. 「첫번째암」이 진단확정 되지 않고, 보험기간 종료일(갱신형은 갱신종료나이의 계약해당일)까지의 잔여 기간이 그 날을 1년 이하인 경우
 2. 「재진단암」이 진단확정 되어 “재진단암Ⅲ진단비”가 지급되고, 보험기간 종료일(갱신형은 갱신종료나이의 계약해당일)까지의 잔여 기간이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년 이하인 경우

【 재진단암Ⅲ진단비 보장소멸 예시 】

1. 「첫번째암」이 진단확정 되지 않고,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2. 「재진단암」 진단확정 시점에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2. 재진단암III진단비(면책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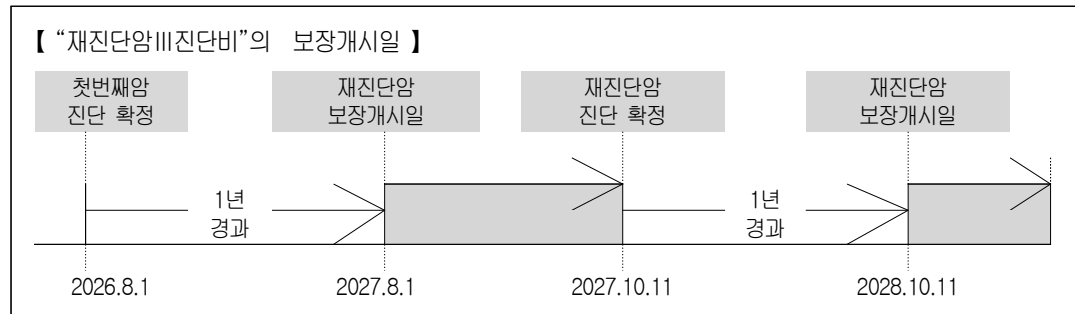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재진단암III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재진단암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첫번째암」 및 「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의 「재진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재진단암III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9.계약전환 특별약관」에서 정한 제1종 「전환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에 발생한 「첫번째암」, 「재진단암」은 이 특별약관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미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재진단암III진단비」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첫 번째 「재진단암」 : 「첫번째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2. 두 번째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 ③ 제1항 제1호의 「첫번째암」은 최초로 진단받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을 말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첫번째암」 및 「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전립선암」이라 함은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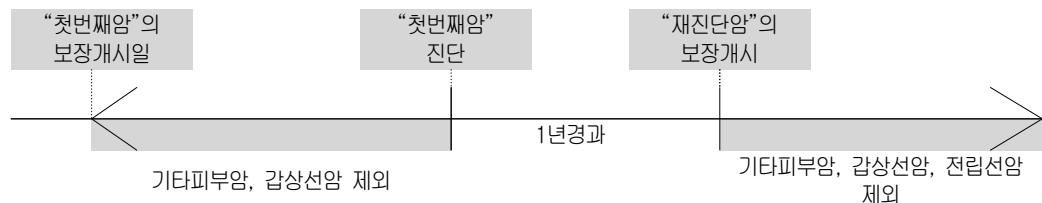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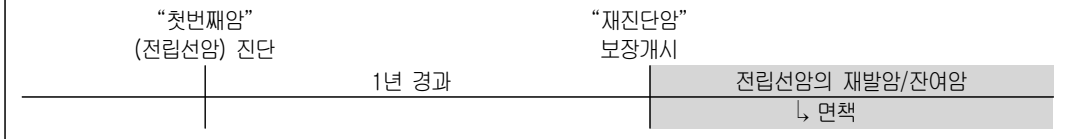
2.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전립선암」이라 함은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첫번째암」 및 「재진단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암」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첫번째암」에서 제외되는 암
 - 가. 「기타피부암」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 나. 「갑상선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2. 「재진단암」에서 제외되는 암
 - 가. 「기타피부암」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 나. 「갑상선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 다. 「전립선암」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
 - 라. 「경계성종양」 (【별표22-3】 참조)
 - 마. 「제자리암」 (【별표22-2】 참조)

【「첫번째암」 및 「재진단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암」 예시】



- ③ 「재진단암」이란 다음 각 호의 「암」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새로운 원발암
 2. 전이암
 3. 재발암
 4. 잔여암
- ④ 제3항에서 「새로운 원발암」이란 원발부위에 발생한 암으로 「첫번째암」 또는 「재진단암」과 다른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이하 「새로운 원발암」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⑤ 제3항에서 「전이암」이란 원발부위의 암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침윤 또는 원격전이) 다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적인 분열과 성장과정을 거쳐 증식하는 「암」을 말합니다.
- ⑥ 제3항에서 「재발암」이란 「첫번째암」 또는 「재진단암」과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으로서 치료를 통해 몸에서 「첫번째암」 또는 「재진단암」의 암세포를 제거한 후 그 「첫번째암」 또는 「재진단암」으로 인하여 새롭게 「암」이 출현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명된 「암」을 말합니다.
- ⑦ 제3항에서 「잔여암」이란 제3조(「첫번째암」 및 「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 제1호의 「암」으로 발생한 암진단부위에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⑧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첫번째암」이 「전립선암」(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인 경우 그 「첫번째암」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년 후 「재진단암」의 보장은 개시하되, 원발부위가 「전립선암」인 「전립선암」의 「재발암」 및 「전립선암」의 「잔여암」에 대한 「재진단암III진단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첫번째암」이 「전립선암」인 경우 보장예시】



- ⑨ 「첫번째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첫번째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⑩ 제9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첫번째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9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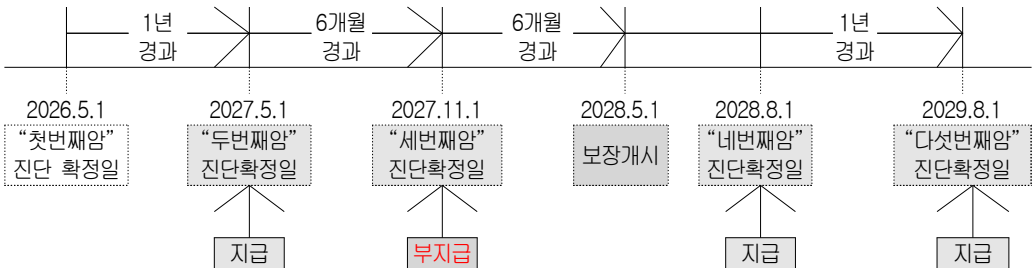
- ⑪ 「재진단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진단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⑫ 제11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재진단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수술)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 치료시점에서 암세포의 잔존이 확인되지 않은 암에 대한 치료(보조적 또는 예방적암치료)는 제외 합니다.

<「제11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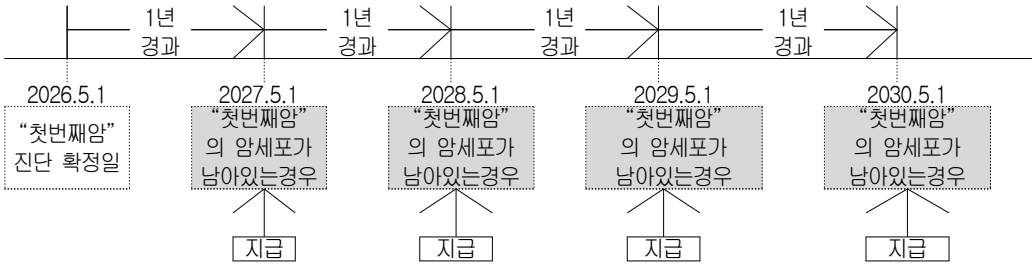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재진단암」진단비」의 보장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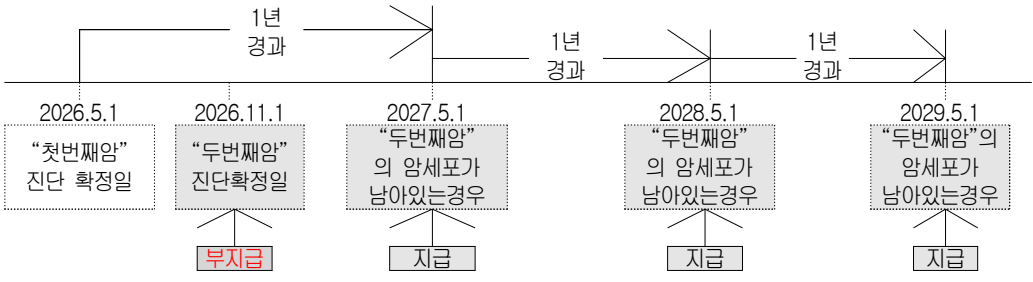
1. 제3항 제1호 ~ 제3호 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



2. 제3항 4호 잔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



3. 제3항 4호 잔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



제4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암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8.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내에 제3조(「첫번째암」 및 「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재진단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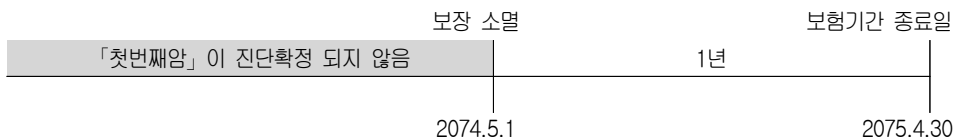
- ①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된 특별약관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첫번째암」으로 진단확정 되지 않은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을 최초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을 적용
 2.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이미 「첫번째암」 또는 「재진단암」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을 직전 암의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을 적용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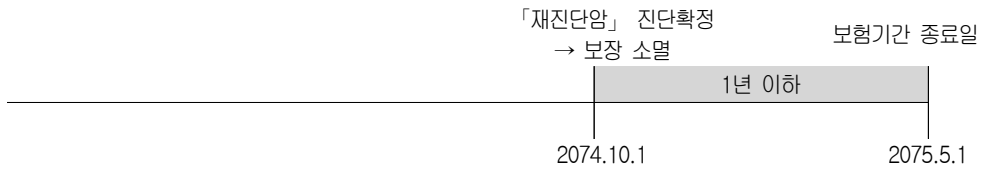
- ①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점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1. 「첫번째암」이 진단확정 되지 않고,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 기간이 그 날을 1년 이하인 경우
 2. 「재진단암」이 진단확정 되어 “재진단암Ⅲ진단비”가 지급되고,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 기간이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년 이하인 경우

【 재진단암Ⅲ진단비 보장소멸 예시 】

1. 「첫번째암」이 진단확정 되지 않고,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2. 「재진단암」 진단확정 시점에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3. 소아·청소년 특정 성인병 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소아·청소년 특정 성인병 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소아·청소년 특정 성인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소아·청소년 특정 성인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소아·청소년 특정 성인병 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소아·청소년 특정 성인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소아·청소년 특정 성인병」이라 함은 「소아·청소년 특정 성인병 분류표」(【별표48】참조)에 해당하는 소아·청소년 특정 성인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소아·청소년 특정 성인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계약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나이가 이미 2세를 초과한 경우
 2.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소아·청소년 특정 성인병」으로 진단 확정받은 경우

제6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소아·청소년 특정 성인병 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4. ADHD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ADHD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ADHD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 「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분류표」(【별표49】참조)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의 진단확정은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2. 제1호의 진단은 DSM-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를 기초로하여야 합니다. 단, DSM-5의 개정판이 출간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최신판 DSM(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발간하는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의 내용을 따릅니다.

[DSM-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 정신질환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

1952년부터 미국 정신의학협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가 기획·출판하는 의료편람 제5판(2013)으로서 정신질환에 대해 가능한 모든 사례를 수록하고, 객관화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정신질환의 진단 및 처방, 관련 산업과 행정 분야에서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③ 회사가 「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계약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다만, 회사가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나이가 이미 2세를 초과한 경우
 2.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로 진단 확정받은 경우

제6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ADHD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5. 중증아토피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별약관은 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으며,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피보험자라 함은 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의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태아는 출생시에 피보험자로 됩니다.

제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의 보장은 보통약관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출생 시에 시작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중증아토피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아토피(중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아토피(중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중증아토피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4조(「아토피(중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 「아토피(중증)」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토피성 피부염 분류표」(【별표50】참조)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고, OSI(Objective SCORAD Index, 객관적 아토피증상 지수, 이하 「OSI」라 합니다) 4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OSI(Objective SCORAD Index, 객관적 아토피증상 지수)

아토피의 대표적인 평가기준인 SCORAD Index(SCORing atopic dermatitis Index) 중 주관적 증상(가려움과 수면장애 평가)을 제외한 객관적 지표인 병변의 범위(Extent), 병변의 정도(Intensity)만을 이용한 평가방법입니다.

- ② 제1항의 “중증아토피”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 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포함)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아토피(중증)진단서(회사양식의 사고증명서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9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증아토피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6. 중증틱장애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중증틱장애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중증틱장애」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중증틱장애」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중증틱장애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중증틱장애」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틱장애」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복합된 음성 및 다발성 운동 틱장애(데라투렛 증후군) 분류표」(【별표51】참조)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를 말하며, 다양한 운동 및 음성 두 가지 틱 증상을 모두 나타내며(단, 반드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아님) 전체 유병기간이 1년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증틱장애」의 세부 정의

「중증틱장애」는 다음 제1항 또는 제2항의 특징을 보여야 합니다.

- 가호 내지 다호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 첫 번째 틱이 운동틱으로 발현되어 1년 이상 지속
 - 첫 번째와 다른 종류의 운동틱 발생
 - 음성틱 발생
- 가호 내지 나호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 첫 번째 틱이 음성틱으로 발현되어 1년 이상 지속
 - 서로 다른 종류의 운동틱이 2가지 이상 발생

- ② 제1항에서 정한 “운동 틱장애”라 함은 얼굴 찡그리기, 눈 깜박임, 어깨 으쓱댐, 코 킁킁거림, 기침하기 등 행동의 반복을 보이거나, 몸 냄새 맡기, 손을 흔들거나 발로 차는 동작 등 통합적이며 목적을 가진 행동과 같은 증상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음성 틱장애”라 함은 저속한 언어를 말하는 외설증, 말을 따라하는 방황 언어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중증틱장애」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증틱장애」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계약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3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나이가 이미 0세를 초과한 경우
 2.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틱장애」로 진단 확정받은 경우

제6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증틱장애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7. 성조숙증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성조숙증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성조숙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성조숙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성조숙증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성조숙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 「성조숙증」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성조숙증 분류표」(【별표52】참조)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성조숙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임상적 증상과 함께 관련검사(호르몬검사, 영상검사 등)에서 기질적 이상이 확인된 때를 말합니다. 또한, 회사가 「성조숙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계약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3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악물복용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나이가 이미 2세를 초과한 경우
 2.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성조숙증」으로 진단 확정받은 경우

제6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성조숙증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8.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갑상선암(초기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갑상선암(초기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갑상선암(초기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95】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초기갑상선암」이라 함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유두암(Papillary cancer) 또는 여포암(Follicular cancer)일 것
 2. 암 종양의 크기가 2.0cm 이하이고 갑상선 내부에 한정될 것
 3. 림프절전이나 원격전이가 없는 갑상선암일 것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초기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질병 중, 제2항에서 정한 「초기갑상선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④ 「갑상선암(초기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조건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갑상선암(초기제외)」의 진

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초기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다만, 회사가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조항은 계약전환 후 계약(4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계약전환 후 계약(4종)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9. 선천이상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임신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의 보장은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 제3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에 시작하여 1년 이 지난날에 끝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선천이상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선천이상」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선천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선천이상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4조(「선천이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선천이상」이라 함은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별표53】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선천이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다만, 아래의 질병에 대해서는 외래를 통한 의원에서의 진단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기관 및 기관지 선천 기형	Q32.0
머리, 얼굴, 척추, 가슴의 근육골격 변형	Q67.0~Q67.8
기타 근육골격 변형	Q68.0, Q68.3~Q68.5
척추 및 가슴뼈의 선천 기형	Q76.0, Q76.5
피부의 기타 선천 기형	Q82.5
유방의 선천 기형	Q83.3
외피의 기타 선천 기형	Q84.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균형성 재배열 등	Q95.0, Q95.1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계약자가 태아의 이상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선천이상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선천이상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80. 특정선천이상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임신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의 보장은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 제3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에 시작하여 1년 이 지난날에 끝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특정선천이상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특정선천이상」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특정선천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특정선천이상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4조(「특정선천이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선천이상」이라 함은 「특정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별표 5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특정선천이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다만, 아래의 질병에 대해서는 외래를 통한 의원에서의 진단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기관 및 기관지 선천 기형	Q32.0
머리, 얼굴, 척추, 가슴의 근육골격 변형	Q67.0~Q67.8
기타 근육골격 변형	Q68.0, Q68.3~Q68.5
척추 및 가슴뼈의 선천 기형	Q76.0, Q76.5
유방의 선천 기형	Q83.3
외피의 기타 선천 기형	Q84.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균형성 재배열 등	Q95.0, Q95.1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계약자가 태아의 이상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특정선천이상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선천이상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81. 선천이상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81-1. 선천이상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81-2. 선천이상입원비(1일-120일)(태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임신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선천이상입원비(1일-12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선천이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선천이상」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선천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선천이상입원비(1일-12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20일한도)

제3조(「선천이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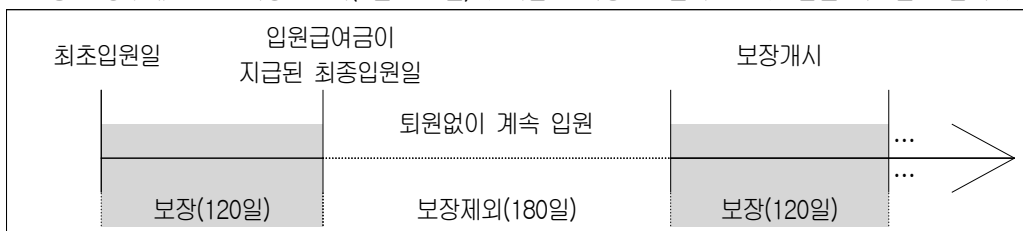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선천이상」이라 함은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별표53】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선천이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선천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선천이상」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선천이상」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선천이상」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선천이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선천이상」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선천이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선천이상입원비(1일-12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선천이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선천이상」에 대한 입원이라도 선천이상입원비(1일-1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다음과 같이 선천이상입원비(1일-1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선천이상입원비(1일-1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선천이상입원비(1일-12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선천이상입원비(1일-12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계약자가 태아의 이상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선천이상임원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82. 선천이상수술비 특별약관

82-1. 선천이상수술비 특별약관

82-2. 선천이상수술비(태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임신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선천이상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선천이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선천이상」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선천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선천이상수술비	수술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3조(「선천이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선천이상」이라 함은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별표53】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선천이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계약자가 태아의 이상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선천이상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83. 특정선천이상수술비 특별약관

83-1. 특정선천이상수술비 특별약관

83-2. 특정선천이상수술비(태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임신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특정선천이상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특정선천이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특정선천이상」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특정선천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특정선천이상수술비	수술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3조(「특정선천이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선천이상」이라 함은 「특정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별표 54】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특정선천이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계약자가 태아의 이상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특정선천이상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84. 신생아임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임신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의 보장은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 제3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에 시작하여 1년 이 지난날에 끝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신생아임원비(1일-120일) : 피보험자가 출생 전·후기(임신28주부터 생후 1주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에 제4조(「주산기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주산기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주산기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신생아입원비(1일~120일)	1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20일한도)

제4조(「주산기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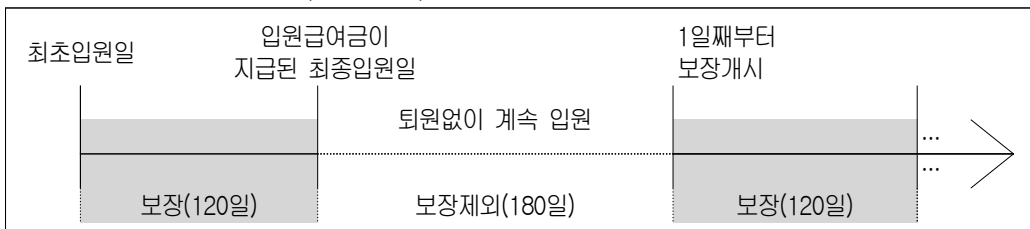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주산기질환」이라 함은 「주산기질환 분류표」(【별표55】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주산기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주산기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주산기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주산기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주산기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병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주산기질환」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주산기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주산기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주산기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신생아입원비(1일~12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주산기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주산기질환」에 대한 입원이란 신생아입원비(1일~120일)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다음과 같이 신생아입원비(1일~1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신생아입원비(1일~1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피보험자가 「주산기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신생아입원비(1일~12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다태아 출산인 경우 각각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계약자가 태아의 이상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신생아입원비(1일~120일)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85. 5대기관질병수술비Ⅱ(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5대기관질병수술비Ⅱ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질환Ⅱ, 심장질환, 간질환, 폐질환 또는 신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각각의 질병에 대하여 관혈수술 및 비관혈수술을 각각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급금액
5대기관질병수술비Ⅱ	관혈수술 (세부보장별 최초1회)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비관혈수술 (세부보장별 최초1회)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혈수술 보장	비관혈수술 보장
뇌질환Ⅱ 관혈수술비 보장	뇌질환Ⅱ 비관혈수술비 보장
심장질환 관혈수술비 보장	심장질환 비관혈수술비 보장
간질환 관혈수술비 보장	간질환 비관혈수술비 보장
폐질환 관혈수술비 보장	폐질환 비관혈수술비 보장
신장질환 관혈수술비 보장	신장질환 비관혈수술비 보장

제2조(「5대기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5대기관질병」이라 함은 「5대기관질병 분류표」(【별표56】참조)에 해당하는 뇌질환Ⅱ, 심장질환, 간질환, 폐질환 및 신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질환Ⅱ, 심장질환, 간질환, 폐질환 및 신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뇌질환의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심장질환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5대기관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관혈수술」이라 함은 병변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하며, 「대뇌내시경」,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하여 보상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을 말합니다.
 1. 「내시경수술」이라 함은 인체 내부를 특수의료기구를 이용한 직접영상(조영제 등을 통한 간접영상은 제외)을 통하여 보면서 시행하는 직접치료목적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제외합니다.
 2. 「카테터수술」인체의 일부(주로 혈관)와 외부를 연결해주는 도관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직접치료목적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도관을 이용한 약물주입'과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합니다.
 3. 「신의료수술」함은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어 있고 해당 부위에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행위를 말하며, 5대 기관별 특정질환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적 방사선 조사'를 포함합니다. 다만,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도관을 이용한 약물 또는 방사성물질 주입'과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⑥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관

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단, 관혈수술비가 이미 지급되어 1회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관혈수술비를 지급하며, 비관혈수술비도 이미 지급되어 1회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5대기관질병수술비II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해당 세부보장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세부보장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5대기관질병수술비II의 세부보장별로 각 1회씩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86. 뇌성마비진단비 특별약관

86-1. 뇌성마비진단비 특별약관

86-2. 뇌성마비진단비(태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임신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뇌성마비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뇌성마비」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뇌성마비」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뇌성마비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3조(「뇌성마비」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성마비」이라 함은 「뇌성마비 분류표」(【별표57】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뇌성마비」의 진단확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 상에서 뇌성마비의 전형적인 병

력의 존재, 이학적 검사 그리고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파검사(EEG)를 기초로 해야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계약자가 태아의 이상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뇌성마비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성마비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87. 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87-1. 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87-2. 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80일)(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종합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8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0일한도)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하며,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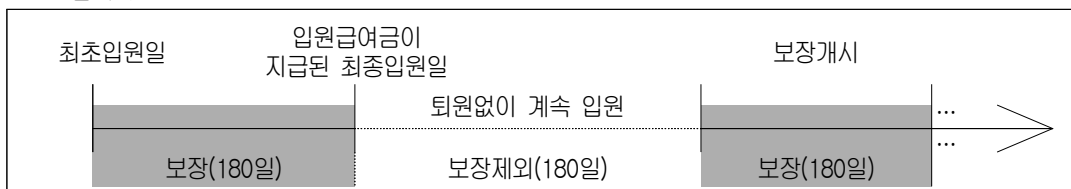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는 것
 2. 100 병상 이상 300 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 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는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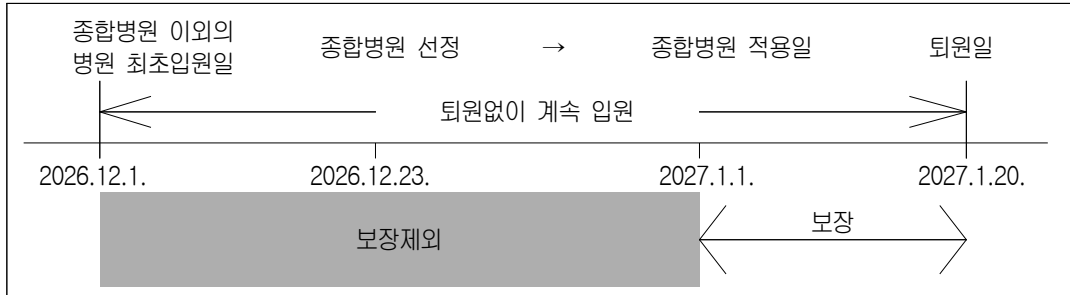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8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다음과 같이 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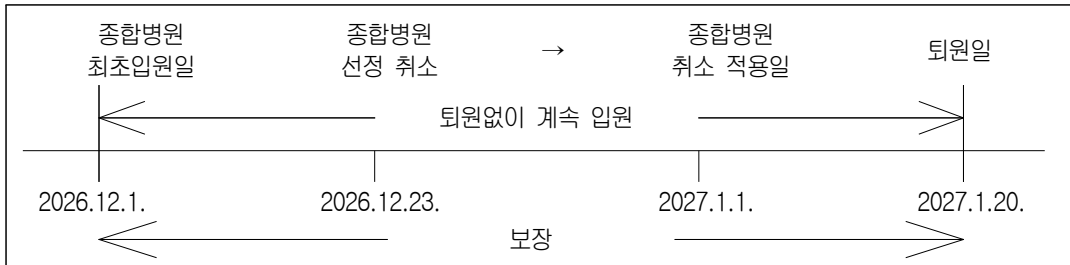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

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8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80일)를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해당 「종합병원」 퇴원일까지 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80일)를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80일)를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80일)를 지급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8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7. 성병
-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88.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88-1.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88-2.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20일)(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2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에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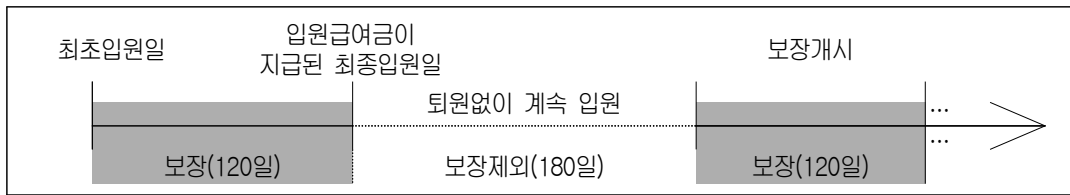
구 분	지 급 금 액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2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20일한도)

제2조(용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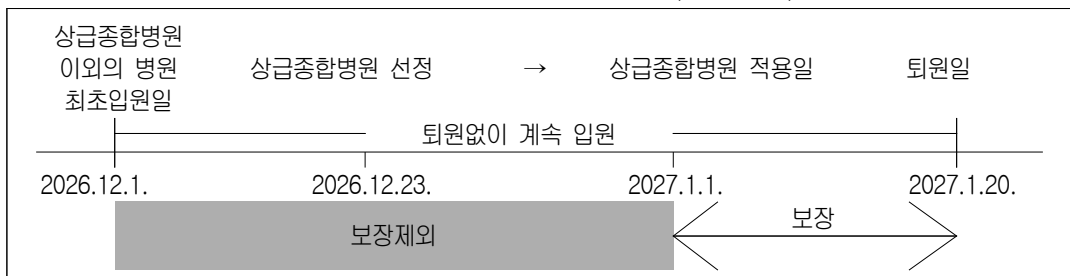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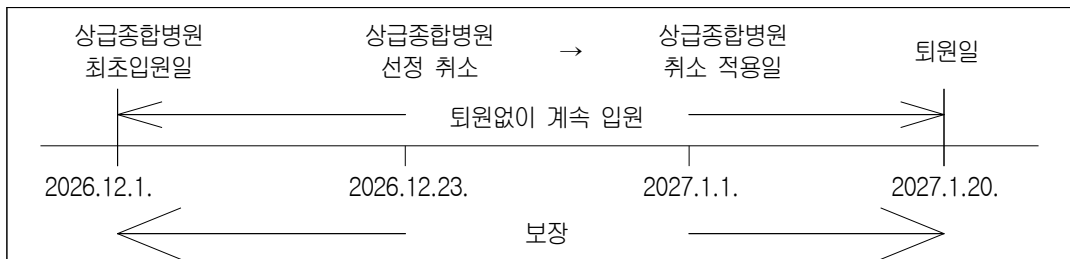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2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다음과 같이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 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2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20일)를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해당 상급종합병원 퇴원일까지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20일)를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20일)를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20일)를 지급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2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5.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6. 성병
7.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89. 질병입원비(1일~210일)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입원비(1일~21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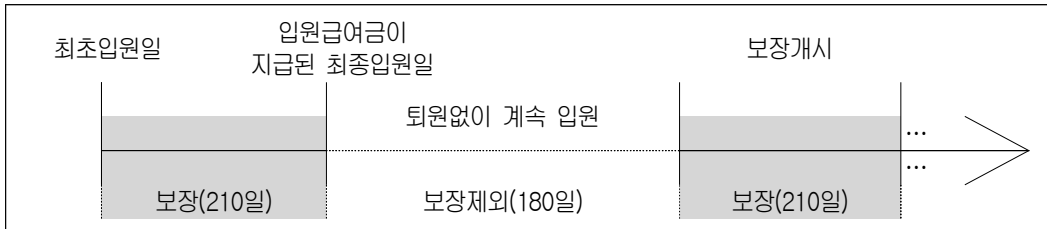
구 분	지 급 금 액
질병입원비(1일~21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210일한도)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질병입원비(1일~21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21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비(1일~21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다음과 같이 질병입원비(1일~21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 중인 경우에는 질병입원비(1일~21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질병입원비(1일~21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비(1일~21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0. 7대희귀난치성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90-1. 7대희귀난치성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90-2. 7대희귀난치성질환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7대희귀난치성질환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7대희귀난치성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7대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7대희귀난치성질환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7대희귀난치성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7대희귀난치성질환」이라 함은 「7대희귀난치성질환 분류표」(【별표58】참조)에 해당하는 1. 재생불량성빈혈, 2. 운동신경세포병, 3. 다발경화증, 4. 파킨슨병, 5. 심근질환(142.4(심내막탄력성유증) 제외), 6. 모야모야병, 7. 전신홍반루푸스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7대희귀난치성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임상적 증상과 함께 골수검사,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근전도검사 및 혈액검사 등 각 질환의 진단적 절차에 따라 시행한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7대희귀난치성질환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1. 천식지속상태(급성중증천식)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천식지속상태(급성중증천식)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천식지속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천식지속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천식지속상태(급성중증천식)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천식지속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천식지속상태」이라 함은 「천식지속상태 분류표」(【별표59】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천식지속상태」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천식지속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제1항의 「천식지속상태 분류표」에서 정한 J46(천식지속상태)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통계청)의 '주요 질환별 분류 지침'에 따라 '급성중증 천식', '불응의(refractory) 천식'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단, '천식', '중증천식', '급성천식', '만성천식'과 같은 용어로 표현되는 J45(천식)은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천식지속상태(급성중증천식)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2. 질병중환자실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 특별약관

92-1. 질병중환자실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 특별약관

92-2. 질병중환자실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태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중환자실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의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질병중환자실입원비 (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0일한도)

제3조(「중환자실」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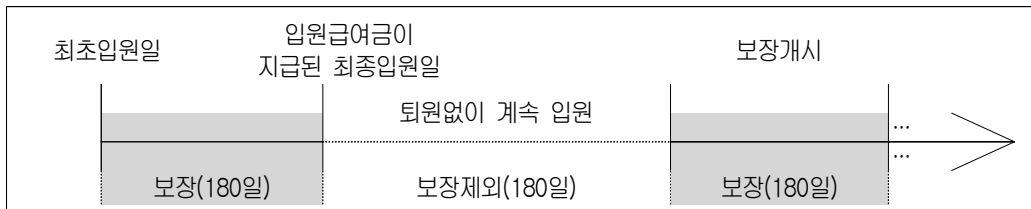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다음과 같이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

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이 특별약관에서 「선천성 뇌질환」이라 함은 「선천성 뇌질환 분류표」(【별표60】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심신상실
- 7. 성병
-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3. 질병수술동반입원비(선천이상포함)(1일~20일) 특별약관

93-1. 질병수술동반입원비(선천이상포함)(1일~20일) 특별약관

93-2. 질병수술동반입원비(선천이상포함)(1일~20일)(태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수술동반입원비(선천이상포함)(1일-2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하 “수술동반입원”이라 합니다)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 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나.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1항에서 정한 수술을 받는 경우
 - 다. 상기 가목 및 나목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질병수술동반입원비 (선천이상포함)(1일-2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20일한도)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수술로 간주합니다.
 1.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2.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행한 레이저(Laser)수술.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查)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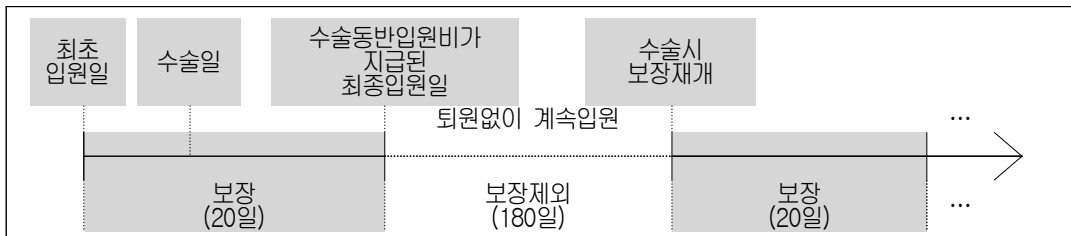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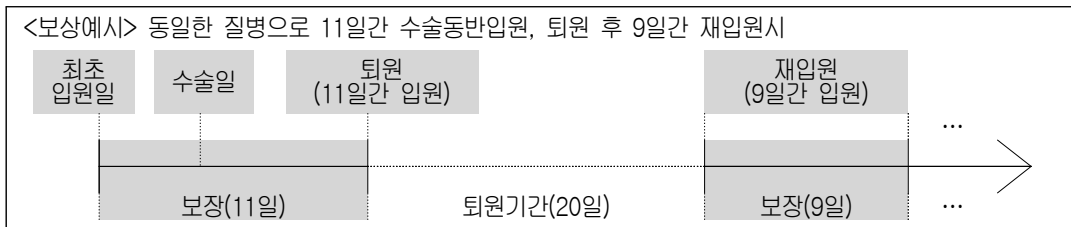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질병수술동반입원비(선천이상포함)(1일-2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수술 동반입원”당 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나목의 수술은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수술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질병수술동반입원비(선천이상포함)(1일-20일)는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수술동반입원비(선천이상포함)(1일-20일)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보며, 새로운 입원일 이후 같은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수술동반입원”으로 보아 새로운 입원일 1일째 날부터 입원 1일당 질병수술동반입원비(선천이상포함)(1일-20일)를 지급합니다.
- ④ 다음과 같이 질병수술동반입원비(선천이상포함)(1일-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수술동반입원비(선천이상포함)(1일-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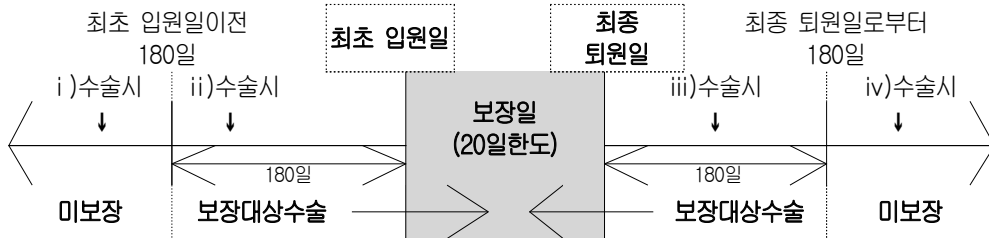
- 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수술동반입원비(선천이상포함)(1일-20일)는 “수술” 이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수술동반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수술동반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질병수술 동반입원비(선천이상포함)(1일-2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의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할 때에는 회사는 질병수술동반입원비(선천이상포함)(1일-2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⑧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최초 입원일 이전 180일부터 최초 입원일 이내” 또는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기 이전” 수술이며,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수술동반입원비(선천이상포함)(1일-20일)를 제1항 내지 6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특히, 같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먼저 한 수술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보장합니다.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 보상 기준>



- i) 최초 입원일 이전 180일 전 수술시 미보장
- ii) 최초 입원일 이전 180일부터 최초 입원일 이내 수술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수술 동반입원비(선천이상포함)(1일~20일)를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1항 내지 5항에 따라 보장
- iii)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일 이전 수술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수술동반입원비(선천이상포함)(1일~20일)를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1항 내지 5항에 따라 보장
- iv) 최종입원 퇴원일의 180일 경과일 이후 수술시 미보장

- ⑨ 이 특별약관에서 「선천이상」이라 함은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별표53】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5.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6. 성병
 - 7.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8.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9.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 10.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11.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② 회사는 아래의 질병에 의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2.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단,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 4. 비만(E66) 수술
- 5. 요실금(N39.3, N39.4, R32)
- 6.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 7.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③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고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4.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210일) 특별약관

94-1.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210일) 특별약관

94-2.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210일)(태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21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21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210일한도)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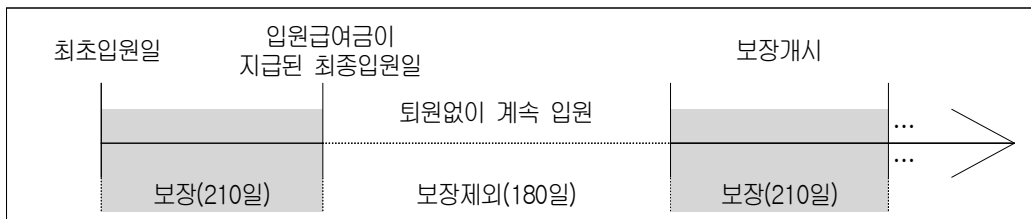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21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21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21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다음과 같이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21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21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21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21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이 특별약관에서 「선천성 뇌질환」이라 함은 「선천성 뇌질환 분류표」(【별표60】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지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5.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 특별약관

95-1.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 특별약관

95-2.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태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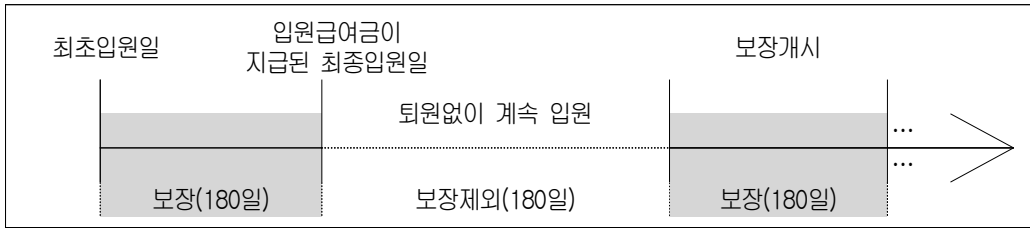
구 분	지 급 금 액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0일한도)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란도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다음과 같이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이 특별약관에서 「선천성 뇌질환」이라 함은 「선천성 뇌질환 분류표」(【별표60】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6. 신재진단암진단비Ⅱ(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포함, 5회한) 특별약관
 96-1. 신재진단암진단비Ⅱ(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포함, 5회한) 특별약관
 96-2. 신재진단암진단비Ⅱ(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포함, 5회한)
 (갱신형_10년) 특별약관

98-1은 비갱신형으로,
 98-2은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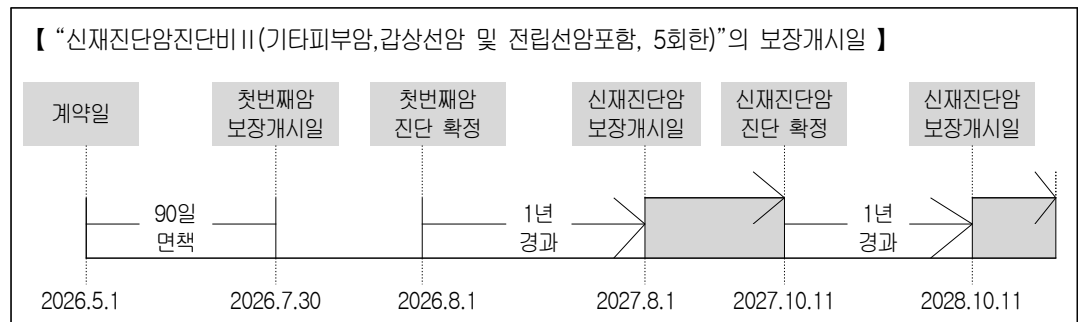
1. 신재진단암진단비Ⅱ(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포함, 5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신재진단암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및 「신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항의 「신재진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신재진단암진단비Ⅱ (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포함, 5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신재진단암진단비Ⅱ(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포함, 5회한)」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첫 번째 「신재진단암」 :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2. 두 번째 이후 「신재진단암」 : 직전 「신재진단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날의 다음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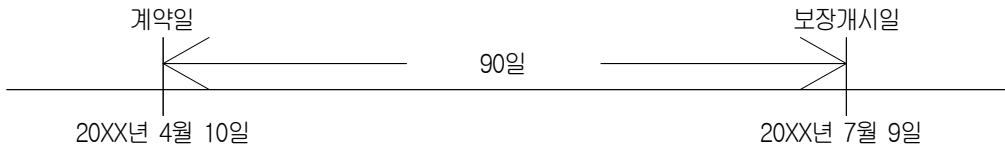


② 제1항 제1호의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은 「첫번째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진단받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첫번째 암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 가.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나.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첫번째암 보장개시일(15세이상 피보험자)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에 한함)



-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신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포함, 5회한)의 보험금 지급횟수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갱신형 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을 포함합니다) 중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른 총 지급횟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및 「신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② 「신재진단암」이란 다음 각 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새로운 원발암
 2. 전이암
 3. 재발암
 4. 잔여암
- ③ 제2항에서 「새로운 원발암」이란 원발부위에 발생한 암으로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또는 「신재진단암」과 다른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이하 「새로운 원발암」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④ 제2항에서 「전이암」이란 원발부위의 암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침윤 또는 원격전이) 다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적인 분열과 성장과정을 거쳐 증식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을 말합니다.
- ⑤ 제2항에서 「재발암」이란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또는 「신재진단암」과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으로서 치료를 통해 몸에서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또는 「신재진단암」의 암세포를 제거한 후 그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이 출현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명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을 말합니다.
- ⑥ 제2항에서 「잔여암」이란 제3조(「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및 「신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 제1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으로 발생한 암진단부위에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⑦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의 진단 확정일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7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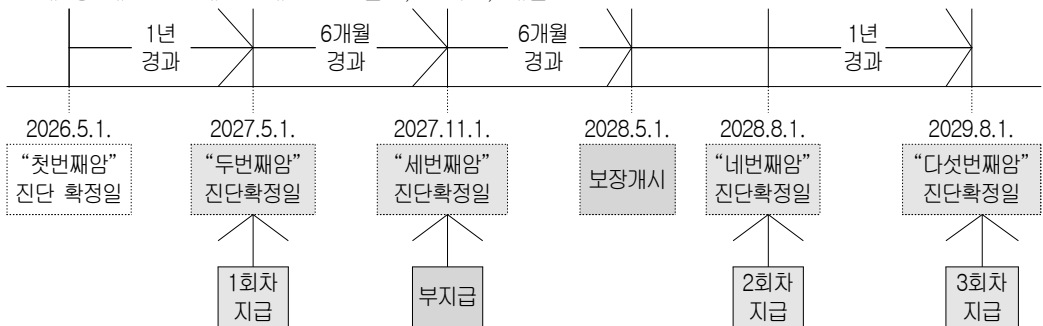
- ⑨ 「신재진단암」의 진단 확정일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재진단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⑩ 제9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신재진단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수술)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 치료시점에서 암세포의 잔존이 확인되지 않은 암에 대한 치료(보조적 또는 예방적암치료)는 제외 합니다.

<「제9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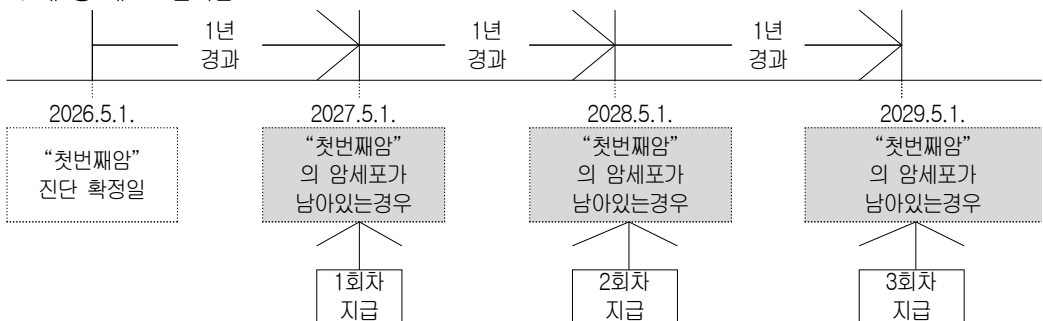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신재진단암진단비Ⅱ(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포함, 5회한)」의 보장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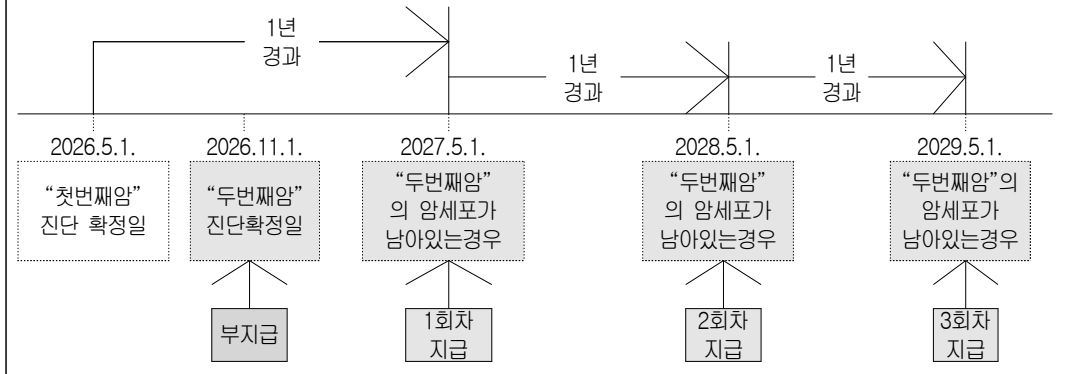
1. 제2항 제1호 ~ 제3호 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2. 제2항 제4호 잔여암



3. 제2항 제4호 잔여암



제4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스,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8.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종이내튜브유치술(종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내에 제3조(「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및 「신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신재진단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및 「신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된 특별약관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으로 진단확정 되지 않은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을 최초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2.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이미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또는 「신재진단암」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을 직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의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제9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 ① 98-2. 신재진단암진단비Ⅱ(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포함, 5회환)(갱신형_1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1. [갱신종료나이-1]세까지 첫 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이 진단확정되지 않은 경우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보험금이 지급되고, 잔여 보험기간이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년 이하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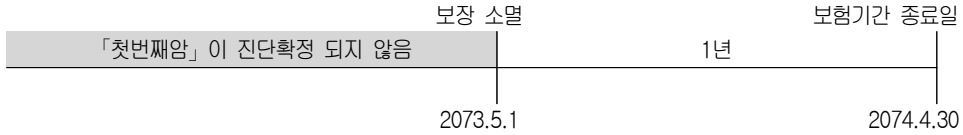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신재진단암진단비Ⅱ(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포함, 5회환)의 5회차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점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1.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이 진단확정 되지 않고, 보험기간 종료일(갱신형은 갱신종료나이의 계약해당일)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하인 경우
 2. 「신재진단암」이 진단확정 되어 “신재진단암진단비Ⅱ(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포함, 5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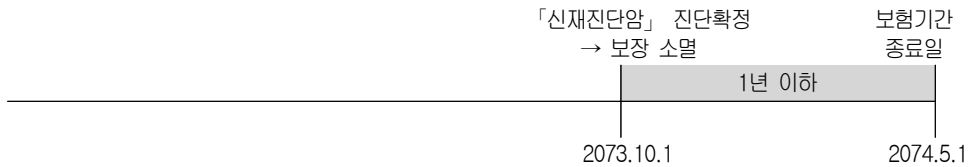
한)”가 5회차 미만 지급되고, 보험기간 종료일(갱신형은 갱신종료나이의 계약해당일)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년 이하인 경우

【 신재진단암진단비Ⅱ(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포함, 5회한) 보장소멸 예시 】

1. 「첫번째암」이 진단확정 되지 않고, 보험기간 종료일(갱신형은 갱신종료나이의 계약해당일)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2. 「신재진단암」 5회차 미만 진단확정 시점에 보험기간 종료일(갱신형은 갱신종료나이의 계약해당일)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③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7. 신재진단암진단비Ⅱ(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포함, 5회한)(면책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신재진단암진단비Ⅱ(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포함, 5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신재진단암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및 「신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항의 「신재진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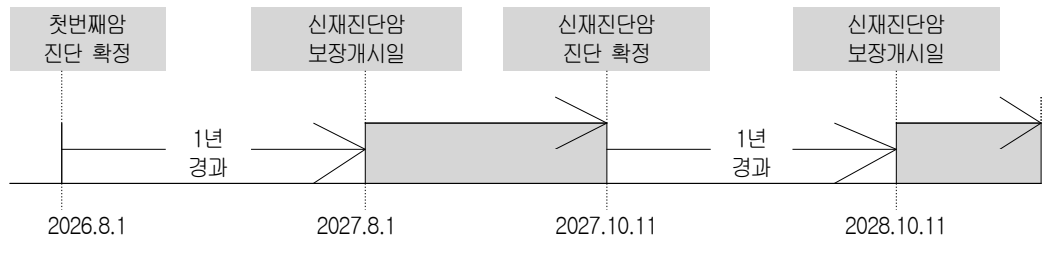
구 분	지 급 금 액
신재진단암진단비Ⅱ (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포함, 5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9.계약전환 특별약관」에서 정한 제1종 「전환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에 발생한 「첫번째암」, 「신재진단암」은 이 특별약관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미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신재진단암진단비Ⅱ(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포함, 5회한)」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 첫 번째 「신재진단암」 :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 두 번째 이후 「신재진단암」 : 직전 「신재진단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

의 다음날

【 “신재진단암진단비Ⅱ(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포함, 5회한)”의 보장개시일 】



- ③ 제2항 제1호의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은 최초로 진단받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을 말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및 「신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② 「신재진단암」이란 다음 각 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새로운 원발암
 2. 전이암
 3. 재발암
 4. 잔여암
- ③ 제2항에서 「새로운 원발암」이란 원발부위에 발생한 암으로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또는 「신재진단암」과 다른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이하 「새로운 원발암」이라 함)을 말합니다.
- ④ 제2항에서 「전이암」이란 원발부위의 암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침윤 또는 원격전이) 다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적인 분열과 성장과정을 거쳐 증식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을 말합니다.
- ⑤ 제2항에서 「재발암」이란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또는 「신재진단암」과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으로서 치료를 통해 몸에서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또는 「신재진단암」의 암세포를 제거한 후 그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선암 포함) 또는 「신재진단암」으로 인하여 새롭게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이 출현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명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을 말합니다.

- ⑥ 제2항에서 「잔여암」이란 제3조(「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및 「신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 제1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으로 발생한 암진단부위에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⑦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의 진단 확정에는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7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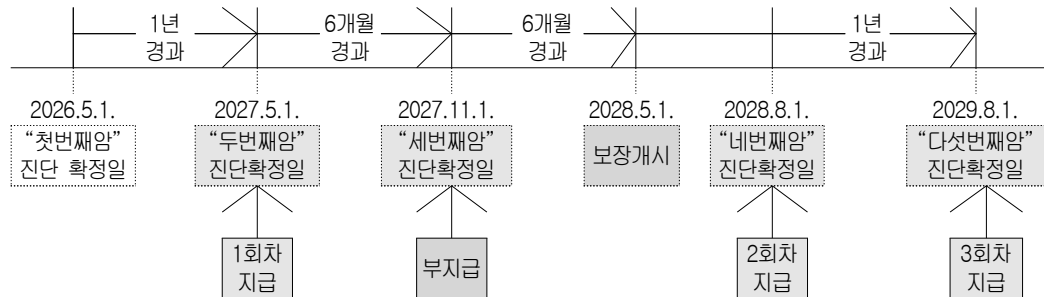
- ⑨ 「신재진단암」의 진단 확정에는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재진단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⑩ 제9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신재진단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수술)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 치료시점에서 암세포의 잔존이 확인되지 않은 암에 대한 치료(보조적 또는 예방적암치료)는 제외 합니다.

<「제9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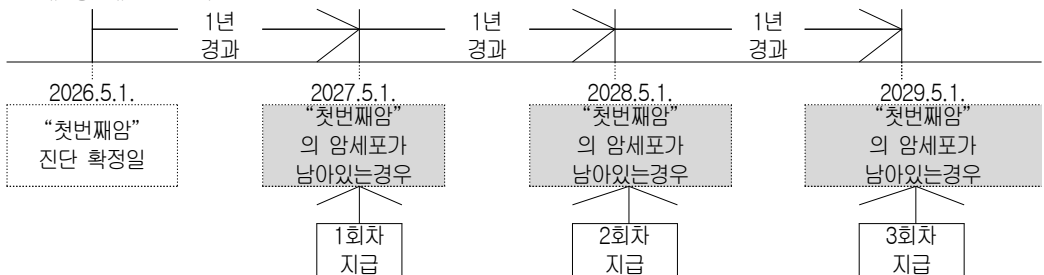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신재진단암진단비Ⅱ(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포함, 5회한)」의 보장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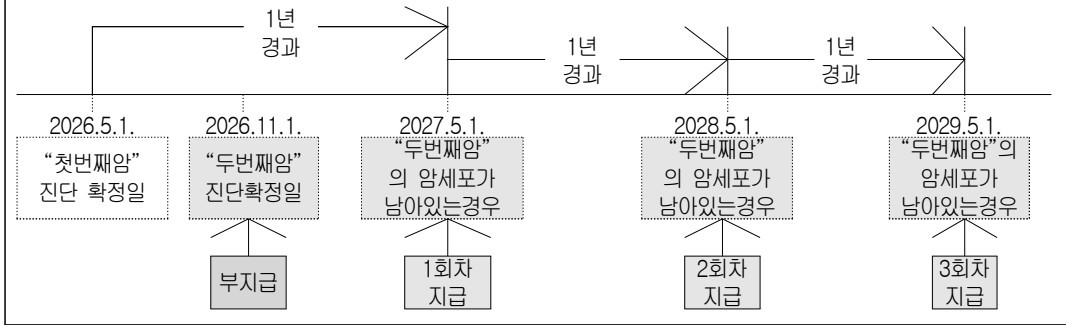
1. 제2항 제1호 ~ 제3호 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2. 제2항 제4호 잔여암



3. 제2항 제4호 잔여암



제4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암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8.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내에 제3조(「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및 「신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신재진단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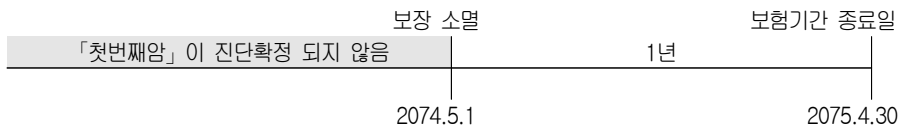
- ①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된 특별약관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으로 진단확정 되지 않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을 최초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을 적용
 2.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이미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또는 「신재진단암」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을 직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의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을 적용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신재진단암진단비II(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포함, 5회한)의 5회차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점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1.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이 진단확정 되지 않고,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기간이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하인 경우
 2. 「신재진단암」이 진단확정 되어 「신재진단암진단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포함)」가 지급되고,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기간이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년 이하인 경우

【 신재진단암진단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포함) 보장소멸 예시 】

1. 「첫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이 진단확정 되지 않고,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2. 「신재진단암」 진단확정 시점에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③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8. 암직접치료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98-1. 암직접치료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98-2. 암직접치료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직접치료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관련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때 “암 종류별로 각각” 통원 1회당 연간 30회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암직접치료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	통원 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이하 「암관련질병」이라 함)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별표22-2】 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별표22-3】 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관련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①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③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제4조(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하며,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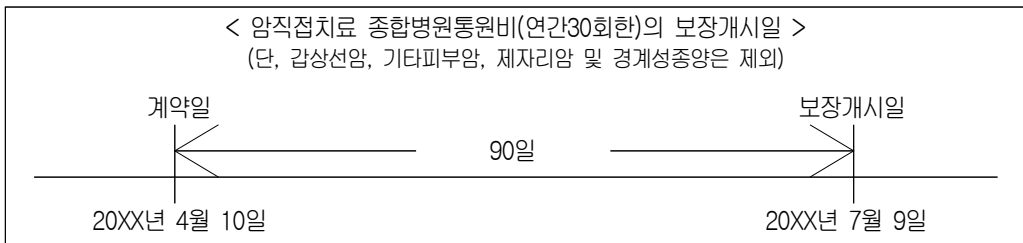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는 것
 2. 100 병상 이상 300 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 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암직접치료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2.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암 종류별로 각각”이라 함은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각각을 말합니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직접치료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는 “암종류별로 각각”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간30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암 종류별로 각각 연간 30회한도]

- 암 → 연간30회한도
- 갑상선암 → 연간30회한도
- 기타피부암 → 연간30회한도
- 제자리암 → 연간30회한도
- 경계성종양 → 연간30회한도

[암 종류별로 각각 하루에 2회이상 통원시]

- 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갑상선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기타피부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제자리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경계성종양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암관련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암관련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관련질병」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관련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이상에 의한 통원으로서 통원 후 최초로 「암관련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관

련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동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암직접치료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를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되기 전일까지의 통원기간에 대하여 암직접치료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를 지급합니다.
-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9. 암직접치료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직접치료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관련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때 “암 종류별로 각각” 통원 1회당 연간 30회한으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암직접치료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	통원 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이하 「암관련 질병」이라 함이다)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22-2】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22-3】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입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관련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①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함입니다)를 말합니다.
- ②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③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관련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제4조(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하며,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2. 100 병상 이상 300 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 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관련질환」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 종류별로 각각”이라 함은 제2조(「암관련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각각을 말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직접치료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는 “암종류별로 각각”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간30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암 종류별로 각각 연간 30회한도]	[암 종류별로 각각 하루에 2회이상 통원시]
· 암 → 연간30회한도	· 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갑상선암 → 연간30회한도	· 갑상선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기타피부암 → 연간30회한도	· 기타피부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제자리암 → 연간30회한도	· 제자리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경계성종양 → 연간30회한도	· 경계성종양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암관련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암관련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관련질병」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관련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이상에 의한 통원으로서 통원 후 최초로 「암관련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관련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⑤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암직접치료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를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되기 전날까지의 통원기간에 대하여 암직접치료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를 지급합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0.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100-1.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100-2.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관련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때 “암 종류별로 각각” 통원 1회당 연간 30회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	통원 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이하 「암관련 질병」이라 함이다)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 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22-2】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22-3】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관련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①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함입니다)를 말합니다.
- ②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③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제4조(용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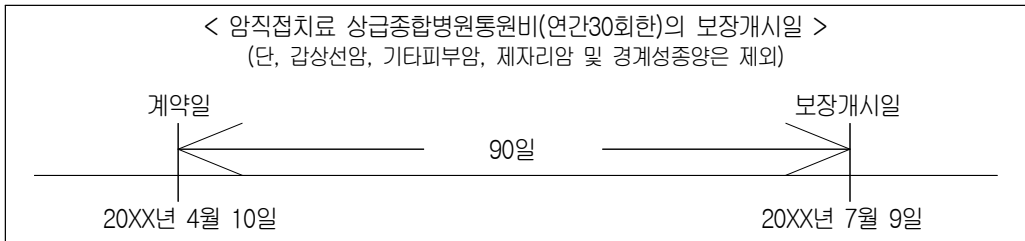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2.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암 종류별로 각각”이라 함은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각각을 말합니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는 “암종류별로 각각”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간30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암 종류별로 각각 연간 30회한도]	[암 종류별로 각각 하루에 2회이상 통원시]
· 암 → 연간30회한도 · 갑상선암 → 연간30회한도 · 기타피부암 → 연간30회한도 · 제자리암 → 연간30회한도 · 경계성종양 → 연간30회한도	· 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갑상선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기타피부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제자리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경계성종양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암관련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암관련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병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관련질병」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관련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이상에 의한 통원으로서 통원 후 최초로 「암관련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관련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를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되기 전날까지의 통원기간에 대하여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를 지급합니다.
-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1.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관련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때 「암 종류별로 각각」 통원 1회당 연간 30회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	통원 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이하 「암관련질병」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22-2】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22-3】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관련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①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③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제4조(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 종류별로 각각”이라 함은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인) 제1항에서

정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각각을 말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는 “암종류별로 각각”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간30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암 종류별로 각각 연간 30회한도]	[암 종류별로 각각 하루에 2회이상 통원시]
· 암 → 연간30회한도 · 갑상선암 → 연간30회한도 · 기타피부암 → 연간30회한도 · 제자리암 → 연간30회한도 · 경계성종양 → 연간30회한도	· 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갑상선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기타피부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제자리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경계성종양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암관련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암관련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관련질병」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관련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이상에 의한 통원으로서 통원 후 최초로 「암관련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관련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를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되기 전일까지의 통원기간에 대하여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를 지급합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2.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갱신형_1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II	최초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갱신계약	갱신일로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 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관련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4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의료기관에서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예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 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용어의 정의

-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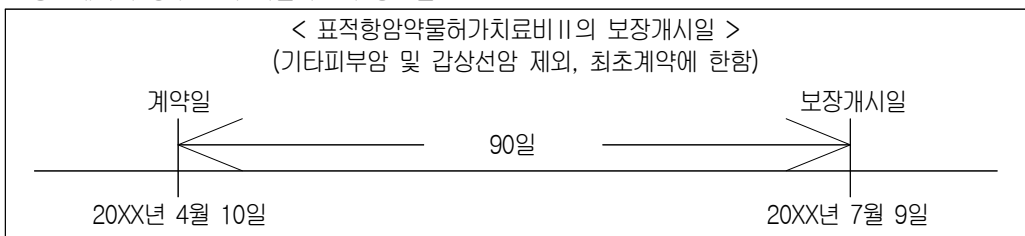
제4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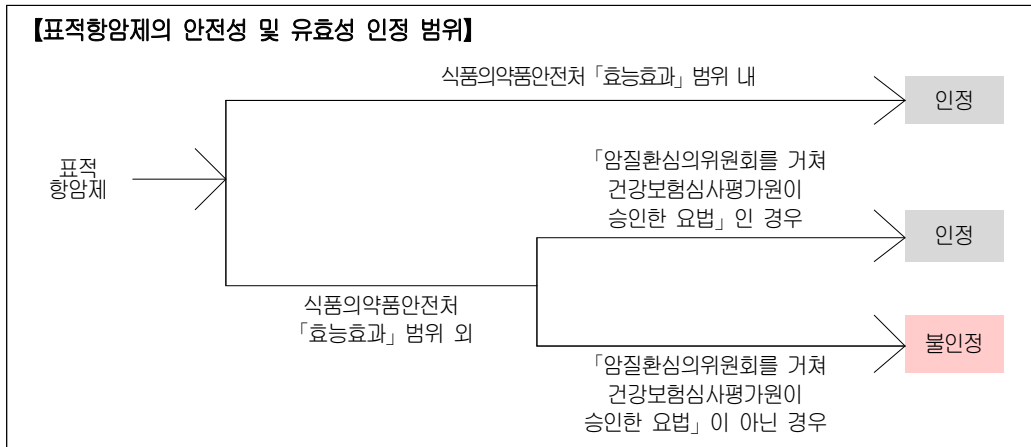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II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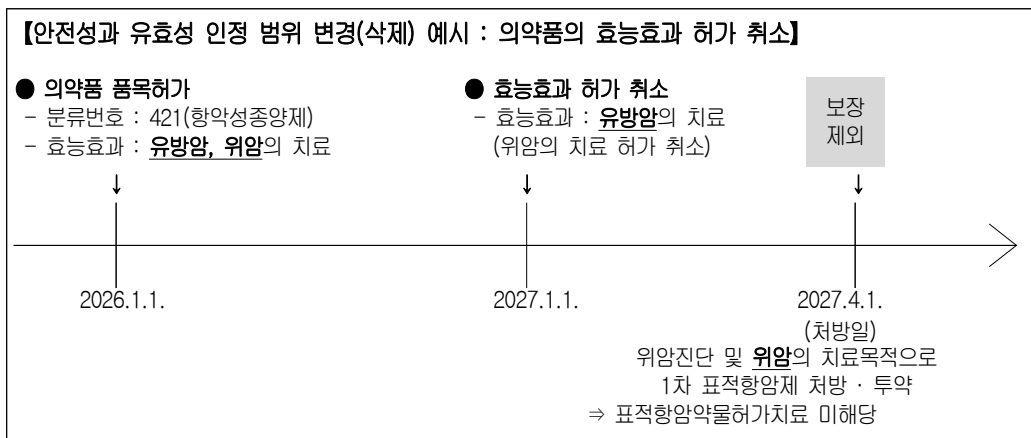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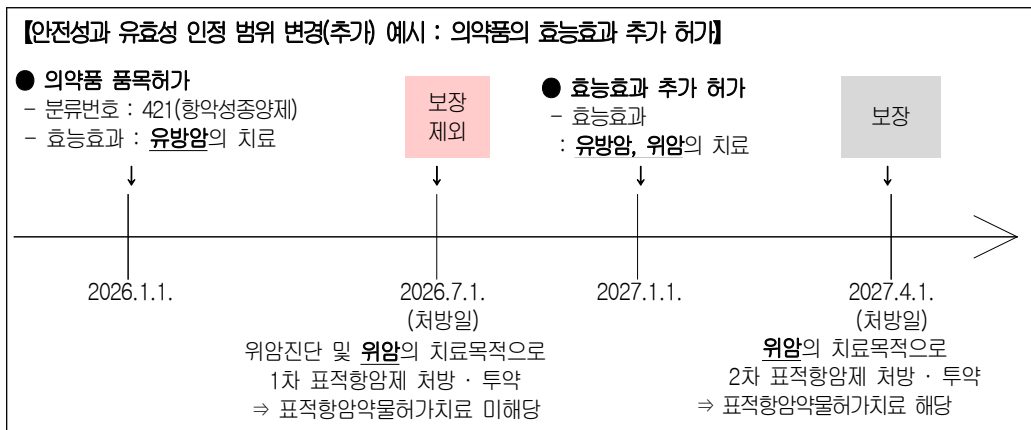
1. 최초계약의 경우
 - 가.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나.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II는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3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은 제외합니다)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 (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ㄱ. 진단명
 -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1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중 7. 갱신행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12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II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3.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면책없음,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4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의료기관에서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용어의 정의

-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항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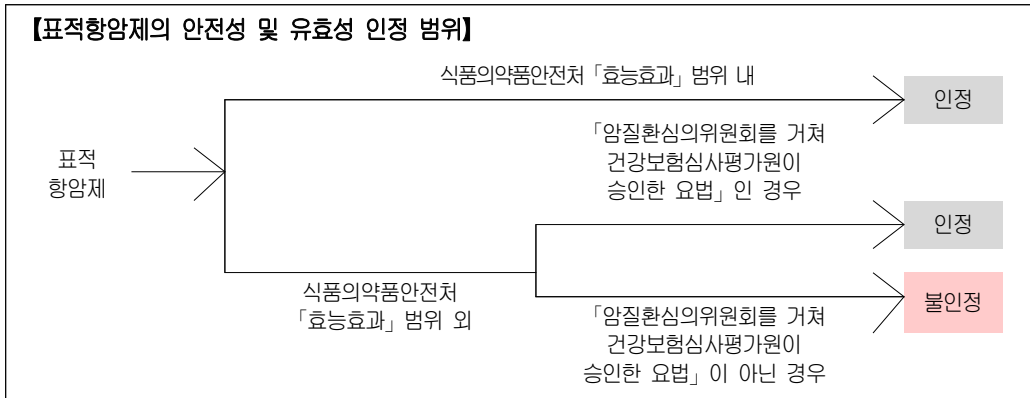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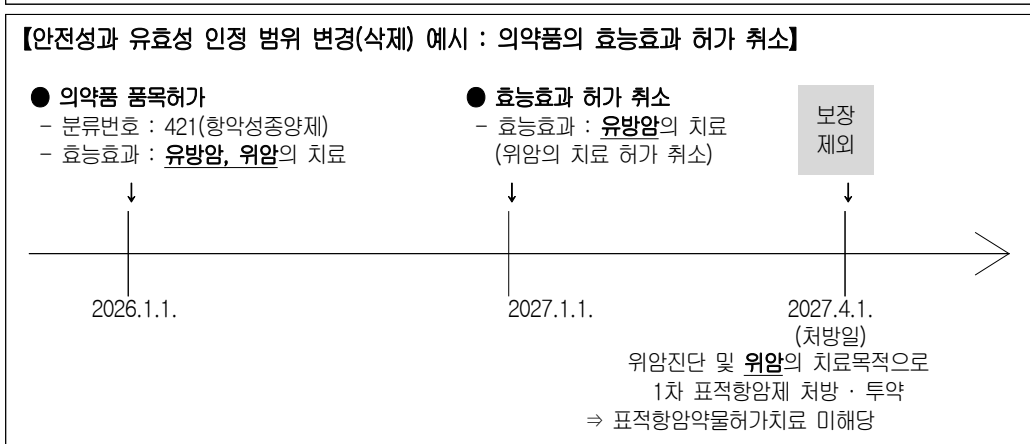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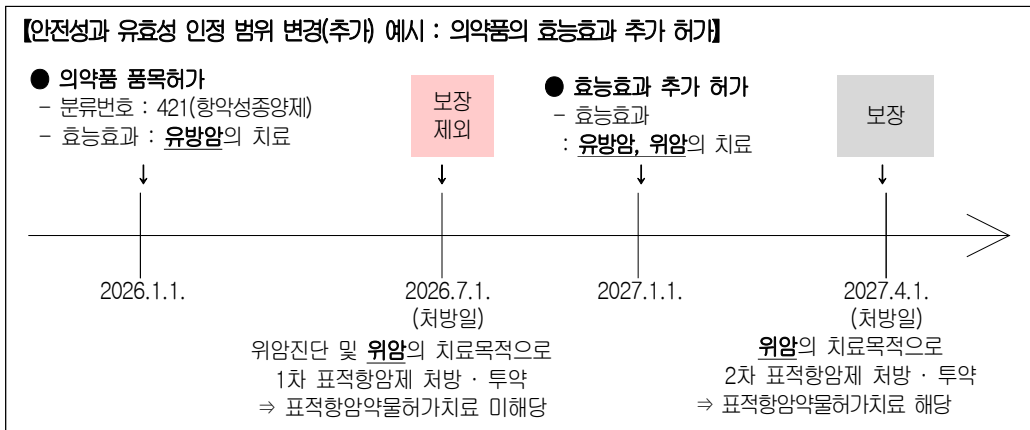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3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 (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ㄱ. 진단명
 -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조항은 계약전환 후 계약(4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계약전환 후 계약(4종)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4. 수족구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104-1. 수족구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104-2. 수족구진단비(연간1회한)(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수족구진단비(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수족구」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수족구」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수족구진단비(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연간1회한)

제2조(「수족구」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족구」라 함은 「수족구 분류표」(【별표6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족구」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하여야 하며, 이 진단은 임상적 특징 또는 혈액, 대소변, 뇌척수액, 타액, 뇌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원 및 항체 검출검사 등을 기초로 내려져야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5. 수두진단비 특별약관

105-1. 수두진단비 특별약관

105-2. 수두진단비(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수두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수두」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수두」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수두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제2조(「수두」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두」라 함은 「수두 분류표」(【별표62】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두」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하여야 하며, 이 진단은 임상적 특징 또는 혈액, 대소변, 뇌척수액, 타액, 뇌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원 및 항체 검출검사 등을 기초로 내려져야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수두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6. 특정정신질환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특정정신질환진단비(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특정정신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특정정신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특정정신질환진단비(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연간1회한)

제2조(「특정정신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정신질환」이라 함은 「특정정신질환 분류표」(【별표63】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특정정신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정신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에 의해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기록 또는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검사 결과지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7. 결핵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결핵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결핵」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결핵」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결핵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결핵」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결핵」이라 함은 「결핵 분류표」(【별표64】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약제 감수성검사(신속 내성 검사를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이소니아지드(Isoniazid) 및 리팜피신(Rifampicin) 모두에 동시 내성이 있는 약제내성결핵균이 발견된 경우에도 「결핵」으로 인정합니다.
- ② 제1항의 「결핵」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다만, 회사가 약제감수성검사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결핵균 검사 결과지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결핵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8.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이라 함은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 분류표」(【별표65】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약제감수성검사(신속 내성 검사를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이 소니아지드(Isoniazid) 및 리팜피신(Rifampicin) 모두에 동시 내성이 있는 약제내성결핵균이 발견된 경우에도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으로 인정합니다.
- ② 제1항의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다만, 회사가 약제감수성검사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약제감수성결핵균(슈퍼결핵) 검사결과지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9. 중기이상 만성폐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중기이상 만성폐질환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중기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중기이상 만성폐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중기이상 만성폐질환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중기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기이상 만성폐질환」이라 함은 「만성폐질환 분류표」(【별표67】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에서 폐장이 비가역적인 기능부전을 보여서 그 결과 평지에서서의 보행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상태로서 다음의 한 가지 기준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폐기능 검사에서 최대한 노력하여 잘 불었을 때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0)이 지속적으로 정상에 측치의 40% 이하
 2. 비가역적인 만성 저산소증으로서 안정상태에서의 동맥혈 가스분석검사(ABGA)상 동맥혈 산소분압(PaO2)이 65 mmHg 이하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능 검사성적과 동맥혈 가스분석검사는 그 성질상 변동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폐질환의 경과 중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게 상병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검사성적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 ③ 「중기이상 만성폐질환」의 진단 확정은 정기적인 흉부X선 소견, 폐기능 검사, 동맥혈 가스검사 등을 확인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기이상 만성폐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기이상 만성폐질환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조항은 계약전환 후 계약(4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계약전환 후 계약(4종)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기이상 만성폐질환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0. 말기만성폐질환진단비(강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말기만성폐질환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말기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말기 만성폐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말기만성폐질환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말기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말기 만성폐질환」이라 함은 「만성폐질환 분류표」(【별표67】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에서 폐장이 비가역적인 기능부전을 보여서 그 결과 평지에서의 보행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상태에서 다음의 한 가지 기준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폐기능 검사에서 최대한 노력하여 잘 불었을 때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0)이 지속적으로 정상에 측치의 30% 이하
 - 비가역적인 만성 저산소증으로서 안정상태에서의 동맥혈 가스분석검사(ABGA)상 동맥혈 산소분압(PaO2)이 60 mmHg 이하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능 검사성과 동맥혈 가스분석검사는 그 성질상 변동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폐질환의 경과 중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게 상병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검사성적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 「말기 만성폐질환」의 진단 확정은 정기적인 흉부X선 소견, 폐기능 검사, 동맥혈 가스검사 등을 확인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 만성폐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말기 만성폐질환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조항은 계약전환 후 계약(4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계약전환 후 계약(4종)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말기만성폐질환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1. 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만성폐쇄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만성폐쇄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 함은 「만성폐쇄성폐질환 분류표」(【별표68】참조)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폐활량측정법 검사결과 다음의 기준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1.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한 후 폐활량측정법으로 FVC(노력성폐활량), FEV1(1초간 노력성호기량)을 측정하여 1초간 FEV1/FVC가 0.7 미만
- ② 제1항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 확정은 표준화된 방법으로 시행된 폐활량측정법 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다만, 폐기능 검사성적은 그 성질이 변동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게 상병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검사성적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조항은 계약전환 후 계약(4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계약전환 후 계약(4종)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2. 기흉진단비 특별약관

112-1. 기흉진단비 특별약관

112-2. 기흉진단비(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기흉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기흉」 및 「신생아기흉」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기흉」 및 「신생아기흉」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기흉진단비	기흉진단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신생아기흉진단시(태아가입자에 한함)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

제2조(「기흉」 및 「신생아기흉」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기흉」 및 「신생아기흉」이라 함은 「기흉 및 신생아기흉 분류표」(【별표69】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기흉」 및 「신생아기흉」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이 진단은 병력, 흉부X선 촬영, 흉부전산화단층촬영(CT) 혹은 흉부방사선촬영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흉」 또는 「신생아기

흉」검사 결과지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기흉」으로 진단 확정되어 기흉진단비를 지급받은 이후에 「신생아기흉」으로 진단 확정시에는 기흉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기흉진단비(단, 신생아기흉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3. 3대질병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직접치료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의 「암관련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때 “암 종류별로 각각” 통원 1회당 연간 30회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2. 뇌졸중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의 「뇌졸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연간 30회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3. 급성심근경색증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4항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연간 30회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3대질병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	통원 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3대질병」이라 함은 「암관련질병」,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을 말합니다.

② 「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암관련질병」이라 함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22-2】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6.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22-3】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7. 제2호 내지 제6호의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8. 제7호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관련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7호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③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 제2호의 「뇌졸중」라 함은 「뇌졸중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별표15】참조)에서 「뇌졸중」에 해당하는 1. 거미막하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제1호의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

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가’와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 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용어설명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뇌혈관조영술]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희게 촬영되는 물질(조영제)을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γ 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여하여 그 분포상태의 단면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촬영법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 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뇌척수액 검사]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④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 제3호의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별표18】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제1호의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가’와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①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 제1호 암직접치료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의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③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제4조(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하며,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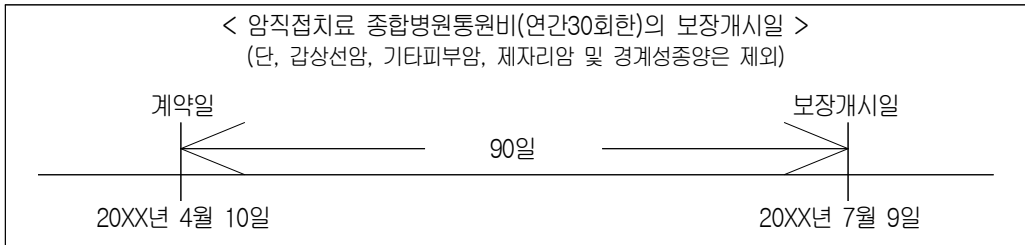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2. 100 병상 이상 300 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 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동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관련질병」의 직접치료,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암직접치료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2.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암 종류별로 각각”이라 함은 제2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인) 제2항에서 정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각각을 말합니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직접치료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는 “암종류별로 각각”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간30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암 종류별로 각각 연간 30회한도]

- 암 → 연간30회한도
- 갑상선암 → 연간30회한도
- 기타피부암 → 연간30회한도
- 제자리암 → 연간30회한도
- 경계성종양 → 연간30회한도

[암 종류별로 각각 하루에 2회이상 통원시]

- 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갑상선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기타피부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제자리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경계성종양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뇌졸중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는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간30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급성심근경색증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는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간30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⑦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암관련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암관련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관련질병」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관련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통원으로서 통원 후 최초로 「암관련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관련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⑧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뇌졸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뇌졸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졸중」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통원으로서 통원 후 최초로 「뇌졸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증」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통원으로서 통원 후 최초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⑩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3대질병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를 지급합니다.
- ⑪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되기 전날까지의 통원기간에 대하여 3대질병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를 지급합니다.
- ⑫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취소)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전에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로부터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이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특별약관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이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4. 3대질병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직접치료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의 「암관련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때 “암 종류별로 각각” 통원 1회당 연간 30회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2. 뇌졸중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의 「뇌졸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연간 30회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3. 급성심근경색증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4항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연간 30회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3대질병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	통원 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3대질병」이라 함은 「암관련질병」,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을 말합니다.

② 「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암관련질병」이라 함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 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22-2】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6.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22-3】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7. 제2호 내지 제6호의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소액암」,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8. 제7호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관련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7호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③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 제2호의 「뇌졸중」라 함은 「뇌졸중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별표15】참조)에서 「뇌졸중」에 해당하는 1. 거미막하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제1호의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가'와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 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용어설명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뇌혈관조영술]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희게 촬영되는 물질(조영제)을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γ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여하여 그 분포상태의 단면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촬영법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 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뇌척수액 검사]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④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 제3호의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별표18】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제1호의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가'와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①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 제1호 암직접치료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의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③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제4조(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하며,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는 것
 2. 100 병상 이상 300 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 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는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관련질병」의 직접치료,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 종류별로 각각」이라 함은 제2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항에서 정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각각을 말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직접치료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는 “암종류별로 각각”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간30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암 종류별로 각각 연간 30회한도]	[암 종류별로 각각 하루에 2회이상 통원시]
· 암 → 연간30회한도 · 갑상선암 → 연간30회한도 · 기타피부암 → 연간30회한도 · 제자리암 → 연간30회한도 · 경계성종양 → 연간30회한도	· 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갑상선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기타피부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제자리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경계성종양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뇌졸중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는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간30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급성심근경색증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는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간30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암관련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암관련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관련질병」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관련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이상에 의한 통원으로서 통원 후 최초로 「암관련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관련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⑦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뇌졸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뇌졸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졸중」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이상에 의한 통원으로서 통원 후 최초로 「뇌졸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⑧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증」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이상에 의한 통원으로서 통원 후 최초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⑨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3대질병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를 지급합니다.
- ⑩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되기 전날까지의 통원기간에 대하여 3대질병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를 지급합니다.
- ⑪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5. 3대질병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의 「암관련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때 “암 종류별로 각각” 통원 1회당 연간 30회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2. 뇌졸중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의 「뇌졸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연간 30회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3. 급성심근경색증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4항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연간 30회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3대질병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	통원 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3대질병」이라 함은 「암관련질병」,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을 말합니다.
- ② 「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암관련질병」이라 함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 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22-2】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6.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22-3】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7. 제2호 내지 제6호의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소액암」,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8. 제7호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관련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7호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③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 제2호의 「뇌졸중」라 함은 「뇌졸중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별표15】참조)에서 「뇌졸중」에 해당하는 1. 거미막하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 동맥의 폐색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제1호의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 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 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가’와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용어설명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뇌혈관조영술]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희게 촬영되는 물질(조영제)를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γ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여하여 그 분포상태의 단면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촬영법

[양전자 방출 단층술(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 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뇌척수액 검사]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④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 제3호의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별표18】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제1호의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

- 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가’와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①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 제1호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의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항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③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제4조(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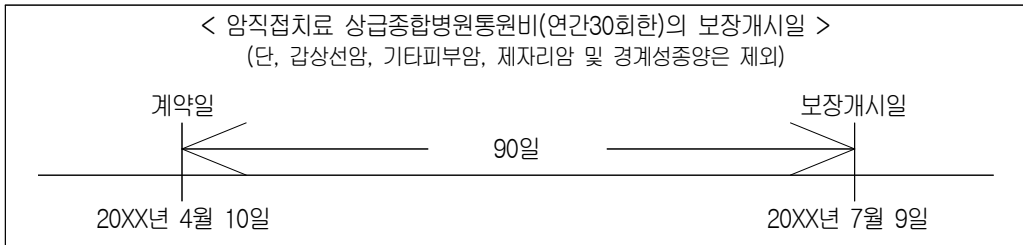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관련질병」의 직접치료,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2.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암 종류별로 각각」이라 함은 제2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항에서 정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각각을 말합니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는 「암종류별로 각각」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간30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암 종류별로 각각 연간 30회한도]	[암 종류별로 각각 하루에 2회이상 통원시]
· 암 → 연간30회한도 · 갑상선암 → 연간30회한도 · 기타피부암 → 연간30회한도 · 제자리암 → 연간30회한도 · 경계성종양 → 연간30회한도	· 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갑상선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기타피부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제자리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경계성종양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뇌졸중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는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간30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급성심근경색증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는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간30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⑦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암관련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암관련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관련질병」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관련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통원으로서 통원 후 최초로 「암관련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관련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⑧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뇌졸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뇌졸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졸중」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통원으로서 통원 후 최초로 「뇌졸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증」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통원으로서 통원 후 최초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⑩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3대질병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를 지급합니다.
- ⑪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되기 전일까지의 통원기간에 대하여 3대질병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를 지급합니다.
- ⑫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취소)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전에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로부터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이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특별약관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이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6. 3대질병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의 「암관련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때 “암 종류별로 각각” 통원 1회당 연간 30회한으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2. 뇌졸중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의 「뇌졸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연간 30회한으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3. 급성심근경색증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4항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연간 30회한으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3대질병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	통원 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3대질병」이라 함은 「암관련질병」,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을 말합니다.

② 「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암관련질병」이라 함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22-2】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6.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22-3】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7. 제2호 내지 제6호의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8. 제7호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관련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7호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③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 제2호의 「뇌졸중」라 함은 「뇌졸중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별표15】참조)에서 「뇌졸중」에 해당하는 1. 거미막하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제1호의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

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가’와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용어설명

【 전산화단층촬영(CT) 】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 자기공명영상(MRI) 】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 뇌혈관조영술 】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희게 촬영되는 물질(조영제)을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γ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여하여 그 분포상태의 단면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촬영법

【 양전자 방출 단층술(PET) 】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 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 뇌척수액 검사 】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④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 제3호의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별표18】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제1호의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가’와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①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 제1호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의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③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제4조(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관련질병」의 직접치료,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 종류별로 각각”이라 함은 제2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항에서 정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각각을 말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는 “암종류별로 각각”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간30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암 종류별로 각각 연간 30회한도]

- 암 → 연간30회한도
- 갑상선암 → 연간30회한도
- 기타피부암 → 연간30회한도
- 제자리암 → 연간30회한도
- 경계성종양 → 연간30회한도

[암 종류별로 각각 하루에 2회이상 통원시]

- 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갑상선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기타피부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제자리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경계성종양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뇌졸중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는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간30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급성심근경색증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는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간30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암관련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암관련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관련질병」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관련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통원으로서 통원 후 최초로 「암관련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관련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⑦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뇌졸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뇌졸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졸중」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통원으로서 통원 후 최초로 「뇌졸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⑧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증」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통원으로서 통원 후 최초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⑨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3대질병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를 지급합니다.
- ⑩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되기 전날까지의 통원기간에 대하여 3대질병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를 지급합니다.
- ⑪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7. 독감(인플루엔자) 입원비(1일-30일)(갱신형_1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독감(인플루엔자) 입원비(1일-3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독감(인플루엔자)」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독감(인플루엔자)」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독감(인플루엔자) 입원비(1일-3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30일한도)

제2조(「독감(인플루엔자)」의 정의 및 진단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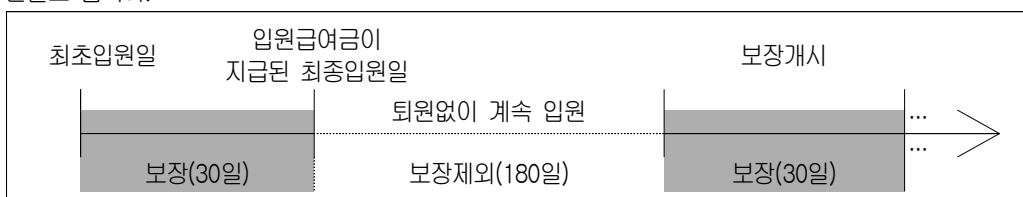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독감(인플루엔자)」이라 함은 (【별표70】 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독감(인플루엔자)」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 검사, 혈청검사, 신속항원 검사(Rapid Antigen test) 또는 의사의 임상적 판단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독감(인플루엔자)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독감(인플루엔자)」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독감(인플루엔자)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독감(인플루엔자)」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병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독감(인플루엔자)」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독감(인플루엔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독감(인플루엔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독감(인플루엔자) 입원비(1일-3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독감(인플루엔자)」에 대한 입원이라도 독감(인플루엔자) 입원비(1일-3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다음과 같이 독감(인플루엔자) 입원비(1일-3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독감(인플루엔자) 입원비(1일-3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독감(인플루엔자) 입원비(1일-3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6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 갱신행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8.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치료비(연간1회한,10일면책)(갱신행_1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치료비(연간1회한,10일면책)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독감(인플루엔자)」, 「독감 항바이러스제」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독감(인플루엔자)」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치료비(연간1회한,10일면책)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독감(인플루엔자)」, 「독감 항바이러스제」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독감(인플루엔자)」이라 함은 「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별표70】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독감(인플루엔자)」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 검사, 혈청검사, 신속항원 검사(Rapid Antigen test) 또는 의사의 임상적 판단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독감(인플루엔자)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독감 항바이러스제」라 함은 독감(인플루엔자)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체내에 침입한 바이러스의 작용을 약화 또는 소멸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로서, 진단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항목에 독감(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제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독감 항바이러스제 해당 성분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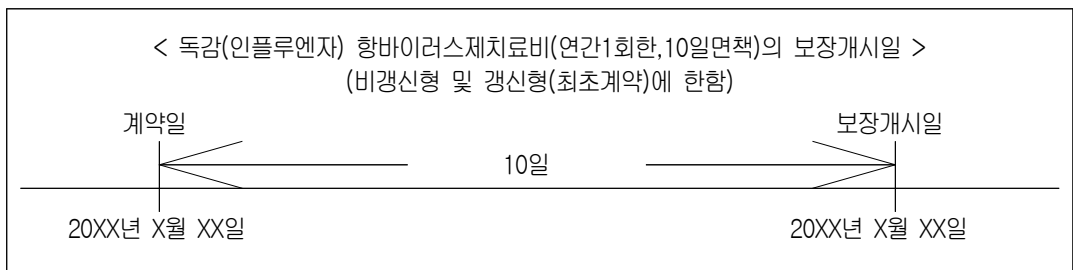
- 성분명은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 자나미비르(zanamivir)
 - 페라미비르(peramivir)
 - 발록사비르(baloxavir)
- ※ 상기 「독감 항바이러스제」 해당 성분명은 2020년 7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시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효능효과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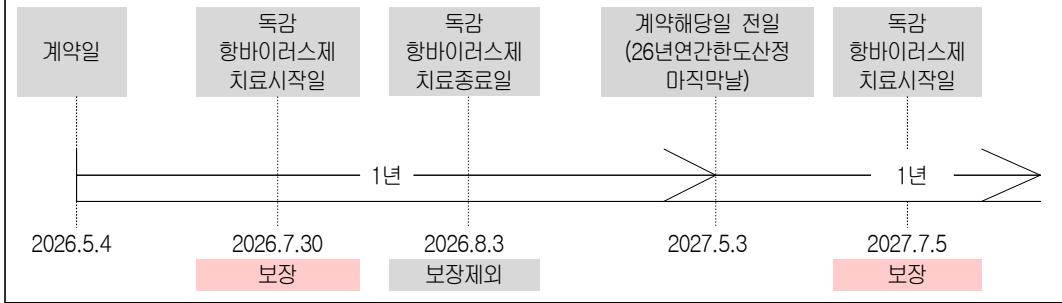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치료비(연간1회한,10일면책)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날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연간1회한 보상예시】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독감 항바이러스제 처방여부 및 의약품명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독감(인플루엔자)」, 「독감 항바이러스제」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독감(인플루엔자)」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9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 갱신행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9. 질병입원비(1일~20일)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입원비(1일~2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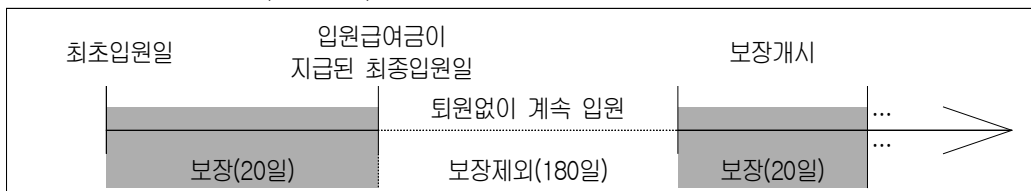
구 분	지 급 금 액
질병입원비(1일~2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20일한도)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질병입원비(1일~2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비(1일~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다음과 같이 질병입원비(1일~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 중인 경우에는 질병입원비(1일~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질병입원비(1일~2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비(1일~2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0.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120-1.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120-2.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30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관련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통원하였을 때 “암 종류별로 각각” 통원 1회당 연간 30회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30회한)	통원 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이하 「암관련 질병」이라 함이다)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 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22-2】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22-3】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관련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①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함이다)를 말합니다.
- ②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③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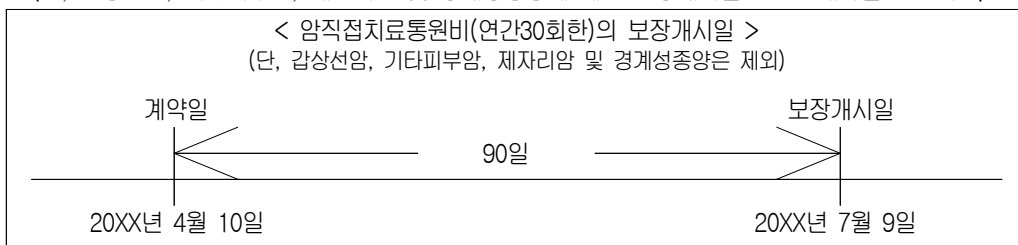
1. 식이요법, 영양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관련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제4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관련질환」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30회한)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2.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암 종류별로 각각”이라 함은 제2조(「암관련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각각을 말합니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30회한)는 “암종류별로 각각”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간30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암 종류별로 각각 연간 30회한도]	[암 종류별로 각각 하루에 2회이상 통원시]
· 암 → 연간30회한도	· 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갑상선암 → 연간30회한도	· 갑상선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기타피부암 → 연간30회한도	· 기타피부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제자리암 → 연간30회한도	· 제자리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경계성종양 → 연간30회한도	· 경계성종양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암관련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암관련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암관련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관련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관련질환」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이상에 의한 통원으로서 통원 후 최초로 「암관련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관련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1.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30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30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암관련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통원하였을 때 “암 종류별로 각각” 통원 1회당 연간 30회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30회한)	통원 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이하 「암관련질병」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22-2】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22-3】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①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③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제4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 종류별로 각각”이라 함은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각각을 말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30회한)는 “암종류별로 각각”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간30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암 종류별로 각각 연간 30회한도]

- 암 → 연간30회한도
- 갑상선암 → 연간30회한도
- 기타피부암 → 연간30회한도
- 제자리암 → 연간30회한도
- 경계성종양 → 연간30회한도

[암 종류별로 각각 하루에 2회이상 통원시]

- 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갑상선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기타피부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제자리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경계성종양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암관련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암관련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관련질병」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관련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이상에 의한 통원으로서 통원 후 최초로 「암관련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관련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2. 3대질병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30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의 「암관련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통원하였을 때 “암 종류별로 각각” 통원 1회당 연간 30회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2. 뇌졸중통원비(연간30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의 「뇌졸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연간 30회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3. 급성심근경색증통원비(연간30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4항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연간 30회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3대질병통원비(연간30회한)	통원 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3대질병」이라 함은 「암관련질병」,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을 말합니다.
- ② 「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암관련질병」이라 함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22-2】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6.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22-3】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7. 제2호 내지 제6호의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8. 제7호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관련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7호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③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 제2호의 「뇌졸중」라 함은 「뇌졸중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별표15】참조)에서 「뇌졸중」에 해당하는 1. 거미막하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제1호의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가'와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용어설명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뇌혈관조영술]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희게 촬영되는 물질(조영제)를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γ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여하여 그 분포상태의 단면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촬영법

[양전자 방출 단층술(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 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뇌척수액 검사]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④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 제3호의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별표18】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제1호의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가'와 '나'의 어느 하

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①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 제1호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30회하)의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499 -

[암 종류별로 각각 연간 30회한도]	[암 종류별로 각각 하루에 2회이상 통원시]
· 암 → 연간30회한도 · 갑상선암 → 연간30회한도 · 기타피부암 → 연간30회한도 · 제자리암 → 연간30회한도 · 경계성종양 → 연간30회한도	· 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갑상선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기타피부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제자리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경계성종양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뇌졸중통원비(연간30회한)는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간30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급성심근경색증통원비(연간30회한)는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간30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⑦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암관련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암관련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관련질병」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관련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통원으로서 통원 후 최초로 「암관련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관련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⑧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뇌졸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뇌졸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졸중」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통원으로서 통원 후 최초로 「뇌졸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증」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통원으로서 통원 후 최초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취소)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전에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로부터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이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특별약관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이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3. 3대질병통원비(연간30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30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의 「암관련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통원하였을 때 “암 종류별로 각각” 통원 1회당 연간 30회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2. 뇌졸중통원비(연간30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의 「뇌졸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연간 30회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3. 급성심근경색증통원비(연간30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4항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연간 30회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3대질병통원비(연간30회한)	통원 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3대질병」이라 함은 「암관련질병」,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을 말합니다.
- ② 「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암관련질병」이라 함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 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 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22-2】 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6.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22-3】 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7. 제2호 내지 제6호의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8. 제7호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관련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7호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③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 제2호의 「뇌졸중」라 함은 「뇌졸중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별표15】 참조)에서 「뇌졸중」에 해당하는 1. 거미막하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제1호의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가'와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용어설명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뇌혈관조영술]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희게 촬영되는 물질(조영제)을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γ 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여하여 그 분포상태의 단면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촬영법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 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뇌척수액 검사]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④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 제3호의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별표18】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제1호의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가'와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암관련질환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①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 제1호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30회한)의 「암관련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암관련질환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③ 「암관련질환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관련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

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제4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관련질병」의 직접치료,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 종류별로 각각」이라 함은 제2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항에서 정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각각을 말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30회한)는 “암종류별로 각각”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간30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암 종류별로 각각 연간 30회한도]	[암 종류별로 각각 하루에 2회이상 통원시]
· 암 → 연간30회한도	· 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갑상선암 → 연간30회한도	· 갑상선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기타피부암 → 연간30회한도	· 기타피부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제자리암 → 연간30회한도	· 제자리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경계성종양 → 연간30회한도	· 경계성종양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30회한도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뇌졸중통원비(연간30회한)는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간30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급성심근경색증통원비(연간30회한)는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간30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암관련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암관련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관련질병」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관련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통원으로서 통원 후 최초로 「암관련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관련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⑦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뇌졸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뇌졸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졸중」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통원으로서 통원 후 최초로 「뇌졸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⑧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증」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통원으로서 통원 후 최초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4. 뇌혈관질환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뇌혈관질환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연간 30회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뇌혈관질환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	통원 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별표17】 참조)에서 뇌혈관질환에 해당하는 1. 거미막하 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8. 기타 뇌혈관 질환,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10.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용어설명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뇌혈관조영술]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희게 촬영되는 물질(조영제)을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γ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여하여 그 분포상태의 단면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촬영법

[양전자 방출 단층술(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뇌척수액 검사]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혈관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혈관질환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는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간30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뇌혈관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혈관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통원으로서 통원 후 최초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뇌혈관질환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를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되기 전날까지의 통원기간에 대하여 뇌혈관질환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를 지급합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5. 허혈성심질환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허혈성심질환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허혈성심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연간 30회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허혈성심질환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	통원 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허혈성심질환 분류표」(【별표19】참조)에 해당하는 허혈성심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허혈성심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허혈성심질환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는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간30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허혈성심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허혈성심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허혈성심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혈성심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이상에 의한 통원으로서 통원 후 최초로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허혈성심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허혈성심질환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를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되기 전날까지의 통원기간에 대하여 허혈성심질환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를 지급합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6. 3대질병 MRI 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3대질병 MRI 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2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3대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제3조(「급여활영」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급여활영」을 받은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3대질병 MRI 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연간1회)

제2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3대질병」이라 함은 「암관련질병」,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질환」을 말합니다.
- ② 「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암관련질병」이라 함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22-2】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6.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22-3】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7. 제2호 내지 제6호의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

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8. 제7호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관련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7호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③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 제2호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별표17】 참조)에서 「뇌혈관질환」에 해당하는 1. 거미막하 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8. 기타 뇌혈관 질환,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10.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제1호의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용어설명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뇌혈관조영술]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회계 촬영되는 물질(조영제)을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γ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여하여 그 분포상태의 단면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촬영법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뇌척수액 검사]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④ 「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 제3호의 「허혈성심질환 분류표」(【별표19】 참조)에 해당하는 허혈성심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제1호의 「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

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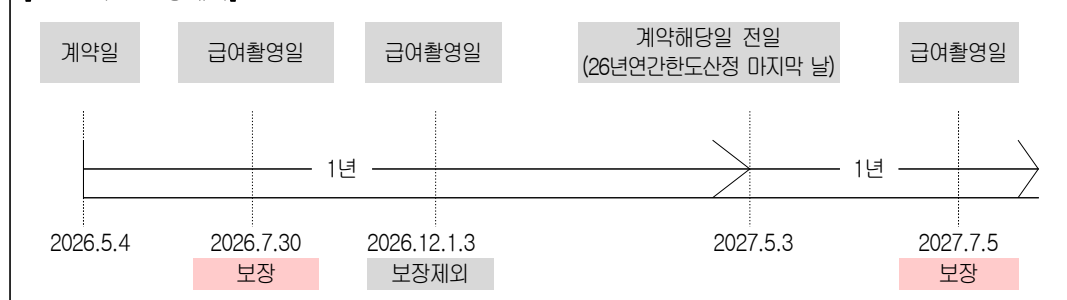
제3조(「급여촬영」의 정의 및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여촬영」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자기공명영상(MRI)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여촬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 일부 본인부담 대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요양급여 전액본인부담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의 「급여촬영」은 「급여촬영 분류표」(【별표71】참조)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급여촬영 의료행위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연간1회한 보장예시]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7.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연간1회한)(갱신형_1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1회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 (연간1회한)	최초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갱신계약	갱신일로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4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의료기관에서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용어의 정의

-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 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 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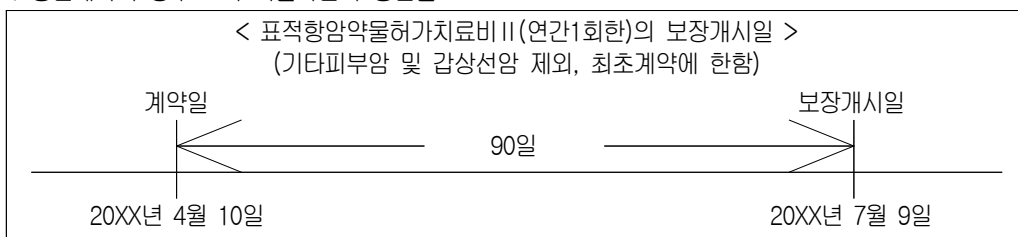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연간1회한)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가.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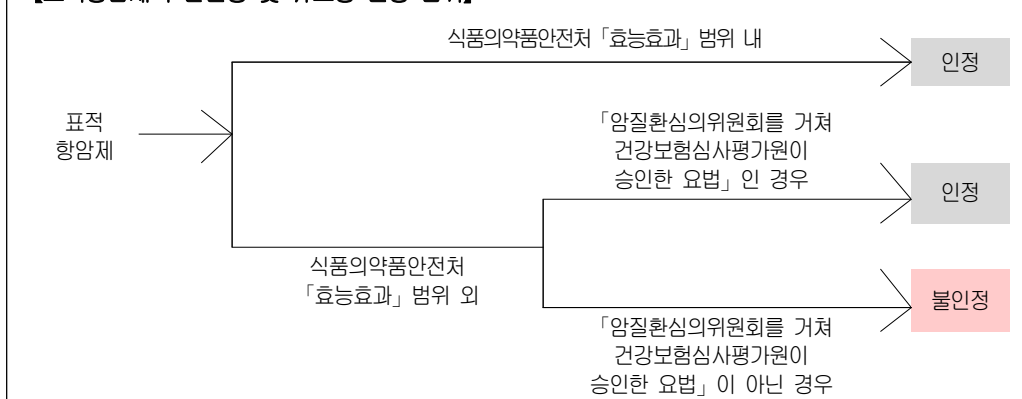
나.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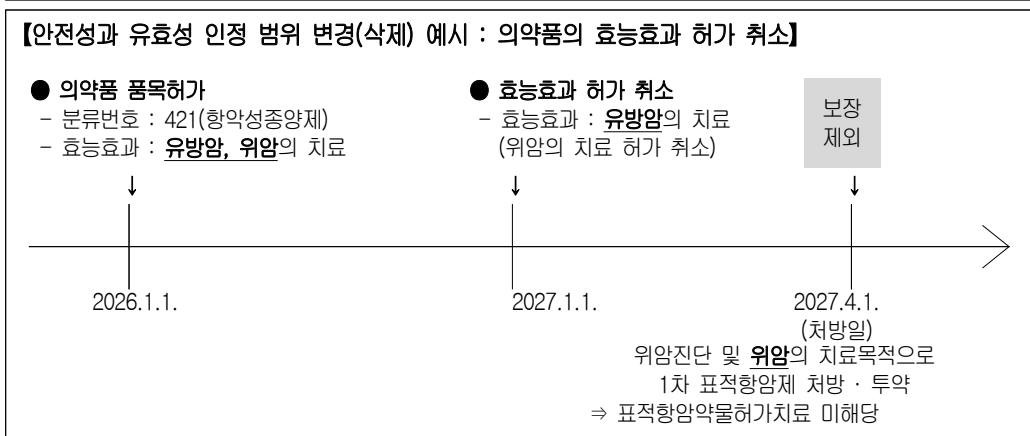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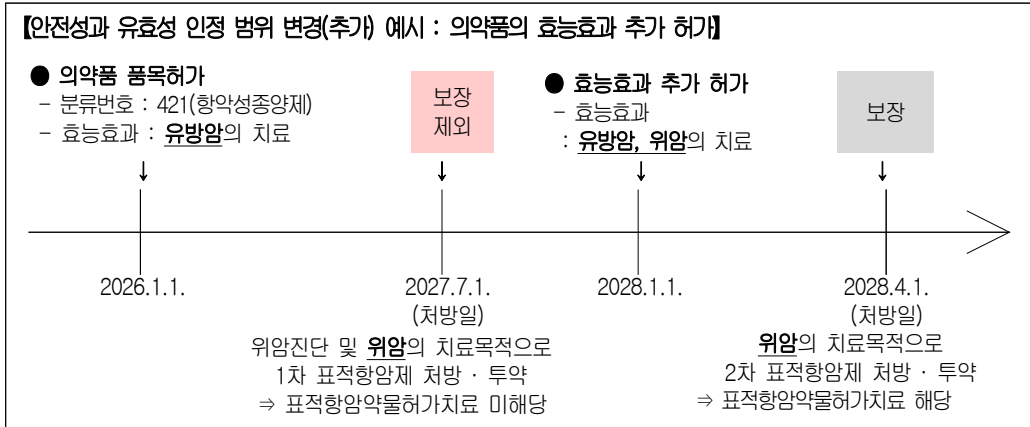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연간1회한)는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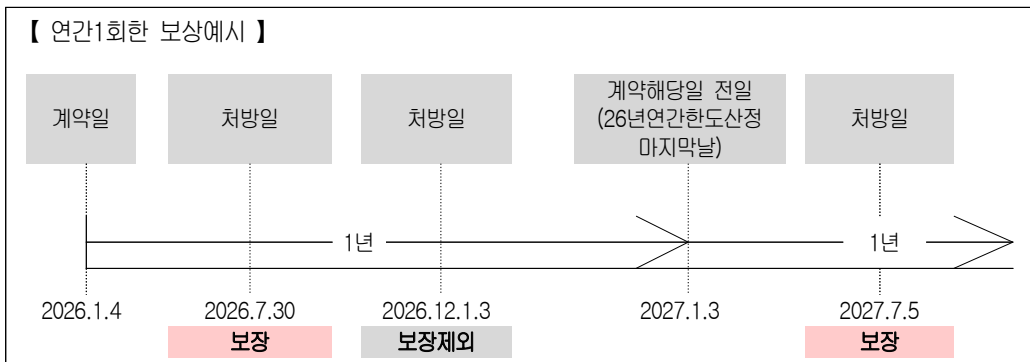
【표적항암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3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은 제외합니다)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 (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ㄱ. 진단명
 -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1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12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28.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 II(갱신형_1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 II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 II	최초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갱신계약	갱신일로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양성자방사선 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양성자방사선 치료」라 함은 국내에 허가된 양성자치료센터에서 방사선종양학과 등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가 제1항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양성자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의 일종으로 수소 원자핵을 가속하여 얻은 분리된 양성자를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암 치료법을 말합니다. 양성자는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는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심부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의 장점은 암 표적 부위에 도달하기 전까지 일반 정상 조직에는 거의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으며 종양에 도달하면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고 바로 소멸되어서 종양 위의 정상조직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종양을 둘러싼 건강한 정상 조직의 손상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 ③ 전자기파를 이용한 「X선치료」, 「감마선치료」, 「중입자치료」 등은 제2항의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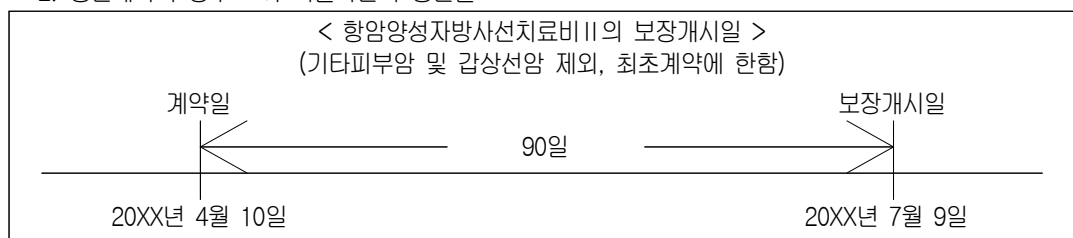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II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가.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나.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당일로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은 제외합니다)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방사선 치료기록지,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0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II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9.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면책없음,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양성자방사선 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양성자방사선 치료」라 함은 국내에 허가된 양성자치료센터에서 방사선종양학과 등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가 제1항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양성자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의 일종으로 수소 원자핵을 가속하여 얻은 분리된 양성자를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암 치료법을 말합니다. 양성자는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는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심부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의 장점은 암 표적 부위에 도달하기 전까지 일반 정상 조직에는 거의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으며 종양에 도달하면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고 바로 소멸되어서 종양 뒤의 정상조직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종양을 둘러싼 건강한 정상 조직의 손상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 ③ 전자기파를 이용한 「X선치료」, 「감마선치료」, 「중입자치료」 등은 제2항의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조항은 계약전환 후 계약(4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계약전환 후 계약(4종)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방사선 치료기록지,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 갱신행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30.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Ⅱ(갱신형_1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Ⅱ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세기조절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항암세기조절방사선 치료비Ⅱ	최초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갱신계약	갱신일로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세기조절방사선 치료」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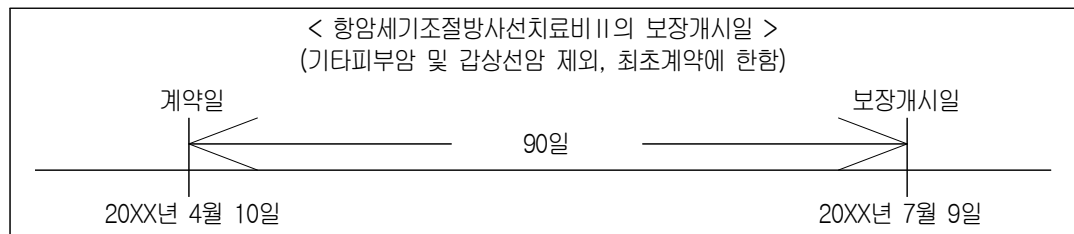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세기조절방사선 치료」(IMRT,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가 제1항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은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하며, 방사선의 세기조절이 없거나 방사선의 세기조절을 하더라도 입자방사선을 이용하는 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IMRT,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

- 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이란 방사선 조사 방향을 수십배까지 세분화하고, 각 세분화된 영역마다 방사선의 양(세기)을 조절함으로써 종양 주위의 정상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고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방사선량을 조절하여 조사할 수 있는 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 입자방사선치료란 전자를 제외한 하전 입자를 가속하여 나타나는 브래그피크라는 물리적 특성을 암 방사선치료에 활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하며, 양성자방사선 치료와 중입자 방사선치료(탄소선 혹은 헬륨) 등이 해당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II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가.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나.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은 제외합니다)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방사선 치료기록지,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0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II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31.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면책없음,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세기조절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세기조절방사선 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세기조절방사선 치료」(IMRT,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가 제1항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은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하며, 방사선의 세기조절이 없거나 방사선의 세기조절을 하더라도 입자방사선을 이용하는 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IMRT,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

- 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이란 방사선 조사 방향을 수십배까지 세분화하고, 각 세분화된 영역마다 방사선의 양(세기)을 조절함으로써 종양 주위의 정상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고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방사선량을 조절하여 조사할 수 있는 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 입자방사선치료란 전자를 제외한 하전 입자를 가속하여 나타나는 브래그피크라는 물리적 특성을 암 방사선치료에 활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하며, 양성자방사선 치료와 중입자 방사선치료(탄소선 혹은 헬륨) 등이 해당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조항은 계약전환 후 계약(4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계약전환 후 계약(4종)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방사선 치료기록지,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32.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토모테라피)Ⅱ(갱신형_1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토모테라피)Ⅱ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토모세기조절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 (토모테라피)Ⅱ	최초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갱신계약	갱신일로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토모세기조절방사선 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토모세기조절방사선 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제1항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토모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토모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은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치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가. 방사선의 세기조절이 없거나 방사선의 세기조절을 하더라도 입자방사선을 이용하는 치료
 - 나. 전산화 단층 촬영기(CT, Computerized Tomography)기능이 내장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영상기기가 내장된 장비를 이용한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IMRT,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

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이란 방사선 조사 방향을 수십배까지 세분화하고, 각 세분화된 영역마다 방사선의 양(세기)을 조절함으로써 종양 주위의 정상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고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방사선량을 조절하여 조사할 수 있는 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입자방사선치료

전자를 제외한 하전 입자를 가속하여 나타나는 브래그피크라는 물리적 특성을 암 방사선치료에 활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하며, 양성자방사선 치료와 중입자 방사선치료(탄소선 혹은 헬륨) 등이 해당됩니다.

항암토모세기조절방사선치료

- 항암토모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이란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 중 토모테라피(Tomotherapy) 방사선치료기를 이용하여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와 전산화단층촬영기(CT)를 결합해 매회 치료시 정확한 부위에 세기조절방사선치료가 가능하도록 한 방사선치료입니다.
- 토모테라피의 방사선치료기는 전산화단층촬영기(CT)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방사선치료 전 단층촬영을 통하여 치료 위치를 확인한 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수 있어 정상 장기는 보호하면서 종양에 국한하여 고선량의 방사선치료가 가능한 장비를 말합니다.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0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토모테라피) II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33.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토모테라피)(면책없음,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토모테라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토모세기조절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토모테라피)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도모세기조절방사선 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도모세기조절방사선 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제1항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도모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도모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은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치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가. 방사선의 세기조절이 없거나 방사선의 세기조절을 하더라도 입자방사선을 이용하는 치료
 - 나. 전산화 단층 촬영기(CT, Computerized Tomography)기능이 내장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영상기기가 내장된 장비를 이용한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IMRT,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

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이란 방사선 조사 방향을 수십배까지 세분화하고, 각 세분화된 영역마다 방사선의 양(세기)을 조절함으로써 종양 주위의 정상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고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방사선량을 조절하여 조사할 수 있는 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입자방사선치료

전자를 제외한 하전 입자를 가속하여 나타나는 브래그피크라는 물리적 특성을 암 방사선치료에 활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하며, 양성자방사선 치료와 중입자 방사선치료(탄소선 혹은 헬륨) 등이 해당됩니다.

항암도모세기조절방사선치료

- 항암도모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이란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 중 토모테라피(Tomotherapy) 방사선치료기를 이용하여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와 전산화단층촬영기(CT)를 결합해 매회 치료시 정확한 부위에 세기조절방사선치료가 가능하도록 한 방사선치료입니다.
- 토모테라피의 방사선치료기는 전산화단층촬영기(CT)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방사선치료 전 단층촬영을 통하여 치료 위치를 확인한 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수 있어 정상 장기는 보호하면서 종양에 국한하여 고선량의 방사선치료가 가능한 장비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조항은 계약전환 후 계약(4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계약전환 후 계약(4종)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토모테라피)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방사선 치료기록지,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토모테라피)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34.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이외의 암) II(갱신형_1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이외의 암)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이외의 암) II	최초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갱신계약	갱신일로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호르몬치료제」라 함은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암약물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호르몬 양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약제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4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항암호르몬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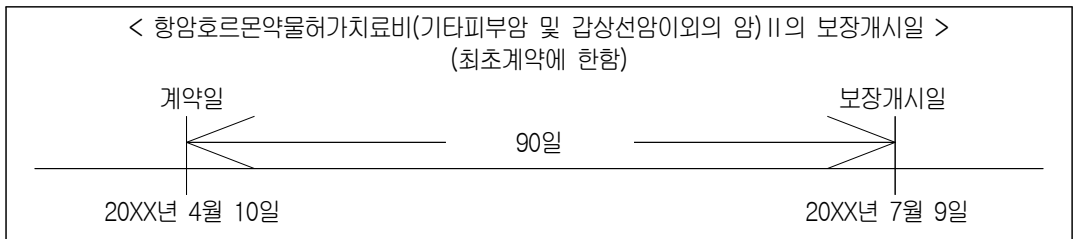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항암호르몬치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항암호르몬치료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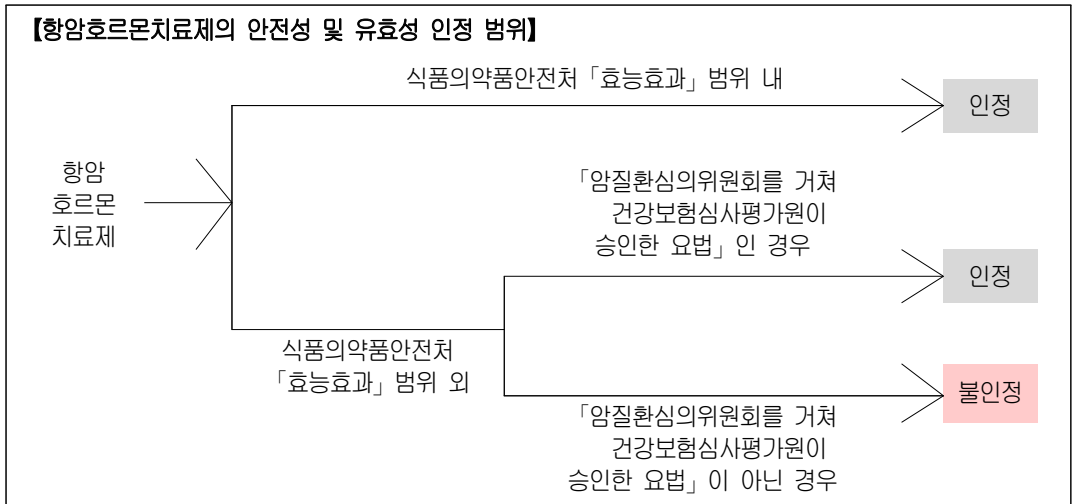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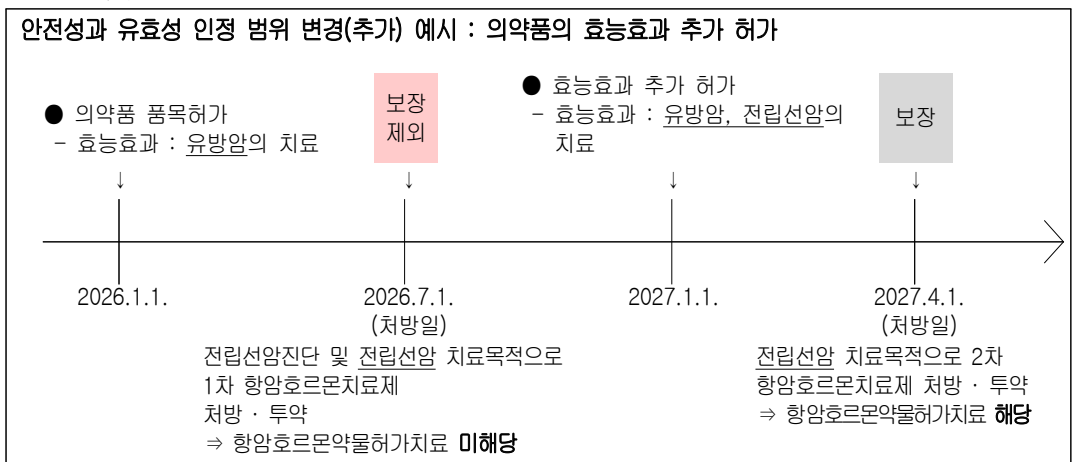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이외의 암) II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가.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나.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이외의 암) II은 항암호르몬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항암호르몬치료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3조(「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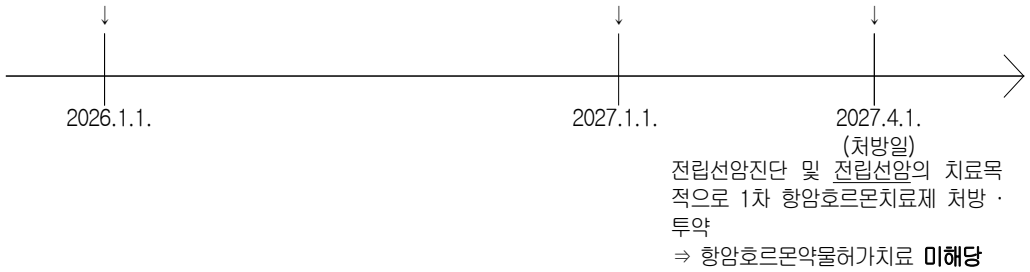
● 의약품 품목허가

- 효능효과 : 유방암, 전립선암의 치료

● 효능효과 허가 취소

- 효능효과 : 유방암의 치료
(전립선암의 치료 허가 취소)

보장
제외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가.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진단서 또는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ㄱ. 진단명
 -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의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1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12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이외의 암) II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35.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이외의 암)(면책없음,감액없음) (갱신형_1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이외의 암)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이외의 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호르몬치료제」라 함은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암약물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호르몬 양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약제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4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항암호르몬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항암호르몬치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항암호르몬치료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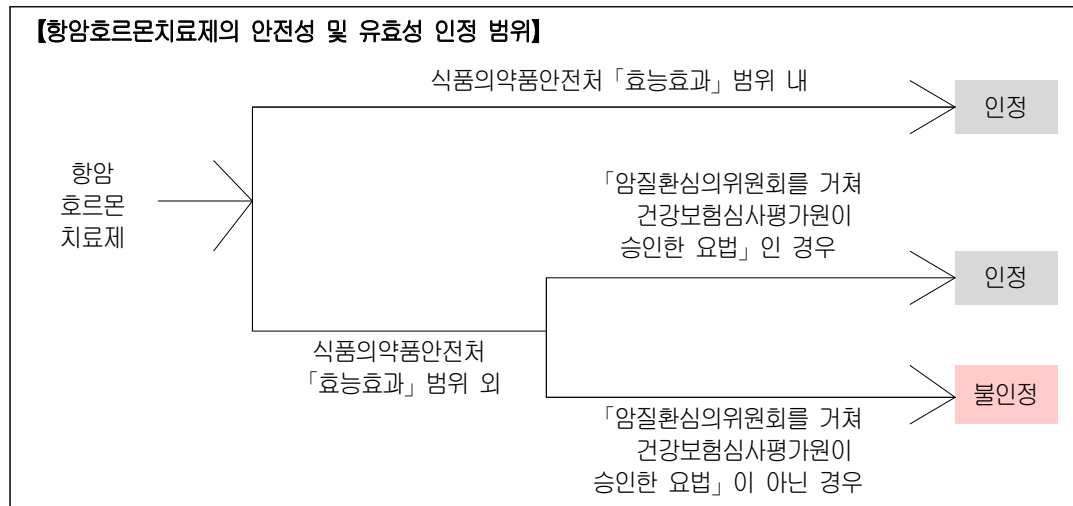
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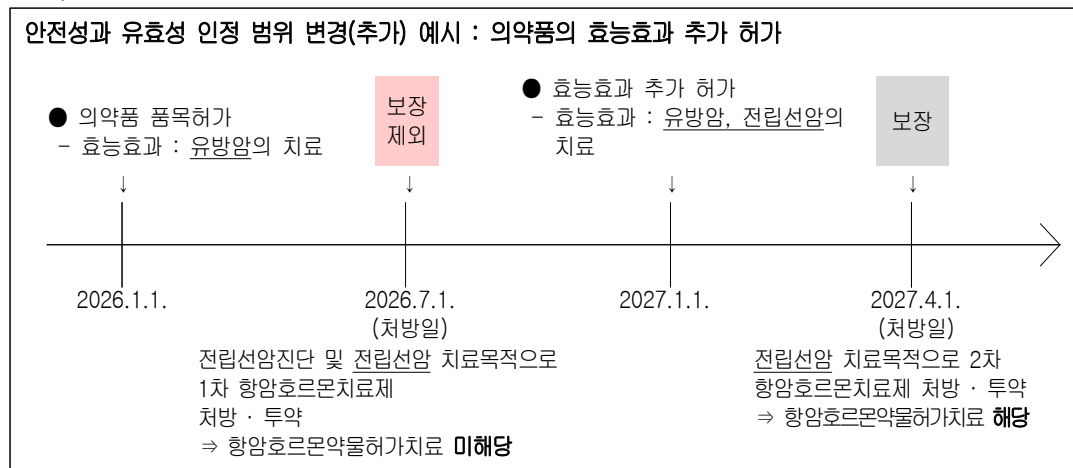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이외의 암)은 항암호르몬 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항암호르몬치료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3조(「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이외의 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36.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Ⅱ(갱신형_1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Ⅱ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의 수술 후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갑상선암호르몬 약물허가치료비Ⅱ	최초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갱신계약	갱신일로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95】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②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 및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라 함은 갑상선암수술 후 갑상선자극호르몬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속도를 늦추기 위한 호르몬 관련 약제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갑상선암」 수술 후 치료 또는 재발 방지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융합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로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8.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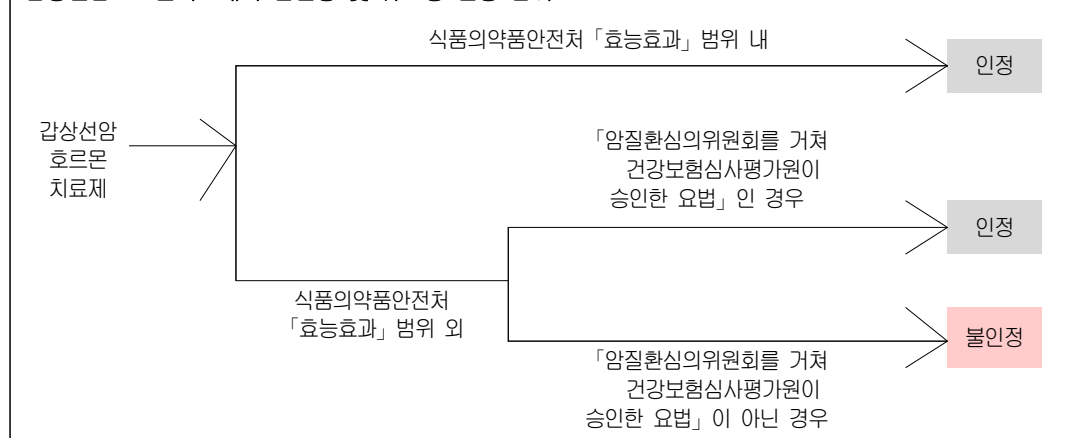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⑤ 제4항 제7호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⑥ 제4항 제7호의 「항암약물치료」라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으며, 제1항의 「수술」에서도 제외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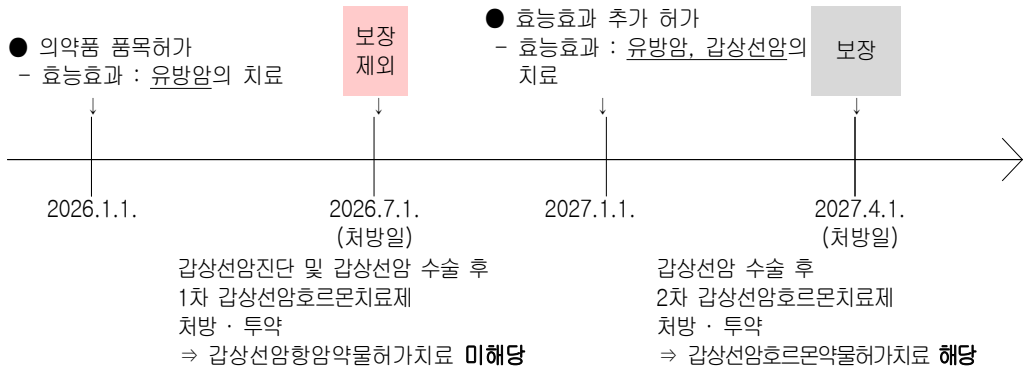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II는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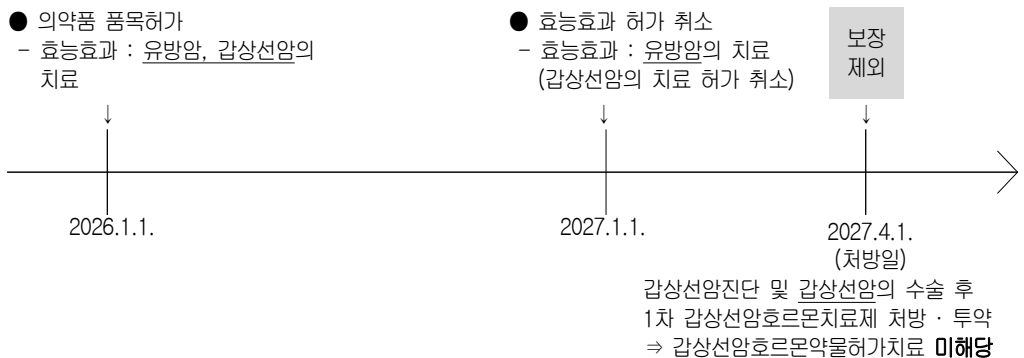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3조(「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 및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가.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진단서 또는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ㄱ. 진단명
 -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 갱신행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II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37.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감액없음)(갱신행_1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의 수술 후 「갑상선암호르몬약물 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95】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②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 및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라 함은 갑상선암수술 후 갑상선자극호르몬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속도를 늦추기 위한 호르몬 관련 약제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 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갑상선암」 수술 후 치료 또는 재발 방지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약품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 8.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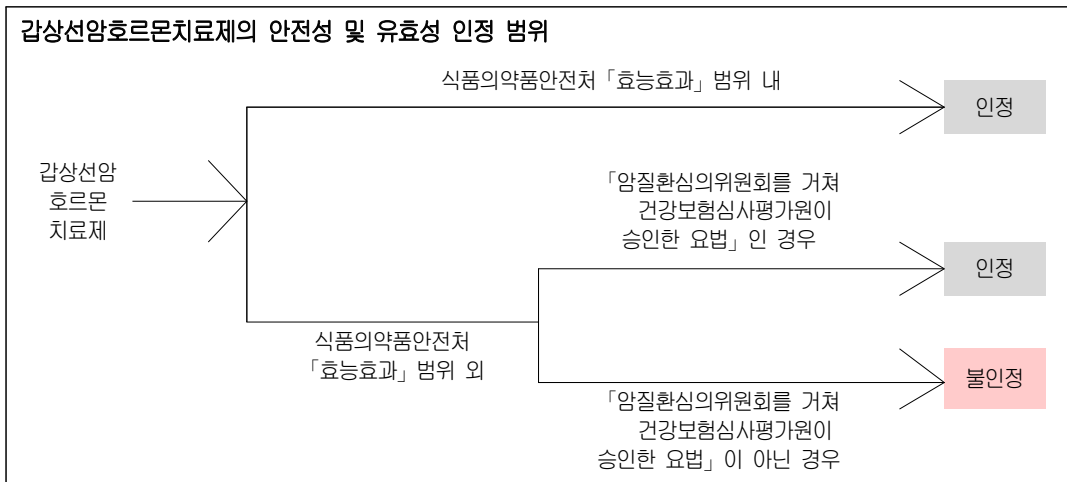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⑤ 제4항 제7호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⑥ 제4항 제7호의 「항암약물치료」라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으며, 제1항의 「수술」에서도 제외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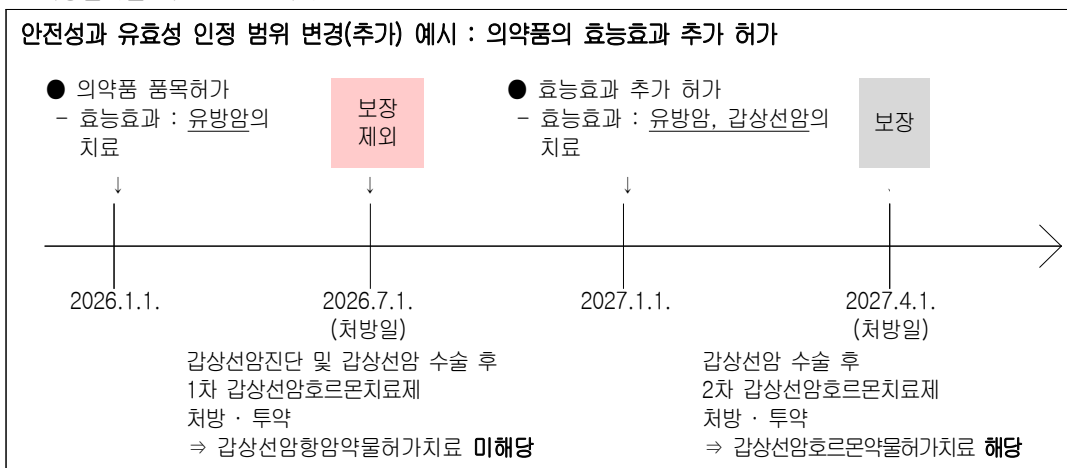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는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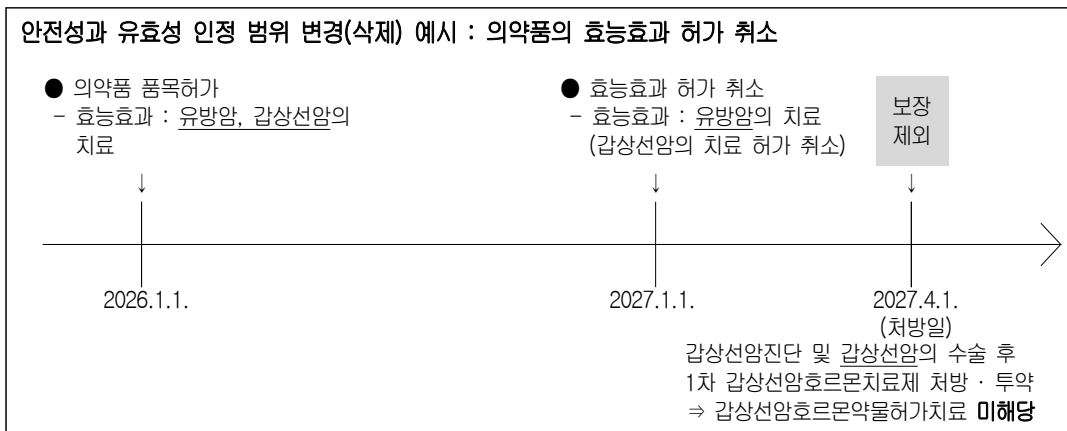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와 같은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3조(「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 및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조항은 계약전환 후 계약(4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계약전환 후 계약(4종)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갑상선암 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가.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진단서 또는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ㄱ. 진단명
 -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38. 항암정위방사선치료비Ⅱ(갱신형_1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항암정위방사선치료비Ⅱ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정위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항암정위방사선치료비Ⅱ	최초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갱신계약	갱신일로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정위방사선 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정위방사선 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가 제1항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정위방사선치료법」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암정위방사선치료

· 항암정위방사선 치료는 다음과 같이 뇌 정위적 방사선수술(Cranial Stereotactic Radiosurgery), 체부 정위적수술(Body Stereotactic Radiosurgery) 및 정위적 방사선 분할치료(Fractionated Stereotactic radiotherapy)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뇌 정위적 방사선수술(Cranial Stereotactic Radiosurgery)

최첨단 특수장비(선형가속기, 사이버나이프, 감마나이프 등)가 발생시키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두개강 및 두경부 내의 병소 치료 시 두개골을 잘라내지 않고 매우 정확하고 정위적(입체적)으로 파괴시키는 고선량의 방사선을 한번에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2) 체부 정위적수술(Body Stereotactic Radiosurgery)

최첨단 특수장비(선형가속기, 사이버나이프 등)를 이용하지만 뇌 이외의 체부(Body)를 중심으로 원하는 고선량의 방사선을 약 1~5회에 걸쳐 조사하는 치료방법입니다.

(3) 정위적 방사선 분할치료(Fractionated Stereotactic radiotherapy)

저선량의 방사선을 여러번에 나누어 조사하는 분할 정위 방사선 치료입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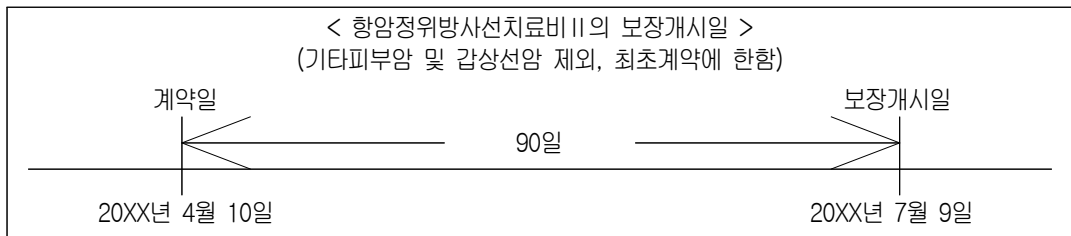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항암정위방사선치료비II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가.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나.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당일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은 제외합니다)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방사선 치료기록지,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0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정위방사선치료비II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39. 항암정위방사선치료비(면책없음,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항암정위방사선치료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정위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항암정위방사선치료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정위방사선 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정위방사선 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제1항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정위방사선치료법」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암정위방사선치료

- 항암정위방사선 치료는 다음과 같이 뇌 정위적 방사선수술(Cranial Stereotactic Radiosurgery), 체부 정위적수술(Body Stereotactic Radiosurgery) 및 정위적 방사선 분할치료(Fractionated Stereotactic radiotherapy)로 나눌 수 있습니다.
- (1) 뇌 정위적 방사선수술(Cranial Stereotactic Radiosurgery)
최첨단 특수장비(선형가속기, 사이버나이프, 감마나이프 등)가 발생시키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두개강 및 두경부 내의 병소 치료 시 두개골을 잘라내지 않고 매우 정확하고 정위적(입체적)으로 파괴시키는 고선량의 방사선을 한번에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 (2) 체부 정위적수술(Body Stereotactic Radiosurgery)
최첨단 특수장비(선형가속기, 사이버나이프 등)를 이용하지만 뇌 이외의 체부(Body)를 중심으로 원하는 고선량의 방사선을 약 1~5회에 걸쳐 조사하는 치료방법입니다.
- (3) 정위적 방사선 분할치료(Fractionated Stereotactic radiotherapy)
저선량의 방사선을 여러번에 나누어 조사하는 분할 정위 방사선 치료입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조항은 계약전환 후 계약(4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계약전환 후 계약(4종)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정위방사선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방사선 치료기록지,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 갱신행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정위방사선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40.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140-1.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140-2.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 분류표」(【별표96】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심전도, 심장초음파, 심도자검사, 심장 자기공명영상(MRI), 심장 전산화단층촬영(CT),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관상동맥조영술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 보험기간 중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41. 5대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141-1. 5대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141-2. 5대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5대혈관질환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5대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4대혈관질환」 또는 「죽상경화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세부보장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5대혈관질환진단비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보장
4대혈관질환진단비
죽상경화증진단비(뇌,심장제외)

제2조(「5대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5대혈관질환」이라 함은 「4대혈관질환」과 「죽상경화증」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4대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4대혈관질환 분류표」(【별표97-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죽상경화증」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죽상경화증 분류표」(【별표97-2】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제2항의 「4대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내시경검사, 대동맥조영술(aortography), 전

산화단층촬영(CT) 및 자기공명영상법(MRI) 등 검사결과 상기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합니다.

- ⑤ 제3항의 「죽상경화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증상과 함께 혈액, 심전도, 혈관 도플러, 경동맥 초음파검사 등 검사결과 상기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합니다.
- ⑥ 제4항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4대혈관질환」 또는 「죽상경화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4대혈관질환」 또는 「죽상경화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각 세부보장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각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의 각 세부보장별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42.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입원비 (요양병원제외)(1일~18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0일 한도)

제2조(「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 분류표」(【별표98】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 중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의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 중 「심혈관질환(특정)」의 진단확정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⑤ 제1항의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의 「혈관질환(9종)」중 「4대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내시경검사, 대동맥조영술(aortography), 전산화단층촬영(CT) 및 자기공명영상법(MRI) 등 검사결과 상기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하며, 「혈관질환(9종)」중 「죽상경화증(뇌, 심장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력·증상과 함께 혈액, 심전도, 혈관도플러, 경동맥 초음파검사 등 검사결과 상기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합니다.
- ⑥ 제2항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용어설명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뇌혈관조영술]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희게 촬영되는 물질(조영제)를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γ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여하여 그 분포상태의 단면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촬영법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뇌척수액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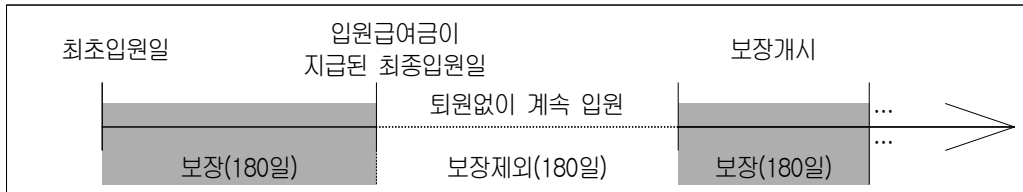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은 제외하며, 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다음과 같이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입원확인서, 의사 처방전 등)
 3.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43. 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 특별약관

143-1. 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 특별약관

143-2. 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 (태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입원비 (요양병원제외)(1일-18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0일 한도)

제3조(「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 분류표」(【별표99】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 중 「뇌혈관질환(선천성뇌질환포함)」의 진단확정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의 「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 중 「심혈관질환(특정)」의 진단확정은 병력, 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⑤ 제1항의 「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의 「혈관질환(9종)」 중 「4대혈관질환」의 진단 확정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내시경검사, 대동맥조영술(aortography), 전산화단층촬영(CT) 및 자기공명영상법(MRI) 등 검사결과 상기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하며, 「혈관질환(9종)」 중 「죽상경화증(뇌, 심장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력·증상과 함께 혈액, 심전도, 혈관 도플러, 경동맥 초음파검사 등 검사결과 상기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합니다.
- ⑥ 제2항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용어설명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뇌혈관조영술]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희게 촬영되는 물질(조영제)을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γ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여하여 그 분포상태의 단면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촬영법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뇌척수액 검사]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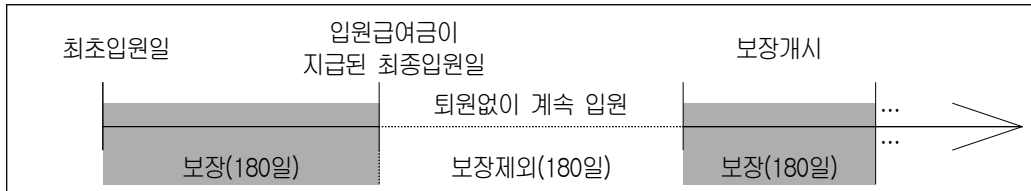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은 제외하며, 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라 함은 의사에 의해 「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으로 진단된 경우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함)및9대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에 대한 입원이더라도 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다음과 같이 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입원확인서, 의사 처방전 등)
 3.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44. 요양병원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입원비(1일-90일)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요양병원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입원비(1일-9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으로 인해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요양병원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입원비(1일-90일)	입원 1일당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90일 한도)

제2조(「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 분류표」(【별표98】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 중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의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 중 「심혈관질환(특정)」의 진단확정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⑤ 제1항의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의 「혈관질환(9종)」중 「4대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내시경검사, 대동맥조영술(aortography), 전산화단층촬영(CT) 및 자기공명영상법(MRI) 등 검사결과 상기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하며, 「혈관질환(9종)」중 「죽상경화증(뇌, 심장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력·증상과 함께 혈액, 심전도, 혈관 도플러, 경동맥 초음파검사 등 검사결과 상기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합니다.
- ⑥ 제2항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용어설명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뇌혈관조영술]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희게 촬영되는 물질(조영제)를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γ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여하여 그 분포상태의 단면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촬영법

[양전자 방출 단층술(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뇌척수액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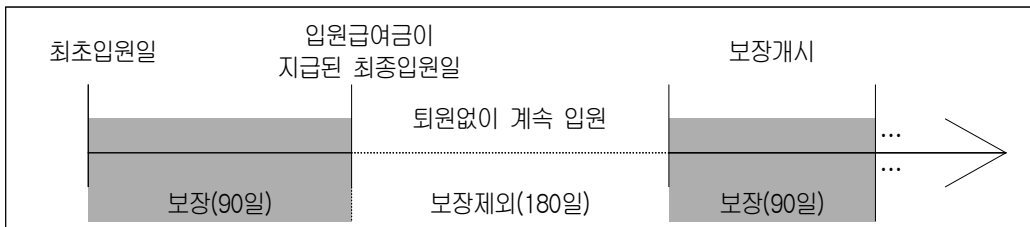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요양병원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입원비(1일-9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9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요양병원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입원비(1일-9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다음과 같이 요양병원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입원비(1일-9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요양병원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입원비(1일-9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요양병원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입원비(1일-9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요양병원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입원비(1일-9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입원확인서, 의사 처방전 등)

3.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45.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20일) 특별약관

145-1.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20일) 특별약관

145-2.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20일)(태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2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2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20일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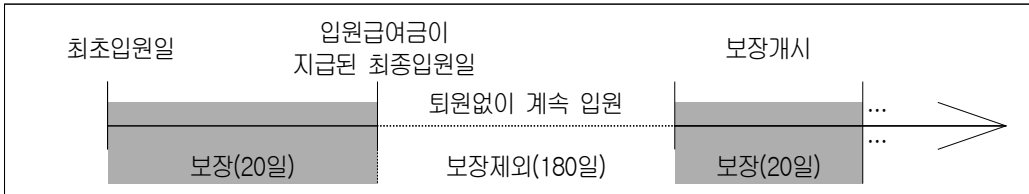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2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다음과 같이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

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2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2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이 특별약관에서 「선천성 뇌질환」이라 함은 「선천성 뇌질환 분류표」(【별표60】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46. 142대특정질병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146-1. 142대특정질병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146-2. 142대특정질병수술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142대특정질병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142대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142대특정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28대특정질병수술비	수술1회당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39대특정질병수술비	수술1회당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31대특정질병수술비	수술1회당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6대특정질병수술비	수술1회당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다빈도4대질병수술비Ⅱ	수술1회당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24대특정질병수술비	수술1회당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② 회사는 제1항에 대하여 아래 각각의 세부보장으로 운영합니다.

구 분	세 부 보 장
1	28대특정질병수술비
2	39대특정질병수술비
3	31대특정질병수술비
4	16대특정질병수술비
5	다빈도4대질병수술비Ⅱ
6	24대특정질병수술비

제2조(「142대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142대특정질병」이라 함은 「28대특정질병」, 「39대특정질병」, 「31대특정질병」, 「16대특정질병」, 「다빈도4대질병Ⅱ」, 「24대특정질병」전부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28대특정질병」이라 함은 「28대특정질병 분류표」(【별표101-1】참조)에 해당하는 아래의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1	백내장	2	관절염
3	생식기질환	4	급성상기도 감염
5	담낭담도질환	6	중이의 진주종
7	귀경화증	8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9	중아·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10	골 및 관절 연골의 양성신생물
11	조직의 양성신생물	12	수막의 양성신생물
13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14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15	골다공증	16	담석증
17	사타구니탈장	18	편도염
19	축농증	20	결막장애

대상이 되는 질병			
21	기타 등병증	22	외이의 질환
23	귀의 기타장애	24	뇌하수체기능질환
25	대사장애	26	외부요인 폐질환
27	특정 요도질환	28	특정 소화기질환

- ③ 제1항의 「39대특정질병」이라 함은 「39대특정질병 분류표」(【별표101-2】참조)에 해당하는 아래의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1	복막의 질환	2	식도질환
3	위,십이지장질환	4	내이의 질환
5	단일신경병증	6	방광의 결석
7	비감염성장염 및 결장염	8	중이 및 유도의 질환
9	척추변형	10	척추병증
11	비뇨계통의 기타질환	12	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13	안면신경장애	14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15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16	사구체질환
17	신세뇨관-간질질환	18	특정부위의 탈장
19	특정장질환	20	급성 기관지염
21	급성 세기관지염	22	상세불명의 급성하기도감염
23	성인호흡곤란증후군	24	폐부종
25	특정호흡기질환	26	다한증
27	마비	28	부갑상선기능질환
29	비장질환	30	수면무호흡증
31	용혈-요독증후군(햄버거병)	32	장의 특정기타질환
33	장흡수장애	34	전신결합조직장애
35	주침샘의 양성신생물	36	침샘질환
37	확인된 동물매개 또는 범유행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38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39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인플루엔자		

- ④ 제1항의 「31대특정질병」이라 함은 「31대특정질병 분류표」(【별표101-3】참조)에 해당하는 아래의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1	심장질환	2	뇌혈관질환
3	간질환	4	위·십이지장궤양
5	동맥경화증	6	만성하부호흡기질환
7	폐렴	8	녹내장
9	황반변성	10	결핵
11	신부전	12	급성췌장염

대상이 되는 질병			
13	다발경화증	14	대동맥류
15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16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질환
17	체장질환	18	파킨슨병
19	패혈증	20	폐질환
21	당뇨병질환	22	고혈압질환
23	기타 동맥류 박리	24	뇌성마비
25	뇌전증	26	버거씨병
27	수두증	28	위공장계약
29	조로증	30	크로이츠펠트-야콥병
31	뇌의 특정염증성질환		

- ⑤ 제1항의 「16대특정질병」이라 함은 「16대특정질병 분류표」(【별표101-4】참조)에 해당하는 아래의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1	생식기의 양성종양	2	특정누적외상성질환
3	근육장애	4	어깨병변
5	윤활막 및 힘줄장애	6	눈 및 눈부속기관의 특정질환
7	갑상선암	8	위암
9	기관지 및 폐암	10	간암
11	난소암	12	눈꺼풀의 기타 염증
13	호흡계통의 기타질환	14	눈꺼풀의 기타 장애
15	시각장애 및 실명	16	눈 및 눈부속기의 기타 장애

- ⑥ 제1항의 「다빈도4대질환Ⅱ」이라 함은 「다빈도4대질환Ⅱ 분류표」(【별표101-5】참조)에 해당하는 아래의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1	유방의 양성신생물	2	유방의 장애
3	후각특정질환	4	갑상선질환

- ⑦ 제1항의 「24대특정질병」이라 함은 「24대특정질병 분류표」(【별표101-6】참조)에 해당하는 아래의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1	골수염	2	기타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3	다낭성 난소증후군	4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5	림프절염	6	뼈의 기타장애
7	뼈의 파절병	8	식도정맥류
9	안구의 장애	10	안와장애
11	요도결석증	12	전신결합조직장애Ⅱ
13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14	중증근무력증
15	직장 및 항문관련질환	16	과민대장증후군
17	대상포진	18	신장 및 요관의 결석

대상이 되는 질병			
19	하지정맥류 및 특정정맥합병증	20	골괴사증
21	눈 및 부속기 양성신생물	22	연골병증
23	유리체의 장애	24	응양정맥류

- ⑧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수술1회당 질병코드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보험금만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에서 이미 지급한 수술비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⑨ 제1항의 「142대특정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단, 뇌혈관질환의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심장질환 중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예시 : 세부보장별 가입금액

특정 질병수술비					
28대	39대	31대	16대	다빈도4대II	24대
10만원	20만원	100만원	5만원	5만원	10만원

(사례1)

- A18.14+(남성생식기관의 결핵)과 N51.1*(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고환 및 부고환의 장애)를 동시에 진단받고 수술한 경우

진단코드	세부담보별 보상분류	가입금액
A18.14+	31대특정질병수술비의 “10.결핵”	100만원
	28대특정질병수술비의 “3.생식기질환”	10만원
N51.1*	28대특정질병수술비의 “3.생식기질환”	10만원

⇒ 높은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100만원 지급

(사례2)

- K23.0*(결핵성 식도염)과 A18.82+(달리 분류되지 않은 소화기관의 결핵)을 동시에 진단받고 수술한 경우

진단코드	세부담보별 보상분류	가입금액
K23.0*	39대특정질병수술비의 “2.식도질환”	20만원
A18.82+	31대특정질병수술비의 “10.결핵”	100만원
	39대특정질병수술비의 “2.식도질환”	20만원

- K23.0*(결핵성 식도염)에 해당하는 2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면,
⇒ A18.82+(달리 분류되지 않은 소화기관의 결핵)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차액 지급(100만원 - 20만원 = 80만원)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수술로 간주합니다.
1.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
 2.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행한 레이저(Laser)수술.

다만, 아래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47. 질병1~8종수술비(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1~8종수술비(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 (【별표102】 참조)에서 정한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 및 시술코드」 당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1회의 입원당 1회의 「수술 및 시술」 또는 통원 1일당 1회의 「수술 및 시술」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질병1~8종수술비(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 장
질병1~8종수술비(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1종) 보장
질병1~8종수술비(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2종) 보장
질병1~8종수술비(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3종) 보장
질병1~8종수술비(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4종) 보장
질병1~8종수술비(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5종) 보장
질병1~8종수술비(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6종) 보장
질병1~8종수술비(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7종) 보장
질병1~8종수술비(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8종) 보장

제2조(「수술 및 시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 및 시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하며, 한의사는 제외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 (【별표102】 참조)에서 정한 수술 및 시술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 및 시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 및 시술코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처치 및 수술료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하고,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 분류체계」에 따라 부여된 「ADRG(Adjacent DRG)」중 회사가 정한 코드를 말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분류체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발·관리하는 한국형 입원환자분류체계로서, 진단과 시술명, 연령 등에 따라 입원환자를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은 KDRG 버전 4.4(2021.1.1 시행)의 ADRG 분류체계를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ADRG(Adjacent DRG)

환자의 주진단 범주(Major Diagnostic Category, MDC)와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외과계 그룹”과 “내과계 그룹”으로 분류한 후 의료행위^{주1)}와 진단명^{주2)}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주1) 의료행위 : 의료행위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말합니다.

주2) 진단명 : 진단명이란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분류번호를 말합니다.

주진단 범주(Major Diagnostic Category, MDC)

신체부위나 질병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질병군의 대분류를 말합니다.

수술 및 시술코드 확인 예시

- 수술 및 시술코드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biz.hira.or.kr>)의 모니터링 > 환자분류체계 > 입원환자분류체계 > 환자분류조회(또는 자료실 內 최신 환자분류프로그램)
- 확인 예시
 - 진단코드 입력: C20(직장의 악성신생물)
 - 수가코드 입력: Q2981(직장종양절제술(경향문접근))
 - 수술 및 시술코드 확인: G04100(경향문 및 경천골 접근 직장절제술(악성종양의 경우))
 - 별표확인 : G041(7중)

- ④ 제3항의 「수술 및 시술코드」에서 향후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 개정으로 동일한 수술 및 시술에 대해 「수술 및 시술코드」가 변경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의 체결시점에서 정한 「수술 및 시술코드」를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ADRG」가 신규 추가되는 경우 회사는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별표102】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수술 및 시술코드를 결정합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수술 및 시술 받은 시점에서 부여된 의료행위, 진단명 및 주진단범주(MDC) 등을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의 “KDRG”기준에 적용합니다.
- 신의료수술 도입 등의 이유로 급여항목이 신규 추가되고 피보험자가 그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 회사는 주진단범주(MDC)와 의료행위를 확인한 후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에 정한 수술 및 시술코드를 기준으로 수술비(시술 포함)를 지급합니다.

【예시】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에 간이식에 해당하는 수술 및 시술코드는 A010(KDRG 버전4.4)이었으나, 피보험자가 간이식수술을 받은 시점의 수술 및 시술코드가 A080(KDRG 버전5.0)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A010(KDRG 버전4.4)에 해당하는 수술비(시술 포함)를 지급합니다.

- ⑤ 제3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에 급여항목으로 분류된 수술 및 시술이 향후 비급여항목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수술 및 시술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⑥ 제1항의 수술 및 시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호, 2021.1.22.)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 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2장(검사로) 및 제3장(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에서 정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방사선 치료 대상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제3장(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의 사이버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감마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선형가속기(LINAC) 정위적 방사선 치료, 양성자치료는 수술 및 시술에 포함하여 보장합니다.

내 용	수가코드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1회당]-선형가속기이용	HD111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1회로 치료종결]-선형가속기이용	HD112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HD113
뇌정위적방사선수술-사이버나이프	HD114
뇌정위적방사선수술-선형가속기	HD115
양성자치료[1회당]	HD121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1회당]-사이버나이프이용	HD211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1회로 치료종결]-사이버나이프이용	HD212

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1회의 입원 또는 1회의 통원 중에 2가지 이상의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 퇴원일 또는 통원일을 기준으로 진단서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분류체계 등을 통해 확인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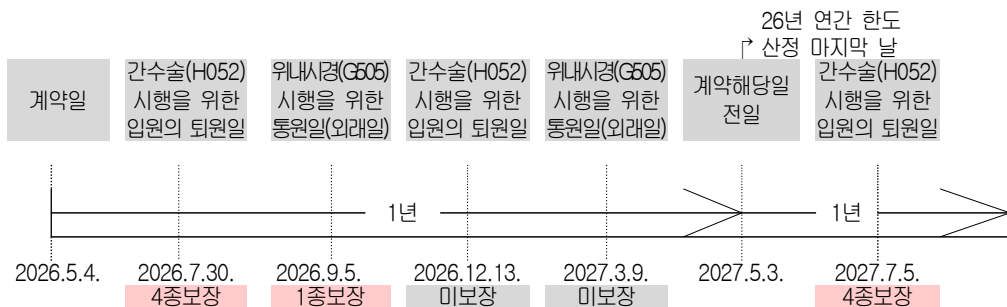
하나의 수술 및 시술코드에 한하여 수술비(시술 포함)를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ADRG는 1회의 입원 또는 1회의 통원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수술 및 시술을 받더라도 “KDRG”에서 정한 외과적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만 생성됩니다. 이 경우 외과적 우선순위는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별표102】참조)의 수술 및 시술종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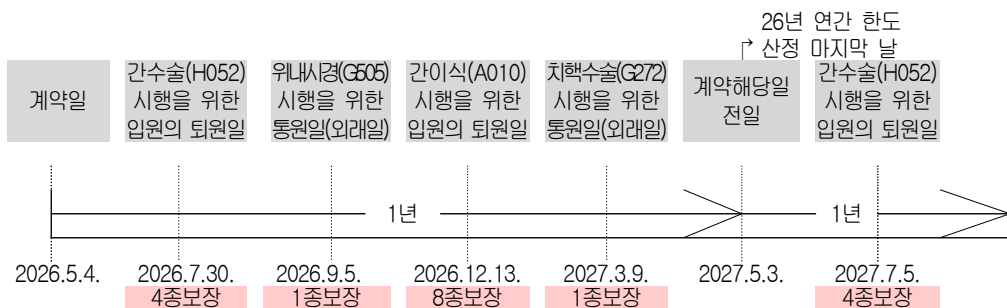
[보장예시1]

2026.7.30. 입원으로 인한 간수술(H052) ⇒ 26년 첫 번째 입원수술 ⇒ 4종보장
 2026.9.5. 통원으로 인한 위내시경(G505) ⇒ 26년 첫 번째 통원수술 ⇒ 1종보장
 2026.12.13. 입원으로 인한 간수술(H052) ⇒ 26년 두 번째 입원수술 ⇒ 미보장
 2027.3.9. 통원으로 인한 위내시경(G505) ⇒ 26년 두 번째 통원수술 ⇒ 미보장
 2027.7.5. 입원으로 인한 간수술(H052) ⇒ 27년 첫 번째 입원수술 ⇒ 4종보장



[보장예시2]

2026.7.30. 입원으로 인한 간수술(H052) ⇒ 26년 첫 번째 입원수술 ⇒ 4종보장
 2026.9.5. 통원으로 인한 위내시경(G505) ⇒ 26년 첫 번째 통원수술 ⇒ 1종보장
 2026.12.13. 입원으로 인한 간이식(A010) ⇒ 26년 두 번째 입원수술 ⇒ 8종보장
 2027.3.9. 통원으로 인한 치핵수술(G272) ⇒ 26년 두 번째 통원수술 ⇒ 1종보장
 2027.7.5. 입원으로 인한 간수술(H052) ⇒ 27년 첫 번째 입원수술 ⇒ 4종보장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퇴원없이 계속입원 중에 2가지 이상의 수술시술코드가 부여되는 경우 또는 1일 2회 이상 통원하여 2가지 이상의 수술 및 시술코드가 부여된 경우에는 수술시술종류가 높은 하나의 수술 및 시술코드에 한하여 해당 종의 수술비(시술 포함)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통해 피보험자가 유방재건술과 유방절제술을 동시에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유방재건술(J051,J052)이 아니라 유방절제술(J061,J062)에 해당하는 수술 및 시술코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유방절제술(J061,J062)의 수술비(시술 포함)를 지급합니다.

설명

피보험자가 입원을 하고 “유방재건술”과 “유방절제술”을 동시에 받은 후 퇴원할 경우 생성되는 ADRG는 “유방재건술(J051)”입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제4항에 따라 “유방재건술(J051)”에 해당하는 3종의 수술비(시술포함)가 아니라 “유방절제술(J061)”에 해당하는 7종의 수술비(시술 포함)를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전하여 입원하거나 동일한 의료기관에 퇴원 후 다른 일자에 재입원하여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계속입원 중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피보험자의 퇴원일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함)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질병1~8종수술비(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를 보장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고로 인하여 수술 및 시술한 경우, 진단서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을 통해 주진단범주(MDC)와 의료행위 등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수술 및 시술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제2조(「수술 및 시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 및 시술에 포함하여 보장합니다.

예시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 등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고로 인하여 아래의 진단명 및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회사는 제7항에 따라 “슬관절 및 하퇴골 골절 수술(I283)”에 해당하는 수술비(시술 포함)를 지급합니다.

·진단명 : 경골 하단의 기타 골절(S82.38)

·의료행위 :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하퇴골-경골(N1604)

- 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에서 해당 입원기간 또는 통원일에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급여항목이 발생하는 다른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 회사는 이 수술 및 시술코드에 해당하는 수술비(시술 포함)와 제7항의 수술 및 시술코드에 해당하는 수술비(시술 포함)를 각각 지급합니다.
- ⑨ 「복강경을 이용한 단순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N031)», 「개복에 의한 단순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N032)», 「분만및유산후관련장애(수술시행)(O110)」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조(「수술 및 시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6.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7. 정상임신, 출산(제왕절개 제외),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8.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9.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10.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으로 인한 경우
- ②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아래의 질병1~8종수술비(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단, 보

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4.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5.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00~P96)
- ③ 회사는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별표102】 참조)의 주2)에 해당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수술 및 시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진단명, 진단코드, 수술명, 수술일자 포함), 진료비세부내역서(급여수가코드(EDI코드 포함)), 수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진료기록부 등)
(단,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에서 급여수가코드(EDI코드 포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 청구시 급여수가코드(EDI코드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수가코드

급여수가코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 등을 포함한 코드를 말합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48. 질병1~8종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특별약관

148-1. 질병1~8종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특별약관

148-2. 질병1~8종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태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1~8종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II」 (【별표103】 참조)에서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 및 시술코드」 당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1회의 입원당 1회의 「수술 및 시술」 또는 통원 1일당 1회의 「수술 및 시술」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질병1~8종수술비(선천기형포함) (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 장
질병1~8종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1종) 보장
질병1~8종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2종) 보장
질병1~8종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3종) 보장
질병1~8종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4종) 보장
질병1~8종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5종) 보장
질병1~8종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6종) 보장
질병1~8종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7종) 보장
질병1~8종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8종) 보장

제3조(「수술 및 시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 및 시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하며, 한의사는 제외함)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II」 (【별표103】 참조)에서 정한 수술 및 시술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 및 시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 및 시술코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처치 및 수술료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하고,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 분류체계에 따라 부여된 「ADRG(Adjacent DRG)」 중 회사가 정한 코드를 말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분류체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발·관리하는 한국형 입원환자분류체계로서, 진단과 시술명, 연령 등에 따라 입원환자를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은 KDRG 버전 4.4(2021.1.1 시행)의 ADRG 분류체계를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ADRG(Adjacent DRG)

환자의 주진단 범주(Major Diagnostic Category, MDC)와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외과계 그룹”과 “내과계 그룹”으로 분류한 후 의료행위^{주1)}와 진단명^{주2)}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주1) 의료행위 : 의료행위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말합니다.

주2) 진단명 : 진단명이란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분류번호를 말합니다.

주진단 범주(Major Diagnostic Category, MDC)

신체부위나 질병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질병군의 대분류를 말합니다.

수술 및 시술코드 확인 예시

- 수술 및 시술코드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biz.hira.or.kr>)의 모니터링 > 환자분류체계 > 입원환자분류체계 > 환자분류조회(또는 자료실 內 최신 환자분류프로그램)
- 확인 예시
 - 진단코드 입력: C20(직장의 악성신생물)
 - 수가코드 입력: Q2981(직장중양절제술(경향문접근))
 - 수술 및 시술코드 확인: G04100(경향문 및 경천골 접근 직장절제술(악성종양의 경우))
 - 별표확인 : G041(7종)

- ④ 제3항의 「수술 및 시술코드」에서 향후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 개정으로 동일한 수술 및 시술에 대해 「수술 및 시술코드」가 변경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의 체결시점에서 정한 「수술 및 시술코드」를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ADRG」가 신규 추가되는 경우 회사는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II」(【별표10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수술시술코드를 결정합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수술 및 시술 받은 시점에서 부여된 의료행위, 진단명 및 주진단범주(MDC) 등을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의 “KDRG”기준에 적용합니다.
- 신의료수술 도입 등의 이유로 급여항목이 신규 추가되고 피보험자가 그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 회사는 주진단범주(MDC)와 의료행위를 확인한 후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에 정한 수술 및 시술코드를 기준으로 수술비(시술 포함)를 지급합니다.

【예시】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에 간이식에 해당하는 수술 및 시술코드는 A010(KDRG 버전4.4)이었으나, 피보험자가 간이식수술을 받은 시점의 수술 및 시술코드가 A080(KDRG 버전5.0)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A010(KDRG 버전4.4)에 해당하는 수술비(시술 포함)를 지급합니다.

- ⑤ 제3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에 급여항목으로 분류된 수술 및 시술이 향후 비급여항목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수술 및 시술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⑥ 제1항의 수술 및 시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호, 2021.1.22.)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 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2장(검사료) 및 제3장(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서 정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방사선 치료 대상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제3장(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의 사이버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감마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선형가속기(LINAC) 정위적 방사선 치료, 양성자치료는 수술 및 시술에 포함하여 보장합니다.

내 용	수가코드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1회당]-선형가속기이용	HD111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1회로 치료종결]-선형가속기이용	HD112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HD113
뇌정위적방사선수술-사이버나이프	HD114
뇌정위적방사선수술-선형가속기	HD115
양성자치료[1회당]	HD121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1회당]-사이버나이프이용	HD211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1회로 치료종결]-사이버나이프이용	HD212

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바에 따릅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1회의 입원 또는 1회의 통원 중에 2가지 이상의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 퇴원일 또는 통원일을 기준으로 진단서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분류체계 등을 통해 확인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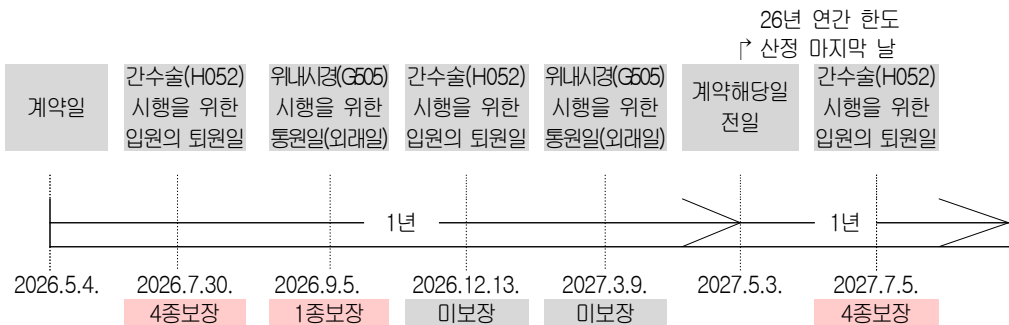
하나의 수술 및 시술코드에 한하여 수술비(시술 포함)를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ADRG는 1회의 입원 또는 1회의 통원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수술 및 시술을 받더라도 “KDRG”에서 정한 외과적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만 생성됩니다. 이 경우 외과적 우선순위는 「1~8중 수술 및 시술 분류표 II」 (【별표103】 참조)의 수술 및 시술종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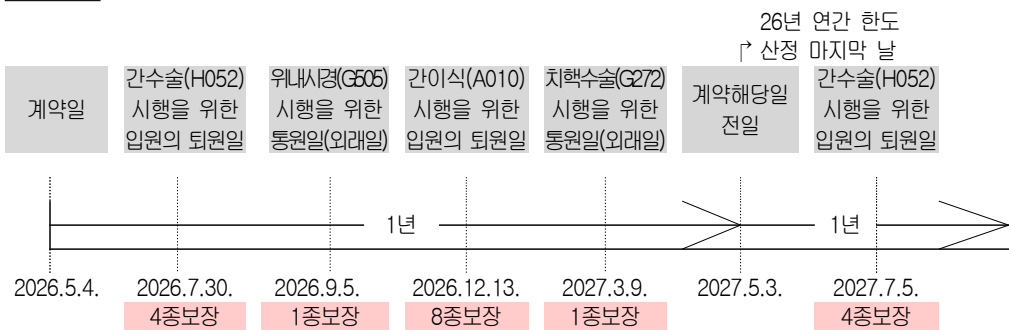
[보장예시1]

2026.7.30. 입원으로 인한 간수술(H052) ⇒ 26년 첫 번째 입원수술 ⇒ 4중보장
 2026.9.5. 통원으로 인한 위내시경(G505) ⇒ 26년 첫 번째 통원수술 ⇒ 1중보장
 2026.12.13. 입원으로 인한 간수술(H052) ⇒ 26년 두 번째 입원수술 ⇒ 미보장
 2027.3.9. 통원으로 인한 위내시경(G505) ⇒ 26년 두 번째 통원수술 ⇒ 미보장
 2027.7.5. 입원으로 인한 간수술(H052) ⇒ 27년 첫 번째 입원수술 ⇒ 4중보장



[보장예시2]

2026.7.30. 입원으로 인한 간수술(H052) ⇒ 26년 첫 번째 입원수술 ⇒ 4중보장
 2026.9.5. 통원으로 인한 위내시경(G505) ⇒ 26년 첫 번째 통원수술 ⇒ 1중보장
 2026.12.13. 입원으로 인한 간이식(A010) ⇒ 26년 두 번째 입원수술 ⇒ 8중보장
 2027.3.9. 통원으로 인한 치핵수술(G272) ⇒ 26년 두 번째 통원수술 ⇒ 1중보장
 2027.7.5. 입원으로 인한 간수술(H052) ⇒ 27년 첫 번째 입원수술 ⇒ 4중보장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퇴원없이 계속입원 중에 2가지 이상의 수술시술코드가 부여되는 경우 또는 1일 2회 이상 통원하여 2가지 이상의 수술 및 시술코드가 부여된 경우에는 수술시술종류가 높은 하나의 수술 및 시술코드에 한하여 해당 중의 수술비(시술 포함)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통해 피보험자가 유방재건술과 유방절제술을 동시에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유방재건술(J051,J052)이 아니라 유방절제술(J061,J062)에 해당하는 수술 및 시술코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유방절제술(J061,J062)의 수술비(시술 포함)를 지급합니다.

설명

피보험자가 입원을 하고 “유방재건술”과 “유방절제술”을 동시에 받은 후 퇴원할 경우 생성되는 ADRG는 “유방재건술(J051)”입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제4항에 따라 “유방재건술(J051)”에 해당하는 3종의 수술비(시술포함)가 아니라 “유방절제술(J061)”에 해당하는 7종의 수술비(시술 포함)를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전하여 입원하거나 동일한 의료기관에 퇴원 후 다른 일자에 재입원하여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보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계속입원 중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피보험자의 퇴원일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함)에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질병1~8종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를 보장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고로 인하여 수술 및 시술한 경우, 진단서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을 통해 주진단범주(MDC)와 의료행위 등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수술 및 시술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제3조(「수술 및 시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 및 시술에 포함하여 보장합니다.

예시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 등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고로 인하여 아래의 진단명 및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회사는 제5항에 따라 “슬관절 및 하퇴골 골절 수술(I283)”에 해당하는 수술비(시술 포함)를 지급합니다.

·진단명 : 경골 하단의 기타 골절(S82.38)

·의료행위 :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하퇴골-경골(N1604)

- 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에서 해당 입원기간 또는 통원일에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급여항목이 발생하는 다른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 회사는 이 수술 및 시술코드에 해당하는 수술비(시술 포함)와 제7항의 수술 및 시술코드에 해당하는 수술비(시술 포함)를 각각 지급합니다.
- ⑨ 「복강경을 이용한 단순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N031)», 「개복에 의한 단순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N032)», 「분만및유산후관련장애통제(수술시행)(O110)」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 및 시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6.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7. 정상임신, 출산(제왕절개 제외),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8.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9.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10.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으로 인한 경우
- ②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아래의 질병1~8종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단, 보

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4.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00~P96)
- ③ 회사는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II」(【별표103】 참조)의 주2)에 해당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수술 및 시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진단명, 진단코드, 수술명, 수술일자 포함), 진료비세부내역서(급여수가코드(EDI코드 포함)), 수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진료기록부 등)
(단,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에서 급여수가코드(EDI코드 포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 청구시 급여수가코드(EDI코드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수가코드

급여수가코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 등을 포함한 코드를 말합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49. 심근병증(허혈성제외)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149-1. 심근병증(허혈성제외)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149-2. 심근병증(허혈성제외)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심근병증(허혈성제외)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심근병증(허혈성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심근병증(허혈성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심근병증(허혈성제외)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심근병증(허혈성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심근병증(허혈성제외)」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심근병증(허혈성제외) 분류표」(【별표104】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심근병증(허혈성제외)」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심도자검사, 심장 자기공명영상(MRI) 또는 심장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심근병증(허혈성제외)」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심근병증(허혈성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근병증(허혈성제외)」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심근병증(허혈성제외)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50. 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150-1. 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150-2. 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주요심장염증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주요심장염증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주요심장염증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주요심장염증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주요심장염증질환 분류표」(【별표105】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주요심장염증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심전도, 심장초음파, 심도자검사, 심장 자기공명영상(MRI), 심장 전산화단층촬영(CT),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관상동맥조영술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주요심장염증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 보험기간 중 「주요심장염증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주요심장염증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51. 특정순환계질환(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진단비(감액없음)(1종) 특별약관

151-1. 특정순환계질환(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진단비(감액없음)(1종) 특별약관

151-2. 특정순환계질환(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진단비(감액없음)(1종)(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특정순환계질환(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진단비(1종)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특정순환계질환(1종)(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특정순환계질환(1종)(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특정순환계질환 (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진단비(1종)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특정순환계질환(1종)(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순환계질환(1종)(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순환계질환(1-5종) 분류표」(【별표106】 참조)에서 「특정순환계질환(1종)(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특정순환계질환(1종)(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 검사, 심전도 검사, 심도자 검사,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내시경검사, 대동맥조영술(aortography), 전산화단층촬영(CT), 혈액 검사, 신경학적 검사, 혈관 도플러, 경동맥 초음파 검사 등을 기초로 합니다. 다만, 특정순환계질환(1종)(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 중 당뇨병이라 함은 「특정순환계질환(1-5종) 분류표」(【별표106】 참조)에서 정한 당뇨병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된 당화혈색소(Hemoglobin A1c, HbA1c)' 수치가 6.5% 이상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1종)(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순환계질환(1종)(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③ 제2항의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된 당화혈색소(Hemoglobin A1c, HbA1c)'란 「국제당화혈색소 측정 표준화 프로그램(National Glycohemoglobin Standardization Program: NGSP)」에 의해 인증되고 「당뇨병 조절과 합병증에 대한 연구(Diabetes Control and Complications Trial :DCCT)」에서 정한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된 것을 말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순환계질환(1종)(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의 진단확정은 「특정순환계질환(1-5종)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에 따라 진단확정을 위한 기초검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 ⑤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순환계질환(1종)(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특정순환계질환(1-5종)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과 연관이 없는 경우 회사는 진단확정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순환계질환(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진단비(1종)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52.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2종) 특별약관

152-1.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2종) 특별약관

152-2.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2종)(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2종)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2종)」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2종)」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2종)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특정순환계질환(2종)」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순환계질환(2종)」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순환계질환(1-5종) 분류표」(【별표106】참조)에서 「특정순환계질환(2종)」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특정순환계질환(2종)」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 검사, 심전도 검사, 심도자 검사,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내시경검사, 대동맥조영술(aortography), 전산화단층촬영(CT), 혈액 검사, 신경학적 검사, 혈관 도플러, 경동맥초음파 검사 등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2종)」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순환계질환(2종)」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순환계질환(2종)」의 진단확정은 「특정순환계질환(1-5종)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에 따라 진단확정을 위한 기초검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 ④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순환계질환(2종)」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

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특정순환계질환(1-5종)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과 연관이 없는 경우 회사는 진단확정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2종)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53.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3종) 특별약관

153-1.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3종) 특별약관

153-2.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3종)(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3종)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3종)」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3종)」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3종)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특정순환계질환(3종)」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순환계질환(3종)」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순환계질환(1-5종) 분류표」(【별표106】참조)에서 「특정순환계질환(3종)」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특정순환계질환(3종)」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 심전도 검

사, 심도자 검사,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내시경검사, 대동맥조영술(aortography), 전산화단층촬영(CT), 혈액 검사, 신경학적 검사, 혈관 도플러, 경동맥초음파 검사 등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3종)」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순환계질환(3종)」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순환계질환(3종)」의 진단확정은 「특정순환계질환(1-5종)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에 따라 진단확정을 위한 기초검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 ④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순환계질환(3종)」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특정순환계질환(1-5종)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과 연관이 없는 경우 회사는 진단확정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3종)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54.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4종) 특별약관

154-1.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4종) 특별약관

154-2.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4종)(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4종)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4종)」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4종)」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4종)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특정순환계질환(4종)」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순환계질환(4종)」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순환계질환(1-5종) 분류표」(【별표106】참조)에서 「특정순환계질환(4종)」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특정순환계질환(4종)」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 검사, 심전도 검사, 심도자 검사,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내시경검사, 대동맥조영술(aortography), 전산화단층촬영(CT), 혈액 검사, 신경학적 검사 등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4종)」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순환계질환(4종)」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순환계질환(4종)」의 진단확정은 「특정순환계질환(1-5종)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에 따라 진단확정을 위한 기초검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 ④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순환계질환(4종)」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특정순환계질환(1-5종)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과 연관이 없는 경우 회사는 진단확정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4종)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55.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5종) 특별약관

155-1.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5종) 특별약관

155-2.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5종)(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5종)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5종)」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5종)」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5종)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특정순환계질환(5종)」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순환계질환(5종)」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순환계질환(1-5종) 분류표」(「별표106」 참조)에서 「특정순환계질환(5종)」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특정순환계질환(5종)」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 심전도 검사, 심도자 검사,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내시경검사, 대동맥조영술(aortography), 전산화단층촬영(CT), 혈액 검사, 신경학적 검사 등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5종)」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순환계질환(5종)」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순환계질환(5종)」의 진단확정은 「특정순환계질환(1-5종)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에 따라 진단확정을 위한 기초검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 ④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순환계질환(5종)」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특정순환계질환(1-5종)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과 연관이 없는 경우 회사는 진단확정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5종)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56.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156-1.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156-2.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 분류표」 (【별표107】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57.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157-1.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157-2.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 분류표」(【별표108】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다만,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

습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58. 신생아난청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임신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의 보장은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 제3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에 시작하여 1년 이 지난날에 끝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신생아난청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신생아 난청」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신생아 난청」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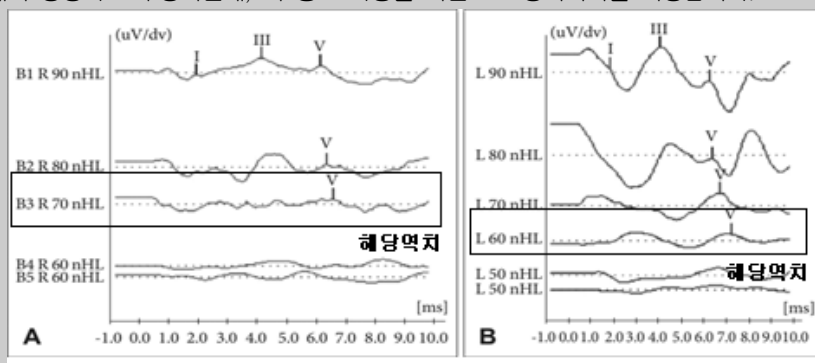
구 분	지 급 금 액
신생아난청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4조(「신생아 난청」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신생아 난청」이라 함은 1차, 2차 신생아청각선별검사 결과(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 혹은 자동이음향방사검사(AOAE))에서 한쪽 귀라도 1차, 2차 검사 결과 모두 재검(Refer) 판정을 받고, 청성뇌간반응검사(ABR) 검사시 청력역치가 40데시벨(dB nHL)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청성뇌간반응검사(ABR) 검사시 청력역치」이라 함은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시행하여 얻은 결과 그래프에서 제 V파형이 관찰되는 최저 자극치의 값을 말합니다.

청성뇌간반응, V파형

소리 자극을 통해 청신경 말단에서 대뇌까지 전달되는 활동전위 중 청신경에서 뇌간에 이르는 청각전달로에서 발생하는 전위를 기록한 것을 청성뇌간반응이라고 합니다. 청성뇌간반응은 I 파에서 V 파에 이르는 5개의 양성파로 구성되는데, 이 중 V파형을 기준으로 청력역치를 측정합니다.



(좌, 우측 그래프 각각 70dB nHL, 60dB nHL의 청력역치를 나타냄)

- ③ 「신생아 난청」의 진단확정은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이비인후과 전문의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에 의해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기록 또는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4조(「신생아 난청」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데시벨(dB nHL)을 측정할 때 좌측과 우측 귀의 평균 청력 역치 데시벨(dB nHL)이 다른 경우 더 높은 데시벨(dB nHL)을 기준으로 하며, 일측성 난청(Single Side Deafness)의 경우에는 해당 귀의 평균 청력 역치만으로 판단합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계약자가 태아의 난청 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신생아난청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회사양식)
 -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청력 검사 결과서
 - 1차, 2차 신생아청각선별검사 결과서

- 나. 청성뇌간반응검사(ABR) 결과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신생아난청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59. 영구적중등도이상난청진단비(갱신형_1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영구적중등도이상난청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영구적 중등도 이상 난청」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영구적 중등도 이상 난청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영구적중등도이상난청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영구적 중등도 이상 난청」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영구적 중등도 이상 난청」이라 함은 「난청 분류표」(【별표109】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평균 청력 역치 기준으로 41데시벨(dB HL) 이상인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중등도 이상 난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평균 청력 역치가 41데시벨 이상인 상태가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약물치료 및 수술 치료 등 의학적 치료를 통해 더 이상의 기능 호전이 불가능한 상태가 확인되는 경우 「영구적 중등도 이상 난청」으로 최종 진단 확정될 수 있으며, 해당 진단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이비인후과 전문의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영구적 중등도 이상 난청」 진단확정 예시】

(6분법 평균 청력 역치 기준)

검사일	21/1/1	21/2/1	21/7/1	
검사결과	43dB	48dB	36dB	
중등도난청 여부	해당	해당	미해당	
CASE1	1개월 데시벨 총족, 6개월 기간 미충족			보험금 미지급
CASE2	6개월 데시벨 미충족, 6개월 기간 총족			보험금 미지급
검사일	21/1/1	21/2/1	21/8/1	
검사결과	43dB	48dB	44dB	
중등도난청 여부	해당	해당	해당	
CASE3	데시벨, 6개월 기간 모두 총족			보험금 지급
CASE4	7개월			보험금 지급

- ② 제1항의 “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중등도 이상 난청”이라 함은 약물치료 및 수술치료를 통해 청력이 호전되어 평균 청력 역치 결과가 41데시벨(dB HL) 미만으로 측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평균 청력 역치」라 함은 피보험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값을 통해 산출한 6분법 평균 청력 역치를 말합니다.

6분법 평균 청력 역치

낮은 주파수부터 높은 주파수까지 여러 주파수별 청력 역치를 측정하여 평균을 구하는 방법으로 0.5KHz, 1KHz, 2KHz, 4KHz 주파수별로 청력 역치를 측정하고 그 결과의 평균을 구한 값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frac{(0.5\text{KHz 청력 역치} + 2 \times 1\text{KHz 청력 역치} + 2 \times 2\text{KHz 청력 역치} + 4\text{KHz 청력 역치})}{6}$$

청력 역치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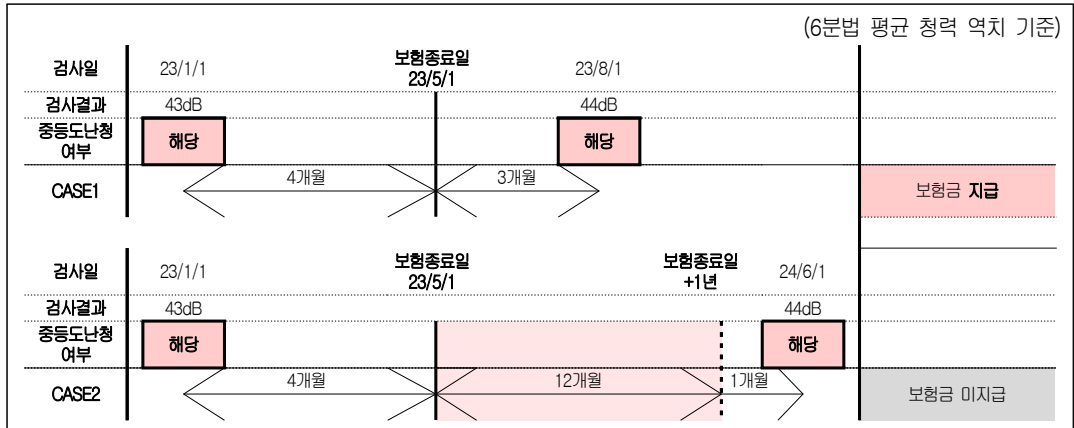
주파수별(125Hz~8,000Hz)로 순음을 들려주었을 때 각 주파수대에서 피검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나 말을 말합니다.

- ④ 제3항의 「평균 청력 역치」는 2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하며 객관적인 상태 평가를 위해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임피던스 청력검사 결과를 필요로 합니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력이 호전되었더라도 평균 청력 역치 기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진단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난청」의 진단확정(제1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는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및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이비인후과 전문의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에 의해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기록 또는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영구적중등도이상난청진단비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② 제4조(「영구적 중등도 이상 난청」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데시벨(dB HL)을 측정할 때 좌측과 우측 귀의 평균 청력 역치 데시벨(dB HL)이 다른 경우 더 높은 데시벨(dB HL)을 기준으로 하며, 일측성 난청(Single Side Deafness)의 경우에는 해당 귀의 평균 청력 역치만으로 판단합니다.
- ③ 최초 검사시 평균 청력 역치 기준으로 41데시벨(dB HL) 이상인 경우가 발생한 상황에서 보험기간이 종료되었다라도 제4조(「영구적 중등도 이상 난청」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그 기간은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한도로 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일시적이거나 회복 가능한 난청으로 진단 받은 경우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청력 검사 결과서
 - 가. 2회 이상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서(첫 결과서 검진날짜 이후 6개월 이상 경과된 결과서를 포함)
 - 나. 청성뇌간반응검사(ABR) 결과서 및 임피던스 청력검사 결과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나이가 이미 6세를 초과한 경우
2.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영구적중등고도이상난청」으로 진단 확정받은 경우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영구적중등고도이상난청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60. 영구적중등고도이상난청진단비(갱신형_1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영구적중등고도이상난청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영구적 중등고도 이상 난청」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영구적 중등고도 이상 난청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영구적중등고도이상난청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영구적 중등고도 이상 난청」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영구적 중등고도 이상 난청」이라 함은 「난청 분류표」(【별표109】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평균 청력 역치 기준으로 56데시벨(dB HL) 이상인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중등고도 이상 난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평균 청력 역치가 56데시벨 이상인 상태가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약물치료 및 수술 치료 등 의학적 치료를 통해 더 이상의 기능 호전이 불가능한 상태가 확인되는 경우 「영구적 중등고도 이상 난청」으로 최종 진단 확정될 수 있으며, 해당 진단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이비인후과 전문의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영구적 중등고도 이상 난청」 진단확정 예시】

(6분법 평균 청력 역치 기준)

검사일	23/1/1	23/2/1	23/7/1	
검사결과	58dB	63dB	47dB	
중등고도난청 여부	해당	해당	미해당	
CASE1	1개월 데시벨 충족, 6개월 기간 미충족			보험금 미지급
CASE2	6개월 데시벨 미충족, 6개월 기간 충족			보험금 미지급
검사일	23/1/1	23/2/1	23/8/1	
검사결과	58dB	63dB	60dB	
중등고도난청 여부	해당	해당	해당	
CASE3	데시벨, 6개월 기간 모두 충족			보험금 지급
CASE4	7개월			보험금 지급

- ② 제1항의 “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중등고도 이상 난청”이라 함은 약물치료 및 수술치료를 통해 청력이 호전되어 평균 청력 역치 결과가 56데시벨(dB HL) 미만으로 측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평균 청력 역치」라 함은 피보험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값을 통해 산출한 6분법 평균 청력 역치를 말합니다.

6분법 평균 청력 역치

낮은 주파수부터 높은 주파수까지 여러 주파수별 청력 역치를 측정하여 평균을 구하는 방법으로 0.5KHz, 1KHz, 2KHz, 4KHz 주파수별로 청력 역치를 측정하고 그 결과의 평균을 구한 값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frac{(0.5\text{KHz 청력 역치} + 2 \times 1\text{KHz 청력 역치} + 2 \times 2\text{KHz 청력 역치} + 4\text{KHz 청력 역치})}{6}$$

청력 역치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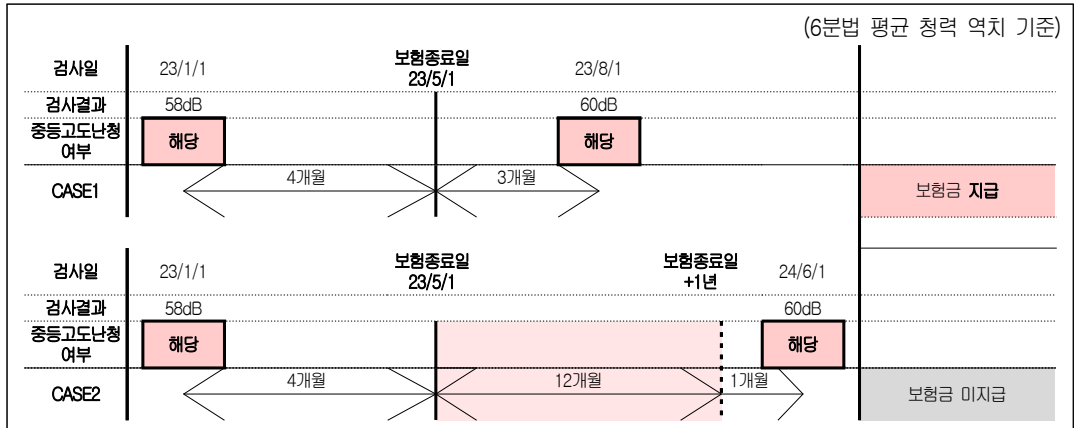
주파수별(125Hz~8,000Hz)로 순음을 들려주었을 때 각 주파수대에서 피검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나 말을 말합니다.

- ④ 제3항의 「평균 청력 역치」는 2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하며 객관적인 상태 평가를 위해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임피던스 청력검사 결과를 필요로 합니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력이 호전되었더라도 평균 청력 역치 기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진단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난청」의 진단확정(제1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은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및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이비인후과 전문의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에 의해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기록 또는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영구적중등고도이상난청진단비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② 제2조(「영구적 중등고도 이상 난청」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데시벨(dB HL)을 측정할 때 좌측과 우측 귀의 평균 청력 역치 데시벨(dB HL)이 다른 경우 더 높은 데시벨(dB HL)을 기준으로 하며, 일측성 난청(Single Side Deafness)의 경우에는 해당 귀의 평균 청력 역치만으로 판단합니다.
- ③ 최초 검사시 평균 청력 역치 기준으로 56데시벨(dB HL) 이상인 경우가 발생한 상황에서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제4조(「영구적 중등고도 이상 난청」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그 기간은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한도로 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일시적이거나 회복 가능한 난청으로 진단 받은 경우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청력 검사 결과서
 - 가. 2회 이상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서(첫 결과서 검진날짜 이후 6개월 이상 경과된 결과서를 포함)
 - 나. 청성뇌간반응검사(ABR) 결과서 및 임피던스 청력검사 결과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나이가 이미 6세를 초과한 경우
2.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영구적중등고도이상난청」으로 진단 확정받은 경우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영구적중등고도이상난청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61. 영구적고도이상난청진단비(갱신형_1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영구적고도이상난청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영구적 고도 이상 난청」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영구적 고도 이상 난청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영구적고도이상난청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영구적 고도 이상 난청」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영구적 고도 이상 난청」이라 함은 「난청 분류표」(【별표109】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평균 청력 역치 기준으로 71데시벨(dB HL) 이상인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고도 이상 난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평균 청력 역치가 71데시벨 이상인 상태가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약물치료 및 수술 치료 등 의학적 치료를 통해 더 이상의 기능 호전이 불가능한 상태가 확인되는 경우 「영구적 고도 이상 난청」으로 최종 진단 확정될 수 있으며, 해당 진단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이비인후과 전문의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영구적 고도 이상 난청」 진단확정 예시】

(6분법 평균 청력 역치 기준)

검사일	23/1/1	23/2/1	23/7/1	
검사결과	73dB	80dB	68dB	
고도난청 여부	해당	해당	미해당	
CASE1	1개월 데시벨 충족, 6개월 기간 미충족			보험금 미지급
CASE2	6개월 데시벨 미충족, 6개월 기간 충족			보험금 미지급
검사일	23/1/1	23/2/1	23/8/1	
검사결과	73dB	80dB	81dB	
고도난청 여부	해당	해당	해당	
CASE3	데시벨, 6개월 기간 모두 충족			보험금 지급
CASE4	7개월			보험금 지급

- ② 제1항의 “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고도 이상 난청” 이라 함은 약물치료 및 수술치료를 통해 청력이 호전되어 평균 청력 역치 결과가 71데시벨(dB HL) 미만으로 측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평균 청력 역치」라 함은 피보험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값을 통해 산출한 6분법 평균 청력 역치를 말합니다.

6분법 평균 청력 역치

낮은 주파수부터 높은 주파수까지 여러 주파수별 청력 역치를 측정하여 평균을 구하는 방법으로 0.5KHz, 1KHz, 2KHz, 4KHz 주파수별로 청력 역치를 측정하고 그 결과의 평균을 구한 값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frac{(0.5\text{KHz 청력 역치} + 2 \times 1\text{KHz 청력 역치} + 2 \times 2\text{KHz 청력 역치} + 4\text{KHz 청력 역치})}{6}$$

청력 역치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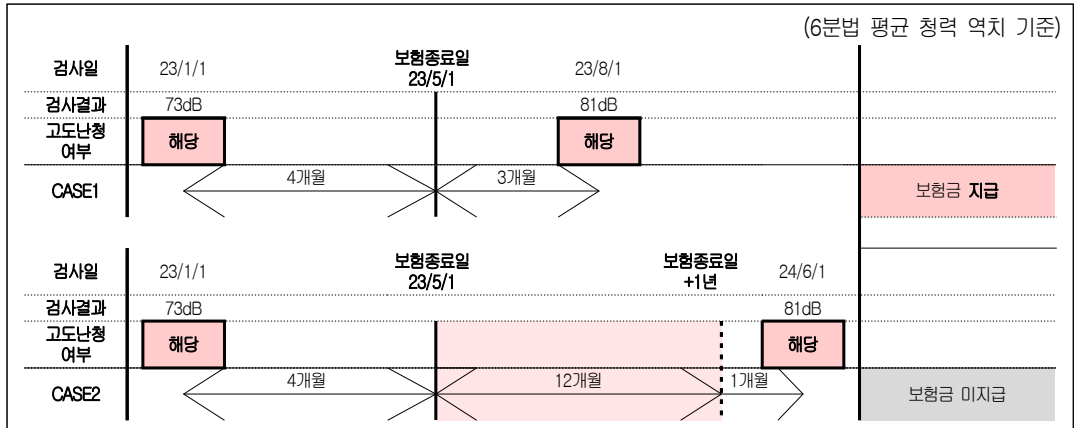
주파수별(125Hz~8,000Hz)로 순음을 들려주었을 때 각 주파수대에서 피검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나 말을 말합니다.

- ④ 제3항의 「평균 청력 역치」는 2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하며 객관적인 상태 평가를 위해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임피던스 청력검사 결과를 필요로 합니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력이 호전되었더라도 평균 청력 역치 기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진단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난청」의 진단확정(제1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은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및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이비인후과 전문의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에 의해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기록 또는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영구적고도이상난청진단비(갱신형_10년)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② 제2조(「영구적 고도 이상 난청」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데시벨(dB HL)을 측정할 때 좌측과 우측 귀의 평균 청력 역치 데시벨(dB HL)이 다른 경우 더 높은 데시벨(dB HL)을 기준으로 하며, 일측성 난청(Single Side Deafness)의 경우에는 해당 귀의 평균 청력 역치만으로 판단합니다.
- ③ 최초 검사시 평균 청력 역치 기준으로 71데시벨(dB HL) 이상인 경우가 발생한 상황에서 보험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제4조(「영구적 고도 이상 난청」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그 기간은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한도로 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일시적이거나 회복 가능한 난청으로 진단 받은 경우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청력 검사 결과서
 - 가. 2회 이상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서(첫 결과서 검진날짜 이후 6개월 이상 경과된 결과서를 포함)
 - 나. 청성뇌간반응검사(ABR) 결과서 및 임피던스 청력검사 결과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나이가 이미 6세를 초과한 경우
2.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영구적고도이상난청」으로 진단 확정받은 경우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영구적고도이상난청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62. 뇌심장질환 CT,MRI,초음파,뇌파,뇌척수액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감액없음) (갱신형_1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뇌심장질환 CT,MRI,초음파,뇌파,뇌척수액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심장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제3조(「급여 뇌심장질환 검사」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연간 1회 한도로 아래의 금액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뇌심장질환 CT,MRI,초음파,뇌파,뇌척수액검사지원비 (급여_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뇌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심장질환」이라함은 「뇌심장질환 분류표」(【별표111-1】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뇌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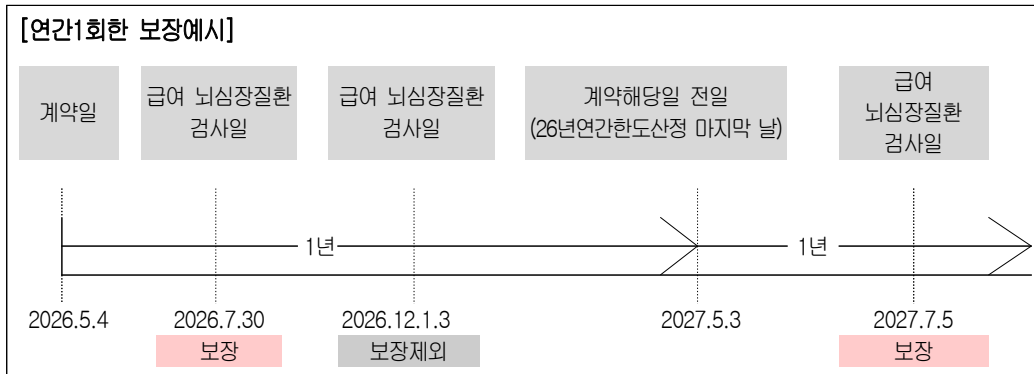
제3조(「급여 뇌심장질환 검사」의 정의 및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급여 뇌심장질환 검사」이라 함은 제2조(「뇌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의사에 의하여 「뇌심장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급여 뇌심장질환 검사 분류표」(【별표111-2】참조)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여 뇌심장질환 검사」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 국내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 일부 본인부담 대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요양급여 전액본인부담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의 「급여 뇌심장질환 검사」는 진료비세부내역서상 「급여 뇌심장질환 검사 분류표」(【별표 111-2】 참조)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급여 뇌심장질환 검사」 의료행위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63. 뇌심장질환 혈관조영술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뇌심장질환 혈관조영술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심장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조건을 토대로 제3조(「급여 뇌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조영술」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도로 아래의 금액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뇌심장질환 혈관조영술검사지원비 (급여_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뇌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심장질환」이라함은 「뇌심장질환 분류표」(【별표111-1】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뇌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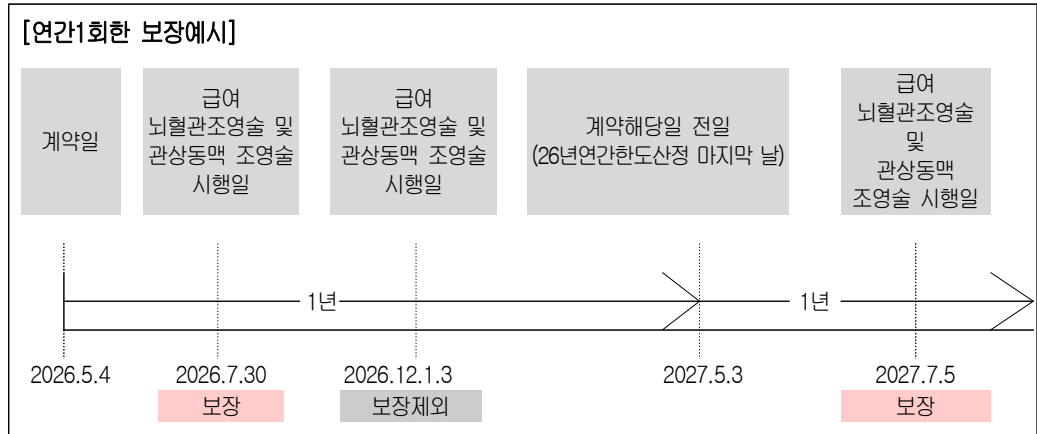
제3조(「급여 뇌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조영술」의 정의 및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급여 뇌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조영술」이라 함은 제2조(「뇌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의사에 의하여 「뇌심장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급여 뇌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조영술 분류표」(【별표111-3】참조)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여 뇌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조영술」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 일부 본인부담 대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요양급여 전액본인부담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의 「급여 뇌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조영술」은 진료비세부내역서상 「급여 뇌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조영술 분류표」(【별표111-3】참조)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급여 뇌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조영술」 의료행위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64. 8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수술비(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8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수술비(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8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8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3조(「8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 수술(급여)」의 정의)의 「8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 수술(급여)」를 받은 때에는 연간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8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수술비(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8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8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이라 함은 「8대기관 양성신생물 분류표」(【별표 112-1】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8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8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3조(「8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 수술(급여)」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8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 수술(급여)」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8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 수술」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8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 수술(급여) 분류표」(【별표112-2】 참조)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8.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8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수술비(연간1회한) 보험금의 지급은 「8대기관 양성신생물 분류표」(【별표112-1】참조)에서 정한 「8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으로 진단확정된 부위와 「8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 수술(급여) 분류표」(【별표112-2】참조)에서 정한 「8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 수술(급여)」를 받은 부위가 동일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65.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갑상선기능항진증」,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제2조(「갑상선기능항진증」,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갑상선기능항진증」,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이라 함은 「갑상선기능항진증 분류표」(【별표113】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라 함은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1. 갑상선절제술을 받은 경우 :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절제술」이라 함은 갑상선엽 전체 혹은 일부를 절제하는 「갑상선엽 전절제술(Total Thyroidectomy)」 및 「갑상선엽 아전절제술(Subtotal Thyroidectomy)」을 말합니다.
 2. 방사선요오드 치료를 받은 경우
 3. 항갑상선제를 60일 이상 처방받은 경우

용어의 정의

- 방사선요오드 치료 : 주성분이 요오드화 나트륨에 해당하는 치료
- 항갑상선제 : 주성분이 methimazole, propylthiouracil, carbimazole 에 해당하는 약제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8.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의사 처방전 등)
 3.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66. 뇌전증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뇌전증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뇌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뇌전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뇌전증진단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뇌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전증」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전증 분류표」(【별표114】참조)에 해당하는 뇌전증, 뇌전증지속상태를 말하며, 경련성 발작, 열성경련, 상세불명의 경련, 뇌졸중에 합병된 발작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뇌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파검사,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 보험기간 중 「뇌전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전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전증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67. 특정귀어지럼증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특정귀어지럼증진단비(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특정귀어지럼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특정귀어지럼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특정귀어지럼증진단비(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연간 1회한)

제2조(「특정귀어지럼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귀어지럼증」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귀어지럼증 분류표」(【별표115】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특정귀어지럼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증상과 함께 청력검사, 두위 변환 안진(positioning nystagmus)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귀어지럼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68. 원형탈모증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원형탈모증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원형탈모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원형탈모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원형탈모증진단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원형탈모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원형탈모증」이라 함은 「원형탈모증 분류표」(【별표116】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원형탈모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피부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원형탈모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계약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2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원형탈모증」으로 진단 확정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원형탈모증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69. 특정폐혈증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특정폐혈증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특정폐혈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특정폐혈증」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특정폐혈증진단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특정폐혈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폐혈증」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폐혈증 분류표」(【별표117】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특정폐혈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폐혈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폐혈증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70. 급성신우신염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170-1. 급성신우신염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170-2. 급성신우신염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급성신우신염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급성신우신염」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급성신우신염」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급성신우신염진단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급성신우신염」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급성신우신염」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급성신우신염 분류표」(【별표118】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성신우신염」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급성신우신염」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급성신우신염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71.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선천성 포함)(감액없음) 특별약관
 171-1.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선천성 포함)(감액없음) 특별약관
 171-2.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선천성 포함)(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선천성 포함)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선천성 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선천성 포함)」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선천성 포함)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제3조(「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선천성 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선천성 포함)」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선천성 포함) 분류표」(【별표119】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선천성 포함)」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갑상선 자극 호르몬(TSH) 검사, 유리 싸이 옥신(free T4)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선천성 포함)」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선천성 포함)」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선천성 포함)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72.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선천성 제외)(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선천성 제외)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선천성 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선천성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선천성 제외)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선천성 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선천성 제외)」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선천성 제외) 분류표」 (【별표120】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선천성 제외)」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갑상선 자극 호르몬(TSH) 검사, 유리 싸이록신(free T4)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선천성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선천성 제외)」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선천성 제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73.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면책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 정의)의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 (급여_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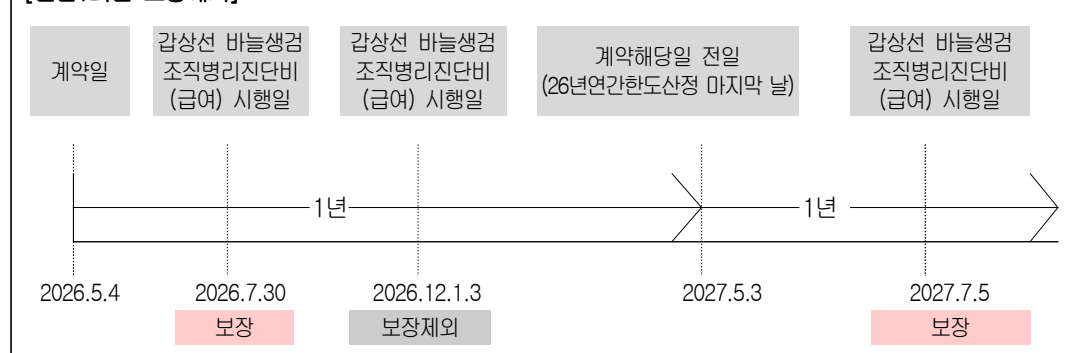
제2조(「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이라 함은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 분류표」(【별표121】참조)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 ③ 제1항의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은 보험기간 중 갑상선의 영상의학적 검사, 혈액검사, 신체검사등을 통하여 내려진 의사의 이상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료행위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연간1회한 보장예시]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병리검사결과지,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진료비계산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74. 중증갑상선암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중증갑상선암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중증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중증갑상선암진단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중증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별표95】 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갑상선암」이라 함은 제1항의 「갑상선암」 중에서 ‘수질성암(Medullary carcinoma)’ 또는 ‘역형성암(Anaplastic carcinoma)’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중증갑상선암」 진단은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 ④ 「중증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증갑상선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증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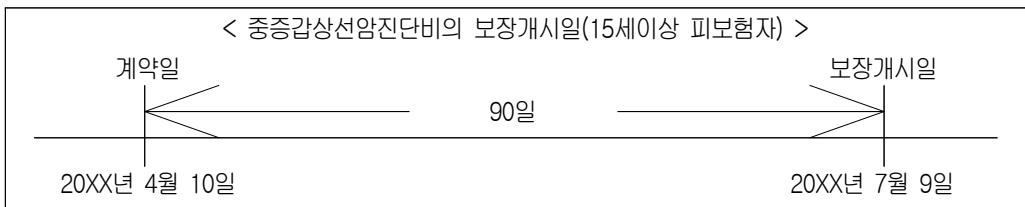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중증갑상선암진단비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2.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조(「중증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

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증갑상선암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75. 특정4대질환 헬리코박터제균치료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특정4대질환 헬리코박터제균치료비(최초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특정4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특정4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제3조(「헬리코박터제균치료」의 정의) 제1항의 「헬리코박터제균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특정4대질환 헬리코박터제균치료비 (최초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특정4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4대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4대질환 분류표」(【별표122】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특정4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3조(「헬리코박터제균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헬리코박터제균치료」라 함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검사」를 통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감염이 확인된 경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제거를 위해 위산분비억제제(PPI, Proton Pump Inhibitor)와 함께 아래의 약제 조합을 이용하여 시행되는 약물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에 따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제거를 위해 그 외 약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약제(또는 약제 조합)를 포함합니다.

「헬리코박터제균치료」로 인정하는 약제 조합(예시)

1. 아목시실린(Amoxicillin) + 클라리스로마이신(Clarithromycin)*
* 유사한 항생제로 대체 가능
2. 비스무스(Bismuth) +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 + 메트로니다졸(Metronidazole)
3. 메트로니다졸(Metronidazole) + 클라리스로마이신(Clarithromycin)

- ② 제1항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검사」라 함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일반적으로 요소분해효소검사(CLO test), 조직검사, 요소호기검사(UBT) 등의 검사가 활용되며, 그 외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감염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다른 검사도 인정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검사」(예시)

- 요소분해효소검사(CLO test) : 내시경을 통해 얻은 조직 샘플의 요소분해효소 여부를 통해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 조직검사 : 내시경을 통해 얻은 조직 샘플에 특수염색(Giemsa staining)을 가해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 요소호기검사(UBT) : 숨을 내쉬어 날숨의 요소성분을 확인하여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헬리코박터제균치료약제 처방여부 및 의약품명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진료비 계산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진료기록부, 약제비영수증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4대질환 헬리코박터제균치료비(최초1회한)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76. 카티(CAR-T) 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카티(CAR-T) 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카티(CAR-T) 보장 대상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카티(CAR-T) 보장 대상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카티(CAR-T) 보장 대상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카티(CAR-T) 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연간 1회한)

제2조(「카티(CAR-T) 보장 대상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카티(CAR-T) 보장 대상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카티(CAR-T) 보장 대상 암 분류표」(【별표123-1】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카티(CAR-T) 보장 대상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② 「카티(CAR-T) 보장 대상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티(CAR-T) 보장 대상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카티(CAR-T) 보장 대상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카티치료제 및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카티치료제」라 함은 환자 본인의 혈액에서 T세포를 분리하고 체외에서 유전자 도입(변형)을 통해 제조 및 증폭된 키메라항원수용체T세포(CAR-T(카티)세포)를 환자의 몸에 주입함으로써 암세포의 표면항원을 특이적으로 인지해 암세포를 공격하여 사멸시키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카티치료제

카티치료제는 인체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면역세포에 일종의 암세포 위치추적 장치를 심어주는 방식의 치료제로 체내의 면역 T세포를 채집하여 체외로 추출한 후 항체 바이러스 벡터를 활용하여 암세포에 반응하는 특이적인 키메라항원수용체(CAR, Chimeric antigen receptor)를 발현시킨 뒤 다시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여 암세포의 성장 및 확산을 억제하는 방식의 항암제를 말합니다.

카티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카티치료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2년 7월 기준 카티치료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123-2】 카티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분류표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4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의료기관에서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카티(CAR-T) 보장 대상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카티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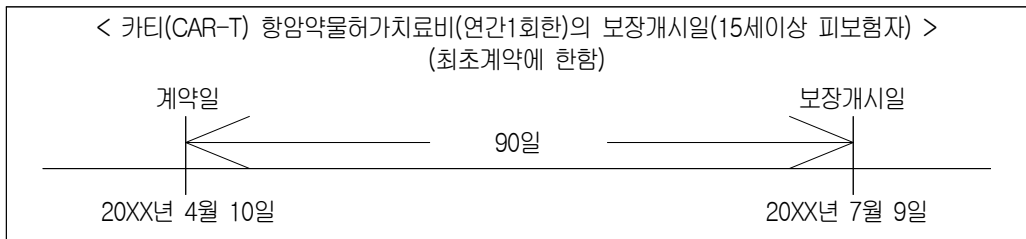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카티치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카티치료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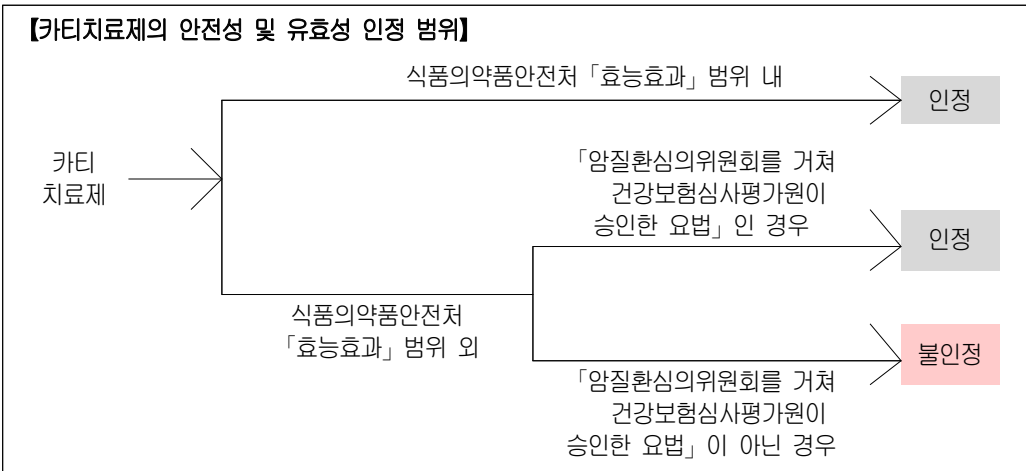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함)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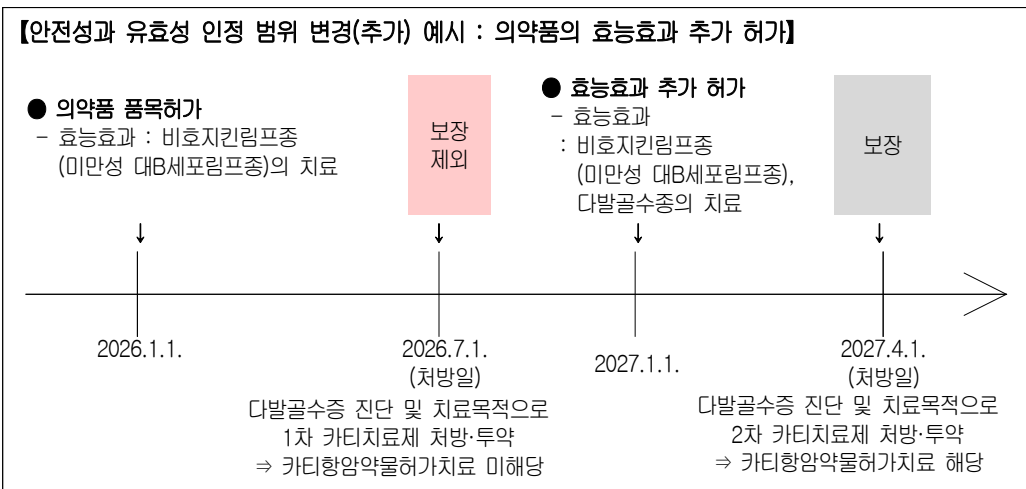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카티(CAR-T) 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가.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나.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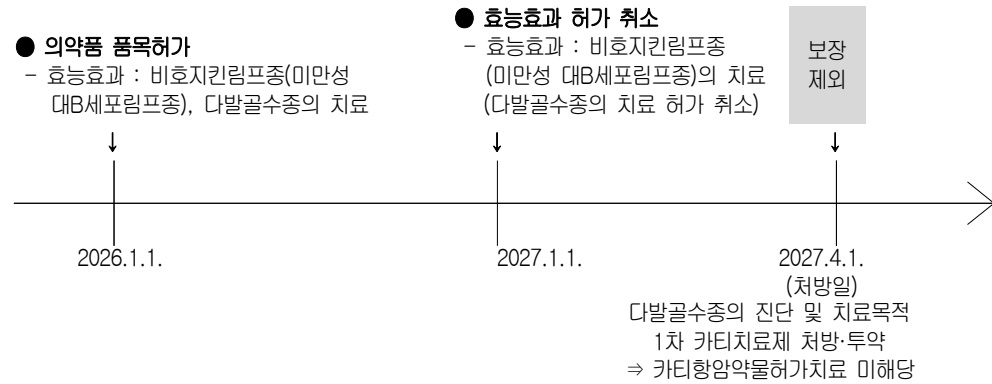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카티(CAR-T) 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환)는 「카티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카티치료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3조(카티치료제 및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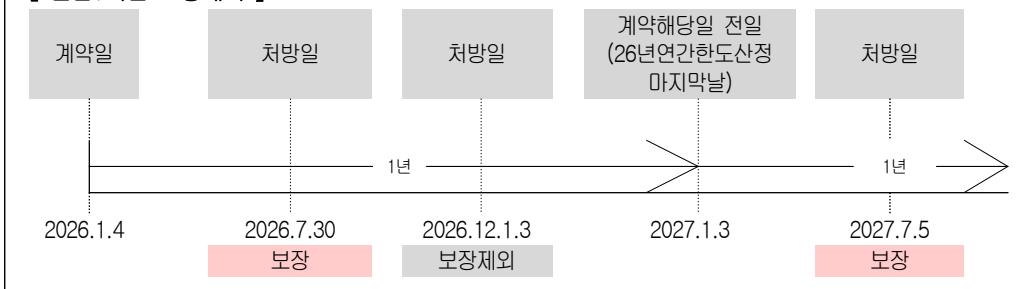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에 따라 「카티(CAR-T) 보장 대상 암」을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 ⑤ 「카티치료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내에 「카티치료제」를 처방 받았으나 의사와 일정 협의 등으로 보험기간 이후에 약물을 투여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⑥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연간1회한 보상예시】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카티(CAR-T) 보장 대상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카티(CAR-T) 보장 대상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가.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ㄱ. 진단명
 -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0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7.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11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12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77. 질병재활치료비(급여_연간2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재활치료비(급여_연간20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입원 중에 제2조(「질병재활치료(급여)」의 정의)의 「질병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이하 「입원 질병재활치료(급여)」라 합니다) 또는 통원하여 제2조(「질병재활치료(급여)」의 정의)의 「질병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이하 「통원 질병재활치료(급여)」라 합니다)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질병재활치료비(급여_연간20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연간 20회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원 질병재활치료(급여)」와 「통원 질병재활치료(급여)」를 합산하여 연간 20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제2조(「질병재활치료(급여)」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질병재활치료(급여)」라 함은 질병으로 인한 구조적 손상과 기능적 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7장(이학요법료)에서 정한 급여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재활치료(급여)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의 「질병재활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제1항의 「질병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3조(「입원」 및 「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2.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확인서("재활치료의 원인"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78.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지원비Ⅱ(급여_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지원비Ⅱ(급여_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 등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의 치료를 위한 필요조건을 토대로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특정NGS유전자패널 검사지원비Ⅱ(급여_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연간1회한)

제2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 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별표22-1】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별표22-1】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급여)」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급여)」라 함은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 분류표」(【별표129】참조)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로,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로 진료비세부내역서 상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아래의 "진료행위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기반 유전자패널검사는 기존 단일 유전자 검사(Sanger sequencing)와 달리 한번에 수십에서 수백개의 유전자를 하나의 패널로 구성하여 유전자 분석을 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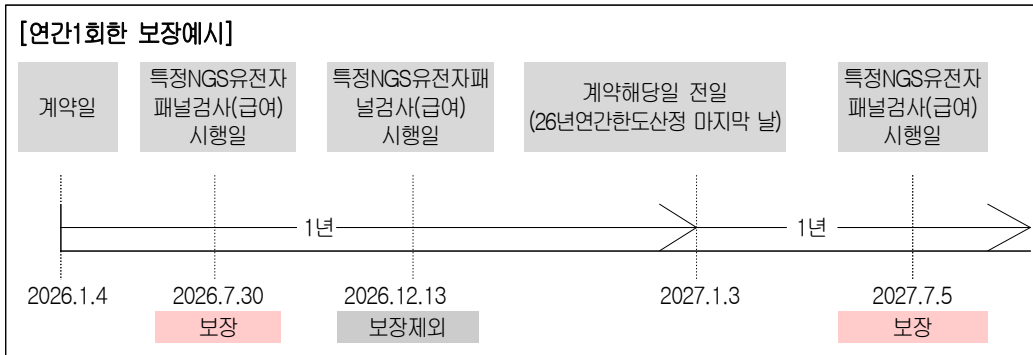
- ② 제1항의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급여)」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5조(선별급여 실시기관의 승인 및 관리) 및 별표3(실시조건)에 근거한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실시 승인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된 경우에 한합니다.
- ③ 제1항의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의료급여」라 합니다)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급여)」 의료행위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79.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 특별약관

179-1.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 특별약관

179-2.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179-1은 비갱신형으로,
179-2은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보험기간 중 「산정특례 신규등록」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 보험금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결핵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결핵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이라 함은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별표130】 참조)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② 「결핵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을 위한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산정특례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핵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및 적용기간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가 결핵질환으로 확진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제3조(「산정특례 신규등록」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서 "산정특례 신규등록"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에 의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별표130】 참조)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8조에 의한 산정특례 재등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지급 산정의 기준일자는 산정특례대상 등록일(해당 상병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하여 최초로 등록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을 확인한 후 해당 질병의 진단확정일로 적용합니다.

제5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①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판단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결핵질환자 산정특례」와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도의 변경으로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거나 급격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기초서류 변경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④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

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별약관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⑦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179-2.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갱신형_1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산정특례 등록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결과 통보방법에 따른 알림톡, 이메일 등),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적용영수증),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80.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제외))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총 2개의 세부보장으로 나뉩니다.

보 장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및 특정소액암제외)) 산정특례대상(감액없음) 보장 중증질환자(신규암(특정소액암)) 산정특례대상 보장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및 특정소액암제외)) 산정특례대상(감액없음) 보장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및 특정소액암제외))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산정특례 신규등록」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및 특정소액암제외)) 산정특례대상(감액없음) 보장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2. 중증질환자(신규암(특정소액암)) 산정특례대상 보장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질환자(신규암(특정소액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산정특례 신규등록」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중증질환자(신규암(특정소액암)) 산정특례대상 보장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및 특정소액암제외))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및 특정소액암제외)) 산정특례 대상질환」이라 함은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 분류표」(【별표131-1】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제3항의 「유사암」 및 제5항의 「특정소액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질환자(신규암(특정소액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이라 함은 제4항에서 정한 「특정소액암」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22-2】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22-3】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소액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소액암 분류표」(【별표131-3】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 ⑤ 이 특별약관에서 「뇌·수막의 양성신생물」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수막의 양성신생물 분류표」(【별표131-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산정특례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제외)) 등록신청 절차 및 적용기간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제외))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가 중증질환자(암)으로 확인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 ⑦ 「중증질환자(유사암 및 특정소액암제외) 산정특례 대상질환(「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 「중증질환자(특정소액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증질환자(유사암 및 특정소액암제외) 산정특례 대상질환(「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 「중증질환자(특정소액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중증질환자(유사암 및 특정소액암제외) 산정특례 대상질환(「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 「중증질환자(특정소액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7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⑨ 「뇌·수막의 양성신생물」의 진단확정은 신경과 의사 또는 신경외과 의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3조(「산정특례 신규등록」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산정특례 신규등록」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에 의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별표131-2】 참조)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8조에 의한 산정특례 재등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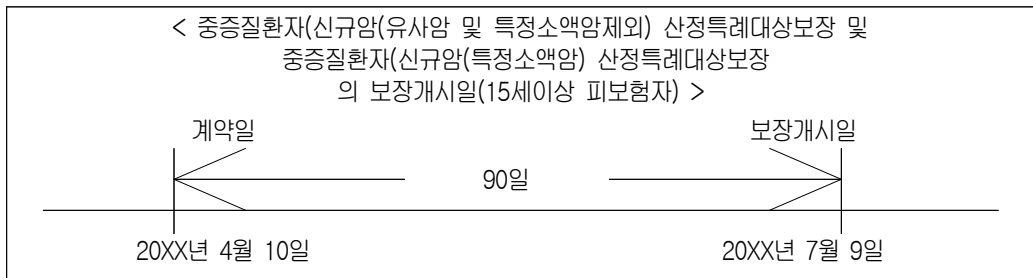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재등록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8조(산정특례 재등록)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중인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및 특정소액암제외)) 산정특례대상 보장, 중증질환자(신규암(특정소액암)) 산정특례대상 보장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2.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제외)) 산정특례대상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제외)) 산정특례대상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함)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판단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제외)) 산정특례대상」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도의 변경으로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제외)) 산정특례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거나 급격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기초서류 변경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④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별약관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⑦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및 특정소액암제외)」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

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의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및 특정소액암제외))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및 특정소액암제외)) 산정특례대상(감액없음)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및 특정소액암제외)) 산정특례대상(감액없음) 보장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③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및 특정소액암제외))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의 「중증질환자(신규암(특정소액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증질환자(신규암(특정소액암)) 산정특례대상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중증질환자(신규암(특정소액암)) 산정특례대상 보장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④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산정특례 등록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결과 통보방법에 따른 알림톡, 이메일 등),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적용영수증),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증질환자(유사암 및 특정소액암제외) 산정특례대상보장」, 「중증질환자(특정소액암) 산정특례대상보장」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보장이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모든 보장이 소멸 된 경우, 즉 총2회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81. 대장용종제거수술비(급여,용종개수당)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대장용종제거수술비(급여,용종개수당)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를 받은 경우 절제된 용종의 개수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대장용종제거수술비 (급여,용종개수당)	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이라 함은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 분류표」(【별표 136】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1항의 절제된 용종의 개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적용받은 시행횟수를 의미합니다. 다만, 진료비세부내역서상 시행횟수가 1회 미만인 경우(급여 0.5회)에도 실제 수술을 시행한 경우 1개의 용종으로 인정합니다.
- ③ 결장경하 종양 수술-용종절제술(1개이상시 초과되는 용종 1개당)(Q7702)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에 따라 최대 5개까지만 급여로 인정되므로, 5개 이상을 절제하더라도 5회의 가입금액을 지급하며, 최초 내시경 검사에서 5개를 초과하는 용종이 발견되었으나 의학적인 권고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하여 5개 이하로 절제한 후, 최초 확인된 용종을 나중에 제거하더라도 발견당시의 기준인 5회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예시1】 용종 3개 제거, 급여 3회 적용
「결장경하 종양 수술-용종 절제술」(Q7701) : 급여 1회 적용 「결장경하 종양 수술-용종 절제술(1개 이상시 초과되는 용종 1개당)」(Q7702) : 급여 2회 적용 → 「보험가입금액 × 3개」에 해당하는 보험금지급
【예시2】 용종 7개 제거, 급여 6.5회 적용
「결장경하 종양 수술-용종 절제술」(Q7701) : 급여 0.5회* 적용 「결장경하 종양 수술-용종 절제술(1개 이상시 초과되는 용종 1개당)」(Q7702) : 급여 4회 적용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Q7703) : 급여 1회 적용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QX706)」: 급여 1회 적용 → 「보험가입금액 × 7개」에 해당하는 보험금지급 * 건강보험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따라 부수술로 인정되어 명세서상 0.5회로 적히나 실제로는 1회 수술을 받았으므로 1회의 가입금액을 지급

【예시3】 용종 10개 제거, 급여 6회 적용
「결장경하 종양 수술-용종 절제술」(Q7701) : 급여 1회 적용 「결장경하 종양 수술-용종 절제술(1개 이상시 초과되는 용종 1개당)」(Q7702) : 급여 5회* 적용 → 「보험가입금액 × 6개」에 해당하는 보험금지급 * Q7702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에 따라 최대 5개까지만 급여로 인정받으므로 5회의 가입금액을 지급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포이츠제거스 증후군(가족생종용종증)으로 인한 예방적 대장절제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병리검 사결과지,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 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82. 특정안면마비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특정안면마비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특정안면마비」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특정안면마비」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특정안면마비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특정안면마비」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안면마비」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안면마비 분류표」(【별표138】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특정안면마비」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임상적 증상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신경흥분도검사(Nerve Excitability Test), 안면신경 전도검사(Facial ENoG(elctroneuronography) 또는 Facial NCS(Facial Nerve Conduction Study)), 순목검사(Blink reflex) 등의 전기생리학적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안면마비」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결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안면마비진단비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해당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83. 31주 이내출생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임신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의 보장은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 제3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에 시작하여 1년 이 지난날에 끝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31주 이내출생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임신 31주 이내에 출생한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31주 이내 출생 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은 신생아가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사의 진단확정에 의하여 사고가 발견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② 피보험자가 다태아로 출생한 경우 각각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의 모(임산부)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2.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84.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급여)」의 정의)의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급여)」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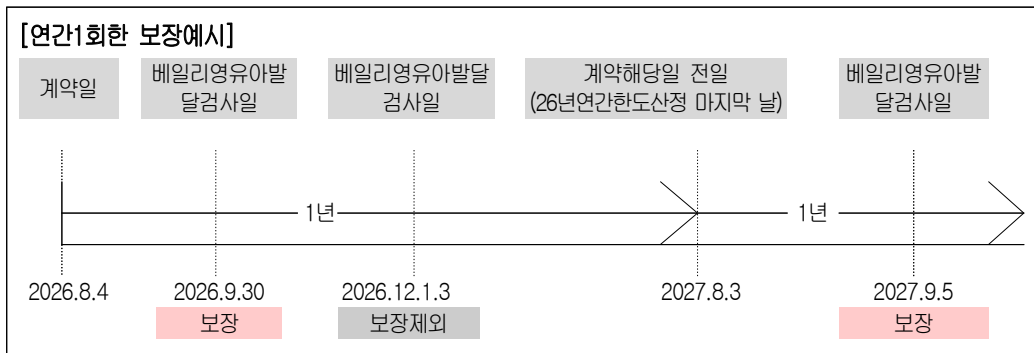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급여)」라 함은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급여) 분류표」(【별표139】 참조)에서 정한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 대상 「수가코드」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급여)」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한 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개정에 따라 제1항의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

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급여)」 이외에 추가로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급여) 분류표」 (【별표139】 참조)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코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급여) 의료행위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85.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치료비(급여_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치료비(급여_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제2조(「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3조(「성장호르몬제치료(급여)」의 정의)에서 정한 「성장호르몬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치료비(급여_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이라 함은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분류표」(【별표140】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신체검사, X-선 촬영, 혈액검사, 유전자 검사, 영상검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성장호르몬제치료(급여)」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성장호르몬제치료(급여)」라 함은 「의사」가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한 약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하는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의 의약품분류번호 「241(뇌하수체호르몬제)」에 해당하는 약품 중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 또는 「Somatropin 서방형주사제(성장호르몬제)」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급여대상 약제를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로 투여시에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 또는 「Somatropin 서방형주사제(성장호르몬제)」는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성장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하는 치료제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서 정한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으로 인한 성장호르몬제 급여 인정기준」에 모두 해당되어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및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개정에 따라 「성장호르몬제치료(급여)」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성장호르몬제치료(급여)」 외에 추가로 「성장호르몬제치료(급여)」에 해당하는 약제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제치료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용 어 풀 이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으로 인한 성장호르몬제 급여 인정기준
· 투여대상(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 역연령의 3퍼센타일 이하의 신장 2. 2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 3. 해당 역연령보다 골연령이 감소
· 투여용량	1. "Somatropin 주사제"의 경우 : 주당 0.5~0.71IU/kg 2. "Somatropin 서방형주사제"의 경우 : 주당 0.5mg/kg
· 투여기간	: 역연령 만2세 이후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의 경우 15~16세 범위 내에서 급여로 인정함 (동 범위 내에 포함되지만 현재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3cm, 남자의 경우 165cm 초과되는 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급여로 인정되지 않음)
· 성장호르몬제를 투여할 수 있는 요양기관 조건	1. 반드시 소아과 전문의 또는 내분비학을 전공한 내과 전문의 상근 2.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검사(예: 성장호르몬 유발검사 및 염색체검사 등)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자체 검사하여 진단·처방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진단·처방한 요양기관에서 추적관리 하면서 약제처방만 의원에서 받는 경우는 인정
※	상기 급여 인정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2021년 7월 기준이며, 해당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2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나이가 이미 1세를 초과한 경우
 2.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로 진단 확정받은 경우

제7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성장호르몬제치료(급여)" 처방여부 및 의약품명 필수 기재), 호르몬검사결과지,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86. 틱장애약물치료비(30일이상약물처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틱장애약물치료비(30일이상약물처방)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제2조(「틱장애」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틱장애」로 진단 확정되고 그 「틱장애」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3조(「틱장애 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틱장애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틱장애약물치료비(30일이상약물처방)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틱장애」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틱장애」라 함은 「틱장애 분류표」(【별표14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틱장애」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3조(「틱장애 약물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틱장애 약물치료」라 함은 「의사」가 「틱장애」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약물(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가 「틱장애 약물분류표」(【별표142】참조)에 해당하는 의약품, 이하 「틱장애 약물」이라 합니다)을 30일 이상 처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30일 이상 처방」이라 함은 「틱장애」진단 후 「틱장애 약물」의 총 처방일수(주사 등 내복 외의 방법으로 동일한 날 2회 이상 「틱장애 약물」을 투여한 경우에도 처방일수 1일로 적용합니다)를 합산하여 30일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처방일수 합산시 기준일자는 「틱장애 약물」을 처방 받은 날로 합니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틱장애 약물」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틱장애 약물」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틱장애 약물」이외에도 「틱장애」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동일한 효능 및 효과를 가진 약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계약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3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턱장애 약물」 처방여부 및 의약품명 필수 기재),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나이가 이미 2세를 초과한 경우
 2.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턱장애」로 진단 확정받은 경우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턱장애약물치료비(30일이상약물처방)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87. 성조숙증Ⅱ약제치료비(급여_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성조숙증Ⅱ약제치료비(급여_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제2조(「성조숙증Ⅱ」 및 「성조숙증Ⅱ약제치료(급여)」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성조숙증Ⅱ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성조숙증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성조숙증Ⅱ약제치료(급여)를 받은 때에 연간 1회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성조숙증Ⅱ약제치료비(급여_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성조숙증Ⅱ」 및 「성조숙증Ⅱ약제치료(급여)」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성조숙증Ⅱ」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성조숙증Ⅱ 분류표」(【별표143-1】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성조숙증Ⅱ」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임상적 증상과 함께 관련검사(호르몬검사, 영상검사 등)에서 기질적 이상이 확인된 때를 말합니다. 또한 회사가 「성조숙증Ⅱ」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성조숙증Ⅱ약제치료(급여)」라 함은 의사가 제1항의 「성조숙증Ⅱ」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성조숙증Ⅱ약제치료(급여) 분류표」(【별표143-2】참조)에서 정한 「약제 주성분코드」에 해당되는 약물을 처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급여대상 약제를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로 투여시에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개정에 따라 제3항의 「약제 주성분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 ⑤ 제3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성조숙증Ⅱ약제치료(급여)」외에 추가로 성조숙증Ⅱ약제치료(급여) 분류표(【별표143-2】참조)에 해당하는 약제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제치료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성조숙증Ⅱ약제치료(급여)

성조숙증Ⅱ약제치료(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서 정한 중추성사춘기조발증 급여 인정기준에 모두 해당되어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1. 이차성징성숙도(Tanner stage) 2이상이면서 골연령이 해당 역연령보다 증가된 경우
2. GnRH(생식샘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 자극검사에서 황체형성호르몬(LH)이 기저치의 2-3배 증가되면
서 최고 농도는 5IU/L이상인 경우

※ 상기 급여 인정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2021년 7월 기준이며, 해당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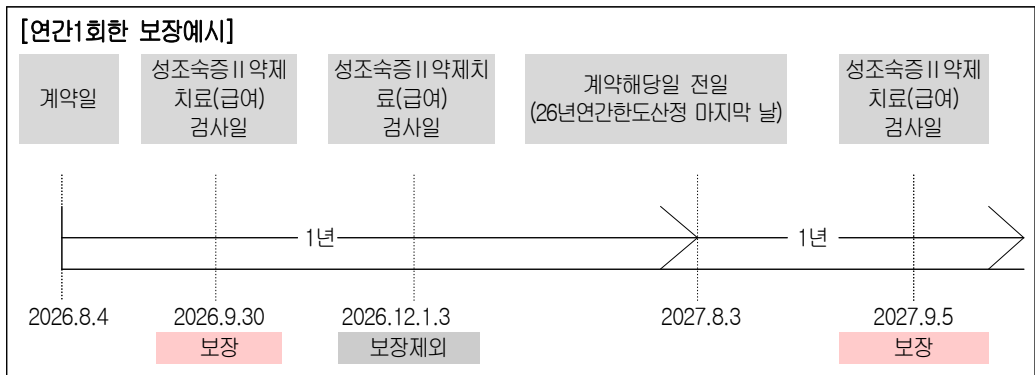
약제 주성분코드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의 의료정보 내 의약품통합정보에서 처방된 의약품명 등 약물정보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분명은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계약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5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성조숙증Ⅱ약제치료(급여) 의료행위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나이가 이미 4세를 초과한 경우
 2.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성조속증 II」로 진단 확정받은 경우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성조속증 II 약제치료(급여) 처방여부 및 의약품명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호르몬검사결과지,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88. 암후유장해(3~100%)(감액없음) 특별약관

190-1. 암후유장해(3~100%)(감액없음) 특별약관

190-2. 암후유장해(3~100%)(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후유장해(3~100%)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으로 인하여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고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암후유장해(3~100%)보험금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제2조(「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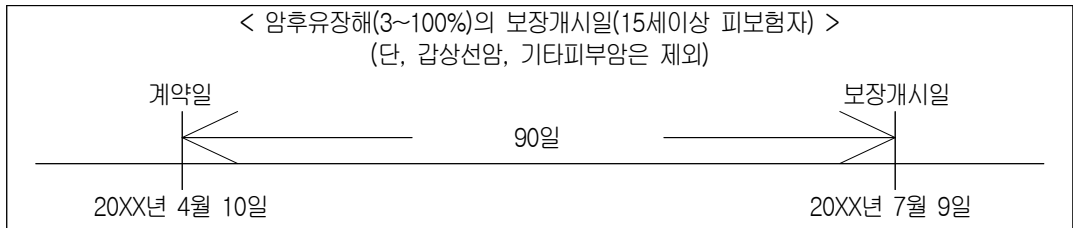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 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 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이라 함은 제1항의 「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을 포함한 암을 말합니다.
- ③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암후유장해(3~100%)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2.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의 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⑥ 같은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다른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 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동일한 부위에 다른 질병으로 다음과 같이 진단을 받은 경우

- 하나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으로 5%후유장해 진단시
⇒ 5%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5만원)
- 또 다른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으로 인해 동일한 부위에 60%후유장해 진단시
⇒ 60%후유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과 5%후유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차액 지급
(60만원 - 5만원 = 55만원)

- ⑧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진단 확정된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으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89. 암후유장해(3~100%)(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후유장해(3~100%)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으로 인하여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고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납입기간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암후유장해(3~100%) 보험금	20년납 가입자	계약일로부터 1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계약일로부터 10년이상 2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50%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계약일로부터 20년이상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0%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30년납 가입자	계약일로부터 15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계약일로부터 15년이상 3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50%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계약일로부터 30년이상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0%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납입기간별 지급보험금 예시]

① 20년납 가입자 기준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
90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갑상선암, 기타피부암제외)	10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20년 이상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면책	보험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보험가입금액의 150% × 장해지급률	보험가입금액의 200% × 장해지급률	...
2026.4.10 (보험계약일)	2026.7.9 (보장개시일)	2036.4.10.	2046.4.10.	

② 30년납 가입자 기준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
90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갑상선암, 기타피부암제외)	15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5년 이상 30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30년 이상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면책	보험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보험가입금액의 150% × 장해지급률	보험가입금액의 200% × 장해지급률	...
2026.4.10 (보험계약일)	2026.7.9 (보장개시일)	2041.4.10.	2056.4.10.	

제2조(「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⑥ 같은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다른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예시 : 암후유장해(3~100%)(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가입금액 100만원(납입기간50%미만 기준)

○ 동일한 부위에 다른 질병으로 다음과 같이 진단을 받은 경우

- 하나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으로 5%후유장해 진단시
⇒ 5%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5만원)
- 또 다른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으로 인해 동일한 부위에 60%후유장해 진단시
⇒ 60%후유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과 5%후유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차액 지급
(60만원 - 5만원 = 55만원)

- ⑧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진단 확정된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으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90.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납입기간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암진단비(유사암제외)	20년납 가입자	계약일로부터 1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계약일로부터 10년이상 2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50%
		계약일로부터 20년이상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0%
	30년납 가입자	계약일로부터 15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계약일로부터 15년이상 3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50%
		계약일로부터 30년이상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0%

[납입기간별 지급보험금 예시]

① 20년납 가입자 기준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90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0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20년 이상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면책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50%	보험가입금액의 200%	...
2026.4.10 (보험계약일)	2026.7.9 (보장개시일)	2036.4.10.	2046.4.10.	

② 30년납 가입자 기준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90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5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5년 이상 30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30년 이상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면책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50%	보험가입금액의 200%	...
2026.4.10 (보험계약일)	2026.7.9 (보장개시일)	2041.4.10.	2056.4.10.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2항의 「암」에서 제3항의 「유사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 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22-2】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22-3】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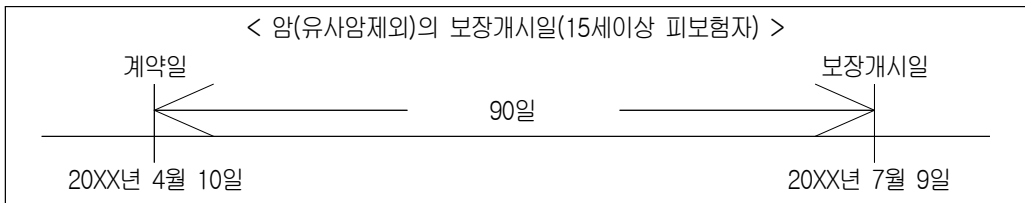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암진단비(유사암제외)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2.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다만, 회사가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진단비(유사암제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91. 뇌혈관질환진단비(강액없음)(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뇌혈관질환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납입기간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뇌혈관질환진단비	20년납 가입자	계약일로부터 1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계약일로부터 10년이상 2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50%
		계약일로부터 20년이상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0%
	30년납 가입자	계약일로부터 15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계약일로부터 15년이상 3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50%
		계약일로부터 30년이상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0%

[납입기간별 지급보험금 예시]

① 20년납 가입자 기준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
10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20년 이상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50%	보험가입금액의 200%	...
2026.4.10 (보험계약일)	2036.4.10.	2046.4.10.	

② 30년납 가입자 기준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
15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5년 이상 30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30년 이상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50%	보험가입금액의 200%	...
2026.4.10 (보험계약일)	2041.4.10.	2056.4.10.	

제2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별표17】 참조)에서 「뇌혈관질환」에 해당하는 1. 거미막하 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8. 기타 뇌혈관 질환,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10.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제1항 내지 제2항의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용어설명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 뇌혈관조영술 】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회게 촬영되는 물질(조영제)를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γ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여하여 그 분포상태의 단면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촬영법

【 양전자 방출 단층술(PET) 】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 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 뇌척수액 검사 】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혈관질환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92. 허혈성심질환진단비(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허혈성심질환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납입기간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허혈성심질환진단비	20년납 가입자	계약일로부터 1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계약일로부터 10년이상 2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50%
		계약일로부터 20년이상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0%
	30년납 가입자	계약일로부터 15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계약일로부터 15년이상 3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50%
		계약일로부터 30년이상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0%

[납입기간별 지급보험금 예시]

① 20년납 가입자 기준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
10년 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0년 이상 20년 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20년 이상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50%	보험가입금액의 200%	...
2026.4.10 (보험계약일)	2036.4.10.	2046.4.10.	

② 30년납 가입자 기준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
15년 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5년 이상 30년 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30년 이상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50%	보험가입금액의 200%	...
2026.4.10 (보험계약일)	2041.4.10.	2056.4.10.	

제2조(「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별표19】참조)에 해당하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

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 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허혈성심질환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93.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진단비(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납입기간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특정심혈관질환 (기타심장부정맥제외) 진단비	20년납 가입자	계약일로부터 1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계약일로부터 10년이상 2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50%
		계약일로부터 20년이상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0%
	30년납 가입자	계약일로부터 15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계약일로부터 15년이상 3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50%
		계약일로부터 30년이상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0%

[납입기간별 지급보험금 예시]

① 20년납 가입자 기준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10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20년 이상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50%	보험가입금액의 200% ...
2026.4.10 (보험계약일)	2036.4.10.	2046.4.10.

② 30년납 가입자 기준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15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5년 이상 30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30년 이상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50%	보험가입금액의 200% ...
2026.4.10 (보험계약일)	2041.4.10.	2056.4.10.

제2조(「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 분류표」(【별표107】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 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 보험기간 중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94.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진단비(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납입기간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특정심혈관질환 (기타심장부정맥) 진단비	20년납 가입자	계약일로부터 1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계약일로부터 10년이상 2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50%
		계약일로부터 20년이상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0%
	30년납 가입자	계약일로부터 15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계약일로부터 15년이상 3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50%
		계약일로부터 30년이상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0%

[납입기간별 지급보험금 예시]

① 20년납 가입자 기준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10년 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0년 이상 20년 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20년 이상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50%	보험가입금액의 200%
2026.4.10 (보험계약일)	2036.4.10.	2046.4.10.

② 30년납 가입자 기준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15년 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5년 이상 30년 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30년 이상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50%	보험가입금액의 200%
2026.4.10 (보험계약일)	2041.4.10.	2056.4.10.

제2조(「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 분류표」(【별표108】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 보험기간 중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95.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 등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중 최초로 발생한 치료에 대해서 아래 구분에 따라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납입기간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암	20년납 가입자	계약일로부터 1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계약일로부터 10년이상 2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50%
			계약일로부터 20년이상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0%
		30년납 가입자	계약일로부터 15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계약일로부터 15년이상 3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50%
			계약일로부터 30년이상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0%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20년납 가입자	계약일로부터 1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00% × 20%
			계약일로부터 10년이상 2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50% × 20%
			계약일로부터 20년이상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0% × 20%
		30년납 가입자	계약일로부터 15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00% × 20%
			계약일로부터 15년이상 3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50% × 20%
			계약일로부터 30년이상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0% × 20%

[납입기간별 지급보험금 예시]

① 20년납 가입자 기준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 →
90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외)		10년 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0년 이상 20년 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20년 이상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면책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50%	보험가입금액의 200% ...
2026.4.10 (보험계약일)	2026.7.9 (보장개시일)	2036.4.10.		2046.4.10.

② 30년납 가입자 기준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90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외)	15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5년 이상 30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30년 이상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면책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50%	보험가입금액의 200%	...
2026.4.10 (보험계약일)	2026.7.9 (보장개시일)	2041.4.10.	2056.4.10.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 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 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 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 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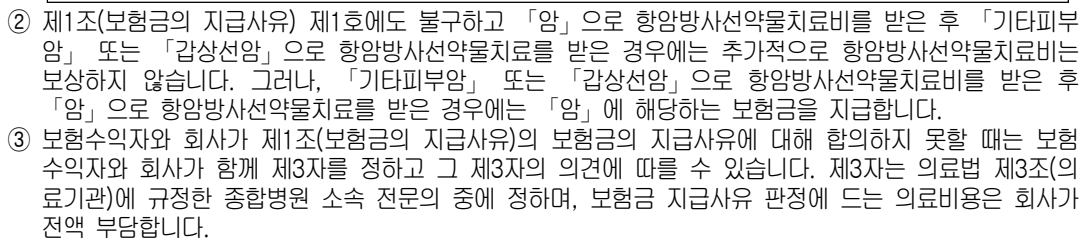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스, 셀레니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연령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보험계약일

2.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사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방사선암치료비(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96. 뇌혈관질환수술비(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뇌혈관질환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납입기간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뇌혈관질환수술비	20년납 가입자	계약일로부터 1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계약일로부터 10년이상 2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50%
		계약일로부터 20년이상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0%
	30년납 가입자	계약일로부터 15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계약일로부터 15년이상 3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50%
		계약일로부터 30년이상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0%

[납입기간별 지급보험금 예시]

① 20년납 가입자 기준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
10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20년 이상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50%	보험가입금액의 200%	...
2026.4.10 (보험계약일)	2036.4.10.	2046.4.10.	

② 30년납 가입자 기준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
15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5년 이상 30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30년 이상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50%	보험가입금액의 200%	...
2026.4.10 (보험계약일)	2041.4.10.	2056.4.10.	

제2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별표17】참조)에서 「뇌혈관질환」에 해당하는 1. 거미막하 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8. 기타 뇌혈관 질환,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10.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뇌혈관조영술]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회계 촬영되는 물질(조영제)를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γ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여하여 그 분포상태의 단면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촬영법

[양전자 방출 단층술(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 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뇌척수액 검사]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97. 허혈성심질환수술비(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허혈성심질환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허혈성심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납입기간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허혈성심질환수술비	20년납 가입자	계약일로부터 1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계약일로부터 10년이상 2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50%
		계약일로부터 20년이상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0%
	30년납 가입자	계약일로부터 15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계약일로부터 15년이상 3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50%
		계약일로부터 30년이상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0%

[납입기간별 지급보험금 예시]

① 20년납 가입자 기준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
10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20년 이상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50%	보험가입금액의 200%	...
2026.4.10 (보험계약일)	2036.4.10.	2046.4.10.	

② 30년납 가입자 기준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
15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5년 이상 30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30년 이상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50%	보험가입금액의 200%	...
2026.4.10 (보험계약일)	2041.4.10.	2056.4.10.	

제2조(「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이라 함은 「허혈성심질환 분류표」(【별표19】 참조)에 해당하는 1. 협심증, 2. 급성심근경색증, 3. 후속심근경색증, 4.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5. 기타 급성 허혈성심질환, 6. 만성 허혈성심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98. 질병수술비(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납입기간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질병수술비	20년납 가입자	계약일로부터 1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계약일로부터 10년이상 2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50%
		계약일로부터 20년이상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0%
	30년납 가입자	계약일로부터 15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계약일로부터 15년이상 3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50%
		계약일로부터 30년이상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0%

[납입기간별 지급보험금 예시]

① 20년납 가입자 기준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10년 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0년 이상 20년 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20년 이상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50%	보험가입금액의 200% ...

2026.4.10
(보험계약일)

2036.4.10.

2046.4.10.

② 30년납 가입자 기준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15년 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5년 이상 30년 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30년 이상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50%	보험가입금액의 200% ...

2026.4.10
(보험계약일)

2041.4.10.

2056.4.10.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수술로 간주합니다.
 1.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2.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행한 레이저(Laser)수술.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하여 드립니다.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의 정의

같은 질병이라 함은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으로서, 치료 부위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치료의 목적이 동일한 질병일 경우 같은 질병에 해당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단,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5. 비만(E66) 수술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진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 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윤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5조(특별약관의 소명)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명)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99. 특정순환계질환수술비(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특정순환계질환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특정순환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납입기간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특정순환계질환 수술비	20년납 가입자	계약일로부터 1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계약일로부터 10년이상 2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50%
		계약일로부터 20년이상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0%
	30년납 가입자	계약일로부터 15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계약일로부터 15년이상 3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50%
		계약일로부터 30년이상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0%

[납입기간별 지급보험금 예시]

① 20년납 가입자 기준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
10년 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0년 이상 20년 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20년 이상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50%	보험가입금액의 200%	...
2026.4.10 (보험계약일)	2036.4.10.	2046.4.10.	

② 30년납 가입자 기준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
15년 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5년 이상 30년 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30년 이상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50%	보험가입금액의 200%	...
2026.4.10 (보험계약일)	2036.4.10.	2056.4.10.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혈수술 보장	비관혈수술 보장
특정순환계질환 관혈수술비 (납기후2배보장) 보장	특정순환계질환 비관혈수술비 (납기후2배보장) 보장

제2조(「특정순환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33】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특정순환계질환」 중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의 「특정순환계질환」 중 「심혈관질환(특정)」의 진단확정은 병력, 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⑤ 제1항의 「특정순환계질환」 중 「4대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병력, 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내시경검사, 대동맥조영술(aortography), 전산화단층촬영(CT) 및 자기공명영상법(MRI) 등 검사결과 상기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하며, 「특정순환계질환」 중 「죽상경화증(뇌, 심장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력, 증상과 함께 혈액, 심전도, 혈관 도플러, 경동맥 초음파검사 등 검사결과 상기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순환계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용어설명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뇌혈관조영술]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희게 촬영되는 물질(조영제)를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γ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여하여 그 분포상태의 단면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촬영법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뇌척수액 검사]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관혈수술」이라 함은 병변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하며, 「대뇌내시경」,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하여 보상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을 말합니다.
 1. 「내시경수술」이라 함은 인체 내부를 특수의료기구를 이용한 직접영상(조영제 등을 통한 간접영상은 제외)을 통하여 보면서 시행하는 직접치료목적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제외합니다.
 2. 「카테터수술」인체의 일부(주로 혈관)와 외부를 연결해주는 도관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직접치료목적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도관을 이용한 약물주입'과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합니다.
 3. 「신의료수술」함은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어 있고 해당 부위에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행위를 말하며, 해당 부위에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적 방사선 조사'를 포함합니다. 다만,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도관을 이용한 약물 또는 방사성물질 주입'과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⑥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관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의사 처방전 등)
3.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0.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하 “수술동반입원”이라 합니다)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나.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1항에서 정한 수술을 받는 경우
다. 상기 가목 및 나목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구 분	납입기간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질병수술동반입원비 (1일~20일)	20년납 가입자	계약일로부터 1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계약일로부터 10년이상 2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50%
		계약일로부터 20년이상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0%
	30년납 가입자	계약일로부터 15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계약일로부터 15년이상 3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50%
		계약일로부터 30년이상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0%

[납입기간별 지급보험금 예시]

① 20년납 가입자 기준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
10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20년 이상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50%	보험가입금액의 200%	...
2026.4.10 (보험계약일)	2036.4.10.	2046.4.10.	

② 30년납 가입자 기준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
15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5년 이상 30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30년 이상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50%	보험가입금액의 200%	...
2026.4.10 (보험계약일)	2041.4.10.	2056.4.10.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수술로 간주합니다.
 1.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2.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행한 레이저(Laser)수술.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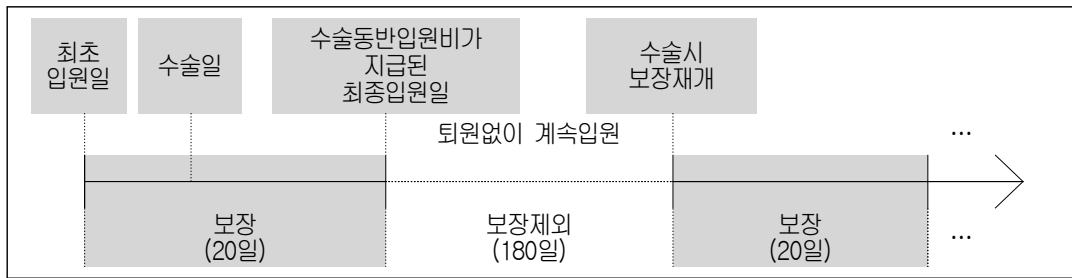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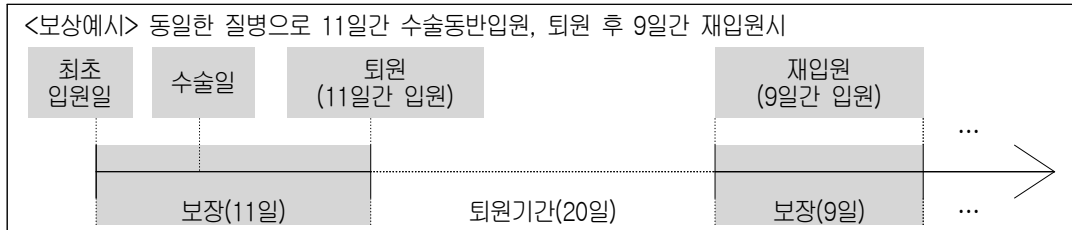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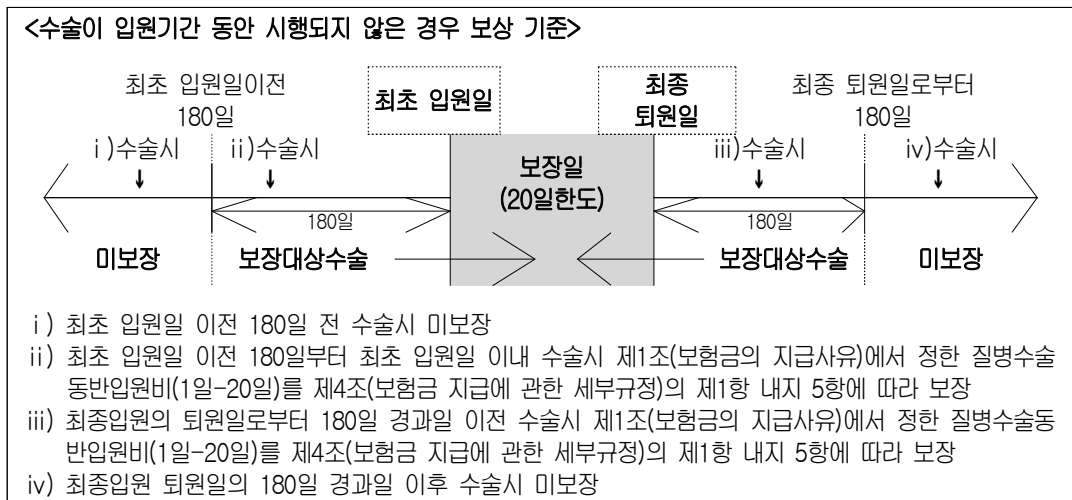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수술동반입원”당 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나목의 수술은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수술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는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보며, 새로운 입원일 이후 같은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수술동반입원”으로 보아 새로운 입원일 1일째 날부터 입원 1일당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를 지급합니다.
- ④ 다음과 같이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는 “수술” 이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수술동반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수술동반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질병수술 동반입원비(1일~2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의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할 때에는 회사는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⑧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최초 입원일 이전 180일부터 최초 입원일 이내” 또는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기 이전” 수술이며,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를 제1항 내지 6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특히, 같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먼저 한 수술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보장합니다.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6. 성병
 7.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8.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9.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10.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1. 정상분만, 초과질환
- ② 회사는 아래의 질병에 의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5. 비만(E66) 수술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③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 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어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고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 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뇌경색증(I63)」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뇌경색증(I63)」 또는 제3조(「급성심근경색증(I21)」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급성심근경색증(I21)」으로 진단확정 되고, 제4조(「혈전용해치료」의 정의)의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세 부분장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 장
뇌경색증 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 급성심근경색증 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

제2조(「뇌경색증(I63)」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경색증(I63)」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I63(뇌경색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뇌경색증(I63)」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경색증(I63)」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경색증(I63)」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용어설명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뇌혈관조영술]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희게 촬영되는 물질(조영제)을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γ 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여하여 그 분포상태의 단면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촬영법

[양전자 방출 단층술(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뇌척수액 검사]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제3조(「급성심근경색증(I21)」의 정의 및 진단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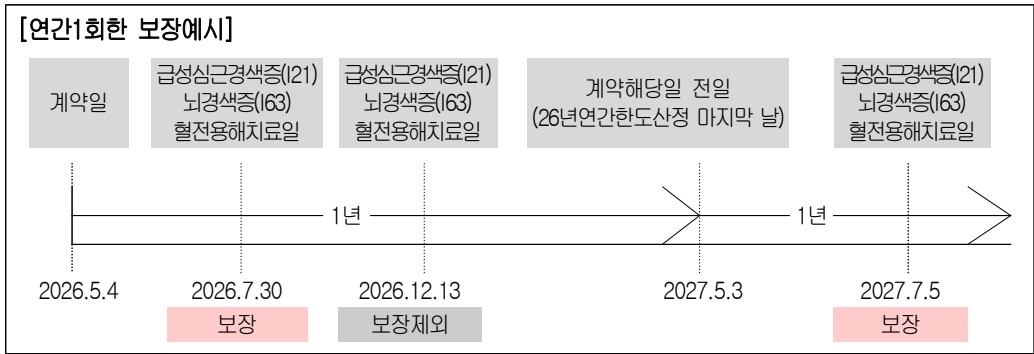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급성심근경색증(I21)」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I21(급성심근경색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성심근경색증(I21)」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급성심근경색증(I21)」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I21)」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I21)」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제외합니다)의 면허를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뇌경색증(I63)」 및 「급성심근경색증(I21)」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혈전용해제」라 함은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혈전용해제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Heparin, Warfarin 등) 및 항혈소판제(Plavix, Aspirin, Pletal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제2항에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급성심근경색증(I21) 또는 뇌경색증(I63) 혈전용해 의료행위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 혈전용해치료비Ⅱ(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혈전용해치료비Ⅱ(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뇌졸중」 또는 제3조(「특정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특정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제4조(「혈전용해치료」의 정의)의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세부보장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혈전용해치료비Ⅱ(1회한)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 장
뇌졸중 혈전용해치료비(1회한) 특정허혈성심질환 혈전용해치료비(1회한)

제2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졸중」이라 함은 「뇌졸중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별표15】 참조)에 해당하는 1. 거미막하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용어설명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뇌혈관조영술]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희게 촬영되는 물질(조영제)을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γ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여하여 그 분포상태의 단면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촬영법

[양전자 방출 단층술(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뇌척수액 검사]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제3조(「특정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특정허혈성심질환 분류표」(【별표146】참조)에 해당하는 1. 협심증, 2. 급성심근경색증, 3. 후속심근경색증, 4.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5. 오래된 심근경색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특정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특정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허혈성심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제외합니다)의 면허를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뇌졸중」(「뇌졸중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별표15】참조)에 해당하는 1. 거미막하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 및 「특정허

혈성심질환」((【별표146】참조)에 해당하는 1. 협심증, 2. 급성심근경색증, 3. 후속심근경색증, 4.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5. 오래된 심근경색증에 해당하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혈전용해제」라 함은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혈전용해제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Heparin, Warfarin 등) 및 항혈소판제(Plavix, Aspirin, Pletal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제2항에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각각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각각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혈전용해치료비Ⅱ(1회한)의 세부보장별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3. 혈전용해치료비Ⅱ(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혈전용해치료비Ⅱ(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뇌졸중」 또는 제3조(「특정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특정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제4조(「혈전용해치료」의 정의)의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세부보장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혈전용해치료비Ⅱ(연간1회한)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 장
뇌졸중 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 특정허혈성심질환 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

제2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졸중」이라 함은 「뇌졸중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별표15】참조)에 해당하는 1. 거미막하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용어설명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뇌혈관조영술】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희게 촬영되는 물질(조영제)을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γ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여하여 그 분포상태의 단면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촬영법

【양전자 방출 단층술(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뇌척수액 검사】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제3조(「특정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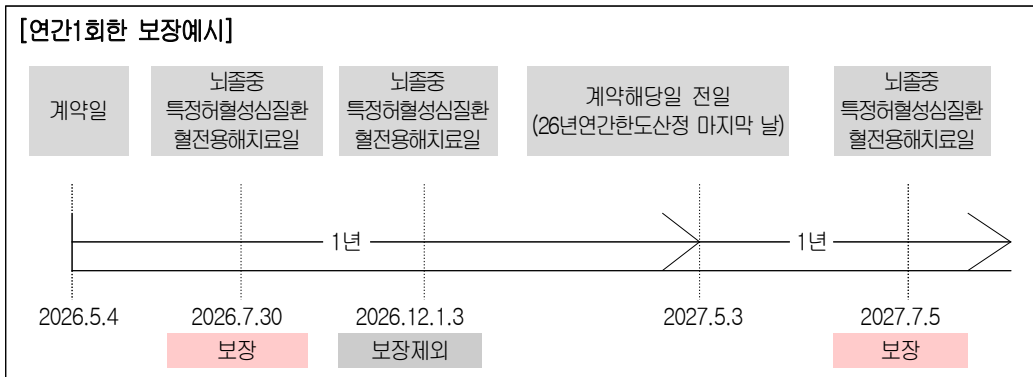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특정허혈성심질환 분류표」(【별표146】참조)에 해당하는 1. 협심증, 2. 급성심근경색증, 3. 후속심근경색증, 4.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5. 오래된 심근경색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 ② 제1항의 「특정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특정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허혈성심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제외합니다)의 면허를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뇌졸중」(「뇌졸중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별표15】 참조)에 해당하는 1. 거미막하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 및 「특정허혈성심질환」(【별표146】 참조)에 해당하는 1. 협심증, 2. 급성심근경색증, 3. 후속심근경색증, 4.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5. 오래된 심근경색증에 해당하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혈전용해제」라 함은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혈전용해제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Heparin, Warfarin 등) 및 항혈소판제(Plavix, Aspirin, Pletal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제2항에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뇌졸중 또는 특정허혈성심질환 혈전용해 의료행위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4. 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뇌경색증(I63)」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뇌경색증(I63)」 또는 제3조(「급성심근경색증(I21)」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급성심근경색증(I21)」으로 진단확정 되고, 제4조(「혈전용해치료」의 정의)의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세 부보장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납입기간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혈전용해치료비 (연간1회한)	20년납 가입자	계약일로부터 1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계약일로부터 10년이상 2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50%
		계약일로부터 20년이상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0%
	30년납 가입자	계약일로부터 15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계약일로부터 15년이상 3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50%
		계약일로부터 30년이상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0%

[납입기간별 지급보험금 예시]

① 20년납 가입자 기준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
10년 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0년 이상 20년 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20년 이상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50%	보험가입금액의 200%	...
2026.4.10 (보험계약일)	2036.4.10.	2046.4.10.	

② 30년납 가입자 기준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
15년 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5년 이상 30년 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30년 이상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50%	보험가입금액의 200%	...
2026.4.10 (보험계약일)	2041.4.10.	2056.4.10.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 장
뇌경색증 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납기후2배보장) 급성심근경색증 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납기후2배보장)

제2조(「뇌경색증(I63)」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경색증(I63)」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I63(뇌경색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경색증(I63)」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경색증(I63)」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경색증(I63)」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용어설명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뇌혈관조영술]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희게 촬영되는 물질(조영제)을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γ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여하여 그 분포상태의 단면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촬영법

[양전자 방출 단층술(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뇌척수액 검사]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제3조(「급성심근경색증(I21)」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급성심근경색증(I21)」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I21(급성심근경색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성심근경색증(I21)」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급성심근경색증(I21)」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

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I21)」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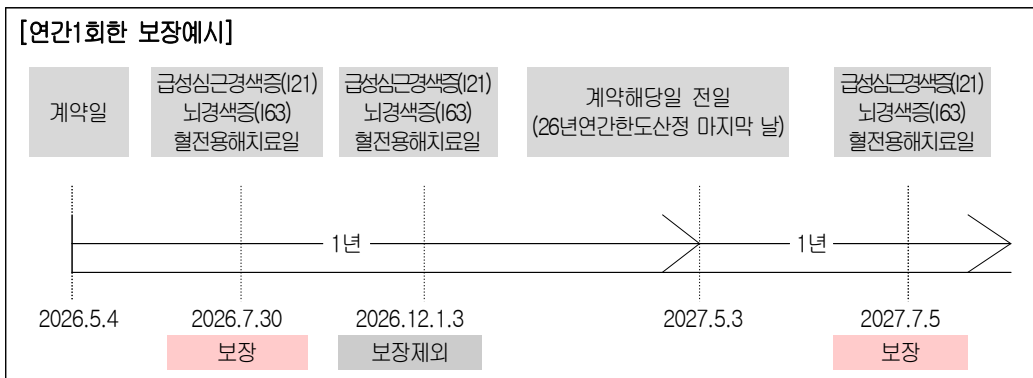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I21)」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제외합니다)의 면허를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뇌경색증(I63)」 및 「급성심근경색증(I21)」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혈전용해제」라 함은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혈전용해제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Heparin, Warfarin 등) 및 항혈소판제(Plavix, Aspirin, Pletal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제2항에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급성심근경색증(I21) 또는 뇌경색증(I63) 혈전용해 의료행위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5. 혈전용해치료비Ⅱ(1회한)(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혈전용해치료비Ⅱ(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뇌졸중」 또는 제3조(「특정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특정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확정 되고, 제4조(「혈전용해치료」의 정의)의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세부보장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납입기간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혈전용해치료비Ⅱ (1회한)	20년납 가입자	계약일로부터 1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계약일로부터 10년이상 2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50%
		계약일로부터 20년이상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0%
	30년납 가입자	계약일로부터 15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계약일로부터 15년이상 3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50%
		계약일로부터 30년이상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0%

[납입기간별 지급보험금 예시]

① 20년납 가입자 기준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
10년 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0년 이상 20년 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20년 이상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50%	보험가입금액의 200%	...
2026.4.10 (보험계약일)	2036.4.10.	2046.4.10.	

② 30년납 가입자 기준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
15년 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5년 이상 30년 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30년 이상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50%	보험가입금액의 200%	...
2026.4.10 (보험계약일)	2041.4.10.	2056.4.10.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 장
뇌졸중 혈전용해치료비Ⅱ(1회한) 특정허혈성심질환 혈전용해치료비Ⅱ(1회한)

제2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졸중」이라 함은 「뇌졸중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별표15】참조)에 해당하는 1. 거미막하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용어설명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뇌혈관조영술]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희게 촬영되는 물질(조영제)를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γ 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여하여 그 분포상태의 단면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촬영법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뇌척수액 검사]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제3조(「특정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특정허혈성심질환 분류표」(【별표146】참조)에 해당하는 1. 협심증, 2. 급성심근경색증, 3. 후속심근경색증, 4.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5. 오래된 심근경색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특정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 보험기간 중 「특정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허혈성심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제외합니다)의 면허를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뇌졸중」(「뇌졸중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별표15】참조)에 해당하는 1. 거미막하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 및 「특정허혈성심질환」(【별표146】참조)에 해당하는 1. 협심증, 2. 급성심근경색증, 3. 후속심근경색증, 4.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5. 오래된 심근경색증에 해당하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 및 「심혈관」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혈전용해제」라 함은 「뇌혈관」 및 「심혈관」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혈전용해제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Heparin, Warfarin 등) 및 항혈소판제(Plavix, Aspirin, Pletal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제2항에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각각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각각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혈전용해치료비(1회한)의 세부보장별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6. 혈전용해치료비II(연간1회한)(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혈전용해치료비II(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뇌졸중」 또는 제3조(「특정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특정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제4조 (「혈전용해치료」의 정의)의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세부보장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납입기간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혈전용해치료비II (연간1회한)	20년납 가입자	계약일로부터 1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계약일로부터 10년이상 2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50%
		계약일로부터 20년이상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0%
	30년납 가입자	계약일로부터 15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계약일로부터 15년이상 3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50%
		계약일로부터 30년이상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0%

[납입기간별 지급보험금 예시]

① 20년납 가입자 기준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10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20년 이상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50%	보험가입금액의 200% ...
2026.4.10 (보험계약일)	2036.4.10.	2046.4.10.

② 30년납 가입자 기준

← 가입 후 →	← 가입 후 →	← 가입 후 →→→
15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5년 이상 30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30년 이상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50%	보험가입금액의 200% ...
2026.4.10 (보험계약일)	2041.4.10.	2056.4.10.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 장
뇌졸중 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 특정허혈성심질환 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

제2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졸중」이라 함은 「뇌졸중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별표15】참조)에 해당하는 1. 거미막하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용어설명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뇌혈관조영술]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희게 촬영되는 물질(조영제)를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γ 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여하여 그 분포상태의 단면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촬영법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뇌척수액 검사]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제3조(「특정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특정허혈성심질환 분류표」(【별표146】참조)에 해당하는 1. 협심증, 2. 급성심근경색증, 3. 후속심근경색증, 4.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5. 오래된 심근경색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특정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 보험기간 중 「특정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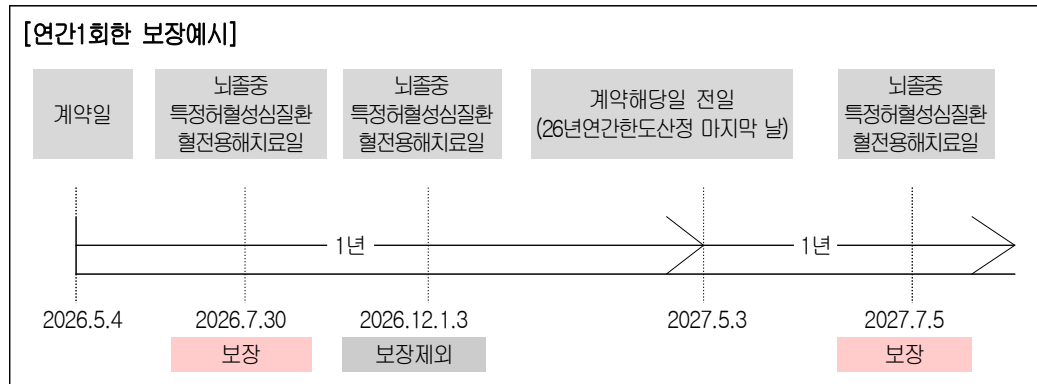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허혈성심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제외합니다)의 면허를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뇌졸중」(「뇌졸중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별표15】참조)에 해당하는 1. 거미막하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 및 「특정허혈성심질환」(【별표146】참조)에 해당하는 1. 협심증, 2. 급성심근경색증, 3. 후속심근경색증, 4.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5. 오래된 심근경색증에 해당하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혈전용해제」라 함은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혈전용해제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Heparin, Warfarin 등) 및 항혈소판제(Plavix, Aspirin, Pletal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제2항에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뇌졸중 또는 특정허혈성심질환 혈전용해 의료행위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7.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60일) 특별약관

207-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60일) 특별약관

207-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6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207-1은 비갱신형으로 운영하며,
207-2는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6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3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6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6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60일한도)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기관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3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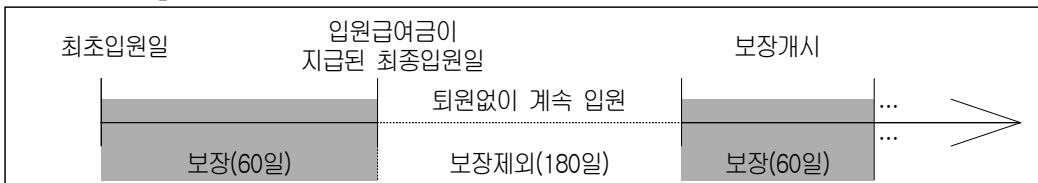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2.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④ 법 제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2. 「치료감호법」 제16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지급일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각각 더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60일)」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최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다음과 같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60일)」가 지급된 최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60일)」가 지급된 최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의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계속하여 보장합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5.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6. 성병
 7.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제6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207-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6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도성 특별약관 제12장 7.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제3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여부 및 사용일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8.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60일) 특별약관

208-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60일) 특별약관

208-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6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208-1은 비갱신형으로 운영하며,
208-2는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6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3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6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6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60일한도)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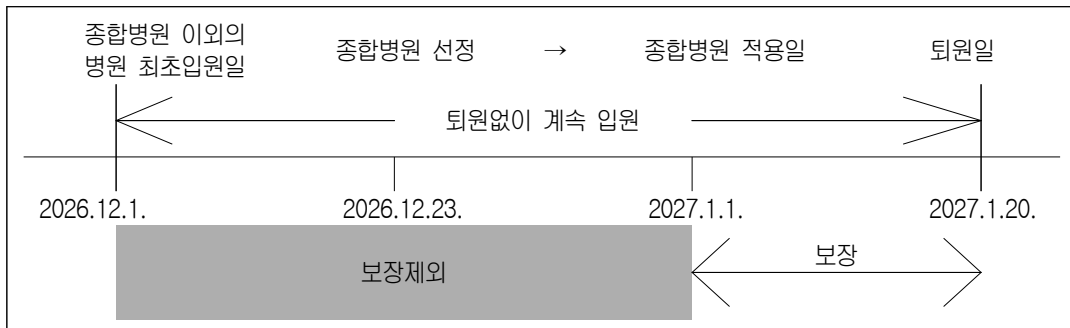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하며,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제3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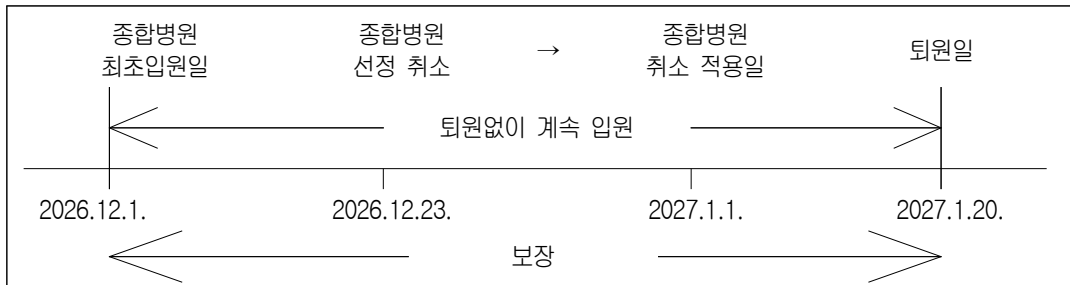
이 특별약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 1일~60일)를 지급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5.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6. 성병
 7.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제6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208-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60일)(갱신형, 2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도성 특별약관 제12장 7.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제3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여부 및 사용일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9.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 특별약관

209-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 특별약관

209-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209-1은 비갱신형으로 운영하며,
209-2는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3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60일한도)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원을 말합니다.

제3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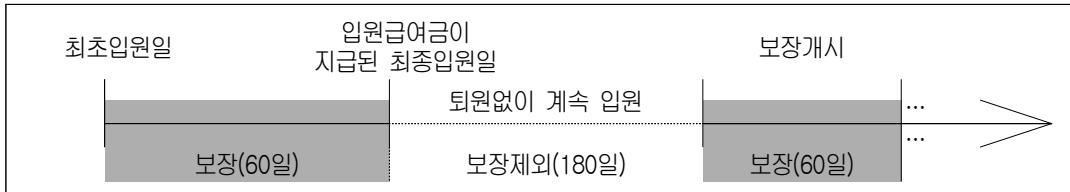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2.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④ 법 제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2. 「치료감호법」 제16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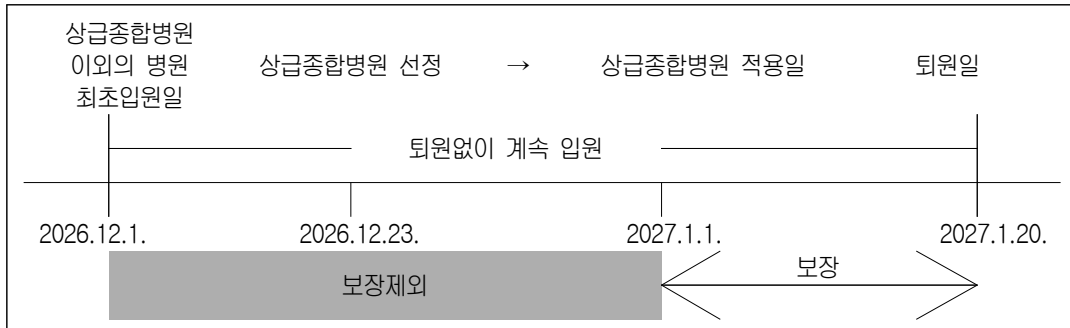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지급일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각각 더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최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다음과 같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가 지급된 최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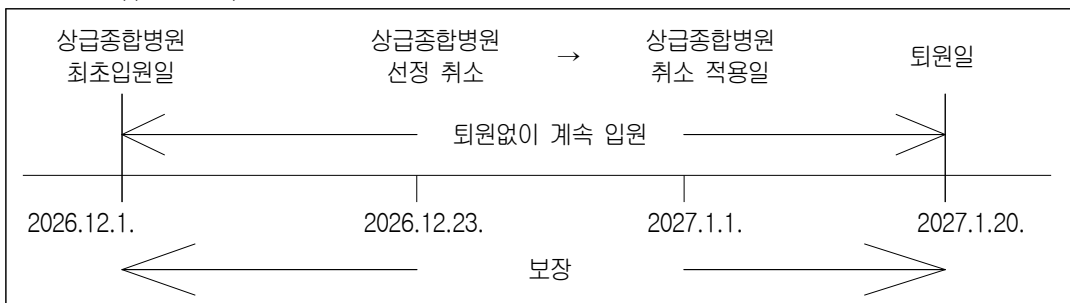
스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가 지급된 최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의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계속하여 보장합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를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해당 「상급종합병원」 퇴원일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를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를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를 지급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5.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6. 성병
 7.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제6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209-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도성 특별약관 제12장 7.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제3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여부 및 사용일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10. 중증질환자(중복암 및 재등락암)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총 2개의 세부보장으로 나뉩니다.

보 장
중증질환자(중복암) 산정특례대상(감액없음) 보장 중증질환자(재등락암) 산정특례대상(감액없음) 보장

-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중증질환자(중복암) 산정특례대상(감액없음) 보장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

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산정특례 중복지암 등록」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중증질환자(중복지암) 산정특례대상(감액없음) 보장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2. 중증질환자(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감액없음) 보장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산정특례 재등록암 등록」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중증질환자(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감액없음) 보장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이라 함은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 분류표」 (【별표131-1】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제외)) 산정특례 대상질환」이라 함은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 분류표」 (【별표131-1】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제3항에서 정한 「유사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별표22-1】 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별표22-1】 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별표22-2】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별표22-3】 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뇌·수막의 양성신생물」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수막의 양성신생물 분류표」 (【별표131-4】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산정특례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제외)) 등록신청 절차 및 적용기간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제외))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가 중증질환자(암)으로 확진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 ⑥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⑦ 제6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⑧ 「뇌·수막의 양성신생물」의 진단확정은 신경과 의사 또는 신경외과 의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3조(「산정특례 중복암 등록」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산정특례 중복암 등록」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에 의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중복암」으로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별표131-2】참조)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중복암」이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 제4항에 의해 등록된 암을 말하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상에 「중복암」으로 표기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산정특례 재등록암 등록」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에 의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재등록암」으로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별표131-2】참조)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재등록암」이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8조에 의해 등록된 암을 말하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상에 「재등록암」으로 표기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신규암」이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에 의해 등록된 암을 말하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상에 「신규암」으로 표기된 경우를 말합니다.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중복암 등록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따라 암환자로 등록된 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추가로 발생한 다른 암종(전이암 제외)에 대하여 산정특례를 신청한 경우, 추가로 발생한 암의 진단확진일부터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재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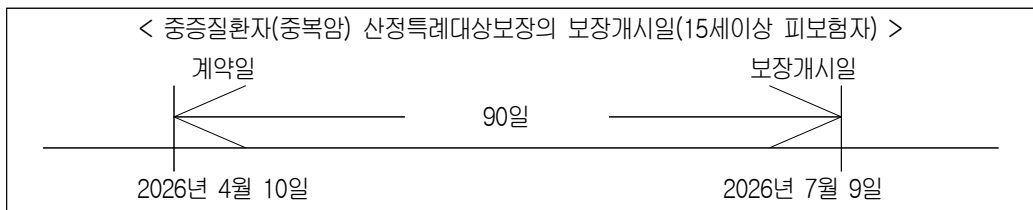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8조(산정특례 재등록)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중인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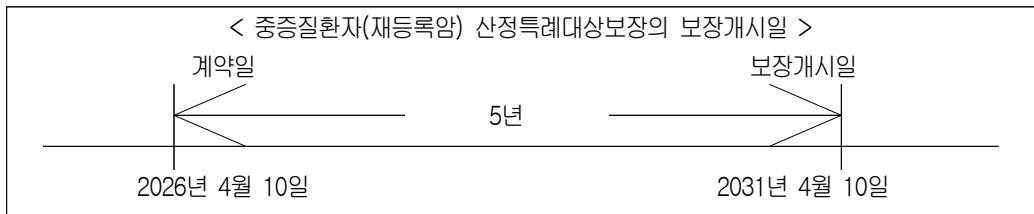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중증질환자(중복암) 산정특례대상 보장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2.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중증질환자(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 보장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호를 따릅니다.

1.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5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중증질환자(중복암 및 재등락암) 산정특례대상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질환자(중복암 및 재등락암) 산정특례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판단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중증질환자(중복암 및 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와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도의 변경으로 「중증질환자(중복암 및 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거나 급격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기초서류 변경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④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별약관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⑦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제외))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③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 중 「중복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증질환자(중복암) 산정특례대상(감액없음)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중증질환자(중복암) 산정특례대상(감액없음) 보장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④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 중 「재등락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증질환자(재등락암) 산정특례대상(감액없음)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중증질환자(재등락암) 산정특례대상(감액없음) 보장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산정특례 등록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결과 통보방법에 따른 알람톡, 이메일 등),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적용영수증),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증질환자(중복암) 산정특례대상보장」, 「중증질환자(재등락암) 산정특례대상보장」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보장이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모든 보장이 소멸된 경우, 즉 총2회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다음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증질환자(재등락암) 산정특례대상(감액없음) 보장은 소멸됩니다.
 1. 제2조(「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별표131-2」 참조)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2.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 기간이 그 날을 포함하여 5년 이하인 경우
- ④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11.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 특별약관

211-1.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 특별약관

211-2.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11-3.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갱신형_10년) 특별약관

211-1, 211-2은 비갱신형으로 운영하며,
211-3은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 된 질병으로 인한 「산정특례대상 희귀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산정특례 신규등록」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 보험금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산정특례대상 희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산정특례대상 희귀질환」이라 함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별표132】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② 「산정특례대상 희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산정특례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및 적용기간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가 희귀질환으로 확진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다만, [별표4]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의 III~V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이사장이 사전에 승인한 요양기관을 통하여 신청해야 하며, 그 중 IV~V에 해당하는 산정특례는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전문위원회로부터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군의 질환임을 판정받은 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는 확진된 날로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적용하며, 30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5년간 적용이 됩니다. 다만, [별표4]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의 IV~에 해당하는 산정특례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전문위원회로부터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군의 질환임을 판정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정특례 신규등록」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산정특례 신규등록"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에 의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희

- 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별표132】 참조)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8조에 의한 산정특례 재등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재등록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8조(산정특례 재등록)

- ①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따라 등록한 희귀질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희귀질환자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따라 등록한 상세불명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 이상 질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전문 위원회로부터 임상 경과 검토 결과 재등록 대상으로 판정받은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판단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와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도의 변경으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거나 급격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기초서류 변경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④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별약관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⑦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211-3.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갱신형, 1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추가코드 등 기입), 산정특례 등록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결과 통보방법에 따른 알림톡, 이메일 등),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적용영수증),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12.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산정특례대상 보장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산정특례 신규등록」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산정특례대상 보장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유사암」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22-2】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22-3】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산정특례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중증질환자(신규암) 등록신청 절차 및 적용기간

「중증질환자(신규암)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가 중증질환자(암)으로 확인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 ④ 「중증질환자(유사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산정특례 신규등록」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산정특례 신규등록」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에 의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별표131-2】참조)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8조에 의한 산정특례 재등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재등록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8조(산정특례 재등록)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중인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산정특례대상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산정특례대상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판단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산정특례대상」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도의 변경으로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산정특례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거나 급격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기초서류 변경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④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별약관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⑦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산정특례 등록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결과 통보방법에 따른 알림톡, 이메일 등),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적용영수증),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산정특례대상보장」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보장이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13. 재발암 및 잔여암진단비(2년대기형)(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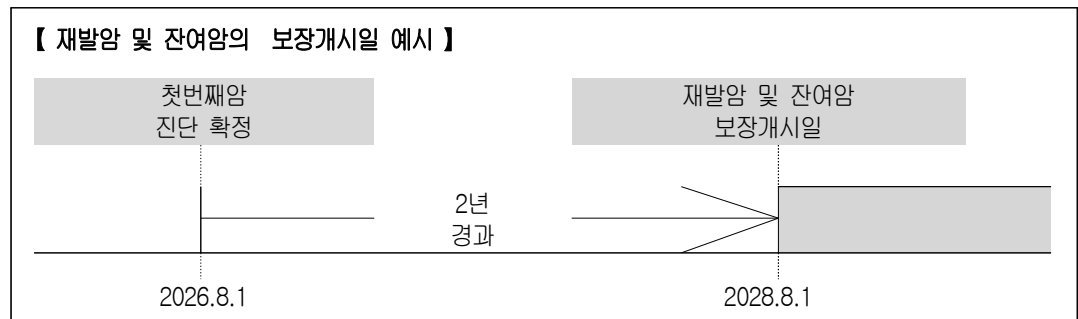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재발암 및 잔여암진단비(2년대기형)(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암」 관련 용어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6항의 「재발암 및 잔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재발암 및 잔여암진단비(2년대기형)(감액없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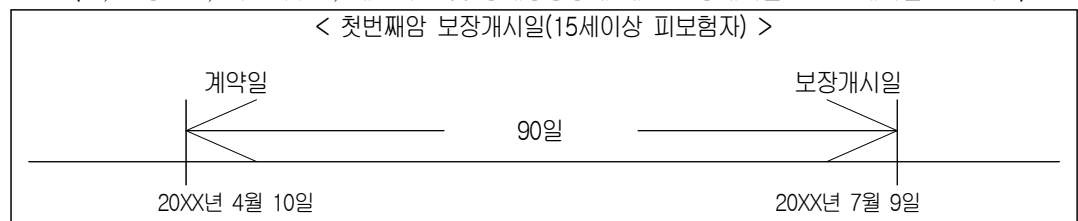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재발암 및 잔여암 보장개시일은 「첫번째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암(유사암제외)」(이하 「첫번째암」이라 합니다)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첫번째암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2.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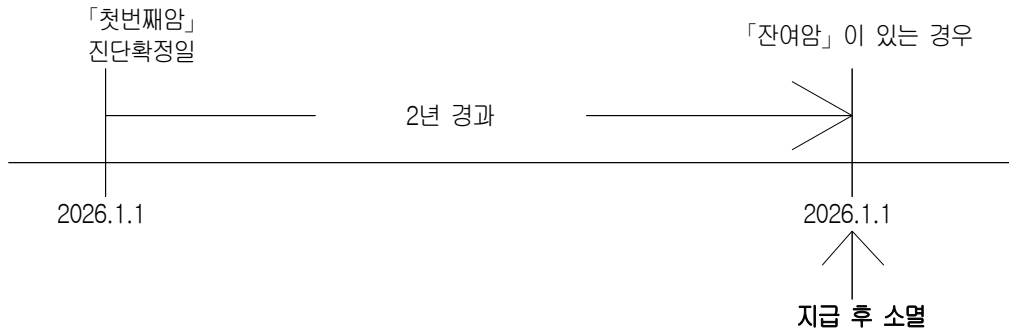


- ③ 피보험자가 「재발암 및 잔여암」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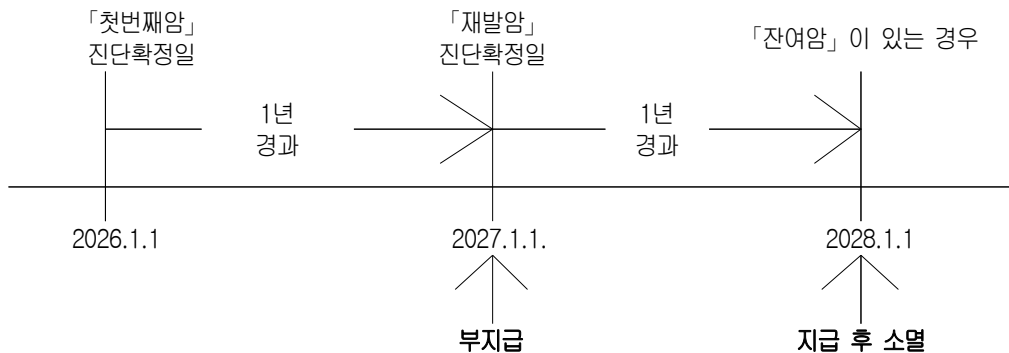
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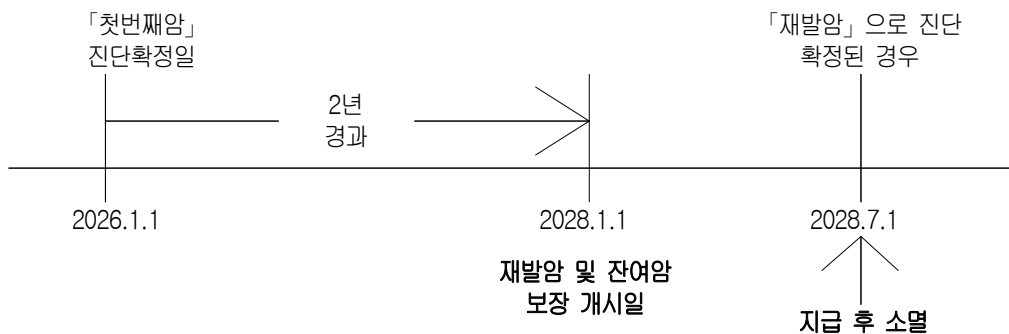
【 재발암 및 잔여암진단비 보장예시1 】



【 재발암 및 잔여암진단비 보장예시2 】



【 재발암 및 잔여암진단비 보장예시3 】



제3조(「암」 관련 용어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별표22-1】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별표22-1】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80.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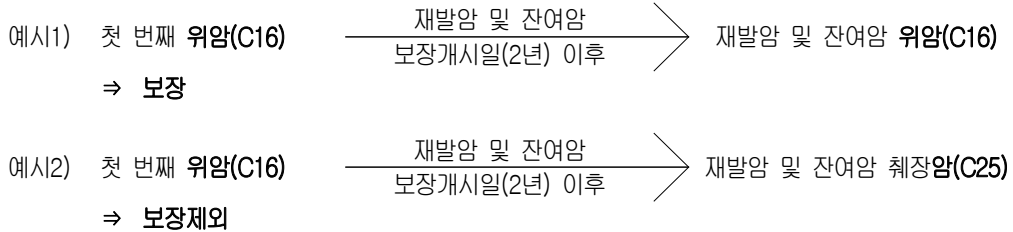
- ②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22-2】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22-3】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암(유사암제외)」라 함은 제1항의 「암」에서 제2항의 「유사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④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⑥ 이 특별약관에서 「재발암 및 잔여암」이란 재발암 및 잔여암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 확정된 다음 각 호의 「암」을 말합니다. 단, 재발암 및 잔여암이 「유사암」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재발암
 2. 잔여암
- ⑦ 제6항 제1호의 「재발암」이란 「첫번째암」과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으로서 치료를 통해 몸에서 「첫번째암」의 암세포를 제거한 후 그 「첫번째암」으로 인하여 새롭게 「암」이 출현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명된 「암」을 말합니다.
- ⑧ 제6항 제2호의 「잔여암」이란 「첫번째암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암진단부위에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⑨ 이 특별약관에서 「재발암 및 잔여암」은 「첫번째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정한 분류번호가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재발암 및 잔여암의 보장 예시]



- ⑩ 「재발암 및 잔여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발암 및 잔여암」의 진단 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⑪ 제10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재발암 및 잔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수술)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 치료시점에서 암세포의 잔존이 확인되지 않은 암에 대한 치료(보조적 또는 예방적암치료)는 제외합니다.

<「제10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스,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8.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꽃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회사는 「첫번째암」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내에 제3조 (「암」 관련 용어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6항의 「재발암 및 잔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첫번째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첫번째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된 특별약관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첫번째암」으로 진단확정 되지 않은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
 2.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이미 「첫번째암」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을 직전 암의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재발암 및 잔여암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기간 중 제3조(「암」 관련 용어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가 진단확정되지 않고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 기간이 그 날을 포함하여 2년 이하인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계약자적립액이 있는 경우 해당 보장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다. 또한 회사는 이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 ③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14.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_1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비 (연간1회한)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갱신 계약	갱신일로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4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의료기관에서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제2항에서 정한 「특정면역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면역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 중 아래의 2가지에 해당하는 항암치료제를 말합니다.
 - 가.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
 - 나. 항체약물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항암치료제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란 암세포 또는 T세포의 표면에 발현되어 암세포가 면역체계의 공격을 회피하는데 이용하는 면역세포의 표면 단백질인 PD-1, PD-L1, CTLA-4 등의 면역관문(immune checkpoint)을 차단함으로써, T세포가 암세포를 파괴하도록 하는 항암치료제를 말합니다.

【항체약물중합체 (Antibody-Drug Conjugate) 항암치료제】

항체약물중합체(Antibody-Drug Conjugate)항암치료제란 항암제에 특정 암세포의 항원 단백질을 공격하는 항체를 링커(Linker)로 접합하여 암세포만을 특이적으로 공격하는 항암치료제를 말합니다.

【특정면역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특정면역항암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2년 5월 기준 특정면역항암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특정면역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분류표」(【별표148】참조)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③ 제1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

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특정면역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특정면역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 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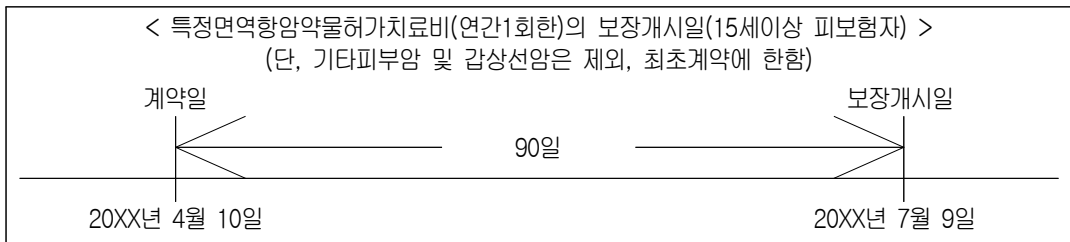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가.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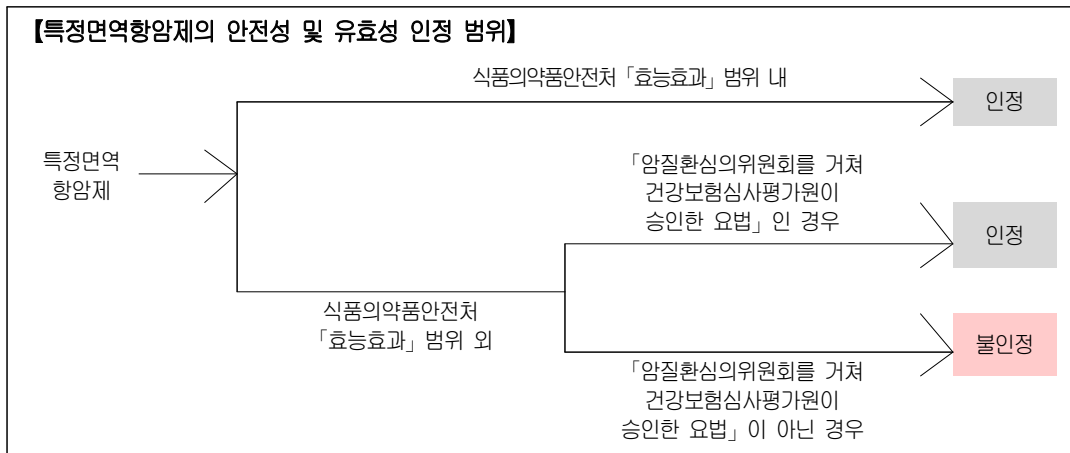
나.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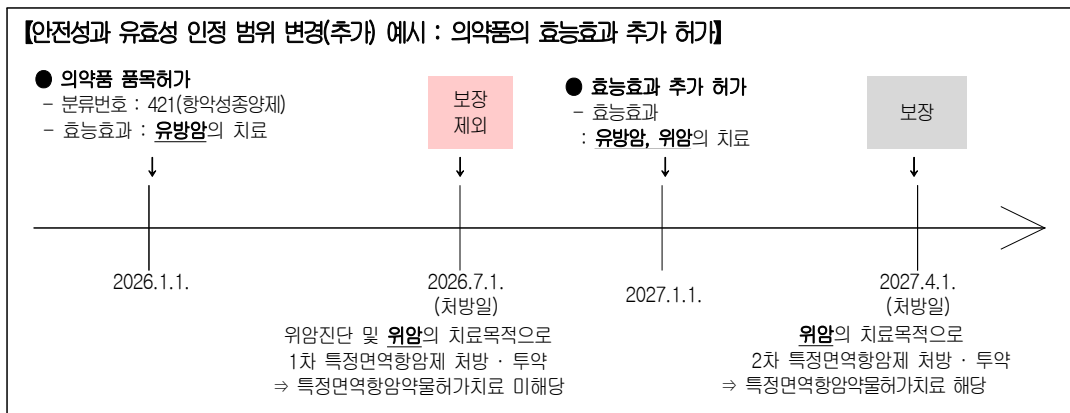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특정면역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특정면역항암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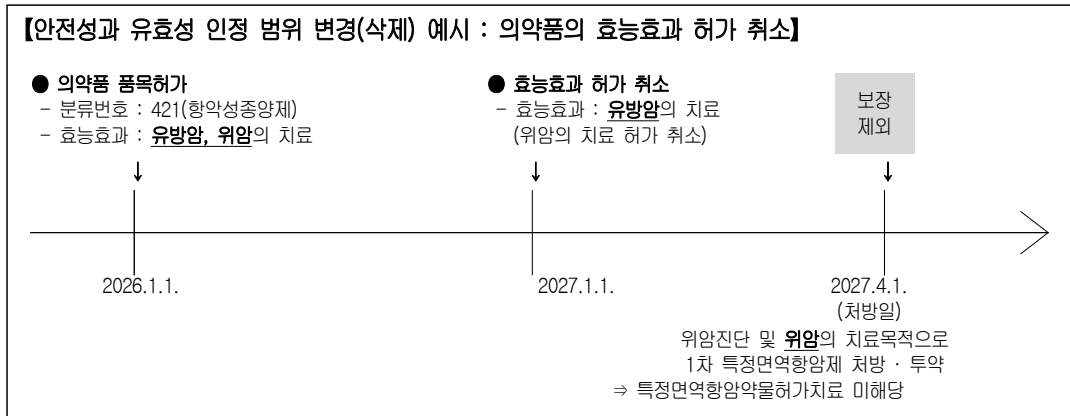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특정면역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3조(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 ④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은 제외합니다)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가.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 (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ㄱ. 진단명
 -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0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7. 갱신행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15. 통합 뇌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총 5개의 세부보장으로 나뉩니다.

보 장
1) 통합뇌(뇌전증)진단비(감액없음) 보장
2) 통합뇌(일과성뇌허혈발작)진단비(감액없음) 보장
3) 통합뇌(뇌졸중Ⅱ)진단비(감액없음) 보장
4) 통합뇌(뇌혈관질환(협착증))진단비(감액없음) 보장
5) 통합뇌(뇌혈관질환(뇌졸중제외))진단비(감액없음) 보장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통합 뇌질환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통합 뇌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통합 뇌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각 세부보장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통합 뇌질환진단비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제2조(「통합 뇌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통합 뇌질환」이라 함은 「뇌전증」, 「일과성뇌허혈발작」, 「뇌졸중Ⅱ」, 「뇌혈관질환(협착증)」, 「뇌혈관질환(뇌졸중제외)」을 총칭한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뇌전증」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전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49】(통합뇌질환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일과성뇌허혈발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일과성뇌허혈발작」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49】(통합뇌질환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뇌졸중Ⅱ」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졸중Ⅱ」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49】(통합뇌질환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⑤ 이 특별약관에서 「뇌혈관질환(협착증)」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혈관질환(협착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49】(통합뇌질환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⑥ 이 특별약관에서 「뇌혈관질환(뇌졸중제외)」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혈관질환(뇌졸중제외)」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49】(통합뇌질환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⑦ 「뇌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파검사,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뇌전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⑧ 「일과성뇌허혈발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영상검사(초음파, CT, MRI 등)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일과성뇌허혈발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⑨ 「뇌졸중Ⅱ」, 「뇌혈관질환(협착증)」, 「뇌혈관질환(뇌졸중제외)」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CSF) 등의 검사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뇌졸중Ⅱ」, 「뇌혈관질환(협착증)」, 「뇌혈관질환(뇌졸중제외)」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⑩ 제7항 내지 제9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뇌전증」, 「일과성뇌허혈발작」, 「뇌졸중Ⅱ」, 「뇌혈관질환(협착증)」, 「뇌혈관질환(뇌졸중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는 경우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전증」, 「일과성뇌허혈발작」, 「뇌졸중Ⅱ」, 「뇌혈관질환(협착증)」, 「뇌혈관질환(뇌졸중제외)」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각각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각각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통합 뇌질환진단비Ⅱ의 세부보장별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16. 통합 심장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총 5개의 세부보장으로 나뉩니다.

보 장
1) 통합심장(심근병증(허혈성제외))진단비(감액없음) 보장
2) 통합심장(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진단비(감액없음) 보장
3) 통합심장(심장질환(특정Ⅰ))진단비(감액없음) 보장
4) 통합심장(심장질환(특정Ⅱ))진단비(감액없음) 보장
5) 통합심장(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진단비(감액없음) 보장

-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통합 심장질환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통합 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통합 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각 세부보장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통합 심장질환진단비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제2조(「통합 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통합 심장질환」이라 함은 「심근병증(허혈성제외)」,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 「심장질환(특정 I)」, 「심장질환(특정 II)」,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을 총칭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심근병증(허혈성제외)」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심근병증(허혈성제외)」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50】(통합심장질환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50】(통합심장질환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심장질환(특정 I)」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심장질환(특정 I)」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50】(통합심장질환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⑤ 이 특별약관에서 「심장질환(특정 II)」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심장질환(특정 II)」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50】(통합심장질환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⑥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50】(통합심장질환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⑦ 「심근병증(허혈성제외)」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심도자검사, 심장 자기공명영상(MRI) 또는 심장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심근병증(허혈성제외)」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⑧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심전도, 심장초음파, 심도자검사, 심장 자기공명영상(MRI), 심장 전산화단층촬영(CT),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관상동맥조영술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⑨ 「심장질환(특정 I)」 및 「심장질환(특정 II)」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심도자검사, 심장 자기공명영상(MRI), 심장 전산화단층촬영(CT),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심장질환(특정 I)」 및 「심장질환(특정 II)」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⑩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⑪ 제7항 내지 제10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심근병증(허혈성제외)」,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 「심장질환(특정 I)」, 「심장질환(특정 II)」,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근병증(허혈성제외)」,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 「심장질환(특정 I)」, 「심장질환(특정 II)」,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각각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각각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통합 심장질환진단비II의 세부보장별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17.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217-1.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217-2.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30일한도)

제2조(「용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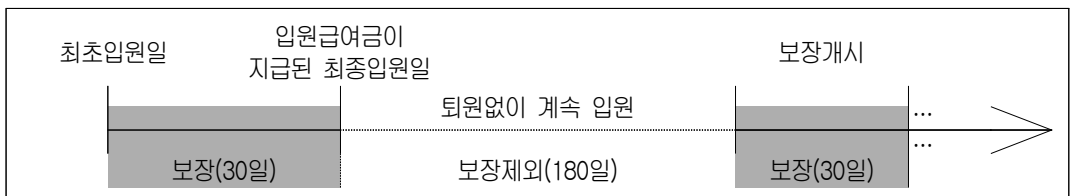
- ①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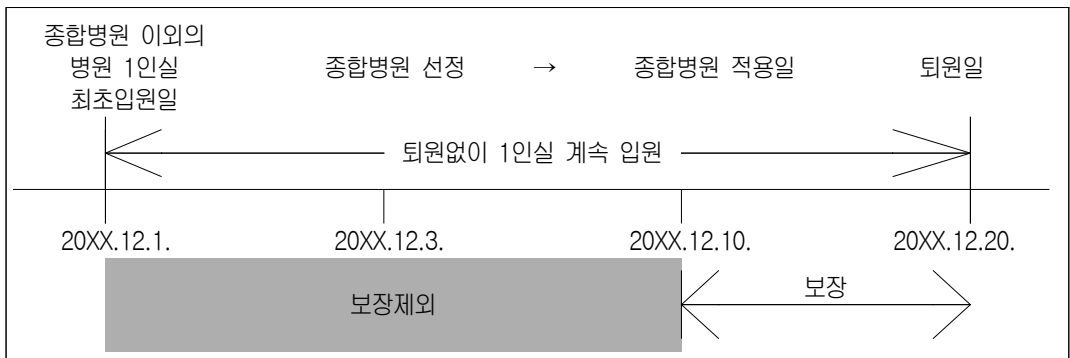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하며,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1인실」이라 함은 「특실」 병실도 포함하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 비급여대상)에 따른 병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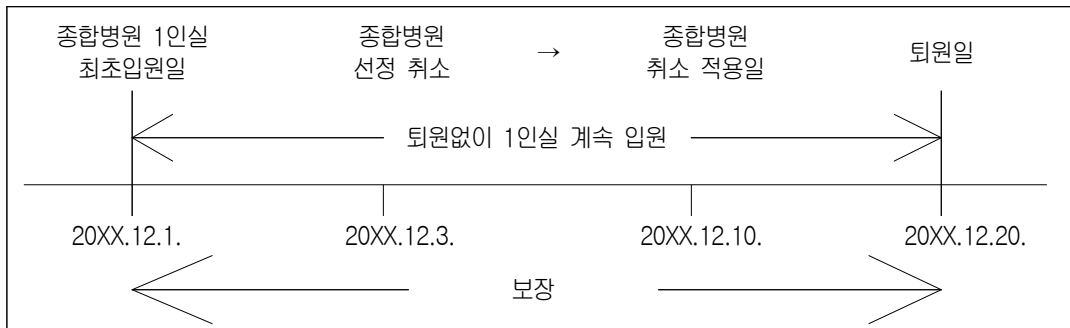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다음과 같이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1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종합병원 1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1인실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해당 「종합병원 1인실」 퇴원일까지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거나 최초로 1인실 이외의 병실로 변경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종합병원 1인실 (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18.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폐함) 질병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218-1.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폐함) 질병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218-2.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폐함) 질병입원비(1일-30일)(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폐함) 질병입원비(1일-3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폐함)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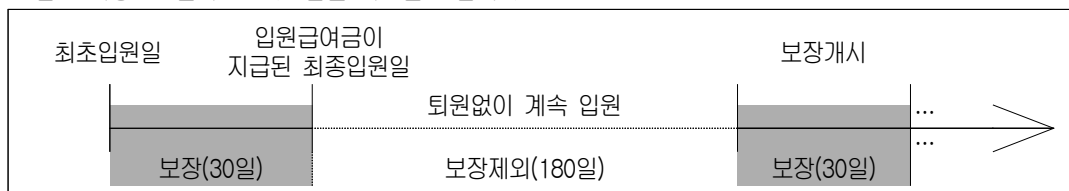
구 분	지 급 금 액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폐함) 질병입원비(1일-3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30일한도)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1인실」이라 함은 「특실」병실도 포함하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병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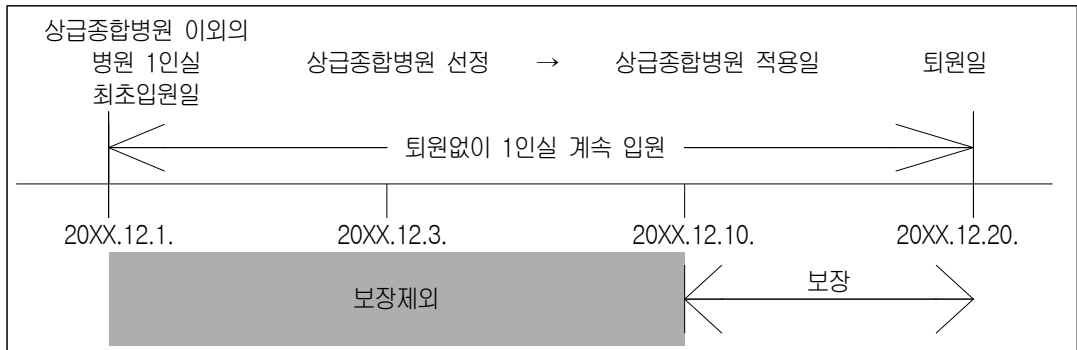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폐함) 질병입원비(1일-3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폐함) 질병입원비(1일-3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다음과 같이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폐함) 질병입원비(1일-3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폐함) 질병입원비(1일-3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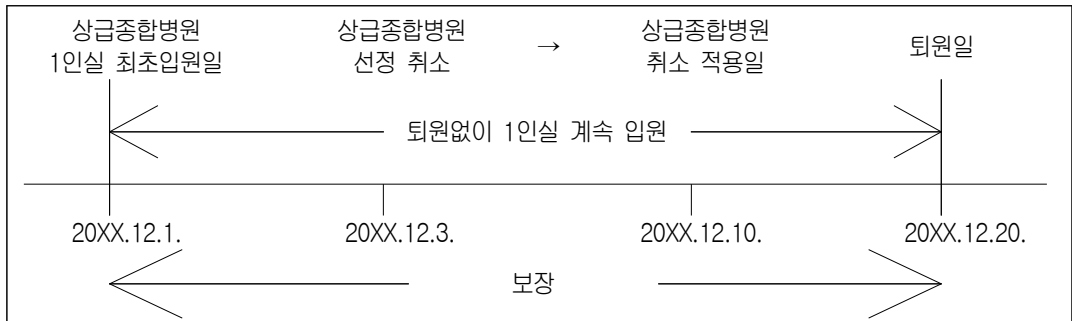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폐함) 질병입원비(1일-3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1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1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폐함) 질병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1인실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해당 「상급종합병원 1인실」 퇴원일까지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거나 최초로 1인실 이외의 병실로 변경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19.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219-1.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219-2.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19-3.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219-1, 219-2는 비갱신형으로,
219-3는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최대 10회 지급)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2항의 「암」에서 제3항의 「유사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22-2】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22-3】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암 주요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주요치료」라 함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② 「암 주요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단순 호르몬제 치료(다만, 호르몬성 항암치료는 「암 주요치료」에 포함합니다)

단순 호르몬제 치료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체내 부족한 호르몬의 보충 및 조절 등을 위해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피임 목적 호르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및 인슐린 주사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 주요치료」로 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③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제4조(「암수술」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5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암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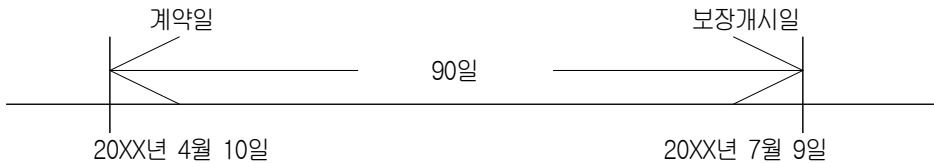
1.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가.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나.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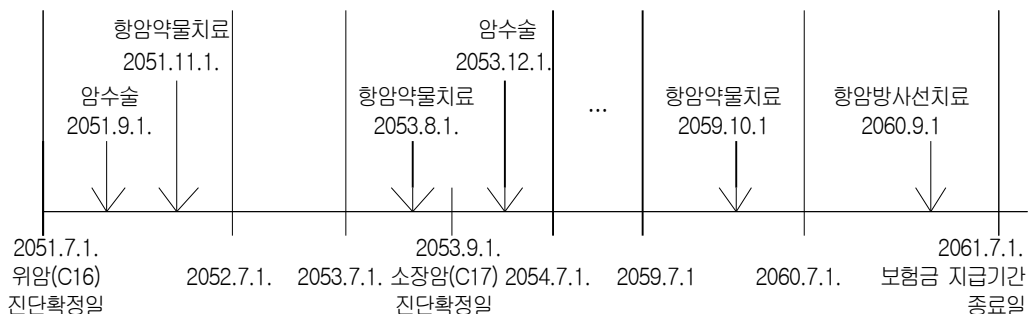
<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의 보장개시일(15세이상 피보험자)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에 한함)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암(유사암제외)」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마지막 날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암(유사암제외)」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를 보장합니다.
- ⑥ 회사는 피보험자가 암 주요치료(암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를 각각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만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 보험계약일 : 2026년 7월 1일, 30년만기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위의 악성신생물(C16) 최초진단 확정일 : 2051년 7월 1일
- 소장의 악성신생물(C17) 최초진단 확정일 : 2053년 9월 1일



- 암 최초진단 후 암 주요치료시, 지급예시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3차년도	...	진단 후 9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암수술(C16) 1,000만원	-	항암약물치료(C16) 1,000만원 지급	...	항암약물치료(C17) 1,000만원 지급	항암방사선치료(C17) 1,0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C16) 미지급 (연간회한도 초과)	-	암수술(C17) 미지급 (연간회한도 초과)	...	-	-

※ 위암(C16) 최초 진단확정일(2051년 7월 1일) 이후에 소장암(C17)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은 위암(C16) 최초 진단확정일(2051년 7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무효)

-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차회 이후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제41조(해약환급금)을 따릅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12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 219-3.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3조(특별약관의 소멸)

-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고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20. 암주요치료비(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220-1. 암주요치료비(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220-2. 암주요치료비(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20-3. 암주요치료비(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220-1, 220-2는 비갱신형으로,
220-3는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주요치료비(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암주요치료비(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암주요치료비(유사암) (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최대 10회 지급)

제2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22-2】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22-3】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3조(「암 주요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주요치료」라 함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 ② 「암 주요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단순 호르몬제 치료(다만, 호르몬성 항암치료는 「암 주요치료」에 포함합니다)

단순 호르몬제 치료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체내 부족한 호르몬의 보충 및 조절 등을 위해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피임 목적 호르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및 인슐린 주사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 주요치료」로 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③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제4조(「암수술」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5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네제 등) 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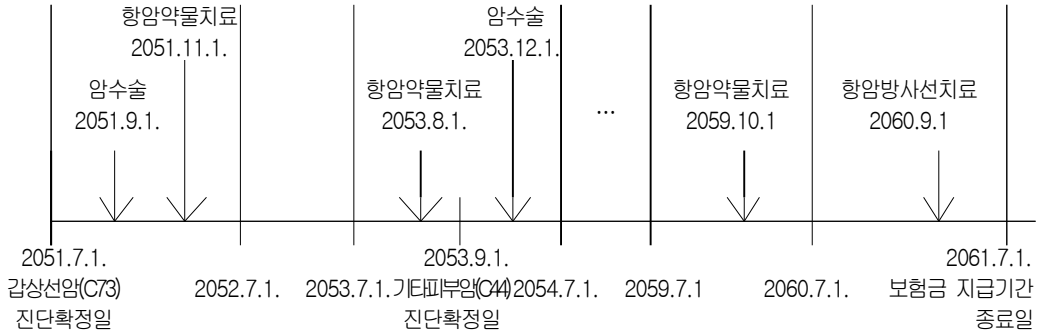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유사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마지막 날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유사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유사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주요치료비(유사암)(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를 보장합니다.

- ⑤ 회사는 피보험자가 암 주요치료(암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를 각각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암주요치료비(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만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 보험계약일 : 2026년 7월 1일, 30년만기
-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기준
- 갑상선암(C73) 최초진단 확정일 : 2051년 7월 1일
- 기타피부암(C44) 최초진단 확정일 : 2053년 9월 1일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최초진단 후 암주요치료시, 지급예시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3차년도	...	진단 후 9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암수술(C73) 200만원 지급	-	항암약물치료(C73) 200만원 지급	...	항암약물치료(C44) 200만원 지급	항암방사선치료(C44) 2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C73) 미지급 (연간1회한도 초과)	-	암수술(C44) 미지급 (연간1회한도 초과)	...	-	-

※ 갑상선암(C73) 최초 진단확정일(2051년 7월 1일) 이후에 기타피부암(C44)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은 갑상선암(C73) 최초 진단확정일(2051년 7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유사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차회 이후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 ①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제41조(해약환급금)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유사암」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10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 ① 220-3. 암주요치료비(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유사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고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21. 종합병원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221-1. 종합병원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221-2. 종합병원 질병수술비(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종합병원 질병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종합병원 질병수술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82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하며,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수술로 간주합니다.
 1.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
 2.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행한 레이저(Laser)수술.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의 정의

같은 질병이라 함은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으로서, 치료 부위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치료의 목적이 동일한 질병일 경우 같은 질병에 해당합니다.

- ②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아래의 질병수술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단, 보장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5. 비만(E66) 수술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K60~K62,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③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고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용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22.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222-1.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222-2.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수술로 간주합니다.
 1.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
 2.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행한 레이저(Laser)수술.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하나의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만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의 정의

같은 질병이라 함은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으로서, 치료 부위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치료의 목적이 동일한 질병일 경우 같은 질병에 해당합니다.

- ②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아래의 질병수술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5. 비만(E66) 수술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③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고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윤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환금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23. 전신마취암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223-1. 전신마취암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223-2. 전신마취암수술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총 4개의 세부보장으로 나뉩니다.

보 장
1) 전신마취암수술비(2시간이상) 보장
2) 전신마취암수술비(4시간이상) 보장
3) 전신마취암수술비(6시간이상) 보장
4) 전신마취암수술비(8시간이상) 보장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전신마취암수술비(2시간이상)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관련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신마취를 하고 마취시간 2시간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1회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전신마취암수술비(2시간이상)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2. 전신마취암수술비(4시간이상)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관련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신마취를 하고 마취시간 4시간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1회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전신마취암수술비(4시간이상)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3. 전신마취암수술비(6시간이상)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관련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신마취를 하고 마취시간 6시간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1회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전신마취암수술비(6시간이상)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4. 전신마취암수술비(8시간이상)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관련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신마취를 하고 마취시간 8시간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1회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전신마취암수술비(8시간이상)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이하 「암관련 질병」이라 함이다)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22-2】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22-3】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입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관련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8.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⑤ 제4항 7호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⑥ 제4항 7호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으며, 제1항의 「수술」에서도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전신마취」의 정의 및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전신마취」라 함은 의사의 관리 하에 약물 등을 사용하여 전신을 의식, 감각, 운동 및 반사행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 아래의 「전신마취 의료행위 분류표」(【별표154】참조)에서 정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전신마취」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마취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 단순 정맥마취, 신경차단술, 신경파괴술,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 등 신체의 특정 부위의 감각만을 차단하는 마취 방법은 제외하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병원 중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전신마취는 제외합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전신마취 의료행위’에 준하여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전신마취 의료행위’ 외에 ‘전신마취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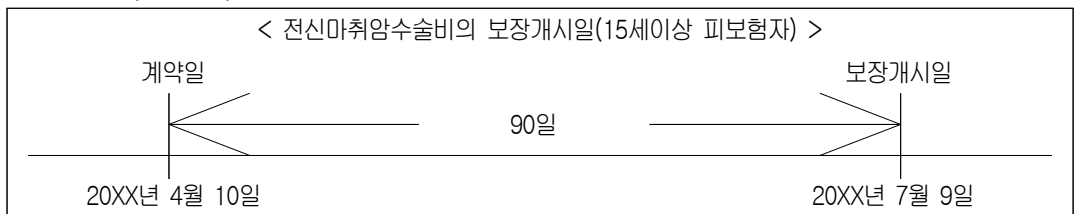
[마취관리기본 및 마취유지 수가코드에 의한 마취시간 계산 예시]

- ①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21(마취유지^{주1)}) 30회의 경우
 : 60분 × 1회 + 15분 × 30회 = 510분
 → 마취시간 2시간 이상,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및 8시간 이상에 해당
- ②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21(마취유지^{주1)}) 20회의 경우
 : 60분 × 1회 + 15분 × 20회 = 360분
 → 마취시간 2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및 6시간 이상에 해당
 → 마취시간 8시간 이상에 해당되지 않음
- ③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21(마취유지^{주1)}) 10회의 경우
 : 60분 × 1회 + 15분 × 10회 = 210분
 → 마취시간 2시간 이상에 해당
 → 마취시간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및 8시간 이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1) 마취유지 : 1시간을 초과하여 마취관리를 지속시킨 경우에 매 15분 증가할 때마다 산정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전신마취암수술비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가.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나.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관련질병」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전신마취 종류와 마취시간, 수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취기록지 및 수술기록지 등),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24.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8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5일한도)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단,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제외)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8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하며,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최초입원일	181일째 입원일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
미보장(180일)	보장(185일)	보장제외(180일)	미보장(180일)	보장(185일)	...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를 계속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를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 퇴원일까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를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정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를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를 지급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5.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6. 성병
7.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25.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4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 (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사용일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5일한도)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단,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을 말합니다.

제4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2.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④ 법 제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2. 「치료감호법」 제16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지급일수는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각각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 이상)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 이상)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최초입원일	181일째 입원일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미보장(180일)	보장(185일)	보장제외(180일)	미보장(180일) 보장(185일)
			...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요양, 정신, 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를 계속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요양, 정신, 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를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이외의 병원 퇴원일까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요양, 정신, 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를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이외의 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정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요양, 정신, 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를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요양, 정신, 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를 지급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5.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6. 성병
 7.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제4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여부 및 사용일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26.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비(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연간200만원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비(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연간200만원이상)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지 급 금 액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5%
500만원이상 700만원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5%
7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35%
1,000만원이상 1,500만원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1,5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75%
2,000만원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제1항에서 간병인 사용금액은 1일당 25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단, 제3조(「요양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를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을 적용합니다.

제3조(「요양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 라목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제4조(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간병인이 피보험자의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 ③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병인의 주요 업무(예시)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 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제5조(「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라 함은 해당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 또는 의원 에 최초입원한 날이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 일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 간병인 사용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간병인 이용에 사용된 금액 외에 간 병에 쓰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년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질병으로 최초입원한 날에 해당 하는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계산 예시 -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가입시]

예시1)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6년 5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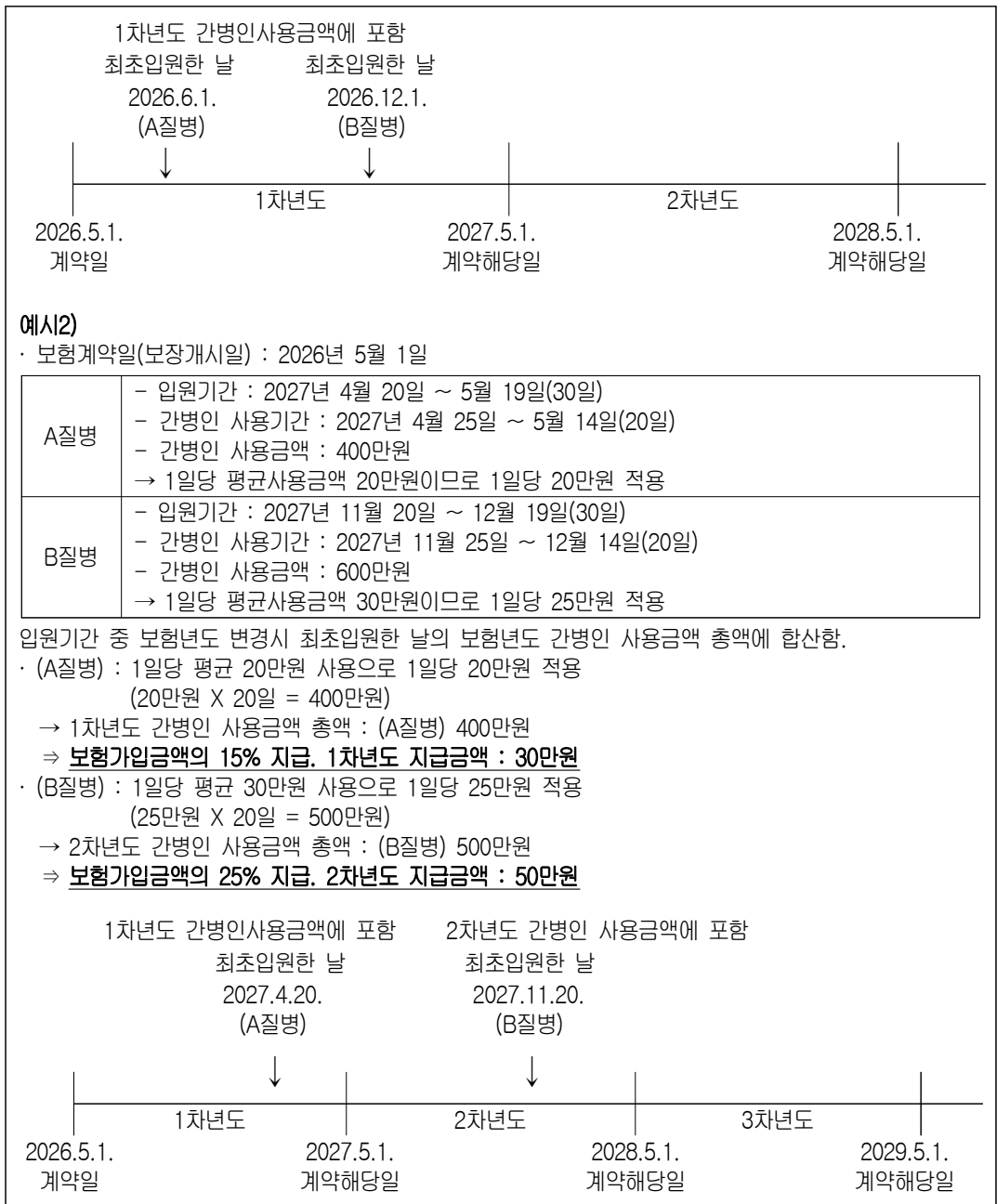
A질병	- 입원기간 : 2026년 6월 1일 ~ 6월 30일(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6년 6월 11일 ~ 6월 17일(7일) - 간병인 사용금액 : 70만원 → 1일당 평균사용금액 10만원이므로 1일당 10만원 적용
B질병	- 입원기간 : 2026년 12월 1일 ~ 12월 30일(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6년 12월 4일 ~ 12월 13일(10일) - 간병인 사용금액 : 300만원 → 1일당 평균사용금액 30만원이므로 1일당 25만원 적용

· (A질병) : 1일당 평균 10만원 사용으로 1일당 10만원 적용
(10만원 X 7일 = 70만원)

· (B질병) : 1일당 평균 30만원 사용으로 1일당 25만원 적용
(25만원 X 10일 = 250만원)

→ 1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A질병) 70만원 + (B질병) 250만원 = 320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15% 지급. 1차년도 지급금액 : 30만원



예시3)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6년 5월 1일

A질병	- 입원기간 : 2027년 4월 20일 ~ 5월 2일, 2027년 6월 3일 ~ 6월 17일 - 간병인 사용기간 및 간병인 사용금액 : 총 640만원(20일) · 2027년 4월 21일 ~ 4월 28일(8일), 사용금액 400만원 · 2027년 6월 5일 ~ 6월 16일(12일), 사용금액 240만원 → 1일당 평균사용금액이 32만원이므로 1일당 25만원 적용
B질병	- 입원기간 : 2028년 3월 20일 ~ 4월 5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8년 3월 22일 ~ 3월 31일(10일) - 간병인 사용금액 : 300만원 → 1일당 평균사용금액이 30만원이므로 1일당 25만원 적용

같은 질병으로 2회이상 입원시 최초입원한 날 보험년도의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에 합산함.

· (A질병) : 1일당 평균사용금액이 32만원이므로 1일당 25만원 적용

(25만원 X 20일 = 500만원)

→ 1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A질병) 5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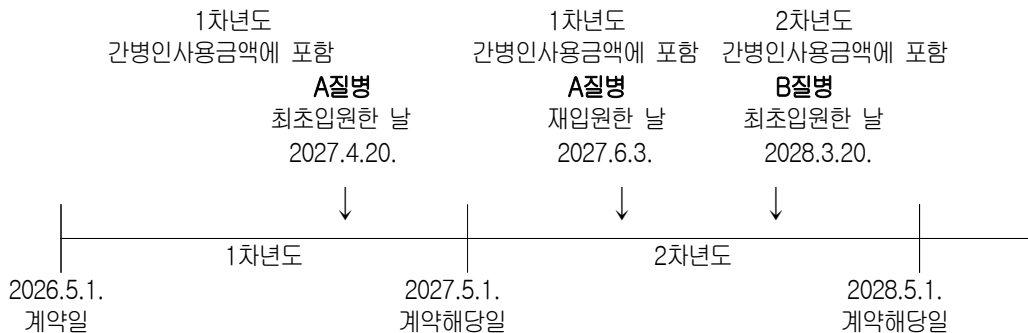
⇒ **보험가입금액의 25% 지급. 1차년도 지급금액 : 50만원**

· (B질병) : 1일당 평균 30만원 사용으로 1일당 25만원 적용

(25만원 X 10일 = 250만원)

→ 2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B질병) 250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2차년도 지급금액 : 20만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제5조(「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보험금 청구일의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보험금 청구일 이후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변경되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보다 증가한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추가로 지급합니다. 한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보다 감소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그 차액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을 적용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하여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③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비(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연간200만원이상)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의 직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27.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비(요양병원)(간병인비용연간200만원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비(요양병원)(간병인비용연간200만원이상)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지 급 금 액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5%
500만원이상 700만원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5%
7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35%
1,000만원이상 1,500만원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1,5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75%
2,000만원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제1항에서 간병인 사용금액은 1일당 25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요양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을 적용합니다.

제3조(「요양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 라목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제4조(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간병인이 피보험자의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2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 ③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병인의 주요 업무(예시)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족, 채워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 보조, 휴식돕기, 번기사용 보조 등

제5조(「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라 함은 해당 질병의 진료를 위하여 병원 또는 의원
에 최초입원한 날이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
일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 간병인 사용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간병인 이용에 사용된 금액 외에 간
병에 쓰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년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질병으로 최초입원한 날에 해당
하는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계산 예시 -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가입시]

예시1)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6년 5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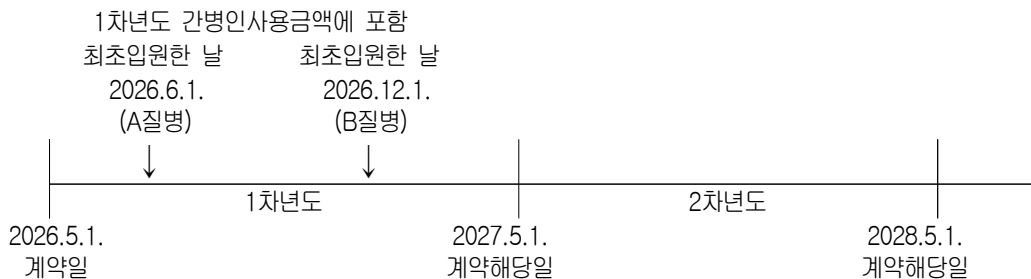
A질병	- 입원기간 : 2026년 6월 1일 ~ 6월 30일(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6년 6월 11일 ~ 6월 17일(7일) - 간병인 사용금액 : 70만원 → 1일당 평균사용금액 10만원이므로 1일당 10만원 적용
B질병	- 입원기간 : 2026년 12월 1일 ~ 12월 30일(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6년 12월 4일 ~ 12월 13일(10일) - 간병인 사용금액 : 300만원 → 1일당 평균사용금액 30만원이므로 1일당 25만원 적용

· (A질병) : 1일당 평균 10만원 사용으로 1일당 10만원 적용
(10만원 X 7일 = 70만원)

· (B질병) : 1일당 평균 30만원 사용으로 1일당 25만원 적용
(25만원 X 10일 = 250만원)

→ 1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A질병) 70만원 + (B질병) 250만원 = 320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15% 지급. 1차년도 지급금액 : 30만원**



예시2)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6년 5월 1일

A질병	- 입원기간 : 2027년 4월 20일 ~ 5월 19일(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7년 4월 25일 ~ 5월 14일(20일) - 간병인 사용금액 : 400만원 → 1일당 평균사용금액 20만원이므로 1일당 20만원 적용
B질병	- 입원기간 : 2027년 11월 20일 ~ 12월 19일(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7년 11월 25일 ~ 12월 14일(20일) - 간병인 사용금액 : 600만원 → 1일당 평균사용금액 30만원이므로 1일당 25만원 적용

입원기간 중 보험년도 변경시 최초입원한 날의 보험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에 합산함.

· (A질병) : 1일당 평균 20만원 사용으로 1일당 20만원 적용

(20만원 X 20일 = 400만원)

→ 1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A질병) 400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15% 지급. 1차년도 지급금액 : 30만원**

· (B질병) : 1일당 평균 30만원 사용으로 1일당 25만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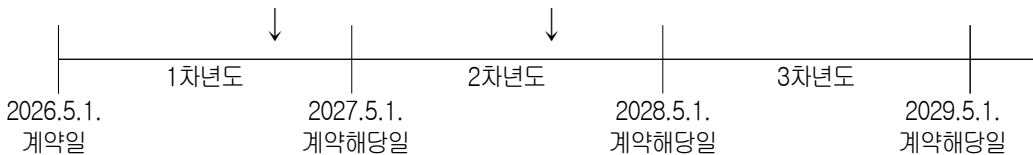
(25만원 X 20일 = 500만원)

→ 2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B질병) 500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25% 지급. 2차년도 지급금액 : 50만원**

1차년도 간병인사용금액에 포함
최초입원한 날
2027.4.20.
(A질병)

2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에 포함
최초입원한 날
2027.11.20.
(B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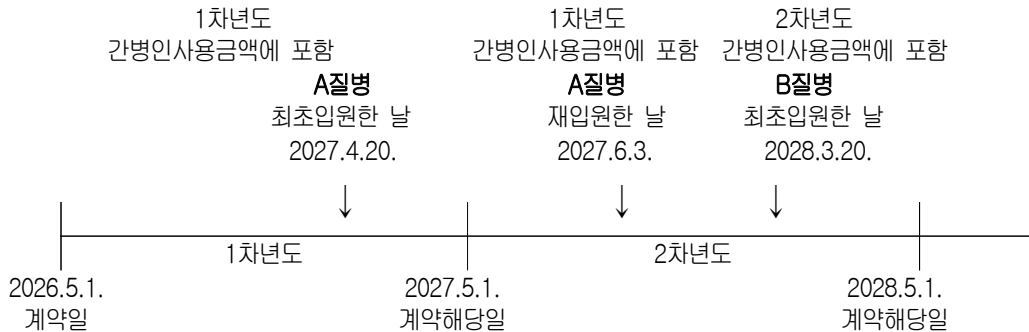
예시3)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6년 5월 1일

A질병	- 입원기간 : 2027년 4월 20일 ~ 5월 2일, 2027년 6월 3일 ~ 6월 17일 - 간병인 사용기간 및 간병인 사용금액 : 총 640만원(20일) · 2027년 4월 21일 ~ 4월 28일(8일), 사용금액 400만원 · 2027년 6월 5일 ~ 6월 16일(12일), 사용금액 240만원 → 1일당 평균사용금액이 32만원이므로 1일당 25만원 적용
B질병	- 입원기간 : 2028년 3월 20일 ~ 4월 5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8년 3월 22일 ~ 3월 31일(10일) - 간병인 사용금액 : 300만원 → 1일당 평균사용금액이 30만원이므로 1일당 25만원 적용

같은 질병으로 2회이상 입원시 최초입원한 날 보험년도의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에 합산함.

- (A질병) : 1일당 평균사용금액이 32만원이므로 1일당 25만원 적용
(25만원 X 20일 = 500만원)
→ 1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A질병) 500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25% 지급. 1차년도 지급금액 : 50만원**
- (B질병) : 1일당 평균 30만원 사용으로 1일당 25만원 적용
(25만원 X 10일 = 250만원)
→ 2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B질병) 250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2차년도 지급금액 : 20만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제5조(「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보험금 청구일의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보험금 청구일 이후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변경되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보다 증가한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추가로 지급합니다. 한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보다 감소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그 차액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을 적용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하여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③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비(요양병원)(간병인비용연간200만원 이상)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의 직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28.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228-1.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228-2. 종합병원 2~3인실일 질병입원비(1일~30일)(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종합병원 2~3인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30일한도)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종합병원 2~3인실」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하며,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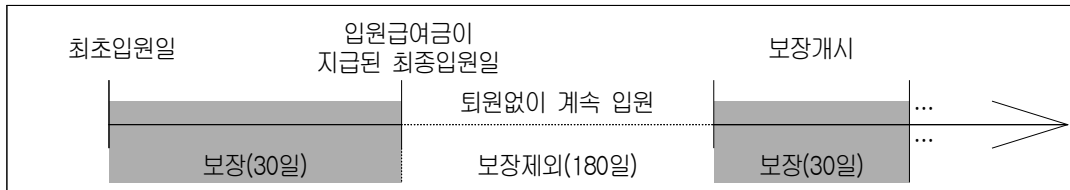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는 것
 2. 100 병상 이상 300 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 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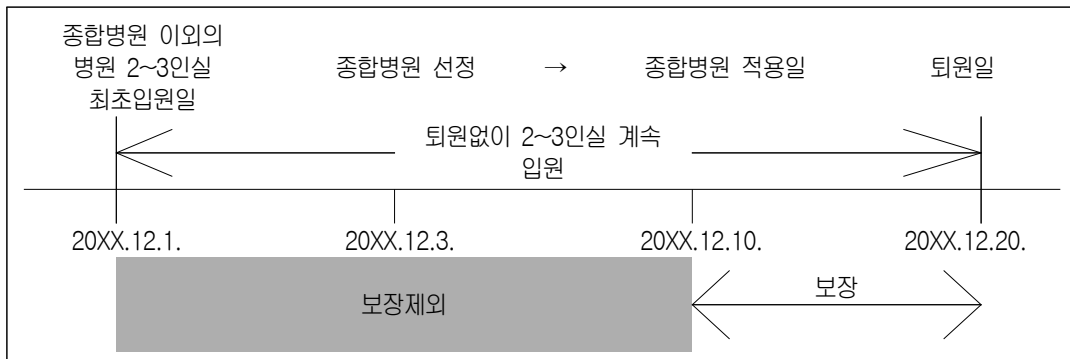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는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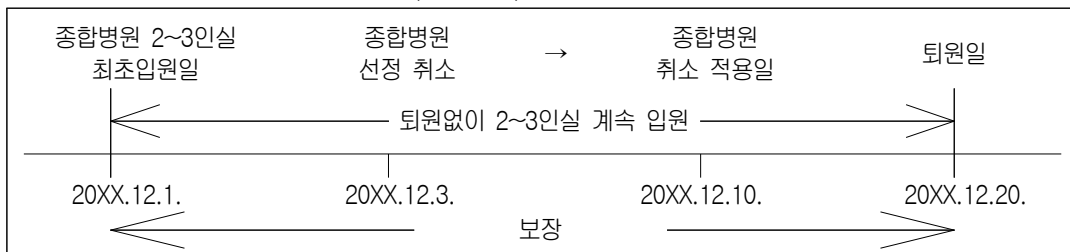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다음과 같이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종합병원 2~3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해당 「종합병원 2~3인실」 퇴원일까지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로부터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거나 최초로 2~3인실 이외의 병실로 변경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5.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6. 성병
 7.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29.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229-1.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229-2.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30일한도)

제2조(「용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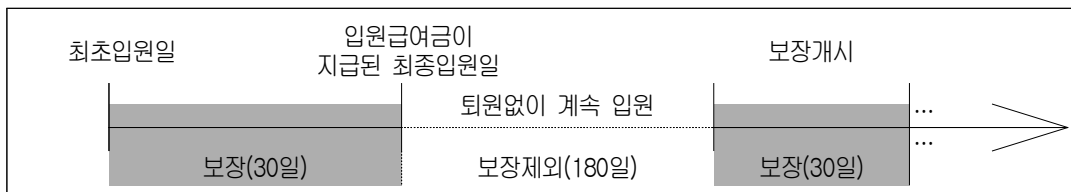
- ①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상급종합병원 2~3인실」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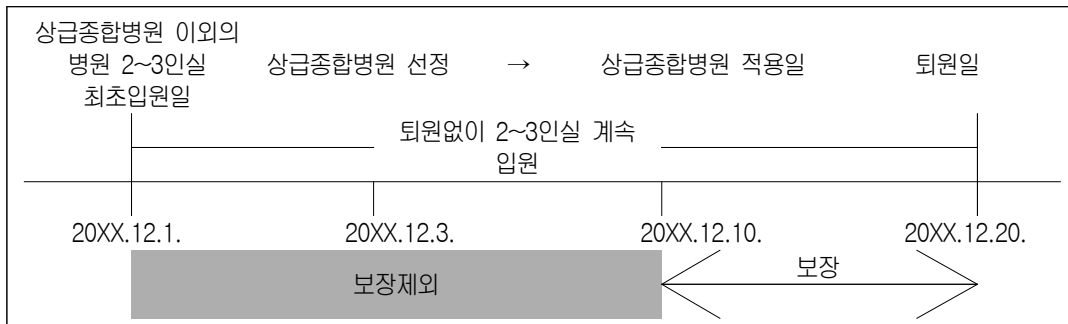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는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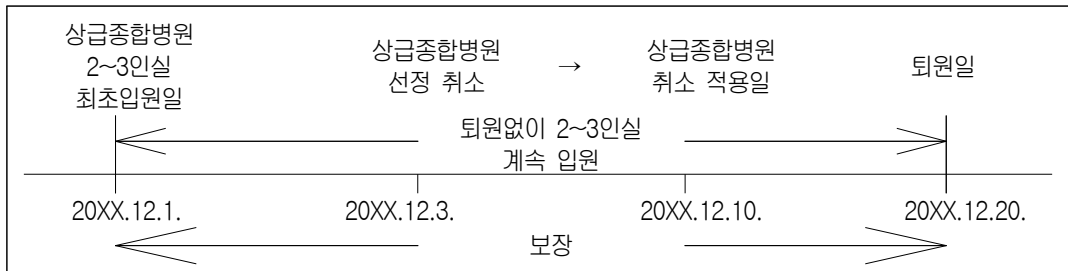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다음과 같이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2~3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해당 「상급종합병원 2~3인실」 퇴원일까지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거나 최초로 2~3인실 이외의 병실로 변경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를 지급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5.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6. 성병
 7.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30. 2대질병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230-1. 2대질병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230-2. 2대질병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30-3. 2대질병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230-1, 230-2는 비갱신형으로,
 230-3는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2대질병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제3조(「2대질병 주요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2대질병 주요치료」(2대질병 수술, 2대질병 혈전용해치료, 2대질병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2대질병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2대질병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 (감액없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최대 10회 지급)

제2조(「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2대질병」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별표17】참조)에서 「뇌혈관질환」에 해당하는 1. 거미막하 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8. 기타 뇌혈관 질환,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10.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④ 제1항의 「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허혈성심질환 분류표」(【별표19】참조)에 해당하는 1. 협심증, 2. 급성심근경색증, 3. 후속심근경색증, 4.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5. 기타 급성 허혈성심질환, 6. 만성 허혈성심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제1항의 「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용어설명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뇌혈관조영술]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희게 촬영되는 물질(조영제)을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양전자 방출 단층술(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뇌척수액 검사]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제3조(「2대질병 주요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2대질병 주요치료」라 함은 「2대질병수술」, 「2대질병 혈전용해치료」, 「2대질병 중환자실 치료」를 말합니다.

1. 「2대질병수술」이라 함은 「2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2. 「2대질병 혈전용해치료」이라 함은 「2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3. 「2대질병 중환자실 치료」이라 함은 「2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경우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는 「2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1.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고주파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카테터를 이용하여 혈관에 코일 등 색전물질을 주입하여 혈류를 막거나, 뇌동맥내 혈관확장제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포함되며, 이 외의 카테터를 이용하여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치료적 방사선 조사를 받은 경우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8. 혈관 조영술, 중심정맥관 삽입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5조(「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2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 또는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Heparin, Warfarin 등) 및 항혈소판제(Plavix, Aspirin, Pletal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제2항의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 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됩니다.

제6조(「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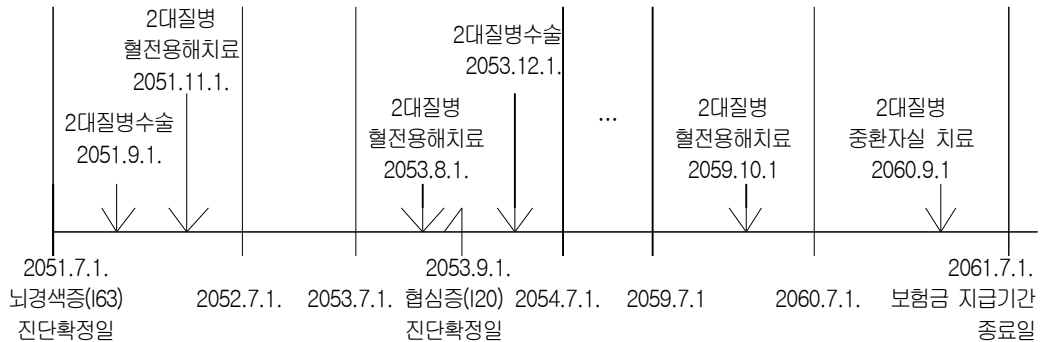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2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험기간 중에 「2대질병」으로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2대질병」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마지막 날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2대질병」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2대질병」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2대질병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를 보장합니다.
- ⑤ 회사는 피보험자가 2대질병 주요치료(2대질병수술, 2대질병 혈전용해치료, 2대질병 중환자실 치료)를 각각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2대질병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만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 보험계약일 : 2026년 7월 1일, 30년만기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뇌경색증(I63) 최초진단 확정일 : 2051년 7월 1일
- 협심증(I20) 최초진단 확정일 : 2051년 9월 1일



- 뇌혈관질환 최초진단 후 2대질병 주요치료시, 지급예시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3차년도	...	진단 후 9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2대질병수술(I63) 1,000만원	-	2대질병 혈전용해치료(I63) 1,000만원 지급	...	2대질병 혈전용해치료(I20) 1,000만원 지급	2대질병 중환자실 치료(I20) 1,000만원 지급
2대질병 혈전용해치료(I63) 미지급 (연간회한도 초과)	-	2대질병수술(I20) 미지급 (연간회한도 초과)	...	-	-

※ 뇌경색증(I63) 최초 진단확정일(2051년 7월 1일) 이후에 협심증(I20)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은 뇌경색증(I63) 최초 진단확정일(2051년 7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2대질병」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차회 이후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 ①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제41조(해약환급금)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2대질병」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11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 ① 230-3. 2대질병주요치료비(연간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2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2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2대질병」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고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31. 뇌혈관질환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뇌혈관질환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연간 30회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뇌혈관질환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	통원 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별표17】 참조)에서 뇌혈관질환에 해당하는 1. 거미막하 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8. 기타 뇌혈관 질환,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10.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용어설명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뇌혈관조영술]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회계 촬영되는 물질(조영제)를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γ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여하여 그 분포상태의 단면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촬영법

[양전자 방출 단층술(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뇌척수액 검사]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하며,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는 것
 2. 100 병상 이상 300 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 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는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혈관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혈관질환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는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간30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뇌혈관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혈관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이상에 의한 통원으로서 통원 후 최초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뇌혈관질환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를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되기 전일까지의 통원기간에 대하여 뇌혈관질환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를 지급합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32. 허혈성심질환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허혈성심질환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허혈성심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연간 30회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허혈성심질환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	통원 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허혈성심질환 분류표」(【별표19】참조)에 해당하는 허혈성심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 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하며,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는 것
 2. 100 병상 이상 300 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 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는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허혈성심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허혈성심질환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는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간30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허혈성심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허혈성심질환」의 치료 중에 발

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허혈성심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혈성심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통원으로서 통원 후 최초로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허혈성심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허혈성심질환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를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되기 전날까지의 통원기간에 대하여 허혈성심질환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를 지급합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33. 뇌혈관질환 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뇌혈관질환 통원비(연간30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연간 30회한으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뇌혈관질환 통원비(연간30회한)	통원 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별표17】참조)에서 뇌혈관질환에 해당하는 1. 거미막하 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8. 기타 뇌혈관 질환,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10.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용어설명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뇌혈관조영술]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희게 촬영되는 물질(조영제)을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γ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여하여 그 분포상태의 단면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촬영법

[양전자 방출 단층술(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뇌척수액 검사]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혈관질환 통원비(연간30회한)는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간30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뇌혈관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혈관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이상에 의한 통원으로서 통원 후 최초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34. 허혈성심질환 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허혈성심질환 통원비(연간30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허혈성심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연간 30회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허혈성심질환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	통원 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허혈성심질환 분류표」(【별표19】참조)에 해당하는 허혈성심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허혈성심질환」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허혈성심질환 통원비(연간30회한)는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간30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허혈성심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허혈성심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허혈성심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혈성심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통원으로서 통원 후 최초로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허혈성심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35. 질병수술비(특정6대질병 II 제외) 특별약관

235-1. 질병수술비(특정6대질병 II 제외) 특별약관

235-2. 질병수술비(특정6대질병 II 제외)(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수술비(특정6대질병 II 제외)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특정6대질병 II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질병수술비(특정6대질병 II 제외)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특정6대질병 II」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6대질병 II」이라 함은 「특정6대질병 II 분류표」(【별표155】참조)에 해당하는 1. 바이러스결막염, 2. 맥립종 및 콩다래끼, 3. 결막염, 4. 외이염, 5. 귀통증 및 귀의 삼출액, 6. 티눈 및 굳은살을 말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수술로 간주합니다.
 1.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
 2.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행한 레이저(Laser)수술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하나의 질병수술비(특정6대질병II 제외)만 지급하여 드립니다. 질병수술(특정6대 질병II 제외)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의 정의

같은 질병이라 함은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으로서, 치료 부위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치료의 목적이 동일한 질병일 경우 같은 질병에 해당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아래의 질병수술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단, 보장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5. 비만(E66) 수술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9. 바이러스결막염, 맥립종 및 콩다래끼, 결막염, 외이염, 귀통증 및 귀의 삼출액, 티눈 및 굳은살(【별표155】참조)
- ③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진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고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질병수술비(특정8대질병제외) 특별약관

236-1. 질병수술비(특정8대질병제외) 특별약관

236-2. 질병수술비(특정8대질병제외)(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수술비(특정8대질병제외)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특정8대질병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질병수술비(특정8대질병제외)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특정8대질병 및 허유착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8대질병」이라 함은 「특정8대질병 분류표」(【별표156】참조)에 해당하는 1. 바이러스결막염, 2. 맥립종 및 콩다래끼, 3. 결막염, 4. 외이염, 5. 귀통증 및 귀의 삼출액, 6. 티눈 및 굳은살, 7. 용종, 8. 백내장을 말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수술로 간주합니다.
 1.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
 2.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행한 레이저(Laser)수술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하나의 질병수술비(특정8대질병제외)만 지급하여 드립니다. 질병수술(특정8대질병제외)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의 정의

같은 질병이라 함은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으로서, 치료 부위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치료의 목적이 동일한 질병일 경우 같은 질병에 해당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아래의 질병수술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단, 보장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5. 비만(E66) 수술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9. 바이러스결막염, 맥립종 및 콩다래끼, 결막염, 외이염, 귀통증 및 귀의 삼출액, 티눈 및 굳은살, 용종, 백내장 (【별표156】 참조)
- ③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고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환금급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37.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특정6대질병 II 제외) 특별약관

237-1.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특정6대질병 II 제외) 특별약관

237-2.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특정6대질병 II 제외)(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특정6대질병 II 제외)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특정6대질병 II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특정6대질병 II 제외)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제3조(「특정6대질병 II」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6대질병 II」이라 함은 「특정6대질병 II 분류표」(【별표155】참조)에 해당하는 1. 바이러스결막염, 2. 맥립종 및 콩다래끼, 3. 결막염, 4. 외이염, 5. 귀통증 및 귀의 삼출액, 6. 티눈 및 굳은살을 말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수술로 간주합니다.
 1.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
 2.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행한 레이저(Laser)수술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7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하나의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특정6대질환Ⅱ 제외)만 지급하여 드립니다.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특정6대질환Ⅱ 제외)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의 정의

같은 질병이라 함은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으로서, 치료 부위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치료의 목적이 동일한 질병일 경우 같은 질병에 해당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아래의 질병수술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5. 비만(E66) 수술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9. 바이러스결막염, 맥립종 및 콩다래끼, 결막염, 외이염, 귀통증 및 귀의 삼출액, 티눈 및 굳은살(【별표155】참조)
- ③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고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38.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238-1.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238-2.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38-3.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238-1, 238-2는 비갱신형으로,
238-3는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5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에서 암 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상급종합병원 암주요치료비(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유사암제외) (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최대 10회 지급)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제3조(「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및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에서 정한 국립암센터의 부속병원을 말합니다.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한다.

[암관리법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 ① 국립암센터에 연구소,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제4조(「원자력의학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원자력의학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및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에서 정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속병원을 말한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한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①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2항의 「암」에서 제3항의 「유사암」을 제외한 암을 말한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22-2】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22-3】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암 주요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주요치료」라 함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 ② 「암 주요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단순 호르몬제 치료(다만, 호르몬성 항암치료는 「암 주요치료」에 포함합니다)

단순 호르몬제 치료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체내 부족한 호르몬의 보충 및 조절 등을 위해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피임 목적 호르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및 인슐린 주사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 주요치료」로 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③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제7조(「암수술」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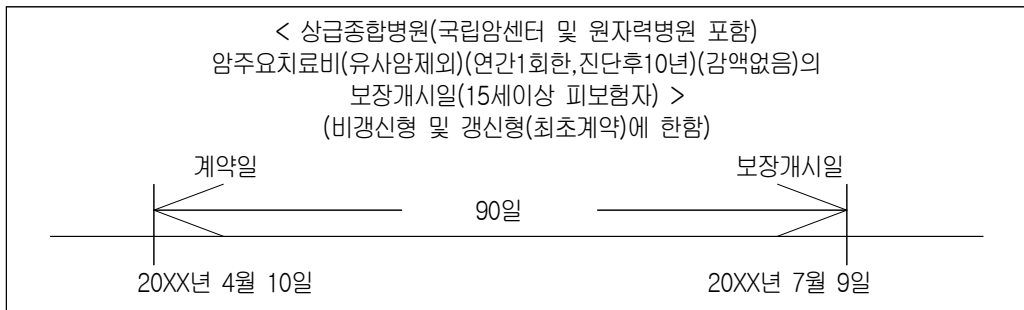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8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 가.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나.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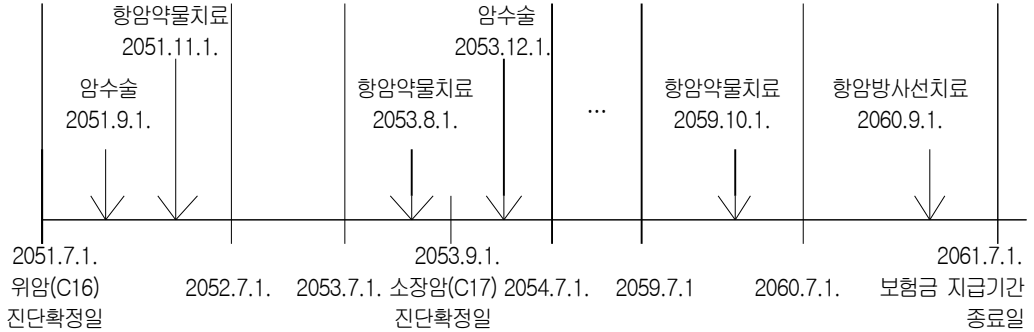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암(유사암제외)」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마지막 날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암(유사암제외)」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를 보장합니다.
- ⑥ 회사는 피보험자가 암 주요치료(암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를 각각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

(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만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원자력의학원 치료에 한함

- 보험계약일 : 2026년 7월 1일, 30년만기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위의 악성신생물(C16) 최초진단 확정일 : 2051년 7월 1일
- 소장의 악성신생물(C17) 최초진단 확정일 : 2053년 9월 1일



- 암 최초진단 후 암 주요치료시, 지급예시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3차년도	...	진단 후 9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암수술(C16) 1,000만원	-	항암약물치료(C16) 1,000만원 지급	...	항암약물치료(C17) 1,000만원 지급	항암방사선치료(C17) 1,0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C16) 미지급 (연간1회한도 초과)	-	암수술(C17) 미지급 (연간1회한도 초과)	...	-	-

※ 위암(C16) 최초 진단확정일(2051년 7월 1일) 이후에 소장암(C17)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은 위암(C16) 최초 진단확정일(2051년 7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제1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5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3조(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차회 이후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제14조(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 ①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제41조(해약환급금)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15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 ① 241-3.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고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39.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

(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239-1.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

(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239-2.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

(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39-3.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

(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239-1, 239-2는 비갱신형으로,
239-3는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에서 암 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 (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최대 10회 지급)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제3조(「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및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에서 정한 국립암센터의 부속병원을 말합니다.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한다.

[암관리법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 ① 국립암센터에 연구소,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제4조(「원자력의학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원자력의학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및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에서 정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속병원을 말합니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한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 ①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22-2】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22-3】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6조(「암 주요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주요치료」라 함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 ② 「암 주요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단순 호르몬제 치료(다만, 호르몬성 항암치료는 「암 주요치료」에 포함합니다)

단순 호르몬제 치료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체내 부족한 호르몬의 보충 및 조절 등을 위해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피임 목적 호르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및 인슐린 주사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 주요치료”로 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③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제7조(「암수술」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8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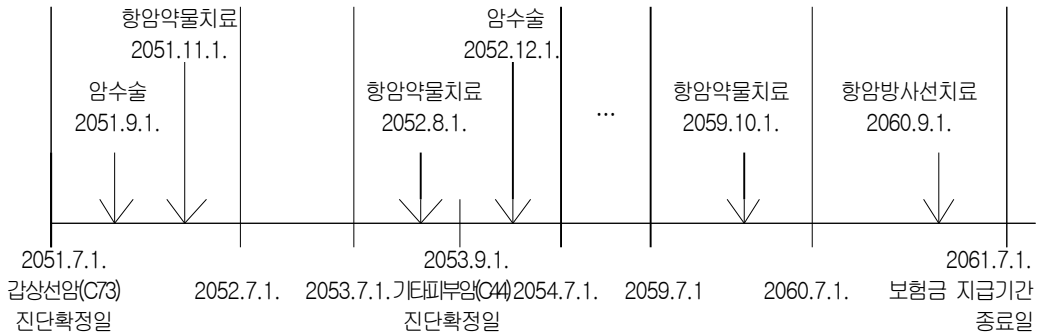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유사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마지막 날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유사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유사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를 보장합니다.
- ⑤ 회사는 피보험자가 암 주요치료(암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를 각각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만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원자력의학원 치료에 한함

- 보험계약일 : 2026년 7월 1일, 30년만기
-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기준
- 갑상선암(C73) 최초진단 확정일 : 2051년 7월 1일
- 기타피부암(C44) 최초진단 확정일 : 2053년 9월 1일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최초진단 후 암주요치료시, 지급예시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3차년도	...	진단 후 9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암수술(C73) 200만원 지급	-	항암약물치료(C73) 200만원 지급	...	항암약물치료(C44) 200만원 지급	항암방사선치료(C44) 2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C73) 미지급 (연간1회한도 초과)	-	암수술(C44) 미지급 (연간1회한도 초과)	...	-	-

※ 갑상선암(C73) 최초 진단확정일(2051년 7월 1일) 이후에 기타피부암(C44)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은 갑상선암(C73) 최초 진단확정일(2051년 7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제1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유사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차회 이후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제12조(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 ①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제41조(해약환급금)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유사암」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13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 ① 242-3.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4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유사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고 제9조(보험금 지급

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40.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240-1.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240-2.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40-3.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240-1, 240-2은 비갱신형으로 운영하며,
240-3는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제3조(「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 주요치료」의 정의)에서 정한「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 주요치료」(수술, 혈전용해치료, 중합병원 중환자실치료, 특정급여치료 1)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 (감액없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최대 10회 지급)

제2조(「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 분류표」(【별표157】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2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 및 「허혈성심질환」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 「뇌혈관질환」은 「뇌혈관질환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별표1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허혈성심질환」은 「허혈성심질환 분류표」(【별표1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특정질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순환계질환Ⅱ 분류표」(【별표161】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혈액검사(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 뇌척수액 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핵의학 검사, 혈관 도플러검사, 경동맥 초음파,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 주요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 주요치료」라 함은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2.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3.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ary원 중환ary실 치료」를 받은 경우
4.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급여치료 I」를 받은 경우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는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1.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고주파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카테터를 이용하여 혈관에 코일 등 색전물질을 주입하여 혈류를 막거나, 뇌동맥내 혈관확장제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포함되며, 이 외의 카테터를 이용하여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치료적 방사선 조사를 받은 경우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8. 혈관 조영술, 중심정맥관 삽입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료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5조(「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 또는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한다.
- ② 제1항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Heparin, Warfarin 등) 및 항혈소판제(Plavix, Aspirin, Pletal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제2항의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 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됩니다.

제6조(「중합병원 중환자실 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합병원 중환자실 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험기간 중에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으로 의료법 제3조의3(중합병원)에서 정한 중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제7조(「특정급여치료 I」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급여치료 I」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특정급여치료 I 대상 수가코드 분류표」(【별표159】참조)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특정급여치료 I」에 대해 치료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으로 급여치료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의 「특정급여치료 I」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특정급여치료 I」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급여수가코드

급여수가코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 등을 포함한 코드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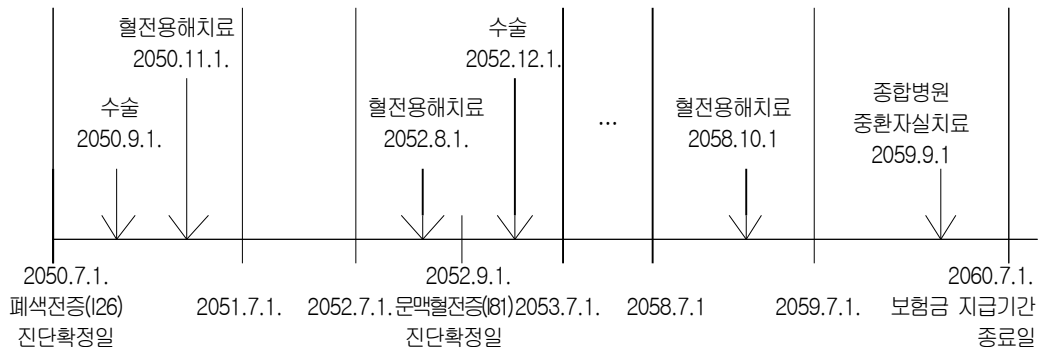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중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의 최초 진단 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마지막 날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을 보장합니다.
- ⑤ 회사는 피보험자가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 주요치료」(수술,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특정급여치료 1)를 각각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만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 보험계약일 : 2026년 7월 1일, 30년만기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폐색전증(I26) 최초진단 확정일 : 2050년 7월 1일
- 문맥혈전증(I81) 최초진단 확정일 : 2052년 9월 1일



- 심근병증 최초진단 후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 주요치료시, 지급예시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3차년도	...	진단 후 9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수술(I26) 1,000만원	-	혈전용해치료(I26) 1,000만원 지급	...	혈전용해치료(I81) 1,000만원 지급	중환자실치료(I81) 1,000만원 지급
혈전용해치료(I26) 미지급 (연간1회한도 초과)	-	수술(I81) 미지급 (연간1회한도 초과)	...	-	-

※ 폐색전증(I26) 최초 진단확정일(2050년 7월 1일) 이후에 문맥혈전증(I81)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은 폐색전증(I26) 최초 진단확정일(2050년 7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제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차회 이후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 ①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제41조(해약환급금)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12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 ① 240-3.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7.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3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고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41. 순환계질환진단비(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감액없음) 특별약관

241-1. 순환계질환진단비(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감액없음) 특별약관

241-2. 순환계질환진단비(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순환계질환진단비(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순환계질환진단비(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 분류표」 (【별표157】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2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 및 「허혈성심질환」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 「뇌혈관질환」은 「뇌혈관질환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 (【별표1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허혈성심질환」은 「허혈성심질환 분류표」 (【별표1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질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순환계질환Ⅱ 분류표」 (【별표161】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증상과 함께 혈액검사(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 뇌척수액 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핵의학 검사, 혈관 도플러검사, 경동맥 초음파,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 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244-2. 순환계질환진단비(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갱신형_2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6장 제도성 특별약관 1.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순환계질환진단비(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42.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III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총 5개의 세부보장으로 나뉩니다.

보 장
1)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1종)(1일~2일) 보장
2)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2종)(1일~4일) 보장
3)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3종)(1일~6일) 보장
4)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4종)(1일~8일) 보장
5)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5종)(1일~10일) 보장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하 “수술동반입원”이라 합니다)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 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나.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수술을 받는 경우
 - 다. 상기 가목 및 나목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1종)(1일~2일)	입원 1일당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2일한도)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2종)(1일~4일)	입원 1일당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4일한도)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3종)(1일~6일)	입원 1일당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6일한도)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4종)(1일~8일)	입원 1일당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8일한도)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5종)(1일~10일)	입원 1일당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10일한도)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1~5종수술 분류표Ⅳ」(【별표100】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말합니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제3항의 수술로 간주합니다.
 1.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
 2.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행한 레이저(Laser)수술.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⑤ 제4항 제2호의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합니다.
- ⑥ 제3항 내지 제4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⑦ 제3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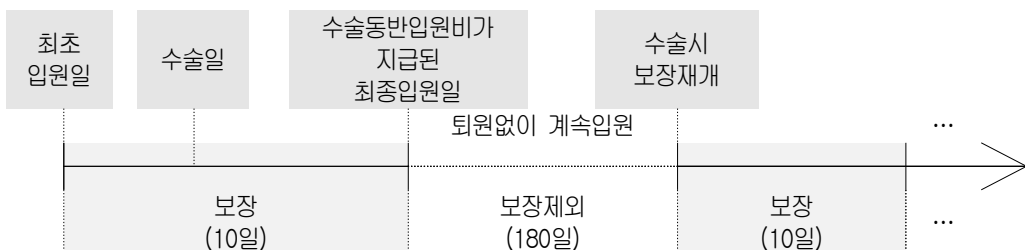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III의 지급일수는 1회 “수술동반입원”당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세부보장별 입원일수 한도를 따릅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제1호 나목의 수술은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입원일수 한도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III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동반입원비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동반입원비에서 이미 지급한 수술동반입원비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함은 같은 수술실에서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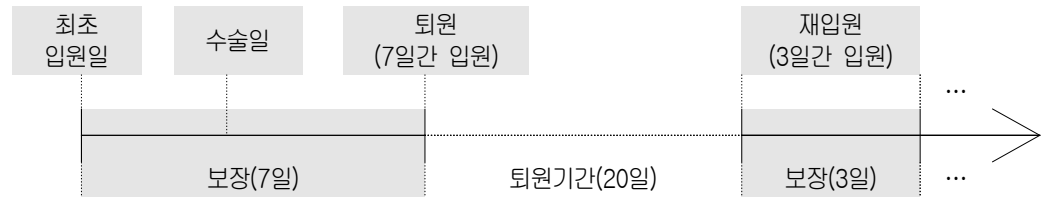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제1호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III는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III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보며, 새로운 입원일 이후 같은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수술동반입원”으로 보아 새로운 입원일 1일째 날부터 입원 1일당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III를 지급합니다.
- ④ 다음과 같이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III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III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보상예시> 질병 5종에 해당하는 수술동반입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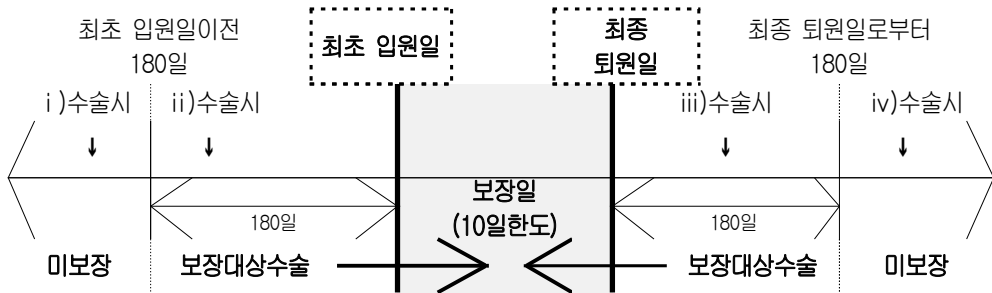
-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III는 “수술” 이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보상예시> 동일한 질병(5종)으로 7일간 수술동반입원, 퇴원 후 3일간 재입원시



- ⑥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수술동반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수술동반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따라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율을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의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할 때에는 회사는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⑧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최초 입원일 이전 180일부터 최초 입원일 이내” 또는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기 이전” 수술이며,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율을 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특히, 같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먼저 한 수술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보장합니다.

<질병5종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 보상 기준>



- i) 최초 입원일 이전 180일 전 수술시 미보장
- ii) 최초 입원일 이전 180일부터 최초 입원일 이내 수술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 1~5종수술동반입원비율을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라 보장
- iii)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일 이전 수술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율을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라 보장
- iv) 최종입원 퇴원일의 180일 경과일 이후 수술시 미보장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조(용어의 정의)의 제3항 내지 제7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6. 성병
 7.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8.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9.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10.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1.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② 회사는 아래의 질병에 의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단,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5. 비만(E66) 수술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③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고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43.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선천이상포함) 특별약관

243-1.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선천이상포함) 특별약관

243-2.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선천이상포함)(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총 5개의 세부보장으로 나뉩니다.

보 장
1)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1종)(1일~2일)(선천이상포함) 보장
2)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2종)(1일~4일)(선천이상포함) 보장
3)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3종)(1일~6일)(선천이상포함) 보장
4)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4종)(1일~8일)(선천이상포함) 보장
5)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5종)(1일~10일)(선천이상포함) 보장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하 “수술동반입원”이라 합니다)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 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나.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수술을 받는 경우
 - 다. 상기 가목 및 나목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1종)(1일~2일)(선천이상포함)	입원 1일당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2일한도)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2종)(1일~4일)(선천이상포함)	입원 1일당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4일한도)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3종)(1일~6일)(선천이상포함)	입원 1일당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6일한도)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4종)(1일~8일)(선천이상포함)	입원 1일당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8일한도)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5종)(1일~10일)(선천이상포함)	입원 1일당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10일한도)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1~5종수술 분류표Ⅳ」(【별표100】 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말합니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제3항의 수술로 간주합니다.
 1.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
 2.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행한 레이저(Laser)수술.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⑤ 제4항 제2호의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합니다.
- ⑥ 제3항 내지 제4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⑦ 제3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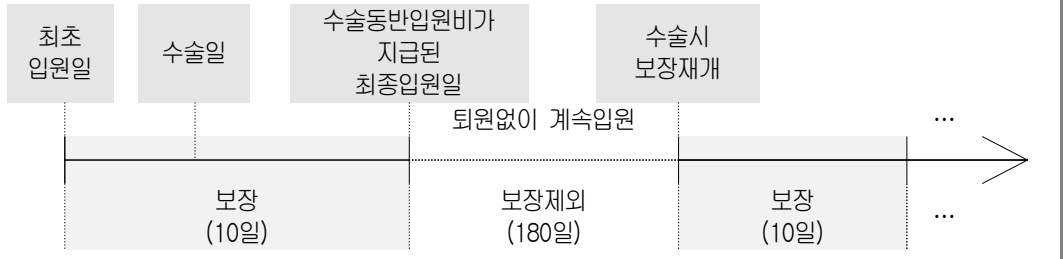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III의 지급일수는 1회 “수술동반입원”당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세부보장별 입원일수 한도를 따릅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제1호 나목의 수술은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입원일수 한도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5종수술 동반입원비III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동반입원비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동반입원비에서 이미 지급한 수술동반입원비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함은 같은 수술실에서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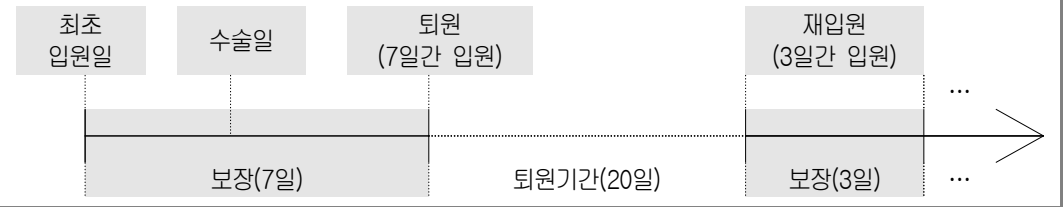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제1호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III는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III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보며, 새로운 입원일 이후 같은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수술동반입원”으로 보아 새로운 입원일 1일째 날부터 입원 1일당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III를 지급합니다.
- ④ 다음과 같이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III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III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보상예시> 질병 5종에 해당하는 수술동반입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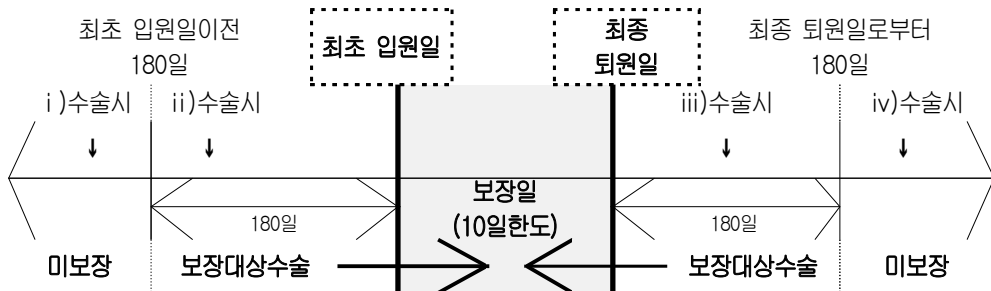
-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III는 “수술” 이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보상예시> 동일한 질병(5종)으로 7일간 수술동반입원, 퇴원 후 3일간 재입원시



- ⑥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수술동반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수술동반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따라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III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의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할 때에는 회사는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III(선천이상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⑧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최초 입원일 이전 180일부터 최초 입원일 이내” 또는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기 이전” 수술이며,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III를 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특히, 같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먼저 한 수술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보장합니다.

<질병5종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 보상 기준>



- i) 최초 입원일 이전 180일 전 수술시 미보장
- ii) 최초 입원일 이전 180일부터 최초 입원일 이내 수술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 1~5종수술동반입원비III를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라 보장
- iii)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일 이전 수술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III를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라 보장
- iv) 최종입원 퇴원일의 180일 경과일 이후 수술시 미보장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조(용어의 정의)의 제3항 내지 제7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6. 성병
7.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8.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9.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10.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1. 정상분만, 치과질환

② 회사는 아래의 질병에 의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단,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4. 비만(E66) 수술
5. 요실금(N39.3, N39.4, R32)
6.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7.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③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 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고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윤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44. 보험료납입지원보장(유사암진단)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료납입지원금(유사암진단)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진단 확정 1회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지원기간」 동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1회 지급액	지 급 방 법
보험료납입지원금(유사암진단)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주)} × 「당해연도 납입지원 개월수」	보험료 납입지원기간동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지급금액 확정지급

주) 보험료납입지원금(유사암진단)은 사고 당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료 납입지원기간」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당해연도 납입지원 개월수」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최초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월단위 기간(월단위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을 말합니다. 단, 보험기간 종료일이 포함되어 있는 당해연도의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 전일까지의 월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 보험금 지급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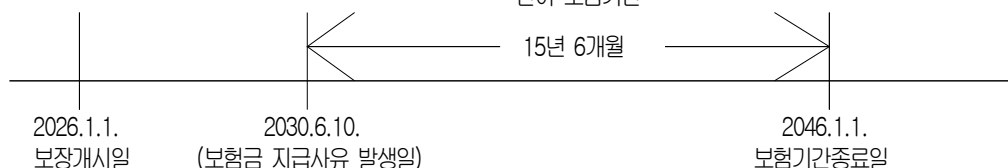
2026년 1월 1일 계약체결 후, 2030년 6월 10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20년만기 전기납, 사고당시 가입금액 10만원 기준)

① 보험료 납입지원기간 = 186개월 (15년 6개월)

② 보험료 납입지원금 총액 : 1860만원(10만원 * 186개월)

잔여 보험기간



③ 지급예시

지급시기	당해연도 납입지원 개월수	지급금액
2030년 6월 10일	12개월(매년 동일)	120만원(12 * 10만원)
2031년 6월 10일	12개월(매년 동일)	120만원(12 * 10만원)
~	~	~
2044년 6월 10일	12개월(매년 동일)	120만원(12 * 10만원)
2045년 6월 10일	6개월	60만원(6 * 10만원)

제2조 (「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1.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22-2】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22-3】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 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료납입지원금(유사암진단)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료납입지원금(유사암진단)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보통약관 제31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45.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 특별약관

245-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

(1일-180일) 특별약관

245-2.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

(1일-18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245-1은 비갱신형으로,
245-2는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3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기 준	지 급 금 액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 (1일당8시간이상) (1일-180일)	간병인 사용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일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간병인의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24시간을 1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정으로 간병인을 8시간이상 24시간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1일로 간주하나, 8시간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기관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3조(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간병인이 피보험자의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간병인의 주요 업무(예시)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 보조, 휴식돕기, 번기사용 보조 등

- ③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된 자에 한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의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24시간을 1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정으로 간병인을 8시간이상 24시간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1일로 간주하나, 8시간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보장예시1]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X년 4월 1일, 보험가입금액 : 5만원
- 입원기간 및 간병인 사용일 예시
 - 입원기간 : 202X년 4월 1일 ~ 202X년 4월 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X년 4월 10일 오후 8시 ~ 4월 13일 오전 11시

1일기준	202X년 4월		
	10일 오후 8시 ~ 11일 오후 8시 이전	11일 오후 8시 ~ 12일 오후 8시 이전	12일 오후 8시 ~ 13일 오후 8시 이전
간병인 사용시간	24시간	24시간	15시간
1일 8시간이상 사용여부	O	O	O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 지급금액
: 5만원 × 3일 : 15만원 지급

[보장예시2]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X년 4월 1일, 보험가입금액 : 5만원
- 입원기간 및 간병인 사용일 예시
 - 입원기간 : 202X년 4월 1일 ~ 202X년 4월 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X년 4월 10일 오전 9시 ~ 4월 12일 오후 3시

1일기준	202X년 11월		
	10일 오전 9시 ~ 11일 오전 9시 이전	11일 오전 9시 ~ 12일 오전 9시 이전	12일 오전 9시 ~ 13일 오전 9시 이전
간병인 사용시간	24시간	24시간	6시간
1일 8시간이상 사용여부	O	O	X

- 4월 12일 오전 9시 ~ 13일 오전 이전 기준의 경우 간병인 사용시간이 6시간으로 8시간 이상 미충족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 지급금액
: 5만원 × 2일 : 10만원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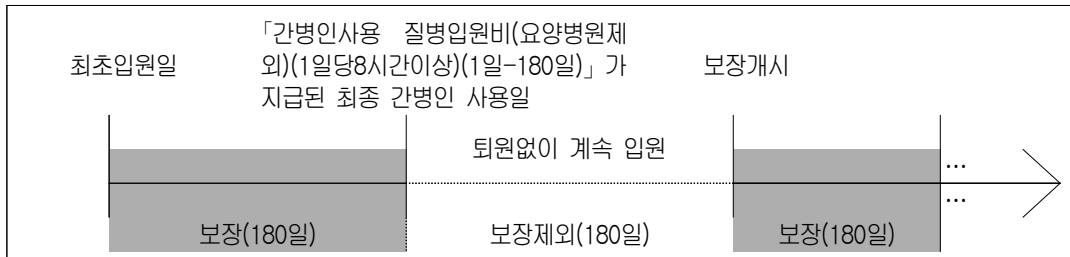
[보장예시3]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X년 4월 1일, 보험가입금액 : 5만원
- 입원기간 및 간병인 사용일 예시
 - 입원기간 : 202X년 5월 1일 ~ 202X년 11월 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X년 10월 26일 오후 9시 ~ 10월 29일 오전 8시

1일기준	202X년 10월		
	26일 오후 9시 ~ 27일 오후 9시 이전	27일 오후 9시 ~ 28일 오후 9시 이전 (180일째 입원일)	28일 오후 9시 ~ 29일 오후 9시 이전 (181일째 입원일)
간병인 사용시간	24시간	24시간	11시간
1일 8시간이상 사용여부	O	O	X

- 10월 28일부터 180일한도 초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 지급금액 : 5만원 × 2일 : 10만원 지급**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지급일수는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각각 더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④ 다음과 같이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의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계속하여 보장합니다. 단,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③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제3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245-2.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 특별약관

246-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 특별약관

246-2.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246-1은 비갱신형으로 운영하며,
246-2는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3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0일한도)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기관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3조(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간병인이 피보험자의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2조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간병인의 주요 업무(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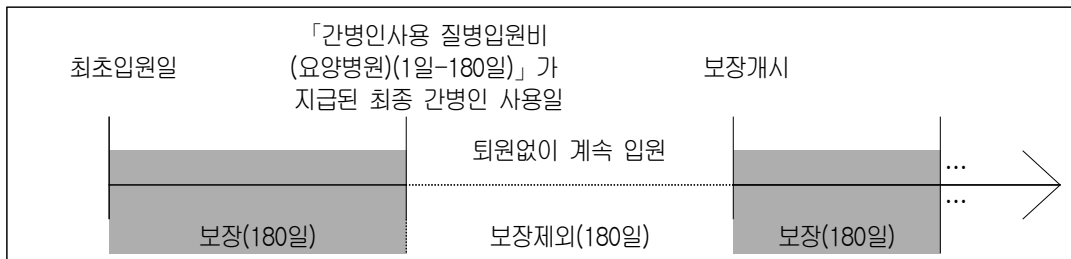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 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 ③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된 자에 한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지급일수는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각각 더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다음과 같이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의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계속하여 보장합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③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등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제3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의 직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246-2.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47.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247-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247-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18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247-1은 비갱신형으로 운영하며,
247-2는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3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18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18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0일한도)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180일)」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기관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3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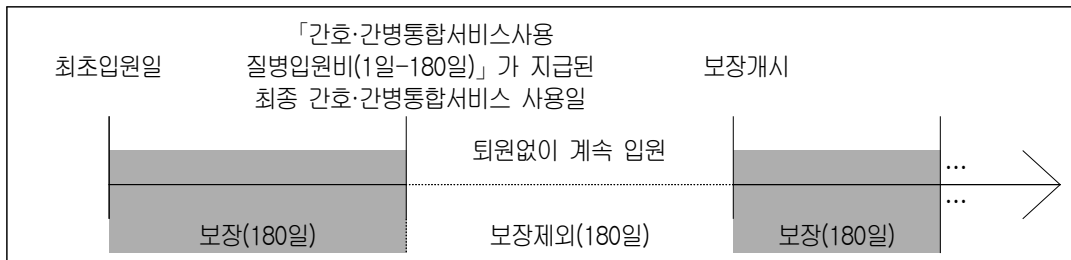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2.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④ 법 제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 2. 「치료감호법」 제16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지급일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각각 더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최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다음과 같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의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계속하여 보장합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6조(보험금 등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제3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여부 및 사용일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247-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18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48.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제외)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8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

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기 준	지 급 금 액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 (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일당8시간이상) (181일이상)	간병인 사용 1일당 8시간 이상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사용일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5일한도)

※ 간병인의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24시간을 1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정으로 간병인을 8시간이상 24시간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1일로 간주하나, 8시간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단, 181일째 입원일 이전에 간병인을 사용하여 181일째 입원일 이후 까지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 181일째 입원일을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으로 봅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단,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을 말합니다.

제4조(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피보험자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간병인이 피보험자의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간병인의 주요 업무(예시)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 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 ③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된 자에 한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의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24시간을 1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정으로 간병인을 8시간이상 24시간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1일로 간주하나, 8시간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단, 181일째 입원일 이전

에 간병인을 사용하여 181일째 입원일 이후 까지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 181일째 입원일을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으로 봅니다.

[보장예시1]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X년 4월 1일, 보험가입금액 : 5만원
- 입원기간 및 간병인 사용일 예시
 - 입원기간 : 202X년 5월 1일 ~ 202X년 11월 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X년 5월 1일 오후 8시 ~ 10월 31일 오전 7시

1일기준	202X년 10월			
	28일 00시 ~ 24시 (181일째 입원일)	29일 00시 ~ 24시	30일 00시 ~ 24시	31일 00시 ~ 24시
간병인 사용시간	24시간	24시간	24시간	7시간
1일 8시간이상 사용여부	○	○	○	×

- 10월 28일이 181일째 입원일이므로 10월 28일 00시부터 보장
- 31일 00시 ~ 24시 이전 기준의 경우 간병인 사용시간이 7시간으로 8시간 이상 미충족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 지급금액 : 5만원 × 3일 : 15만원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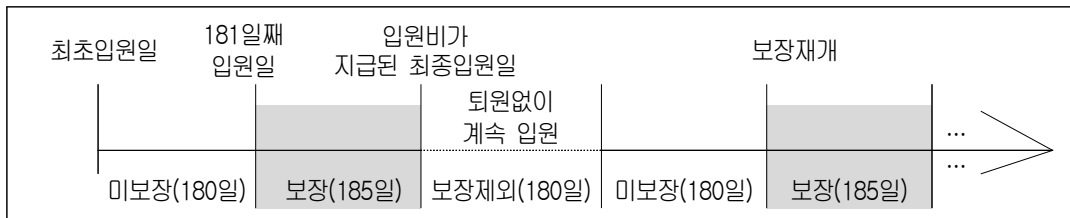
[보장예시2]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X년 4월 1일, 보험가입금액 : 5만원
- 입원기간 및 간병인 사용일 예시
 - 입원기간 : 202X년 5월 1일 ~ 202X년 11월 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X년 11월 15일 오전 9시 ~ 11월 17일 오후 3시

1일기준	202X년 4월		
	15일 오전 9시 ~ 16일 오전 9시 이전	16일 오전 9시 ~ 17일 오전 9시 이전	17일 오전 9시 ~ 18일 오전 9시 이전
간병인 사용시간	24시간	24시간	6시간
1일 8시간이상 사용여부	○	○	×

- 10월 28일 181일째 입원일이므로 10월 28일부터 보장
- 17일 오전 9시 ~ 18일 오전 9시 이전 기준의 경우 간병인 사용시간이 6시간으로 8시간 이상 미충족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 지급금액 : 5만원 × 2일 : 10만원 지급**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지급일수는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각각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보험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 퇴원일까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제3조(「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정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⑩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⑪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⑫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③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의 직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49.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249-1.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249-2.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

(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49-3.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

(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249-1, 249-2은 비갱신형으로 운영하며,
249-3는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제3조(「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수술, 혈전용해치료, 중합병원 중환자실치료, 특정급여치료II)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 (감액없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최대 10회 지급)

제2조(「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분류표」 (【별표158】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질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순환계질환 II 분류표」 (【별표161】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혈액검사(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 뇌척수액 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핵의학 검사, 혈관 도플러검사, 경동맥초음파, 전산화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 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라 함은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2.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3.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합병원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경우
4.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급여치료II」를 받은 경우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는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를 포함됩니다.
 1.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고주파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카테터를 이용하여 혈관에 코일 등 색전물질을 주입하여 혈류를 막거나, 뇌동맥내 혈관확장제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포함되며, 이 외의 카테터를 이용하여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치료적 방사선 조사를 받은 경우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8. 혈관 조영술, 중심정맥관 삽입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꽃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5조(「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 또는 심혈관 부문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Heparin, Warfarin 등) 및 항혈소판제(Plavix, Aspirin, Pletal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제2항의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 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됩니다.

제6조(「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험기간 중에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으로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제7조(「특정급여치료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급여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특정급여치료Ⅱ」 대상 수가코드 분류표」(【별표160】참조)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특정급여치료Ⅱ」에 대해 치료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치료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의 「특정급여치료Ⅱ」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특정급여치료Ⅱ」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급여수가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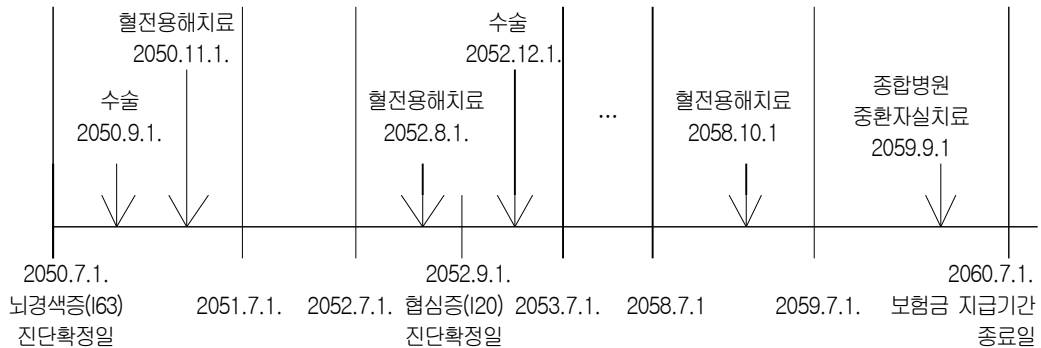
급여수가코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 등을 포함한 코드를 말합니다.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마지막 날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를 보장합니다.
- ⑤ 회사는 피보험자가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수술,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특정급여치료Ⅱ)를 각각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만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 보험계약일 : 2026년 7월 1일, 30년만기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뇌경색증(I63) 최초진단 확정일 : 2050년 7월 1일
- 협심증(I20) 최초진단 확정일 : 2052년 9월 1일



- 뇌혈관질환 최초진단 후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시, 지급예시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3차년도	...	진단 후 9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수술(I63) 1,000만원	-	혈전용해치료(I63) 1,000만원 지급	...	혈전용해치료(I20) 1,000만원 지급	중환자실치료(I20) 1,000만원 지급
혈전용해치료(I63) 미지급 (연간회한도 초과)	-	수술(I20) 미지급 (연간회한도 초과)	...	-	-

※ 뇌경색증(I63) 최초 진단확정일(2050년 7월 1일) 이후에 협심증(I20)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은 뇌경색증(I63) 최초 진단확정일(2050년 7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제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차회 이후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 ①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제41조(해약환급금)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12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 ① 249-3.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7.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3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고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50. 순환계질환진단비(특정질병제외)(감액없음) 특별약관

250-1. 순환계질환진단비(특정질병제외)(감액없음) 특별약관

250-2. 순환계질환진단비(특정질병제외)(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순환계질환진단비(특정질병제외)(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순환계질환진단비(특정질병제외)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분류표」(【별표157】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질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순환계질환Ⅱ 분류표」(【별표161】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증상과 함께 혈액검사(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 뇌척수액 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핵의학 검사, 혈관 도플러검사, 경동맥초음파,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 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 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 형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253-3.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진단비(갱신형_2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6장 제도성 특별약관 1.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51. 카티(CAR-T) 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카티(CAR-T) 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카티(CAR-T) 보장 대상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카티(CAR-T) 보장 대상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카티(CAR-T) 보장 대상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카티(CAR-T) 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연간 1회한)

제2조(「카티(CAR-T) 보장 대상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카티(CAR-T) 보장 대상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카티(CAR-T) 보장 대상 암 분류표」(【별표123-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카티(CAR-T) 보장 대상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② 「카티(CAR-T) 보장 대상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티(CAR-T) 보장 대상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카티(CAR-T) 보장 대상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카티치료제 및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카티치료제」라 함은 환자 본인의 혈액에서 T세포를 분리하고 체외에서 유전자 도입(변형)을 통해 제조 및 증폭된 키메라항원수용체T세포(CAR-T(카티)세포)를 환자의 몸에 주입함으로써 암세포의 표면항원을 특이적으로 인지해 암세포를 공격하여 사멸시키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카티치료제

카티치료제란 인체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면역세포에 일종의 암세포 위치추적 장치를 심어주는 방식의 치료제로 체내의 면역 T세포를 채집하여 체외로 추출한 후 항체 바이러스 벡터를 활용하여 암세포에 반응하는 특이적인 키메라항원수용체(CAR, Chimeric antigen receptor)를 발현시킨 뒤 다시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여 암세포의 성장 및 확산을 억제하는 방식의 항암제를 말합니다.

카티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카티치료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2년 7월 기준 카티치료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123-2】 카티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분류표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4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의료기관에서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카티(CAR-T) 보장 대상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카티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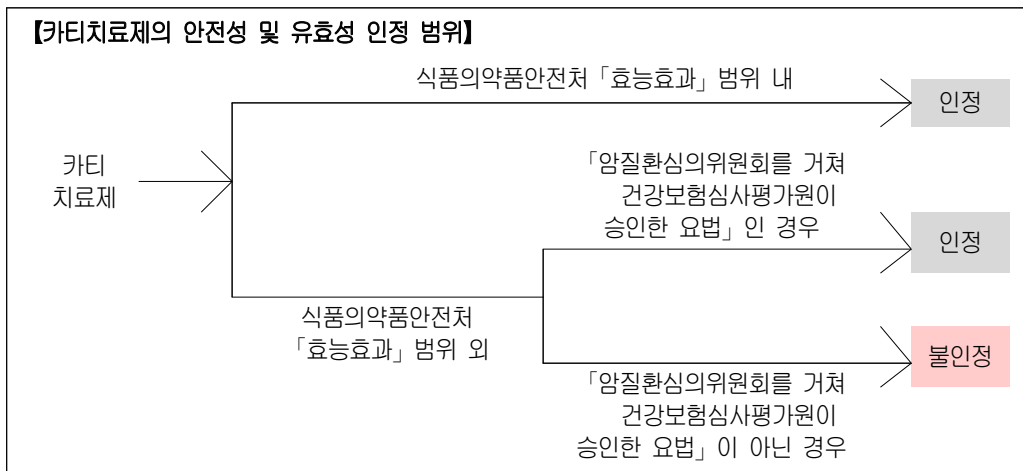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카티치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카티치료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 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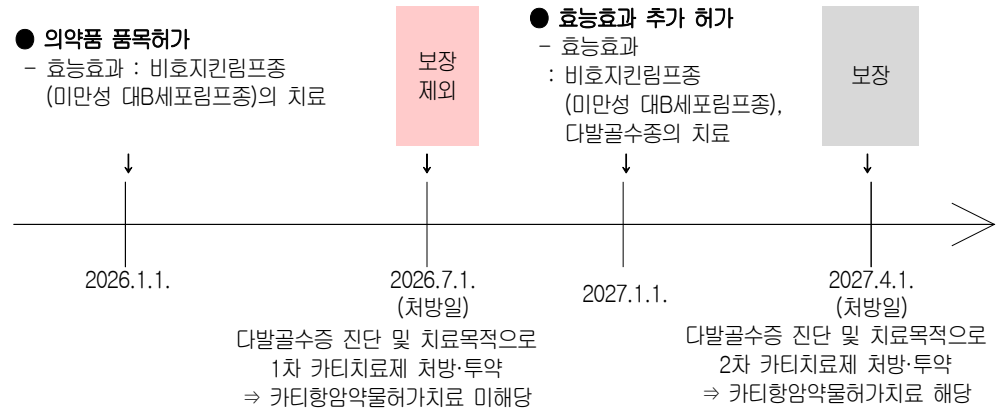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카티(CAR-T) 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는 「카티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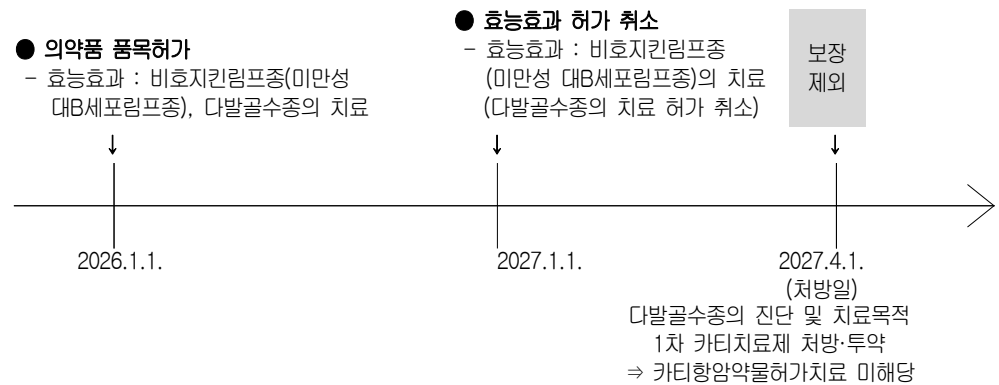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카티치료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3조(카티치료제 및 카티 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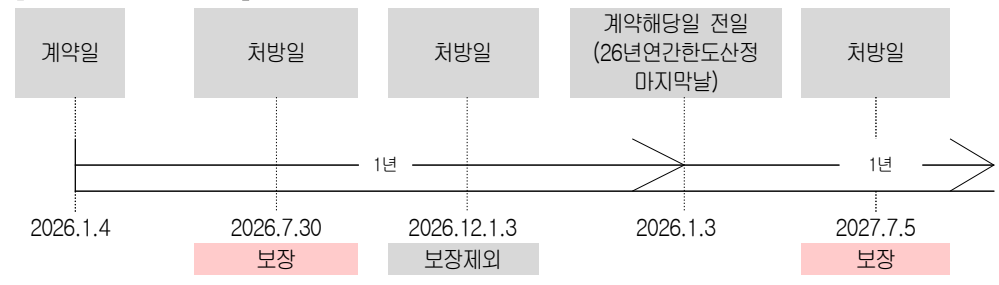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에 따라 「카티(CAR-T) 보장 대상 암」을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 ④ 「카티치료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내에 「카티치료제」를 처방 받았으나 의사와 일정 협의 등으로 보험기간 이후에 약물을 투여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⑤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연간1회한 보상예시】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가.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ㄱ. 진단명
 -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7. 갱신행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52.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연책없음,감액없음)(갱신행_1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연간 1회한)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4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의료기관에서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제2항에서 정한 「특정면역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면역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예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 중 아래의 2가지에 해당하는 항암치료제를 말합니다.
- 가.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

나. 항체약물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항암치료제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란 암세포 또는 T세포의 표면에 발현되어 암세포가 면역체계의 공격을 회피하는데 이용하는 면역세포의 표면 단백질인 PD-1, PD-L1, CTLA-4 등의 면역관문(immune checkpoint)을 차단함으로써, T세포가 암세포를 파괴하도록 하는 항암치료제를 말합니다.

【항체약물중합체 (Antibody-Drug Conjugate) 항암치료제】

항체약물중합체(Antibody-Drug Conjugate)항암치료제란 항암제에 특정 암세포의 항원 단백질을 공격하는 항체를 링커(Linker)로 접합하여 암세포만을 특이적으로 공격하는 항암치료제를 말합니다.

【특정면역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특정면역항암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2년 5월 기준 특정면역항암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특정면역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분류표」(【별표148】참조)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③ 제1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요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특정면역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특정면역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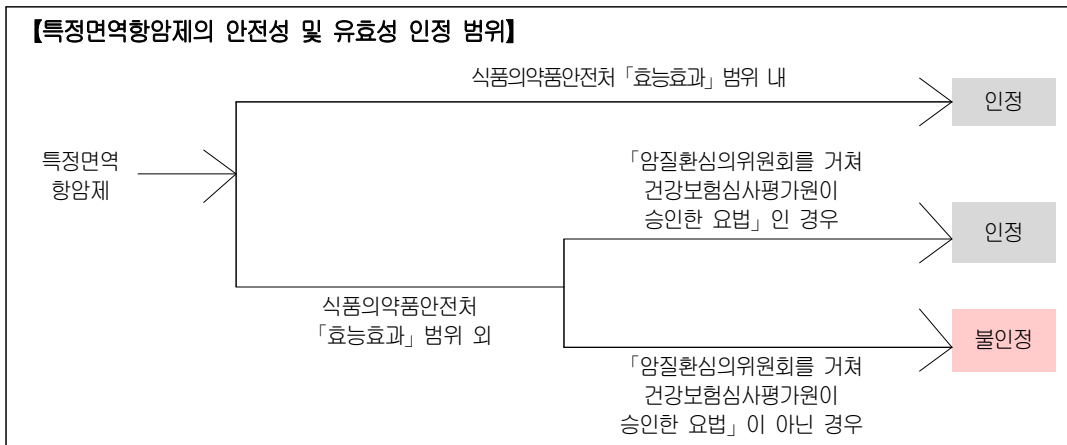
제4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 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아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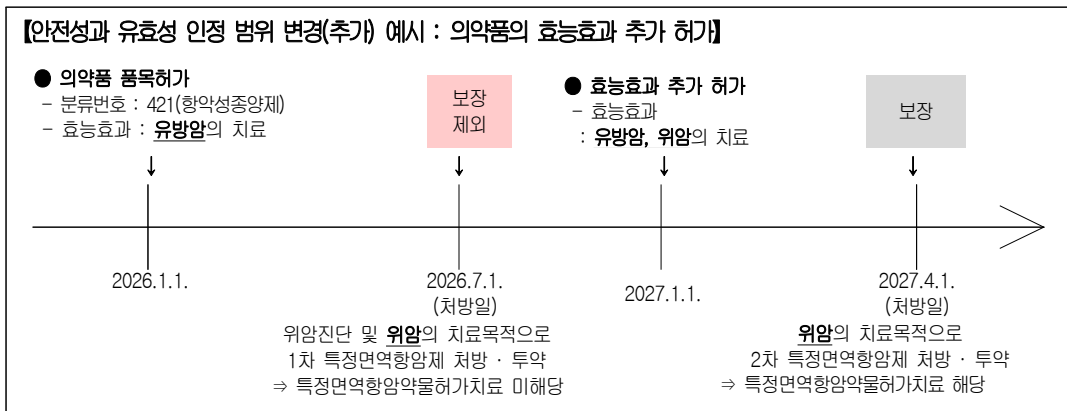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특정면역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특정면역항암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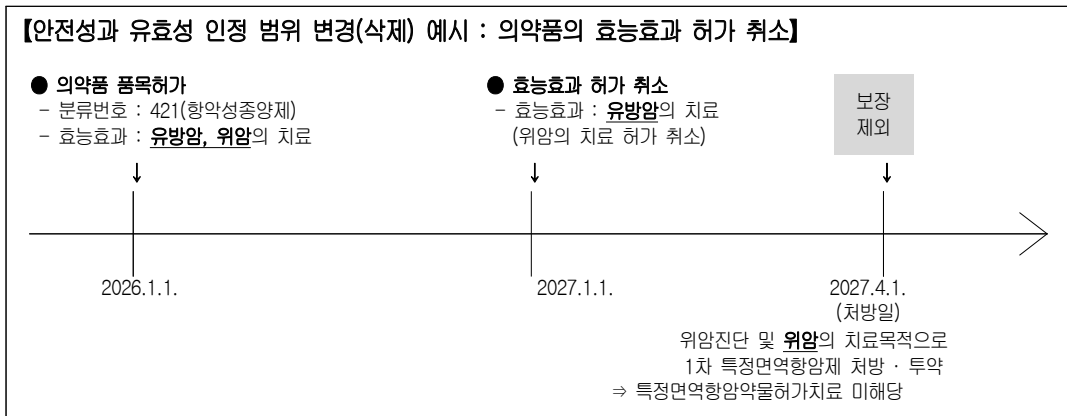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특정면역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3조(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가.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 (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ㄱ. 진단명
 -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7.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53.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 특별약관

253-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 특별약관

253-2.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253-1은 비갱신형으로 운영하며,
253-2는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3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기 준	지 급 금 액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 (1일-180일)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7만원 미만	사용일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7만원 이상	사용일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간병인 사용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인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간병인을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을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하며,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제3조(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간병인이 피보험자의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간병인의 주요 업무(예시)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채워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 보조, 휴식돕기, 번기사용 보조 등

- ③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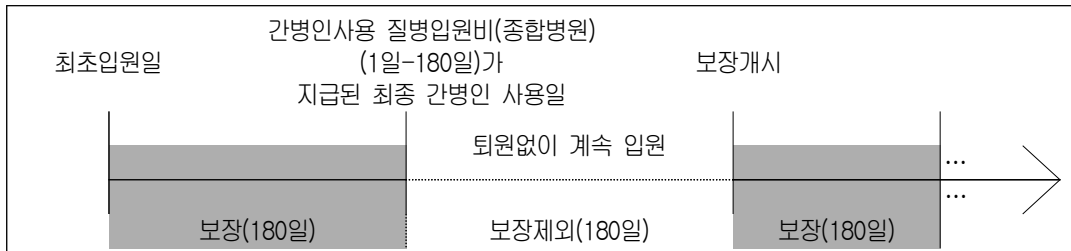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에서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간병인 사용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인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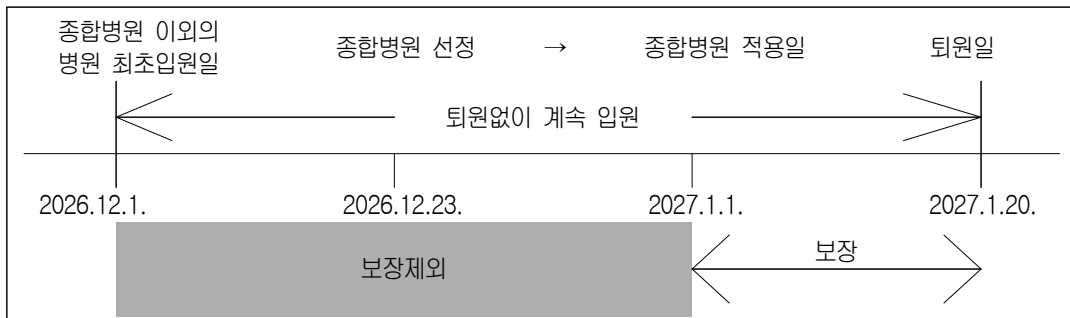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 계산예시>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6년 4월 1일, 보험가입금액 : 2만원
- 입원기간 및 간병인 사용일 예시
 - 입원기간 : 2026년 4월 1일 ~ 2026년 4월 30일
 - 간병인 사용일 및 사용금액
 - 2026년 4월 10일 ~ 4월 17일 사용 : 총 사용일수 8일, 총사용금액 88만원,
1일당 평균 7만원 이상에 해당.
→ 2만원 × 8일 = 16만원 지급
 - 2026년 4월 20일 ~ 4월 24일 오전, 4월 24일 오후, 4월 25일 오후 ~ 4월 27일 사용
: 총 사용일수 8일, 총 사용금액 52만원, 1일당 평균 7만원 미만에 해당
→ 1만원 × 8일 = 8만원 지급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 지급금액
: 간병인 사용일수 16일, 보험금 16만원 + 8만원 = 24만원 지급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지급일수는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각각 더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④ 다음과 같이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의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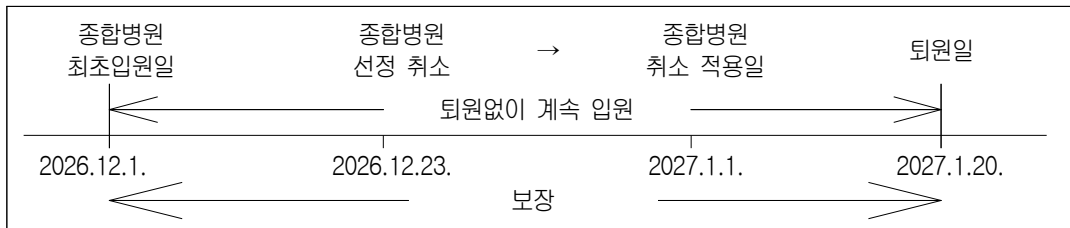


-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계속하여 보장합니다. 단,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를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해당 「종합병원」 퇴원일까지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를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를 지급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를 지급합니다.



- ⑩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⑪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③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등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제3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의 직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253-2.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54.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 특별약관

254-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 특별약관

254-2.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254-1은 비갱신형으로 운영하며,

254-2는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3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기 준	지 급 금 액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 (1일-180일)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7만원 미만	사용일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7만원 이상	사용일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간병인 사용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인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간병인을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을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제3조(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간병인이 피보험자의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간병인의 주요 업무(예시)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 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 ③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에서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간병인 사용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인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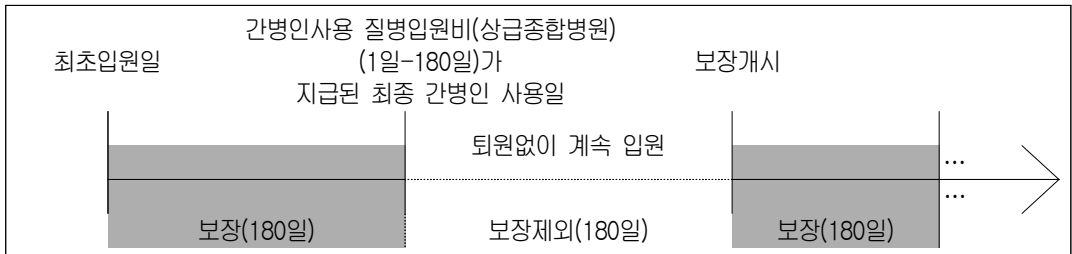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 계산예시>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6년 4월 1일, 보험가입금액 : 2만원
- 입원기간 및 간병인 사용일 예시
 - 입원기간 : 2026년 4월 1일 ~ 2026년 4월 30일
 - 간병인 사용일 및 사용금액
 - 2026년 4월 10일 ~ 4월 17일 사용 : 총 사용일수 8일, 총사용금액 88만원,
1일당 평균 7만원 이상에 해당.
→ 2만원 × 8일 = 16만원 지급
 - 2026년 4월 20일 ~ 4월 24일 오전, 4월 24일 오후, 4월 25일 오후 ~ 4월 27일 사용
: 총 사용일수 8일, 총 사용금액 52만원, 1일당 평균 7만원 미만에 해당
→ 1만원 × 8일 = 8만원 지급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 지급금액
: 간병인 사용일수 16일, 보험금 16만원 + 8만원 = 24만원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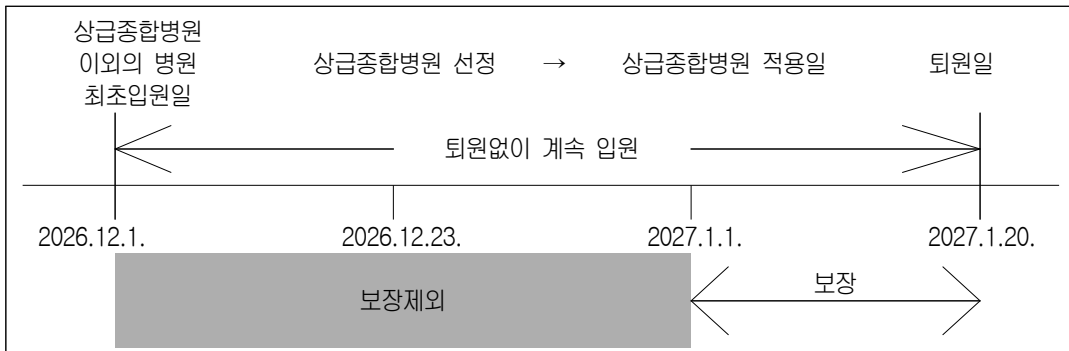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지급일수는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각각 더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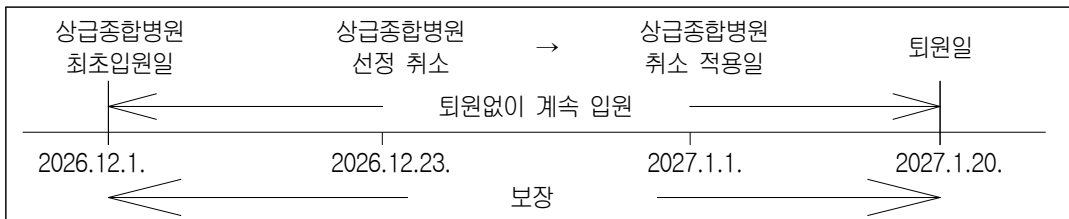
- ④ 다음과 같이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의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계속하여 보장합니다. 단,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를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해당 「상급종합병원」 퇴원일까지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를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를 지급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를 지급합니다.



- ⑩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⑪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료질환
- ③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제3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의 직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254-2.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55.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255-1.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255-2.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55-3.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갱신형_10년) 특별약관

255-1, 255-2는 비갱신형으로 운영하며,
255-3는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 암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비급여 암주요치료비 (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최대 10회 지급)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별표22-1】 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갑상선암」 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별표22-1】 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비급여 암주요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비급여 암주요치료」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을 제거하거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수술」을 받은 경우
 2.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3.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② 「비급여 암주요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비급여 암주요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단순 호르몬제 치료(다만, 호르몬성 항암치료는 「비급여 암주요치료」에 포함됩니다)

단순 호르몬제 치료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체내 부족한 호르몬의 보충 및 조절 등을 위해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피임 목적 호르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및 인슐린 주사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비급여 암주요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 ⑤ 제1항 제1호의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수술」은 수술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처치 및 수술료 중 직접적으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에 사용한 비용이 제3항 및 제4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⑥ 제1항 제2호의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방사선치료료가 제3항 및 제4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방사선치료료에는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등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부수적인 행위는 제외됩니다.
- ⑦ 제1항 제3호의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제3항 및 제4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비급여 암주요치료”로 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③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제4조(「암수술」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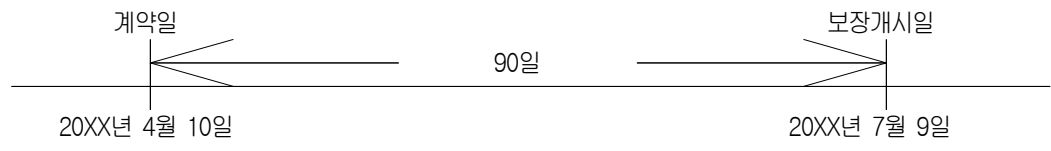
제5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1회한, 진단후10년)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 가.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나.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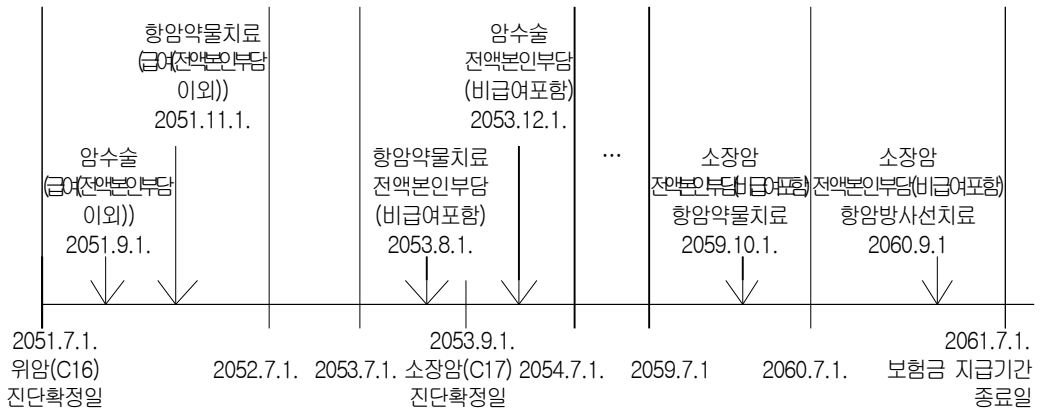
<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1회한, 진단후10년)의 보장개시일(15세이상 피보험자)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에 한함)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마지막 날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1회한, 진단후10년)를 보장합니다.
- ⑥ 회사는 피보험자가 비급여 암주요치료(암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를 각각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1회한, 진단후10년)만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 보험계약일 : 2026년 7월 1일, 30년만기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위의 악성신생물(C16) 최초진단 확정일 : 2051년 7월 1일
- 소장의 악성신생물(C17) 최초진단 확정일 : 2053년 9월 1일



- 암 최초진단 후 암 주요치료시, 지급예시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3차년도	...	진단 후 9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암수술(C16) 미지급	-	항암약물치료(C16) 1,000만원 지급	...	항암약물치료(C17) 1,000만원 지급	항암방사선치료(C17) 1,0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C16) 미지급	-	암수술(C17) 미지급 (연간회한도 초과)	...	-	-

※ 위암(C16) 최초 진단확정일(2051년 7월 1일) 이후에 소장암(C17)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은 위암(C16) 최초 진단확정일(2051년 7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차회 이후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 ①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제41조(해약환급금)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12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 ① 255-3.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갱신형_1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7.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3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고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56.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 암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면책없음,감액없음)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비급여 암주요치료비 (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최대 10회 지급)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 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 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비급여 암주요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비급여 암주요치료」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을 제거하거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수술」을 받은 경우
 2.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3.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② 「비급여 암주요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비급여 암주요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단순 호르몬제 치료(다만, 호르몬성 항암치료는 「비급여 암주요치료」에 포함됩니다)

단순 호르몬제 치료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체내 부족한 호르몬의 보충 및 조절 등을 위해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피임 목적 호르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및 인슐린 주사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비급여 암주요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 ⑤ 제1항 제1호의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수술」은 수술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처치 및 수술료 중 직접적으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에 사용한 비용이 제3항 및 제4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⑥ 제1항 제2호의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방사선치료료가 제3항 및 제4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방사선치료료에는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등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부수적인 행위는 제외됩니다.
 - ⑦ 제1항 제3호의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제3항 및 제4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비급여 암주요치료”로 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③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제4조(「암수술」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5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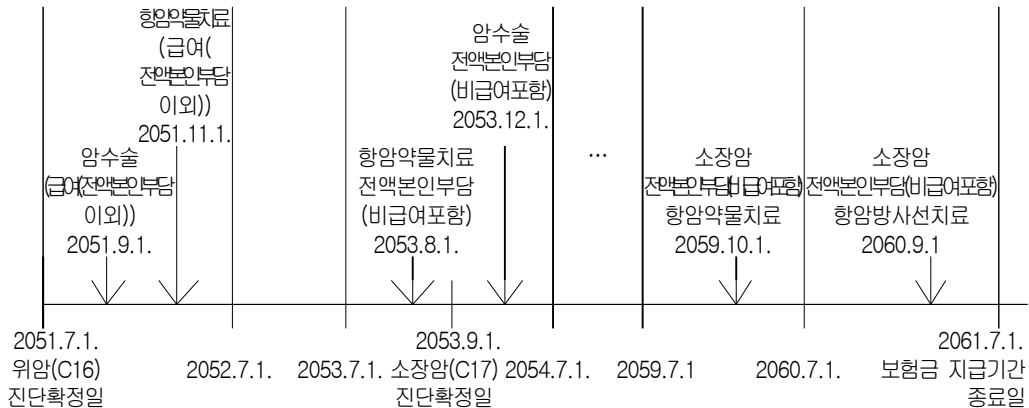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암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마지막 날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를 보장합니다.
- ⑤ 회사는 피보험자가 비급여 암주요치료(암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를 각각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만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 보험계약일 : 2026년 7월 1일, 30년만기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위의 악성신생물(C16) 최초진단 확정일 : 2051년 7월 1일
- 소장의 악성신생물(C17) 최초진단 확정일 : 2053년 9월 1일



- 암 최초진단 후 암 주요치료시, 지급예시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3차년도	...	진단 후 9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암수술(C16) 미지급	-	항암약물치료(C16) 1,000만원 지급	...	항암약물치료(C17) 1,000만원 지급	항암방사선치료(C17) 1,0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C16) 미지급	-	암수술(C17) 미지급 (연간회한도 초과)	...	-	-

※ 위암(C16) 최초 진단확정일(2051년 7월 1일) 이후에 소장암(C17)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은 위암(C16) 최초 진단확정일(2051년 7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차회 이후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 ①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제41조(해약환급금)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고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57.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257-1.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257-2.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57-3.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갱신형_10년) 특별약관

257-1, 257-2는 비갱신형으로 운영하며,
257-3은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 (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최대 10회 지급)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비급여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제4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제3항 및 제4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② 「비급여 항암약물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영양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단순 호르몬제 치료(다만, 호르몬성 항암치료는 「비급여 항암약물치료」에 포함됩니다)

단순 호르몬제 치료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체내 부족한 호르몬의 보충 및 조절 등을 위해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피임 목적 호르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및 인슐린 주사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비급여 항암약물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로 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③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제4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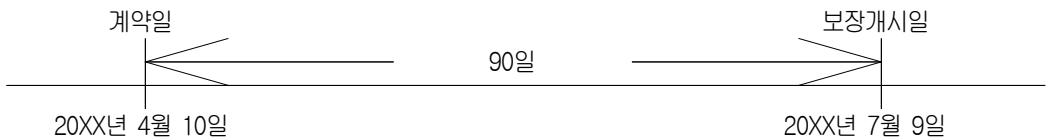
1.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가.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나.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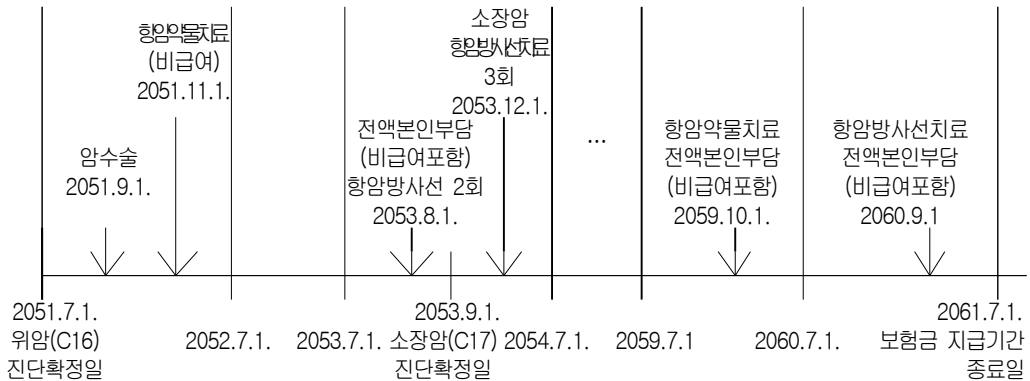
**<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의 보장개시일(15세이상 피보험자)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에 한함)**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마지막 날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를 보장합니다.
- ⑥ 회사는 피보험자가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를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만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 보험계약일 : 2026년 7월 1일, 30년만기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위의 악성신생물(C16) 최초진단 확정일 : 2051년 7월 1일
- 소장의 악성신생물(C17) 최초진단 확정일 : 2053년 9월 1일



- 암 최초진단 후 암 주요치료시, 지급예시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3차년도	...	진단 후 9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암수술(C16) 미지급	-	항암방사선치료(C16), 항암방사선치료(C17) 미지급	...	항암약물치료(C17) 1,000만원 지급	항암방사선치료(C17) 미지급
항암약물치료(C16) 1,000만원 지급	-		...	-	-

※ 위암(C16) 최초 진단확정일(2051년 7월 1일) 이후에 소장암(C17)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은 위암(C16) 최초 진단확정일(2051년 7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차회 이후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 ①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제41조(해약환급금)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절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11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 ① 257-3.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갱신형_1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7.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2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고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58.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 (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최대 10회 지급)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비급여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제4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제3항 및 제4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② 「비급여 항암약물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단순 호르몬제 치료(다만, 호르몬성 항암치료는 「비급여 항암약물치료」에 포함됩니다)

단순 호르몬제 치료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체내 부족한 호르몬의 보충 및 조절 등을 위해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피임 목적 호르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및 인슐린 주사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비급여 항암약물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

목 포함)을 말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로 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③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의료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제4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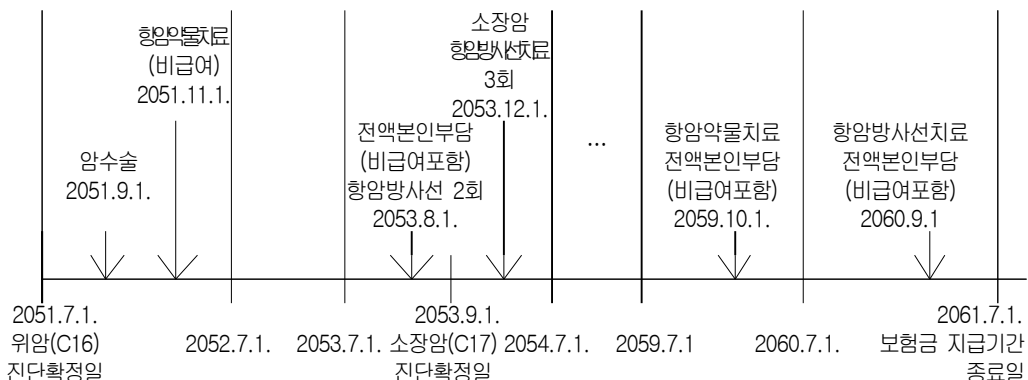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마지막 날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를 보장합니다.
- ⑤ 회사는 피보험자가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를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만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 보험계약일 : 2026년 7월 1일, 30년만기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위의 악성신생물(C16) 최초진단 확정일 : 2051년 7월 1일
- 소장의 악성신생물(C17) 최초진단 확정일 : 2053년 9월 1일



– 암 최초진단 후 암 주요치료시, 지급예시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3차년도	...	진단 후 9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암수술(C16) 미지급	-	항암방사선치료(C16), 항암방사선치료(C17) 미지급	...	항암약물치료(C17) 1,000만원 지급	항암방사선치료(C17) 미지급
항암약물치료(C16) 1,000만원 지급	-		...	-	-

※ 위암(C16) 최초 진단확정일(2051년 7월 1일) 이후에 소장암(C17)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은 위암(C16) 최초 진단확정일(2051년 7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차회 이후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 ①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제41조(해약환급금)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고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59.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감액없음) 특별약관

259-1.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감액없음) 특별약관

259-2.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59-3.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259-1, 259-2는 비갱신형으로 운영하며,
259-3은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항암방사선치료」,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 및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중입자방사선 치료」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중, 국내에 허가된 중입자치료센터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피보험자의 「암」, 「기타

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리화된 탄소, 헬륨 등(수소 제외)의 중이온을 가속하여 암환자의 몸에 조사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하며,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중이온은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 작은 양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심부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특성(브래그 피크)을 가지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국내에 허가된 양성자치료센터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소 원자핵을 분리하여 얻은 양성자를 가속하여 암 환자의 몸에 조사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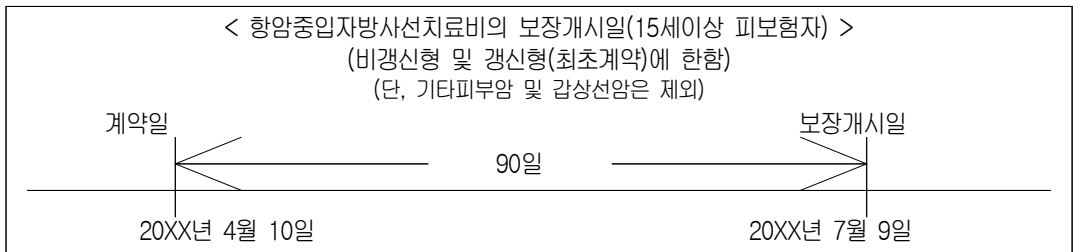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가.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나.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은 제외합니다)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방사선 치료기록지,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9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262-3.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7.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60.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별표22-1】 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갑상선암」 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별표22-1】 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항암방사선치료」,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 및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중입자방사선 치료」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국내에 허가된 중입자치료센터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리화된 탄소, 헬륨 등(수소 제외)의 중이온을 가속하여 암환자의 몸에 조사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하며,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중이온은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 작은 양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심부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특성(브래그 피크)을 가지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국내에 허가된 양성자치료센터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소 원자핵을 분리하여 얻은 양성자를 가속하여 암 환자의 몸에 조사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방사선 치료기록지,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61. 항암방사선치료비(감액없음) 특별약관

261-1. 항암방사선치료비(감액없음) 특별약관

261-2. 항암방사선치료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항암방사선치료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등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항암방사선치료비	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 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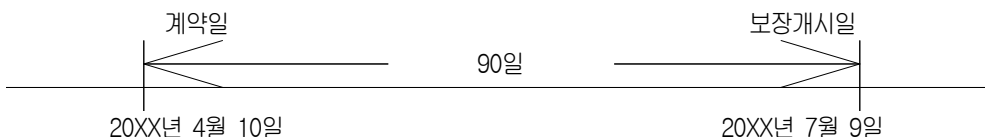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항암방사선치료비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2.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항암방사선치료비의 보장개시일(15세이상 피보험자) >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은 제외)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후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후 「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방사선치료비(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62. 항암방사선치료비(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항암방사선치료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 등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항암방사선치료비	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비를 받은 후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후 「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방사선치료비(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는 제외함)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함)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63. 항암약물치료비(감액없음) 특별약관

263-1. 항암약물치료비(감액없음) 특별약관

263-2. 항암약물치료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항암약물치료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등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항암약물치료비	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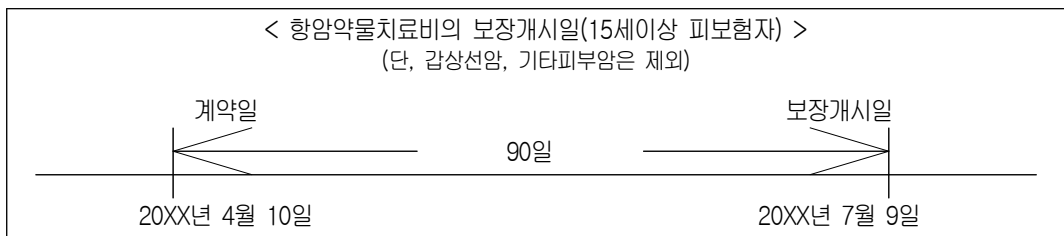
제3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항암약물치료비의 보장개시일은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2.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항암약물치료비를 받은 후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항암약물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후 「암」으로 항암약물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약물치료비(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64. 항암약물치료비(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항암약물치료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 등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항암약물치료비	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항암약물치료비를 받은 후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항암약물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후 「암」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약물치료비(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65.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265-1.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265-2.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65-3.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265-1, 265-2는 비갱신형으로 운영하며,
265-3는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제3조(「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수술,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특정급여치료II)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제2조(「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분류표」(【별표158】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질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순환계질환 II 분류표」(【별표16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혈액검사(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 뇌척수액 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핵의학 검사, 혈관 도플러검사, 경동맥초음파,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 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 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라 함은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2.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3.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경우
4.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급여치료II」를 받은 경우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는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1.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고주파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카테터를 이용하여 혈관에 코일 등 색전물질을 주입하여 혈류를 막거나, 뇌동맥내 혈관확장제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포함되며, 이 외의 카테터를 이용하여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치료적 방사선 조사를 받은 경우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8. 혈관 조영술, 중심정맥관 삽입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5조(「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 또는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Heparin, Warfarin 등) 및 항혈소판제(Plavix, Aspirin, Pletal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제2항의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 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됩니다.

제6조(「중합병원 중환자실 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합병원 중환자실 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험기간 중에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으로 의료법 제3조의3(중합병원)에서 정한 중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제7조(「특정급여치료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급여치료Ⅱ」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특정급여치료Ⅱ 대상 수가코드 분류표」(【별표160】참조)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특정급여치료Ⅱ」에 대해 치료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치료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의 「특정급여치료Ⅱ」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특정급여치료Ⅱ」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급여수가코드

급여수가코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 등을 포함한 코드를 말합니다.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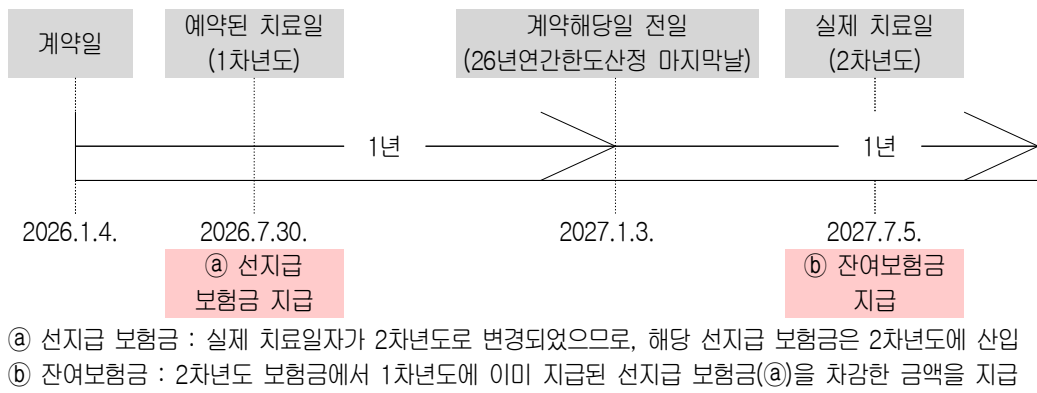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중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수술, 혈전용해치료, 중합병원 중환자실치료, 특정급여치료Ⅱ)를 각각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으로 인정합니다.

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만 지급합니다.

제8조의2(보험금 선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를 받기 위해 치료일자 예약 후 제8조의3(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 중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는 「선지급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선지급 보험금」이란 예약된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될 것으로 계산한 보험금의 50%를 말합니다. 단, 「선지급 보험금」은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이 경우 「선지급 보험금」은 변경된 예약내용을 기준으로 제2항을 적용합니다.
- ④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고, 변경된 예약내용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과 변경된 예약내용에 따라 계산된 「선지급 보험금」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 ⑤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어, 변경된 예약내용이 아래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후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예약내용의 변경을 회사에 알린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⑥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선지급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잔여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약된 치료일자와 다르게 실제 치료일자가 변경된 경우, 실제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잔여보험금을 계산합니다.

【 실제 치료일자가 변경된 경우 잔여보험금 보상예시 】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예약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의 반환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라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미 지급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회사가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⑨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선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금액을 보험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⑩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치료항목에 대한 잔여보험금 청구 이전에는 동일한 치료 항목에 대하여 추가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8조의3(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 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5.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 진단서, 치료 예약 확인서(치료 예정 병원, 치료 예정 일자, 치료내용 포함), 진료기록부 등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10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268-3.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7.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66. 2대질병주요치료비(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266-1. 2대질병주요치료비(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266-2. 2대질병주요치료비(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266-1은 비갱신형으로,
266-2는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2대질병주요치료비(치료별 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제3조(「2대질병 주요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2대질병 주요치료」(2대질병수술, 2대질병 혈전용해치료, 2대질병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세부보장에 따른 치료구분별로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세부보장	치료구분	지 급 금 액
2대질환주요치료비 (치료별 연간1회한)	2대질환주요치료비 _수술비(연간1회한)	뇌혈관질환수술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허혈성심질환수술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2대질환주요치료비 _혈전용해치료비 (연간1회한)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허혈성심질환 혈전용해치료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2대질환주요치료비 _중환자실치료비 (종합병원)(연간1회한)	뇌혈관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허혈성심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제2조(「2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2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별표17】참조)에 해당하는 1. 거미막하 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8. 기타 뇌혈관 질환,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10.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④ 제1항의 「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허혈성심질환 분류표」(【별표19】참조)에 해당하는 1. 협심증, 2. 급성심근경색증, 3. 후속심근경색증, 4.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5. 기타 급성 허혈성심질환, 6. 만성 허혈성심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제1항의 「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용어설명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뇌혈관조영술]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희게 촬영되는 물질(조영제)을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양전자 방출 단층술(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뇌척수액 검사]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제3조(「2대질병 주요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2대질병 주요치료」라 함은 「2대질병수술」, 「2대질병 혈전용해치료」, 「2대질병 중환자실 치료」를 말합니다.

1. 「2대질병수술」이라 함은 「2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2. 「2대질병 혈전용해치료」이라 함은 「2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3. 「2대질병 중환자실 치료」이라 함은 「2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경우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는 「2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1.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고주파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카테터를 이용하여 혈관에 코일 등 색전물질을 주입하여 혈류를 막거나, 뇌동맥내 혈관확장제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포함되며, 이 외의 카테터를 이용하여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치료적 방사선 조사를 받은 경우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8. 혈관 조영술, 중심정맥관 삽입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5조(「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2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 또는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Heparin, Warfarin 등) 및 항혈소판제(Plavix, Aspirin, Pletal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제2항의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 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됩니다.

제6조(「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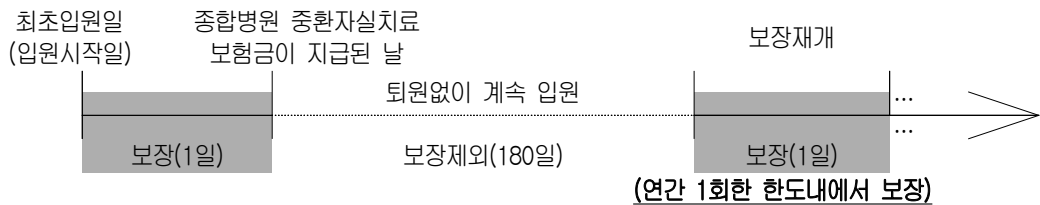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2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험기간 중에 「2대질병」으로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는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작한 일자(이하 입원시작일이라 합니다)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혈관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는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뇌혈관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혈관질환」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허혈성심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는 「허혈성심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허혈성심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허혈성심질환」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혈성심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허혈성심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일한 「뇌혈관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뇌혈관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뇌혈관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입원시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 중인 경우에는 뇌혈관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⑤ 피보험자가 동일한 「허혈성심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일한 「허혈성심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허혈성심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허혈성심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입원시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 중인 경우에는 허혈성심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예시]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입원시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 중인 경우



- ⑥ 피보험자가 다른 종합병원 중환자실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다른 종합병원 중환자실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허혈성심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예시] 동일한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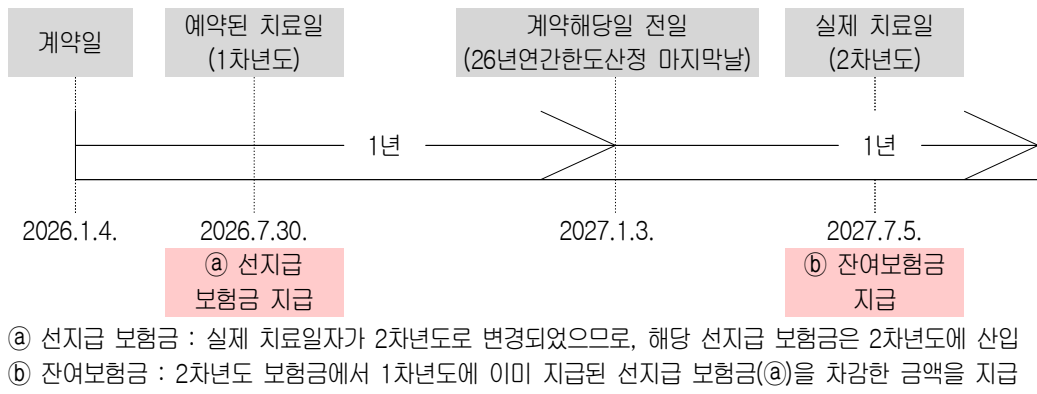
날짜	구분	보장여부	사유
2026.3.1	보장개시일	-	-
2026.3.5. ~ 3.30	중환자실입원(1차)	지급	-
2026.10.1. ~ 10.15	중환자실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 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7.3.15. ~ 3.30	중환자실입원(3차)	지급	1차 퇴원 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중환자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중환자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을 입원시작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을 입원시작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⑩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⑪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⑫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7조의2(보험금 선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대질병 주요치료를 받기 위해 치료일자 예약 후 제7조의3(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2대질병 주요치료 중 2대질병 중환자실 치료는 「선지급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선지급 보험금」이란 예약된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될 것으로 계산한 보험금의 50%를 말합니다. 단, 「선지급 보험금」은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선지급 보험금」은 변경된 예약내용을 기준으로 제2항을 적용합니다.
- ④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고, 변경된 예약내용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과 변경된 예약내용에 따라 계산된 「선지급 보험금」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 ⑤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어, 변경된 예약내용이 아래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후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예약내용의 변경을 회사에 알린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⑥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선지급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잔여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약된 치료일자와 다르게 실제 치료일자가 변경된 경우, 실제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잔여보험금을 계산합니다.

【 실제 치료일자가 변경된 경우 잔여보험금 보상예시 】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예약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의 반환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라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미 지급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회사가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⑨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선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금액을 보험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⑩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치료항목에 대한 잔여보험금 청구 이전에는 동일한 치료항목에 대하여 추가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7조의3(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5.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 진단서, 치료 예약 확인서(치료 예정 병원, 치료 예정 일자, 치료내용 포함), 진료기록부 등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혈관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또는 「허혈성심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혈관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또는 「허혈성심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9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269-2. 2대질병주요치료비(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7.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67. 암주요치료비 II(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267-1. 암주요치료비 II(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267-2. 암주요치료비 II(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67-3. 암주요치료비 II(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267-1, 267-2는 비갱신형으로,
 267-3는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주요치료비 II(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주요치료IV(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암주요치료비 II(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암주요치료비 II(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최대 10회 지급)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2항의 「암」에서 제3항의 「유사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

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22-2】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22-3】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암 주요치료Ⅳ」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주요치료Ⅳ」라 함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를 말합니다.
- ② 「암 주요치료Ⅳ」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Ⅳ」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 주요치료Ⅳ」로 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③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제4조(「암수술」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④ 제2항의 수술은 자백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5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③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에서 제4항에서 정한 「항암호르몬약물치료」를 제외한 치료를 말합니다.
- ④ 「항암호르몬약물치료」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호르몬성 항암제”를 말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약효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 617(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약제
 2.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의약품 분류체계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에서 부여한 국내 의약품 ATC코드에서 L02(항악성종양제 및 면역조절제 중 내분비 치료제)에 해당하는 약제

호르몬성 항암제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거나 조절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약물

- ⑤ 제4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제4항 제1호의 “약효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 ⑥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의약품 분류체계의 개정으로 제4항 제2호의 “ATC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

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국내 의약품에 대하여 "ATC코드"를 부여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기준을 따릅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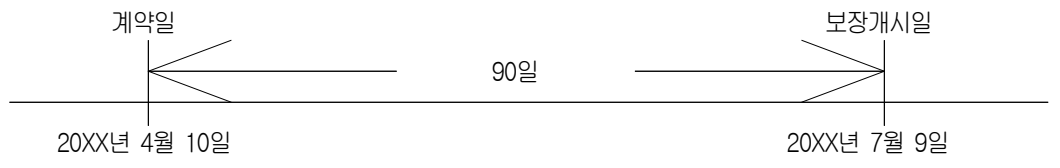
1.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가.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나.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의 보장개시일(15세이상 피보험자)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에 한함)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암(유사암제외)」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마지막 날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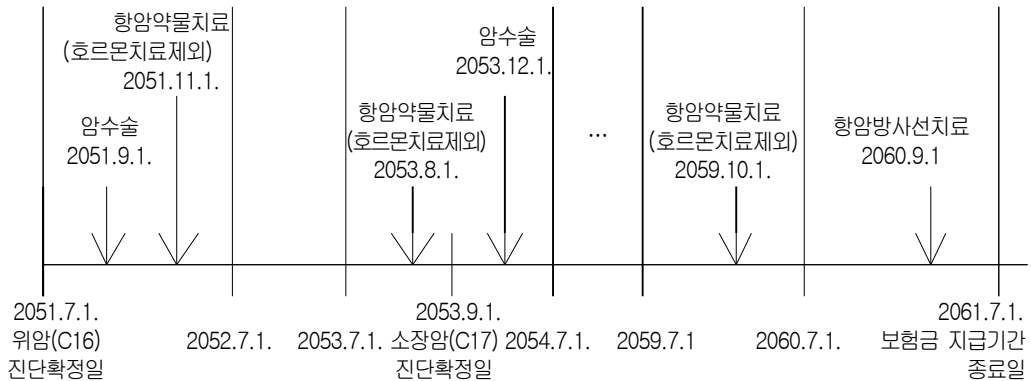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암(유사암제외)」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를 보장합니다.

⑥ 회사는 피보험자가 암 주요치료Ⅳ(암수술,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 항암방사선치료)를 각각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만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 보험계약일 : 2026년 7월 1일, 30년만기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위의 악성신생물(C16) 최초진단 확정일 : 2051년 7월 1일
- 소장의 악성신생물(C17) 최초진단 확정일 : 2053년 9월 1일



- 암 최초진단 후 암 주요치료시, 지급예시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3차년도	...	진단 후 9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암수술(C16) 1,000만원	-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C16) 1,000만원 지급	...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C17) 1,000만원 지급	항암방사선치료(C17) 1,0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C16) 미지급 (연간회한도 초과)	-	암수술(C17) 미지급 (연간회한도 초과)	...	-	-

※ 위암(C16) 최초 진단확정일(2051년 7월 1일) 이후에 소장암(C17)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은 위암(C16) 최초 진단확정일(2051년 7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차회 이후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 ①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제41조(해약환급금)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12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 ① 267-3. 암주요치료비 II(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7.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3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고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68. 암주요치료비 II(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268-1. 암주요치료비 II(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268-2. 암주요치료비 II(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68-3. 암주요치료비 II(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268-1, 268-2는 비갱신형으로,
268-3는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주요치료비 II(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암 주요치료Ⅳ(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암주요치료비 II(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암주요치료비 II(유사암) (연간1회환,진단후10년)(감액없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환, 최대 10회 지급)

제2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22-2】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22-3】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암 주요치료Ⅳ」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주요치료Ⅳ」라 함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를 말합니다.
- ② 「암 주요치료Ⅳ」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Ⅳ”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 주요치료Ⅳ”로 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③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제4조(「암수술」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

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5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③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에서 제4항에서 정한 「항암호르몬약물치료」를 제외한 치료를 말합니다.
- ④ 「항암호르몬약물치료」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호르몬성 항암제”를 말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약효분류번호 421(항암성종양제), 617(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약제
 2.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의약품 분류체계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에서 부여한 국내 의약품 ATC코드에서

호르몬성 항암제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거나 조절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약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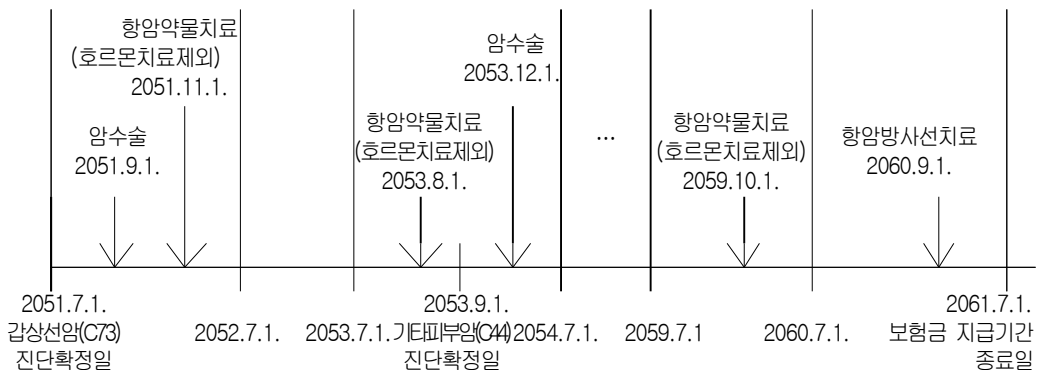
- ⑤ 제4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제4항 제1호의 "약효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 ⑥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의약품 분류체계의 개정으로 제4항 제2호의 "ATC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국내 의약품에 대하여 "ATC코드"를 부여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기준을 따릅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유사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마지막 날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유사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유사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을 보장합니다.
- ⑤ 회사는 피보험자가 암 주요치료Ⅳ(암수술,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 항암방사선치료)를 각각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만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 보험계약일 : 2026년 7월 1일, 30년만기
-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기준
- 갑상선암(C73) 최초진단 확정일 : 2051년 7월 1일
- 기타피부암(C44) 최초진단 확정일 : 2053년 9월 1일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최초진단 후 암 주요치료시, 지급예시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3차년도	...	진단 후 9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암수술(C73) 200만원 지급	-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C73) 200만원 지급	...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C44) 200만원 지급	항암방사선치료(C44) 2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C73) 미지급 (연간1회한도 초과)	-	암수술(C44) 미지급 (연간1회한도 초과)	...	-	-

※ 갑상선암(C73) 최초 진단확정일(2051년 7월 1일) 이후에 기타피부암(C44)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은 갑상선암(C73) 최초 진단확정일(2051년 7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유사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차회 이후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 ①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제41조(해약환급금)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유사암」으로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10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 ① 268-3. 암주요치료비 II(유사암)(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7.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유사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유사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고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69.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10년후10배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제3조(「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수술, 혈전용해치료, 중합병원 중환자실치료, 특정급여치료II)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	계약일로부터 10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00% (연간1회한)
	계약일로부터 10년이상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000% (연간1회한)

제2조(「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분류표」 (【별표158】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질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순환계질환II 분류표」 (【별표161】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증상과 함께 혈액검사(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 뇌척수액 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핵의학 검사, 혈관 도플러검사, 경동맥초음파,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라 함은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2.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3.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합병원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경우
4.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급여치료II」를 받은 경우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는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치

료를 받은 경우를 포함됩니다.

1. 내시경(Fiv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고주파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카테터를 이용하여 혈관에 코일 등 색전물질을 주입하여 혈류를 막거나, 뇌동맥내 혈관확장제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포함되며, 이 외의 카테터를 이용하여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치료적 방사선 조사를 받은 경우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8. 혈관 조영술, 중심정맥관 삽입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5조(「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순환계질환(특정질환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 또는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Heparin, Warfarin 등) 및 항혈소판제(Plavix, Aspirin, Pletal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제2항의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 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됩니다.

제6조(「중합병원 중환자실 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합병원 중환자실 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순환계질환(특정질환제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험기간 중에 「순환계질환(특정질환제외)」으로 의료법 제3조의3(중합병원)에서 정한 중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제7조(「특정급여치료II」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급여치료II」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특정급여치료II 대상 수가코드 분류표」(【별표160】참조)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특정급여치료II」에 대해 치료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치료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의 「특정급여치료II」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특정급여치료II」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급여수가코드

급여수가코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 등을 포함한 코드를 말합니다.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수술,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특정급여치료II)를 각각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만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70. 2대질환주요치료비(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10년후10배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2대질환주요치료비(치료별 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2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뇌혈관질환」 또는 「허

「혈성심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제3조(「2대질환 주요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2대질환 주요치료」(2대질환수술, 2대질환 혈전용해치료, 2대질환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세부보장에 따른 치료구분별로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세부보장	치료구분	경과기간	지 급 금 액
2대질환 주요치료비 (치료별 연간1회한)	2대질환주요치료비 _수술비(연간1회한)	뇌혈관질환수술	계약일로부터 10년미만 발생시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계약일로부터 10년이상 발생시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x 1000% (연간 1회한)
		허혈성심질환수술	계약일로부터 10년미만 발생시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계약일로부터 10년이상 발생시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x 1000% (연간 1회한)
2대질환 주요치료비 (치료별 연간1회한)	2대질환주요치료비 _혈전용해치료비 (연간1회한)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	계약일로부터 10년미만 발생시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계약일로부터 10년이상 발생시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x 1000% (연간 1회한)
		허혈성심질환 혈전용해치료	계약일로부터 10년미만 발생시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계약일로부터 10년이상 발생시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x 1000% (연간 1회한)
2대질환 주요치료비 (치료별 연간1회한)	2대질환주요치료비 _중환자실치료비 (중환병원) (연간1회한)	뇌혈관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계약일로부터 10년미만 발생시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계약일로부터 10년이상 발생시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x 1000% (연간 1회한)
		허혈성심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계약일로부터 10년미만 발생시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계약일로부터 10년이상 발생시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x 1000% (연간 1회한)

제2조(「2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2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별표17】참조)에 해당하는 1. 거미막하 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8. 기타 뇌혈관 질환,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10. 뇌

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④ 제1항의 「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허혈성심질환 분류표」(【별표19】참조)에 해당하는 1. 협심증, 2. 급성심근경색증, 3. 후속심근경색증, 4.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5. 기타 급성 허혈성심질환, 6. 만성 허혈성심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제1항의 「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용어설명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뇌혈관조영술】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희게 촬영되는 물질(조영제)를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양전자 방출 단층술(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뇌척수액 검사】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제3조(「2대질병 주요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2대질병 주요치료」라 함은 「2대질병수술」, 「2대질병 혈전용해치료」, 「2대질병 중환자실 치료」를 말합니다.

1. 「2대질병수술」이라 함은 「2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2. 「2대질병 혈전용해치료」이라 함은 「2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3. 「2대질병 중환자실 치료」이라 함은 「2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경우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는 「2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1.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고주파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카테터를 이용하여 혈관에 코일 등 색전물질을 주입하여 혈류를 막거나, 뇌동맥내 혈관확장제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포함되며, 이 외의 카테터를 이용하여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치료적 방사선 조사를 받은 경우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8. 혈관 조영술, 중심정맥관 삽입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5조(「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2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 또는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Heparin, Warfarin 등) 및 항혈소판제(Plavix, Aspirin, Pletal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제2항의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 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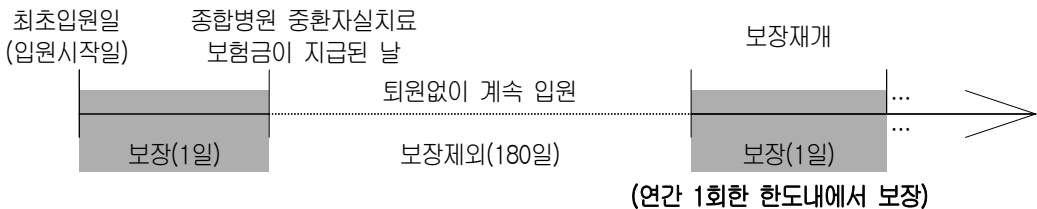
제6조(「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2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험기간 중에 「2대질병」으로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는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작한 일자(이하 입원시작일이라 합니다)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혈관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는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뇌혈관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혈관질환」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허혈성심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는 「허혈성심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허혈성심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허혈성심질환」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혈성심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허혈성심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일한 「뇌혈관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뇌혈관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뇌혈관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입원시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 중인 경우에는 뇌혈관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⑤ 피보험자가 동일한 「허혈성심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일한 「허혈성심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허혈성심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허혈성심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입원시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 중인 경우에는 허혈성심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예시]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입원시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



- ⑥ 피보험자가 다른 종합병원 중환자실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다른 종합병원 중환자실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허혈성심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예시] 동일한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날짜	구분	보장여부	사유
2026.3.1	보장개시일	-	-
2026.3.5. ~ 3.30	중환자실입원(1차)	지급	-
2026.10.1. ~ 10.15	중환자실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 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7.3.15. ~ 3.30	중환자실입원(3차)	지급	1차 퇴원 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중환자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중환자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을 입원시작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을 입원시작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⑩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⑪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⑫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혈관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또는 「허혈성심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혈관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또는 「허혈성심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71. 혈전제거치료비(급여_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271-1. 혈전제거치료비(급여_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271-2. 혈전제거치료비(급여_연간1회한)(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혈전제거치료비(급여_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뇌졸중」으로 진단확정 되고, 제4조(「뇌졸중 혈전제거술(급여)」의 정의)의 「뇌졸중 혈전제거술(급여)」을 받은 경우 또는 제3조(「특정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특정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제5조(「특정허혈성심질환 혈전제거술(급여)」의 정의)의 「특정허혈성심질환 혈전제거술(급여)」을 받은 경우 세부보장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혈전제거치료비(급여_연간1회한)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 장
뇌졸중 혈전제거치료비(급여_연간1회한) 특정허혈성심질환 혈전제거치료비(급여_연간1회한)

제2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졸중」이라 함은 「뇌졸중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별표15】참조)에 해당하는 1. 거미막하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용어설명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뇌혈관조영술]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희게 촬영되는 물질(조영제)를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γ 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여하여 그 분포상태의 단면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촬영법

[양전자 방출 단층술(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뇌척수액 검사]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제3조(「특정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특정허혈성심질환 분류표」(【별표146】참조)에 해당하는 1. 협심증, 2. 급성심근경색증, 3. 후속심근경색증, 4.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5. 오래된 심근경색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특정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특정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허혈성심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뇌졸중 혈전제거술(급여)」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졸중 혈전제거술(급여)」이라 함은 진료비세부내역서상 「뇌졸중 혈전제거술(급여) 분류표」(【별표162-1】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졸중 혈전제거술(급여)」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3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 ③ 제1항의 「뇌졸중 혈전제거술(급여)」은 진료비세부내역서상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기준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체결 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폐지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폐지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따릅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⑤ 「뇌졸중 혈전제거술(급여)」이라 함은 “혈관으로부터 혈전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여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혈전용해치료)은 제외됩니다.

제5조(「특정허혈성심질환 혈전제거술(급여)」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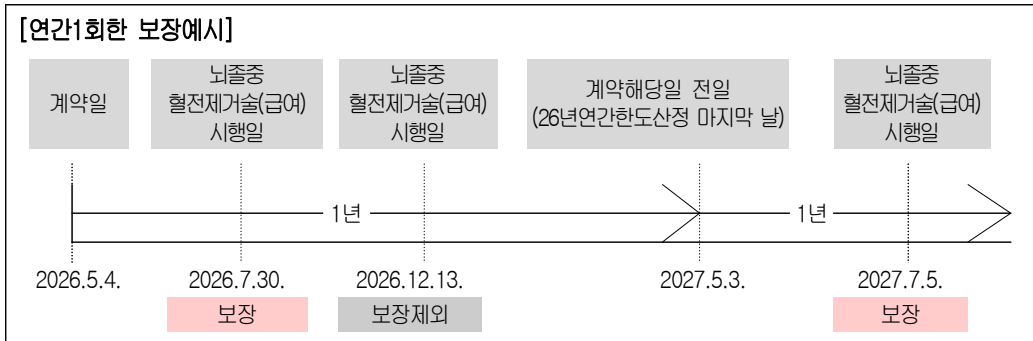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허혈성심질환 혈전제거술(급여)」이라 함은 진료비세부내역서상 「특정허혈성심질환 혈전제거술(급여) 분류표」(【별표162-2】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특정허혈성심질환 혈전제거술(급여)」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 ③ 제1항의 「특정허혈성심질환 혈전제거술(급여)」은 진료비세부내역서상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기준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관 체결 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폐지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폐지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따릅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⑤ 「특정허혈성심질환 혈전제거술(급여)」이라 함은 “혈관으로부터 혈전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맥 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여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혈전용해치료)은 제외됩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뇌졸중 혈전제거술(급여)」 또는 「특정허혈성심질환 혈전제거술(급여)」 의료행위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72. 폐렴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폐렴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폐렴」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폐렴」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과기간	지 급 금 액
폐렴진단비	계약일로부터 30일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
	계약일로부터 30일이상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폐렴진단비」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폐렴」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폐렴 분류표」(【별표16 3】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폐렴」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폐렴」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폐렴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73. 백반증진단비 특별약관

273-1. 백반증진단비 특별약관

273-2. 백반증진단비(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백반증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백반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백반증」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백반증진단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백반증진단비」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백반증」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백반증 분류표」(【별표16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백반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임상적 진단, 우드등 검사, 현미경 검사 등을 기초로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백반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백반증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74. 전이암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전이암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전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전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전이암진단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전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전이암 분류표」(【별표 165】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아래 제3항의 「암」에서 제4항의 「유사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③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 ④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22-2】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22-3】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제3항의 「암」중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제3항의 「암」에 한하여 적용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⑥ 제1항의 「전이암」에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⑦ 「전이암」,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이암」,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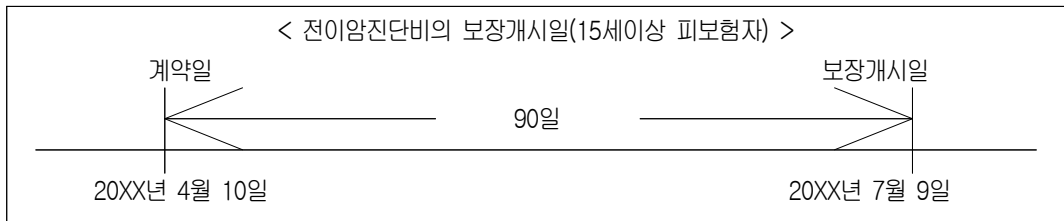
<「제7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전이암진단비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2.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②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조(「전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의 「전이암」 및 제3항의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전이암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75. 질병수술비(선천이상포함) 특별약관

275-1. 질병수술비(선천이상포함) 특별약관

275-2. 질병수술비(선천이상포함)(태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수술비(선천이상포함)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질병수술비(선천이상포함)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수술로 간주합니다.
 1.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2.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행한 레이저(Laser)수술.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쏴서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하여 드립니다.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의 정의

같은 질병이라 함은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으로서, 치료 부위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치료의 목적이 동일한 질병일 경우 같은 질병에 해당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4. 비만(E66) 수술
5. 요실금(N39.3, N39.4, R32)
6.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7.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76. 11대특정감염병진단비(수족구포함)(연간1회한,10일면책)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11대특정감염병진단비(수족구포함)(연간1회한,10일면책)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11대특정감염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11대특정감염병진단비」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11대특정감염병진단비(수족구포함)(연간1회한,10일면책)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연간1회한)

제2조(「11대특정감염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11대특정감염병」라 함은 「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별표147】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11대특정감염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하여야 하며, 이 진단은 임상적 특징 또는 혈액, 대소변, 뇌척수액, 타액, 빈이두 흡입액 및 도찰물, 직장도말물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원 및 항체 검출검사, 유전자검출검사 등을 기초로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11대특정감염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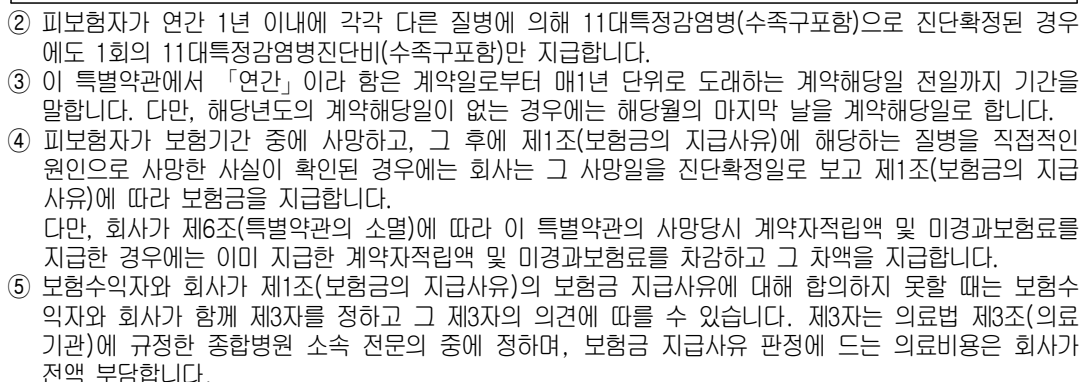
도찰물 또는 도말물

도찰물 또는 도말물이란 도찰, 도말의 방법으로 채취한 검체(상피세포, 분비물 등)를 말합니다.

도찰이란 검사용 도구(면봉 등)를 이용하여 세균 등의 존재여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살짝 문혀 채취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도말이란 검사용 도구(도말봉 등)를 이용하여 세균 등의 존재여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문히고 배지 위에 배양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1대특징감염병진단비(수족구포함)(연간1회한,10일면책)의 보장개시일은 보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마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77. 암진단비(유사암제외)(5회지급형)(감액없음) 특별약관

277-1. 암진단비(유사암제외)(5회지급형)(감액없음) 특별약관

277-2. 암진단비(유사암제외)(5회지급형)(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77-3. 암진단비(유사암제외)(5회지급형)(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277-1, 277-2는 비갱신형으로,
277-3는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진단비(유사암제외)(5회지급형)(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첫번째암」, 「첫번째암 이후 암」 각각의 보장개시일 이후 제3조(「첫번째암」 및 「첫번째암 이후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첫번째암」, 「두번째암」, 「세번째암」, 「네번째암」, 「다섯번째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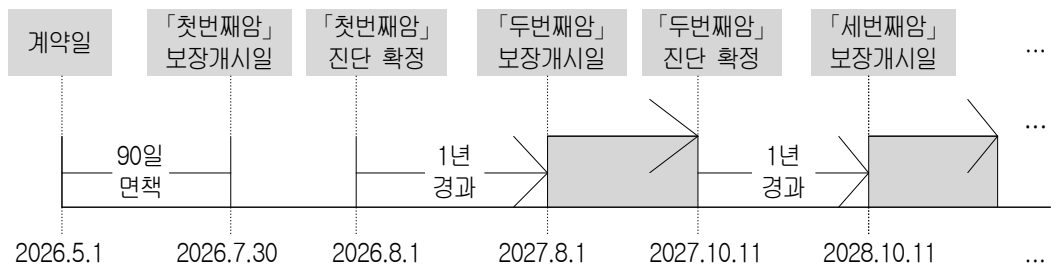
구 분	지 급 금 액
암진단비(유사암제외)(5회지급형)(감액없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암진단비(유사암제외)(5회지급형)(감액없음)”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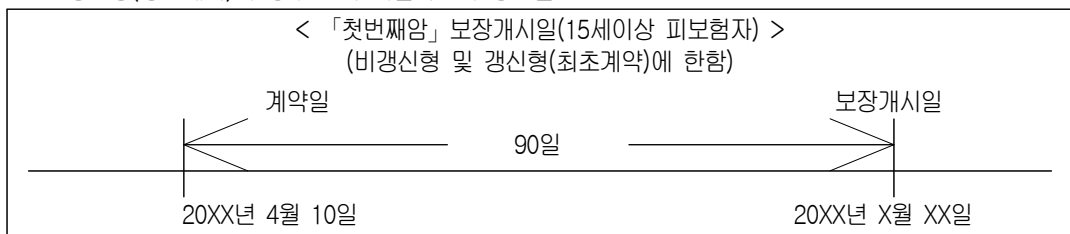
1. 「첫번째암」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첫번째암 이후 암」 보장개시일
 - 가. 「두번째암」 : 「첫번째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 나. 「세번째암」 : 「두번째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 다. 「네번째암」 : 「세번째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 라. 「다섯번째암」 : 「네번째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 “암진단비(유사암제외)(5회지급형)(감액없음)”의 보장개시일 】



② 제1항의 “「첫번째암」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 가.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나.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③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첫번째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 「첫번째암 이후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첫번째암 이후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첫번째암」 및 「첫번째암 이후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첫번째암」 및 「첫번째암 이후 암」이라 함은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첫번째암」 및 「첫번째암 이후 암」 각각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처음으로 진단되는 「암(유사암제외)」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첫번째암 이후 암」이라 함은 「두번째암」, 「세번째암」, 「네번째암」, 「다섯번째암」을 말하며 「두번째암」, 「세번째암」, 「네번째암」, 「다섯번째암」이 다음 각 호의 「암(유사암제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새로운 원발암
 2. 전이암
 3. 재발암
 4. 잔여암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4항의 「암」에서 제5항의 「유사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이 특별약관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22-2】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22-3】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제2항에서 「새로운 원발암」이란 원발부위에 발생한 암으로 「첫번째암」 또는 「첫번째암 이후 암」과 다른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유사암제외)」(이하 「새로운

원발암」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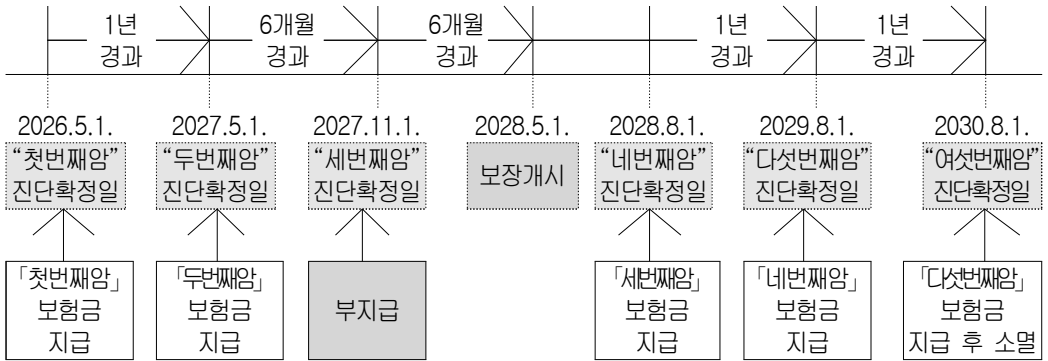
- ⑦ 제2항에서 「전이암」이란 원발부위의 암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침윤 또는 원격전이) 다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적인 분열과 성장과정을 거쳐 증식하는 「암(유사암제외)」을 말합니다.
- ⑧ 제2항에서 「재발암」이란 「첫번째암」 또는 「첫번째암 이후 암」과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으로서 치료를 통해 몸에서 「첫번째암」 또는 「첫번째암 이후 암」의 암세포를 제거한 후 그 「첫번째암」 또는 「첫번째암 이후 암」으로 인하여 새롭게 「암(유사암제외)」이 출현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명된 「암(유사암제외)」을 말합니다.
- ⑨ 제2항에서 「잔여암」이란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암(유사암제외)」 진단부위에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⑩ 「첫번째암」, 「첫번째암 이후 암」 또는 「유사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첫번째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⑪ 제10항에 따른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첫번째암」, 「첫번째암 이후 암」 또는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 「첫번째암 이후 암」의 경우 치료시점에서 암세포의 잔존이 확인되지 않은 암에 대한 치료(보조적 또는 예방적암치료)는 제외 합니다.

<「제10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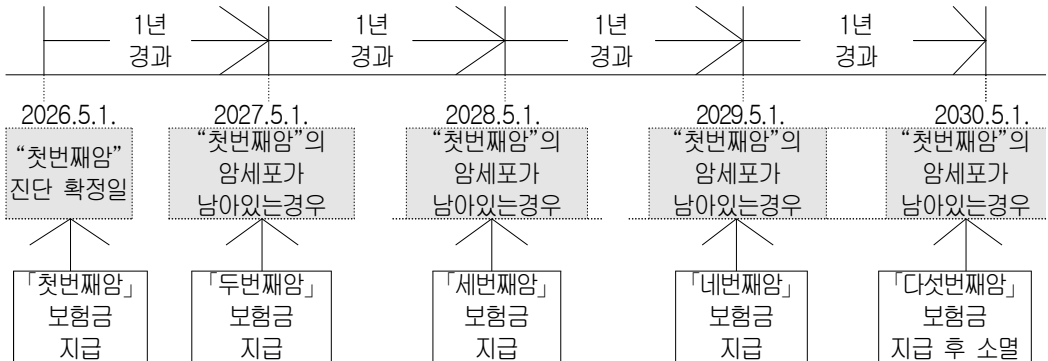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암진단비(유사암제외)(5회지급형)(감액없음)」의 보장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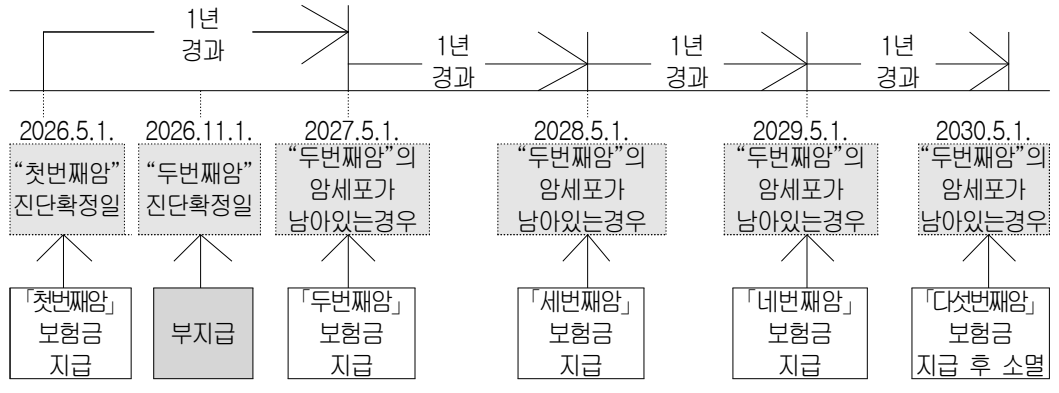
1. 제2항 제1호 ~ 제3호 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2. 제2항 제4호 잔여암



3. 제2항 제4호 잔여암



제4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 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8.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내에 「첫번째암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첫번째암」 및 「첫번째암 이후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된 특별약관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첫번째암」으로 진단확정 되지 않은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
 2.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이미 「첫번째암」 또는 「첫번째암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을 직전 「암」의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제9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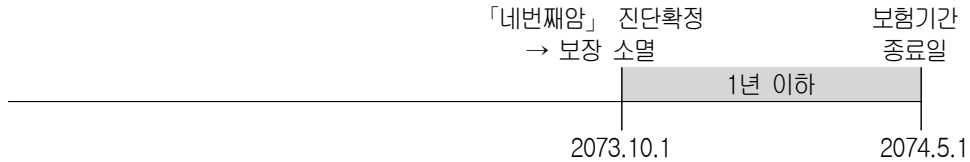
280-3. 암진단비(유사암제외)(5회지급형)(강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비(유사암제외)(5회지급형)(강액없음)의 「다섯번째암」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 적립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점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1. 「첫번째암」 또는 「첫번째암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 되어, “암진단비(유사암제외)(5회지급형)(강액없음)”가 5회차 미만 지급되고, 보험기간 종료일(갱신형은 갱신종료나이의 계약해당일)까지의 잔여기간이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년 이하인 경우

【 암진단비(유사암제외)(5회지급형)(강액없음) 보장소멸 예시 】

1. 「첫번째암」 또는 「첫번째암 이후 암」 5회차 미만 진단확정 시점에 보험기간 종료일(갱신계약은 최종 갱신종료일)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③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78. 플래티넘 건강 리셋월렛(3대고액치료,간병및상급병실입원)(갱신형_2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암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 암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암수술비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수술 1회당 5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수술 1회당 1,000만원
	갱신 계약	갱신일로부터	수술 1회당 1,000만원

2.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방사선치료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방사선치료비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2,500만원 (연간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5,000만원 (연간 1회한)
	갱신 계약	갱신일로부터	5,000만원 (연간 1회한)

3.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약물치료비(1~3기암(병기구분불가암포함))**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1~3기암(병기구분불가암포함)」 및 「4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1~3기암(병기구분불가암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1~3기암(병기구분불가암포함)」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약물치료비 [1~3기암(병기구분불가암포함)]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2,500만원 (연간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5,000만원 (연간 1회한)
	갱신 계약	갱신일로부터	5,000만원 (연간 1회한)

4.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약물치료비(4기암)**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1~3기암(병기구분불가암포함)」 및 「4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4기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4기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약물치료비[4기암]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5,000만원 (연간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1억원 (연간 1회한)
	갱신 계약	갱신일로부터	1억원 (연간 1회한)

5.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2대질병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 2대질병수술」을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2대질병수술비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수술 1회당 5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수술 1회당 1,000만원
	갱신 계약	갱신일로부터	수술 1회당 1,000만원

6.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	입원 1일당 30만원(30일한도)

7.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	입원 1일당 5만원(30일한도)

8.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15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9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15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50일을 한도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기 준	지 급 금 액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 (1일-150일)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7만원 미만	사용일 1일당 7.5만원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7만원 이상	사용일 1일당 15만원

※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간병인 사용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 사용 시작일자과 간병인 사용 종료 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간병인을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을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9.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1일-15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9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1일-15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50일을 한도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 (1일-150일)	사용일 1일당 5만원(150일한도)

10.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15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10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150일)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50일을 한도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 (1일-150일)	사용일 1일당 7만원(150일한도)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1~3기암(병기구분불가암포함)」 및 「4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4기」라 함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AJCC(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제8판 TNM 병기분류상 Stage4에 해당하는 경우
 2. FIGO(International Federation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분류상 “Stage4”에 해당하는 경우
 3. Astler-Coller 분류상 “stage D”에 해당하는 경우
 4. Jewett분류상 “stage D”에 해당하는 경우
 5. 원발불명암(최초 부위를 알 수 없는 암)이 진단된 경우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으로 진단되면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7. 「병기구분 불가암 분류표」(【별표32】참조)에 해당하는 암으로 진단 확정된 후 원격전이를 동반하여 재발하거나 원격전이 병변이 확인되는 경우
 8. 상기 기준 이외의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병기분류방법으로 객관적인 병리학적 혹은 임상학적 의료가 기록 등에 근거하여 “TNM 병기 4기”에 준하는 단계라고 진단받은 경우
- ② 이 특별약관에서 「4기암」이라 함은 「4기」에 해당되면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1~3기암(병기구분불가암포함)」이라 함은 「4기암」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병기(암의 진행상태)】

병기란 암의 발견 당시의 진행 상태를 표현하는 말로 1기부터 4기로 분류되며, 암의 진행정도가 심해질수록 숫자가 올라갑니다.

【TNM병기】

임상적으로 각 장기에 발생하는 암을 T는 원발소(primary Tumor), N는 소속림프절(regional lymphNode), M는 원격전이(distant Metastasis)를 나타내는 머리문자를 가지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4기암」을 진단함에 있어서 임상학적 병기분류 및 조직학적 병기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기암」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조직학적 병기분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상학적 병기분류만으로 「4기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 ⑤ 제1항에서 AJCC(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제8판 TNM 병기분류가 개정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TNM 병기분류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4조(「2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2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 (【별표17】 참조)에 해당하는 1. 거미막하 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8. 기타 뇌혈관 질환,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10.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 확정기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의 「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허혈성심질환 분류표」 (【별표19】 참조)에 해당하는 허혈성심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제1항의 「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 확정기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뇌혈관조영술]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희게 촬영되는 물질(조영제)을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뇌척수액 검사]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제5조(「비급여 암수술」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비급여 암수술」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을 제거하거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수술」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비급여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을 제거하거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1~3기암(병기구분불가암포함)」 또는 「4기암」을

제거하거나 「1~3기암(병기구분불가암포함)」 또는 「4기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1~3기암(병기구분불가암포함)」 또는 「4기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비급여 2대질환수술」이라 함은 「2대질환」을 제거하거나 「2대질환」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2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수술」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⑤ 이 특별약관에서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⑥ 이 특별약관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 ⑦ 제1항 및 제4항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수술」은 제6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처치 및 수술료 중 직접적으로 대상 질병을 제거하거나 대상 질병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에 사용한 비용이 제5항 및 제6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⑧ 제2항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방사선치료료가 제5항 및 제6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방사선치료료에는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등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부수적인 행위는 제외됩니다.
- ⑨ 제3항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제5항 및 제6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제6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7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③ 제2항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는 「항암호르몬치료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④ 제2항의 「항암호르몬치료제」라 함은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암약물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호르몬 양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약제를 말합니다.

제8조(「입원」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아래 각 호에서 정한 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 및 제7호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8호 :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
 3.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9호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
 4.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0호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기관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1인실」이라 함은 「특실」병실도 포함하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병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하며,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 ⑤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는 것
 2. 100 병상 이상 300 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 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간병인이 피보험자의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간병인의 주요 업무(예시)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 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 ③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10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 ① 법 제4조의2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2.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 ② 법 제4조의2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 ③ 법 제4조의2 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④ 법 제4조의2 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2. 「치료감호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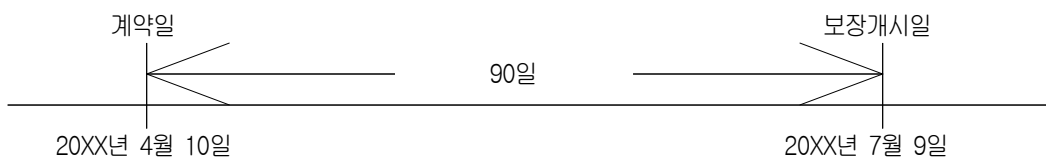
제11조(「보험가입금액」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 합계액」이라 함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10호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가입금액」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이미 지급한 보험금 합계액」의 지급한도 금액으로써 10억원으로 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잔고」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에서 제1항의 「이미 지급한 보험금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4호
 - 1)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2)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 내지 제10호 : 보험계약일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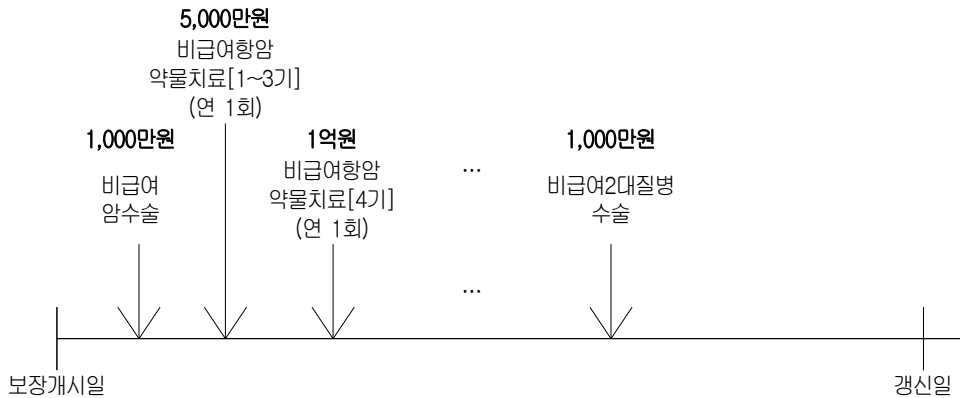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4호의 보장개시일(15세이상 피보험자) > (최초계약에 한함)



게 10억원으로 재설정(리셋, reset)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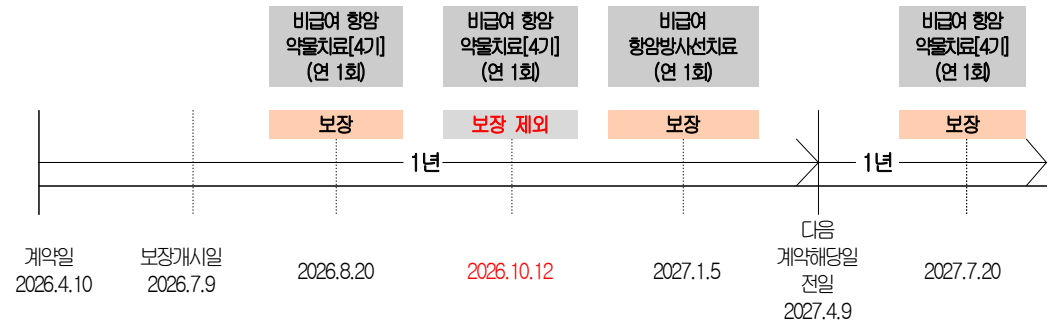
[제4항 관련 예시]

보험금 지급전 잔고	10억	9.9억	9.4억		8.4억		10억 (리셋)
보험금 지급후 잔고	9.9억	9.4억	8.4억		8.3억		-
이미 지급한 보험금 합계	1천만	6천만	1.6억	...	1.7억	보험기간 내 잔고 존재	0원 (리셋)
지급보험금	1천만	5천만	1억		1천만		-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4호 보장에서 정한 ‘연간 1회’ 한도는 각 호 별로 적용됩니다.

[제5항 관련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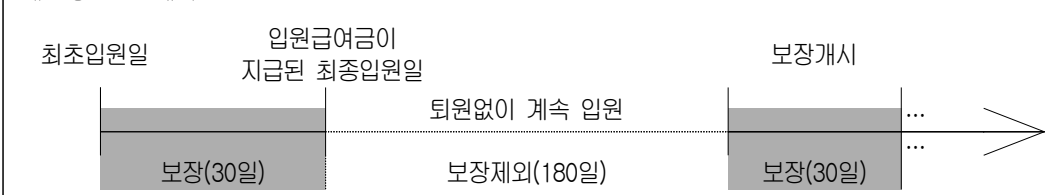
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8호에서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간병인 사용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 사용 시작일자과 간병인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8호 계산 예시>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X년 4월 1일, 지급금액 : 15만원
- 입원기간 및 간병인 사용일 예시
 - 입원기간 : 202X년 4월 1일 ~ 202X년 4월 30일
 - 간병인 사용일 및 사용금액
 - 202X년 4월 10일 ~ 4월 17일 사용 : 총 사용일수 8일, 총사용금액 88만원,
1일당 평균 7만원 이상에 해당.
→ 15만원 × 8일 = 120만원 지급
 - 202X년 4월 20일 ~ 4월 24일 오전, 4월 24일 오후, 4월 25일 오후 ~ 4월 27일 사용
: 총 사용일수 8일, 총 사용금액 52만원, 1일당 평균 7만원 미만에 해당
→ 7.5만원 × 8일 = 60만원 지급
- 지급금액 : 간병인 사용일수 16일, 보험금 120만원 + 60만원 = 180만원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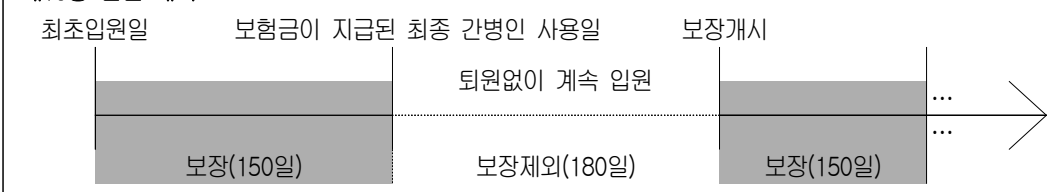
- ⑦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 ⑧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7호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 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8호 및 제9호의 지급일수는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각각 더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⑩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0호의 지급일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각각 더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⑪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 내지 제10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해당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⑫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 및 제7호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각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제12항 관련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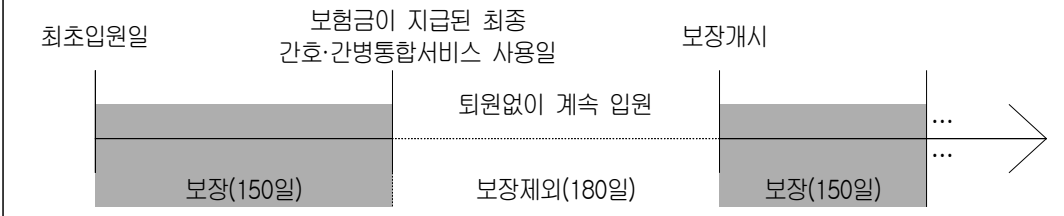
- 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8호 및 제9호가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각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의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제13항 관련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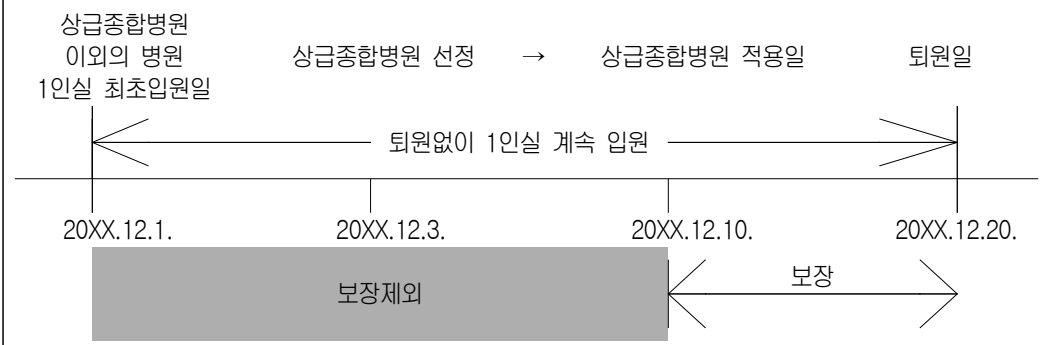
- ⑭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0호가 지급된 최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각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의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제14항 관련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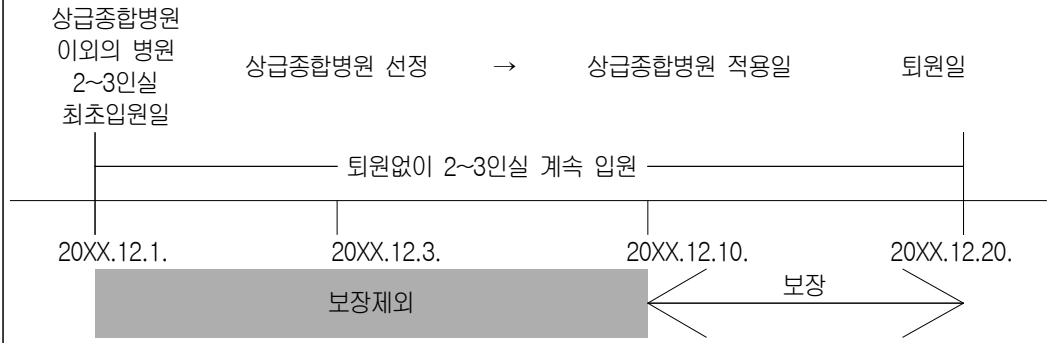
- ⑮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 내지 제10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12항 내지 제1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⑯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1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1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7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2~3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⑱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8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㉑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1인실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해당 「상급종합병원 1인실」 퇴원일까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㉒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7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해당 「상급종합병원 2~3인실」 퇴원일까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㉓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8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해당 「종합병원」 퇴원일까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2항 관련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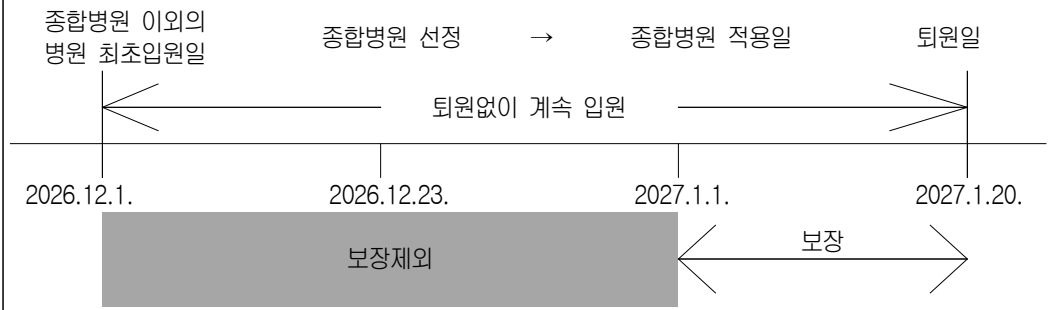
- 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7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3항 관련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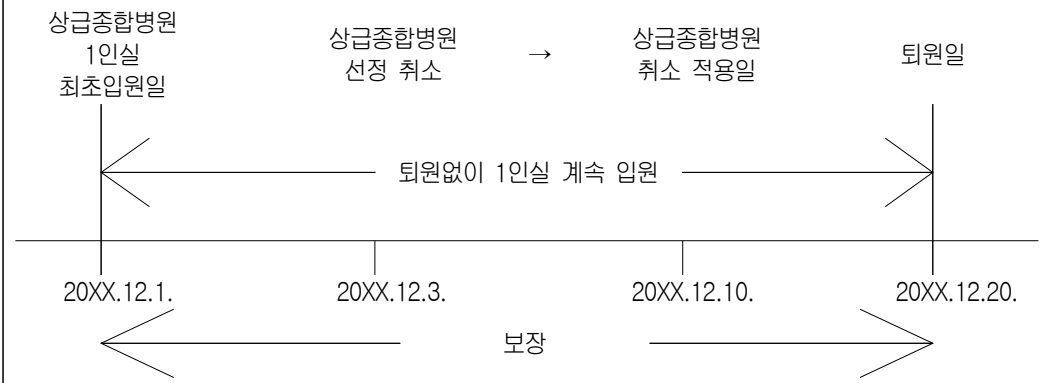
- 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8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4항 관련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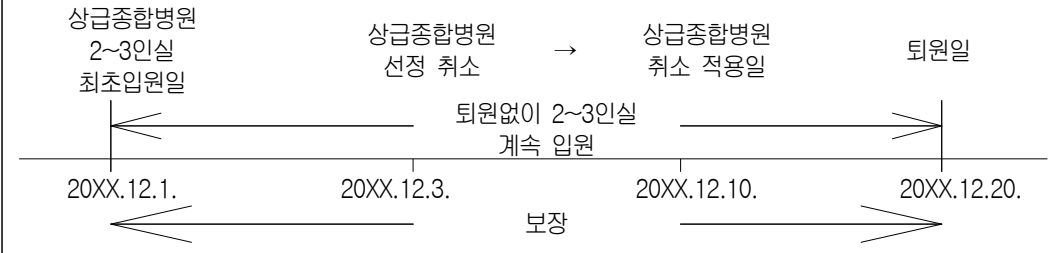
- 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거나 최초로 1인실 이외의 병실로 변경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5항 관련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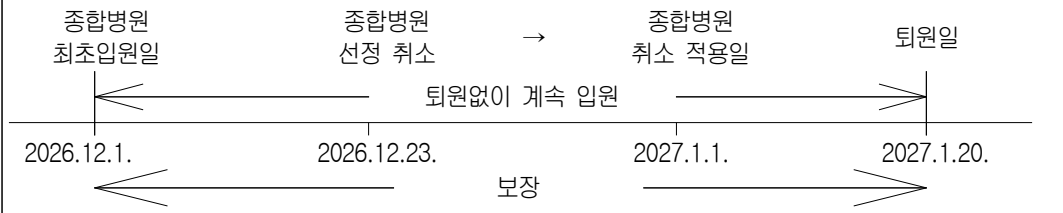
- ㉖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7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거나 최초로 2~3인실 이외의 병실로 변경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6항 관련 예시>



- 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8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7항 관련 예시>



- ㉕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㉖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㉗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1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 내지 제10호의 경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 내지 제10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4조(보험금 등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8호 내지 제9호 보장 관련하여, 제9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의 직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0호 보장 관련하여, 제10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여부 및 사용일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제15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7. 갱신행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16조(특별약관의 취소)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진단일부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전에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부부터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이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특별약관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부부터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이 발생한 경우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4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8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의 「잔고」가 없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79. 플래티넘 건강 리셋월렛 II (3대질병고액및중환자실치료, 특정질병수술및동반입원) (갱신형_2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암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 암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암수술비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수술 1회당 5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수술 1회당 1,000만원
	갱신 계약	갱신일로부터	수술 1회당 1,000만원

2.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방사선치료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방사선치료비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2,500만원 (연간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5,000만원 (연간 1회한)
	갱신 계약	갱신일로부터	5,000만원 (연간 1회한)

3.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약물치료비(1~3기암(병기구분불가암포함))**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1~3기암(병기구분불가암포함)」 및 「4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1~3기암(병기구분불가암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1~3기암(병기구분불가암포함)」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약물치료비 [1~3기암(병기구분불가암포함)]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2,500만원 (연간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5,000만원 (연간 1회한)
	갱신 계약	갱신일로부터	5,000만원 (연간 1회한)

4.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약물치료비(4기암)**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1~3기암(병기구분불가암포함)」 및 「4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4기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4기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약물치료비 [4기암]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5,000만원 (연간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1억원 (연간 1회한)
	갱신 계약	갱신일로부터	1억원 (연간 1회한)

5.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2대질병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 2대질병수술」을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2대질병수술비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수술 1회당 5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수술 1회당 1,000만원
	갱신 계약	갱신일로부터	수술 1회당 1,000만원

6. **암 중환자실치료비(종합병원)(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암 중환자실치료비(종합병원) (연간1회한)	1,000만원 (연간 1회한)

7. **2대질병 중환자실치료비(종합병원)(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구분별로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치료구분	지 급 금 액
2대질병 중환자실치료비(종합병원) (연간1회한)	뇌혈관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1,000만원 (연간 1회한)
	허혈성심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1,000만원 (연간 1회한)

8.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	수술 1회당 50만원

9. **특정순환계질환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9조(「특정순환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특정순환계질환 수술비	특정순환계질환 관혈수술비	최초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수술 1회당 25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수술 1회당 500만원
		갱신계약	갱신일부터	수술 1회당 500만원
	특정순환계질환 비관혈수술비	최초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수술 1회당 25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수술 1회당 500만원
		갱신계약	갱신일부터	수술 1회당 500만원

※ 이 보장은 아래의 총 2개의 세부보장으로 나뉩니다.

보 장
1) 특정순환계질환 관혈수술비 보장
2) 특정순환계질환 비관혈수술비 보장

10.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하 “수술동반입원”이라 합니다)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 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나.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6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수술을 받는 경우
 다. 상기 가목 및 나목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질병1~5종수술동반 입원비Ⅲ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1종)(1일-2일)	입원 1일당 10만원(2일한도)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2종)(1일-4일)	입원 1일당 10만원(4일한도)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3종)(1일-6일)	입원 1일당 10만원(6일한도)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4종)(1일-8일)	입원 1일당 25만원(8일한도)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5종)(1일-10일)	입원 1일당 50만원(10일한도)

※ 이 보장은 아래의 총 5개의 세부보장으로 나뉩니다.

보 장
1)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1종)(1일-2일) 보장
2)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2종)(1일-4일) 보장
3)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3종)(1일-6일) 보장
4)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4종)(1일-8일) 보장
5) 질병1~5종수술동반입원비Ⅲ(5종)(1일-10일) 보장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1~3기암(병기구분불가암포함)」 및 「4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4기」라 함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AJCC(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제8판 TNM 병기분류상 Stage4에 해당하는 경우
 2. FIGO(International Federation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분류상 “Stage4”에 해당하는 경우
 3. Astler-Coller 분류상 “stage D”에 해당하는 경우
 4. Jewett분류상 “stage D”에 해당하는 경우
 5. 원발불명암(최초 부위를 알 수 없는 암)이 진단된 경우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으로 진단되면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7. 「병기구분 불가암 분류표」(【별표32】참조)에 해당하는 암으로 진단 확정된 후 원격전이를 동반하여 재발하거나 원격전이 병변이 확인되는 경우
 8. 상기 기준이외의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병기분류방법으로 객관적인 병리학적 혹은 임상학적 의료기록 등에 근거하여 “TNM 병기 4기”에 준하는 단계라고 진단받은 경우
- ② 이 특별약관에서 「4기암」이라 함은 「4기」에 해당되면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1~3기암(병기구분불가암포함)」이라 함은 「4기암」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병기(암의 진행상태)]

병기란 암의 발견 당시의 진행 상태를 표현하는 말로 1기부터 4기로 분류되며, 암의 진행정도가 심해질수록 숫자가 올라갑니다.

[TNM병기]

임상적으로 각 장기에 발생하는 암을 T는 원발소(primary Tumor), N는 소속림프절(regional lymphNode), M는 원격전이(distant Metastasis)를 나타내는 머리문자를 가지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4기암」을 진단함에 있어서 임상학적 병기분류 및 조직학적 병기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기암」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조직학적 병기분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상학적 병기분류만으로 「4기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 ⑤ 제1항에서 AJCC(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제8판 TNM 병기분류가 개정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TNM 병기분류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4조(「2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2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별표17】참조)에 해당하는 1. 거미막하 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8. 기타 뇌혈관 질환,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10.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의 「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허혈성심질환 분류표」(【별표19】참조)에 해당하는 허혈성심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제1항의 「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뇌혈관조영술]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희게 촬영되는 물질(조영제)를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양전자 방출 단층술(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뇌척수액 검사]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제5조(「비급여 암수술」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비급여 암수술」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을 제거하거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수술」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비급여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을 제거하거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1~3기암(병기구분불가암포함)」 또는 「4기암」을 제거하거나 「1~3기암(병기구분불가암포함)」 또는 「4기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1~3기암(병기구분불가암포함)」 또는 「4기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비급여 2대질환수술」이라 함은 「2대질환」을 제거하거나 「2대질환」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2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수술」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⑤ 이 특별약관에서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⑥ 이 특별약관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 ⑦ 제1항 및 제4항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수술」은 제6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처치 및 수술료 중 직접적으로 대상 질병을 제거하거나 대상 질병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에 사용한 비용이 제5항 및 제6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⑧ 제2항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방사선치료료가 제5항 및 제6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방사선치료료에는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등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부수적인 행위는 제외됩니다.
- ⑨ 제3항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제5항 및 제6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제6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수술을 말합니다.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 :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0호 :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1~5종수술 분류표Ⅳ」(【별표100】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8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행한 레이저(Laser)수술 역시 「수술」에 포함합니다.

다만, 아래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④ 제3항의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이 특별약관에서 「관혈수술」이라 함은 병변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하며, 「대뇌내시경」,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하여 보상합니다.
- ⑥ 이 특별약관에서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을 말합니다.
 1. 「내시경수술」이라 함은 인체 내부를 특수의료기구를 이용한 직접영상(조영제 등을 통한 간접영상은 제외)을 통하여 보면서 시행하는 직접치료목적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제외합니다.
 2. 「카테터수술」 인체의 일부(주로 혈관)와 외부를 연결해주는 도관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직접치료목적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도관을 이용한 약물주입'과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합니다.
 3. 「신의료수술」 함은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어 있고 해당 부위에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행위를 말하며, 해당 부위에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적 방사선 조사'를 포함합니다. 다만,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도관을 이용한 약물 또는 방사성물질 주입'과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합니다.
-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⑧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상기 예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1~5종수술 분류표Ⅳ」(【별표100】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⑨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7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

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암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③ 제2항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는 「항암호르몬치료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④ 제2항의 「항암호르몬치료제」라 함은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암약물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호르몬 양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약제를 말합니다.

용어의 정의

·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제8조(「입원」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기관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하며,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는 것
 2. 100 병상 이상 300 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 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는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특정순환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33】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특정순환계질환」 중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의 「특정순환계질환」 중 「심혈관질환(특정)」의 진단확정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⑤ 제1항의 「특정순환계질환」 중 「4대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내시경검사, 대동맥조영술(aortography), 전산화단층촬영(CT) 및 자기공명영상법(MRI) 등 검사결과 상기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하며, 「특정순환계질환」 중 「죽상경화증(뇌, 심장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력·증상과 함께 혈액, 심전도, 혈관 도플러, 경동맥 초음파검사 등 검사결과 상기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순환계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⑥ 제2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순환계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용어설명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뇌혈관조영술]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희게 촬영되는 물질(조영제)를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γ 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여하여 그 분포상태의 단면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촬영법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뇌척수액 검사]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제10조(「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2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험기간 중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2대질병」으로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제11조(「보험가입금액」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 합계액」이라 함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10호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가입금액」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이미 지급한 보험금 합계액」의 지급한도 금액으로써 10억원으로 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잔고」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에서 제1항의 「이미 지급한 보험금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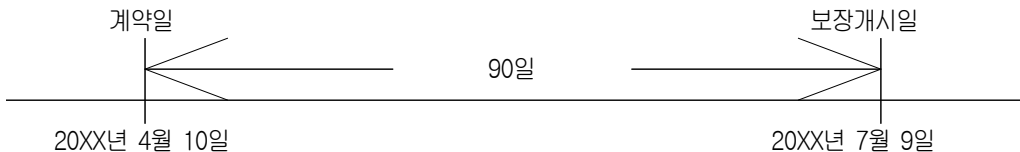
1)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2)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 제7호 내지 제10호 : 보험계약일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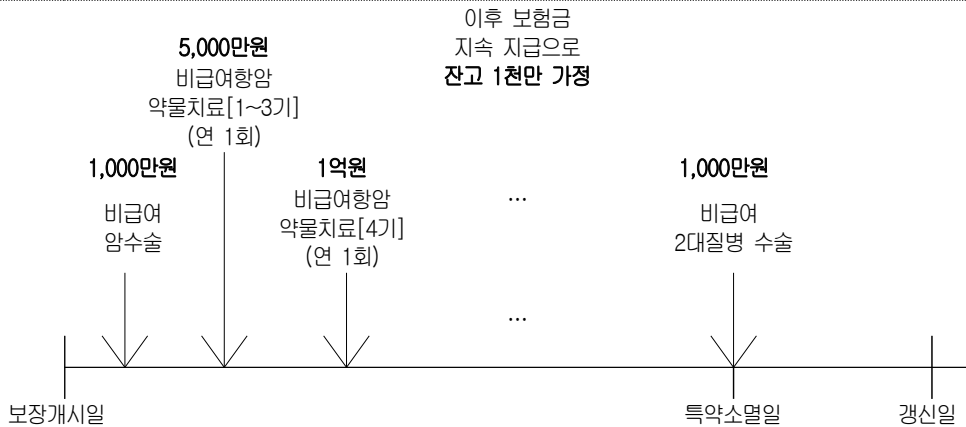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의 보장개시일(15세이상 피보험자) >
(최초계약에 한함)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10호의 경우, 「이미 지급한 보험금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2항 관련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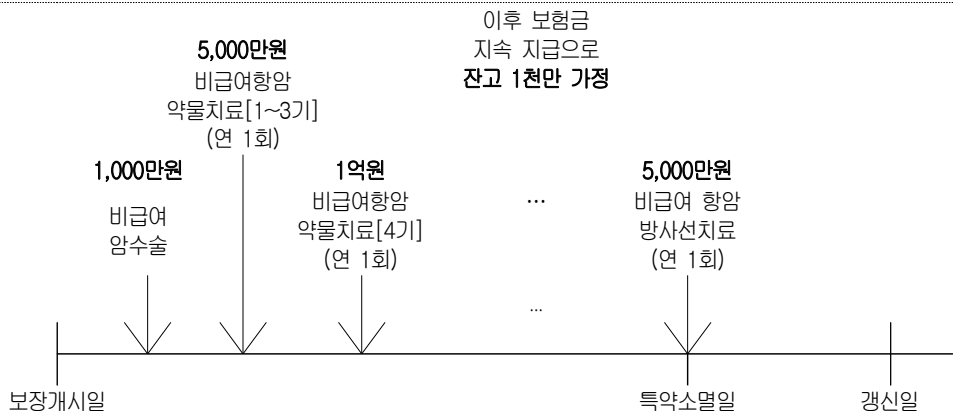
보험금 지급전 잔고	10억	9.9억	9.4억		1천만
보험금 지급후 잔고	9.9억	9.4억	8.4억		0원 (특약소멸)
이미 지급한 보험금 합계	1천만	6천만	1.6억	...	10억
지급보험금	1천만	5천만	1억		1천만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10호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잔고」보다 큰 경우 「잔고」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항 관련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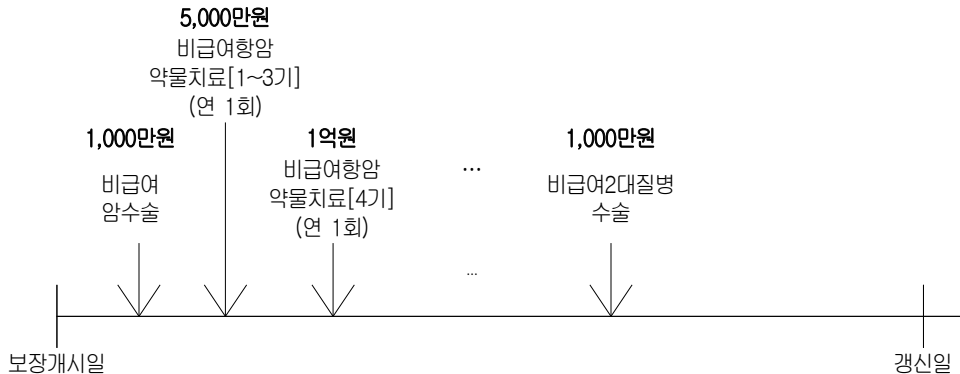
보험금 지급전 잔고	10억	9.9억	9.4억		1천만
보험금 지급후 잔고	9.9억	9.4억	8.4억		0원 (특약소멸)
이미 지급한 보험금 합계	1천만	6천만	1.6억	...	10억
지급보험금	1천만	5천만	1억		1천만 (잔고)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잔고」가 남아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이 갱신될 때마다 「보험가입금액」도 새롭게 10억원으로 재설정(리셋, reset)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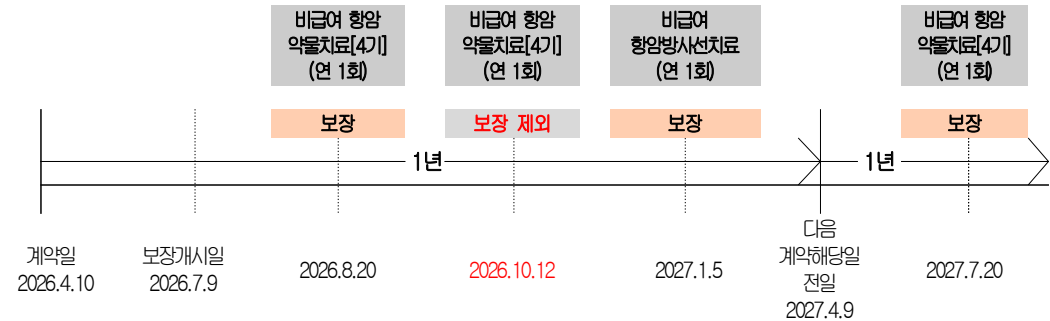
[제4항 관련 예시]

보험금 지급전 잔고	10억	9.9억	9.4억		8.4억		10억 (리셋)
보험금 지급후 잔고	9.9억	9.4억	8.4억		8.3억		-
이미 지급한 보험금 합계	1천만	6천만	1.6억	...	1.7억	보험기간 내 잔고 존재	0원 (리셋)
지급보험금	1천만	5천만	1억		1천만		-



-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7호 보장에서 정한 ‘연간 1회’ 한도는 각 호 별로 적용됩니다.

[제5항 관련 예시]



- 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8호 보장의 경우, 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하여 드립니다.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의 정의

같은 질병이라 함은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으로서, 치료 부위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치료의 목적이 동일한 질병일 경우 같은 질병에 해당합니다.

- ⑦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9호 보장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관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⑧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0호 보장의 경우, 지급일수는 1회 “수술동반입원”당 세부보장별 입원일수 한도를 따릅니다.
- 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0호 보장의 경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0호 ‘나’목의 수술은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입원일수 한도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 동반입원비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동반입원비에서 이미 지급한 수술동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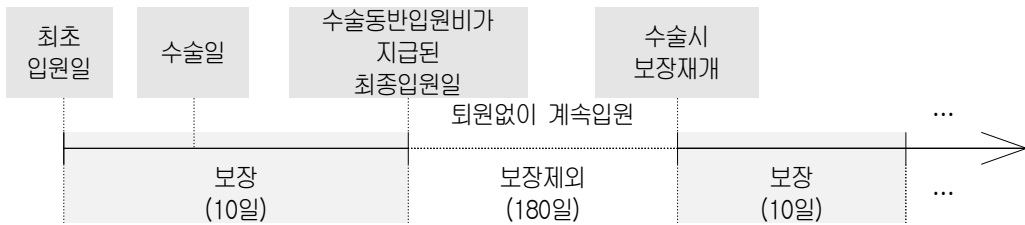
입원비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함은 같은 수술실에서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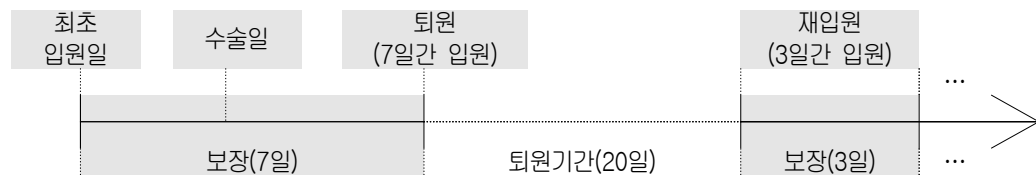
- ⑩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0호 보장의 경우,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보며, 새로운 입원일 이후 같은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수술동반입원”으로 보아 새로운 입원일 1일째 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⑪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0호 보장의 경우, 다음과 같이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보상예시> 질병 5종에 해당하는 수술동반입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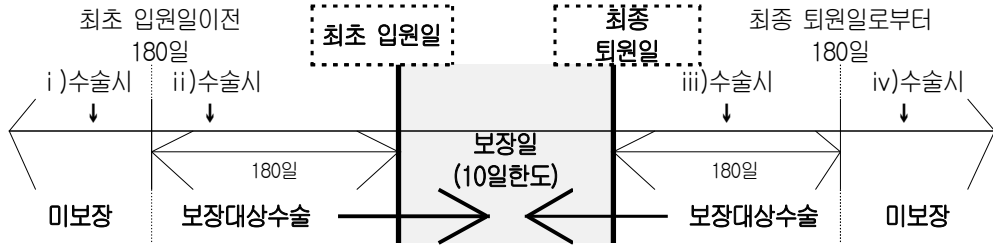
- ⑫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0호 보장의 경우, “수술” 이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보상예시> 동일한 질병(5종)으로 7일간 수술동반입원, 퇴원 후 3일간 재입원시



- 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0호 보장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수술동반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수술동반입원”에 대하여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11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⑭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0호 보장의 경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의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할 때에는 회사는 보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⑮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0호 보장의 경우,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최초 입원일 이전 180일부터 최초 입원일 이내” 또는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기 이전” 수술이며,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보험금을 제8항 내지 제14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특히, 같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제9항에 따라 먼저 한 수술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보장합니다.

<질병5종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 보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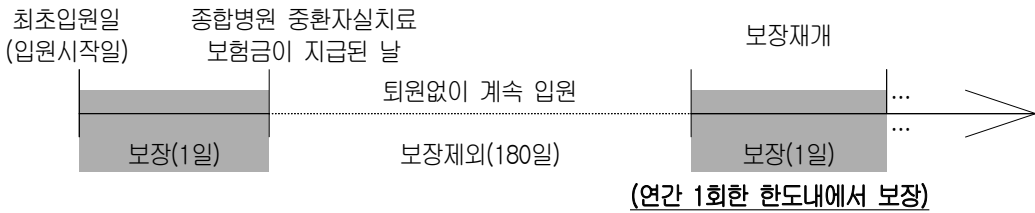


- i) 최초 입원일 이전 180일 전 수술시 미보장
- ii) 최초 입원일 이전 180일부터 최초 입원일 이내 수술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 1~5종수술동반입원비III를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8항 내지 제14항에 따라 보장
- iii)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일 이전 수술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0호 보장을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8항 내지 제14항에 따라 보장
- iv) 최종입원 퇴원일의 180일 경과일 이후 수술시 미보장

- ⑯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 및 제7호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는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작한 일자(이하 입원시작일이라 합니다)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에서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는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⑱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7호의 「뇌혈관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는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뇌혈관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혈관질환」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⑲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7호의 「허혈성심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는 「허혈성심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허혈성심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허혈성심질환」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혈성심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허혈성심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⑳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입원이라도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금이 지급된 입원시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㉑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7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일한 「뇌혈관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뇌혈관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뇌혈관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입원시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뇌혈관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㉒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7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허혈성심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일한 「허혈성심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허혈성심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허혈성심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입원시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허혈성심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보

형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예시]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입원시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



- ㉓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다른 종합병원 중환자실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감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7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다른 종합병원 중환자실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7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다른 종합병원 중환자실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허혈성심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예시] 동일한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날짜	구분	보장여부	사유
2026.3.1	보장개시일	-	-
2026.3.5. ~ 3.30	중환자실입원(1차)	지급	-
2026.10.1. ~ 10.15	중환자실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 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7.3.15. ~ 3.30	중환자실입원(3차)	지급	1차 퇴원 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 ㉖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중환자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중환자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을 입원시작일로 보아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㉗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을 입원시작일로 보아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㉙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㉚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6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1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 내지 제8호, 제10호의 경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 내지 제8호, 제10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8호 및 제10호의 경우,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아래의 질병수술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5. 비만(E66) 수술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8호 및 제10호의 경우,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14조(보험금 등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5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7.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16조(특별약관의 취소)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진단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전에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이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특별약관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이 발생한 경우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8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의 「잔고」가 없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80.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280-1.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280-2.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80-3.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280-1, 280-2는 비갱신형으로 운영하며,
280-3는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 암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비급여 암주요치료비 (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감액없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비급여 암주요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비급여 암주요치료」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을 제거하거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수술」을 받은 경우

2.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3.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② 「비급여 암주요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비급여 암주요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단순 호르몬제 치료(다만, 호르몬성 항암치료는 「비급여 암주요치료」에 포함됩니다)

단순 호르몬제 치료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체내 부족한 호르몬의 보충 및 조절 등을 위해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피임 목적 호르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및 인슐린 주사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비급여 암주요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 ⑤ 제1항 제1호의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수술」은 수술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처치 및 수술료 중 직접적으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에 사용한 비용이 제3항 및 제4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⑥ 제1항 제2호의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방사선치료료가 제3항 및 제4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방사선치료료에는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등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부수적인 행위는 제외됩니다.
- ⑦ 제1항 제3호의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제3항 및 제4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용어의 정의

·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비급여 암주요치료”로 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③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제4조(「암수술」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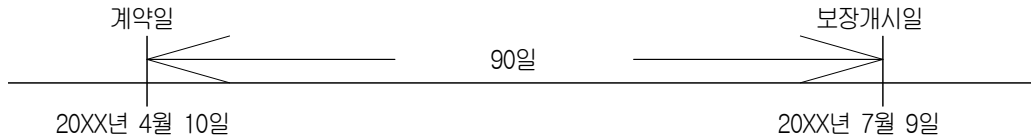
제5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 가.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나.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의 보장개시일
(15세이상 피보험자)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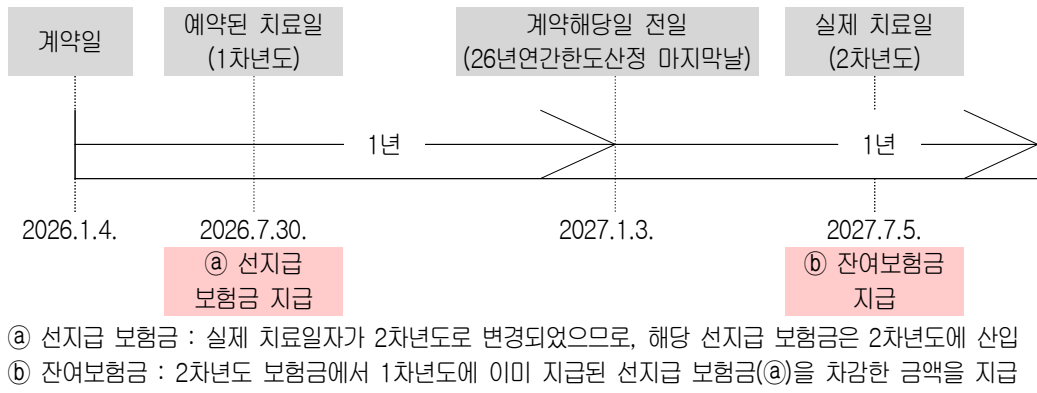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마지막 날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비급여 암주요치료(암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를 각각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만 지급합니다.

제6조의2(보험금 선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주요치료를 받기 위해 치료일자 예약 후 제6조의3(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선지급 보험금」이란 예약된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될 것으로 계산한 보험금의 50%를 말합니다. 단, 「선지급 보험금」은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이 경우 「선지급 보험금」은 변경된 예약내용을 기준으로 제2항을 적용합니다.
- ④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고, 변경된 예약내용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과 변경된 예약내용에 따라 계산된 「선지급 보험금」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 ⑤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어, 변경된 예약내용이 아래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후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예약내용의 변경을 회사에 알린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⑥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선지급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잔여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약된 치료일자와 다르게 실제 치료일자가 변경된 경우, 실제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잔여보험금을 계산합니다.

【 실제 치료일자가 변경된 경우 잔여보험금 보상예시 】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예약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의 반환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라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미 지급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회사가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⑨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선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금액을 보험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⑩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치료항목에 대한 잔여보험금 청구 이전에는 동일한 치료항목에 대하여 추가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6조의3(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5.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진단서, 치료 예약 확인서(치료 예정 병원, 치료 예정 일자, 치료 내용 포함), 진료기록부 등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

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0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283-3.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7.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81.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 암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비급여 암주요치료비 (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별표22-1】 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갑상선암」 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별표22-1】 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비급여 암주요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비급여 암주요치료」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을 제거하거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수술」을 받은 경우
 2.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3.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② 「비급여 암주요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비급여 암주요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단순 호르몬제 치료(다만, 호르몬성 항암치료는 「비급여 암주요치료」에 포함됩니다)

단순 호르몬제 치료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체내 부족한 호르몬의 보충 및 조절 등을 위해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피임 목적 호르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및 인슐린 주사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비급여 암주요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서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 ⑤ 제1항 제1호의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수술」은 수술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처치 및 수술료 중 직접적으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에 사용한 비용이 제3항 및 제4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⑥ 제1항 제2호의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방사선치료료가 제3항 및 제4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방사선치료료에는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등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부수적인 행위는 제외됩니다.
- ⑦ 제1항 제3호의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제3항 및 제4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비급여 암주요치료”로 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③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제4조(「암수술」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5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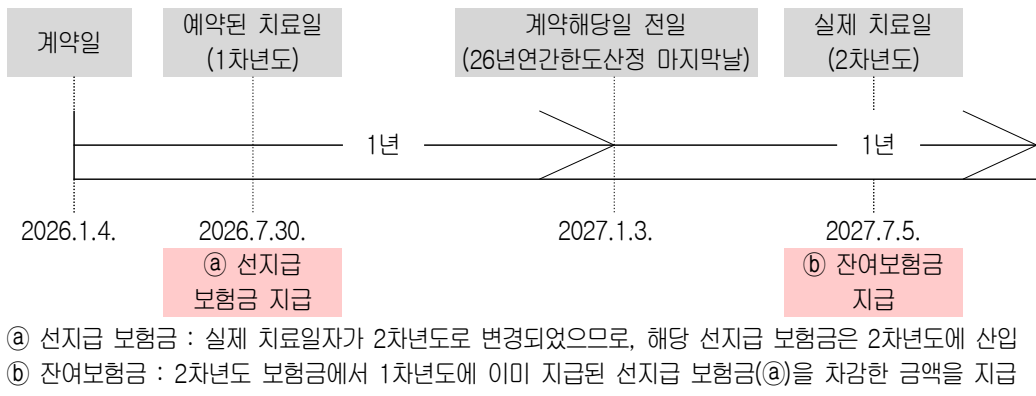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마지막 날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비급여 암주요치료(암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를 각각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1회한)만 지급합니다.

제6조의2(보험금 선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주요치료를 받기 위해 치료일자 예약 후 제6조의3(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선지급 보험금」이란 예약된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될 것으로 계산한 보험금의 50%를 말합니다. 단, 「선지급 보험금」은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선지급 보험금」은 변경된 예약내용을 기준으로 제2항을 적용합니다.
- ④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고, 변경된 예약내용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과 변경된 예약내용에 따라 계산된 「선지급 보험금」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 ⑤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어, 변경된 예약내용이 아래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후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예약내용의 변경을 회사에 알린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⑥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보

협약에서 「선지급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잔여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약된 치료일자와 다르게 실제 치료일자가 변경된 경우, 실제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잔여보험금을 계산합니다.

【 실제 치료일자가 변경된 경우 잔여보험금 보상예시 】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예약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의 반환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라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미 지급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회사가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⑨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선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금액을 보험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⑩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치료항목에 대한 잔여보험금 청구 이전에는 동일한 치료항목에 대하여 추가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6조의3(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5.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 진단서, 치료 예약 확인서(치료 예정 병원, 치료 예정 일자, 치료 내용 포함), 진료기록부 등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환금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82.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주요치료Ⅲ(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 항암호르몬약물치료, 암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세부보장별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 (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연간 1회한)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보장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_암수술비(연간1회한)(감액없음) 보장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_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 보장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_항암약물치료비(호르몬치료제외)(연간1회한)(감액없음) 보장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_항암호르몬약물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 보장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_암중환자실치료비(종합병원)(연간1회한)(감액없음) 보장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2항의 「암」에서 제3항의 「유사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22-2】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22-3】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암 주요치료Ⅲ」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주요치료Ⅲ」라 함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 항암호르몬약물치료, 암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② 「암 주요치료Ⅲ」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영양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단순 호르몬제 치료(다만, 호르몬성 항암치료는 「암 주요치료Ⅲ」에 포함됩니다)

단순 호르몬제 치료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체내 부족한 호르몬의 보충 및 조절 등을 위해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피임 목적 호르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및 인슐린 주사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Ⅲ」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제4조(「암수술」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장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5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니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③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에서 제4항에서 정한 「항암호르몬약물치료」를 제외한 치료를 말합니다.
- ④ 「항암호르몬약물치료」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호르몬성 항암제”를 말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약효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 617(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약제
2.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의약품 분류체계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에서 부여한 국내 의약품 ATC코드에서 L02(항악성종양제 및 면역조절제 중 내분비 치료제)에 해당하는 약제

호르몬성 항암제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거나 조절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약물

- ⑤ 제4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의 개정예 따라 제4항 제1호의 "약효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 ⑥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의약품 분류체계의 개정으로 제4항 제2호의 "ATC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국내 의약품에 대하여 "ATC코드"를 부여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기준을 따릅니다.

제6조(「암중환자실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중환자실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험기간 중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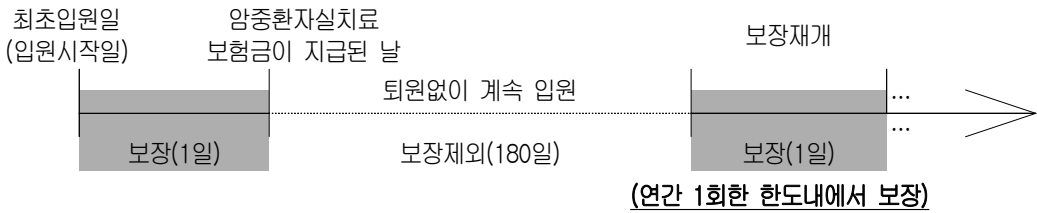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2.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의 보장개시일(15세이상 피보험자) >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중환자실치료」는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작한 일자(이하 입원시작일이라 합니다)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중환자실치료」는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암(유사암제외)」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유사암제외)」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입원시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예시]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입원시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



- ⑤ 피보험자가 다른 종합병원 중환자실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예시]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날짜	구분	보장여부	사유
2026.3.1	보장개시일	-	-
2026.3.5. ~ 3.30	중환자실입원(1차)	지급	-
2026.10.1. ~ 10.15	중환자실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 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7.3.15. ~ 3.30	중환자실입원(3차)	지급	1차 퇴원 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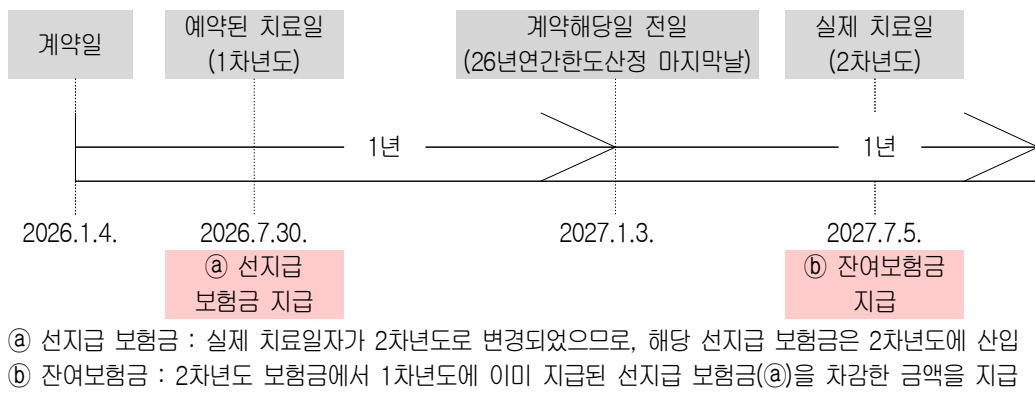
-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중환자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중환자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을 입원시작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을 입원시작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⑩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7조의2(보험금 선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주요치료Ⅲ를 받기 위해 치료일자 예약 후 제7조의3(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암 주요치료Ⅲ 중 암중환자실치료 및 항암호르몬약물치료는 「선지급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선지급 보험금」이란 예약된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될 것으로 계산한 보험금의 50%를 말합니다. 단, 「선지급 보험금」은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이 경우 「선지급 보험금」은 변경된 예약내용을 기준으로 제2항을 적용합니다.
- ④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고, 변경된 예약내용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과 변경된 예약내용에 따라 계산된 「선지급 보험금」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 ⑤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어, 변경된 예약내용이 아래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후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예약내용의 변경을 회사에 알린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⑥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선지급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잔여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약된 치료일자와 다르게 실제 치료일자가 변경된 경우, 실제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잔여보험금을 계산합니다.

【 실제 치료일자가 변경된 경우 잔여보험금 보상예시 】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예약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의 반환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라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미 지급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회사가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⑨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선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금액을 보험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⑩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치료항목에 대한 잔여보험금 청구 이전에는 동일한 치료항목에 대하여 추가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7조의3(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5.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진단서, 치료 예약 확인서(치료 예정 병원, 치료 예정 일자, 치료 내용 포함), 진료기록부 등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1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83.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주요치료Ⅲ(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 항암호르몬약물치료, 암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세부보장별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 (치료별 연간1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보장
암주요치료비 II (유사암제외)_암수술비(연간1회한)(면책없음, 감액없음) 보장
암주요치료비 II (유사암제외)_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면책없음, 감액없음) 보장
암주요치료비 II (유사암제외)_항암약물치료비(호르몬치료제외)(연간1회한)(면책없음, 감액없음) 보장
암주요치료비 II (유사암제외)_항암호르몬약물치료비(연간1회한)(면책없음, 감액없음) 보장
암주요치료비 II (유사암제외)_암중환자실치료비(종합병원)(연간1회한)(면책없음, 감액없음) 보장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2항의 「암」에서 제3항의 「유사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 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22-2】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22-3】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암 주요치료III」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주요치료III」라 함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 항암호르몬약물치료, 암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 ② 「암 주요치료III」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단순 호르몬제 치료(다만, 호르몬성 항암치료는 「암 주요치료III」에 포함됩니다)

단순 호르몬제 치료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체내 부족한 호르몬의 보충 및 조절 등을 위해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피임 목적 호르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및 인슐린 주사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III”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제4조(「암수술」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5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③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에서 제4항에서 정한 「항암호르몬약물치료」를 제외한 치료를 말합니다.
- ④ 「항암호르몬약물치료」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호르몬성 항암제”를 말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약효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 617(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약제
 2.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의약품 분류체계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에서 부여한 국내 의약품 ATC코드에서 L02(항악성종양제 및 면역조절제 중 내분비 치료제)에 해당하는 약제

호르몬성 항암제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거나 조절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약물

- ⑤ 제4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제4항 제1호의 “약효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 ⑥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의약품 분류체계의 개정으로 제4항 제2호의 “ATC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국내 의약품에 대하여 “ATC코드”를 부여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기준을 따릅니다.

제6조(「암중환자실치료」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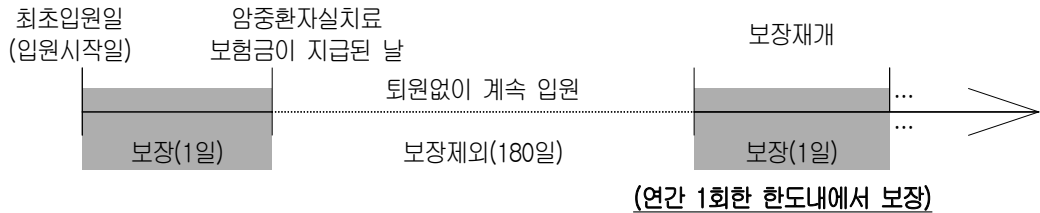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중환자실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험기간 중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중환자실치료」는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작한 일자(이하 입원시작일이라 합니다)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중환자실치료」는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암(유사암제외)」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유사암제외)」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입원시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예시]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입원시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



- ④ 피보험자가 다른 종합병원 중환자실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예시]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날짜	구분	보장여부	사유
2026.3.1	보장개시일	-	-
2026.3.5. ~ 3.30	중환자실입원(1차)	지급	-
2026.10.1. ~ 10.15	중환자실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 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7.3.15. ~ 3.30	중환자실입원(3차)	지급	1차 퇴원 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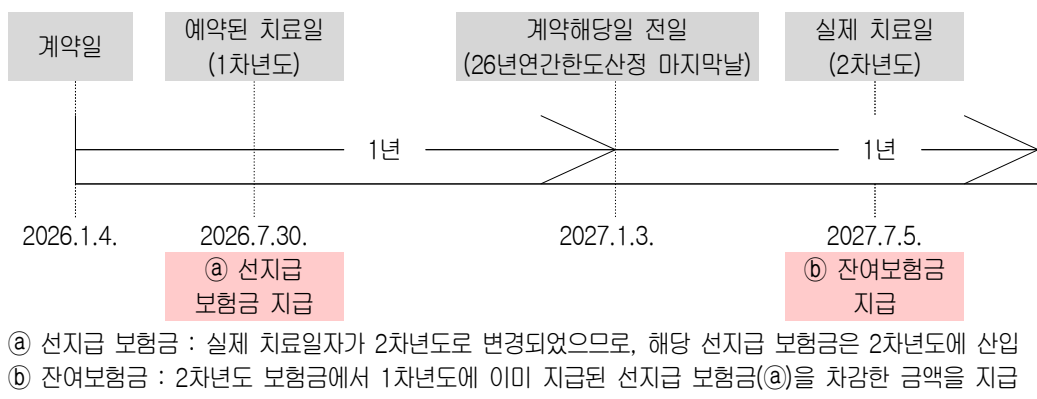
- ⑤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중환자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중환자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을 입원시작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을 입원시작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7조의2(보험금 선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주요치료III를 받기 위해 치료일자 예약 후 제7조의3(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암 주요치료III 중 암중환자실치료 및 항암호르몬약물치료는 「선지급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선지급 보험금」이란 예약된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될 것으로 계산한 보험금의 50%를 말합니다. 단, 「선지급 보험금」은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이 경우 「선지급 보험금」은 변경된 예약내용을 기준으로 제2항을 적용합니다.
- ④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고, 변경된 예약내용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과 변경된 예약내용에 따라 계산된 「선지급 보험금」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 ⑤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어, 변경된 예약내용이 아래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후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예약내용의 변경을 회사에 알린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⑥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선지급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잔여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약된 치료일자와 다르게 실제 치료일자가 변경된 경우, 실제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잔여보험금을 계산합니다.

【 실제 치료일자가 변경된 경우 잔여보험금 보상예시 】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예약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의 반환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라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미 지급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회사가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⑨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선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금액을 보험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⑩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치료항목에 대한 잔여보험금 청구 이전에는 동일한 치료항목에 대하여 추가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7조의3(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5.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 진단서, 치료 예약 확인서(치료 예정 병원, 치료 예정 일자, 치료 내용 포함), 진료기록부 등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84. 암주요치료비 II(유사암)(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주요치료비 II(유사암)(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주요치료 II(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 항암호르몬약물치료, 암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구분별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치료구분	지 급 금 액
암주요치료비 II(유사암) (치료별 연간1회한) (감액없음)	암수술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항암방사선치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항암호르몬약물치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x 50% (연간 1회한)
	암중환자실치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제2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별표22-2】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별표22-3】 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암 주요치료Ⅲ」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주요치료Ⅲ」라 함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 항암호르몬약물치료를 말합니다.
- ② 「암 주요치료Ⅲ」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단순 호르몬제 치료(다만, 호르몬성 항암치료는 「암 주요치료Ⅲ」에 포함됩니다)

단순 호르몬제 치료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체내 부족한 호르몬의 보충 및 조절 등을 위해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피임 목적 호르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및 인슐린 주사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Ⅲ”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제4조(「암수술」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5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암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③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에서 제4항에서 정한 「항암호르몬약물치료」를 제외한 치료를 말합니다.
- ④ 「항암호르몬약물치료」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호르몬성 항암제”를 말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약효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 617(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약제
 2.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의약품 분류체계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에서 부여한 국내 의약품 ATC코드에서 L02(항악성종양제 및 면역조절제 중 내분비 치료제)에 해당하는 약제

호르몬성 항암제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거나 조절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약물

- ⑤ 제4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제4항 제1호의 “약효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 ⑥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의약품 분류체계의 개정으로 제4항 제2호의 “ATC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국내 의약품에 대하여 “ATC코드”를 부여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기준을 따릅니다.

제6조(「암중환자실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중환자실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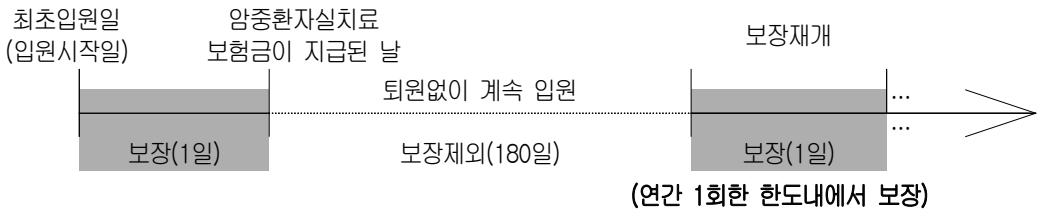
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험기간 중에 「유사암」으로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중환자실치료」는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작한 일자(이하 입원시작일이라 합니다)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중환자실치료」는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유사암」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유사암」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유사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유사암」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유사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유사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일한 「유사암」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입원 시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예시]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입원시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



- ④ 피보험자가 다른 종합병원 중환자실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예시] 동일한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날짜	구분	보장여부	사유
2026.3.1	보장개시일	-	-
2026.3.5. ~ 3.30	중환자실입원(1차)	지급	-
2026.10.1. ~ 10.15	중환자실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 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7.3.15. ~ 3.30	중환자실입원(3차)	지급	1차 퇴원 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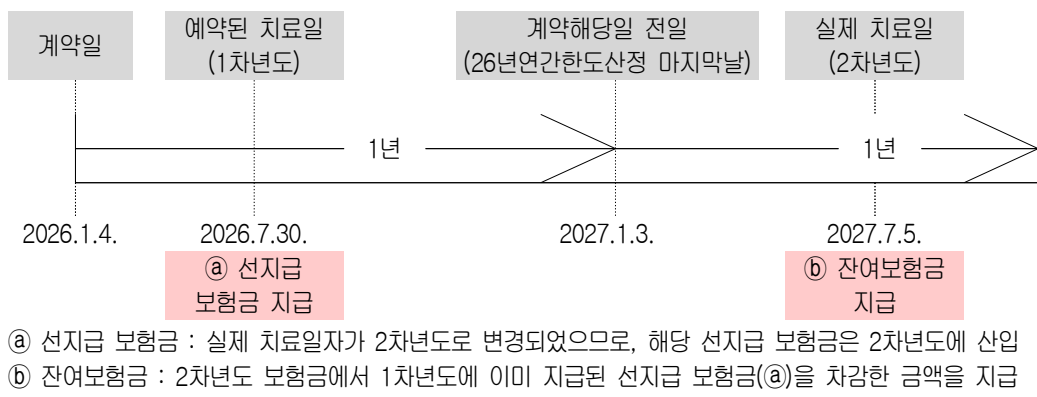
- ⑤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중환자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중환자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을 입원시작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을 입원시작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

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7조의2(보험금 선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주요치료III를 받기 위해 치료일자 예약 후 제7조의3(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암 주요치료III 중 암중환자실치료 및 항암호르몬약물치료는 「선지급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선지급 보험금」이란 예약된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될 것으로 계산한 보험금의 50%를 말합니다. 단, 「선지급 보험금」은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선지급 보험금」은 변경된 예약내용을 기준으로 제2항을 적용합니다.
- ④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고, 변경된 예약내용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과 변경된 예약내용에 따라 계산된 「선지급 보험금」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 ⑤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어, 변경된 예약내용이 아래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후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예약내용의 변경을 회사에 알린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⑥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선지급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잔여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약된 치료일자와 다르게 실제 치료일자가 변경된 경우, 실제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잔여보험금을 계산합니다.

【 실제 치료일자가 변경된 경우 잔여보험금 보상에시 】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예약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의 반환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라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미 지급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회사가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⑨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선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금액을 보험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⑩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치료항목에 대한 잔여보험금 청구 이전에는 동일한 치료 항목에 대하여 추가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7조의3(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5.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 진단서, 치료 예약 확인서(치료 예정 병원, 치료 예정 일자, 치료 내용 포함), 진료기록부 등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85.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 (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5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에서 암 주요치료Ⅲ(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 항암호르몬약물치료, 암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세부보장별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보장
상급종합병원 II 암주요치료비 II (유사암제외)_암수술비(연간1회한)(감액없음) 보장
상급종합병원 II 암주요치료비 II (유사암제외)_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 보장
상급종합병원 II 암주요치료비 II (유사암제외)_항암약물치료비(호르몬치료제외)(연간1회한)(감액없음) 보장
상급종합병원 II 암주요치료비 II (유사암제외)_항암호르몬약물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 보장
상급종합병원 II 암주요치료비 II (유사암제외)_암중환자실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 보장

제2조(「상급종합병원」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 II」 이라 함은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을 말합니다.

제3조(「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및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에서 정한 국립암센터의 부속병원을 말합니다.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한다.

[암관리법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 ① 국립암센터에 연구소,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제4조(「원자력의학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원자력의학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및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에서 정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속병원을 말합니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한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 ①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2항의 「암」에서 제3항의 「유사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22-2】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22-3】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암 주요치료Ⅲ」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주요치료Ⅲ」라 함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 항암호르몬약물치료, 암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 ② 「암 주요치료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영양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단순 호르몬제 치료(다만, 호르몬성 항암치료는 「암 주요치료Ⅲ」에 포함됩니다)

단순 호르몬제 치료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체내 부족한 호르몬의 보충 및 조절 등을 위해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피임 목적 호르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및 인슐린 주사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Ⅲ」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제7조(「암수술」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장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8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니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③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에서 제4항에서 정한 「항암호르몬약물치료」를 제외한 치료를 말합니다.
- ④ 「항암호르몬약물치료」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호르몬성 항암제”를 말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약효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 617(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약제
2.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의약품 분류체계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에서 부여한 국내 의약품 ATC코드에서 L02(항악성종양제 및 면역조절제 중 내분비 치료제)에 해당하는 약제

호르몬성 항암제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거나 조절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약물

- ⑤ 제4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의 개정예 따라 제4항 제1호의 "약효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 ⑥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의약품 분류체계의 개정으로 제4항 제2호의 "ATC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국내 의약품에 대하여 "ATC코드"를 부여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기준을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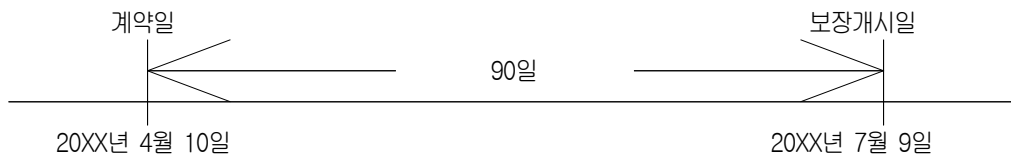
제9조(「암중환자실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중환자실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험기간 중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제2조(「상급종합병원」 등의 정의) 제2항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Ⅱ의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제1항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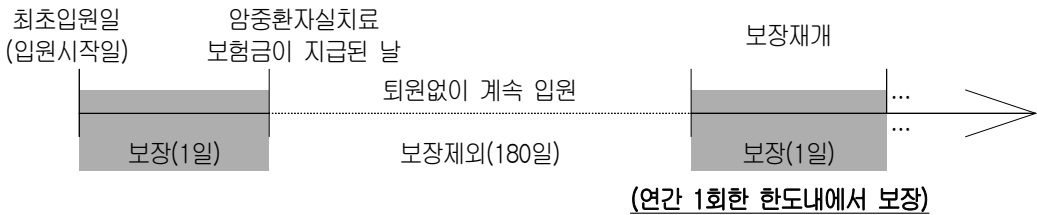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2.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의 보장개시일 (15세이상 피보험자) >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중환자실치료」는 상급종합병원Ⅱ의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작한 일자(이하 입원시작일이라 합니다)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중환자실치료」는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암(유사암제외)」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유사암제외)」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입원시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예시]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입원시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



- ⑤ 피보험자가 다른 상급종합병원Ⅱ 중환자실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예시]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날짜	구분	보장여부	사유
2026.3.1	보장개시일	-	-
2026.3.5. ~ 3.30	중환자실입원(1차)	지급	-
2026.10.1. ~ 10.15	중환자실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 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7.3.15. ~ 3.30	중환자실입원(3차)	지급	1차 퇴원 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Ⅱ 중환자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Ⅱ 중환자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을 입원시작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Ⅱ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상급종합병원Ⅱ에 해당하게 된 경우 상급종합병원Ⅱ 적용일을 입원시작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⑩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12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5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86.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 (치료별 연간1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에서 암 주요치료Ⅲ(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 항암호르몬약물치료, 암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세부보장별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보장
상급종합병원Ⅱ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_암수술비(연간1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상급종합병원Ⅱ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_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상급종합병원Ⅱ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_항암약물치료비(호르몬치료제외)(연간1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상급종합병원Ⅱ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_항암호르몬약물치료비(연간1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상급종합병원Ⅱ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_암중환자실치료비(연간1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보장

제2조(「상급종합병원」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Ⅱ」 이라 함은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을 말합니다.

제3조(「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및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에서 정한 국립암센터의 부속병원을 말합니다.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한다.

[암관리법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① 국립암센터에 연구소,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제4조(「원자력의학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원자력의학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및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에서 정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속병원을 말합니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한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①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2항의 「암」에서 제3항의 「유사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22-2】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22-3】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암 주요치료Ⅲ」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주요치료Ⅲ」라 함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 항암호르몬약물치료, 암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 ② 「암 주요치료Ⅲ」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단순 호르몬제 치료(다만, 호르몬성 항암치료는 「암 주요치료Ⅲ」에 포함됩니다)

단순 호르몬제 치료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체내 부족한 호르몬의 보충 및 조절 등을 위해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피임 목적 호르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및 인슐린 주사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Ⅲ”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제7조(「암수술」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꽃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8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③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에서 제4항에서 정한 「항암호르몬약물치료」를 제외한 치료를 말합니다.
- ④ 「항암호르몬약물치료」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호르몬성 항암제”를 말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약효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 617(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약제
 2.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의약품 분류체계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에서 부여한 국내 의약품 ATC코드에서 L02(항악성종양제 및 면역조절제 중 내분비 치료제)에 해당하는 약제

호르몬성 항암제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거나 조절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약물

- ⑤ 제4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제4항 제1호의 “약효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 ⑥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의약품 분류체계의 개정으로 제4항 제2호의 “ATC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국내 의약품에 대하여 “ATC코드”를 부여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기준을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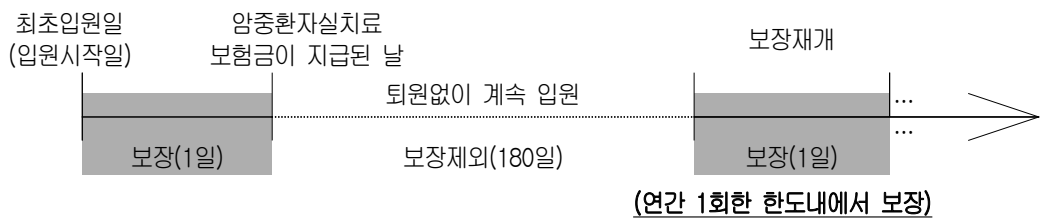
제9조(「암중환자실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중환자실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험기간 중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제2조(「상급종합병원」 등의 정의) 제2항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Ⅱ의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중환자실치료」는 상급종합병원Ⅱ의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작한 일자(이하 입원시작일이라 합니다)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중환자실치료」는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암(유사암제외)」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유사암제외)」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입원시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예시]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입원시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



- ④ 피보험자가 다른 상급종합병원Ⅱ 중환자실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예시]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날짜	구분	보장여부	사유
2026.3.1	보장개시일	-	-
2026.3.5. ~ 3.30	중환자실입원(1차)	지급	-
2026.10.1. ~ 10.15	중환자실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 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7.3.15. ~ 3.30	중환자실입원(3차)	지급	1차 퇴원 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 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Ⅱ 중환자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Ⅱ 중환자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을 입원시작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Ⅱ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상급종합병원Ⅱ에 해당하게 된 경우 상급종합병원Ⅱ 적용일을 입원시작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12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87.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 (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에서 암 주요치료Ⅲ(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 항암호르몬약물치료, 암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구분별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치료구분	지 급 금 액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 (치료별 연간1회한) (감액없음)	암수술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항암방사선치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항암호르몬약물치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x 50% (연간 1회한)
	암중환자실치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제2조(「상급종합병원」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Ⅱ」이라 함은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을 말합니다.

제3조(「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및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에서 정한 국립암센터의 부속병원을 말합니다.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한다.

[암관리법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 ① 국립암센터에 연구소,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제4조(「원자력의학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원자력의학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및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에서 정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속병원을 말한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한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 ①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3.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22-2】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4.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22-3】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한다.
- ②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암 주요치료Ⅲ」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주요치료Ⅲ」라 함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 항암호르몬약물치료, 암중환자실치료를 말한다.
- ② 「암 주요치료Ⅲ」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단순 호르몬제 치료(다만, 호르몬성 항암치료는 「암 주요치료Ⅲ」에 포함됩니다)

단순 호르몬제 치료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체내 부족한 호르몬의 보충 및 조절 등을 위해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피임 목적 호르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및 인슐린 주사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III”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제7조(「암수술」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8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③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에서 제4항에서 정한 「항

암호르몬약물치료」를 제외한 치료를 말합니다.

- ④ 「항암호르몬약물치료」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호르몬성 항암제"를 말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약효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 617(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약제
 2.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의약품 분류체계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에서 부여한 국내 의약품 ATC코드에서 L02(항악성종양제 및 면역조절제 중 내분비 치료제)에 해당하는 약제

호르몬성 항암제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거나 조절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약물

- ⑤ 제4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의 개정예 따라 제4항 제1호의 "약효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 ⑥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의약품 분류체계의 개정으로 제4항 제2호의 "ATC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국내 의약품에 대하여 "ATC코드"를 부여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기준을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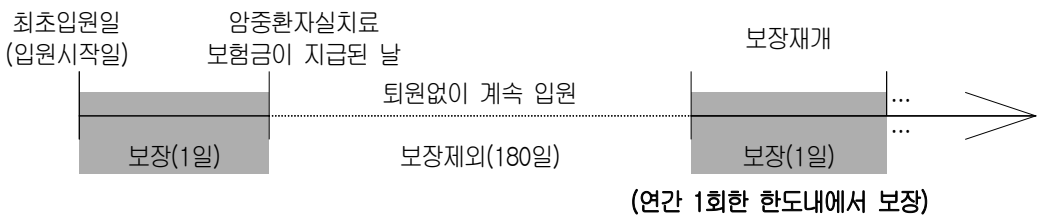
제9조(「암중환자실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중환자실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험기간 중에 「유사암」으로 제2조(「상급종합병원」등의 정의) 제2항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Ⅱ의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중환자실치료」는 상급종합병원Ⅱ의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작한 일자(이하 입원시작일이라 합니다)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중환자실치료」는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유사암」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유사암」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유사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유사암」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유사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유사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일한 「유사암」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입원 시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예시]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입원시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



- ④ 피보험자가 다른 상급종합병원Ⅱ 중환자실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예시] 동일한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날짜	구분	보장여부	사유
2026.3.1	보장개시일	-	-
2026.3.5. ~ 3.30	중환자실입원(1차)	지급	-
2026.10.1. ~ 10.15	중환자실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 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7.3.15. ~ 3.30	중환자실입원(3차)	지급	1차 퇴원 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 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Ⅱ 중환자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Ⅱ 중환자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을 입원시작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Ⅱ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상급종합병원Ⅱ에 해당하게 된 경우 상급종합병원Ⅱ 적용일을 입원시작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암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12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88.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제3조(「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Ⅱ」의 정의)에서 정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Ⅱ」(수술, 혈전제거치료, 혈전용해치료,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세부보장별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 (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보장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_수술비(혈전제거제외)(연간1회한)(감액없음) 보장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_혈전제거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 보장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_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 보장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_중환자실치료비(종합병원)(연간1회한)(감액없음) 보장

제2조(「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분류표」 (【별표158】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질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순환계질환 II 분류표」 (【별표161】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혈액검사(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 뇌척수액 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핵의학 검사, 혈관 도플러검사, 경동맥초음파,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 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 II」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 II」라 함은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2.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제거치료」를 받은 경우
3.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4.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경우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8. 혈관 조영술, 중심정맥관 삽입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료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5조(「혈전제거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혈전제거치료」라 함은 의사가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제거술 및 기계적 혈전제거술(카테터법)을 시행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혈전제거술」이라 함은 “혈관으로부터 혈전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여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혈전용해치료)은 제외됩니다.

제6조(「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 또는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Heparin, Warfarin 등) 및 항혈소판제(Plavix, Aspirin, Pletal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제2항의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 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됩니다.

제7조(「중환자실 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 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험기간 중에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으로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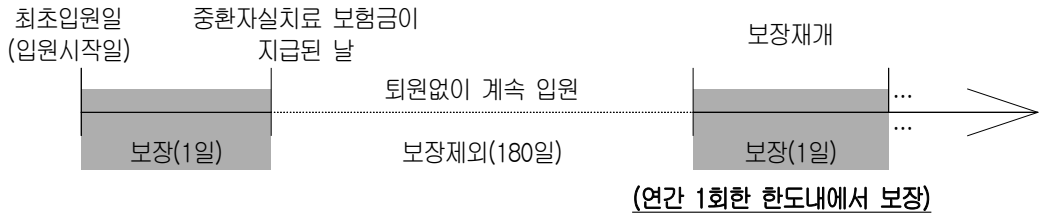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환자실 치료」는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작한 일자(이하 입원시작일이라 합니다)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환자실 치료」는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으로 진단된 경우

에는 이는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일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에 대한 입원이라도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입원시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예시]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이 지급된 입원시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



- ④ 피보험자가 다른 종합병원 중환자실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예시] 동일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날짜	구분	보장여부	사유
2026.3.1	보장개시일	-	-
2026.3.5. ~ 3.30	중환자실입원(1차)	지급	-
2026.10.1. ~ 10.15	중환자실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 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7.3.15. ~ 3.30	중환자실입원(3차)	지급	1차 퇴원 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 ⑤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중환자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중환자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을 입원시작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을 입원시작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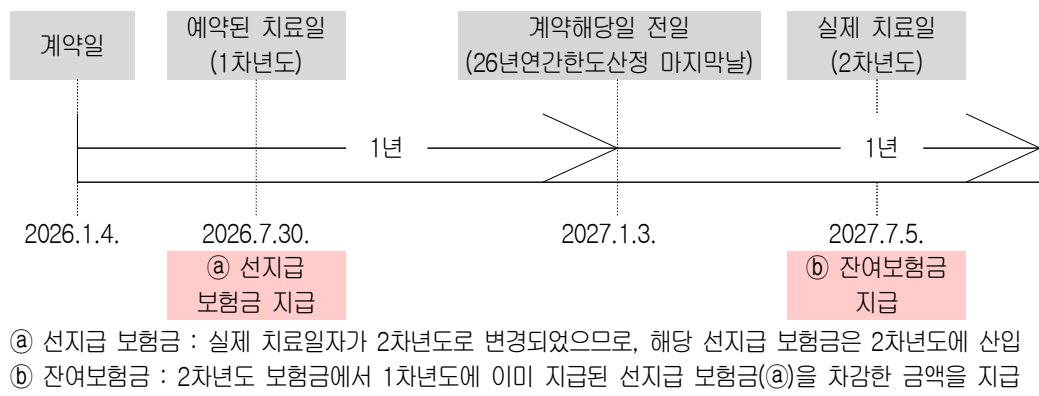
제8조의2(보험금 선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 II를 받기 위해 치료일자 예약 후 제8조의3(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 II 중 중환자실 치료는 「선지급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선지급 보험금」이란 예약된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될 것으로 계산한 보험금의 50%를 말합니다. 단, 「선지급 보험금」은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선지급 보험금」은 변경된 예약내용을 기준으로 제2항을 적용합니다.
- ④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고, 변경된 예약내용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과 변경된 예약내용에 따라 계산된 「선지급 보험금」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 ⑤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어, 변경된 예약내용이 아래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후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예약내용의 변경을 회사에 알린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⑥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선지급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잔여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약된 치료일자와 다르게 실제 치료일자가 변경된 경우, 실제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잔여보험금을 계산합니다.

【 실제 치료일자가 변경된 경우 잔여보험금 보상에시 】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예약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의 반환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라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미 지급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회사가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⑨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선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금액을 보험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⑩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치료항목에 대한 잔여보험금 청구 이전에는 동일한 치료항목에 대하여 추가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8조의3(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의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5.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 진단서, 치료 예약 확인서(치료 예정 병원, 치료 예정 일자, 치료 내용 포함), 진료기록부 등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89.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

(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289-1.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

(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289-2.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

(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89-3.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

(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289-1, 289-2는 비갱신형으로 운영하며,
289-3는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5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에서 암 주요치료Ⅳ(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 (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최대 10회 지급)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제3조(「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및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에서 정한 국립암센터의 부속병원을 말합니다.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한다.

[암관리법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 ① 국립암센터에 연구소,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제4조(「원자력의학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원자력의학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및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에서 정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속병원을 말합니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한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 ①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2항의 「암」에서 제3항의 「유사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

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22-2】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22-3】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암 주요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주요치료Ⅳ」라 함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를 말합니다.
- ② 「암 주요치료Ⅳ」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Ⅳ”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 주요치료Ⅳ”로 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③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의료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제7조(「암수술」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8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③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에서 제4항에서 정한 「항암호르몬약물치료」를 제외한 치료를 말합니다.
- ④ 「항암호르몬약물치료」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호르몬성 항암제”를 말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약효분류번호 421(항암성종양제), 617(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약제
 2.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의약품 분류체계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에서 부여한 국내 의약품 ATC코드에서 L02(항암성종양제 및 면역조절제 중 내분비 치료제)에 해당하는 약제

호르몬성 항암제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거나 조절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약물

- ⑤ 제4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제4항 제1호의 “약효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 ⑥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의약품 분류체계의 개정으로 제4항 제2호의 “ATC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국내 의약품에 대하여 “ATC코드”를 부여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기준을 따릅니다.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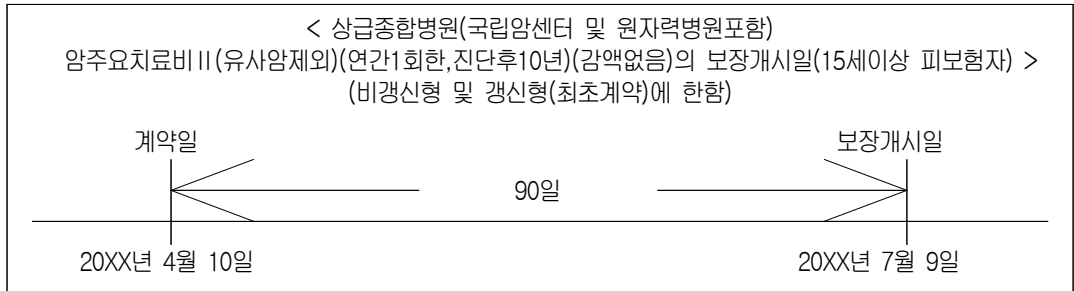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연간1회환,진단후10년)(감액없음)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가.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나.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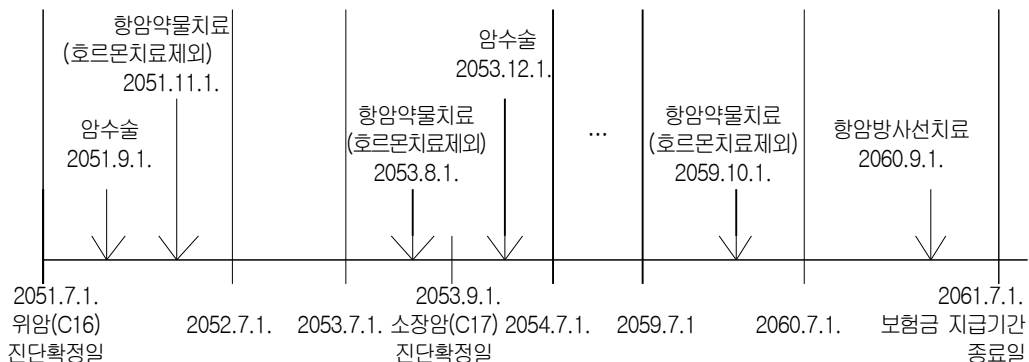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연간」이라 함은 「암(유사암제외)」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마지막 날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암(유사암제외)」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연간1회환,진단후10년)(감액없음)을 보장합니다.
- ⑥ 회사는 피보험자가 암 주요치료Ⅳ(암수술,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 항암방사선치료)를 각각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Ⅲ(유사암제외)(연간1회환,진단후10년)(감액없음)만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원자력의학원 치료에 한함

- 보험계약일 : 2026년 7월 1일, 30년만기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위의 악성신생물(C16) 최초진단 확정일 : 2051년 7월 1일
- 소장의 악성신생물(C17) 최초진단 확정일 : 2053년 9월 1일



- 암 최초진단 후 암 주요치료시, 지급예시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3차년도	...	진단 후 9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암수술(C16) 1,000만원	-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C16) 1,000만원 지급	...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C17) 1,000만원 지급	항암방사선치료(C17) 1,0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C16) 미지급 (연간1회한도 초과)	-	암수술(C17) 미지급 (연간1회한도 초과)	...	-	-

※ 위암(C16) 최초 진단확정일(2051년 7월 1일) 이후에 소장암(C17)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은 위암(C16) 최초 진단확정일(2051년 7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제1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5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3조(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차회 이후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제14조(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 ①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제41조(해약환급금)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15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 ① 289-3.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7.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고 제9조(보험금 지

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90.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

(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290-1.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

(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290-2.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

(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90-3.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

(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290-1, 290-2는 비갱신형으로 운영하며,
290-3는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에서 암 주요치료Ⅳ(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 (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최대 10회 지급)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제3조(「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및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에서 정한 국립암센터의 부속병원을 말합니다.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한다.

[암관리법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 ① 국립암센터에 연구소,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제4조(「원자력의학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원자력의학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및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에서 정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속병원을 말한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한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 ①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3.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22-2】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4.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22-3】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한다.
- ②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암 주요치료Ⅳ」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주요치료Ⅳ」라 함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를 말합니다.
- ② 「암 주요치료Ⅳ」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Ⅳ”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 주요치료Ⅳ”로 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③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제7조(「암수술」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리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8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③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에서 제4항에서 정한 「항암호르몬약물치료」를 제외한 치료를 말합니다.
- ④ 「항암호르몬약물치료」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호르몬성 항암제"를 말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약효분류번호 421(항암성종양제), 617(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약제
 2.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의약품 분류체계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에서 부여한 국내 의약품 ATC코드에서 L02(항암성종양제 및 면역조절제 중 내분비 치료제)에 해당하는 약제

호르몬성 항암제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거나 조절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약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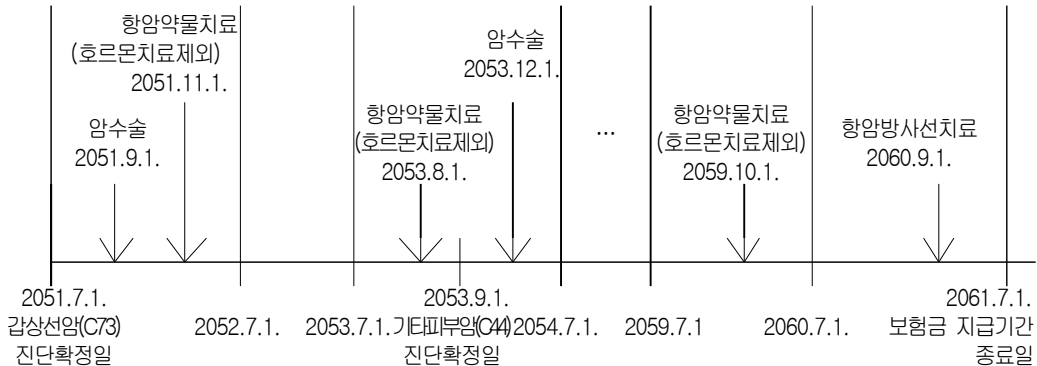
- ⑤ 제4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제4항 제1호의 "약효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 ⑥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의약품 분류체계의 개정으로 제4항 제2호의 "ATC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국내 의약품에 대하여 "ATC코드"를 부여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기준을 따릅니다.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라 함은 「유사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마지막 날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유사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유사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을 보장합니다.
- ⑤ 회사는 피보험자가 암 주요치료Ⅳ(암수술,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 항암방사선치료)를 각각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만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원자력의학원 치료에 한함

- 보험계약일 : 2026년 7월 1일, 30년만기
-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기준
- 갑상선암(C73) 최초진단 확정일 : 2051년 7월 1일
- 기타피부암(C44) 최초진단 확정일 : 2053년 9월 1일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최초진단 후 암 주요치료시, 지급예시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3차년도	...	진단 후 9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암수술(C73) 200만원 지급	-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C73) 200만원 지급	...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C44) 200만원 지급	항암방사선치료(C44) 2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C73) 미지급 (연간회한도 초과)	-	암수술(C44) 미지급 (연간회한도 초과)	...	-	-

※ 갑상선암(C73) 최초 진단확정일(2051년 7월 1일) 이후에 기타피부암(C44)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은 갑상선암(C73) 최초 진단확정일(2051년 7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제1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유사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차회 이후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제12조(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 ①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제41조(해약환급금)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유사암」으로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13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 ① 290-3.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연간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7.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유사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4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유사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고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장. 상해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1. 깁스치료비 특별약관

1-1. 깁스치료비 특별약관

1-2. 깁스치료비(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깁스치료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제2조(「깁스(Cast)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깁스치료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깁스(Cast)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깁스(Cast)치료」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한다)에 의하여 「깁스(Cast)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의미합니다. 단, 부목(Splint Cast)치료는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부목(Splint Cast)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5대장기이식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5대장기이식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5대장기이식수술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5대장기이식수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5대장기」라 함은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을 말하며, 「5대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증자의 5대장기를 이식대상자(피보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단, 랑게르한스 소도세포 이식수술은 「5대장기이식수술」로 보지 않습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5대장기이식수술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조항은 계약전환 후 계약(4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계약전환 후 계약(4종)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5대장기이식수술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각막이식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각막이식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각막이식수술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각막이식수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각막이식수술」이라 함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증자의 각막을 이식대상자(피보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

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막이식수술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조항은 계약전환 후 계약(4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계약전환 후 계약(4종)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막이식 수술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인공관절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인공관절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2조(「인공관절수술」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인공관절수술비	수술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인공관절수술」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인공관절수술」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단, 관절의 일부만을 치환하거나 성형하는 수술 및 처치(단, 인공골두삽입술은 제외합니다) 또는 인공관절이 아닌 금속내고정술, 외고정술 등은 모두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1. 고관절(엉덩이 관절), 슬관절(무릎관절) 또는 견관절(어깨관절)이 파괴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관절(의학적으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 해당됩니다)에 대해 손상된 관절을 제거하고 인공적으로 만든 관절(특수 소재를 사용한 인공적 신체의 관절. 이하 “인공관절”이라 합니다)을 삽입하여 치환하여 줌으로써 원래의 관절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은 경우
 2. 손상된 골두를 제거하고 인체에 해가 없는 인공적으로 만든 골두를 해당 뼈에 삽입시켜 줌으로써 기존 골두의 기능을 치환하여 주는 「인공골두삽입술」을 받은 경우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상해질병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해질병입원비(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보험기간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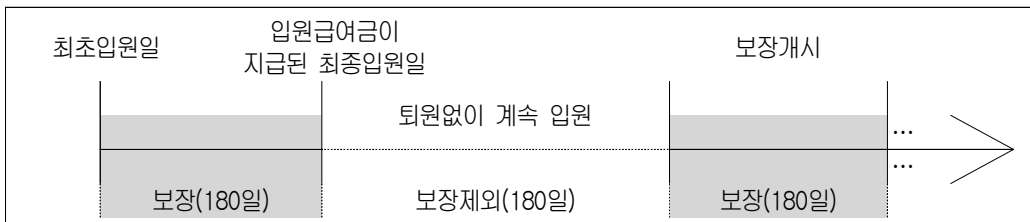
구 분	지 급 금 액
상해질병입원비(1일-180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0일한도)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상해질병입원비(1일-18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상해질병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다음과 같이 상해질병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입원중인 경우에는 상해질병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상해질병입원비(1일-18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상해질병입원비(1일-18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4.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5.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6.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7.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상해질병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해질병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 우연, 외래의 상해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거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상해질병수술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수술로 간주합니다.
 1.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2.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행한 레이저(Laser)수술.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꽃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매 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합니다.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5. 비만(E66) 수술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9.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10.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11.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상해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수술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④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 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환금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응급실내원비(응급) 특별약관

7-1. 응급실내원비(응급) 특별약관

7-2. 응급실내원비(응급)(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응급실내원비(응급)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아래의 금액을 지급(이 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응급실내원비(응급)	매 내원시마다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 종합병원에 설치된 응급실을 말합니다. 단,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에서 정하는 자로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별표72】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참조) 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중사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참조)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의 야간진료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자는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8. 신김스치료비 특별약관

8-1. 신김스치료비 특별약관

8-2. 신김스치료비(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신김스치료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제2조(「신김스치료」의 정의 및 지급률표)에서 정한 「신김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석고붕대 또는 성

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는 치료법은 제외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신깁스치료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신깁스치료 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제2조(「신깁스(Cast)치료」의 정의 및 지급률표)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신깁스(Cast)치료」라 함은 「신깁스치료 분류표」(【별표73】참조)에 해당하는 치료로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신깁스(Cast)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같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의미합니다. 단, 부목(Splint Cast)치료는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부목(Splint Cast)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신깁스치료 급여인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깁스치료 급여인정기준」을 따릅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두가지 이상의 신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신체 동일부위에 두가지 이상의 「신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1회에 한하여 신깁스치료비의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동일 신체부위라 함은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을 따릅니다.
- ③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신깁스치료비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 상해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 특별약관

9-1. 상해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 특별약관

9-2. 상해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태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해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

의 직접결과로써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보험기간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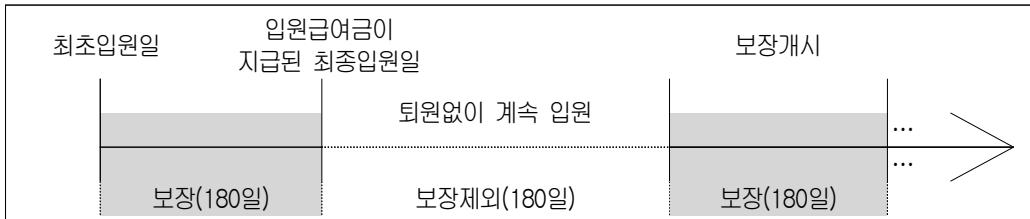
구 분	지 급 금 액
상해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180일한도)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상해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상해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다음과 같이 상해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상해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상해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상해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이 특별약관에서 「선천성 뇌질환」이라 함은 「선천성 뇌질환 분류표」(【별표60】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4.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5.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6.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7.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상해질병수술비(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10-1. 상해질병수술비(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10-2. 상해질병수술비(선천기형포함)(태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해질병수술비(선천기형포함)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 우연, 외래의 상해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거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상해질병수술비(선천기형포함)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수술로 간주합니다.
 1.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2.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행한 레이저(Laser)수술.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매 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만 지급합니다.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4. 비만(E66) 수술
5. 요실금(N39.3, N39.4, R32)
6.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7.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8.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오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9.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상해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수술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진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채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보험료 페이백(5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장해(50%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단, 『신생아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3.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4.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5.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6.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7.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구 분	지 급 금 액
보험료 페이백 (5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장해(50%이상))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납입경과월수

- ② 이 특별약관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까지의 이 계약의 기납입보험료 합계액을 지원하는 특약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은 이 계약의 실제 납입한 보험료 합계와 다를 수 있으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급금액(일시납보험료를 제외한 매월 납입하는 월납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체결 후 계약변경 등의 사유로 납입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 보험계약체결시점의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실제 출생일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④ 제1항의 「납입경과월수」라 함은 계약 체결시(단,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0세 계약해당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매월 계약해당일의 경과횟수를 말합니다. 단, 납입경과월수는 이 특별약관의 총 보험료 납입횟수를 한도로 합니다.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②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별표17】「뇌혈관질환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에서 「뇌혈관질환」에 해당하는 1. 거미막하 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8. 기타 뇌혈관 질환,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10.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용어설명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뇌혈관조영술]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회계 촬영되는 물질(조영제)를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γ 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여하여 그 분포상태의 단면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촬영법

[양전자 방출 단층술(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뇌척수액 검사]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제4조(「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별표19】 「허혈성심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2항의 「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허혈성심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5조(「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양성뇌종양」이라 함은 생명에 치명적이며 암이 아닌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 양성 뇌종양을 말하며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두개내(머리내)의 종양을 포함합니다.
- ② 제1호의 양성뇌종양은 신경외과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함의 원인인(수술로 인해)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③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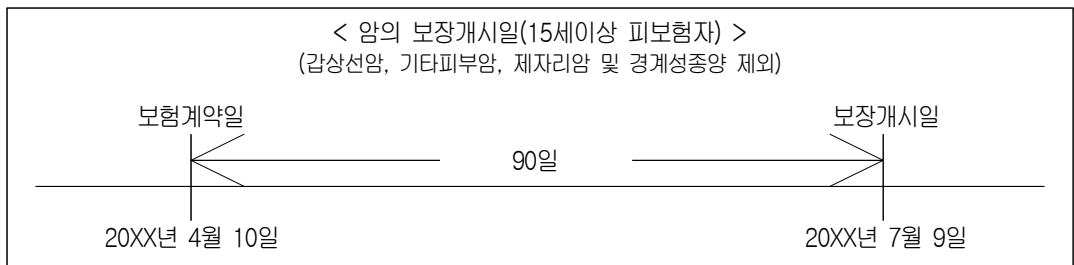
- ④ 「양성뇌종양」의 진단확정은 신경과 의사 또는 신경외과 의사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이라 함은 '영구적인 재생불량성 빈혈'로서 피보험자가 근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혈, 면역억제제, 골수 촉진제와 같은 표준적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골수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질병 상태를 말합니다.
- ② 제1호의 '영구적인 재생불량성 빈혈'이라 함은 만성 골수부전상태로써 호중구 수가 200/mm³ 미만 이거나, 또는 골수세포충실성(bone marrow cellularity)이 25%이하 이고 동시에 다음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호중구 수가 500/mm³ 미만
 2. 혈소판 수가 20,000/mm³ 미만
 3. 망상적혈구 수가 20,000/mm³ 미만
- ③ 단, 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재생불량성 빈혈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④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혈액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암 보장개시일」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목을 따릅니다.
1.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2.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②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에는 그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 이 특별약관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또는 질병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또는 질병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⑦ 같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⑧ 다른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 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⑨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 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 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12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9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취소)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 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전에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로부터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이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특별약관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 약일로부터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 정된 「암」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이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2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료 페이백(5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장해(50%이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5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장해(50%이상)) 특별약관

12-1.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5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장해(50%이상)) 특별약관

12-2.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4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장해(50%이상))(태아) 특별약관

12-2.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4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장해(50%이상))(태아) 특별약관은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 세부보장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 및 「신생아뇌출혈」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3.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4. 보험료 납입기간 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5.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단,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4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장해(50%이상))(태아) 특별약관에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6.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7.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구 분	지 급 금 액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 (5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장해(50%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 (4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장해(50%이상))(태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②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

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별표17】 「뇌혈관질환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에서 「뇌혈관질환」에 해당하는 1. 거미막하 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8. 기타 뇌혈관 질환,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10.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용어설명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뇌혈관조영술]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희게 촬영되는 물질(조영제)를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γ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여하여 그 분포상태의 단면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촬영법

[양전자 방출 단층술(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뇌척수액 검사]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제4조(「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별표19】 「허혈성심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2항의 「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허혈성심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5조(「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양성뇌종양」이라 함은 생명에 치명적이며 암이 아닌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 양성 뇌종양을 말하며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두개내(머리내)의 종양을 포함합니다.
- ② 제1호의 양성뇌종양은 신경외과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함의 원인인(수술로 인해)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③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④ 「양성뇌종양」의 진단확정은 신경과 의사 또는 신경외과 의사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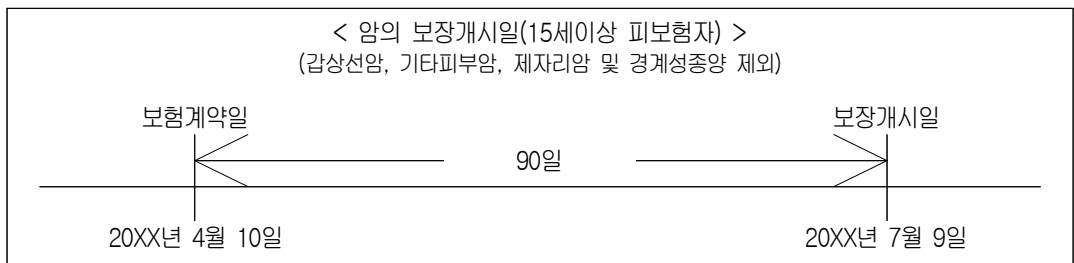
제6조(「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이라 함은 '영구적인 재생불량성 빈혈'로서 피보험자가 근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혈, 면역억제제, 골수 촉진제와 같은 표준적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골수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질병 상태를 말합니다.
- ② 제1호의 '영구적인 재생불량성 빈혈'이라 함은 만성 골수부전상태로써 호중구 수가 200/mm³ 미만 이거나, 또는 골수세포충실성(bone marrow cellularity)이 25%이하 이고 동시에 다음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호중구 수가 500/mm³ 미만
 2. 혈소판 수가 20,000/mm³ 미만
 3. 망상적혈구 수가 20,000/mm³ 미만
- ③ 단, 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재생불량성 빈혈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④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혈액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암 보장개시일」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목을 따릅니다.

1. 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2.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②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에는 그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 이 특별약관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또는 질병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

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또는 질병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을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⑦ 같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⑧ 다른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⑨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11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취소)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로부터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이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특별약관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이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5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장해(50%이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3.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5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장해(50%이상))(면책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 및 「신생아뇌출혈」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3.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4. 보험료 납입기간 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5.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6.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7.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구 분	지 급 금 액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 (5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장해(50%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2-1】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②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 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별표17】 「뇌혈관질환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에서 「뇌혈관질환」에 해당하는 1. 거미막하 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8. 기타 뇌혈관 질환,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10.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용어설명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뇌혈관조영술]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희게 촬영되는 물질(조영제)을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γ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여하여 그 분포상태의 단면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촬영법

[양전자 방출 단층술(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뇌척수액 검사]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제4조(「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별표19】 「허혈성심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2항의 「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허혈성심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5조(「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양성뇌종양」이라 함은 생명에 치명적이며 암이 아닌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 양성 뇌종양을 말하며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두개내(머리내)의 종양을 포함합니다.
- ② 제1호의 양성뇌종양은 신경외과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함의 원인이(수술로 인해)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③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④ 「양성뇌종양」의 진단확정은 신경외과 의사 또는 신경외과의사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이라 함은 '영구적인 재생불량성 빈혈'로서 피보험자가 근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혈, 면역억제제, 골수 촉진제와 같은 표준적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골수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질병 상태를 말합니다.
- ② 제1호의 '영구적인 재생불량성 빈혈'이라 함은 만성 골수부전상태로써 호중구 수가 200/mm³ 미만 이거나, 또는 골수세포총실성(bone marrow cellularity)이 25%이하 이고 동시에 다음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호중구 수가 500/mm³ 미만
 2. 혈소판 수가 20,000/mm³ 미만
 3. 망상적혈구 수가 20,000/mm³ 미만
- ③ 단, 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재생불량성 빈혈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④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혈액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또는 질병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또는 질병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을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5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장해(50%이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4. 인공와우이식수술비 특별약관

14-1. 인공와우이식수술비 특별약관

14-2. 인공와우이식수술비(태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임신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인공와우이식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인공와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인공와우이식수술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3조(「인공와우이식수술」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인공와우이식수술」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인공와우의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인공와우를 내이에 이식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인공와우의 요양급여 대상

인공와우의 요양급여 대상	
1) 1세 미만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는 경우
2) 1세 이상 19세 미만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는 경우. 다만, 시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3) 19세 이상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단음절어에 대한 어음변별력(Speech discrimination)이 50% 이하 또는 문장언어평가가 50% 이하인 경우. 다만, 시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 위 1),2),3)의 난청환자 중 뇌막염의 합병증 등으로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하는 사고인 경우, 제1항의 「인공와우이식수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술도 포함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하며,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는 경우 회사는 수술 시행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릅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공와우의 요양급여 대상’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인공와우의 요양급여 대상’을 따릅니다.
- ⑤ 제1항의 “인공와우를 내이에 이식하는 수술”은 「인공와우이식수술 분류표」(【별표74】 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수가코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1항의 “인공와우의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고 수술기록지상 인공와우이식 수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공와우이식수술」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꽃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인공와우이식수술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5. 양전자 단층촬영(PET) 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양전자 단층촬영(PET) 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 또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조건을 토대로 제2조(「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급여)」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양전자 단층촬영(PET) 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제2조(「양전자 단층촬영(PET) 검사(급여)」의 정의 및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양전자 단층촬영(PET) 검사(급여)」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양전자 단층촬영(PET)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양전자 단층촬영(PET) 검사(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로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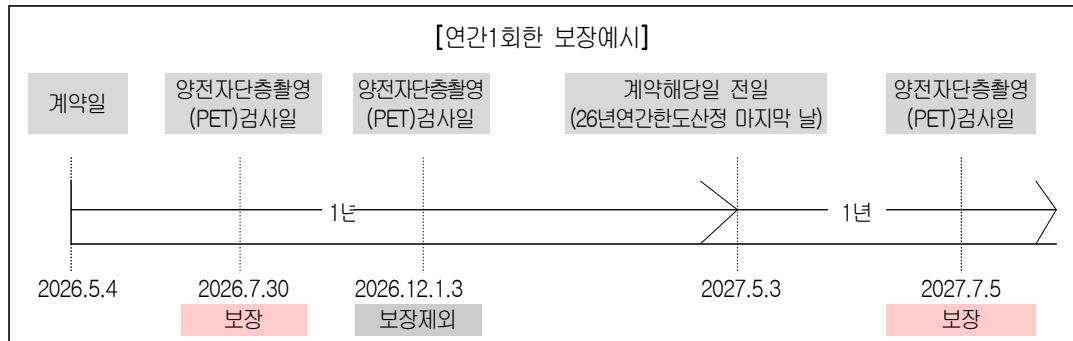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선 의약품을 이용하여 인체에 대한 생리화학적, 기능적영상을 3차원으로 얻는 핵의학 영상법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 일부 본인부담 대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요양급여 전액본인부담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로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의 「양전자 단층촬영(PET) 검사(급여)」는 「양전자 단층촬영(PET) 검사(급여) 분류표」(【별표 75】 참조)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양전자 단층촬영(PET) 의료행위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6.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16-1.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16-2.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16-3.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16-1, 16-2는 비갱신형으로,
16-3은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보험기간 중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보장 (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이라 함은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 분류표」(【별표124】참조)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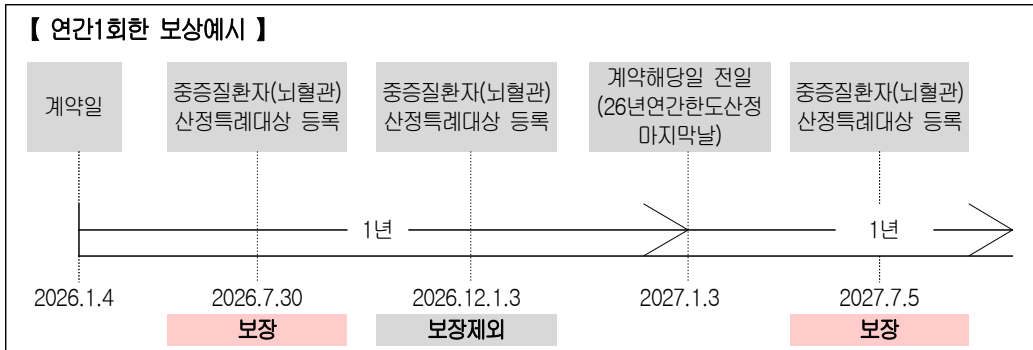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산정특례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및 적용기간

-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등록절차없이 병원측의 요양급여비 청구만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 중증질환자(뇌혈관)의 산정특례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자격전환 및 산정특례 등록 없이 자동등록이 되며, 등록시 최대 30일간 적용이 됩니다. 다만, 뇌혈관질환 산정특례 기간 동안 재수술시 재수술일로부터 최대30일 추가로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늘어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보장보험금은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여 여러번 등록되더라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산정특례대상 등록일(해당 상병의 산정특례등록을 위하여 최초로 등록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판단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와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도의 변경으로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거나 급격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기초서류 변경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④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적립한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별약관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⑦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수카코드 등 기입), 산정특례 등록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결과 통보방법에 따른 알림톡, 이메일 등),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적용영수증),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16-3.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7.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17-1.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17-2.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17-3.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17-1, 17-2는 비갱신형으로,
 17-3은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보장보험금(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보험기간 중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이라 함은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 분류표」(【별표125】참조)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산정특례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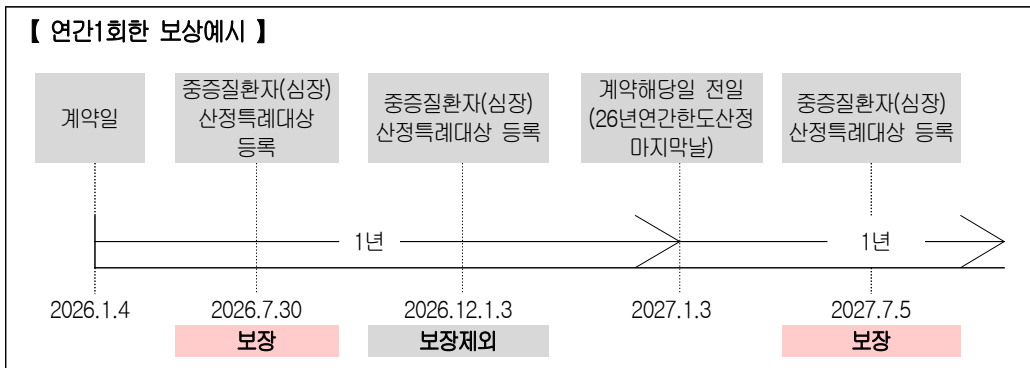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및 적용기간

-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등록절차없이 병원측의 요양급여비 청구만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 중증질환자(심장)의 산정특례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자격전환 및 산정특례 등록없이 자동등록이 되며, 등록시 최대 30일(단,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심장질환 산정특례 기간 동안 재수술시 재수술일로부터 최대 30일 추가로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늘어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보장보험금은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어 여러번 등록되더라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산정특례대상 등록일(해당 상병의 산정특례등록을 위하여 최초로 등록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연금회화 보상예시 】



-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판단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와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도의 변경으로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으로 "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거나 급격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기초서류 변경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④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별약관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⑦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수가코드 등 기입), 산정특례 등록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결과 통보방법에 따른 알림톡, 이메일 등),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적용영수증),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17-3.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8.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 특별약관

18-1.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 특별약관

18-2.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18-1은 비갱신형으로,
18-2은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보장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 된 질병으로 인한 「산정특례대상 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제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산정특례 신규등록」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보장 보험금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산정특례대상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산정특례대상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이라 함은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별표13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② 「산정특례대상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산정특례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및 적용기간

-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가 중증난치질환으로 확진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는 확진된 날로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적용하며, 30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5년간 적용이 됩니다.

제3조(「산정특례 신규등록」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산정특례 신규등록"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에 의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 분류표」(【별표133】 참조)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8조에 의한 산정특례 재등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재등록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8조(산정특례 재등록)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따라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자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중인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판단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와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도의 변경으로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거나 급격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기초서류 변경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④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별약관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⑦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18-2.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보장(갱신행_10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행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산정특례 등록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결과 통보방법에 따른 알림록, 이메일 등),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적용영수증),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보장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9. 특정팔근육염증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특정팔근육염증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제2조(「특정팔근육염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특정팔근육염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각 세부보장별 각각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특정팔근육염증진단비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보장
특정팔근육염증진단비(테니스엘보) 보장
특정팔근육염증진단비(골프엘보) 보장
특정팔근육염증진단비(테니스엘보,골프엘보 제외) 보장

제2조(「특정팔근육염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팔근육염증」이라 함은 「테니스엘보」, 「골프엘보」와 「특정팔근육염증(테니스엘보,골프엘보 제외)」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테니스엘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외측상과염(테니스엘보) 분류표」(【별표134-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골프엘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내측상과염(골프엘보) 분류표」(【별표134-2】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팔근육염증(테니스엘보,골프엘보 제외)」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팔근육염증(테니스엘보,골프엘보 제외) 분류표」(【별표134-3】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테니스엘보」, 「골프엘보」, 「특정팔근육염증(테니스엘보,골프엘보 제외)」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외측상과염(테니스엘보)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 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각 세부보장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각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의 각 세부보장별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 특정다리근육염증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특정다리근육염증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제2조(「특정다리근육염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특정다리근육염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각 세부보장별 각각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특정다리근육염증진단비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보장
특정다리근육염증진단비(족저근막염) 보장
특정다리근육염증진단비(족저근막염 제외) 보장

제2조(「특정다리근육염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다리근육염증」이라 함은 「족저근막염」과 「특정다리근육염증(족저근막염 제외)」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족저근막염」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족저근막염) 분류표」(【별표135-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다리근육염증(족저근막염 제외)」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다리근육염증(족저근막염 제외) 분류표」(【별표135-2】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족저근막염」과 「특정다리근육염증(족저근막염 제외)」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외측상과염(테니스엘보)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각 세부보장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각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의 각 세부보장별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1. 8대장애(선천성포함)진단비 특별약관

21-1. 8대장애(선천성포함)진단비 특별약관

21-2. 8대장애(선천성포함)진단비(태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8대장애(선천성포함)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 및 상해로 인하여 제2조(「8대장애」 등의 정의)에서 정한 「8대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세부보장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8대장애(선천성포함)진단비	각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 장
8대장애(선천성포함)진단비(장애) 보장 8대장애(선천성포함)진단비(심한장애) 보장

제2조(「8대장애」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8대장애」라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별표144-1】『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참조)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등록절차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별표144-2】『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참조)으로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에게 「8대장애」 중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하나의 장애로 인한 8대장애진단비만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의 「8대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해 또는 질병이 보험기간 중 발생 또는 진단확정되었으나, 장애상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의 「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 정한 「장애판정시기」에 따라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상태가 결정된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③ 피보험자의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8대장애 중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복장애 합산시 상향조정된 장애정도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제2조(「8대장애」 등의 정의) 제3항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판정기준이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이하 '관련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판정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판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정합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각각의 세부보장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8대장애(선천성포함)진단비의 세부보장별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3.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장애정도결정서
 - 4.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 5.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6.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제1항 제3호의 장애인 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증명서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증명서를 말하며, 장애정도결정서는 장애정도심사규정 [별지1]의 결정서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결정서를 말합니다.
- ④ 제1항 제4호의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진단서로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22. 시각기능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시각기능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시각기능검사(급여)」를 받은 경우(이하 「시각기능검사」라 합니다)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시각기능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연간 1회한)

② 「시각기능검사」를 받은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2조(「시각기능검사(급여)」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시각기능검사(급여)」라 함은 「시각기능검사(급여) 분류표」(【별표151】참조)에서 정한 시각기능검사 대상 「수가코드」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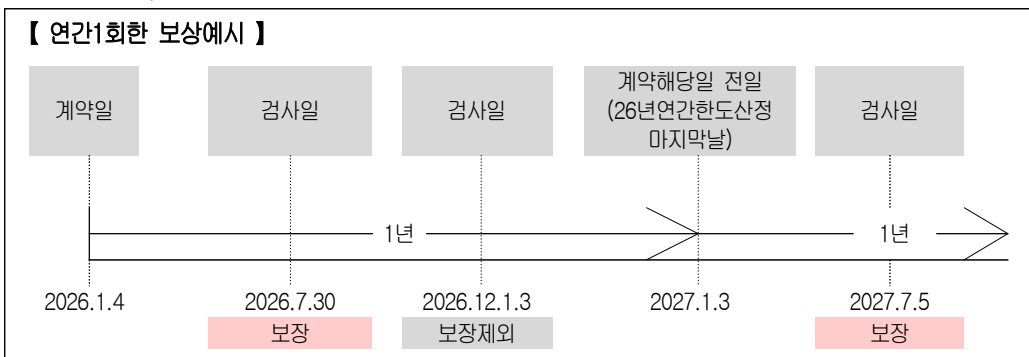
② 제1항의 「시각기능검사(급여)」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치과의사, 한의사는 제외합니다.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시각기능검사(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개정에 따라 제1항의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시각기능검사(급여)」 이외에 추가로 【별표151】(시각기능검사(급여) 분류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코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
(단,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에서 급여수가코드(EDI코드 포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 청구시 급여수가코드(EDI코드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수가코드

급여수가코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 등을 포함한 코드를 말합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3. 청각 및 평형기능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청각 및 평형기능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청각 및 평형기능검사(급여)」를 받은 경우(이하 「청각 및 평형기능검사」라 합니다)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청각 및 평형기능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연간 1회한)

- ② 「청각 및 평형기능검사」를 받은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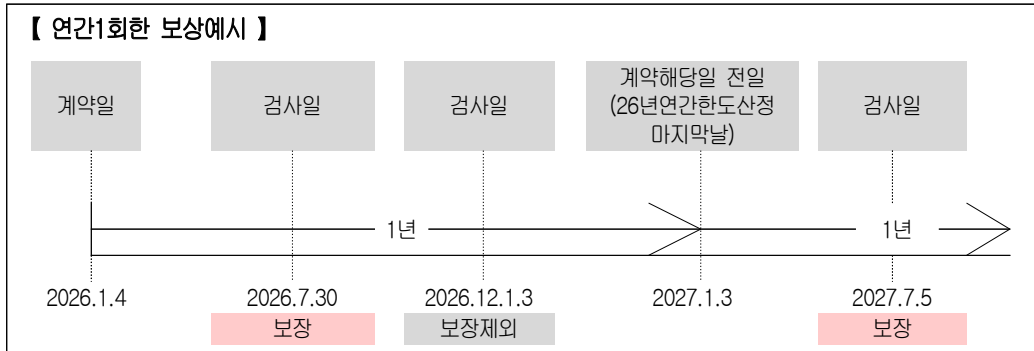
제2조(「청각 및 평형기능검사(급여)」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청각 및 평형기능검사(급여)」라 함은 「청각 및 평형기능검사(급여) 분류표」(【별표152】참조)에서 정한 청각 및 평형기능검사 대상 「수가코드」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청각 및 평형기능검사(급여)」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치과의사, 한의사는 제외합니다.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청각 및 평형기능검사(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개정에 따라 제1항의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청각 및 평형기능검사(급여)」 이외에 추가로 **【별표152】** (청각 및 평형기능검사(급여) 분류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코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
(단,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에서 급여수가코드(EDI코드 포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 청구시 급여수가코드(EDI코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수가코드

급여수가코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 등을 포함한 코드를 말합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4장. 치아관련 특별약관

1. 유치치아보존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유치치아보존치료비(상해및질병) : 이 특별약관의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제2조(「치아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치아관련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존치료」를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유치에 치아보존치료가 종료된 경우 치료항목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최초계약 : 피보험자의 가입시 보험나이가 3세 이상일 때>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치료 원인	치료항목	지급금액		지급한도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발생시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발생시	
상해	아말감	치아당 1만원		한도없음
	글래스아이노머	치아당 1만원		
	레진필링치료	치아당 5만원		
	인레이·온레이	치아당 5만원		
	크라운	치아당 10만원		연간 3개한도
질병	아말감	치아당 5천원	치아당 1만원	한도없음
	글래스아이노머	치아당 5천원	치아당 1만원	
	레진필링치료	치아당 2만 5천원	치아당 5만원	
	인레이·온레이	치아당 2만 5천원	치아당 5만원	
	크라운	치아당 5만원	치아당 10만원	연간 3개한도

<최초계약 : 피보험자의 가입시 보험나이가 3세 미만일 때>

(보장개시 3세,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치료원인	치료항목	지급금액	지급한도
상해 및 질병	아말감	치아당 1만원	한도없음
	글래스아이노머	치아당 1만원	
	레진필링치료	치아당 5만원	
	인레이·온레이	치아당 5만원	
	크라운	치아당 10만원	상해,질병 각각 연간 3개한도

치료원인	치료항목	지급금액	지급한도
상해 및 질병	아말감	치아당 1만원	한도없음
	글래스아이노머	치아당 1만원	
	레진필링치료	치아당 5만원	
	인레이·온레이	치아당 5만원	
	크라운	치아당 10만원	상해, 질병 각각 연간 3개한도

제2조(「치아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치아관련질병」이라 함은 「치아관련질병 분류표」(【별표76】참조)에 해당하는 1. 치아우식증(충치), 2.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 3.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치아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대한민국 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영구치」라 함은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유치」라 함은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자연치」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치아수복물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 크라운 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치료용 충전물 또는 주조물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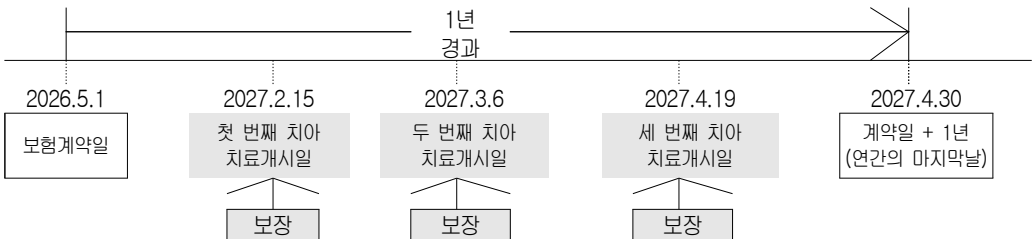
치아보철물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체하는 인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틀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임플란트를 포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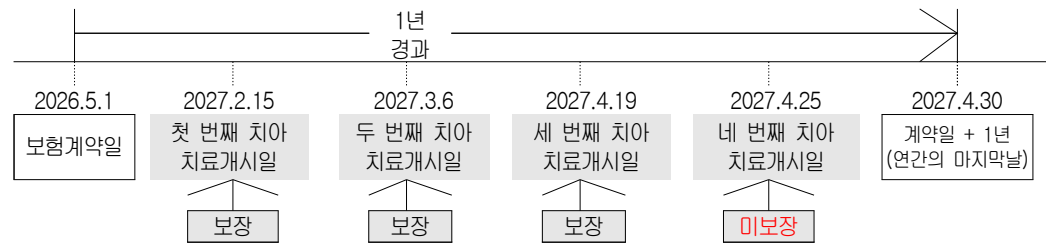
- ④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자연치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⑤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란,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이하“계약해당일”이라 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크라운 치료비 보장(연간3개한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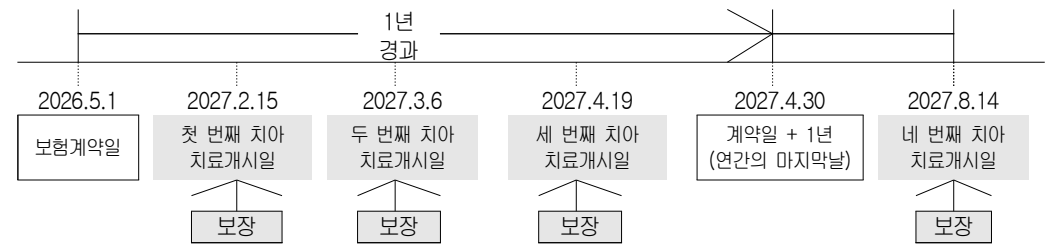
1. 연간 3개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



2. 연간 3개 이상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



3. 연간 3개의 치료를 받고 경우 1년 후 새로운 치아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



- ⑥ 이 특별약관에서 「치아보존치료」란 유치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 손상된 부위를 원상 회복시켜 형태학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를 말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치아보존치료

치료항목	정 의
아말감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구리, 주석, 은 등의 합금과 수은의 혼합체를 말합니다.
글래스 아이노머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산 부식처리가 필요없는 화학접착으로 수복하는 재료를 말합니다.
레진 필링치료	치아 충전 또는 수복 재료 중 치과용 레진을 치아에 직접 수복하는 충전치료(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원상회복시켜 형태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를 말하며, 이하 『충전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심미성이 요구되고 교합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치아 또는 손상부위가 작은 치아를 충전할 경우에 쓰입니다.
인레이 /온레이	치아의 손상된 부위에 구강 외에서 본을 떠 금이나 도재 등의 재료로 주조물을 제작하고 시멘트를 사용하여 합착하는 간접적으로 충전치료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크라운	임상적 치관(머리부분)의 모든 면을 금이나 세라믹 등의 충전물로 덮어 치아의 형태와 기능을 재생시켜 주는 치료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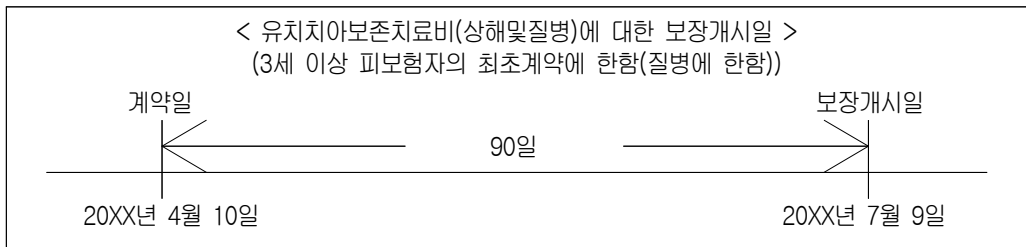
- ① 유치치아보존치료비(상해및질병)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가. 가입연령이 3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나이 3세 계약해당일
- 나. 가입연령이 3세 이상인 피보험자 :
- 상해 : 보험계약일
 - 질병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②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치아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종료 180일 이내의 치아치료는 보상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치아보존치료를 받는 중이거나 치아보존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해당 유치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에 임시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이후에도 치아보존치료를 받으면 효력이 없어진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연간 보장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은 보험계약일부터 치아보존치료 시작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복합형태의 치아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상악 어금니 1개에 치아우식증(충치)이 발생하여 레진필링치료를 진단받고 레진필링치료가 종료되기 이전에,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동일한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진단받은 경우, 해당 치료 종료시 크라운치료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아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사고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2.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치아를 발거하는 경우
 3.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 치료
 4. 치아보존치료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해당 치아보존치료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5.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6.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7.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치아보존치료를 하는 경우(다만,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아래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며,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대상질병	분류코드
치아의 발육 및 기타 수술의 정익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장애	K00
매몰치 및 매복치	K01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3
잇몸 및 무치성 치조용기의 기타 장애	K06
치아열굴이상(부정교합포함)	K07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8

제6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치아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확인서(아래 내용 포함)
 - 가. 진료된 치아위치(또는 치아번호)
 - 나. 진료내용
 - 다.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등
3. 치과보존치료 전후 해당 치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4. 진료비계산서(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이 포함된 치과 진료비 영수증 등)
5.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6.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8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영구치치아보존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영구치치아보존치료비(상해및질병) : 이 특별약관의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제2조(「치아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치아관련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존치료」를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에 치아보존치료가 종료된 경우 치료항목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최초계약 : 피보험자의 가입시 보험나이가 6세 이상일 때>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치료 원인	치료항목	지급금액		지급한도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발생시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발생시	
상해	아말감	치아당 1만원		한도없음
	글래스아이노머	치아당 1만원		
	레진필링치료	치아당 5만원		
	인레이·온레이	치아당 5만원		
	크라운	치아당 10만원		연간 3개한도
질병	아말감	치아당 5천원	치아당 1만원	한도없음
	글래스아이노머	치아당 5천원	치아당 1만원	
	레진필링치료	치아당 2만 5천원	치아당 5만원	
	인레이·온레이	치아당 2만 5천원	치아당 5만원	
	크라운	치아당 5만원	치아당 10만원	연간 3개한도

<최초계약 : 피보험자의 가입시 보험나이가 6세 미만일 때>

(보장개시 6세,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치료원인	치료항목	지급금액	지급한도
상해 및 질병	아말감	치아당 1만원	한도없음
	글래스아이노머	치아당 1만원	
	레진필링치료	치아당 5만원	
	인레이·온레이	치아당 5만원	
	크라운	치아당 10만원	상해,질병 각각 연간 3개한도

<갱신계약>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치료원인	치료항목	지급금액	지급한도
상해 및 질병	아말감	치아당 1만원	한도없음
	글래스아이노머	치아당 1만원	
	레진필링치료	치아당 5만원	
	인레이·온레이	치아당 5만원	
	크라운	치아당 10만원	상해,질병 각각 연간 3개한도

제2조(「치아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치아관련질병」이라 함은 「치아관련질병 분류표」(【별표76】참조)에 해당하는 1. 치아우식증(충치), 2.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 3.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치아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대한민국 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치과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영구치」라 함은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유치」라 함은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자연치」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치아수복물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 크라운 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는 주조물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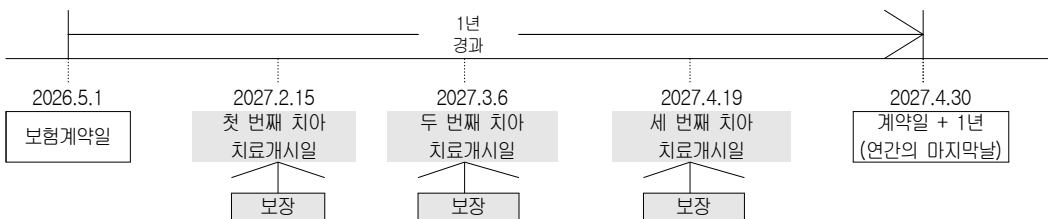
치아보철물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체하는 인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틀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임플란트를 포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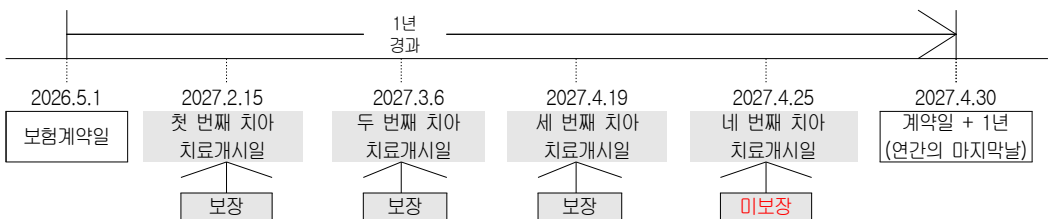
- ④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자연치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⑤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란,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이하“계약해당일”이라 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크라운 치료비 보장(연간3개한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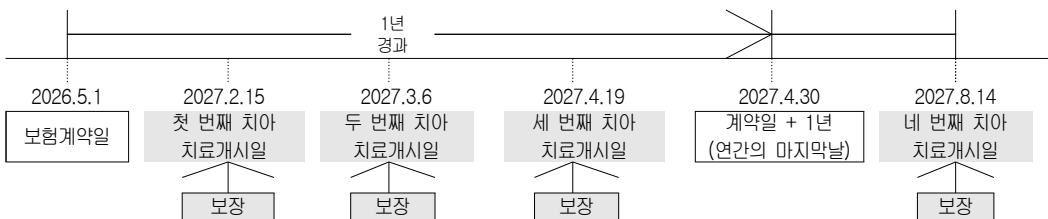
1. 연간 3개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



2. 연간 3개 이상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



3. 연간 3개의 치료를 받고 1년 후 새로운 치아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



- ⑥ 이 특별약관에서 「치아보존치료」란 영구치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 손상된 부위를 원상 회복시켜 형태학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를 말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치아보존치료

치료항목	정 의
아말감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구리, 주석, 은 등의 합금과 수은의 혼합체를 말합니다.
글래스 아이노머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산 부식처리가 필요없는 화학접착으로 수복하는 재료를 말합니다.
레진 필링치료	치아 충전 또는 수복 재료 중 치과용 레진을 치아에 직접 수복하는 충전치료(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원상회복시켜 형태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를 말하며, 이하 『충전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심미성이 요구되고 교합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치아 또는 손상부위가 작은 치아를 충전할 경우에 쓰입니다.
인레이 /온레이	치아의 손상된 부위에 구강 외에서 본을 떠 금이나 도재 등의 재료로 주조물을 제작하고 시멘트를 사용하여 합착하는 간접적으로 충전치료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크라운	임상적 치관(머리부분)의 모든 면을 금이나 세라믹 등의 충전물로 덮어 치아의 형태와 기능을 재생시켜 주는 치료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영구치치아보존치료비(상해및질병)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가. 가입연령이 6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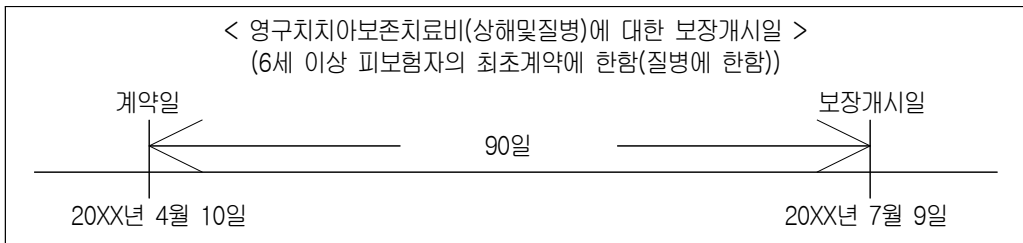
나. 가입연령이 6세 이상인 피보험자 :

- 상해 : 보험계약일

- 질병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②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치아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종료 180일 이내의 치아치료는 보상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치아보존치료를 받는 중이거나 치아보존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에 임시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이후에도 치아보존치료를 받으면 효력이 없어진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연간 보장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은 보험계약일로부터 치아보존치료 시작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복합형태의 치아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상악 어금니 1개에 치아우식증(충치)이 발생하여 레진필링치료를 진단받고 레진필링치료가 종료되기 이전에,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동일한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진단받은 경우, 해당 치료 종료시 크라운치료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아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사고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치아수복물을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2.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3.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 치료
 4. 치아보존치료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해당 치아보존치료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5.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6.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7.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치아보존치료를 하는 경우(다만,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아래 분류코드에 해당 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며,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대상질병	분류코드
치아의 발육 및 기타 수술의 정지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장애	K00
매몰치 및 매복치	K01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3
잇몸 및 무치성 치조용기의 기타 장애	K06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K07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8

제6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치아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확인서(아래 내용 포함)
 - 가. 진료된 치아위치(또는 치아번호)
 - 나. 진료내용
 - 다.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등
3. 치과보존치료 전후 해당 치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4. 진료비계산서(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이 포함된 치과 진료비 영수증 등)
5.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6.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8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영구치치아보철치료비 II(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영구치치아보철치료비 II(상해및질병) : 이 특별약관의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제2조(「치아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치아관련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철치료」를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에 치아보철치료가 종료된 경우 치료 항목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

<최초계약 : 피보험자의 가입시 보험나이가 6세 이상일 때>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치료 원인	치료항목	지급금액		지급한도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발생시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발생시	
상해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보철물당 100만원		연간1회한도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영구치발거 1개당 50만원		한도없음
	임플란트 (Implant)	영구치발거 1개당 100만원		한도없음
질병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보철물당 50만원	보철물당 100만원	연간1회한도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영구치발거 1개당 25만원	영구치발거 1개당 50만원	한도없음
	임플란트 (Implant)	영구치발거 1개당 50만원	영구치발거 1개당 100만원	한도없음

<최초계약 : 피보험자의 가입시 보험나이가 6세 미만일 때>

(보장개시 6세,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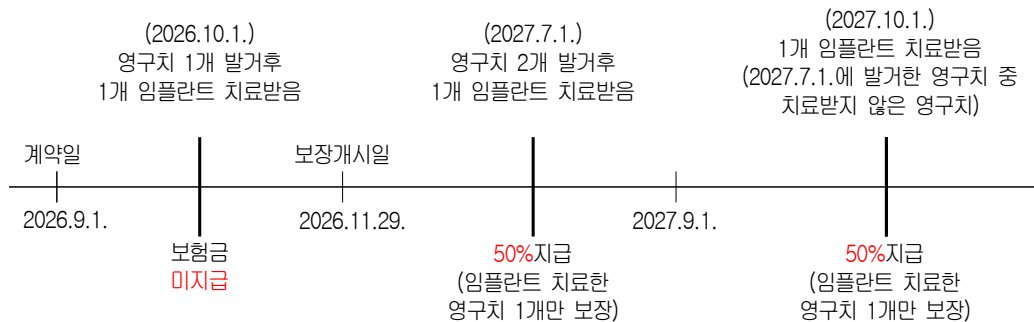
치료원인	치료항목	지급금액	지급한도
상해 및 질병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보철물당 100만원	상해,질병 각각 연간1회한도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영구치발거 1개당 50만원	한도없음
	임플란트 (Implant)	영구치발거 1개당 100만원	한도없음

<갱신계약>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치료원인	치료항목	지급금액	지급한도
상해 및 질병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보철물당 100만원	상해,질병 각각 연간1회한도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영구치발거 1개당 50만원	한도없음
	임플란트 (Implant)	영구치발거 1개당 100만원	한도없음

【보상예시】 치아관련 질병으로 치아보철치료를 받는 경우
(6세 이상 피보험자의 최초계약에 한함)



- ① 영구치를 발거한 일자(2026.10.1) 기준으로 2026.10.1에 발거한 치아는 면책기간(계약일로부터 90일이하) 동안 발거한 것으로 이후에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② 영구치를 발거한 일자(2027.7.1) 기준으로 2027.7.1에 발거한 치아는 면책기간 이후 감액기간(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동안 발거한 것으로 이후에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함.
- ③ 2027.9.1.이후 발거한 치아의 경우 보험기간 중 치료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함.

제2조(「치아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치아관련질병」이라 함은 「치아관련질병 분류표」(【별표76】참조)에 해당하는 1. 치아우식증(충치), 2.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 3.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치아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대한민국 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영구치」라 함은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

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유치」라 함은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자연치」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치아수복물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 크라운 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는 주조물을 말합니다.

치아보철물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체하는 인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틀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임플란트를 포함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자연치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⑤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란,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이하“계약해당일”이라 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⑥ 이 특별약관에서 「치아보철치료」란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임플란트(Implant)’,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세 가지 치료를 말합니다.

치아보철치료

치료항목	정 의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일반적으로 틀니라고 말하며, 영구치와 그와 연관된 조직이 결손이 되었을 때, 환자가 임의대로 구강 내에서 빼고 끼 수 있는 인공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로, 크게 국소의치와 총의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소의치(부분틀니, Partial Denture)는 전체 치아가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아와 그 관련조직의 결손을 수복해주는 보철물을 말하며, 완전히 치아에서 지지를 받거나, 잔존 치조제 조직과 치아 양쪽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총의치(Complete Denture)는 상악이나 하악의 모든 치아 및 그와 관련된 조직을 대체하는 치과 보철물을 말하며, 전적으로 조직(점막, 결체 조직 및 하부골조직)에 의해 지지를 받습니다.
고정성 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을 때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 인접한 영구치를 지대치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치와 연결하여 구강 내에 영구접착 되는 인공 보철물을 말합니다.
임플란트 (Implant)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에 매식물(Fixture)을 식립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영구치치아보철치료비II(상해및질병)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가. 가입연령이 6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
 - 나. 가입연령이 6세 이상인 피보험자 :
 - 상해 : 보험계약일
 - 질병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대상질병	분류코드
치아의 발육 및 기타 수술의 정익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장애	K00
매몰치 및 매복치	K01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3
잇몸 및 무치성 치조용기의 기타 장애	K06
치아열굴이상(부정교합포함)	K07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8

제6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치아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확인서(아래 내용 포함)
 - 가. 진료된 치아위치(또는 치아번호)
 - 나. 진료내용
 - 다.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등
3. 치과보철치료 전후 해당 치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4. 진료비계산서(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이 포함된 치과 진료비 영수증 등)
5.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6.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8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영구치치수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영구치치수치료비(상해및질병) : 이 특별약관의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제2조(「치아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치아관련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에 치수치료가 종료된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최초계약 : 피보험자의 가입시 보험나이가 6세 이상일 때>

구 분	치 료 원 인	지 급 금 액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영구치치수치료비 (상해및질병)	상해	치아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질병	치아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치아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최초계약 : 피보험자의 가입시 보험나이가 6세 미만일 때(보장개시 6세)>

구 분	지 급 금 액
영구치치수치료비 (상해및질병)	치아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갱신계약>

구 분	지 급 금 액
영구치치수치료비 (상해및질병)	치아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치아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치아관련질병」이라 함은 「치아관련질병 분류표」(【별표76】참조)에 해당하는 1. 치아우식증(충치), 2.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 3.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치아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대한민국 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영구치」라 함은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유치」라 함은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자연치」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치아수복물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 크라운 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는 주조물을 말합니다.

치아보철물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체하는 인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틀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임플란트를 포함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자연치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⑤ 이 특별약관에서 「치수치료」라 함은 치아내부에 있는 치수(혈관이 밀집한 연조직)를 제거하여 통증이나 기타증상을 없애고 치아가 제자리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영구치치수치료비(상해및질병)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가. 가입연령이 6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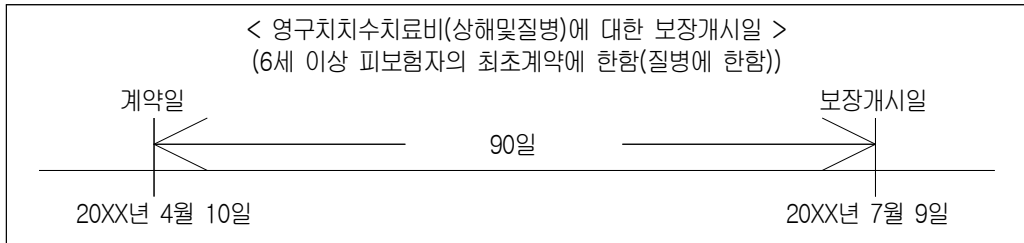
나. 가입연령이 6세 이상인 피보험자 :

- 상해 : 보험계약일

- 질병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②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치아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의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종료 180일 이내의 치아치료는 보상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아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사고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2.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3.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 치료
4. 이미 치수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받은 경우
5.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료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료 치료를 한 경우
6.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7.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받는 경우(다만,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아래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며,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대상질병	분류코드
치아의 발육 및 기타 수술의 정익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장애	K00
매몰치 및 매복치	K01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3
잇몸 및 무치성 치조용기의 기타 장애	K06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K07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8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치아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확인서(아래 내용 포함)
 - 가. 진료된 치아위치(또는 치아번호)
 - 나. 진료내용
 - 다.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등
3. 치과치료 전후 해당 치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4. 진료비계산서(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이 포함된 치과 진료비 영수증 등)
5.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6.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8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영구치상실치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영구치상실치치료비(상해및질병) : 이 특별약관의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제2조(「치아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치아관련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를 상실했을 때에는 영구치 1개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영구치상실치치료비(상해및질병)	치아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치아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치아관련질병」이라 함은 「치아관련질병 분류표」 (【별표76】 참조)에 해당하는 1. 치

아우식증(충치), 2.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 3.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치아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대한민국 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영구치」라 함은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유치」라 함은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자연치」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치아수복물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 크라운 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는 주조물을 말합니다.

치아보철물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체하는 인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틀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임플란트를 포함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영구치상실」이란 치아가 뿌리까지 손상되어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아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치아를 발거(拔去)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영구치상실치료비(상해및질병)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가. 가입연령이 6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
 - 나. 가입연령이 6세 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②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이후 영구치 발거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종료 180일 이내의 치아치료는 보상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영구치상실치료 보장개시일 이전에 해당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또는 발거한 경우
 2. 제3대구치(사랑니)를 발거하는 경우
 3.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발거(拔去)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하여 발거(拔去)한 경우
 4.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장애 : 부분 매복되거나, 완전 매복되어 발거(拔去)한 경우
 5. 치아관련질병 또는 상해가 발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다른 치과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제6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치아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확인서(아래 내용 포함)
 - 진료된 치아위치(또는 치아번호)
 - 진료내용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등
- 치과치료 전후 해당 치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 진료비계산서(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이 포함된 치과 진료비 영수증 등)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8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 : 이 특별약관의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제2조(「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의 정의와 장소) 제1항에서 정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제2조(「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급여 인정기준」이라 합니다.
- 제1항의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분류표」(【별표77】참조)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치아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스케일링)」이라 함은 치주질환(잇몸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요소 중 치면에 부착된 치석(치면부착 이물질 포함) 등을 제거하는 과정으로써 핸드 스케일러 혹은 초음파 치석제거기를 사용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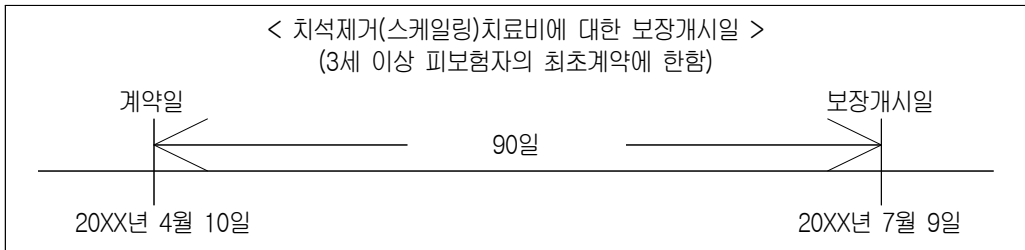
술식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마제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치면의 표면을 마무리 하는 과정까지 포함합니다.

- ④ 제1항의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가. 가입연령이 3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나이 3세 계약해당일
 - 나. 가입연령이 3세 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란,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이하“계약해당일”이라 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2회 이상의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치료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는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 직전에 해당하는 연간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2.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3.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동일 치아에 동일 질병을 원인으로 치료를 개시한 경우

제5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치아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확인서(아래 내용 포함)
 - 가. 진료된 치아위치(또는 치아번호)
 - 나. 진료내용
 - 다.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등
3. 진료비계산서(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이 포함된

- 치과 진료비 영수증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치아촬영비(X-ray 및 파노라마)(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치아촬영비(X-ray 및 파노라마)(상해및질병) : 이 특별약관의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촬영(X-ray 및 파노라마)을 한 경우에는 촬영 1회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치아촬영비(X-ray 및 파노라마) (상해및질병)	촬영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치아촬영(X-ray 및 파노라마)」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치아촬영(X-ray 및 파노라마)」이라 함은 환자의 치열 상태, 상하악골, 상악동, 하치조신경 경로 등 개개의 치아보다는 전반적인 검진을 하기 위한 촬영술식을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치아촬영(X-ray 및 파노라마) 급여 인정 기준」이라 합니다.
- ② 제1항의 「치아촬영(X-ray 및 파노라마)」은 「치아촬영(X-ray 및 파노라마) 분류표」(【별표78】참조)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치아촬영(X-ray 및 파노라마)」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치아촬영비(X-ray 및 파노라마)(상해및질병)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8. 치주질환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치주질환치료비 : 이 특별약관의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제2조(「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의 정의와 장소) 제1항에서 정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치주질환치료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급여 인정 기준」이라 합니다.
- ② 제1항의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는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분류표」(【별표79】참조)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1/3악’이라 함은 치아전체(상악(윗니), 하악(아랫니))를 각 좌측구치부, 우측구치부, 전치부로 3구역으로 나눈 단위를 말하며, 1인당 6개의 1/3악을 가집니다. 전치부란 송곳니와 반대 송곳니 부분에 해당하는 앞니(송곳니포함)에 해당하며, 구치부는 전치부 이외의 어금니 치아부분에 해당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치주질환(잇몸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잇몸질환이라고 합니다. 치주질환(잇몸질환)은 크게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염증 반응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했을 때는 치은염이라 하고, 치은염을 방치해 치주 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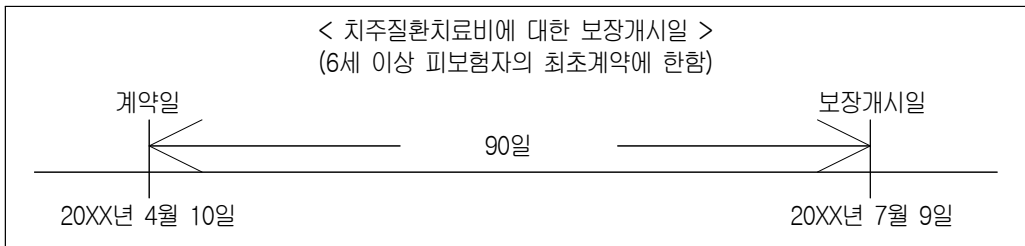
- ① 치주질환치료비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가. 가입연령이 6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

나. 가입연령이 6세 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②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동일한 잇몸부위에 주된 수술과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수술로 두 가지 이상의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2.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제6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치아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확인서(아래 내용 포함)
 - 가. 진료된 치아위치(또는 치아번호)
 - 나. 진료내용
 - 다.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등
3. 진료비계산서(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이 포함된 치과 진료비 영수증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8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 발치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발치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 이 특별약관의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4조(「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 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정한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 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치료원인	치료항목	지급금액
상해 및 질병	단순발치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치아 및 노출된 치근)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5%
	정교발치 (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완전매복발치 (완전 매복된 치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 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 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발치치료비 급여 인정 기준」이라 합니다.
- ② 제1항의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 치료」는 「발치치료 분류표」(【별표80】참조)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 치료」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병,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발치치료」라 함은 치아를 제거하는 외과적 처치로서, 아래에서 정한 단순발치(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치아 및 노출된 치근), 정교발치(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및 완전매복발치(완전 매복된 치아)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단순발치(맹출(이동)치아 및 노출된 치근)」라 함은 정상 맹출(이동)된 치아를 제거하는 치료술식으로 발치검자 등 기구를 활용하지만 잇몸절개, 치아분할 또는 골삭제 등을 하지 않고 정상 발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정교발치(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라 함은 발치할 치아가 치조골에 부분적으로 매복되어있는 경우 또는 파절된 치아를 제거하기 위한 시술이며 단순 발치가 불가능한 경우 필요한 치료술식을 말합니다.
- ④ 제1항의 「완전매복발치(완전 매복된 치아)」라 함은 치관의 2/3이상 이 치조골 또는 악골내에 매복된 경우이며 골삭제와 치아분할술이 필요한 치료술식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발치치료비(상해및질병)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과잉치 발치치료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과잉치 발치치료비(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과잉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과잉치」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과잉치」의 치료를 목적으로 「발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과잉치 발치치료비(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과잉치」의 정의 및 진단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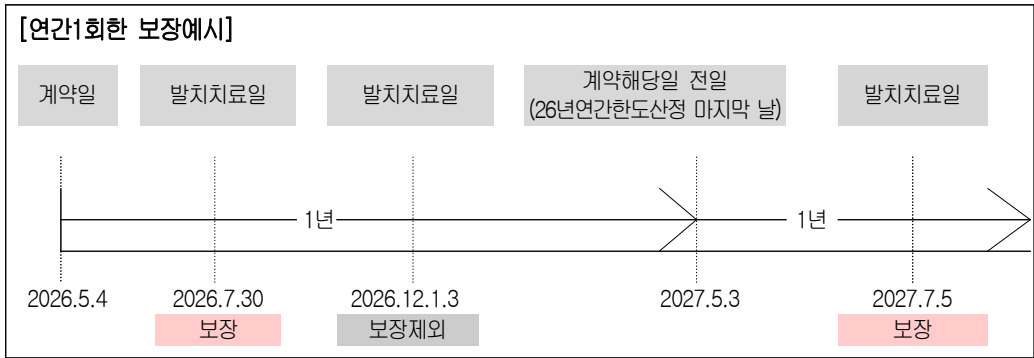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과잉치」이라 함은 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로, 「과잉치 분류표」(【별표110】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과잉치」의 진단확정은 진료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발치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발치치료」라 함은 제2조(「과잉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의사에 의하여 「과잉치」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발치치료 분류표」(【별표80】참조)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발치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계약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3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발치치료」 의료행위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제1항이외에도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치아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확인서(아래 내용 포함)
 - 진료된 치아위치(또는 치아번호)
 - 진료내용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등
- 치료 전후 해당 치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 진료비계산서(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이 포함된 치과 진료비 영수증 등)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장.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1. 의료사고법률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의료사고법률비용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 이와 같음)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의료사고법률비용	변호사 착수금의 80% 지급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를 받고 보험기간 만료 후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의료사고라 함은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외의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총칭하는 것으로 의료과오로 인한 것과 불가항력적인 것을 포괄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정한 의료기관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는 의료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계약일 이전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4조(보험금의 청구)

-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법원의 소장접수증명원, 변호사 착수비용 세금계산서, 병원 또는 의원의 진료확인서 등)
 3.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비례분담)

- 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합니다.

공제계약

유사보험으로서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우체국, 신한, 새마을금고 등이 공제계약을 취급합니다.

-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각 계약의 보상책임액}}{\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6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유괴,납치,인질피해처리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유괴,납치,인질피해처리비용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에서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 해제되지 않은 경우,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피보험자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거나 사망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유괴,납치,인질피해처리비용	신고시점부터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90일한도)

제2조(「억류상태」의 정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억류상태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신체적으로 직접 구속하여 장소적으로 일정한 구획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2.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이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현재 보호되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아래 옮겨두는 것.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으로 판명되어야 사고로 인정합니다. 다만, 단순한 가출이나

실종으로 행방이 불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근시및원시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근시및원시치료비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험계약일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안과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한쪽 눈 이상의 굴절도가 -2디옵터(Diopter) 이상의 근시 또는 +2디옵터(Diopter) 이상의 원시에 의한 굴절이상(Anomalies of Refraction)으로 판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난시는 제외합니다.

용어풀이

“디옵터(Diopter)”라 함은 렌즈의 굴절력을 표시하는 단위로 초점거리의 역수로 표시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나이가 이미 2세를 초과한 경우
 2.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근시및원시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고도근시및원시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고도근시및원시치료비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험계약일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안과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한쪽 눈 이상의 굴절도가 -6.25 디옵터(Diopter) 이상의 고도근시 또는 +4.25디옵터(Diopter) 이상의 고도원시로 판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난시는 제외합니다.

용어풀이

“디옵터(Diopter)”라 함은 렌즈의 굴절력을 표시하는 단위로 초점거리의 역수로 표시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나이가 이미 2세를 초과한 경우
 2.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고도근시및원시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부정교합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부정교합치료비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험계약일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Angle씨 부정교합(不正咬合) 분류법의 II급 또는 III급으로 치과의사에 의해 판정되고 그로 인하여 교정치료를 요한다는 치과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

<Angle씨 부정교합 분류>

구 분	분 류
II급	하악대구치(아래 어금니)가 상악대구치(윗 어금니)에 비해 원심(안면에서 후방)쪽으로 치우쳐있는 경우
III급	하악대구치(아래 어금니)가 상악대구치(윗 어금니)에 비해 근심(안면에서 전방)쪽으로 치우쳐있는 경우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단순치열교정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나이가 이미 2세를 초과한 경우
 2.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부정교합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출산위험 II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임신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의 보장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 제3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에 시작하여 1년 이 지난날에 끝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저체중아출생보험금 : 출생시 체중이 2,000그램 이하인 경우(이하 “저체중아출생”이라 합니다) 아래의 금액을 지급
2. 장해출생보험금 : 피보험자에게 「장해의 대상」(【별표81-1】참조)에 해당하는 장해(이하 “장해출생”이라 합니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3. 심한장해출생보험금 : 피보험자에게 「심한 장해의 대상」(【별표81-2】참조)에 해당하는 장해(이하 “심한장해출생”이라 합니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저체중아출생보험금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
장해출생보험금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
심한장해출생보험금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출생한 날로부터 1년(다만,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심한장해에서 뇌성마비의 경우에는 2년간으로 합니다. 이하 “사고발견기간”이라 합니다) 이내에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사고가 발견되어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다태아로 출생한 경우 각각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저체중아출생”,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장해출생”,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심한장해출생”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1명의 자녀에게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저체중아출생, 장해출생 또는 심한장해출생 중 두 가지 이상이 발견된 경우(시기가 다르게 발견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각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1명의 자녀에게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장해 중 두 가지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먼저 발견된 하나의 장해에 대해서만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1명의 자녀에게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심한 장애 중 두 가지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먼저 발견된 하나의 심한장애에 대해서만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모(임산부)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2.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제6조(무효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 ① 보험계약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과 경과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이외의 사유로 무효 또는 해지가 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해지가 피보험자의 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저체중아육아비용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임신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의 보장은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 제3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에 시작하여 1년이 지난날에 끝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저체중아육아비용 : 보험기간 중에 저체중아(출생시의 체중이 2.5kg 이하인 신생아를 말합니다)로 출생하여 인큐베이터(조산아 보육기를 말합니다)를 사용했을 경우 최고 60일을 한도로 실제 사용일수에서 2일을 공제하고 인큐베이터 사용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저체중아육아비용	2일초과 인큐베이터 사용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최고 60일한도)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인큐베이터 사용 중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인큐베이터 사용 완료 전까지의 계속 사용에 대하여는 「저체중아육아비용」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다태아로 출생한 경우 각각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계약자가 태아의 이상 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저체중아육아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6장. 부양자관련 특별약관

0. 부양자관련 공통약관

제1조(특별약관 보험료의 정산에 관한 사항)

① 아래에 해당하는 특별약관은 계약체결시 출생예정일과 실제 출생일(분만일)의 차이로 인해 보험료의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성사망 특별약관
- 임신출산질환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 임신출산질환수술비 특별약관
- 유산입원비(4일~120일) 특별약관
- 유산수술비 특별약관
- 임신중독증(자간포함)진단비 특별약관
- 임신관련특정혈액질환진단비 특별약관
- 만기태아사망진단비 특별약관
- 출산전 선별검사 결과 이상소견 진단비 특별약관
- 태반조기박리진단비 특별약관
- 양수색전증진단비 특별약관
- 임신성당뇨진단비 특별약관
- 다운증후군 출산진단비 특별약관
-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진단비 특별약관

② 피보험자의 출생예정일과 실제 출산일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험료의 차이는 가입 시점에서 실제 출산일까지의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계산한 일시납보험료와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하였던 일시납보험료의 차액으로 정산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는 계약자가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제3항의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 또는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금액은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정산보험료와 이에 대한 이자(정산보험료를 정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⑤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료 정산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분만과 관련된 사고증명서(입원치료확인서 등)

단, 상기 사고증명서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해당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⑥ 제4항 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1. 부양자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피보험자의 부양자(가입 시 「가족관계등록」 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부모를 말합니다)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부양자일반상해사망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부양자일반상해사망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부양자일반상해사망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부양자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피보험자의 부양자(가입 시 「가족관계등록」 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부모를 말합니다)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부양자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부양자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9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부양자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부양자질병사망(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피보험자의 부양자(가입 시 「가족관계등록」 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부모를 말합니다)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부양자질병사망(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부양자질병사망(감액없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부양자질병사망(감액없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부양자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피보험자의 부양자(가입 시 「가족관계등록」 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부모를 말합니다)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부양자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부양자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부양자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모성사망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 태아의 산모(產母, 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의 보장은 보통약관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에 시작하여 분만후 42일까지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모성사망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 분류표」(【별표82】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모성사망보험금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모성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임신출산질환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 태아의 산모(産母, 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의 보장은 보통약관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에 시작하여 분만후 42일까지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임신출산질환입원비(1일~12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임신및출산관련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임신및출산관련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임신및출산관련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임신출산질환입원비(1일~120일)	1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20일한도)

제4조(「임신및출산관련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임신및출산관련질환」이라 함은 「임신및출산관련질환 분류표」(【별표83】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임신및출산관련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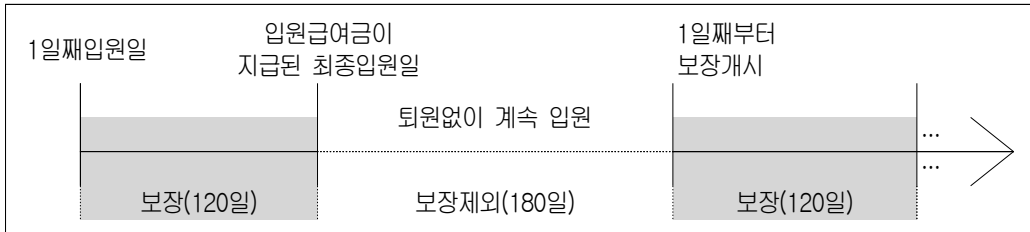
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임신및출산관련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임신및출산관련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임신및출산관련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임신및출산관련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임신및출산관련질환」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임신및출산관련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임신및출산관련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임신및출산관련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임신출산질환입원비(1일~12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임신및출산관련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임신및출산관련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임신출산질환입원비(1일~1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다음과 같이 임신출산질환입원비(1일~1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임신출산질환입원비(1일~1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임신출산질환입원비(1일~120일)를 계속 지급합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임신출산질환입원비(1일~12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임신출산질환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 태아의 산모(産母, 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의 보장은 보통약관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에 시작하여 분만후 42일까지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임신출산질환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임신및출산관련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임신및출산관련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임신및출산관련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임신출산질환수술비	수술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4조(「임신및출산관련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임신및출산관련질환」이라 함은 「임신및출산관련질환 분류표」(【별표83】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임신및출산관련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8. 유산입원비(4일-120일)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 태아의 산모(産母, 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의 보장은 보통약관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에 시작하여 분만시까지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유산입원비(4일-12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유산」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유산」으로 진단확정되고 「유산」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유산입원비(4일-120일)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20일한도)

제4조(「유산」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유산」이라 함은 「유산 분류표」(【별표8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유산」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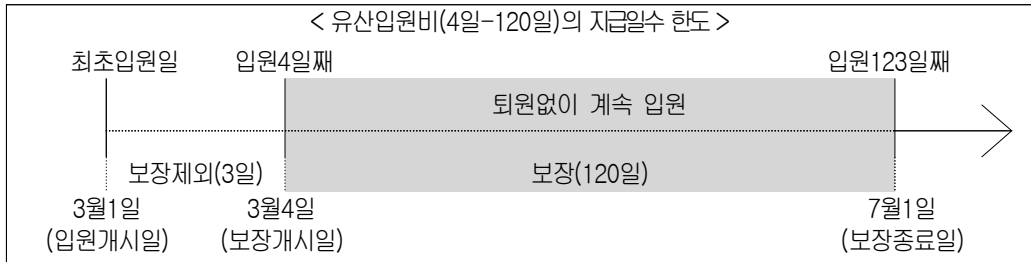
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유산」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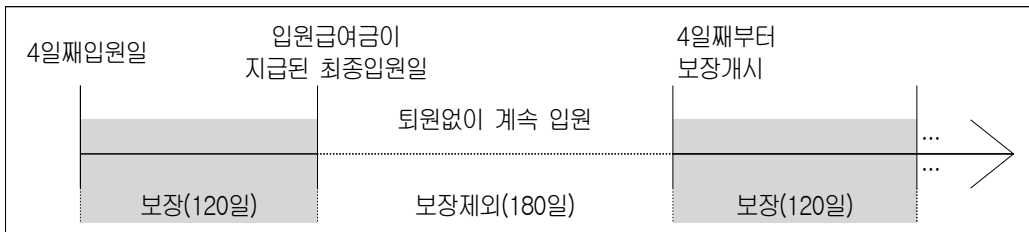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유산」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유산」으로 진단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유산」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유산」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유산」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유산」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유산」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유산입원비(4일-12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유산」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유산」에 대한 입원이라도 유산입원비(4일-1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다음과 같이 유산입원비(4일-1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 중인 경우에는 유산입원비(4일-12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유산입원비(4일-120일)를 계속 지급합니다. 단,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유산입원비(4일-12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 유산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 태아의 산모(産母, 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의 보장은 보통약관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에 시작하여 분만시까지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유산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유산」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유산」으로 진단 확정되고 「유산」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유산수술비	수술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4조(「유산」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유산」이라 함은 「유산 분류표」(【별표8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유산」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 수술
 5. 피임(避妊) 목적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IPL(Intense Pulsed Light):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임신중독증(자간포함)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 태아의 산모(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의 보장은 보통약관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에 시작하여 분만일까지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임신중독증(자간포함)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임신중독증(자간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임신중독증(자간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임신중독증(자간포함)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4조(「임신중독증(자간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임신중독증(자간포함)」이라 함은 「임신중독증(자간포함) 분류표」(【별표85】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임신중독증(자간포함) 분류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래에 정한 질병은 제외합니다.
 1.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O10)
 2. 동반된 단백뇨를 동반한 전에 있던 고혈압성 장애(O11)
 3. 고혈압을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임신-유발성] 부종 및 단백뇨(O12)
 4. 유의한 단백뇨를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임신-유발성] 고혈압(O13)
 5. 상세불명의 모성고혈압(O16)
- ② 제1항의 「임신중독증(자간포함)」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자간

임신 20주 이후에 수축기 혈압 140mmHg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90mmHg 이상이면서 단백뇨가 나타나는 경우를 전자간증(자간전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하며, 이러한 전자간증 산모에서 임신 기간이나 분만 전후에 전신의 경련 발작이나 의식불명을 일으키는 경우를 자간(자간증)이라 함.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동일한 임신에 한하여 제4조(「임신중독증(자간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임신중독증(자간포함)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임신중독증(자간포함)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임신관련특정혈액질환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 태아의 산모(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의 보장은 보통약관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에 시작하여 분만일까지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임신관련특정혈액질환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임신관련특정혈액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임신관련특정혈액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임신관련특정혈액질환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4조(「임신관련특정혈액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임신관련특정혈액질환」이라 함은 「임신관련특정혈액질환 분류표」(【별표86】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혈소판과 응고인자의 과도한 소모를 동반한 미세 혈관 혈전증의 결과로 발생하는 혈전출혈의 혈액장애입니다. 혈액응고인자의 결핍은 다량의 자발적인 출혈을 발생시키며, 혈액 성분물 교체와 같은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 ② 「임신관련특정혈액질환」의 진단은 혈액학적 테스트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서 허용하지 않는 임신중절수술을 원인으로 한 「임신관련특정혈액질환」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신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임신관련특정혈액질환」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③ 제1항의 「임신관련특정혈액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동일한 임신에 한하여 제4조(「임신관련특정혈액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임신관련특정혈액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임신관련특정혈액질환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 만기태아사망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 태아의 산모(단, 임신 22주 이내의 산모에 한하며, 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의 보장은 보통약관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에 시작하여 분만일까지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만기태아사망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만기태아사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만기태아사망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4조(「만기태아사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만기태아사망」이라 함은 태아가 임신 28주 이후에 자궁 내에서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임신의 종결이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서 허용하지 않는 임신중절수술에 따른 「만기태아사망」의 경우는 보상하지 않으며, 사산된 태아가 1명 이상인 경우에도 1회만 보장합니다. 다만, 향후 모자보건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③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만기태아사망」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동일한 임신에 한하여 제4조(「만기태아사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만기태아사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다만, 회사가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만기태아사망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3. 출산전 선별검사 결과 이상소견 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 태아의 산모(단, 임신 22주 이내의 산모에 한하며, 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의 보장은 보통약관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에 시작하여 분만일까지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출산전 선별검사 결과 이상소견 진단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태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출산전 선별검사 결과 제4조(용어의 정의)의 「이상소견」으로 진단확정 될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출산전 선별검사 결과 이상소견 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4조(용어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이상소견」이라 함은 「출산전 선별검사 결과에 따른 이상소견 분류표」(【별표87】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출산전선별검사란 임신 중 태아의 선천기형 등을 선별하기 위한 검사로써, 일반적으로 출산전검사로 불립니다.
- ③ 제1항의 「이상소견」의 진단확정은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동일한 임신에 한하여 제4조(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이상소견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출산전선별검사 결과지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출산전 선별검사 결과 이상소견 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4. 태반조기박리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 태아의 산모(產母, 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의 보장은 보통약관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에 시작하여 분만일까지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태반조기박리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태반조기박리」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태반조기박리」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태반조기박리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4조(「태반조기박리」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 「태반조기박리」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태반조기박리 분류표」(【별표88】참조)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태반조기박리」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태반조기박리진단비」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태반조기박리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5. 양수색전증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 태아의 산모(產母, 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의 보장은 보통약관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에 시작하여 분만일까지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양수색전증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양수색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양수색전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양수색전증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4조(「양수색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 「양수색전증」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양수색전증 분류표」(【별표89(【별표89】참조)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양수색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양수색전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양수색전증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6. 임신성당뇨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 태아의 산모(產母, 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의 보장은 보통약관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에 시작하여 분만일까지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임신성당뇨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임신성당뇨」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임신성당뇨」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임신성당뇨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4조(「임신성당뇨」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 「임신성당뇨」이라 함은 임신중인 피보험자가 임신 으로 인해 당뇨병이 처음 발견 되는 경우로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임신성당뇨 분류표」(【별표90】 참조)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임신성당뇨」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참고 : 대한산부인과 학회의 임신성당뇨 진단기준

- 1) 선별검사 : 임신 24~28주 사이에 50g 당부하검사를 실시하여 임신성 당뇨를 선별함. 이 검사에서 1시간 후 혈중 당수치가 140mg/dl을 초과하는 경우 진단을 위한 100g 당부하검사를 실시.
- 2) 진단적 검사 : 밤새 금식 후 100g 당부하검사를 시행하는데, 다음의 기준치 중 2개 이상에 해당되면 임신성 당뇨라 진단함.

검사직전 혈중당수치	105mg/dl 초과
1시간 후	190mg/dl 초과
2시간 후	165mg/dl 초과
3시간 후	145mg/dl 초과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임신전 이미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5. 임신 외 다른 요인으로 인한 당뇨병인 경우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임신성당뇨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7. 다운증후군 출산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 태아의 산모(단, 임신 22주 이내의 산모에 한하며, 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의 보장은 보통약관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에 시작하여 1년이 지난날까지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다운증후군 출산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로부터 태어난 자녀가 제4조(「다운증후군」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다운증후군」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다운증후군 출산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4조(「다운증후군」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다운증후군」이라 함은 「다운증후군 분류표」(【별표91】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다운증후군」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계약자가 태아의 이상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다운증후군 출산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다운증후군 출산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8. 산후우울증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 태아의 산모(產母, 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의 보장은 보통약관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분만일에 시작하여 1년이 지난날까지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산후우울증치료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산후우울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산후우울증」으로 진단확정 받고,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산후우울증치료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4조(「산후우울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 「산후우울증」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산후증후군 분류표」(【별표92】 참조)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산후우울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에 의해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기록 또는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검사 결과지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약물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약물치료」라 함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산후우울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약물(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s),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SNRI), 삼환계 항우울제(TCA), 항불안제(Anxiolytics), 단가아민 산화효소억제제(MAOIs), 기타의 중추신경용약제 등)을 처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따릅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산후우울증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9.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 태아의 산모(產母, 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의 보장은 보통약관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에 시작하여 분만시까지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진단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4조(「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분류표」(【별표153】참조)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기록 또는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7장. 무배당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갱신형_1년) 특별약관

0. 배상책임 관련 공통약관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 :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 가. 배상책임 :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 나. 보상한도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금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 다.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 라. 보험금 분담 :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공제계약

유사보험으로서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공제계약을 취급합니다.

- 가. 대위권 :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노동절을 제외합니다.

제3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공탁보증보험료

가압류, 가집행, 가처분 등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할 때, 잘못된 신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신청인의 손해를 법적으로 보상해 주기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공탁금을 대신하는 보험상품을 공탁보증보험이라 하며, 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공탁보증보험료라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5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피보험자의 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의무보험과의 관계)

-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8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8조(보험금의 분담)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특별약관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특별약관의 보상책임액}}{\text{다른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이 특별약관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9조(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 조치를 포함합니다)
 -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배상책임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1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비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2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갱신형 보장이 있는 경우 갱신형 보장의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갱신형 보장이 있는 경우 갱신형 보장의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41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제1항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

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의 보상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⑦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보며,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16조(양도)

보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8조(특별약관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보험종목
 - 2. 보험기간
 -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 4. 계약자, 피보험자
 - 5. 보상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41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⑤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등을 감액 혹은 증액할 경우 최초 안내한 만기환급금 또는 해약환급금보다 적거나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제20조(계약의 자동갱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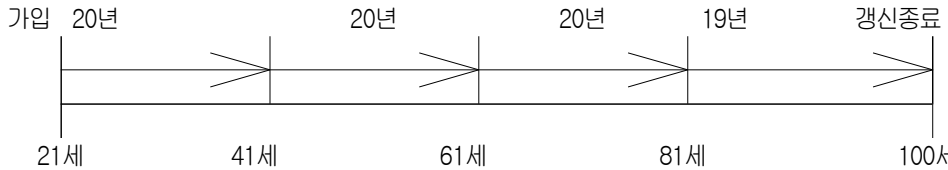
- ① 회사는 갱신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전까지 갱신후 계약 보험료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니다.
- ② 이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계약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계약(이하 “갱신전 계약”이라 합니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계약의 만기일(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적립보험료는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갱신시점에 재설정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1. 갱신된 계약(이하 “갱신후 계약”이라 합니다)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내일 것
 -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내일 것
 - 3.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③ 갱신후 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갱신시 보험기간 예시

(예시1) 21세 피보험자가 20년만기로 100세까지 갱신하는 경우

갱신시점 나이 : 41세, 61세, 81세

- 81세에서는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19년 만기로 운용



- ④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보험약관은 최초 가입시점의 약관을 적용하며(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약관개정으로 인하여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한 경우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이 때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제4항의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내역,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이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2회이상 계약자에게 서면(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안내합니다.
- ⑥ 회사는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를 통해 확인하고,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변경 전 계약의 만기일의 다음 날(이하 「갱신일」)에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갱신일에 변경 전 계약은 만료됩니다.
- ⑦ 회사가 제6항에 따른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에 대해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1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계약자가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이 계약을 해제합니다.

제22조(조사)

- ① 회사는 보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 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3조(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특별약관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제2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통약관 제4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4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보통약관 제41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존속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권리는 소멸됩니다.

제2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보통약관 제4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6조(태아의 보장개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제8장.제도성 특별약관 1.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당일로 합니다.

제2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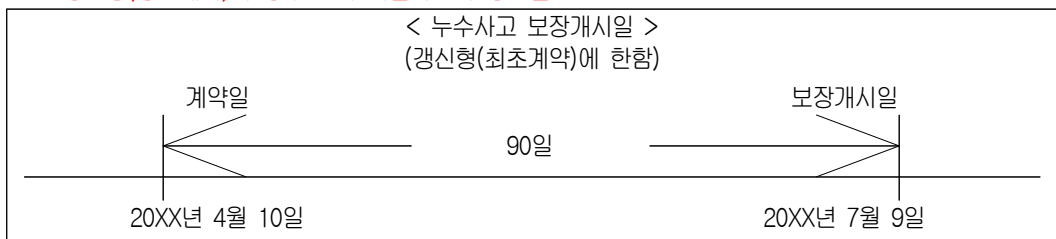
1.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갱신형_1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규정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제4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의 장애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 ② 피보험자의 주거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로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보된 주택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제6조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아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 또는 소유하게 된 주택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거주 및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용도 등이 달라져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 ④ 위 1항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갱신행(최초계약)의 경우
 - 가. 누수사고 이외의 사고 : 보험계약일
 - 나. 누수사고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행(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행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친족(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을 말합니다)
 4.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 ② 제1항에서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3조(누수사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누수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의 주택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 내 각종 급·배수 설비(배관, 수관, 수조, 오수관, 우수관, 싱크대배관, 보일러배관, 난방배관 등 건물 내 설치된 모든 급·배수 설비를 지칭합니다)를 비롯한 주택 건물 및 부대설비의 노후화, 하자, 결함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수침손해 또는 오염손해를 끼치게 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화재사고 발생시 스프링클러(sprinkler) 작동, 소방수 피해 등의 소방피해는 누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10-0. 배상책임관련 공통약관] 제9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10-0. 배상책임관련 공통약관] 제9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10-0. 배상책임관련 공통약관] 제1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회의 보험사고

1회의 보험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서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1.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의 손해배상금 : 1사고당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누수와 누수 이외의 사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하나의 사고를 원인으로 누수와 누수 이외의 결과로 인한 배상책임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는 '누수사고'로 봅니다.

대인배상책임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대물배상책임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일으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2.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다', '라'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애(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 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합니다.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7.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8.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용어의 정의

·차량 :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 세그웨이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개인형이동장치(시속25킬로미터 미만의 속도제한 및 중량 30킬로그램미만) 역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됩니다.

9.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0.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중 7.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7장. 0.배상책임 관련 공통약관을 따릅니다.

제8장. 제도성 특별약관

1. 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및 아래에 해당하는 특별약관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1장. 상해관련 특별약관 중

- 1-2. 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태아) 특별약관
- 2-2.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태아) 특별약관
- 4-2.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태아) 특별약관
- 6-2.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연간1회한)(태아) 특별약관
- 7-2. 5대골절진단비(태아) 특별약관
- 9-2.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태아) 특별약관
- 10-2.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태아) 특별약관
- 22-2. 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태아) 특별약관
- 23-2.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20일)(태아) 특별약관
- 25-2. 일반상해입원비(1일~210일)(태아) 특별약관
- 26-2.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태아) 특별약관
- 27-2.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선천기형포함)(1일~20일)(태아) 특별약관
- 28-2. 상해수술비(선천기형포함)(태아) 특별약관
- 29-2. 골절수술비(선천기형포함)(태아) 특별약관
- 30-2. 5대골절수술비(선천기형포함)(태아) 특별약관
- 31-2. 상해1~5종수술비Ⅳ(선천기형포함)(태아) 특별약관
- 32-2. 성장판손상골절진단비(태아) 특별약관
- 35-2. 일반상해입원비(1일~20일)(태아) 특별약관
- 38-2. 상해1~5종수술비(1사고당)(선천기형포함)(태아) 특별약관
- 40-2. 상해1~8종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태아) 특별약관
- 42-2. 창상봉합술치료비(급여,연간3회한)(태아) 특별약관
- 43-2. 창상봉합술치료비(급여,안면부,연간3회한)(태아) 특별약관
- 44-2. 상해재활치료비(급여_연간20회한)(태아) 특별약관
- 47-2. 골절철심제거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_연간1회한)(태아) 특별약관
- 52-2.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태아) 특별약관
- 53-2.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태아) 특별약관
- 60-2. 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태아) 특별약관
- 61-2.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태아) 특별약관
- 63-2. 상해수술비(치아파절 및 치아탈구제외)(선천기형포함)(태아) 특별약관

제2장. 질병관련 특별약관 중

- 1-2. 질병후유장해(3~100%)(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 2-2. 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 3-2. 질병후유장해(50%이상)(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 4-2. 질병후유장해(20~100%)(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 5-2.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 6-2. 뇌출혈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 7-2.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 8-2.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9-2. 허혈성심질환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14-2.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16-2.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17-2. 신통합암(전이포함)진단비Ⅱ(유사암제외)(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18-2.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0-2.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210일)(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4-2. 질병1~5중수술비Ⅳ(태아) 특별약관
 26-2. 암수술비(유사암제외)(최초1회한)(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7-2. 암수술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8-2. 유사암수술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31-2.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33-2. 전반발달장애진단비(태아) 특별약관
 34-2. 다발성소아암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35-2. 소아백혈병진단비(태아) 특별약관
 37-2.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39-2. 신통합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Ⅱ(유사암제외)(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40-2. 양성뇌종양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44-2. 식중독입원비(4일-120일)(태아) 특별약관
 45-2. 특정전염병치료비(태아) 특별약관
 46-2. 환경성질환입원비(1일-120일)(태아) 특별약관
 47-2. 생활질환입원비(1일-120일)(태아) 특별약관
 48-2. 희귀난치성질환입원비(1일-120일)(태아) 특별약관
 49-2. 질병수술비(태아) 특별약관
 52-2. 질병1~5중수술비Ⅱ(동일질병당)(태아) 특별약관
 54-2. 허혈성심질환수술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55-2.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수술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56-2. 특정순환계질환수술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57-2. 다발성3대혈관질환수술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58-2. 70대특정질병수술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59-2. 치핵(치질)수술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62-2. 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63-2. 소아탈장수술비(태아) 특별약관
 65-2.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태아) 특별약관
 68-2. 성장장애관련질환입원비(1일-120일)(태아) 특별약관
 71-2. 피부질환수술비(연간1회한)(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72-2. 호흡기관련질환수술비(태아) 특별약관
 83-2. 선천이상입원비(1일-120일)(태아) 특별약관
 84-2. 선천이상수술비(태아) 특별약관
 85-2. 특정선천이상수술비(태아) 특별약관
 88-2. 뇌성마비진단비(태아) 특별약관
 89-2. 중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80일)(태아) 특별약관
 90-2.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20일)(태아) 특별약관
 92-2. 7대희귀난치성질환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94-2. 질병중환자실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태아) 특별약관
 95-2. 질병수술동반입원비(선천이상포함)(1일-20일)(태아) 특별약관
 96-2.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210일)(태아) 특별약관
 97-2.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태아) 특별약관
 100-2. 암직접치료 중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102-2.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106-2. 수족구진단비(연간1회한)(태아) 특별약관

107-2. 수두진단비(태아) 특별약관
 114-2. 기흉진단비(태아) 특별약관
 122-2.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142-2.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143-2. 5대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145-2. 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태아) 특별약관
 147-2.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20일)(태아) 특별약관
 148-2. 142대특정질병수술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150-2. 질병1~8종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태아) 특별약관
 151-2. 심근병증(허혈성제외)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152-2. 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153-2. 특정순환계질환(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진단비(감액없음)(1종)(태아) 특별약관
 154-2.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2종)(태아) 특별약관
 155-2.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3종)(태아) 특별약관
 156-2.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4종)(태아) 특별약관
 157-2.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5종)(태아) 특별약관
 158-2.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159-2.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172-2. 급성신우신염진단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173-2.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선천성 포함)(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190-2. 암후유장해(3~100%)(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13-2.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52-2.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태아) 특별약관
 53-2.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태아) 특별약관
 219-2.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태아) 특별약관
 220-2.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태아) 특별약관
 221-2.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22-2. 암주요치료비(유사암)(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23-2. 종합병원 질병수술비(태아) 특별약관
 224-2.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태아) 특별약관
 225-2. 전신마취암수술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31-2.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태아) 특별약관
 232-2.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태아) 특별약관
 233-2. 2대질환주요치료비(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38-2. 질병수술비(특정6대질환 II 제외)(태아) 특별약관
 239-2. 질병수술비(특정8대질환제외)(태아) 특별약관
 240-2.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특정6대질환 II 제외)(태아) 특별약관
 258-2.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60-2.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62-2.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64-2. 항암방사선치료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66-2. 항암약물치료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68-2.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70-2. 암주요치료비 II (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71-2. 암주요치료비 II (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74-2. 혈전제거치료비(급여,연간1회한)(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76-2. 백반증진단비(태아) 특별약관
 278-2. 질병수술비(선천이상포함)(태아) 특별약관
 280-2. 암진단비(유사암제외)(5회지급형)(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283-2.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 292-2.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
(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 292-2.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
(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제3장. 상해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중

- 1-2. 김스치료비(태아) 특별약관
- 7-2. 응급실내원비(응급)(태아) 특별약관
- 8-2. 신김스치료비(태아) 특별약관
- 9-2. 상해질병입원비(선천성노질환포함)(1일-180일)(태아) 특별약관
- 10-2. 상해질병수술비(선천기형포함)(태아) 특별약관
- 12-2.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4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장해(50%이상))(태아) 특별약관
- 14-2. 인공와우이식수술비(태아) 특별약관
- 16-2.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 17-2.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 21-2. 8대장애(선천성포함)진단비(태아) 특별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 어	정 의
태아	계약을 체결 할 때에 출생하지 않은 자(자녀)로 피보험자가 될 자를 말합니다.
임신부	위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
출생일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출생일로서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생예정일	계약체결시 청약서에 기재된 출생예정일 또는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계산된 출생예정일을 말합니다.
태아보장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출생시점(출산 또는 분만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포함)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태아위험보장	태아보장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고 계약일로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태아보장기간 이후에도 태아보장기간 중에 발생한 위험을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에 시작하여 제5조(출생통지)에서 정한 출생통지를 한 기간까지 적용됩니다.
- ③ 회사는 보통약관 제2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태아에 대한 계약자의 청약 승낙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임신부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의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⑤ 보통약관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로 될 자가 태아인 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태아는 출생을 조건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소급하여 피보험자가 됩니다.

제5조(출생통지)

- ① 계약자는 태아가 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2.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 ② 회사는 제1항의 알림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합니다.
 1. 피보험자의 성별
 2. 출생일
 3. 출생일 기준의 태아보장기간 및 출생일 이후의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 ③ 회사는 제1항의 알림 및 제2항의 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6조(유산 또는 사산 등)

- ①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 등에 의해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합니다. 보험료 할인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양자인 아래의 「부양자 관련 특별약관」은 제외합니다.

- 모성사망 특별약관
- 만기태아사망진단비 특별약관
- 임신중독증(자간포함)진단비 특별약관
- 임신관련특정혈액질환진단비 특별약관
- 임신출산질환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 임신출산질환수술비 특별약관
- 유산입원비(4일~120일) 특별약관
- 유산수술비 특별약관
- 출산전 선별검사 결과 이상소견 진단비 특별약관
- 태반조기박리진단비 특별약관
- 양수색전증진단비 특별약관
- 임신성당뇨진단비 특별약관
- 다운증후군 출산진단비 특별약관
- 산후우울증치료비 특별약관
- 부양자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 부양자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특별약관
- 부양자질병사망(감액없음) 특별약관
- 부양자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 특별약관

- ② 계약자는 제1항의 사실이 발생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통지서(회사양식)
 2. 의사 또는 조산원의 유산, 사산 등을 증명하는 서류
 3. 보험증권
 4. 최종보험료 영수증
- ③ 회사는 제2항의 알림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7조(복수출생의 경우)

- ①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피보험자 각각을 지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따릅니다. 다만, 하나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출생아 중 1명만을 피보험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출생아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약의 피보험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해 지정된 피보험자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피보험자가 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고 동시에 출생한 자가 생존하여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하여 동시에 출생한 자 가운데 가족관계등록상 다음순위의 자를 새로운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가 제3항의 변경을 청구한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새로 피보험자로 될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보험증권

- ⑤ 제3항의 변경을 회사가 승인한 때에는 원래의 피보험자의 사망시로 소급하여 그 변경이 행해진 것으로 하여 회사는 그 때부터 변경 후의 피보험자에 대해서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⑥ 제3항의 피보험자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 전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⑦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⑧ 계약자가 원래의 피보험자를 고의로 사망케 한 경우에는 제3항의 피보험자 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나이 등의 계산 및 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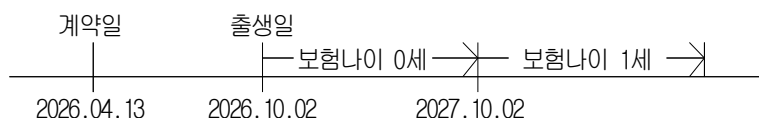
- ① 보통약관 제26조(보험나이 등)에서 적용하는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는 출생일에 0세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출생예정일 이후에도 제5조(출생통지)에서 정한 출생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예정일에 0세로 하고 그 출생통지에 따른 확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출생일은 출생예정일로 합니다.
- ③ 이 계약의 계약해당일은 태아보장기간에는 최초계약일, 출생일 이후에는 출생일로 합니다.

예시

· 보험나이 계산

현재(계약일) : 2026년 4월 13일

출생예정일 : 2026년 10월 5일, 출생일 : 2026년 10월 2일



· 계약해당일 계산

출생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다만,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는 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적용합니다.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예시1) 출생일: 2026년 10월 1일 ⇒ 계약해당일: 10월 1일

예시2) 출생일: 2028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2월 말일

제9조(보험료의 적용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일 경우 계약일부터 출생예정시점까지의 태아보장기간에 태아위험보장을 위한 보장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이 때 보험료는 피보험자 남자 기준 보장보험료 합계액과 피보험자 여자 기준 보장보험료의 합계액 중 성별 기준 높은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② 출생예정일이 도래한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는 보험나이 0세 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그 보장보험료는 계약체결시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하며, 이 때 보험료는 제1항에서 정한 성별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출생통지) 제2항의 확정이 있는 경우 제11조(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에 따라 보험료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태아보장기간 중도환급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계약자가 태아보장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제5조(출생통지)에서 정한 출생통지를 한 때에는 태아보장기간에 해당하는 중도환급금(이하 「태아보장기간 중도환급금」이라 합니다)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납입유예제도에 의한 보험료 대체납입)에 의해 납입유예 대체보험료가 있는 경우 및 이미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또한, 보통약관에 정한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단, 2종(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3종(납입후 표준형환급률 동일지급형) 및 4종(계약전환형)에 대해서는 「태아보장기간 중도환급금」을 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 ② 「태아보장기간 중도환급금」은 태아보장기간에 납입하기로 약정한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출생통지일(이하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③ 제1항의 공시이율(보장)이 보험기간 중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보통약관 제10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로 합니다.
- ④ 「태아보장기간 중도환급금」은 제5항(출생통지)에서 정한 출생통지일(이하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⑤ 회사는 「태아보장기간 중도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에 따릅니다.

제11조(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가 제5조(출생통지) 제2항에서 확정된 내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된 보험료로 정산합니다.

1. 계약체결시 적용한 성별과 출생시 성별이 다른 경우
2. 계약체결시 출생예정일과 출생일이 다른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특별약관은 계약체결시 약정한대로 1년만기 전기납으로 확정 납입하여야 하므로 출생일에 따른 보험료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단,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출생시 성별에 따른 보험료 정산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출산위험II 특별약관
- 저체중아육아비용 특별약관
- 신생아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 선천이상진단비 특별약관
- 특정선천이상진단비 특별약관
- 신생아난청진단비 특별약관
- 31주이내출생진단비 특별약관

③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는 계약자가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제4항의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 또는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정산보험료와 이에 대한 이자(정산보험료를 정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⑤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한 이후에 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계약자는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정산 예시

- 출산예정일 : 계약일 + 6개월
- 태아등록(출생일확정)일 : 계약일 + 1년(총 12회 납입)
- 보험료(월납) : 태아 100원 / 0세 10,000원 (태아보장 5,000원, 기타 5,000원)

구 분	예정일 1개월 전 출산	예정일 1개월 후 출산
납입 보험료	60,600원 (= 6회*100원 + 6회*10,000원)	
필요 보험료	70,500 (= 5회*100원 + 7회*10,000원)	50,700원(= 7회*100원 + 5회*10,000원)
정산 금액	9,900원 추징	9,900원 환급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2. 피보험자 추가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 이외에 추가되는 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을 제한할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을 부가할 때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인과관계가 경험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확인된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계약사정기준에 따라 직접 관련이 있는 특정 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으로 제한하며, 부담보 설정 범위 및 사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③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④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⑤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1.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 ① 보험계약에 이 특별약관을 부가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부가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면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회사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특정신체부위 분류표」(【별표93】 참조)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부위(이하 “특정부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단,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특정질병 분류표」(【별표94】 참조)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 “특정질병”이라 합니다)
- ③ 제2항의 면책기간(이하 「부담보 기간」이라 합니다)은 특정부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 「1개월부터 5년」 또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하며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보험 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지나는 동안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보장하여 드리며,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보험계약(이하 「유사계약」이라 합니다)이 계약 청약일 현재 유지중이거나, 계약 청약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요구 또는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경우 유사계약에서 정한 「부담보 기간」 종료일 이내에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적용하고, 유사계약에서 정한 질병과 동일하거나 축소된 범위로 계약의 부담보 설정 범위를 정하며, 유사계약이 다수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조건을 적용합니다. 단, 유사계약 청약일 이후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질병과 관련한 새로운 위험(추가진단·치료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질병에 대한 보장이 추가(입원비, 수술비, 진단비 등 보장 범위의 변경 또는 확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⑤ 제3항에서 회사가 「부담보 기간」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으로 적용한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 이내에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계약 청약일 현재 「부담보 기간」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으로 적용한 유사계약이 유지중이거나, 계약 청약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요구 또는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경우 유사계약 청약일과 계약 청약일 사이에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질병으로 추가진단(단순

-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청약일은 유사계약의 청약일로 봅니다.
- ⑥ 제5항의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 검진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
 2.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 ⑦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제2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2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⑧ 피보험자가 회사에서 정한 면책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면책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⑨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가 특정질병 또는 특정부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인지 아닌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 ⑩ 제2항의 특정부위와 특정질병은 합산하여 4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3조(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계약사정기준

‘계약사정기준’이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등을 판별하고 이에 따라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규정을 따릅니다.

4. 이륜자동차 운전중(탑승포함)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보통약관 및 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통약관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④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의 목적으로 주로 운전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하위법령, 규칙 포함)에 정한 이륜자동차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 도로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에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합니다.

[용어풀이]

개인형이동장치(세그웨이,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을 포함하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니다.

- ③ 제2항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 1. 이륜인 자동차에 축차를 붙인 자동차
 -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관리법(하위 법령, 규칙포함) 및 도로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⑤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관할경찰서에서 발생한 사고처리확인원 등으로 결정합니다.

제3조(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및 제37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에 따라 보험계약과 동시에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5.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 제21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6. 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 ① 이 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을 부가하는 보통약관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이어야 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2개월 이전까지로 합니다.
- ③ 보통약관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이하 “사망보장 특별약관”이라 합니다)가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지급사유)

- ① 회사는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의료법 제3조에 정한 국내의 종합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실시한 진단결과 피보험자의 남은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회사의 신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장 특별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사망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 지급일에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이 있어도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 사망보장 특별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아도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사망보장 특별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청구가 있어도 이를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사망보장 특별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생존기간 상당분의 이자 및 보험료를, 또 보통약관에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 합계를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⑥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액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의 사망보장 특별약관의 사망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정대리 청구인)

- ①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계약자가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2인이내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2인을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3항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③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계약자의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항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별약관의 보험수익자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대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지정대리청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계약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고의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2조(지급사유) 제1항에 해당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보험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지급)

- ①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정대리 청구인) 제6항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회사로부터의 사실 조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회답 또는 동의를 거부한 때에는, 그 회답 또는 동의를 얻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에 의한 피보험자의 진단을 요구한 경우에도 진단을 받지 않은 때에는 진단을 받고 사실 확인이 끝날 때 까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사망보장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7.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아래에 해당하는 특별약관(이하 「갱신형 보장특약」 이라 합니다)에 적용됩니다.

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 재진단암III진단비(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소아·청소년 특정 성인병 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 ADHD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 중증아토피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 중증틱장애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 성조숙증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 유치치아보존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 영구치치아보존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 영구치치아보철치료비II(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 영구치치수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 영구치상실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 치아촬영비(X-ray 및 파노라마)(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 치주질환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 발치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 근시및원시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 고도근시및원시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 부정교합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 신재진단암진단비 II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전립선암포함, 5회한)(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II (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면책없음,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독감(인플루엔자) 입원비(1일-30일)(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치료비(연간1회한,10일면책)(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3대질병 MRI 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II (연간1회한)(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양전자 단층촬영(PET) 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 II (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면책없음,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 II (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면책없음,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도모테라피) II (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도모테라피)(면책없음,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이외의 암) II (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이외의 암)(면책없음,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 II (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항암정위방사선치료비 II (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항암정위방사선치료비(면책없음,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아나필락시스진단비(연간1회한)(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영구적중등도이상난청진단비(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영구적중등고도이상난청진단비(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영구적고도이상난청진단비(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V(갱신형_1년) 특별약관
- 뇌심장질환 CT,MRI,초음파,뇌파,뇌척수액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뇌심장질환 혈관조영술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카티(CAR-T) 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치료비(급여_연간1회한)(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6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6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6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6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유사암)(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2대질병주요치료비(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순환계질환(특정질병 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순환계질환(특정질병 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18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지원비(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연간200만원이상)(갱신형_20년) 특별약관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지원비(요양병원)(간병인비용연간200만원이상)(갱신형_20년) 특별약관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비(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연간200만원이상)(갱신형_20년) 특별약관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비(요양병원)(간병인비용연간200만원이상)(갱신형_20년) 특별약관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 카티(CAR-T) 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면책없음, 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면책없음, 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갱신형_20년) 특별약관
-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항암중립자방사선치료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순환계질환(특정질병 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2대질병주요치료비(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암진단비(유사암제외)(5회지급형)(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플래티넘 건강 리셋월렛(3대질병고액치료, 간병및상급병실입원)(갱신형_20년) 특별약관
- 플래티넘 건강 리셋월렛 II(3대질병고액및중환자실치료, 특정질병수술및동반입원)(갱신형_20년) 특별약관
-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 II(유사암제외)(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 암주요치료비 II(유사암)(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 II(유사암제외)(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 II(유사암)(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감액없음)(갱신형_10년)

제2조(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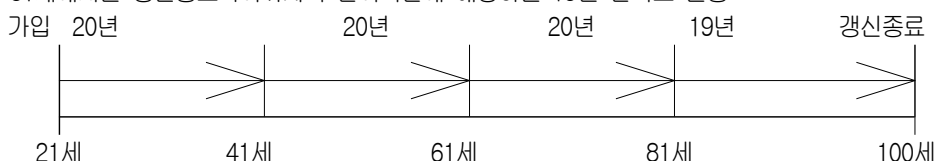
- ① 갱신형 보장특약의 최초계약 보험기간은 각 특약별 보험기간으로 하며,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갱신시 보험기간 예시

(예시1) 21세 피보험자가 20년만기로 100세까지 갱신하는 경우

갱신시점 나이 : 41세, 61세, 81세

- 81세에서는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19년 만기로 운용



- ② 갱신형 보장특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갱신형 보장특약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갱신형 보장특약(이하 “갱신전 보장특약”이라 합니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형 보장특약의 만기일(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된 갱신형 보장특약(이하 “갱신후 보장특약”이라 합니다)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내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내일 것
 3. 갱신전 보장특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세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최초계약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2세인 경우 2년으로 하며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그 외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따릅니다.

- 근시및원시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 고도근시및원시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 부정교합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 소아·청소년 특정 성인병 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 ADHD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 유치치아보존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 치아촬영비(X-ray 및 파노라마)(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 발치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 성조숙증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세 또는 4세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최초계약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2세 또는 5세인 경우 2년으로 하며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그 외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따릅니다.

- 영구치치아보존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 영구치치아보철치료비Ⅱ(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 영구치치수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 영구치상실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 치주질환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특별약관은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1)세까지의 잔여기간이 10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종료나이-1)세까지의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며, 갱신시점 나이가 (갱신종료나이-1)세인 경우에는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그 외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따릅니다.

- 재진단암Ⅲ진단비(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신재진단암진단비Ⅲ(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포함, 5회한)(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태아 및 0세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최초계약의 보험기간은 4년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세인 경우 5년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2세인 경우 6년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3세인 경우 7년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4세인 경우 8년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5세인 경우 9년으로 하며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10년으로 합니다. 그 외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따릅니다.

- 영구적중등도이상난청진단비(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영구적중등고도이상난청진단비(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영구적고도이상난청진단비(갱신형_10년) 특별약관

-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태아 및 0세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최초계약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세인 경우 2년으로 하며,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그 외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따릅니다.

-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치료비(급여_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제3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 ① 계약자가 갱신전 보장특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가 정하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유예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유예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해당 보장특약은 해제됩니다.

- ② 납입유예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갱신후 보장특약에 따라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후 보장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4조(갱신후 보장특약 보험료의 납입방법)

- ① 계약자는 갱신후 보장의 보험료를 보험기간 동안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통약관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자에게 최고(독촉)하고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부족한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납입 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부족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5조(자동갱신 적용)

- ① 회사는 제2조(갱신후 보장특약의 자동갱신)에 의하여 갱신후 보장특약이 갱신되는 경우 보험약관은 가입시점의 약관을 적용하며(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약관개정으로 인하여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한 경우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② 회사는 갱신후계약 보험료에 대하여 갱신후 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내역,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갱신후 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2회이상 계약자에게 서면(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안내합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를 통해 확인하고,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변경 전 계약의 만기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에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갱신일에 변경 전 계약은 만료됩니다.
- ⑤ 회사가 제4항에 따른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에 대해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8. 보험금대리청구인 지정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2인이내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2인을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계약자의 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9. 계약전환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

- ① 이 특별약관은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3종 계약의 보험계약자가 제2조(계약전환 안내)에서 정한 안내를 받고 제1~3종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계약전환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제1~3종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시점에 제1~3종 계약을 제4종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이하, 제1~3종 계약은 「전환전 계약」, 제4종 계약은 「전환후 계약」이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환전 계약」에서 「전환후 계약」으로 계약전환할 수 있는 전환가능 보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전환가능 보장
보통약관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3~100%),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1~5급)(연간1회한),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연간1회한)

	5대골절진단비, 화상진단비,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 상해수술비, 골절수술비(1~5급)(연간1회한), 골절수술비, 화상수술비, 5대골절수술비,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중대한화상및부식치료비, 상해1~5중수술비Ⅳ, 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20일), 일반상해입원비(1일-210일),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선천기형포함)(1일-20일), 상해수술비(선천기형포함), 골절수술비(선천기형포함), 5대골절수술비(선천기형포함), 상해1~5중수술비Ⅳ(선천기형포함), 신화상진단비, 신화상수술비, 일반상해입원비(1일-20일), 상해1~5중수술비(1사고당), 상해1~5중수술비(1사고당)(선천기형포함), 상해1~8중수술비(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상해1~8중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창상봉합술치료비(급여,연간3회한), 창상봉합술치료비(급여,안면부,연간3회한), 골절철심 제거수술비(급여_연간1회한)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종합병원 상해수술비, 상급종합병원 상해수술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
질병관련 특별약관	질병후유장해(3~100%)(감액없음), 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 질병후유장해(20~100%)(감액없음), 질병후유장해(50%이상)(감액없음), 질병입원비(1일-180일),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 뇌출혈진단비(감액없음),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감액없음), 허혈성심질환진단비(감액없음),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감액없음)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감액없음),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감액없음)
질병관련 특별약관	암수술비(유사암제외)(최초1회한)(감액없음), 암수술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 유사암수술비(감액없음),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감액없음),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감액없음), 양성뇌종양진단비(감액없음),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 식중독입원비(4일-120일), 질병수술비, 뇌혈관질환수술비(감액없음), 허혈성심질환수술비(감액없음),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수술비(감액없음), 70대특정질병수술비(감액없음), 치핵(치질)수술비(감액없음), 당뇨병수술비(감액없음), 충수염수술비(감액없음), 추간판장애수술비, 재진단암Ⅲ진단비, 신재진단암진단비Ⅱ(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포함, 5회한), 암직접치료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80일),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20일), 질병입원비(1일-210일),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210일)(감액없음), 질병중환자실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 질병수술동반입원비(선천이상포함)(1일-20일),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210일),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갱신형_10년), 중기이상 만성폐질환진단비(감액없음), 말기만성폐질환진단비(감액없음), 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비(감액없음), 3대질병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3대질병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질병입원비(1일-20일),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3대질병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뇌혈관질환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허혈성심질환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뇌혈관질환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허혈성심질환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뇌혈관질환 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허혈성심질환 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Ⅱ(갱신형_10년),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Ⅱ(갱신형_10년),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토모테라피)Ⅱ(갱신형_10년),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이외의 암)Ⅱ(갱신형_10년),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Ⅱ(갱신형_10년), 항암정위방사선치료비Ⅲ(갱신형_10년), 질병1~5종수술비Ⅱ(동일질병당),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20일), 142대특정질병수술비(감액없음), 질병1~8종수술비(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질병1~8종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질병1~5종수술비Ⅳ 특정순환계질환수술비(감액없음), 결핵진단비 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진단비(감액없음)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진단비(감액없음) 8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수술비(연간1회한)(감액없음) 뇌전증진단비(감액없음) 카티(CAR-T) 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지원비Ⅲ(급여_연간1회한) 혈전용해치료비Ⅱ(1회한)(감액없음), 혈전용해치료비Ⅲ(연간1회한)(감액없음)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갱신형_10년)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 종합병원 질병수술비,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 보험료납입지원보장(유사암진단)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180일)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 순환계질환진단비(특정질병제외)(감액없음)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면책없음,감액없음)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면책없음,감액없음)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면책없음,감액없음) 항암방사선치료비(면책없음,감액없음), 항암약물치료비(면책없음,감액없음)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 2대질병주요치료비(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감액없음)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감액없음)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상해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갑상선치료비, 5대장기이식수술비, 각막이식수술비, 인공관절수술비, 상해질병입원비(1일-180일), 상해질병수술비, 응급실내원비(응급), 신갑상선치료비, 상해질병수술비(선천기형포함), 상해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5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장해(50%이상))
비용손해 특별약관	의료사고법률비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보장은 “전환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해당 보장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전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대상 보장
[특별약관] 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 중대한화상및부식치료비,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 질병후유장해(50%이상)(감액없음),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 뇌출혈진단비(감액없음),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감액없음), 허혈성심질환진단비(감액없음),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감액없음),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감액없음),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감액없음), 양성뇌종양진단비(감액없음), 총수염수술비(감액없음), 5대장기이식수술비, 각막이식수술비, 재진단암진단비(기타피부암,갑상선암,전립선암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갱신형_10년), 중기이상 만성폐질환진단비(감액없음), 말기만성폐질환진단비(감액없음), 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비(감액없음),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5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장해(50%이상)),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Ⅱ(갱신형_10년),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Ⅱ(갱신형_10년),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토모테라피)Ⅱ(갱신형_10년),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이외의 암)Ⅱ(갱신형_10년),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Ⅱ(갱신형_10년), 항암정위방사선치료비Ⅱ(갱신형_10년), 암수술비(유사암제외)(최초1회한)(감액없음), 결핵진단비, 주요심장증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진단비(감액없음),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진단비(감액없음) 뇌전진진단비(감액없음), 혈전용해치료비Ⅱ(1회한)(감액없음) 보험료납입지원보장(유사암진단), 순환계질환진단비(특정질병제외)(감액없음)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감액없음), 항암방사선치료비(감액없음), 항암약물치료비(감액없음)

④ 아래의 계약전환시점에 각각 동일한 보장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전환 전 보장	계약전환 후 보장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	암진단비(유사암제외)(면책없음,감액없음)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 (1일-180일)(감액없음)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 (1일-180일)(면책없음,감액없음)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 (1일-210일)(감액없음)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 (1일-210일)(면책없음,감액없음)
요양병원 입원비 (1일-90일)(감액없음)	요양병원 입원비 (1일-90일)(면책없음,감액없음)
암수술비(유사암제외)(최초1회한)(감액없음)	암수술비(유사암제외)(최초1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암수술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	암수술비(유사암제외)(면책없음,감액없음)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감액없음)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면책없음,감액없음)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감액없음)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면책없음,감액없음)
재진단암III진단비	재진단암III진단비(면책없음)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 (면책없음,감액없음)
암직접치료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암직접치료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 (면책없음,감액없음)
신재진단암진단비(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포함, 5회한)	신재진단암진단비(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포함, 5회한)(면책없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II(갱신형_10년)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면책없음,감액없음)(갱신형_10년)
3대질병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3대질병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 (면책없음,감액없음)
3대질병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3대질병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 (면책없음,감액없음)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 (5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장해(50%이상))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 (5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장해(50%이상)) (면책없음)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30회한) (면책없음,감액없음)
3대질병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3대질병통원비(연간30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II(갱신형_10년)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면책없음,감액없음) (갱신형_10년)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II(갱신형_10년)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면책없음,감액없음) (갱신형_10년)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토모테라피) II (갱신형_10년)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토모테라피) (면책없음,감액없음)(갱신형_10년)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이외의 암)Ⅱ(갱신형_10년)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이외의 암) (면책없음,감액없음)(갱신형_10년)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Ⅱ(갱신형_10년)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감액없음) (갱신형_10년)
항암정위방사선치료비Ⅱ(갱신형_10년)	항암정위방사선치료비(면책없음,감액없음) (갱신형_10년)
카티(CAR-T) 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 (감액없음)(갱신형_10년)	카티(CAR-T) 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 (면책없음,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 (갱신형_10년)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 (면책없음,감액없음)(갱신형_10년)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1회한,진단후10년)(면책없음,감액없음)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1회한,진단후10년)(면책없음,감액없음)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감액없음)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면책없음,감액없음)
항암방사선치료비(감액없음)	항암방사선치료비(면책없음,감액없음)
항암약물치료비(감액없음)	항암약물치료비(면책없음,감액없음)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1회한)(감액없음)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1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 (감액없음)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 (면책없음,감액없음)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 (감액없음)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 (면책없음,감액없음)

제2조(계약전환 안내)

회사는 전환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이전까지 계약전환에 관한 사항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회사가 제1항에 의한 안내를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받아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제3조(계약전환 대상자)

전환 후 계약의 피보험자는 전환 전 계약의 기본계약 피보험자로 합니다. 다만, 전환전 계약의 부양자는 계약전환 대상 피보험자에서 제외합니다.

제4조(전환 후 계약의 체결)

- ① 계약자는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 전환시 「전환 후 계약」의 보장개시일은 「전환 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로 합니다.
- ② 계약전환 신청시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건강상태 및직무 등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전환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최초 계약 체결시점에 계약전환을 신청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적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을 전환하여 드립니다.
 1. 계약전환시점의 “전환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전환이 불가한 보장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2. 계약전환시점의 “전환전 계약”과 비교하여, 일부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 전환하거나 일부

보장을 전환하지 않는 경우

제5조(전환 후 계약의 보험료 납입)

계약자는 제4조(전환 후 계약의 체결)에 따라 계약이 전환된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전환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납입방법은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납입방법으로 합니다.

제6조(전환 후 계약 약관의 준용)

“전환 후 계약”의 약관은 이 특별약관 정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그 외에는 이 특별약관을 제외한 특별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보통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합니다. 단, “전환후 계약”의 약관에서 청약일은 “전환전 계약”의 청약일로 합니다.

10.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이하 “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보험료의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59조의4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

1.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전환대상계약의 보험수익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피보험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장애인)인 경우
→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 ② 전환대상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③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④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2조(제출서류)

-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1항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설 명

2026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26년 6월 1일에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기 전(2026년 1월 15일~ 2026년 5월 31일)에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고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2026년 6월 1일~2026년 12월 31일) 납입된 보험료만 2026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계약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 명

2026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26년 6월 1일에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었으나 2026년 12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우, 이 전환대상계약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④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별약관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11. 특별조건부(할증보험료법 / 보험금강액법)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 계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특별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는 특별약관을 『해당계약』이라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해당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해당계약의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내용)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의 위험도가 높아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계약의 보험기간 중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부가조건)

①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부가하는 계약조건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다음 중 한가지의 방법으로 부가합니다.

1. 할증보험료법

할증위험률에 의한 보험료와 표준체 보험료와의 차액을 특별약관보험료라 하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위험의 정도에 따라 표준체 보험료에 회사에서 정한 특별약관보험료(보험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갱신시점의 표준체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이 특별약관보험료도 재산출합니다)를 더하여 납입보험료로 합니다. 다만, 특별약관보험료는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방법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보장보험료로 추가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표준체

건강상태에 따라 위험률을 할인, 할증하지 않은 일반 위험률을 적용하는 피보험자

할증위험율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일반위험률보다 높게 적용되는 위험률

2. 보험금감액법

계약일로부터 회사가 정한 삭감기간 내에 해당계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상해 이외의 원인으로 해당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계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시에 정한 삭감기간 및 보험금지급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경과기간	기 준	삭감기간 및 보험금지급비율				
		1년	2년	3년	4년	5년
1년미만	해당계약에 정한 지급보험금	50%	30%	25%	20%	15%
1년이상 2년미만			60%	50%	40%	30%
2년이상 3년미만				75%	60%	45%
3년이상 4년미만					80%	60%
4년이상 5년미만						80%

② 제1항 제2호의 삭감기간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5년 이내로 합니다. 단, 해당계약이 계약자가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계약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별도의 계약사정 없이 갱신되는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인 경우 삭감기간의 산정은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준을 따르며,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부가된 조건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해당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해당계약의 납입기간 중에 해당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해당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5조(특별약관내용의 변경)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해당계약의 경우에는 해당계약 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2. 감액완납 또는 연장보험으로의 변경

감액완납보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가입금액을 감액하는 보험

연장보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정기보험(일정기간동안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변경하는 보험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계약을 따릅니다.

12. 전자서명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보통약관 및 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통약관 제2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 ①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보험증권은 제외하며, 이하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②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조(계약자의 알릴의무)

- ① 계약자가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할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교부함으로써 회사의 보험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별 표

【별표1】 장애 분류표

【 총 칙 】

1. 장애의 정의

- 1) 『장애』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애 지급률의 20%를 장애지급률로 한다.
- 5) 위 4)에 따라 장애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장애의 판정

- 1) 하나의 장애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애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애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하나의 장애가 다른 장애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애로 둘 이상의 파생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애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애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애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5) 장애진단서에는 ① 장애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애의 내용과 그 정도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애의 경우 ① 개호(장애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간병)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장애분류별 판정기준 】

1. 눈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15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애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를 남긴 때	10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애를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시력장애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주1)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 5) 안구(눈동자) 운동장애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애 정도를 평가한다.
-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애』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 ②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을 남긴 경우
-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애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8) 『뚜렷한 시야 장애』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장애 평가 시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심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물(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포함하여 장애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애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애를 남긴 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 1) 청력장애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pm 10\text{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애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 실시 후 장애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애로만 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 장애

- 1) 『평형기능에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애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항목	내 용	점수
검사 소견	양측 전정기능 소실	14
	양측 전정기능 감소	10
	일측 전정기능 소실	4
치료 병력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 이상)	6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 이상)	4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 이상)	2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 미만)	0
기능 장애 소견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20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12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8

- 2) 평형기능의 장애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애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① 뇌영상검사(CT, MRI)

②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3. 코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애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애의 지급률과 추상장애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80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60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40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 장애의 평가기준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애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입벌리기)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입벌리기)운동 제한이나 저작(씹기)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① 뚜렷한 개구(입벌리기)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씹기)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 ②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입벌리기)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 ③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 이상인 경우
 - ④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 ⑤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① 약간의 개구(입벌리기)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씹기)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 ②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입벌리기)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 ③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 이상인 경우
 - ④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 ⑤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 5) 개구장애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입벌리기)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구상태에서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운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측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①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 경우
 - ②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기능에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①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 미만인 경우
 - ②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①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 미만인 경우
 - ②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 10) 말하는 기능의 장애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애(실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애는 신경계·정신행동 장애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애로 평가한다.
-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추상(추한 모습)장애』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4) 다발성 반흔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2 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4 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cm(1/2 크기는 40cm², 1/4 크기는 20cm²), 6~11세의 경우는 6×8cm(1/2 크기는 24cm², 1/4 크기는 12cm²), 6세 미만의 경우는 4×6cm(1/2 크기는 12cm², 1/4 크기는 6cm²)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애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애	20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애	15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애	10

나. 장애판정기준

-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애로 평가한다.
- 2) 척추(등뼈)의 기형장애는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② 척추(등뼈)의 기형장애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 ③ 척추(등뼈)의 기형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3) 척추(등뼈)의 장애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 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애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평가한다.
-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애 및 기형장애로 평가하지 않는다.
- 6) 심한 운동장애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된 상태
 - ②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된 상태
- 7) 뚜렷한 운동장애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된 상태
 - ②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된 상태
 - ③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 개 대후두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 ④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 8) 약간의 운동장애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된 상태
-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②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②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②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애』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애가 있는 경우
-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애』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애』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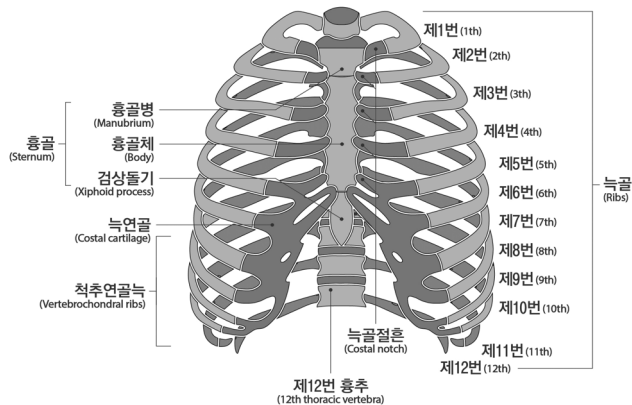
7. 체간골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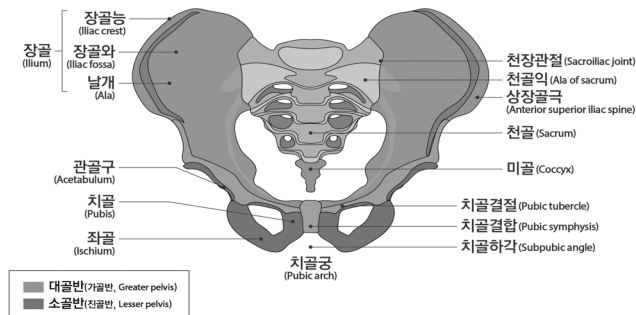
나. 장애판정기준

-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융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 ②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 ③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된 각(角)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취급한다.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가슴뼈>



<골반뼈>



8. 팔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애(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장애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다.
- 5) 『한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 6) 팔의 관절기능 장애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 ①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에는 장애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 방법 등을 따른다.
 - ② 관절기능장애를 표시할 경우 장애부위의 장애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애상태를 명확히 한다. 단, 관절기능장애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③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 11)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 ①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기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 방법 등을 따른다.
 - ②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③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④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③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③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 11) 동요장애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 12)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애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10. 손가락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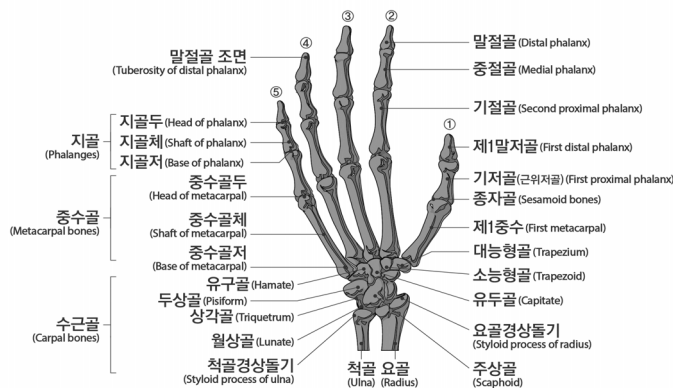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10
4) 한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30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5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애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 7) 『손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8) 한 손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애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애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손가락>



11. 발가락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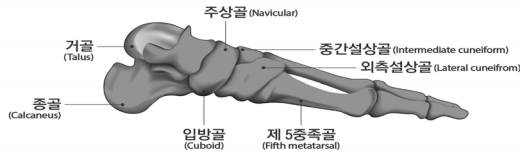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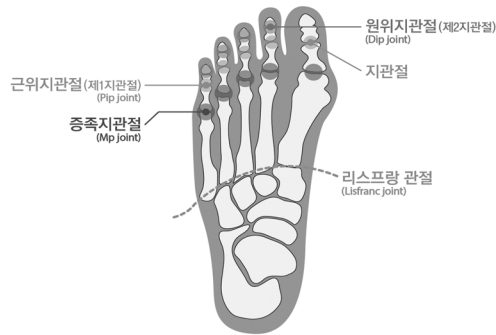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5) 한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6) 한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8
7) 한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3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애(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장애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 3)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즉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 6) 『발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7) 한 발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애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발가락>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100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75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50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30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5

나. 장애의 판정기준

-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를 말한다.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①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③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①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체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소장을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 ③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④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①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 ②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
- ③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 ④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애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⑤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 ⑥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애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①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할 때
 - ②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할 때
 - ③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 6)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애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애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장애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애로 보지 않는다.
- 7) 상기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계 장애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애상태에 대해서는 『<불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을 때 ADLs 장애 지급률을 준용한다.
- 8) 상기 장애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애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를 남긴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75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50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25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애를 남긴 때	10
7)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8)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9)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1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11) 심한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70
12) 뚜렷한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40
13) 약간의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1) 신경계

- ① 『신경계에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불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 ② 위 ①의 경우 『<불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신경계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애(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애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애 평가

를 유보한다.

-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 ①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수상 후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 ② 정신행동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와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었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④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⑤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주)}상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주) 능력장해측정기준의 항목: ㉠ 적절한 음식섭취, ㉡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 소지품 및 금전 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 ⑥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⑦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⑧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⑨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 ⑩ 정신행동장해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⑪ 정신행동장해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⑫ 각종 기질성 정신장애와 외상후 뇌전증에 한하여 보상한다.
- 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치매

- ① 『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 등)를 기초로 진단되어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 ③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

- ① 『뇌전증』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애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뇌전증 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뇌전증제(항경련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을 말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뇌전증 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심한 뇌전증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

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④ 『뚜렷한 뇌전증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⑤ 『약간의 뇌전증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⑥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⑦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애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 (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20%)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 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10%)
음식물 섭취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15%) - 손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5%)
배변·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 (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 시 다른 사람들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 배변 상태 (15%)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 (5%)
목욕	-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 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세안, 양치 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 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 -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 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옷 입고 벗기	- 상·하의 의복 착탈 시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상·하의 의복 착탈 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 (5%) - 상·하의 의복 착탈 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별표2】 기타관계법령

※ 아래의 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상법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신설 1991. 12. 3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석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1. 제2조제2호·제6호·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 ②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가.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되거나 공개된 정보
 - 나. 출판물이나 방송매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
 - 다.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84. 4. 10.>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

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의료법 제2조(의료인)]

-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개정 2015.12.29., 2019.4.23.>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신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개정 2009. 1. 30., 2011. 6. 7., 2016. 5. 29., 2019. 4. 23., 2020. 3. 4.>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신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정신병원
 - 바. 종합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 8. 4.>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는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20. 3. 4.>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9. 8. 27., 2020. 3. 4.>
1.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⑥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여야 한다.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4.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9. 1. 30., 2012. 2. 1.>
- ⑨ 의료법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등”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의료법인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주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 ⑩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2. 29.>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1.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②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14.]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 ⑦ 그 밖에 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개정 2008. 11. 26., 2009. 11. 27., 2011. 12. 8., 2011. 12. 30., 2012. 11. 23., 2013. 3. 23., 2015. 1. 28., 2016. 1. 6., 2016. 1. 22., 2019. 2. 12., 2021. 4. 6., 2023. 10. 10.>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 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관리기관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등의 입주기업체 소속원을 포함한다]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연구기관 등 공법인

2) 회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등의 관리기관

-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

-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직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8., 2011. 7. 25., 2016. 1. 19., 2021. 3. 23., 2021. 8. 17., 2023. 4. 18.>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5. “학습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

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다.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

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다. 개인과외교습자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12.8.][시행일 : 2021.12.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5.7.7., 2017.1.6.>[전문개정 2011.12.15.]

[별표 1] <개정 2021. 8. 27.>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	일반형			
승용자동차	배기량이 25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cc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 이하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 이상 2,000cc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승합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화물자동차	배기량이 25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cc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cc 이하(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이상 26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260cc 이상(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을 초과하는 것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승용자동차	일반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승용경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다목적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경화물형이 아닌 것
	기타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승합자동차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현행·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화물자동차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번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 자동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용도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용도용인 것
이륜 자동차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	3톤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 비고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가.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소형·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초소형화물차 및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 2)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칸막이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 3)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 나.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2. 위 표 제1호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 나.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 다.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maximum continuous rated power)은 구동전동기의 최대의 부하(負荷, load) 상태에서 측정된 출력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8. 3. 27.>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요양기관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1.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중증질환심의위원회)]

제5조의2(중증질환심의위원회)

- ①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중증질환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 10. 11.]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0. 17., 2008. 2. 29., 2009. 12. 29.,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2014. 3. 18., 2016. 12. 2., 2017. 10. 24., 2019.8.27.>

1.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鑑定)·보관·수입·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5.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6.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7.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8. "신약"이란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9.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 가.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 다.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10.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
11.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12. "복약지도(服藥指導)"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性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13. "안전용기·포장"이란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14. "위탁제조판매업"이란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의약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15. "임상시험"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藥動)·약력(藥力)·약리·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제외한다.
16. "비임상시험"이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물질의 성질이나 안전성에 관한 각종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험실과 같은 조건에서 동물·식물·미생물과 물리적·화학적 매체 또는 이들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17.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란 임상시험 중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생체시험으로서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두 제제의 생체이용률이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을 말한다.
18. "희귀의약품"이란 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 가.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 나. 적용 대상이 드문 의약품으로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
19. "국가필수의약품"이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7.>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 가. 삭제 <2018. 3. 27.>
 - 나. 삭제 <2018. 3. 27.>
 - 다. 삭제 <2018. 3. 27.>
 - 라. 삭제 <2018. 3. 27.>
 - 마. 삭제 <2018. 3. 27.>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6.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 가. 암
 -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 라. 만성 간경화
 -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7.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8.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3. 22.] [법률 제 18627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5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대상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이하 “호스피스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호스피스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8. 2. 4.] 제25조 1항(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5. 7. 6.,

2016. 12. 2., 2018. 3. 27., 2019. 12. 3., 2020. 3. 4., 2020. 8. 11., 2020. 12. 15., 2023. 6. 13., 2023. 8. 8.>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 나. 마버그열
 - 다. 라싸열
 -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 바. 리프트밸리열
- 사. 두창
- 아. 페스트
- 자. 탄저
- 차. 보툴리눔독소증
- 카. 아토병
-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너. 신종인플루엔자
- 더. 디프테리아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가. 결핵(結核)
- 나. 수두(水痘)
- 다. 홍역(紅疫)
- 라. 콜레라
- 마. 장티푸스
- 바. 파라티푸스
- 사. 세균성이질
-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자. A형간염
- 차. 백일해(百日咳)
- 카.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 타. 풍진(風疹)
- 파. 폴리오
- 하. 수막구균 감염증
-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너. 폐렴구균 감염증
- 더. 한센병
- 러. 성홍열
-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서. E형간염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가. 파상풍(破傷風)
- 나. B형간염
- 다. 일본뇌염
- 라. C형간염
- 마. 말라리아
- 바. 레지오넬라증
- 사. 비브리오패혈증

- 아. 발진티푸스
 - 자. 발진열(發疹熱)
 - 차. 찰진가무시증
 - 카. 렙토스피라증
 - 타. 브루셀라증
 - 파. 공수병(恐水病)
 - 하. 신증후군출혈열(腎症候群出血熱)
 -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더. 황열
 - 러. 뎅기열
 - 머. 큐열(Q熱)
 - 버. 웨스트나일열
 - 서. 라임병
 - 어. 진드기매개뇌염
 - 저. 유비저(類鼻疽)
 - 처. 치쿤구니아열
 -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피. 매독(梅毒)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 가. 인플루엔자
 - 나. 삭제 <2023. 8. 8.>
 - 다. 회충증
 - 라. 편충증
 - 마. 요충증
 - 바. 간흡충증
 - 사. 폐흡충증
 - 아. 장흡충증
 - 자. 수족구병
 - 차. 임질
 -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 타. 연성하감
 - 파. 성기단순포진
 - 하. 침규곤달롬
 -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머. 장관감염증
 -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6. "기생충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7. 삭제 <2018. 3. 27.>
8.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 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9.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0.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1.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2.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 나. 「감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16.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감염병병원체·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 16의2.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이란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의료·방역 물품"이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 [고용노동부령 제384호, 2023. 6. 30, 일부개정]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 ①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 1. 10.>
-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0. 15.>

-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 3. 28., 2019. 10. 15.>

1. 강직, 오그라들,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애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애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 1.] [보건복지부령 제608호, 2019. 6. 12., 일부개정]

제9조(비급여대상)

-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8. 31., 2016. 8. 4.>

[별표 2] <개정 2020. 6. 29.>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 라. 단순 코골음
 - 마.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
 - 바. 감염반 등 안과질환
 -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치과교정. 다만, 입술입천장갈림증(구순구개열)을 치료하기 위한 치과교정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의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턱얼굴(악안면) 교정술
 - 마.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 바.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사.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히 키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상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3. 다음 각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입자들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제외)
 - 나.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 다.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다만,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체 치석제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불소부분도포,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등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한 진료. 다만,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아 중 치아우식증(충치)이 생기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인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대한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은 제외한다.
 - 마. 멀리 예방, 금연 등을 위한 진료

- 바. 유전성질환 등 태아 또는 배아의 이상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유전학적 검사
 사.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아. 기타 가목 내지 마목에 상당하는 예방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방진료
4.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가. 가입자등이 다음 표에 따른 요양기관으로서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1개의 입원실에 1인(「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병원의 경우 3인 이하)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하 "상급병상"이라 한다)을 이용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 다만, 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

요양기관 구분	비용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제8조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대상인 입원료(이하 "입원료"라 한다)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병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중 진료과목에 소아청소년과 또는 산부인과를 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병원(이하 "아동·분만병원"이라 한다)	
상급종합병원	입원실 이용 비용 전액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아동·분만병원은 제외한다)	

- (1) 의료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병상 중 입원실 이용비용을 입원료만으로 산정하는 일반병상(이하 "일반병상"이라 한다)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다만, 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또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상의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및 중환자실과 「의료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 병실 및 병동의 병상은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 (가)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건강보험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또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상에 분만실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산부인과 또는 주산기(周産期) 전문병원(종합병원은 제외한다), 아동·분만병원(분만병원만 해당한다):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분의 1 이상 확보할 것
- (나)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건강보험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또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상에 분만실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3호나목의 치과병원, 같은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산부인과 또는 주산기 전문병원(종합병원만 해당한다) 및 아동·분만병원(아동병원만 해당한다):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2분의 1 이상 확보할 것
- (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아동·분만병원을 제외한다):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분의 3 이상 확보할 것
- (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 및 같은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분의 4 이상 확보할 것
- (2) 의료법령에 의하여 신고한 병상이 10병상 이하인 경우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용
- (1) 가입자등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입원실 이용비용을 입원료만으로 산정하는 일반병상(건강보험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또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상의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및 중환자실과 「의료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 병실 및 병동의 병상은 제외한다)을 50퍼센트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1개의 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이용하는 경우: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고시한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 (2) 가입자들이 가목(1)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1인실 병상을 이용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는 경우(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임종실을 이용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고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실의 입원료 중 4인실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다. 선별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급여비용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라. 법 제51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구를 제외한 보조기·보청기·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다만, 보청기 중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게 될 수술과 관련된 치료재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청기는 제외한다.

마.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바.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가공료 등을 포함한다) 및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등을 포함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는 제외한다.

사. 및 아. 삭제 <2002.10.24>

자. 이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에 관한 급여목록표에서 정한 일반의약품으로서 「약사법」 제23조에 따른 조제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약제

차. 삭제 <2006.12.29>

카. 삭제 <2018. 12. 31.>

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이식을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골수 등 장기의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하. 이 규칙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의 행위·치료재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포함하되, 같은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와 같은 규칙 제3조의4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만, 제11조제9항 또는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되는 행위·치료재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0항제2호에 따른 제한적 의료기술

너.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기기를 장기이식 또는 조직이식에 사용하는 의료행위

더. 그 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또는 치료재료

5. 삭제 <2006.12.29>

6.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제4호 하목을 제외한다), 제7호에 해당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다만, 제2호아목, 제3호아목 및 제4호더목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

나. 질병군 진료 외의 목적으로 투여된 약제

6의2. 영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나목(2)·더목에 해당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다만, 제2호사목, 제3호아목 및 제4호더목

- 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에 한정한다.
7.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
 - 나. 한약첨약 및 기상한의사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8.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약제를 처방·투여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의학적 근거 등을 입증하여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공고에 따른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 4] <개정 2019. 9. 27.><개정 2023. 9. 22.>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2.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가정간호)]

제24조(가정간호)

- ①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9.>
 1. 간호
 2. 검체의 채취(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현장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운반
 3. 투약
 4. 주사
 5.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6. 상담
 7.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

- ②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이야 한다.
- ③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만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한다.
- ⑤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 ⑥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가정간호의 질 관리 등 가정간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3. 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전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 ①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1. 12. 21.>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10.3.19.>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2.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2022. 1. 11., 2023. 4. 18., 2023. 10. 24.>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자동차
- 2) 건설기계
- 3) 원동기장치자전거
- 4) 자전거
-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 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아동로봇은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밖의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써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2022. 12. 27.>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0] [고용노동부령 제279호, 2020. 1. 10, 일부개정]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 ①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 1. 10.>
-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0. 15.>
-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 3. 28., 2019. 10. 15.>
 1. 강직, 오그라들,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시행 2023. 10. 1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 가. 국가
 -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시행 2023. 10. 12]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의 철회를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의 철회할 수 있다.
 1.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3.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채화·용역(이하 이 조에서 “금전·채화등”이라 한다)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 ②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1.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을 발송한 때
 2. 대출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하고, 다음 각 목의 금전·채화등(이미 제공된 용역은 제외하며,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환한 때
 - 가. 이미 공급받은 금전·채화등
 - 나.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 다.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③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채화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장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채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채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채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채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전·채화등, 이자 및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채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채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 ④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 철회권의 행사 및 그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2021. 9. 25.] 제46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시행 2023. 10. 12]

-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2021. 9. 25.] 제47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시행 2023. 10. 12]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적합성 판단 기준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적정성원칙)][시행 2023. 10. 12]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 의무)][시행 2023. 10. 12]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보장성 상품

- 1) 보장성 상품의 내용
- 2)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 4) 위험보장의 범위
- 5) 그 밖에 위험보장 기간 등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투자성 상품

- 1) 투자성 상품의 내용
- 2) 투자에 따른 위험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 4)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등 투자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예금성 상품

- 1) 예금성 상품의 내용
- 2) 그 밖에 이자율, 수익률 등 예금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라. 대출성 상품

- 1)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금융소비자가 대출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부과 여부
· 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
 - 2)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 · 이자율 · 시기
 - 3)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행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목적 물의 소유권 상실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 4)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
 - 5) 그 밖에 대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대출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호 각 목의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하 “연계·제휴서비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연계·제휴서비스등의 내용
- 나. 연계·제휴서비스등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연계·제휴서비스등의 제공기간 등 연계·제휴서비스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 ④ 제2항에 따른 설명서의 내용 및 제공 방법·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2021. 9. 25.] 제19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시행 2023. 10. 12]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 나.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5. 연계·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 ② 불공정영업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2021. 9. 25.] 제20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시행 2023. 10. 1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3.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4.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5.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금융소비자(이해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 나. 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하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 나.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약의 체결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7.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시행일:2021. 9. 25.] 제21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시행 2023. 10. 12]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제36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2.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1. 29., 2007. 1. 26., 2007. 12. 21.,

2008. 6. 13., 2010. 3. 22., 2014. 5. 28., 2020. 6. 9.>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3. 3. 23., 2013. 8. 13., 2014. 10. 15., 2017. 7. 26., 2018. 12. 24., 2020. 6. 9., 2022. 6. 10., 2023. 7. 18.>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15., 2013. 5. 22., 2023. 3. 4.>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9. 15.>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2011. 9. 15., 2023. 3. 4.>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23. 3. 4.>
-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23. 3. 4.>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11. 9. 15., 2016. 5. 29.>

【별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태아보장기간) 중도환급금	지급사유발생일의 다음날부터 보통약관 보장부분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보장)
	보통약관 보장부분보험기간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공시이율(보장)의 5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1년 초과기간 : 공시이율(보장)의 40%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공시이율(보장)*의 50%
		1년 초과기간 : 공시이율(보장)*의 40%

* 2종(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3종(납입후 표준형환급을 동일지급형), 4종(계약전환형)의 경우 평균공시이율로 적용합니다.

- 주) 1. 만기환급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보장)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그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단, 제46조(소멸시효)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사유” 예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보험의 공시이율(보장)은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www.heungkukfire.co.kr)의 “공시실”내 “상품공시/적용이율”에 공시합니다.
-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때 지급지연 이자 계산 예시
- 예시기준) 지급보험금 100만원, 보험계약대출이율 4.3%, 지급기일로부터 50일 경과시
: 100만원 × (30 × 4.3 % + 20 × 8.3%) / 365 = 8,082 원
-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별표4】 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상 병	분류번호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치아의 파절 및 파절치 제외)	S02 (S02.5 제외)
2. 머리의 으깬손상	S07
3.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	S09.9
4. 목의 골절	S12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8. 아래팔의 골절	S52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10. 대퇴골의 골절	S72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08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T14.2
18. 척추 및 척수의 출산손상	P11.5
19.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	P13.0
20. 두개골의 기타 출산손상	P13.1
21. 대퇴골의 출산손상	P13.2
22. 기타 긴뼈의 출산손상	P13.3
23. 출산손상으로 인한 쇄골의 골절	P13.4
24. 기타 골격 부분의 출산손상	P13.8
25. 상세불명의 골격의 출산손상	P13.9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상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5-1】 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 II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상병 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상 병	분류번호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S02 (S02.5는 제외)
경막외출혈	S06.4
외상성 경막하출혈	S06.5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S06.6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 내 손상	S06.7
머리의 으깬손상	S07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S09.9
목의 골절	S12
목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S14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흉부의 으깬손상 및 흉부 부분의 외상성 절단	S28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어깨 및 위팔의 외상성 절단	S48
아래팔의 골절	S52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대퇴골의 골절	S72
둔부 및 대퇴의 외상성 절단	S78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08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T14.2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상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5-2】 골절 등급분류기준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상병 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급	머리	목	몸통	팔	다리	기타
1	S02.0, S02.7, S02.9, S06.4-S06.7	S12.2, S12.7, S12.9, S14.1	S28.1	-	-	T02.6, T02.8
2	S02.8, T02.0	S12.0, S12.1., S12.8, S14.0, S14.2, S14.3, S14.6	S22.0, S22.4, S22.5, S32.3, S32.4, S32.5, S32.8	S42.3, S42.4, S42.7, S42.9, S48.0, T02.2	S72.0-S72.3, S72.7-S72.9, S78.0, S78.1, S78.9, S82.2, T02.3, T02.5	T02.7, T02.9, T14.2
3	S02.1, S02.2, S02.3, S02.4, S02.6, S07.0, S07.1, S07.8, S07.9, S09.9	-	S22.1, S22.2, S22.8, S22.9, S32.0, S32.1, S32.7, T02.1, T08.0, T08.1	S42.2, S42.8, S48.9, S52.0, S52.2, S52.6-S52.9, S62.4, T10.0, T10.1	S72.4, S82.1, S82.3, S82.7-S82.9, T12.0, T12.1.	-
4	-	S14.5	S22.3, S28.0, S32.2	S42.0, S42.1, S48.1, S52.1, S52.3, S52.4, S52.5, S62.0-S62.3, S62.8	S82.0, S82.4-S82.6, S92.0-S92.4, S92.7, S92.9	-
5	-	S14.4	-	S62.5, S62.6, S62.7, T02.4	S92.5	-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상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6】 골절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상 병	분류번호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
2. 머리의 으깬손상	S07
3.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	S09.9
4. 목의 골절	S12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8. 아래팔의 골절	S52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10. 대퇴골의 골절	S72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08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T14.2
18. 척추 및 척수의 출산손상	P11.5
19.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	P13.0
20. 두개골의 기타 출산손상	P13.1
21. 대퇴골의 출산손상	P13.2
22. 기타 긴뼈의 출산손상	P13.3
23. 출산손상으로 인한 쇄골의 골절	P13.4
24. 기타 골격 부분의 출산손상	P13.8
25. 상세불명의 골격의 출산손상	P13.9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상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7】 5대골절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상 병	분류번호
1. 머리의 으깬손상	S07
2. 목의 골절	S12
3.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성 골절	S22.0~S22.1
4.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5. 대퇴골의 골절	S72
6. 출산손상 으로 인한 두개골골절	P13.0
7. 두개골의 기타 출산손상	P13.1
8. 척추 및 척수의 출산손상	P11.5
9. 대퇴골의 출산손상	P13.2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상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8】 화상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상병 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상 병	분류번호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T20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	T21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T22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T23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고관절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T24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T25
7.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T26
8. 기도의 화상 및 부식	T27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T28
10.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T29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T30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T31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T32
14. 방사선과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L59

※ 부식 :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상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9-1】 골절 분류표Ⅲ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상병 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상 병	분류번호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
경막외출혈	S06.4
외상성 경막하출혈	S06.5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S06.6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 내 손상	S06.7
머리의 으깬손상	S07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S09.9
목의 골절	S12
목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S14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흉부의 으깬손상 및 흉부 부분의 외상성 절단	S28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어깨 및 위팔의 외상성 절단	S48
아래팔의 골절	S52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대퇴골의 골절	S72
둔부 및 대퇴의 외상성 절단	S78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08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T14.2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상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9-2】 골절 등급분류기준표Ⅱ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상병 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급	머리	목	몸통	팔	다리	기타
1	S02.0, S02.7, S02.9, S06.4-S06.7	S12.2, S12.7, S12.9, S14.1	S28.1	-	-	T02.6, T02.8
2	S02.8, T02.0	S12.0, S12.1., S12.8, S14.0, S14.2, S14.3, S14.6	S22.0, S22.4, S22.5, S32.3, S32.4, S32.5, S32.8	S42.3, S42.4, S42.7, S42.9, S48.0, T02.2	S72.0-S72.3, S72.7-S72.9, S78.0, S78.1, S78.9, S82.2, T02.3, T02.5	T02.7, T02.9, T14.2
3	S02.1, S02.2, S02.3, S02.4, S02.6, S07.0, S07.1, S07.8, S07.9, S09.9	-	S22.1, S22.2, S22.8, S22.9, S32.0, S32.1, S32.7, T02.1, T08.0, T08.1	S42.2, S42.8, S48.9, S52.0, S52.2, S52.6-S52.9, S62.4, T10.0, T10.1	S72.4, S82.1, S82.3, S82.7-S82.9, T12.0, T12.1.	-
4	-	S14.5	S22.3, S28.0, S32.2	S42.0, S42.1, S48.1, S52.1, S52.3, S52.4, S52.5, S62.0-S62.3, S62.8	S82.0, S82.4-S82.6, S92.0-S92.4, S92.7, S92.9	-
5	S02.5	S14.4	-	S62.5, S62.6, S62.7, T02.4	S92.5	-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상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0】 중대한특정상해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상병 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대 상 상 병	분류번호
뇌손상	두개내손상	S06
내장손상	심장의 손상	S26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기관의 손상	S27
	복부내기관의 손상	S36
	비뇨 및 골반 기관의 손상	S37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상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1】 1-5종수술 분류표III

I. 일반 질병 및 상해 치료목적의 수술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피부, 유방의 수술	1. 피부이식수술(25cm ² 이상인 경우), 피판수술(피판분리수술, Z flap, W flap 제외)	3
	2. 피부이식수술(25cm ² 미만인 경우)	1
	3. 유방절단수술(切斷術, Mastectomy) * 단, 유방의 비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N62)로 인한 수술은 1종 으로 분류합니다.	3
	4. 기타 유방수술(농양의 절개 및 배액은 제외)	1
근골(筋骨)의 수술[발정술(拔 釘術) 등 내고정물 제거술은 제외함][치(齒) · 치은 · 치근(齒根) · 치조골(齒槽骨) 의 처치, 임플란트(Implan t) 등 치과 처치 및 수술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5. 골(骨) 이식수술	2
	6. 두개골(頭蓋骨, cranium) 관혈수술 [비골(鼻骨) · 비중격(鼻中隔) · 상악골(上顎骨) · 하악골(下顎 骨) · 악관절(顎關節)은 제외함]	3
	7. 비골(鼻骨) 수술 [비중격 만곡증(彎曲症)수술 제외, 단, 수면무호흡증(G47.3) 치료를 위한 수술은 보사항]	1
	8. 상악골(上顎骨), 하악골(下顎骨), 악관절(顎關節) 관혈수술	2
	9. 척추골(脊椎骨), 골반골(骨盤骨), 추간판 관혈수술	3
	10. 쇄골(鎖骨), 견갑골(肩胛骨), 늑골(肋骨), 흉골(胸骨) 관혈 수술	2
	11. 사지(四肢) 절단수술(다지증에 대한 절단수술은 제외함)	
	11-1. 손가락, 발가락 절단수술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 것]	1
	11-2. 기타 사지(四肢)절단수술	3
	12. 절단(切斷)된 사지(四肢)재접합수술(再接合手術)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것]	3
	13.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13-1. 손가락, 발가락의 골 및 관절 관혈수술	1
	13-2. 기타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2
	14. 근(筋), 건(腱), 인대(靱帶), 연골(軟骨) 관혈수술	1
호흡기계·흉부 (胸部)의 수술	15. 만성부비강염(慢性副鼻腔炎) 근본수술(根本手術)	1
	16. 후두(喉頭) 관혈적 절제수술	3
	17.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수술	1
	18. 기관(氣管), 기관지(氣管支), 폐(肺), 흉막(胸膜) 관혈수술[개 흉술(開胸術, Thoracotomy)을 수반하는 것]	4
	19. 폐장(肺臟) 이식수술 [수용자(受容者)에 한함]	5
	20. 흉곽(胸郭) 형성수술(形成手術)	3
	21. 종격종양(縱隔腫瘍), 흉선 절제수술[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4
순환기계, 비장(脾腸)의 수술	22. 혈관관혈수술(하지정맥류 및 손가락·발가락은 제외)	3
	23. 하지 정맥류(靜脈瘤) 근본수술 및 손가락·발가락 혈관관혈수술	1
	24. 대동맥(大動脈), 대정맥(大靜脈), 폐동맥(肺動脈), 관동맥(冠 動脈) 관혈수술[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5
	25. 심막(心膜)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4

	26. 심장내(心藏內)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5
	27. 심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5
	28. 체내용(體內用) 인공심박조율기(人工心搏調律機, Artificial pacemaker) 매입술(埋入術)	3
	29. 비장(脾腸) 절제수술	3
소화기계의 수술	30. 이하선 절제수술	3
	31-1. 악하선, 설하선 절제수술	2
	31-2. 기타 타액선 절제수술(타석제거는 제외)	1
	32. 식도(食道) 이단술(離斷術) [개흉술, 개복술(開腹術, Laparotomy)을 수반하는 것]	4
	33. 위 절제수술(胃 切除手術, Gastrectomy)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4
	34. 기타의 위·식도 관혈수술 [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3
	35. 간장(肝臟), 췌장(膵臟)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4
	36. 담낭(膽囊), 담도(膽道)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3
	37. 간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5
	38. 췌장 이식수술 [개복술을 수반해야 하며 수용자에 한함] (단, 랑게르한스 소도(Islet of Langerhans)세포 이식수술은 제외함)	5
	39. 탈장(脫腸) 근본수술	1
	40. 전신성 복막염(全身性 腹膜炎, Generalized peritonitis) 수술	2
	41. 충수(蟲垂)절제술(충수염관련 충수주위 농양수술, 국한성 복막염 수술 포함), 맹장봉축술(盲腸縫縮術)	2
	42. 직장탈(直腸脫) 근본수술	1
	43. 소장(小腸), 결장(結腸), 직장(直腸), 장간막(腸間膜)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단, 직장탈근본수술은 제외)	4
비뇨기계·생식기계의 수술(인공임신 중절수술은 제외함)	44. 신장(腎臟), 방광(膀胱), 신우(腎盂), 요관(尿管)관혈수술[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경요도적 조작 및 방광류 교정수술은 제외]	4
	45. 요도 관혈수술 [경요도적 조작은 제외함]	2
	46. 방광류 교정수술	1
	47. 신장(腎臟) 이식수술(移植手術) [수용자에 한함]	5
	48. 음경(陰莖) 절단수술(포경수술 및 음경이물제거수술은 제외)	3
	49. 고환(辜丸), 부고환(副辜丸), 정관(精管), 정삭(精索), 정낭(精囊)관혈수술, 전립선(前立腺) 관혈수술	2
	50. 음낭관혈수술	1
	51. 자궁, 난소, 난관 관혈수술 (단, 제왕절개만출술 및 경질적인 조작은 제외)	2
	52. 경질적 자궁, 난소, 난관 수술	1
	53. 질탈(腔脫)근본수술	1
내분비기계의 수술	54. 뇌하수체종양(腦下垂體腫瘍) 절제수술	5
	55. 갑상선(甲狀腺)·부갑상선(副甲狀腺) 관혈수술	3
	56. 부신(副腎) 절제수술	4

신경계의 수술	57. 두개내(頭蓋內) 관혈수술 [개두술(開頭術, Craniotomy)을 수반하는 것]	5
	58. 신경(神經) 관혈수술	2
	59. 관혈적 척수종양(脊髓腫瘍) 절제수술	4
	60. 척수경막내외(脊髓硬膜內外) 관혈수술	3
시각기의 수술[약물주입술 은 제외]	61. 안검하수증(眼檢下垂症)수술(안검내반증 포함)	1
	62. 누소관(淚小管)형성수술(누관튜브삽입술 포함)	1
	63. 누낭비강(淚囊鼻腔) 관혈수술	2
	64. 결막낭(結膜囊) 형성수술	2
	65. 각막, 결막, 공막 봉합수술	1
	66. 각막, 공막 이식수술	2
	67. 전방(前房), 홍채(虹彩), 유리체(琉璃體) 관혈수술	2
	68. 녹내장(綠內障) 관혈수술	3
	69. 백내장(白內障), 수정체(水晶體) 관혈수술	1
	70. 망막박리(網膜剝離) 수술	2
	71.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시력회복 및 시력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1
	72. 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2
	73. 안구적출술, 조직충전술(組織充填術)	3
	74. 안와내종양절제수술	3
	75. 관혈적 안와내(眼窩內) 이물제거수술(異物除去手術)	1
	76. 안근(眼筋)관혈수술	1
청각기(聽覺器) 의 수술	77. 관혈적 고막(鼓膜) 성형술[고막 패치술은 제외]	2
	78. 유양동 절제술(乳樣洞切除術, mastoidectomy)	2
	79. 중이(中耳) 관혈수술[중이내 튜브유치술 제외]	2
	80. 중이내(中耳內) 튜브유치술[고막 패치술은 제외]	1
	81. 내이(內耳) 관혈수술	3
상기 이외의 수술[검사, 처치, 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음]	82. 상기 이외의 개두술(開頭術)	3
	83. 상기 이외의 개흉술(開胸術)	3
	84. 상기 이외의 개복술(開腹術)	2
	85.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破碎石術, E.S.W.L) 체외충격파치 료술(E.S.W.T)은 제외)	1
	86.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86-1. 뇌, 심장	3
	86-2. 후두, 흉부장기(심장 제외), 복부장기(비뇨, 생식기 제 외), 척추, 사지관절(손가락, 발가락은 제외) * 단, 대장의 용종 또는 대장의 양성신생물의 내시경적 절제술은 1 종으로 분류합니다.	2
	86-3. 비뇨, 생식기 및 손가락, 발가락	1

(주) 상기 1 ~ 85항의 수술 중 내시경(Fiberscope)을 이용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등에 의한 경피적(經皮的, Percutaneous) 수술은 86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복강경·흉강 경에 의한 수술은 해당부위(1 ~ 85 항)의 수술로 적용합니다.

II. 악성신생물 치료 목적의 수술

수술명	수술종류
1. 관혈적 악성신생물(惡性新生物) 근치수술(根治手術, Radical curative surgery) (단, 기타피부암(C44) 제외) [내시경 수술, 카테터·고주파 전극 등의 경피적 수술 등은 제외함] 1-1. 기타피부암(C44)	5 3
2. 내시경 수술, 카테터·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악성신생물 수술	3
3. 상기 이외의 기타 악성신생물 수술	3

- (주) 1. 제자리암·경계성종양에 대한 수술은 ‘I. 일반 질병 및 상해치료 목적의 수술’ 항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카테터(Catheter)를 이용한 흡인·천자·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수술은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에 준하여 5종 수술로 인정합니다.

III. 악성신생물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방사선 조사 분류항목 수술종류	수술종류
1. 악성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악성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定位的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를 포함함]	3
2.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 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3

(1-5종 수술분류표III 사용 지침)

-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수술이란 <1-5종 수술분류표III>에서 정한 행위[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등은 제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관혈(觀血)’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본(根本)’ 혹은 ‘근치(根治)’수술이라 함은 일회의 수술로 해당 질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수술을 말합니다.
-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이라 함은 관혈적 방법을 통해 악성신생물의 원발 병소를 완전히 절제 또는 적출하고 혹은 광청술을 함께 실시한 경우입니다.
- <1-5종 수술분류표III> 상에 열거되지 않은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에 대한 인정 및 적용 기준: <1-5종 수술분류표III>에서의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은 상기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여야 하고 약물투여치료, 방사선 조사치료 또는 기타의 보존적 치료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 <1-5종 수술분류표III> 상의 수술 이외에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치료한 경우 <1-5종 수술분류표III> 상의 동일부위 수술로 봅니다.
 - 단, 이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이 본질적으로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

테터(Catheter)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인 경우에는 <1-5종 수술분류표III> 중 'I. 일반 질병 및 상해치료 목적의 수술' 86항 (악성신생물의 경우는 'II. 악성신생물 치료목적의 수술' 2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6. '악성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선형가속기(LINAC)에서 발생하는 가는 방사선(Pencil beam)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악성신생물을 향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동시에 악성신생물의 움직임을 병변 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7.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 나이프 (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정위 좌표계를 이용하여 코발트 60 방사성 동위원소 (Co-60) 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두개강 내의 신생물을 향해 집중 조사함으로써 두개(頭蓋)를 열지 않고도 수술적 제거와 같은 효과를 내는 치료를 말합니다.
8. 다음과 같은 수술은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에서 보장을 제외합니다.
 - (1) 미용 성형상의 수술
 - (2)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3)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 (4)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생검 (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별표12】 성장판부위골절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상 병	분류번호
1.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2.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3.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4. 아래팔의 골절	S52
5.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6. 대퇴골의 골절	S72
7.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8.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9.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
10.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11.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12. 대퇴골의 출산손상	P13.2
13. 기타 긴뼈의 출산손상	P13.3
14. 출산손상으로 인한 쇄골의 골절	P13.4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상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3-1】 신화상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상병 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상 병	분류번호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T20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	T21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T22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T23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고관절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T24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T25
7.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T26
8. 기도의 화상 및 부식	T27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T28
10.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T29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T30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T31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T32
14. 방사선과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L59

※ 부식 :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상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3-2】 신화상 등급분류기준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상병 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급	1	2	3	4	5
분류 번호	T20.3, T21.3, T21.7, T27.0-T27.7, T28.2, T28.6, T28.7, T29.3, T29.7, T30.3, T30.7, T31.8, T31.9, T32.8, T32.9	T20.7, T24.3, T26.2, T28.1, T28.4, T31.6, T31.7, T32.6, T32.7	T20.6, T21.2, T21.6, T22.3, T22.7, T24.7, T25.3, T25.5, T25.6, T25.7, T26.3, T26.7, T28.5, T28.9, T30.6, T31.4, T31.5, T32.4, T32.5, L59.0, L59.8, L59.9	T20.2, T22.2, T22.6, T23.3, T23.6, T23.7, T24.2, T24.6, T25.2, T26.0, T28.0, T29.2, T30.2, T31.2, T31.3, T32.2, T32.3	T23.2, T26.1, T26.4, T26.5, T26.6, T26.8, T26.9, T28.3, T28.8, T29.6, T31.0, T31.1, T32.0, T32.1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상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4】 아나필락시스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상병 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상병	분류번호
1. 음식의 유해작용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쇼크	T78.0
2. 상세불명의 아나필락시스쇼크	T78.2
3. 혈청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쇼크	T80.5
4. 적절히 투여된 올바른 약물 또는 약제의 유해작용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쇼크	T88.6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상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형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5】 뇌졸중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뇌졸중	1. 거미막하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4. 뇌경색증	I63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신생아 뇌출혈	1. 출산 손상으로 인한 두개내 열상 및 출혈	P10
	2. 태아 및 신생아의 두개내 비외상성 출혈	P52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가 출생 전자녀(태아)가 아닌 경우에는 상기 질병 중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6】 뇌출혈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뇌출혈	1. 거미막하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신생아 뇌출혈	1. 출산 손상으로 인한 두개내 열상 및 출혈	P10
	2. 태아 및 신생아의 두개내 비외상성 출혈	P52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가 출생 전자녀(태아)가 아닌 경우에는 상기 질병 중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7】 뇌혈관질환 및 신생아뇌출혈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뇌혈관 질환	1. 거미막하출혈	I 60
	2. 뇌내출혈	I 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 62
	4. 뇌경색증	I 63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I 64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 65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 66
	8. 기타 뇌혈관 질환	I 67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I 68
	10.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I 69
신생아 뇌출혈	1. 출산 손상으로 인한 두개내 열상 및 출혈	P10
	2. 태아 및 신생아의 두개내 비외상성 출혈	P52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가 출생 전자녀(태아)가 아닌 경우에는 상기 질병 중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8】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급성심근경색증	I21
2. 후속 심근경색증	I22
3.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9】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협심증	I20
2. 급성 심근경색증	I21
3. 후속심근경색증	I22
4.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5.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4
6. 만성 허혈심장병	I25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20】 인슐린의존당뇨병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형 당뇨병	E10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당뇨병 질환(E10~E14)에는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음(자세한 내용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참고)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21】 중증세균성수막염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수막염	G00
2.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수막염	G01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2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30~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C41
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43~C44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51~C58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69~C72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암)	C73~C75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6~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C96
15.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97
16.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17.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18.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20. 골수섬유증	D47.4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형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22-2】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2
4. 제자리흑색종	D03
5. 피부의 제자리암종	D04
6. 유방의 제자리암종	D05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9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22-3】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D47.0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D47.2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7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생물	D47.9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형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23】 3대고액치료비암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C41
-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1
2.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0~C72
- 수막의 악성신생물(암)	C70
- 뇌의 악성신생물(암)	C71
- 척수, 뇌신경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72
3.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C96
- 호지킨림프종	C81
- 소포성 림프종	C82
- 비소포성 림프종	C83
- 성숙 T/NK-세포림프종	C84
- 기타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C85
-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C86
- 악성 면역증식질환	C88
- 다발성 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 신생물	C90
- 림프성 백혈병	C91
- 골수성 백혈병	C92
- 단핵구성 백혈병	C93
-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4
-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5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	C96
-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24】 전반발달장애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전반발달장애	F84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25】 다발성소아암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수막의 악성신생물(암)	C70
2. 뇌의 악성신생물(암)	C71
3.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72
4. 호지킨림프종	C81
5. 소포성 림프종	C82
6. 비소포성 림프종	C83
7. 성숙 T/NK-세포림프종	C84
8. 기타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C85
9.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C86
10. 림프성 백혈병	C91
11. 골수성 백혈병	C92
12. 단핵구성 백혈병	C93
13.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백혈병	C94
14.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5
1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	C96
16.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17.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26】 소아백혈병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림프성 백혈병	C91
2. 골수성 백혈병	C92
3. 단핵구성 백혈병	C93
4.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4
5.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5
6.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7.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27】 식중독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기타 살모넬라 감염	A02
2. 시겔라증	A03
3. 기타 세균성 장 감염	A04
4.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세균성 음식매개중독	A05
5. 아메바증	A06
6. 기타 원충성 장 질환	A07
7. 바이러스성 및 기타 명시된 장 감염	A08
8. 해산물로 섭취한 유해물질의 독성효과	T61
9. 식품으로 섭취한 기타 유해물질의 독성효과	T62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28】 특정전염병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콜레라	A00
2. 장티푸스	A01.0
3. 파라티푸스	A01.1~A01.4
4.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A03.9
5. 장출혈성 대장균감염	A04.3
6. 페스트	A20
7. 파상풍	A33~A35
8. 디프테리아	A36
9. 백일해	A37
10. 급성 회색질척수염	A80
11. 일본뇌염	A83.0
12. 홍역	B05
13. 풍진	B06
14. 볼거리	B26
15. 탄저병	A22
16. 브루셀라병	A23
17. 렘토스피라병	A27
18. 성홍열	A38
19. 수막알균 수막염	A39.0
20.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A41.5
21. 재향군인병, 비페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	A48.1~A48.2
22. 발진티푸스	A75
23. 광견병	A82
24. 신장 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A98.5
25. 말라리아	B50~B54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 형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29】 환경성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아토피	아토피성 피부염	L20
알레르기성비염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J30
천식	천식	J45
	천식지속상태	J46
급성 기관지염	급성 기관지염	J20
	급성 세기관지염	J21
폐렴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폐렴	J12
	폐렴연쇄구균에 의한 폐렴	J13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J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폐렴	J1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J1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J17
	- 수두 폐렴(J17.1*)	B01.2+
	- 폐렴이 합병된 홍역(J17.1*)	B05.2+
	-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J17.1*)	B25.0+
	- 폐 특소포자충증(J17.3*)	B58.3+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J18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탄광부 진폐증	J60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J61
	실리카를 함유한 먼지에 의한 진폐증	J62
	기타 무기물먼지에 의한 진폐증	J63
	상세불명의 진폐증	J64
	결핵과 연관된 진폐증	J65
	특정 유기물먼지에 의한 기도질환	J66
	유기물먼지에 의한 과민성 폐렴	J67
	화학물질, 가스, 훈증기 및 물김의 흡입에 의한 호흡기 병태	J68
	고체 및 액체에 의한 폐렴	J69
	기타 외부 요인에 의한 호흡기 병태	J70
중금속에 의한 질환	약물 및 중금속 유발 세뇨관-간질 및 세뇨관 병태	N14
	정상적으로는 혈액내에 없는 약물 및 기타 물질의 존재	R78
	금속의 독성효과	T56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 형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30】 생활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아토피성 피부염	L20
2. 비화농성 중이염	H65
3. 화농성 및 상세불명의 중이염	H66
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중이염	H67
5. 급성부비동염	J01
6. 만성부비동염	J32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환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환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31】 희귀난치성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P22 제외)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결핵	A15~A19
- 결핵 관절염(A18.01+)	M01.1*
- 척추의 결핵(A18.00+)	M49.0*
- 뼈의 결핵(A18.02+)	M90.0*
- 결핵성 방광염(A18.11+)	N33.0*
- 여성생식기관의 결핵(A18.17+)	N74.0*, N74.1*
- 결핵성 복막염(A18.30+)	K67.3*
- 장, 복막 및 장간막림프절의 결핵성 장애(A18.3--+)	K93.0*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B24
거대세포바이러스병	B25
크립토кок쿠스증	B45
뇌하수체의 양성신생물	D35.2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결핍에 의한 빈혈	D55.0
해당 효소의 장애에 의한 빈혈	D55.2
지중해빈혈	D56
용혈-요독증후군	D59.3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D59.5
후천성 순수적혈구 무형성[적모구감소]	D60
기타무형성빈혈	D61
선천성 적혈구조혈이상빈혈	D64.4
유전성 제8인자 결핍	D66
유전성 제9인자 결핍	D67
폰빌레브란트병	D68.0
유전성 제11인자 결핍	D68.1
기타 응고인자의 유전성 결핍	D68.2
정상적 혈소판결손	D69.1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	D69.3 ^{주)}
주) D69.3(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 중 에반스증후군에 한함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D69.6
무과립구증	D70
다형핵호중구의 기능장애	D71
림프세망 및 세망조직구 조직의 참여를 동반한 기타 명시된 질환	D76
항체결손이 현저한 면역결핍	D80
복합 면역결핍	D81
기타 주요 결손과 관련된 면역결핍	D82
공통가변성 면역결핍	D83
기타 면역결핍	D84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사르코이드증	D86
말단비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고프로락틴혈증	E22.1
뇌하수체 기능저하	E23.0
쿠싱증후군	E24
부신생식기장애	E25
원발성 부신피질부전	E27.1
애디슨발증	E27.2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신피질부전	E27.4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	E34.8
활동성 구루병	E55.0
방향족아미노산대사장애	E70
측쇄아미노산 및 지방산 대사장애	E71
아미노산대사의 기타 장애	E72
젖당 불내성	E73
탄수화물대사의 기타장애	E74
스핑고지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축적장애	E75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 대사 장애	E76
당단백질대사장애	E77
레쉬-니한 증후군	E79.1
기타 포르피린증	E80.2
구리 대사장애	E83.0
인대사 및 인산분해효소 장애	E83.3
낭성 섬유증	E84
아밀로이드증	E85
헌팅톤병	G10
유전성 운동실조	G11
척수성 근육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 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G13
파킨슨병	G20
진행성 핵상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울스제위스키]	G23.1
리이병	G31.81
다발경화증	G35
기타 전신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4
뇌전증지속상태	G41
기면병 및 탈력발작	G47.4
멜커슨증후군	G51.2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	G90.6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G60.0
염증성 다발신경병증	G61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G63.0
중증근무력증 및 기타 근신경장애	G70
근육의 원발성장애	G71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G90.8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G95.0
연령과 관련된 삼출성 황반변성	H35.31
색소성 망막디스트로피	H35.51
감각성 망막을 주로 침범한 기타 디스트로피	H35.58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I27.0
확장성 심근병증	I42.0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I42.1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I42.2
심내막심근(호산구성)병	I42.3
심내막탄력섬유증	I42.4
기타 제한성 심근병증	I42.5
모야모야병	I67.5
폐색혈전혈관염 [버거병]	I73.1
유전성 출혈성 모세혈관확장증	I78.0
버드-키아리 증후군	I82.0
폐포 및 벽측폐포 병태	J84.0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J84.1
크론병 [국소성 장염]	K50
궤양성 대장염	K51
원발성 담도간 경변증	K74.3
자가면역성 간염	K75.4
보통 천포창	L10.0
낙엽 천포창	L10.2
수포성 유사천포창	L12.0
홍터 유사천포창	L12.1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L12.3
혈청검사 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5
- 류마티스 폐질환(M05.1+)	J99.0*
절단성 관절염(L40.5+)	M07.1*
건선 척추염(L40.5+)	M07.2*
기타 건선관절병증	M07.3
연소성 류마티스 관절염	M08.0
연소성 강직척추염	M08.1
전신적으로 발병된 연소성 관절염	M08.2
(혈청검사 음성인)연소성다발관절염	M08.3
결절성 다발동맥염	M30.0
폐 침범을 동반한 다발동맥염[처그-스트라우스]	M30.1
연소성 다발동맥염	M30.2
과민성 혈관염	M31.0
혈전성 미세혈관병증	M31.1
베게너육아종증	M31.3
대동맥궁증후군[다카야스]	M31.4
현미경적 다발혈관염	M31.7
전신홍반루푸스	M32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피부다발근염	M33
전신경화증	M34
건조증후군[췌그렌]	M35.0
기타 중복증후군	M35.1
베체트병	M35.2
류마티스성 다발근통	M35.3
미만성(호산구성) 근막염	M35.4
다초점 섬유경화증	M35.5
재발성 지방층염[웨버-크리스찬]	M35.6
과가동성 증후군	M35.7
강직척추염	M45
진행성 골화근염	M61.1
뼈의 파렛병[변형성 골염]	M88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I형	G90.5
재발성 다발연골염	M94.1
만성 신장병	N18
신장성 요붕증	N25.1
신생아의 호흡곤란	P22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32】 병기구분 불가암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상세불명의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C14.0
발다이어고리의 악성신생물(암)	C14.2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중복병변의 악성신생물(암)	C14.8
담도의 중복병변의 악성신생물(암)	C24.8
상세불명의 담도의 악성신생물(암)	C24.9
상세불명 부분의 장관의 악성신생물(암)	C26.0
비장의 악성신생물(암)	C26.1
소화계통의 중복병변의 악성신생물(암)	C26.8
소화계통내의 불명확한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26.9
중이의 악성신생물(암)	C30.1
전두동의 악성신생물(암)	C31.2
접형골동의 악성신생물(암)	C31.3
부비동의 중복병변의 악성신생물(암)	C31.8
상세불명의 부비동의 악성신생물(암)	C31.9
심장의 악성신생물(암)	C38.0
전종격의 악성신생물(암)	C38.1
후종격의 악성신생물(암)	C38.2
상세불명 부분의 종격의 악성신생물(암)	C38.3
흉막의 악성신생물(암)	C38.4
심장,종격 및 흉막의 중복병변의 악성신생물(암)	C38.8
머리, 얼굴 및 목의 말초신경의 악성신생물(암)	C47.0
어깨를 포함한 팔의 말초신경의 악성신생물(암)	C47.1
엉덩이를 포함한 다리의 말초신경의 악성신생물(암)	C47.2
흉부의 말초신경의 악성신생물(암)	C47.3
복부의 말초신경의 악성신생물(암)	C47.4
골반의 말초신경의 악성신생물(암)	C47.5
상세불명의 몸통의 말초신경의 악성신생물(암)	C47.6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통의 중복병변의 악성신생물(암)	C47.8
상세불명의 말초 신경 및 자율 신경계통의 악성신생물(암)	C47.9
머리, 얼굴 및 목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49.0
어깨를 포함한 팔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49.1
엉덩이를 포함한 다리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49.2
흉부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49.3
복부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49.4
골반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49.5
상세불명의 몸통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49.6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중복병변의 악성신생물(암)	C49.8
상세불명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49.9

넓은인대의 악성신생물(암)	C57.1
원인대의 악성신생물(암)	C57.2
자궁주위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57.3
상세불명의 자궁부속기의 악성신생물(암)	C57.4
기타 명시된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57.7
여성생식기관의 중복병변의 악성신생물(암)	C57.8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57.9
부고환의 악성신생물(암)	C63.0
정삭의 악성신생물(암)	C63.1
기타 명시된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63.7
남성생식기관의 중복병변의 악성신생물(암)	C63.8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63.9
요도주위샘의 악성신생물(암)	C68.1
비뇨기관의 중복병변의 악성신생물(암)	C68.8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68.9
각막의 악성신생물(암)	C69.1
망막의 악성신생물(암)	C69.2
맥락막의 악성신생물(암)	C69.3
섬모체의 악성신생물(암)	C69.4
눈물샘 및 눈물관의 악성신생물(암)	C69.5
안와의 악성신생물(암)	C69.6
눈 및 부속기의 중복병변의 악성신생물(암)	C69.8
상세불명의 눈의 악성신생물(암)	C69.9
부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C75.0
뇌하수체의 악성신생물(암)	C75.1
두개인두관의 악성신생물(암)	C75.2
송과선의 악성신생물(암)	C75.3
경동맥소체의 악성신생물(암)	C75.4
대동맥소체 및 기타 부신경절의 악성신생물(암)	C75.5
상세불명의 다선성 침범의 악성신생물(암)	C75.8
상세불명의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암)	C75.9
머리,얼굴 및 목의 악성신생물(암)	C76.0
흉부의 악성신생물(암)	C76.1
복부의 악성신생물(암)	C76.2
골반의 악성신생물(암)	C76.3
팔의 악성신생물(암)	C76.4
다리의 악성신생물(암)	C76.5
기타 불명확한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6.7
기타 및 불명확한 부위의 중복병변의 악성신생물(암)	C76.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97
진성 적혈구증가증	D45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고리철적혈모구가 없는 불응성 빈혈	D46.0
고리철적혈모구가 있는 불응성 빈혈	D46.1
모세포과잉의 불응성 빈혈	D46.2

상세불명의 불응성 빈혈	D46.4
다세포계 형성 이상을 동반한 불응성 빈혈	D46.5
고립성 5q 결실 염색체 이상을 동반한 골수형성 이상증후군	D46.6
기타 골수형성 이상증후군	D46.7
상세불명의 골수형성 이상증후군	D46.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골수성유증	D47.4

② 상기 질병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별표32】 이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제3조(「1~3기암(병기구분불가암포함)」 및 「4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병기구분이 안 되는 질병이 있는 경우,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③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33】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심혈관질환 (특정)		허혈성심질환	I20 - I25
		발작성 빈맥	I47
		심방세동 및 조동	I48
		기타 심장부정맥	I49
		심부전	I50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	I60 - I69
5대혈관 질환	4대혈관 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I28
		대동맥 동맥류 및 박리	I71
		식도정맥류	I85, I98.2~I98.3
		위정맥류	I86.4
	죽상경화증 (뇌, 심장제외)	죽상경화증	I70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환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환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34】 다발성3대혈관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하지의 기타 심부혈관의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I80.2
하지의 정맥류	I83
장의 혈관 장애	K55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35-1】 19대특정질병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가1	1.관절염	감염성 관절병증	M00~M03
		(결핵 관절염(A18.01+) 제외)	(M01.1*제외)
		염증성 다발 관절병증	M05~M14
		(당뇨병성 관절병증 제외)	(M14.2 제외)
		- 류마티스 폐질환(M05.1+)	J99.0*
		관절증	M15~M19
		기타 관절장애	M20~M25
	2.백내장	노년성 백내장	H25
		기타 백내장	H26
		수정체의 기타장애	H27
	3.생식기질환	남성생식기관의 질환	N40~N45, N47~N51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생식기계 편모충증(N51.0*) 주) A59.08(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생식기계 편 모충증) 중 편모충성 전립선염+에 한함	A59.08 ^{주)}
		- 전립선의 결핵	A18.13+
		- 기타 남성 생식기관의 결핵	A18.14+
		- 볼거리고환염(N51.1*)	B26.0+
		여성골반내 기관의 염증성 질환	N70~N77
		(여성생식기관의 결핵(A18.17+) 제외)	(N74.0*, N74.1* 제외)
		여성 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 (습관적유산자(N96) 제외) (여성 불임(N97) 제외) (인공 수정과 관련된 합병증(N98) 제외)	N80~N95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뇨생식계통의 처치후 장애	N99
	4.급성상기도감염	급성상기도감염	J00~J06
	5.담낭담도질환	담낭염	K81
		담낭의 기타질환	K82
		담도의 기타질환	K83
	6.중이의진주종	중이의 진주종	H71
	7.귀경화증	귀경화증	H80
	8.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계통의 양성 신생물	D13
	9.중아·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중아 및 호흡계통의 양성 신생물	D14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양성 신생물	D15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가2	10.골 및 관절 연골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 신생물 D16
	11.조직의 양성신생물	중피조직의 양성 신생물 D19
		후복막 및 복벽 연조직의 양성 신생물 D20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기타 양성 신생물 D21
	12.수막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 신생물 D32
	13.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D33
	14.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D34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내분비선의 양성 신생물 D35
	15.골다공증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M80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M8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M82*		
골연속성의 장애 M84		
16.담석증	담석증 K80	
17.사타구니탈장	사타구니탈장 K40	
18.편도염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 J35	
19.축농증	만성 부비동염 J32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35-2】 19대특정질병Ⅱ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나1	1.복막의 질환	복막의 질환 (결핵성 복막염 제외) - 기타 클라미디아질환(K67.0*)	K65~K67 (K67.3 제외) A74.8+
		2.식도질환	식도염
	위-식도역류병		K21
	식도의 기타질환		K2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식도의 장애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소화기관의 결핵(K23.0*)		K23 A18.82+
	3.위·십이지장 질환		위염 및 십이지장염
기능성 소화불량		K30	
나2	4.내이의 질환	내이의 질환	H81~H83
	5.단일신경병증	팔의 단일신경병증	G56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	G90.6
		다리의 단일신경병증	G57
		기타 단일신경병증	G5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단일신경병증 (당뇨병성단일신경병증)	G59 (G59.0제외)
		6.방광의 결석	방광의 결석
	7.비감염성장염 및 결장염	크론병[국소성 장염]	K50
		궤양성 대장염	K51
		기타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K52
	8.중이 및 유도의 질환	중이 및 유도의 질환	H65~H70 H72~H75
		- 결핵성 중이염(H67.0*)	A18.6+
		- 중이염이 합병된 홍역(H67.1*)	B05.3+
		- 홍역후 중이염(H67.1*)	B05.3+
		9.척추변형	척추후만증 및 척추전만증
	척추측만증		M41
	척추골연골증		M42
	기타 변형성 등병증		M43
	10.척추병증		강직척추염
		기타 염증성 척추병증	M46
		척추증	M47
		기타 척추병증	M48
		나3	11.비뇨계통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	N31		
방광의 기타 장애	N3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방광장애	N33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나4		(결핵성 방광염(A18.11†) 제외)	(N33.0 제외)
		비뇨계통의 기타 장애	N3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도장애	N39
		(스트레스요실금 제외)	(N39.3 제외)
	12.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N39.4 제외)
		신세뇨관기능손상으로 인한 장애	N25
		상세불명의 신장위축	N26
		원인불명의 작은 신장	N2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N2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N29
		- 신장의 결핵(N29.1*)	A18.10+
	- 요관의 결핵(N29.1*)	A18.18+	
	13.안면신경장애	삼차신경의 장애	G50
		안면신경장애	G51
		기타 뇌신경의 장애	G52
	14.인후부위의 특정질환	편도주위 농양	J36
		만성 후두염 및 후두기관염	J3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성대및 후두의 질환	J38
		상기도의 기타 질환	J39
	15.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D30
	16.사구체질환	급성 신염증후군	N00
		급속 진행성 신염증후군	N01
		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	N02
		만성 신염증후군	N03
		신증후군	N04
		상세불명의 신염증후군	N05
		명시된 형태학적 병변을동반한 고립된 단백뇨	N0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전성 신장병증	N0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사구체장애		N08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제외)		(N08.3 제외)	
-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N08.5*) 주) M32.1+(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 홍반루푸스) 중 사구체 질환 동반 전신홍반 루푸스에 한함		M32.1+ ^{주)}	
17.신세뇨관 -간질질환	급성 세뇨관-간질신장염	N10	
	만성 세뇨관-간질신장염	N11	
	급성 또는 만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세뇨관-간질신 장염	N12	
	폐색성 및 역류성 요로병증	N13	
	약물 및 중금속 유발 세뇨관-간질 및 세뇨관 병태	N14	
	기타 신세뇨관-간질질환	N15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세뇨관-간질장애	N16
		-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N16.4*) 주) M32.1+(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중 세뇨관-간질신장병증 동반 전신홍반루푸스에 한함	M32.1+ ^{주)}
나5	18.특정부위의 탈장	대퇴탈장	K41
		배꼽탈장	K42
		복벽탈장	K43
		횡격막탈장	K44
		기타 복부탈장	K45
		상세불명의 복부탈장	K46
	19.특정장질환	장의 혈관장애	K55
		탈장이 없는 마비성 장폐쇄증 및 장폐쇄	K56
		장의 게실병	K57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35-3】 22대특정질병Ⅱ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다1	1. 당뇨병 질환	당뇨병 질환	1형 당뇨병	E10
			2형 당뇨병	E11
			영양실조 관련 당뇨병	E12
			기타명시된 당뇨병	E13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
		당뇨병성 합병증	당뇨병성단일신경병증	G59.0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G63.2
			당뇨병성 백내장	H28.0
			당뇨병성 망막병증	H36.0
			당뇨병성 관절병증	M14.2
			당뇨병에서의사구체장애	N08.3
	2. 심장질환		급성 류마티스열	I00~I02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I05~I09
			허혈심장질환	I20~I25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I28
			기타형태의 심장병	I30~I52
			- 수막알균성 심장막염(I32.0*)	A39.5+
			- 수막알균성 심내막염(I39.8*)	
			- 수막알균성 심근염(I41.0*)	
			- 수막알균성 심장염 NOS(I52.0*)	
			칸디다심내막염(I39.8*)	B37.6+
	3. 고혈압 질환	고혈압성 질환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고혈압성 심장병	I11
			고혈압성 신장병	I12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I13
			이차성 고혈압	I15
		고혈압성 합병증	고혈압성 뇌병증	I67.4
			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변화	H35.0 ^{주)}
			주) H35.0(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변화)중 고혈압성 망막병증에 한함	
	4. 뇌혈관질환		뇌혈관 질환	I60~I69
	5. 간질환		바이러스 간염	B15~B19
			간의 질환	K70~K77
			- 거대세포바이러스 간염(K77.0*)	B25.1+
			- 톡소포자충간염(K77.0*)	B58.1+
	6. 위.십이지장궤양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상세불명부위의 소화성궤양	K25~K27
	7. 동맥경화증		죽상경화증	I70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8.만성하부 호흡기질환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J40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기관지염	J41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J42
		천식	J45
		천식지속상태	J46
9.폐렴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 폐렴	J12
		폐렴연쇄알균에 의한 폐렴	J13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J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J1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J1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J17
		-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J17.1*)	B25.0+
		- 폐렴이 합병된 홍역(J17.1*)	B05.2+
		- 수두 폐렴(J17.1*)	B01.2+
		- 폐 독소포자충증(J17.3*)	B58.3+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J18
		재향군인병	A48.1
		폐렴이 합병된 홍역	B05.2
10.녹내장		녹내장	H4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	H42
11.황반변성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H35.3
12.결핵		결핵	A15~A19
		- 결핵 관절염(A18.01+)	M01.1*
		- 척추의 결핵(A18.00+)	M49.0*
		- 뼈의 결핵(A18.02+)	M90.0*
		- 결핵성 방광염(A18.11+)	N33.0*
		- 여성생식기관의 결핵(A18.17+)	N74.0*, N74.1*
		- 결핵성 복막염(A18.30+)	K67.3*
		- 장, 복막 및 장간막림프절의 결핵성 장애 (A18.3-+)	K93.0*
13.신부전		결핵의 후유증	B90
		신부전	N17~N19
다2		14.급성췌장염	K85
		15.다발경화증	G35
		16.대동맥류	I71
		17.자율신경계통의 장애	G90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G9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염	G00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수막염	G01
		- 리스테리아수막염(G01*)	A32.1+
		- 수막알균수막염(G01*)	A39.0+
		- 결핵성 수막염(G01*)	A17.0+
18.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질환		달리 분류된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에서의 수막염	G02
		- 아데노바이러스수막염(G02.0*)	A87.1+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 엔테로바이러스수막염(G02.0*)	A87.0+
	- 헤르페스바이러스수막염(G02.0*)	B00.3+
	- 수막염이 합병된 홍역(G02.0*)	B05.1+
	- 볼거리수막염(G02.0*)	B26.1+
	- 풍진수막염(G02.0*)	B06.0+
	- 수두수막염(G02.0*)	B01.0+
	- 대상포진수막염(G02.0*)	B02.1+
	- 칸디다수막염(G02.1*)	B37.5+
	- 콕시디오이데스진균수막염(G02.1*)	B38.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수막염	G03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5
	- 결핵성 수막뇌염(G05.0*)	A17.81+
	- 리스테리아수막뇌염(G05.0*)	A32.1+
	- 아데노바이러스뇌염(G05.1*)	A85.1+
	- 엔테로바이러스뇌염(G05.1*)	A85.0+
	-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G05.1*)	B00.4+
	- 뇌염이 합병된 홍역(G05.1*)	B05.0+
	- 볼거리뇌염(G05.1*)	B26.2+
	- 풍진 뇌염 및 풍진 수막뇌염(G05.1*)	B06.0+
	- 수두뇌염(G05.1*)	B01.1+
	- 대상포진뇌염(G05.1*)	B02.0+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G0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두 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G07
	- 아메바성 뇌농양(G07*)	A06.6+
	- 수막결핵종(G07*)	A17.1+
	- 뇌 및 척수의 결핵종(G07*)	A17.80+
	- 기타 신경계통의 결핵(G07*)	A17.88+
	두개내 및 척추내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G08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의 후유증	G09
19.체장질환	체장의 기타 질환	K8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담낭 담도 및 체장의 장애	K87
	- 거대세포바이러스체장염(K87.1*)	B25.2+
20.파킨슨병	파킨슨병	G20
	이차성 파킨슨증	G21
	연쇄알균패혈증	A40
21.패혈증	기타 패혈증	A41
	폐기종	J43
22.폐질환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J44
	기관지확장증	J47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J85~J86
	흉막의 기타 질환	J90~J94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당뇨병질환(E10~E14)에는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음(자세한 내용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참고)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35-4】 6대특정질병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라1	1.생식기의 양성종양	자궁의 평활근종	D25
		자궁의 기타 양성 신생물	D26
		난소의 양성 신생물	D2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D28
		남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D29
	2.특정 누적외상성 질환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범	M35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각막염 및 각막결막염(M35.0+)	H19.3*
		경추상완증후군	M53.1
		기타 연조직장애	M70~M79 (M74,M75, M78 제외)
라2	3.근육장애	근염	M60
		근육의 석회화 및 골화	M61
		근육의 기타 장애	M6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근육장애	M63
	4.어깨병변	어깨병변	M75
	5.윤활막 및 힘줄장애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M65
		윤활막 및 힘줄의 자연파열	M66
		윤활막 및 힘줄의 기타 장애	M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윤활막 및 힘줄의 장애	M68
라3	6.눈 및 눈부속기관의 특정질환	- 기타 관절의 결핵(M68.0*)	A18.08+
		공막 각막 홍채 및 섬모체의장애	H15~H19
		- 결핵성 상공막염(H19.0*)	A18.5+
		- 결핵성 간질각막염(H19.2*)	
		- 결핵성 각막결막염(간질성, 플릭텐성)(H19.2*)	
		- 각막염(H19.1*)	
		- 각막결막염(H19.1*)	B00.51+
		- 각막상피염(H19.1*)	
		- 간질각막염(H19.1*)	
		- 각막내피염(H19.1*)	
		-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각막결막염(H19.2*)	B30.0+
		- 유행성 각막결막염(H19.2*)	
		- 조선소눈병(H19.2*)	
		- 조선소눈병(H19.2*)	
		공막 각막 홍채 및 섬모체의장애	H20~H22
		- 결핵성 홍채섬모체염(H22.0*)	A18.5+
		- 홍채섬모체염(H22.0*)	B00.50+
		- 홍채염(H22.0*)	
		- 전방포도막염(H22.0*)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H30~H35
	- 결핵성 맥락망막염(H32.0*)	A18.5+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제외)	(H35.3 제외)
	(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변화 제외)	
	주) H35.0(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변화) 중 고혈압성 망막병증에 한함	(H35.0 ^{주)} 제외)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H36
	(당뇨병성 망막병증 제외)	(H36.0 제외)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H46~H48
	눈 및 눈부속기의 기타 처치후 장애	
	주) 눈 및 눈부속기의 기타 처치후 장애(H59.8) 중 미만성 총판성 각막염에 한함	H59.8 ^{주)}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35-5】 다빈도4대질병Ⅱ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마1	1.유방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양성 신생물	D24
	2.유방의 장애	양성 유방형성이상	N60
		유방의 염증성 장애	N61
		유방의 비대	N62
		유방의 상세불명의 덩이	N63
		유방의 기타 장애	N64
	3.후각 특정질환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J30
		만성비염 비인두염 및 인두염	J31
		코용종	J33
		코 및 비동의 기타장애	J34
	4.갑상선질환	갑상선의 장애	E00~E07
		- 갑상선이상성 안구돌출(E05.0+)	H06.2*
		처치후 갑상선기능저하증	E89.0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36】 치핵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 포함 - 치질 제외 - 출산 및 산후기 합병(O87.2), 임신 합병(O22.4)	K64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37】 당뇨병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형 당뇨병	E10
2형 당뇨병	E11
영양실조 관련 당뇨병	E12
기타명시된 당뇨병	E13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
당뇨병성단일신경병증	G59.0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G63.2
당뇨병성 백내장	H28.0
당뇨병성 망막병증	H36.0
당뇨병성 관절병증	M14.2
당뇨병에서의사구체장해	N08.3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당뇨병 질환(E10~E14)에는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음(자세한 내용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참고)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고당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38】 총수염(맹장염)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총수의 질환	K35~K38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39】 소아탈장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사타구니 탈장	K40
2. 대퇴 탈장	K41
3. 배꼽 탈장	K42
4. 복부 탈장	K43
5. 기타 복부 탈장	K45
6. 상세불명의 복부 탈장	K46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40】추간판장애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경추 간판 장애	M50
2. 기타 추간판장애	M51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41】 시각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눈꺼플, 눈물계통 및 안와의 장애	H00~H06
2. 결막의 장애	H10~H13
3. 공막, 각막, 홍채 및 섬모체의 장애	H15~H22
4. 수정체의 장애	H25~H28
5.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H30~H36
6. 녹내장	H40~H42
7. 유리체 및 안구의 장애	H43~H45
8. 시신경 및 시각로의 장애	H46~H48
9. 안근, 양안운동, 조절 및 굴절의 장애	H49~H52
10. 시각 장애 및 실명	H53~H54
11. 눈 및 눈부속기의 기타 장애	H55~H59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42】 청각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외이의 질환	H60~H62
2. 중이 및 유도의 질환	H65~H75
3. 내이의 질환	H80~H83
4. 귀의 기타 장애	H90~H95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43】 성장장애관련질병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부신 피질의 악성신생물	C74.0
2. 두개인두관의 악성신생물	C75.2
3. 두개인두관의 양성신생물	D35.3
4. 기타 갑상선 기능저하증 (미만성 고이터를 동반한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제외) (고이터를 동반하지 않은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제외)	E03 (E03.0제외) (E03.1제외)
5. 기타 뇌하수체의 기능항진	E22.8
6. 쿠싱 증후군	E24
7. 단백질-에너지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지연	E45
8. 비타민 D 결핍	E55
9. 만성 신장병	N18
10. 상세불명의 신부전	N19
11. 신장성 골다스트로피	N25.0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 형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44】 척추측만증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척추측만증	M41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45】 모야모야병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모야모야병	I67.5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46】 피부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피부 및 피하조직의 감염	L00 ~ L08
2. 수포성 장애	L10 ~ L14
3. 피부염 및 습진	L20 ~ L30
4. 구진비늘 장애	L40 ~ L45
- 원위지골간 건선헌관절병증(L40.5+)	M07.0*
- 절단성 관절염(L40.5+)	M07.1*
- 건선헌추염(L40.5+)	M07.2*
- 기타 건선헌관절병증(L40.5+)	M07.3*
- 건선헌에서의 연소성 관절염(L40.5+)	M09.0*
5. 두드러기 및 홍반	L50 ~ L54
6. 피부 및 피하조직의 방사선 관련 장애	L55 ~ L59
7. 피부 부속물의 장애	L60 ~ L75
8.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장애	L80 ~ L99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47】 호흡기관련질병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급성상기도감염	J00 ~ J06
2. 상기도의 상세불명 질환	J39.9
3.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J40
4.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기관지염	J41
5.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J42
6. 천식, 천식지속 상태	J45, J46
7. 폐렴	J12 ~ J18
-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J17.1*)	B25.0+
- 폐렴이 합병된 홍역(J17.1*)	B05.2+
- 수두 폐렴(J17.1*)	B01.2+
- 폐 독소포자충증(J17.3*)	B58.3+
8. 재향군인병	A48.1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 형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48】 소아 . 청소년 특정 성인병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고혈압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고혈압성 심장병	I11
	고혈압성 신장병	I12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I13
	이차성 고혈압	I15
	고혈압성 뇌병증	I67.4
	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변화 주) H35.0(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변화) 중 고혈압성 망막병증에 한함	H35.0 ^{주)}
당뇨	1형 당뇨병	E10
	2형 당뇨병	E11
	영양실조 관련 당뇨병	E12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
	당뇨병성단일신경병증	G59.0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G63.2
	당뇨병성 백내장	H28.0
	당뇨병성 망막병증	H36.0
	당뇨병성 관절병증	M14.2
	당뇨병에서의사구체장애	N08.3
이상지질 혈증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	E78.0
	혼합성 고지질혈증	E78.2
	기타 고지질혈증	E78.4
뇌혈관 질환	거미막하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뇌경색증	I63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기타 뇌혈관질환	I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49】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F90.0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50】 아토피성 피부염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아토피성 피부염	L20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51】 복합된 음성 및 다발성 운동 턱장애(데라투렛 증후군)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복합된 음성 및 다발성 운동 턱장애 (데라투렛 증후군)	F95.2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52】 성조숙증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조발 사춘기	E30.1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53】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Q00~Q07
2. 눈, 귀, 얼굴 및 목의 선천기형	Q10~Q18
3.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Q20~Q28
4. 호흡계통의 선천기형	Q30~Q34
5. 구순열 및 구개열	Q35~Q37
6. 소화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38~Q45
7. 생식 기관의 선천기형	Q50~Q56
8. 비뇨계통의 선천기형	Q60~Q64
9.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Q65~Q79
10. 기타 선천기형	Q80~Q89
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 이상	Q90~Q99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54】 특정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Q00~Q07
2. 눈, 귀, 얼굴 및 목의 선천기형 (부이개 제외)	Q10~Q18 (Q17.0 제외)
3.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Q20~Q28
4. 호흡계통의 선천기형	Q30~Q34
5. 구순열 및 구개열	Q35~Q37
6. 소화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허유착증 제외) (대설증 제외) (혀의 기타 선천기형 제외)	Q38~Q45 (Q38.1 제외) (Q38.2 제외) (Q38.3 제외)
7. 생식 기관의 선천기형	Q50~Q56
8. 비뇨계통의 선천기형	Q60~Q64
9.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Q65~Q79
10. 기타 선천기형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제외)	Q80~Q89 (Q82.5 제외)
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 이상	Q90~Q99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55】 주산기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산모 요인과 임신,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에 의해 영향을 받은 태아 및 신생아	P00~P04
2. 임신 기간 및 태아 성장과 관련된 장애	P05~P08
3. 출산외상	P10~P15
4. 출생 전후기에 특이한 호흡기 및 심혈관 장애	P20~P29
5. 출생 전후기에 특이한 감염	P35~P39
6. 태아 및 신생아의 출혈성 및 혈액학적 장애	P50~P61
7. 태아 또는 신생아에 특이한 일과성 내분비 및 대사 장애	P70~P74
8. 태아 및 신생아의 소화계통 장애	P75~P78
9. 태아 및 신생아의 외피 및 체온조절에 관련된 병태	P80~P83
10.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기타 장애	P90~P96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56】 5대기관질병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뇌질환II	뇌혈관 질환	I60~I69
심장질환	급성 류마티스열	I00~I02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I05~I09
	허혈성 심장질환	I20~I25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I28
	기타형태의 심장병	I30~I52
	- 수막알균성 심장막염(I32.0*)	A39.5+
	- 수막알균성 심내막염(I39.8*)	
	- 수막알균성 심근염(I41.0*)	
	- 수막알균성 심장염 NOS(I52.0*)	
	칸디다심내막염(I39.8*)	B37.6+
간질환	바이러스간염	B15~B19
	간의질환	K70~K77
	거대세포바이러스성간염	B25.1
	톡소포자충간염	B58.1
폐질환	폐기종	J43
	기타만성폐쇄성폐질환	J44
	천식	J45
	천식지속상태	J46
	기관지확장증	J47
	하기도의화농성및괴사성병태	J85~J86
	흉막의기타질환	J90~J94
신장질환	신부전	N17~N19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57】 뇌성마비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뇌성마비	G80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58】 7대희귀난치성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재생불량성빈혈	후천성 순수적혈구 무형성[적모구감소증]기타 무형성 빈혈	D60, D61
운동신경세포병	운동신경세포병	G12.2
다발경화증	다발경화증	G35
파킨슨병	파킨슨병	G20
심근질환	확장성심근병증	I42.0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I42.1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I42.2
	심내막심근(호산구성)병	I42.3
	기타 제한성 심근병증	I42.5
모야모야병	모야모야병	I67.5
전신홍반루푸스	전신홍반루푸스	M32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59】 천식지속상태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천식지속상태	J46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60】 선천성 뇌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무뇌증 및 유사 기형	Q00
2. 뇌류(腦瘤)	Q01
3. 소두증	Q02
4. 선천수두증	Q03
5. 뇌의 기타 선천기형	Q04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61】 수족구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발진을 동반한 엔테로바이러스소수포구내염(수족구병)	B08.4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62】 수두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수두	B01
2. 기타 선천성 바이러스 질환	P35.8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63】 특정정신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우울에피소드	F32
2. 재발성 우울장애	F33
3.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F41.0
4. 외상후스트레스장애	F43.1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64】 결핵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호흡기 결핵	A15
2. 세균학적으로나 조직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호흡기 결핵	A16
3. 신경계통의 결핵	A17
4. 기타 기관의 결핵	A18
5. 좁쌀 결핵	A19
6. 다약제내성 결핵	U84.30
7. 광범위약제내성 결핵	U84.31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65】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다약제내성 결핵	U84.30
2. 광범위약제내성 결핵	U84.31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66】 신통합암(전이포함)Ⅱ(유사암제외)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특정암Ⅱ (전이포함)	1.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2.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3.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암)	C76
	4.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	C97
	5. 진성 적혈구증가증	D45
	6.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7. 골수섬유증	D47.4
	8. 기타 명시된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C79.88
	9.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C79.9
	10.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암)	C80
	11.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암)	C77
	12. 피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C79.2
	13. 유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C79.80
골및생식기암 (전이포함)	1.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C41
	2.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암)	C51~C58
	3.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암)	C60~C63
	4. 골 및 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C79.5
	5. 난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C79.6
	6. 생식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C79.81
비뇨기관및특정 내분비선암 (전이포함)	1.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암)	C64
	2. 신우의 악성 신생물(암)	C65
	3. 요관의 악성 신생물(암)	C66
	4. 방광의 악성 신생물(암)	C67
	5.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성 신생물(암)	C68
	6. 부신의 악성 신생물(암)	C74
	7.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암)	C75
	8. 신장 및 신우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C79.0
	9. 방광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C79.1
	10. 부신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C79.7
2대부위암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C00~C14
	2. 눈 및 부속기의 악성신생물(암)	C69
2대부위암Ⅲ (전이포함)	1. 식도의 악성 신생물(암)	C15
	2. 위의 악성 신생물(암)	C16
	3. 결장의 악성 신생물(암)	C18
	4.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암)	C19
	5. 직장의 악성 신생물(암)	C20
	6.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암)	C21
	7.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암)	C26
	8. 중피종	C45

2대부위암III (전이포함)	9. 카포시육종	C46
	10.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통의 악성 신생물(암)	C47
	11.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 신생물(암)	C48
	12. 기타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암)	C49
	13.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C78.5
	14. 후복막 및 복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C78.6
	15.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C78.8
특정소화기관암 (전이포함)	1. 소장의 악성 신생물(암)	C17
	2.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암)	C22
	3. 담낭의 악성 신생물(암)	C23
	4.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암)	C24
	5. 췌장의 악성 신생물(암)	C25
	6. 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C78.4
	7.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C78.7
2대부위암IV (전이포함)	1.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암)	C30~C39
	2. 수막의 악성 신생물(암)	C70
	3. 뇌의 악성 신생물(암)	C71
	4.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암)	C72
	5.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	C78.0
	6. 종격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	C78.1
	7. 흉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	C78.2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호흡기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C78.3
	9.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C79.3
	10. 신경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C79.4
특정4대암	1.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C96
	2.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3.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67】 만성폐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J40
단순성및점액화농성만성기관지염	J41
상세불명의만성기관지염	J42
폐기종	J43
기타만성폐쇄성폐질환	J44
기관지확장증	J47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J60 ~ J70
성인호흡곤란증후군	J80
폐부종	J81
기타 간질성 폐질환	J84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호흡부전	J96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68】 만성폐쇄성폐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J40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J41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J42
폐기종	J43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J44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69】 기흉 및 신생아기흉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기흉	1. 기흉	J93
	2. 외상성 기흉	S27.0
신생아기흉	1.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기흉	P25.1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가 출생 전자녀(태아)가 아닌 경우에는 상기 질병 중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70】 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확인된 동물매개 또는 범유행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J09
2.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J10
3.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인플루엔자	J11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71】 급여촬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여촬영」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진료행위			수가코드
근골격계	견관절	일반	HE115
		조영제주입전·후 촬영판독	HE215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	HE315
		제한적(방사선치료범위및위치결정등)	HE415
		3차원	HE515
	고관절	일반	HE118
		조영제주입전·후 촬영판독	HE218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	HE318
		제한적(방사선치료범위및위치결정등)	HE418
		3차원	HE518
	관절외상지	일반	HE122
		조영제주입전·후 촬영판독	HE222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	HE322
		제한적(방사선치료범위및위치결정등)	HE422
		3차원	HE522
	관절외하지	일반	HE123
		조영제주입전·후 촬영판독	HE223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	HE323
		제한적(방사선치료범위및위치결정등)	HE423
		3차원	HE523
	관절조용		HE142
	발목관절	일반	HE121
		조영제주입전·후 촬영판독	HE221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	HE321
		제한적(방사선치료범위및위치결정등)	HE421
		3차원	HE521
	수관절	일반	HE117
		조영제주입전·후 촬영판독	HE217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	HE317
		제한적(방사선치료범위및위치결정등)	HE417
		3차원	HE517
	슬관절	일반	HE120
		조영제주입전·후 촬영판독	HE220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	HE320
		제한적(방사선치료범위및위치결정등)	HE420
		3차원	HE520
	주관절	일반	HE116
		조영제주입전·후 촬영판독	HE216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	HE316
		제한적(방사선치료범위및위치결정등)	HE416
		3차원	HE516

	천장 골관절	일반	HE119
		조영제주입전·후 촬영판독	HE219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	HE319
		제한적(방사선치료범위및위치결정등)	HE419
		3차원	HE519
척추	경추	일반	HE109
		조영제주입전·후 촬영판독	HE209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	HE309
		제한적(방사선치료범위및위치결정등)	HE409
		3차원	HE509
	요천추	일반	HE111
		흉추와동시촬영-일반	HE113
		조영제주입전·후 촬영판독	HE211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	HE311
		흉추 동시촬영-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	HE313
		제한적(방사선치료범위및위치결정등)	HE411
		흉추와동시촬영-제한적(방사선치료범위및위치결정등)	HE413
		3차원	HE511
	척추강	흉추와동시촬영-3차원	HE513
		일반	HE112
		경추,흉추,요천추와동시촬영-일반	HE114
		조영제주입전·후 촬영판독	HE212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	HE312
		경추,흉추,요천추와동시촬영-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	HE314
		제한적(방사선치료범위및위치결정등)	HE412
		경추,흉추,요천추와동시촬영-제한적(방사선치료범위및위치결정등)	HE414
	흉추	3차원	HE512
		경추,흉추,요천추와동시촬영-3차원	HE514
		일반	HE110
		조영제주입전·후 촬영판독	HE210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	HE310
혈관	사지 혈관	제한적(방사선치료범위및위치결정등)	HE410
		3차원	HE510
		일반	HE139
		조영제주입전·후 촬영판독	HE239
뇌		3차원	HE539
		일반-촬영료 등	HI101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01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01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촬영료 등	HI401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01
		일반-판독료	HJ101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01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01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판독료	HJ401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01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01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01
두경부	경부	일반-촬영료 등	HI108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08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08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촬영료 등	HI408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08
		일반-판독료	HJ108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08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08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판독료	HJ408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08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08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08
	부비동	일반-촬영료 등	HI104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04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04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촬영료 등	HI40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04
		일반-판독료	HJ104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04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04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판독료	HJ40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04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04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04
	안면	일반-촬영료 등	HI103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03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0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촬영료 등	HI403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03
		일반-판독료	HJ103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03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0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판독료	HJ403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03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03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03
	안와	일반-촬영료 등	HI105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05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05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촬영료 등	HI405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05
		일반-판독료	HJ105

복부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05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05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판독료	HJ405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05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05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05
	측두골	일반-촬영료 등	HI106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06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06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촬영료 등	HI406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06
		일반-판독료	HJ106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06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06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판독료	HJ406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06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06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06
	측두하악관절	일반-촬영료 등	HI107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07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07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촬영료 등	HI407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07
		일반-판독료	HJ107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07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07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판독료	HJ407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07
	간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07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07
		일반-촬영료 등	HI13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32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32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촬영료 등	HI432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32
		일반-판독료	HJ13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32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32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판독료	HJ432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32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32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32
	골반	일반-촬영료 등	HI128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28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28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촬영료 등	HI428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28
		일반-판독료	HJ128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28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28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판독료	HJ428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28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28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28
	담채관	일반-촬영료 등	HI133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33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3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촬영료 등	HI433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33
		일반-판독료	HJ133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33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3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판독료	HJ433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33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33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33
	복부	일반-촬영료 등	HI127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27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27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촬영료 등	HI427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27
		일반-판독료	HJ127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27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27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판독료	HJ427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27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27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27
	신장 및 부신	일반-촬영료 등	HI130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30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30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촬영료 등	HI430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30
		일반-판독료	HJ130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30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30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판독료	HJ430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30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30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30

음낭 및 음경	일반-촬영료 등	HI131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31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31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촬영료 등	HI431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31
	일반-판독료	HJ131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31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31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판독료	HJ431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31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31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31
전립선	일반-촬영료 등	HI134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34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34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촬영료 등	HI43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34
	일반-판독료	HJ134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34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34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판독료	HJ43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34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34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34
췌장	일반-촬영료 등	HI129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29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29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촬영료 등	HI429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29
	일반-판독료	HJ129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29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29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판독료	HJ429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29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29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29
심장	일반-촬영료 등	HI124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24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24
	일반-판독료	HJ124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24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24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24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24
전신	일반-촬영료 등	HI141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41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41
		일반-판독료	HJ141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41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41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41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41
혈관 [동맥 또는 정맥]	복부 혈관	일반-촬영료 등	HI138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38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38
		일반-판독료	HJ138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38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38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38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38
	심혈관	일반-촬영료 등	HI140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40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40
		일반-판독료	HJ140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40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40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40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40
	흉부 혈관	일반-촬영료 등	HI137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37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37
		일반-판독료	HJ137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37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37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37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37
	경부 혈관	일반-촬영료 등	HI136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36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36
		일반-판독료	HJ136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36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36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36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36
	뇌혈관	일반-촬영료 등	HI135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35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35
		일반-판독료	HJ135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35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35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35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35
흉부	유방	일반-촬영료 등	HI126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26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26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촬영료 등	HI426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26
		일반-판독료	HJ126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26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26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판독료	HJ426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26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26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26
	흉부	일반-촬영료 등	HI125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25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25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촬영료 등	HI425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25
		일반-판독료	HJ125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25
		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25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판독료	HJ425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25
		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25
		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25
특수 자기 공명 영상 진단	확산		HF101
	관류[3차원자기공명영상포함]		HF102
	분광영상		HF103
	영화 [기본검사 및 3차원자기공명영상 포함]		HF104
	Dynamic [기본검사 포함]		HF105
	이중조영 [기본검사 포함]		HF106
	기능적 [기본검사 및 3차원자기공명영상 포함]		HF107
	확산-기본검사와동시실시		HF201
	관류[3차원자기공명영상포함]-기본검사와동시실시		HF202
	분광영상-기본검사와동시실시		HF203
	Dynamic-3차원		HF305
	이중조영-3차원		HF306

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예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72】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1. 응급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증상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 (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만염·장폐쇄증·급성체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라. 출혈 : 혈관손상
 -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 주) 관련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73】 신김스치료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신김스치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진료행위 명칭	수가코드	지급률
손가락캐스트	T6090	5%
단상지(전완으로부터 수부까지)	T6030	10%
장상지(상완으로부터 수부까지)	T6020	20%
8자형 석고	T6120	
단하지(하퇴로부터족부까지)-Without Walker	T6060	30%
단하지(하퇴로부터족부까지)-With Walker	T6061	
슬개건 부하캐스트	T6063	
견수상(흉부로부터 수부까지)	T6010	
벨포캐스트	T6110	
대퇴에서 족부에 미치는 캐스트	T6050	40%
장하지(대퇴로부터 족부까지)-Without Walker	T6051	
장하지(대퇴로부터 족부까지)-With Walker	T6052	
Risser형 체간캐스트	T6080	
Minerva형 체간캐스트	T6070	
고수상(요부로부터 족부까지, 척추cast포함)	T6040	100%

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74】 인공와우이식수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인공와우이식수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내 용	수가코드
인공와우이식수술	S5800

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
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
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75】 양전자 단층촬영(PET) 검사(급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ET 검사」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
니다.

내 용		수가코드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가. 토르소	HK010
	나. 심근	HK020
	다. 뇌	HK030
	라. 전신	HK040
	마. 부분	HK050
	바. 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 촬영	HK060

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
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
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76】 치아관련질병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치아우식증(충치)	K02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	K04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	K05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77】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구 분	수가코드
1/3약당 스케일링	U2232
전악 스케일링	U2233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위 1.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 위 1.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78】 치아촬영(X-ray 및 파노라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치아촬영(X-ray 및 파노라마)」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구 분		수가코드
X-ray촬영	1. 치근단 촬영	G9101~G9105
	2. 교익 촬영	G9501~G9505
	3. 교합 촬영	G9601
파노라마촬영		G9701, G9761

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79】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구분	대 상 진 료 행 위	수가코드
1/3약당 지급	1. 치주소파술(1/3약당)	U1010
	2. 치은신부착술(1/3약당)	U1020
	3. 치은성형술(1/3약당)	U1030
	4. 치은절제술(1/3약당)	U1040
	5. 치은박리소파술(1/3약당)	
	- 간단	U1051
	- 복잡(치조골의 성형, 삭제술 포함)	U1052
	6. 치근면처치술(1/3약당)	U1060
치료1회당 지급	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이식의 경우	U1071
	- 자가골이식의 경우(채취 포함)	U1072
	8. 조직유도재생술	
	- 골이식을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U1081
	- 골이식을 동반하는 경우	
	1)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이식의 경우	U1082
	2) 자가골이식의 경우(채취 포함)	U1083
	9. 조직유도재생막 제거술	U1090
	10. 치은측방변위판막술, 치관변위판막술	U1100
치료 치아 1개당 지급	11. 치은이식술	U1110
	12. 치관분리술	UX102
	13. 치근절제술(1치아당) 중	
	- 선택적치근절제술	U1131
	- 치아반측절제술	U1132
	14. 치관확장술(1약당) 중	
	- 치은절제술	UY101
	- 근단변위판막술	UY102
	-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	UY103

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80】 발치치료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 치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구 분		수가코드
단순발치 (맹출(이동)치아 및 노출된 치근)	유치(Deciduous Tooth)	U4411
	전치(Anterior Tooth)	U4412
	구치(Posterior Tooth)	U4413
정교발치 (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난발치(Complicated Extraction)	U4414
	단순매복치(Simple)	U4415
	복잡매복치(치아분할술을 실시한 경우)(Complex)	U4416
완전매복발치 (완전 매복된 치아)	완전매복치(치관이 2/3이상 치조골내에 매복된 치아의 골절제와 치아분할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Complete)	U4417

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81-1】 장애의 대상

장애의 대상이 되는 기형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이외의 기형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순환기계 기형

1) 심실중격결손증

좌우 심실의 사이에 작은 구멍이 있어 심장이 수축할 때 압력이 높은 좌심실로부터 압력이 낮은 우심실로 혈액이 역류하는 것. 따라서 우심실에 부담이 생겨 나중에 심부전을 일으킨다.

2) 심방중격결손증

좌우의 심방사이에 구멍이 있는 경우

2. 근골격계 기형

1) 다지증 : 지(指, 趾)가 6개 이상 있는 경우

2) 합지증 : 지(指, 趾)가 붙어 있는 경우

3) 결지증 : 지(指, 趾)가 부족한 경우

4) 열수(족) : 합지(趾)증이 심화되어 지(趾)가 붙어 있어야 할 곳보다 안쪽까지 찢어져 있는 경우

5) 내반수(족) : 수(足)가 전체로서 안쪽으로 위어져 수(足)의 뒤쪽이 안쪽의 방향으로 향하여 있는 경우

6) 사경 : 목 한쪽이 휘어져 턱이 반대쪽에 올라간 상태의 경우

3. 소화기계 기형

1) 토순 : 윗입술이 찢어진 경우(중양이 찢겨있는 경우, 혹은 우 또는 좌로 치우쳐진 곳에 찢겨져 있는 경우)

2) 구개열 : 토순보다도 더욱 심한 것으로 입안 구개골에 파열이 생기는 경우

3) 선천성식도폐쇄증 : 식도가 폐쇄 또는 협착상태에 있는 경우

4) 선천성장폐쇄증 : 장이 폐쇄 또는 협착상태에 있는 경우

5) 선천성담도폐쇄증 : 담도가 폐쇄 또는 협착상태에 있는 경우(본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십이지장에 담즙이 분비되지 않음)

6) 선천성항문폐쇄증 : 항문이 폐쇄되어 있는 경우

4. 뇌신경계 기형

1) 수두증 : 뇌척수액의 증가로 뇌실비대에 의해 머리가 커진 경우

2) 척추파열 : 척추중앙에 깨진 선이 있어 그곳으로부터 척수나 척수막 등이 바깥으로 부풀어져 나온 경우

5. 비뇨생식기계 기형

1) 요도상열 : 단순히 귀두 뒷면에 찢어진 선이 있는 경우나 때로는 음순하면전장에 열구가 있는 경우

2) 요도하열 : 요도가 음 선단에 미치지 못하고 음 하면에 개구가 있는 경우, 개구가 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3) 선천성요도폐쇄증 : 요도가 폐쇄되어 있거나 협착상태에 있는 경우

4) 반음양 : 남성이면서 외음부가 여성처럼 보이는 경우, 여성이면서 남성처럼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전자의 경우가 많고 이것을 남성이성반음양이라 한다.

6. 감각기계 기형

외이도폐쇄 : 외이도가 태어나면서 폐쇄한 상태에 있는 경우

7. 헤닐키토뇨증(Phenylketonuria)

선천성대사 이상의 일종으로 방치해두면 정신박약으로 된다. 치료는 페닐알라닌을 제거한 특수우유와 특수한 식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지만 치료는 생후 2~3개월 이내에 치료하지 않으면 지능저하를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생후 1개월에 집단선별검사(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스크리닝 검사)를 행할 필요가 있다.

【별표81-2】 심한장해의 대상

심한 장해의 대상이 되는 기형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이외의 기형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중증기형

- 1) 심한 포코멜리아(단지증, Phocomelia) : 사지의 장골에 결손 또는 단축이 있어 수족이 직접 또는 단축한 장골을 가지고 체구에 부착하고 있는 상태의 경우. 사지의 이상은 상지에서 잘보이며 하지의 이상은 드문 경우이며, 이 기형은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계 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 2) 무지증 : 사지가 완전하게 결손한 경우로서 상당히 심한 기형인 것
- 3) 절단증 : 태아일 때 사지가 양막에 말려있는 상태로 있어서 사지가 절단된 경우

2. 뇌성마비

뇌성마비란 (ㄱ) 임신중의 장애, (ㄴ) 출생시의 장애, (ㄷ) 출생후 영아기의 장애 등에 의해 뇌조직에 이상을 초래하여 수족이나 발성이 자유롭지 않게 되는 병이다. 뇌성마비의 원인으로 (ㄱ) 임신중의 장애, (ㄴ) 출생시의 장애에 의한 것 이외에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성 장애 등이 있으나 본 보험에서 담보하는 것은 임신중 또는 출산시의 장애로 인한 뇌성마비에 한한다.

3. 다운증후군의 염색체이상의 기형

21번째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있어 얼굴이 넓적하고 코가 작고 안열이 위로 뺄어져 사행하는 등 다운증후군의 특징적 얼굴형태를 가지는 경우로써 근육긴장감퇴, 지능저하(장애) 등의 주요 증상이 보인다.

【별표82】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유산된 임신	O00~O08
2. 임신, 출산 및 산후기의 부종, 단백뇨 및 고혈압성 장애	O10~O16
3. 주로 임신과 관련된 기타 산모 장애	O20~O29
4. 태아와 양막강 및 가능한 분만문제와 관련된 산모관리	O30~O48
5.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	O60~O75
6. 분만	O80~O84
7. 주로 산후기에 관련된 합병증	O85~O92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83】 임신및출산관련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I. 임신, 출산 및 산후기의 부증, 단백뇨 및 고혈압성 장애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O10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1
고혈압을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임신-유발]부증 및 단백뇨	O12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3
전자간	O14
자간	O15
상세불명의 산모 고혈압	O16
II. 주로 임신과 관련된 기타 산모 장애	
초기 임신중 출혈	O20
임신중 과다 구토	O21
임신중 정맥 합병증 및 치핵	O22
임신중 비뇨생식관의 감염	O23
임신중 당뇨병	O24
임신중 영양실조	O25
주로 임신과 관련된 기타 병태의 산모관리	O26
산모의 출산전 선별검사의 이상 소견	O28
임신중 마취의 합병증	O29
III. 태아와 양막강 및 가능한 분만문제와 관련된 산모관리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O31
태아의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이상태위에 대한 산모관리	O32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불균형에 대한 산모관리	O33
골반 기관의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태아이상 및 손상에 대한 산모관리	O35
기타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태아문제에 대한 산모관리	O36
양수과다증	O40
양수 및 양막의 기타장애	O41
양막의 조기파열	O42
태반장애	O43
전치 태반	O44
태반의 조기분리 (태반조기박리)	O45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전 출혈	O46
가진통	O47
자연임신	O48
IV.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	
조기진통 및 분만	O60
유도분만의 실패	O61
분만힘의 이상	O62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자연 산통	O63
태아의 이상태위로 인한 난산	O64
산모 골반이상으로 인한 난산	O65
기타 난산	O66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O67
태아 스트레스(절박)가 합병된 진통 및 분만	O68
탯줄 합병증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O69
분만중 회음 열상	O70
기타 산과적 외상	O71
분만 후 출혈	O72
출혈이 없는 잔류 태반 및 양막	O73
진통 및 분만중 마취의 합병증	O7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진통 및 분만의 기타 합병증	O75
V. 주로 산후기에 관련된 합병증	
산후기 패혈증	O85
기타 산후기 감염	O86
산후기중 정맥합병증 및 치핵	O87
산과적 색전증	O88
산후기중 마취의 합병증	O8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산후기의 합병증	O90
출산과 관련된 유방의 감염	O91
출산과 관련된 유방 및 수유의 기타장애	O92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84】 유산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자궁외 임신	O00
2. 포상기태	O01
3. 기타 비정상적 수태부산물	O02
4. 자연유산	O03
5. 의학적 유산	O04
6. 기타 유산	O05
7. 상세불명의 유산	O06
8. 시도된 유산의 실패	O07
9. 유산, 자궁외 임신 및 기태 임신에 따른 합병증	O08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85】 임신중독증(자간포함)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전자간	O14
2. 자간	O15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86】 임신관련특정혈액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유산, 자궁외 임신 및 기태 임신에 따른 자연 또는 심한 출혈	O08.1
2. 응고결함을 동반한 대반조기분리	O45.0
3. 응고결함을 동반한 분만전출혈	O46.0
4. 응고결함을 동반한 분만중 출혈	O67.0
5. 분만후 응고결함	O72.3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87】 출산전 선별검사 결과에 따른 이상소견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산모의 출산전 선별검사의 이상소견	O28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88】 태반조기박리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태반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O45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89】 양수색전증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산과적 색전증	O88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90】 임신성당뇨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임신중 생긴 당뇨병	O24.4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91】 다운증후군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다운증후군	Q90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92】 산후우울증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우울에피소드	F32
재발성 우울장애	F33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산후기의 정신 및 행동장애	F53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93】 특정신체부위 분류표

구분	특정부위
1	위, 십이지장
2	공장(빈창자), 회장(돌창자) 및 맹장(충수돌기 포함)
3	대장(맹장, 직장 제외)
4	직장
5	항문
6	간
7	담낭(쓸개) 및 담관
8	췌장
9	비장
10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및 흉곽(늑골 포함)
11	코(외비(코 바깥), 비강(코 안) 및 부비강(코 곁굴) 포함)
12	인두 및 후두(편도 포함)
13	식도
14	구강, 치아, 혀, 악하선(턱밑샘), 이하선(귀밑샘) 및 설하선(혀밑샘)
15	귀(외이(바깥 귀), 고막, 중이(가운데귀), 내이(속귀), 청신경 및 유양돌기 (꼭지돌기)포함)
16	안구 및 안구부속기(안경(눈꺼풀), 결막, 누기(눈물샘), 안근 및 안와내 조직 포함)
17	신장
18	부신
19	요관, 방관 및 요도
20	음경
21	질 및 외음부
22	전립선
23	유방(유선 포함)
24	자궁(자궁체부(자궁몸통) 포함)
25	자궁체부(자궁몸통)(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26	난소 및 난관
27	고환(고환초막(고환집막) 포함), 부고환, 정관, 정삭 및 정낭
28	갑상선
29	부갑상선
30	서혜부(넓적다리 부위의 위쪽 주변)(서혜 탈장, 음낭 탈장 또는 대퇴 탈장이 생긴 경우에 한함)
31	피부(두피 및 입술 포함)
32	경추부(해당신경 포함)
33	흉추부(해당신경 포함)
34	요추부(해당신경 포함)
35	천골(엉치뼈)부 및 미골(꼬리뼈)부(해당신경 포함)
36	왼쪽 어깨
37	오른쪽 어깨

구분	특정부위
38	왼팔(왼쪽 어깨 제외, 왼손 포함)
39	오른팔(오른쪽 어깨 제외, 오른손 포함)
40	왼손(왼쪽 손목 관절 이하)
41	오른손(오른쪽 손목 관절 이하)
42	왼쪽 고관절
43	오른쪽 고관절
44	왼쪽 다리(왼쪽 고관절 제외, 왼발 포함)
45	오른쪽 다리(오른쪽 고관절 제외, 오른발 포함)
46	왼발(왼쪽 발목 관절 이하)
47	오른발(오른쪽 발목 관절 이하)
48	상·하악골(위턱뼈·아래턱뼈)
49	쇄골
50	늑골(갈비뼈)

【별표94】 특정질병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심장질환	I00~I02, I05~I09, I20~I25, I26~I28, I30~I52, I97
2	뇌혈관질환	I60~I69, G45, G46, Q28
3	당 뇨 병	E10~E14, O24, H28.0, H36.0
4	고 혈 압	I10~I13, I15, H35.0 ^{*)} 주) H35.0(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변화) 중 고혈압성 망막병증에 한함
5	결핵	A15~A19
6	담석증	K80
7	요로결석증	N20~N23
8	골반염	N70~N74, N77
9	자궁내막증	N80
10	관절병증, 연골병증	M00~M03, M05~M19, M93, M94
11	척추질환	M40~M43, M45~M51, M53, M54, M99.1 ~ M99.7
12	하지정맥류	I80, I83, I87
13	고지혈증	E78
14	임신중독증	O11~O15
15	통풍	E79, M10
16	사시	H49~H51
17	백내장	H25~H27
18	탈장, 음낭수종	K40~K46, N43
19	복막의질환	K65~K67
20	골다공증	M80~M82
21	천식	J44~J46
22	유산	N96, O00~O08, O20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 형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항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 질병 해당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95】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C73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96】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류마티스성 대동맥협착	I06.0
기능부전이 있는 류마티스성 대동맥협착	I06.2
대동맥판협착	I35.0
기능부전을 동반한 대동맥판협착	I35.2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97-1】 4대혈관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I28
대동맥 동맥류 및 박리	I71
식도정맥류	I85, I98.2~I98.3
위정맥류	I86.4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97-2】 죽상경화증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죽상경화증	I70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98】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심혈관질환 (특정)	허혈성심질환		I20 - I25
	발작성 빈맥		I47
	심방세동 및 조동		I48
	기타 심장부정맥		I49
	심부전		I50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		I60 - I69
혈관질환 (9종)	4대혈관질환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 - I28
		대동맥 동맥류 및 박리	I71
		식도정맥류	I85, I98.2, I98.3
		위정맥류	I86.4
	죽상경화증 (뇌, 심장제외)	죽상경화증	I70
	하지의 기타 심부혈관의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I80.2
	하지 정맥류		I83
	장의 혈관 장애		K55
	치핵		K64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99】 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심혈관질환 (특정)	허혈성심질환	I20 - I25	
	발작성 빈맥	I47	
	심방세동 및 조동	I48	
	기타 심장부정맥	I49	
	심부전	I50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	I60 - I69	
선천성 뇌질환	무뇌증 및 유사 기형	Q00	
	뇌류(腦瘤)	Q01	
	소두증	Q02	
	선천수두증	Q03	
	뇌의 기타 선천기형	Q04	
혈관질환 (9종)	4대혈관질환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 - I28
		대동맥 동맥류 및 박리	I71
		식도정맥류	I85, I98.2, I98.3
		위정맥류	I86.4
	죽상경화증 (뇌, 심장제외)	죽상경화증	I70
	하지의 기타 심부혈관의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I80.2
	하지 정맥류		I83
	장의 혈관 장애		K55
	치핵		K64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 형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00】 1~5종수술 분류표Ⅳ

1. 일반 질병 및 상해 치료목적의 수술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피부, 유방의 수술	1. 피부이식수술(25cm ² 이상인 경우), 피판수술(피판분리수술, Z flap, W flap 제외)	3
	2. 피부이식수술(25cm ² 미만인 경우)	1
	3. 유방절단수술(切斷術, Mastectomy) * 단, 유방의 비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N62)로 인한 수술은 1 종으로 분류합니다.	3
	4. 기타 유방수술(농양의 절개 및 배액은 제외) [단, 치료목적의 Mammotomy는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 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1
근골(筋骨)의 수술 [발정술 (拔釘術) 등 내고정물 제거술은 제외함] [치(齒) · 치은 · 치근(齒根) · 치조골 (齒槽骨)의 처치, 임플란트 (Implant) 등 치과 처치 및 수술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5. 골(骨) 이식수술	2
	6. 두개골(頭蓋骨, cranium) 관혈수술 [비골(鼻骨) · 비중격(鼻中隔) · 상악골(上顎骨) · 하악골(下 顎骨) · 악관절(顎關節)은 제외함]	3
	7. 비골(鼻骨) 수술 [비중격 만곡증(彎曲症)수술 제외. 단, 수면무호흡증(G47.3) 치료를 위한 수술은 보상함]	1
	8. 상악골(上顎骨), 하악골(下顎骨), 악관절(顎關節) 관혈수술	2
	9. 척추골(脊椎骨), 골반골(骨盤骨), 추간판 관혈수술	3
	10. 쇄골(鎖骨), 견갑골(肩胛骨), 늑골(肋骨), 흉골(胸骨) 관혈수술	2
	11. 사지(四肢) 절단수술(다지증에 대한 절단수술은 제외함)	
	11-1. 손가락, 발가락 절단수술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 것]	1
	11-2. 기타 사지(四肢)절단수술	3
	12. 절단(切斷)된 사지(四肢)재접합수술(再接合手術)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것]	3
	13.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13-1. 손가락, 발가락의 골 및 관절 관혈수술	1
	13-2. 기타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2
	14. 근(筋), 건(腱), 인대(靱帶), 연골(軟骨) 관혈수술	1
호흡기계· 흉부(胸部)의 수술	15. 만성부비강염(慢性副鼻腔炎) 근본수술(根本手術)	1
	16. 후두(喉頭) 관혈적 절제수술	3
	17.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수술	1
	18. 기관(氣管), 기관지(氣管支), 폐(肺), 흉막(胸膜) 관혈수술[개 흉술(開胸術, Thoracotomy)을 수반하는 것]	4
	19. 폐장(肺臟) 이식수술 [수용자(受容者)에 한함]	5
	20. 흉곽(胸郭) 형성수술(形成手術)	3
	21. 종격종양(縱隔腫瘍), 흉선 절제수술[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4
순환기계, 비장(脾腸)의 수술	22. 혈관관혈수술(하지정맥류 및 손가락·발가락은 제외)	3
	23. 하지 정맥류(靜脈瘤) 근본수술 및 손가락·발가락 혈관관혈수술	1
	24. 대동맥(大動脈), 대정맥(大靜脈), 폐동맥(肺動脈), 관동맥(冠	5

	動脈) 관혈수술[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25. 심막(心膜)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4
	26. 심장내(心藏內)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5
	27. 심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5
	28. 체내용(體內用) 인공심박조율기(人工心搏調律機, Artificial pacemaker) 매입술(埋入術)	3
소화기계의 수술	29. 비장(脾腸) 절제수술	3
	30. 이하선 절제수술	3
	31-1. 악하선, 설하선 절제수술	2
	31-2. 기타 타액선 절제수술(타석제거는 제외)	1
	32. 식도(食道) 이단술(離斷術) [개흉술, 개복술(開腹術, Laparotomy)을 수반하는 것]	4
	33. 위 절제수술(胃 切除手術, Gastrectomy)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4
	34. 기타의 위·식도 관혈수술 [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3
	35. 간장(肝臟), 췌장(脾臟)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4
	36. 담낭(膽囊), 담도(膽道)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3
	37. 간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5
	38. 췌장 이식수술 [개복술을 수반해야 하며 수용자에 한함](단, 랑게르한스 소도(Islet of Langerhans)세포 이식수술은 제외함)	5
	39. 탈장(脫腸) 근본수술	1
	40. 전신성 복막염(全身性 腹膜炎, Generalized peritonitis)수술	2
	41. 충수(蟲垂)절제술(충수염관련 충수주위 농양수술, 국한성 복막염 수술 포함), 맹장봉축술(盲腸縫縮術)	2
	42. 직장탈(直腸脫) 근본수술	1
	43. 소장(小腸), 결장(結腸), 직장(直腸), 장간막(腸間膜)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단, 직장탈근본수술은 제외)	4
	44. 치루(痔瘻), 탈항(脫肛), 치핵(痔核) 근본수술 [근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수술은 제외함]	1
비뇨기계· 생식기계의 수술 (인공임신 중절수술은 제외함)	45. 신장(腎臟), 방광(膀胱), 신우(腎盂), 요관(尿管)관혈수술[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경요도적 조작 및 방광류 교정수술은 제외]	4
	46. 요도 관혈수술 [경요도적 조작은 제외함]	2
	47. 방광류·요실금 교정수술	1
	48. 신장(腎臟) 이식수술(移植手術) [수용자에 한함]	5
	49. 음경(陰莖) 절단수술(포경수술 및 음경이물제거수술은 제외)	3
	50. 고환(辜丸), 부고환(副辜丸), 정관(精管), 정삭(精索), 정낭(精囊)관혈수술, 전립선(前立腺) 관혈수술	2
	51. 음낭관혈수술	1
	52. 자궁, 난소, 난관 관혈수술 (단, 제왕절개만출술 및 경질적인 조작은 제외)	2

	53. 경질적 자궁, 난소, 난관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1
	54.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	1
	55. 질탈(腔脫)근본수술	1
내분비기계의 수술	56. 뇌하수체종양(腦下垂體腫瘍) 절제수술	5
	57. 갑상선(甲狀腺)·부갑상선(副甲狀腺) 관혈수술	3
	58. 부신(副腎) 절제수술	4
신경계의 수술	59. 두개내(頭蓋內) 관혈수술 [개두술(開頭術, Craniotomy)을 수반하는 것]	5
	60. 신경(神經) 관혈수술	2
	61. 관혈적 척수종양(脊髓腫瘍) 절제수술	4
	62. 척수경막내외(脊髓硬膜內外) 관혈수술	3
시각기의 수술 [약물주입술은 제외]	63. 안검하수증(眼檢下垂症)수술(안검내반증 포함)	1
	64. 누소관(淚小管)형성수술(누관튜브삽입술 포함)	1
	65. 누낭비강(淚囊鼻腔) 관혈수술	2
	66. 결막낭(結膜囊) 형성수술	2
	67. 각막, 결막, 공막 봉합수술	1
	68. 각막, 공막 이식수술	2
	69. 전방(前房), 홍채(虹彩), 유리체(琉璃體) 관혈수술	2
	70. 녹내장(綠內障) 관혈수술	3
	71. 백내장(白內障), 수정체(水晶體) 관혈수술	1
	72. 망막박리(網膜剝離)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
	73.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시력회복 및 시력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1
	74. 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
	75. 안구적출술, 조직충전술(組織充填術)	3
	76. 안와내종양절제수술	3
	77. 관혈적 안와내(眼窩內) 이물제거수술(異物除去手術)	1
	78. 안근(眼筋)관혈수술	1
청각기 (聽覺器)의 수술	79. 관혈적 고막(鼓膜) 성형술[고막 패치술은 제외]	2
	80. 유양동 절제술(乳樣洞切除術, mastoidectomy)	2
	81. 중이(中耳) 관혈수술[중이내 튜브유치술 제외]	2
	82. 중이내(中耳內) 튜브유치술[고막 패치술은 제외]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1

	83. 내이(內耳) 관혈수술	3
상기 이외의 수술 [검사, 처치, 약물주입 요법은 포함하지 않음]	84. 상기 이외의 개두술(開頭術)	3
	85. 상기 이외의 개흉술(開胸術)	3
	86. 상기 이외의 개복술(開腹術)	2
	87.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破碎石術, E.S.W.L)(체외충격파치 료술(E.S.W.T)은 제외)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 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 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
	88.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 (Catheter)·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 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 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88-1. 뇌, 심장	3
	88-2. 후두, 흉부장기(심장 제외), 복부장기(비뇨, 생식기 제 외), 척추, 사지관절(손가락, 발가락은 제외) * 단, 대장의 용종 또는 대장의 양성신생물의 내시경적 절제술 은 1종으로 분류합니다.	2
	88-3. 비뇨, 생식기 및 손가락, 발가락	1

주) 상기 1 ~ 87항의 수술 중 내시경(Fiberscope)을 이용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등에 의한 경피적(經皮的, Percutaneous) 수술은 88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복강경·흉강 경에 의한 수술은 해당부위(1 ~ 87 항)의 수술로 적용합니다.

II. 악성신생물 치료 목적의 수술

수술명	수술 종류
1. 관혈적 악성신생물(惡性新生物) 근치수술(根治手術, Radical curative surgery)(단, 기타피부암(C44) 제외) [내시경 수술, 카테터 · 고주파 전극 등의 경피적 수술 등은 제외함]	5
1-1. 기타피부암(C44)	3
2. 내시경 수술, 카테터·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악성신생물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3
3. 상기 이외의 기타 악성신생물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3

- 주) 1. 제자리암·경계성종양에 대한 수술은 ‘I. 일반 질병 및 상해치료 목적의 수술’ 항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카테터(Catheter)를 이용한 흡인·천자·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수술은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에 준하여 5종 수술로 인정합니다.
-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술 중 조혈모세포 이식술은 일련의 과정(추출, 필터링, 배양, 제거, 주입)을 모두 포함하여 1회의 수술로 인정합니다.
 - 다만 약물 등을 투여하기 위한 시술(예. 중심정맥삽관술)만 시행할 경우에는 5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III. 악성신생물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방사선 조사 분류항목 수술종류	수술 종류
1. 악성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악성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定位的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를 포함함]	3
2.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 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3

㉞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1-5종 수술분류표Ⅳ 사용 지침)

1.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수술이란 <1-5종 수술분류표Ⅳ>에서 정한 행위[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등은 제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관혈(觀血)’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근본(根本)’ 혹은 ‘근치(根治)’수술이라 함은 일회의 수술로 해당 질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수술을 말합니다.
4.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이라 함은 관혈적 방법을 통해 악성신생물의 원발 병소를 완전히 절제 또는 적출하고 혹은 광천술을 함께 실시한 경우입니다.
5. <1-5종 수술분류표Ⅳ> 상에 열거되지 않은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에 대한 인정 및 적용 기준:
<1-5종 수술분류표Ⅳ>에서의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은 상기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여야 하고 약물투여치료, 방사선 조사치료 또는 기타의 보조적 치료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 (1) <1-5종 수술분류표Ⅳ> 상의 수술 이외에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치료한 경우 <1-5종 수술분류표Ⅳ> 상의 동일부위 수술로 봅니다. 이 때에 해당 최신수술기법은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2) 단, 이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이 본질적으로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인 경우에는 <1-5종 수술분류표Ⅳ> 중 'I. 일반 질병 및 상해치료 목적의 수술' 88항 (악성신생물의 경우는 'II. 악성신생물 치료목적의 수술' 2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6. ‘악성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선형가속기(LINAC)에서 발생하는 가는 방사선(Pencil beam)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악성신생물을 향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동시에 악성신생물의 움직임을 병변 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7.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나이프 (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정위 표표계를 이용하여 코발트 60 방사성 동위원소 (Co-60) 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두개강 내의 신생물을 향해 집중 조사함으로 두개(頭蓋)를 열지 않고도 수술적 제거와 같은 효과를 내는 치료를 말합니다.
8. 다음과 같은 수술은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에서 보장을 제외합니다.
 - (1) 미용 성형상의 수술

- (2)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3)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 (4)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생검 (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별표101-1】 28대특정질병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가1	1.백내장	노년성 백내장	H25
		기타 백내장	H26
		수정체의 기타장애	H27
	2.관절염	감염성 관절병증	M00~M03
		(결핵 관절염(A18.01+) 제외)	(M01.1*제외)
		염증성 다발 관절병증	M05~M14
		(당뇨병성 관절병증 제외)	(M14.2 제외)
		- 류마티스 폐질환(M05.1+)	J99.0*
		관절증	M15~M19
		기타 관절장애	M20~M25
	3.생식기질환	남성생식기관의 질환	N40~N45, N47~N51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생식기계 편모충증(N51.0*) 주) A59.08(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생식기계 편모충증) 중 편모충성 전립선염+에 한함	A59.08 ^{주)}
		- 남성 생식기관의 결핵	A18.14+
		- 볼거리고환염(N51.1*)	B26.0+
		여성골반내 기관의 염증성 질환	N70~N77
		(여성생식기관의 결핵(A18.17+) 제외)	(N74.0*, N74.1* 제외)
		여성 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 (습관적유산자(N96) 제외) (여성 불임(N97) 제외) (인공 수정과 관련된 합병증(N98) 제외)	N80~N95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뇨생식계통의 처치후 장애	N99
	4.급성상기도감염	급성상기도감염	J00~J06
	5.담낭담도질환	담낭염	K81
		담낭의 기타질환	K82
		담도의 기타질환	K83
	6.중이의진주종	중이의 진주종	H71
	7.귀경화증	귀경화증	H80
	8.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계통의 양성 신생물	D13
	9.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중이 및 호흡계통의 양성 신생물	D14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양성 신생물	D15
	10.골 및 관절 연골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 신생물	D16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1.조직의 양성신생물	중피조직의 양성 신생물	D19
		후복막 및 복박 연조직의 양성 신생물	D20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기타 양성 신생물	D21
	12.수막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 신생물	D32
	13.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D33
	14.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D34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내분비선의 양성 신생물	D35
	15.골다공증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M80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M8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M82*
		골연축성의 장애	M84
	가2	16.담석증	담석증
17.사타구니탈장		사타구니탈장	K40
18.편도염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	J35
19.축농증		만성 부비동염	J32
가3	20.결막장애	결막의 장애 (결막결석 제외)	H10~H13 (H11.11제외)
	21.기타 등병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등병증 (경추상완증후군 제외)	M53 (M53.1 제외)
		등통증	M54
	22.외이의 질환	외이의 질환	H60~H62
	23.귀의 기타장애	귀의 기타장애	H90~H95
가4	24.뇌하수체기능질환	뇌하수체의 기능항진	E22
		뇌하수체의 기능저하 및 기타장애	E23
	25.대사장애	쿠싱증후군	E24
		부신생식기장애	E25
		고알도스테론증	E26
		부신의 기타 장애	E27
	26.외부요인 폐질환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J60~J70
	27.특정 요도질환	요도염 및 요도증후군	N34
		요도협착	N35
		요도의 기타장애	N36
	28.특정 소화기질환	위 및 십이지장의 기타질환	K31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01-2】 39대특정질병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나1	1.복막의 질환	복막의 질환	K65~K67
		(결핵성 복막염 제외)	(K67.3 제외)
		- 기타 클라미디아질환(K67.0*)	A74.8+
	2.식도질환	식도염	K20
		위-식도역류병	K21
		식도의 기타질환	K2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식도의 장애	K23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소화기관의 결핵(K23.0*)	A18.82+
	3.위·십이지장 질환	위염 및 십이지장염	K29
		기능성 소화불량	K30
나2	4.내이의 질환	내이의 질환	H81~H83
	5.단일신경병증	팔의 단일신경병증	G56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	G90.6
		다리의 단일신경병증	G57
		기타 단일신경병증	G5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단일신경병증	G59
		(당뇨병성단일신경병증)	(G59.0제외)
	6.방광의 결석	방광의 결석	N21.0
	7.비감염성장염 및 결장염	크론병[국소성 장염]	K50
		궤양성 대장염	K51
		기타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K52
	8.종이 및 유도의 질환	종이 및 유도의 질환	H65~H70
		- 결핵성 종이염(H67.0*)	H72~H75
		- 종이염이 합병된 홍역(H67.1*)	A18.6+
		- 홍역후 종이염(H67.1*)	B05.3+
	9.척추변형	척추후만증 및 척추전만증	M40
		척추측만증	M41
		척추골연골증	M42
		기타 변형성 등병증	M43
	10.척추병증	강직척추염	M45
		기타 염증성 척추병증	M46
		척추증	M47
		기타 척추병증	M48
나3	11.비뇨계통의 기타질환	방광염	N3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	N31
		방광의 기타 장애	N3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방광장애	N33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나4		(결핵성 방광염(A18.11†) 제외)	(N33.0 제외)
		비뇨계통의 기타 장애	N3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도장애	N39
		(스트레스요실금 제외)	(N39.3 제외)
			(N39.4 제외)
	12.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신세뇨관기능손상으로 인한 장애	N25
		상세불명의 신장위축	N26
		원인불명의 작은 신장	N2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N2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N29
		- 신장의 결핵(N29.1*)	A18.10+
		- 요관의 결핵(N29.1*)	A18.18+
	13.안면신경장애	삼차신경의 장애	G50
		안면신경장애	G51
		기타 뇌신경의 장애	G52
	14.인후부위의 특정질환	편도주위 농양	J36
		만성 후두염 및 후두기관염	J3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성대및 후두의 질환	J38
		상기도의 기타 질환	J39
	15.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D30
	16.사구체질환	급성 신염증후군	N00
		급속 진행성 신염증후군	N01
		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	N02
		만성 신염증후군	N03
		신증후군	N04
		상세불명의 신염증후군	N05
		명시된 형태학적 병변을동반한 고립된 단백뇨	N0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전성 신장병증	N0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사구체장애	N08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제외)	(N08.3 제외)
		-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N08.5*) 주) M32.1+(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중 사구체 질환 동반 전신홍반루푸스에 한함	M32.1+ ^{주)}
	17.신세뇨관-간질질환	급성 세뇨관-간질신장염	N10
		만성 세뇨관-간질신장염	N11
		급성 또는 만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세뇨관-간질신장염	N12
		폐색성 및 역류성 요로병증	N13
		약물 및 중금속 유발 세뇨관-간질 및 세뇨관 병태	N14
		기타 신세뇨관-간질 질환	N15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세뇨관-간질 장애 -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N16.4*) 주) M32.1+(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 홍반루푸스) 중 세뇨관-간질신장병증 동반 전신홍반루푸스에 한함	N16 M32.1+ ^{주)}
N45	18.특정부위의 탈장	대퇴탈장	K41
		배꼽탈장	K42
		복벽탈장	K43
		횡격막탈장	K44
		기타 복부탈장	K45
		상세불명의 복부탈장	K46
	19.특정장질환	장의 혈관장애	K55
		탈장이 없는 마비성 장폐쇄증 및 장폐쇄	K56
		장의 게실병	K57
N46	20.급성 기관지염	급성 기관지염	J20
	21.급성 세기관지염	급성 세기관지염	J21
	22.상세불명의 급성하기도감염	상세불명의 급성하기도 감염	J22
	23.성인호흡곤란 증후군	성인호흡곤란증후군	J80
	24.폐부종	폐부종	J81
	25.특정호흡기질환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	J82
		기타 간질성 폐질환	J84
	26.다한증	다한증	R61
	27.마비	편마비	G81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	G82
		기타 마비증후군	G83
	28.부갑상선기능 질환	부갑상선기능저하증	E20
		부갑상선기능항진증 및 부갑상선의 기타 장애	E21
	29.비장질환	비장의 질환	D73
	30.수면무호흡증	수면무호흡	G47.3
	31.용혈-요독증후군 (헴버거병)	용혈-요독증후군	D59.3
	32.장의 특정기타질환	장의 농양	K63.0
		장의 천공(비외상성)	K63.1
		장의 누공	K63.2
		장의 궤양	K63.3
	33.장흡수장애	장흡수장애	K90
	34.전신결합 조직장애	결절성 다발동맥염 및 관련 병태	M30
		기타 괴사성 혈관병증	M31
	35.주침샘의 양성신생물	주침샘의 양성신생물	D11
	36.침샘질환	침샘의 질환	K11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37.확인된 동물매개 또는 범유행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확인된 동물매개 또는 범유행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J09
38.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J10
39.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인플루엔자		J11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01-3】 31대특정질병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다1	1.심장질환	급성 류마티스열	I00~I02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I05~I09
		허혈심장질환	I20~I25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I28
		기타형태의 심장병	I30~I52
		- 수막알균성 심장막염(I32.0*)	A39.5+
		- 수막알균성 심내막염(I39.8*)	
		- 수막알균성 심근염(I41.0*)	
		- 수막알균성 심장염 NOS(I52.0*)	
		칸디다심내막염(I39.8*)	B37.6+
	2.뇌혈관질환	뇌혈관 질환 (고혈압성 뇌병증 제외)	I60~I69 (I67.4 제외)
	3.간질환	바이러스 감염	B15~B19
		간의 질환	K70~K77
		-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K77.0*)	B25.1+
		- 톡소포자충간염(K77.0*)	B58.1+
	4.위.십이지장 궤양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상세불명부위의 소화성궤양	K25~K27
	5.동맥경화증	죽상경화증	I70
	6.만성하부 호흡기질환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J40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기관지염	J41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J42
		천식	J45
		천식지속상태	J46
	7.폐렴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 폐렴	J12
		폐렴연쇄알균에 의한 폐렴	J13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J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J1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J1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J17
		-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J17.1*)	B25.0+
		- 폐렴이 합병된 홍역(J17.1*)	B05.2+
		- 수두 폐렴(J17.1*)	B01.2+
		- 폐 톡소포자충증(J17.3*)	B58.3+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J18
		재향군인병	A48.1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다2	8. 녹내장	폐렴이 합병된 홍역	B05.2
		녹내장	H4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	H42
	9. 황반변성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H35.3
	10. 결핵	결핵	A15~A19
		- 결핵 관절염(A18.01+)	M01.1*
		- 척추의 결핵(A18.00+)	M49.0*
		- 뼈의 결핵(A18.02+)	M90.0*
		- 결핵성 방광염(A18.11+)	N33.0*
		- 여성생식기관의 결핵(A18.17+)	N74.0*, N74.1*
		- 결핵성 복막염(A18.30+)	K67.3*
		- 장, 복막 및 장간막림프절의 결핵성 장애(A18.3-+)	K93.0*
		결핵의 후유증	B90
	11. 신부전	신부전	N17~N19
다2	12. 급성체장염	급성 체장염	K85
	13. 다발경화증	다발경화증	G35
	14. 대동맥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I71
	15.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G90
	16.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질환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염	G00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수막염	G01
		- 리스테리아수막염(G01*)	A32.1+
		- 수막알균수막염(G01*)	A39.0+
		- 결핵성 수막염(G01*)	A17.0+
		달리 분류된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에서 의 수막염	G02
		- 아데노바이러스수막염(G02.0*)	A87.1+
		- 엔테로바이러스수막염(G02.0*)	A87.0+
		- 헤르페스바이러스수막염(G02.0*)	B00.3+
		- 수막염이 합병된 홍역(G02.0*)	B05.1+
		- 볼거리수막염(G02.0*)	B26.1+
		- 풍진수막염(G02.0*)	B06.0+
		- 수두수막염(G02.0*)	B01.0+
		- 대상포진수막염(G02.0*)	B02.1+
		- 칸디다수막염(G02.1*)	B37.5+
		- 콕시디오이데스진균수막염(G02.1*)	B38.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수막염	G03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 수염	G05
		- 결핵성 수막뇌염(G05.0*)	A17.81+
		- 리스테리아수막뇌염(G05.0*)	A32.1+
		- 아데노바이러스뇌염(G05.1*)	A85.1+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 엔테로바이러스뇌염(G05.1*)	A85.0+		
		-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G05.1*)	B00.4+		
		- 뇌염이 합병된 홍역(G05.1*)	B05.0+		
		- 볼거리뇌염(G05.1*)	B26.2+		
		- 풍진 뇌염 및 풍진 수막뇌염(G05.1*)	B06.0+		
		- 수두뇌염(G05.1*)	B01.1+		
		- 대상포진뇌염(G05.1*)	B02.0+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G0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두 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G07		
		- 아메바성 뇌농양(G07*)	A06.6+		
		- 수막결핵종(G07*)	A17.1+		
		- 뇌 및 척수의 결핵종(G07*)	A17.80+		
		- 기타 신경계통의 결핵(G07*)	A17.88+		
		두개내 및 척추내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G08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의 후유증	G09		
	17.체장질환	체장의 기타 질환	K8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담낭 담도 및 체장의 장애	K87		
		- 거대세포바이러스체장염(K87.1*)	B25.2+		
		- 볼거리체장염(K87.1*)	B26.3+		
	18.파킨슨병	파킨슨병	G20		
		이차성 파킨슨증	G21		
	19.패혈증	연쇄알균패혈증	A40		
		기타 패혈증	A41		
	20.폐질환	폐기종	J43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J44		
		기관지확장증	J47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J85~J86		
		흉막의 기타 질환	J90~J94		
	다1	21.당뇨병질환	당뇨병 질환	1형 당뇨병	E10
				2형 당뇨병	E11
				영양실조 관련 당뇨병	E12
				기타명시된 당뇨병	E13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
당뇨병성 합병증			당뇨병성단일신경병증	G59.0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G63.2	
			당뇨병성 백내장	H28.0	
			당뇨병성 망막병증	H36.0	
			당뇨병성 관절병증	M14.2	
당뇨병에서의사구체장애		N08.3			
22.고혈압질환		고혈압성 질환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고혈압성 심장병	I11	
			고혈압성 신장병	I12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고혈압성 합병증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I13
			이차성 고혈압	I15
			고혈압성 뇌병증	I67.4
			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변화 주) H35.0(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변화)중 고혈압성 망막병증에 한함	H35.0 ^{주)}
다5	23.기타 동맥류 박리	기타 동맥류 및 박리		I72
	24.뇌성마비	뇌성마비		G80
	25.뇌전증	뇌전증		G40
		뇌전증지속상태		G41
	26.버거씨병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I73.1
	27.수두증	수두증		G91
	28.위공장궤양	위공장궤양		K28
	29.조로증	조로증		E34.8
	30.크로이츠펠트-야콥병	크로이츠펠트-야콥병		A81.0
	31.뇌의 특정염증성질환	뇌의 특정염증성질환		A83~A86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4. 당뇨병질환(E10~E14)에는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음(자세한 내용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참고)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01-4】 16대특정질병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라1	1.생식기의 양성종양	자궁의 평활근종	D25
		자궁의 기타 양성 신생물	D26
		난소의 양성 신생물	D2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D28
		남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D29
	2.특정누적외상성질환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범	M35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각막염 및 각막결막염(M35.0+)	H19.3*
		경추상완증후군	M53.1
라2	3.근육장애	기타 연조직장애	M70~M79 (M74,M75, M78 제외)
	4.어깨병변	근염	M60
		근육의 석회화 및 골화	M61
		근육의 기타 장애	M62
	5.윤활막 및 힘줄장애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근육장애	M63
		어깨병변	M75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M65
		윤활막 및 힘줄의 자연파열	M66
		윤활막 및 힘줄의 기타 장애	M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윤활막 및 힘줄의 장애	M68
라3	6.눈 및 눈부속기관의 특정질환	- 기타 관절의 결핵(M68.0*)	A18.08+
		공막 각막 홍채 및 섬모체의장애	H15~H19
		- 결핵성 상공막염(H19.0*)	A18.5+
		- 결핵성 간질각막염(H19.2*)	
		- 결핵성 각막결막염(간질성, 플릭텐성)(H19.2*)	
		- 각막염(H19.1*)	
		- 각막결막염(H19.1*)	B00.51+
		- 각막상피염(H19.1*)	
		- 간질각막염(H19.1*)	
		- 각막내피염(H19.1*)	
		-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각막결막염(H19.2*)	B30.0+
		- 유행성 각막결막염(H19.2*)	
		- 조션소눈병(H19.2*)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공막 각막 홍채 및 섬모체의장애	H20~H22
		- 결핵성 홍채섬모체염(H22.0*)	A18.5+
		- 홍채섬모체염(H22.0*)	B00.50+
		- 홍채염(H22.0*)	
		- 전방포도막염(H22.0*)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H30~H35
		- 결핵성 맥락망막염(H32.0*)	A18.5+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제외)	(H35.3 제외)
		(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변화 제외) 주) H35.0(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변화) 중 고혈압성 망막병증에 한함	(H35.0 ^{주)} 제외)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H36
		(당뇨병성 망막병증 제외)	(H36.0 제외)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H46~H48
라4	7.갑상선암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3
	8.위암	위의 악성 신생물	C16
	9.기관지 및 폐암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C34
	10.간암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C22
	11.난소암	난소의 악성 신생물	C56
라5	12.눈꺼풀의 기타 염증	눈꺼풀의 기타 염증	H01
	13.호흡계통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처치후 호흡장애	J95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호흡부전	J96
		기타 호흡장애	J9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호흡장애	J99
		(류마티스폐질환 제외)	J99.0제외
	14.눈꺼풀의 기타 장애	눈꺼풀의 기타 장애	H02
	15.시각장애 및 실명	시각장애	H53
		실명을 포함한 시력장애(양안의 또는 단안의)	H54
	16.눈 및 눈부속기의 기타 장애	안진 및 기타 불규칙적 눈운동	H55
		눈 및 눈부속기의 기타 장애	H5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눈 및 눈부속기의 기타 장애	H58
		달리 분류되지 않은 눈 및 눈부속기의 처치 후 장애	H59
		(눈 및 눈부속기의 기타 처치후 장애 제외)	H59.8제외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
형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01-5】 다빈도4대질병 II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마1	1.유방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양성 신생물	D24
	2.유방의 장애	양성 유방형성이상	N60
		유방의 염증성 장애	N61
		유방의 비대	N62
		유방의 상세불명의 덩이	N63
		유방의 기타 장애	N64
	3.후각 특정질환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J30
		만성비염 비인두염 및 인두염	J31
		코용종	J33
		코 및 비동의 기타장애	J34
	4.감상선 질환	감상선의 장애	E00~E07
		- 감상선이상성 안구돌출(E05.0+)	H06.2*
		처치후 감상선기능저하증	E89.0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01-6】 24대특정질병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바1	1.골수염	골수염	M86
	2.기타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기타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I82
	3.다낭성 난소증후군	다낭성 난소증후군	E28.2
	4.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I74
		동맥 및 세동맥의 기타 장애	I77
	5.림프절염	비특이성 림프절염	I88
		림프관 및 림프절의 기타 비감염성 장애	I89
	6.뼈의 기타장애	뼈의 기타장애	M89
	7.뼈의 파절병	뼈의 파절병(변형성 골염)	M88
	8.식도정맥류	식도정맥류	I85
	9.안구의 장애	안구의 장애	H44
	10.안와장애	안와의 장애	H05
	11.요도결석증	요도결석	N21.1
		기타 하부요로결석	N21.8
		상세불명의 하부요로결석	N21.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로의 결석	N22*
	12.전신결합조직장애Ⅱ	전신홍반루푸스	M32
		피부다발근염	M33
		전신경화증	M34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제외)	M32.1제외
	13.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I80
	14.중증근무력증	중증근무력증 및 기타 근신경장애	G70
바2	15.직장 및 항문관련질환	항문 및 직장부위의 열창 및 누공	K60
		항문 및 직장부위의 농양	K61
		항문 및 직장의 기타 질환	K62
바3	16.과민대장증후군	과민대장증후군	K58
	17.대상포진	대상포진	B02
		(대상포진뇌염 제외)	(B02.0 제외)
		(대상포진수막염 제외)	(B02.1 제외)
	18.신장 및 요관의 결석	신장 및 요관의 결석	N20
바4	19.하지정맥류 및 특정정맥합병증	하지의 정맥류	I83
		임신중 하지의 정맥류성 정맥	O22.0
		산후기중 기타 정맥합병증	O87.8
바5	20.골괴사증	골괴사	M87
	21.눈 및 부속기양성신 생물	눈 및 부속기의 양성신 생물	D31
	22.연골병증	연골병증	M91~M94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23.유리체의 장애	유리체의 장애	H43
24.음낭정맥류	음낭정맥류	I86.1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02】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 시술 코드	수술 시술 종류
간 이식	1. 간 이식	A010	8
폐 이식	2. 폐 이식	A020	8
심장 이식	3. 심장 이식	A030	8
장 이식	4. 췌장 이식	A040	8
소장 이식	5. 소장 이식	A050	8
조혈모세포 이식	6. 조혈모세포 이식, 동종이식	A061	8
	7. 조혈모세포 이식, 자가이식	A062	8
신장 이식	8. 신장 이식	A070	8
체외순환막형산화 요법(ECMO), 개심술미동반	9.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개심술 미동반	A080	5
기관절개술	10.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장애의 경우), 인공호흡기 장기 사용	A091	1
	11.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장애의 경우), 인공호흡기 단기 사용	A092	1
	12.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장애의 경우), 인공호흡기 미사용	A093	1
	13.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장애 제외), 인공호흡기 장기 사용	A094	1
	14.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장애 제외), 인공호흡기 단기 사용	A095	1
	15.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장애 제외), 인공호흡기 미사용	A096	1
사지 이식	16. 사지 이식	A100	8
뇌동맥류수술	17. 복잡 뇌동맥류 수술(뇌졸중 동반)	B011	8
	18. 단순 뇌동맥류 수술(뇌졸중 동반)	B012	8
	19. 복잡 뇌동맥류 수술(뇌졸중 미동반)	B013	8
	20. 단순 뇌동맥류 수술(뇌졸중 미동반)	B014	8
	21. 뇌동맥류 색전술(뇌졸중 동반)	B015	6
	22. 뇌동맥류 색전술(뇌졸중 미동반)	B016	6
	23. 뇌동맥류 복합 수술(뇌졸중 동반)	B017	8
	24. 뇌동맥류 복합 색전술(뇌졸중 동반)	B018	6
뇌혈관수술	25. 두개내 혈관 수술(뇌졸중 동반)	B021	8
	26. 두개내 혈관 수술(뇌졸중 미동반)	B022	8
	27. 뇌신경계 혈관기형 및 동정맥루 색전술(뇌졸중 동반)	B023	6
	28. 뇌신경계 혈관기형 및 동정맥루 색전술(뇌졸중 미동반)	B024	6
	29. 경피적 뇌혈관 수술(협착·폐쇄 및 혈전제거 동시의 경우)	B025	6
	30. 경피적 뇌혈관 수술(협착 및 폐쇄의 경우)	B026	6
	31. 경피적 뇌혈관 수술(혈전제거의 경우)	B027	6

혈중제거술 및 기타개두술(외상제외)	32. 혈중제거술(외상 제외)	B031	8
	33. 두개내 감압술(외상 제외)	B032	8
	34. 두개골 성형술(외상 제외)	B033	8
두개외 혈관수술	35. 두개외 혈관수술(뇌졸중 동반)	B041	4
	36. 두개외 혈관수술(뇌졸중 미동반)	B042	4
	37. 경피적 두개외 혈관수술	B043	4
뇌기저부 수술	38. 뇌기저부 수술	B050	8
뇌종양 절제술	39. 복잡 천막상부 종양절제술	B061	8
	40. 단순 천막상부 종양절제술	B062	8
	41. 복잡 천막하부 종양절제술	B063	8
	42. 단순 천막하부 종양절제술	B064	8
	43. 경피적 뇌신경계 종양 수술	B065	6
	44. 경비적 뇌하수체 종양 절제술	B066	8
신경계 신경자극기 설치술	45. 신경계 신경자극기 설치술	B070	7
뇌전증 수술	46. 뇌전증 수술(전극삽입술 시행)	B081	7
	47. 뇌전증 수술(전극삽입술 미시행)	B082	7
정위수술	48. 중추신경계 정위수술(뇌종양 및 기타 병소발생술)	B091	6
	49. 중추신경계 정위수술(두개내출혈)	B092	6
	50. 뇌정위 방사선 수술(두개내출혈 및 뇌혈관기형)	B093	6
	51. 뇌정위 방사선 수술(양성 뇌종양)	B094	6
	52. 뇌정위 방사선 수술(기타)	B095	6
	53. 중추신경계 체부 정위 방사선 수술	B096	6
뇌신경 수술	54. 뇌신경 수술	B100	6
뇌척수액 우회로조성술	55. 뇌척수액 우회로조성술	B110	4
외상 개두술	56. 혈중제거술(외상관련), 경막외 출혈	B121	7
	57. 혈중제거술(외상관련), 경막하 출혈	B122	7
	58. 혈중제거술(외상관련), 기타 뇌내 출혈	B123	7
	59. 두개내 감압술(외상관련)	B124	8
	60. 두개골 성형술(외상관련)	B125	8
기타 개두술	61. 기타 개두술	B130	7
천두술	62. 천두술(경막하 또는 경막외)	B141	4
	63. 천두술(뇌내)	B142	4
	64. 천두술(기타)	B143	4
척추강내 병소절제술	65. 척수내 종양절제술	B151	6
	66. 척추강내 병소절제술(척수병증 동반)	B152	6
	67. 척추강내 병소절제술(척수병증 미동반)	B153	6
	68. 척추강내 병소절제술(척추고정술 동반)	B154	6
척추변형 척추고정술	69. 청소년기 척추변형 척추고정술	B161	5
	70. 성인기 척추변형 척추고정술(감압술 동반)	B162	5
	71. 성인기 척추변형 척추고정술(감압술 미동반)	B163	5

기타 척추 수술	72. 척추고정술(척수병증 동반)	B171	4
	73. 척추고정술(척수병증 미동반)	B172	4
	74. 척추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척수병증 동반)	B173	2
	75. 척추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척수병증 미동반)	B174	2
	76. 기타 척추 수술(척수병증 동반)	B175	1
	77. 기타 척추 수술(척수병증 미동반)	B176	1
척추 중재시술	78. 척추 중재시술(뼈에 시행한 경우)	B181	1
	79. 척추 중재시술(신경에 시행한 경우)	B182	1
신경절제술 및 척추강내 약물주입 펌프이식술	80. 척추신경자극기 및 약물주입 펌프의 설치술 또는 교환술	B191	3
	81. 척추신경자극기 및 약물주입 펌프의 시험적 거치술 또는 제거술	B192	1
기타 신경계수술	82. 주요 말초 및 뇌 신경 수술	B201	1
	83. 기타 말초 및 뇌 신경 수술	B202	1
	84. 수근관 이완술	B203	1
	85. 기타 근육, 건 및 인대 이완술	B204	1
	86. 기타 신경계 수술	B205	1
복잡 척추수술	87. 복잡 척추고정술	B211	4
	88. 복잡 척추후궁절제술	B212	2
안부 관통상 수술	89. 복잡 안부 관통상 수술	C011	1
	90. 전안부 관통상 수술(수정체 수술 동반)	C012	1
	91. 전안부 관통상 수술(수정체 수술 미동반)	C013	1
	92. 후안부 관통상 수술	C014	1
안와 수술	93. 복잡 안와 수술, 한쪽	C021	2
	94. 복잡 안와 수술, 양쪽	C022	2
	95. 단순 안와 수술	C023	2
안구 수술 (종양 수술 포함)	96. 안구 수술(종양 수술 포함)	C030	2
망막 및 유리체 수술	97. 망막 및 유리체 수술 (망막주위막 제거술 동반, 수정체 수술 동반)	C043	2
	98. 망막 및 유리체 수술 (망막주위막 제거술 동반, 수정체 수술 미동반)	C044	2
	99. 망막 및 유리체 수술 (망막주위막 제거술 미동반, 수정체 수술 동반)	C045	2
	100. 망막 및 유리체 수술 (망막주위막 제거술 미동반, 수정체 수술 미동반)	C046	2
안구 표면재건술	101. 주요 각막이식술	C051	2
	102. 기타 각막이식술	C052	2
	103. 공막 및 각막윤부이식술	C053	2
수정체 소절개 수술 (유리체 절제술 유 무와 무관)	104. 주요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한쪽	C061	1
	105. 기타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한쪽	C062	1
	106. 주요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쪽	C063	1
	107. 기타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쪽	C064	1
수정체 대절개 수술 (유리체 절제술 유 무와 무관)	108. 주요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한쪽	C071	1
	109. 기타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한쪽	C072	1
	110.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쪽	C073	1
후발성 백내장 수술	111. 후발성 백내장 수술	C080	1

녹내장 수술	112. 복잡 녹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동반)	C091	2
	113. 복잡 녹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미동반)	C092	2
	114. 단순 녹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동반)	C093	2
	115. 단순 녹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미동반)	C094	2
기타 안구내 수술	116. 기타 주요 안구내 수술	C101	1
	117. 기타 단순 안구내 수술	C102	1
사시 수술	118. 복잡 사시 수술	C111	1
	119. 단순 사시 수술	C112	1
안검 수술	120. 복잡 안검 수술, 제1형	C121	1
	121. 복잡 안검 수술, 제2형	C122	1
	122. 복잡 안검 수술, 제3형	C123	1
	123. 주요 안검 수술, 제1형	C124	1
	124. 주요 안검 수술, 제2형	C125	1
	125. 주요 안검 수술, 제3형	C126	1
	126. 기타 안검 수술	C127	1
눈물길 수술	127. 복잡 눈물길 수술	C131	1
	128. 주요 눈물길 수술, 한쪽	C132	1
	129. 주요 눈물길 수술, 양쪽	C133	1
	130. 기타 눈물길 수술(경비내시경 포함), 단안	C135	1
	131. 기타 눈물길 수술(경비내시경 포함), 양안	C136	1
결막 수술	132. 결막낭 재건술	C141	1
	133. 복잡 결막 수술	C142	1
	134. 단순 결막 수술	C143	1
기타 안구외수술	135. 기타 안구외 수술	C150	1
내이 수술	136. 귀 이식술	D011	5
	137. 주요 내이 수술	D012	3
	138. 단순 내이 수술	D013	2
중이 및 유양돌기 수술	139. 고실유양돌기 수술	D021	2
	140. 유양돌기 수술	D022	2
	141. 고실 수술	D023	2
	142. 이소골 재건술	D024	2
	143. 등골수술	D025	2
	144. 환기관삽입 고막절개술	D026	2
외이 및 귀 수술	145. 주요 외이 및 귀 수술	D031	1
	146. 단순 외이 및 귀 수술	D032	1
귀 및 코의 악성종양 수술	147. 귀 및 두개저 악성종양 수술	D041	7
	148. 비강, 부비동, 비인강 악성종양	D042	7
부비동개방 수술	149. 부비동 개방 수술(한 개, 한쪽)	D051	1
	150. 부비동 개방 수술(한 개, 양쪽)	D052	1
	151. 부비동 개방 수술(여러 개, 한쪽)	D053	1
	152. 부비동 개방 수술(여러 개, 양쪽)	D054	1

내시경을 이용한 부비동 수술	153. 내시경을 이용한 부비동 수술(한 개, 한쪽)	D061	1
	154. 내시경을 이용한 부비동 수술(한 개, 양쪽)	D062	1
	155. 내시경을 이용한 부비동 수술(여러 개, 한쪽)	D065	1
	156. 복잡 내시경을 이용한 부비동 수술(여러 개, 한쪽)	D066	1
	157. 내시경을 이용한 부비동 수술(여러 개, 양쪽)	D067	1
	158. 복잡 내시경을 이용한 부비동 수술(여러 개, 양쪽)	D068	1
코 수술	159. 주요 코 수술	D081	1
	160. 비중격 및 비갑개수술	D082	1
	161. 단순 코 수술	D083	1
구강 및 타액선 악성종양 수술	162. 구강 및 타액선 악성종양 수술	D090	7
후두 및 인두 악성종양 수술	163. 주요 후두 및 인두 악성종양 수술(경동맥소체 포함)	D101	7
	164. 단순 후두 및 인두 악성종양 수술	D102	7
경부림프절절제술	165. 경부림프절절제술, 한쪽	D111	4
	166. 경부림프절절제술, 양쪽	D112	4
안면골 수술	167. 악관절 수술	D121	2
	168. 주요 안면골 수술	D122	2
	169. 단순 안면골 수술	D123	2
두경부 재건술	170. 두경부 재건술	D130	2
타액선 수술	171. 이하선수술	D141	2
	172. 악하선 및 설하선 수술	D142	2
	173. 기타 타액선 수술	D143	1
	174. 타석제거술	D144	1
경부 수술	175. 경부 수술	D150	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176. 주요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D161	1
	177. 단순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D162	1
구강, 인후두 수술	178. 주요 구강 및 인두, 후두 수술	D171	1
	179. 단순 구강 및 인두, 후두 수술	D172	1
기타 이비인후, 구강 질환 수술	180. 기타 이비인후, 구강질환 수술	D200	1
주요 흉부 수술	181. 기관 및 기관지 수술	E011	7
	182. 주요 폐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E012	7
	183. 주요 폐 수술(악성종양 제외)	E013	7
	184. 기타 폐 수술	E014	7
	185. 종격동 수술	E015	7
	186. 주요 흉곽 수술	E016	7
	187. 기타 흉곽 수술	E017	3
	188. 흉강경을 이용한 주요 수술	E018	7
	189. 흉강경을 이용한 기타 수술	E019	7
기관지경 및 방사선하 수술	190. 기관지경 및 방사선하 수술	E020	2
기타 호흡기계 수술	191. 수면무호흡증후군 수술	E032	1
	192. 호흡기계 기타 단순 수술	E033	1
	193. 기타 호흡기계 수술	E034	1
폐농양 배액술	194. 폐농양 배액술	E520	1
흉막삼출 배액술	195. 흉막삼출 배액술	E530	1

자동체내제세동기 시술	196. 자동체내제세동기 설치술 또는 제거술	F011	5
	197. 자동체내제세동기 교정술	F012	5
심장판막 수술 (심도자술 사용)	198. 대동맥판 수술(심도자술 사용)	F021	8
	199. 승모판 또는 삼첨판 수술(심도자술 사용)	F022	8
	200. 폐동맥판 수술(심도자술 사용)	F023	8
심장판막 수술 (심도자술 미사용)	201. 대동맥판 수술(심도자술 미사용)	F031	8
	202. 승모판 또는 삼첨판 수술(심도자술 미사용)	F032	8
	203. 폐동맥판 수술(심도자술 미사용)	F033	8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	204.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 (심도자술 사용, 인공심장폐장치 사용)	F041	8
	205.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 (심도자술 미사용, 인공심장폐장치 사용)	F042	8
	206.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 (심도자술 사용, 인공심장폐장치 미사용)	F043	8
	207.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 (심도자술 미사용, 인공심장폐장치 미사용)	F044	8
기타 심흉부 수술	208. 기타 심흉부 수술(인공심장폐장치 사용)	F053	7
	209. 기타 심흉부 수술(인공심장폐장치 미사용)	F054	5
주요 혈관복구 수술(인공심장폐장 치 사용)	210. 파열 동맥류 또는 대동맥 축착 교정술 (인공심장폐장치 사용)	F061	8
	211. 비파열 동맥류 또는 대동맥 축착 교정술 (인공심장폐장치 사용)	F062	8
	212. 기타 주요 혈관복구 수술(인공심장폐장치 사용)	F063	8
주요 혈관복구 수술(인공심장폐장 치 미사용)	213. 파열 동맥류 또는 대동맥 축착 교정술 (인공심장폐장치 미사용)	F071	8
	214. 비파열 동맥류 또는 대동맥 축착 교정술 (인공심장폐장치 미사용)	F072	8
	215. 기타 주요 혈관복구 수술(인공심장폐장치 미사용)	F073	7
대동맥 경피적 수술	216. 복부대동맥 및 장골동맥류 경피적 수술(파열 미동반)	F081	4
	217. 복부대동맥 및 장골동맥류 경피적 수술(파열 동반)	F082	4
	218. 흉부대동맥류 경피적 수술	F083	4
	219. 대동맥박리 경피적 수술	F084	4
정맥 및 대정맥 경피적 수술	220. 심부정맥혈전증 경피적 수술	F091	4
	221. 대정맥 필터설치를 위한 경피적 수술	F092	4
경도관 심장결손 폐쇄술	222. 경도관 심방중격결손 폐쇄술	F101	4
	223. 경도관 동맥관개존증 폐쇄술	F102	4
	224. 기타 경도관 심장 결손 폐쇄술	F103	4
급성 심근경색증의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심각한 합병증 동반)	225. 급성 심근경색증의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 (심각한 합병증 동반, 단일혈관)	F111	4
	226. 급성 심근경색증의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 (심각한 합병증 동반, 다발혈관)	F112	4
급성 심근경색증의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심각한 합병증 미동반)	227. 급성 심근경색증의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 (심각한 합병증 미동반, 단일혈관)	F121	4
	228. 급성 심근경색증의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 (심각한 합병증 미동반, 다발혈관)	F122	4

급성 심근경색증이 아닌 기타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	229. 급성 심근경색증이 아닌 기타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 (단일혈관, 만성폐쇄성병변의 경우 제외)	F133	4
	230. 급성 심근경색증이 아닌 기타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 (단일혈관, 만성폐쇄성병변의 경우 포함)	F134	4
	231. 급성 심근경색증이 아닌 기타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 (다발혈관, 만성폐쇄성병변의 경우 제외)	F135	4
	232. 급성 심근경색증이 아닌 기타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 (다발혈관, 만성폐쇄성병변의 경우 포함)	F136	4
부정맥의 경피적 수술(3차원 지도화 기능 포함)	233. 심실빈맥 전극도자 절제술(3차원 지도화 기능 포함)	F141	4
	234. 심방세동 전극도자 절제술(3차원 지도화 기능 포함)	F142	4
	235. 발작성 심실상빈맥 및 심방조동 전극도자 절제술 (3차원 지도화 기능 포함)	F143	4
부정맥의 경피적 수술(3차원 지도화 기능 미포함)	236. 심실빈맥 전극도자 절제술(3차원 지도화 기능 미포함)	F151	4
	237. 심방세동 전극도자 절제술(3차원 지도화 기능 미포함)	F152	4
	238. 발작성 심실상빈맥 및 심방조동 전극도자 절제술 (3차원 지도화 기능 미포함)	F153	4
경피적 풍선 판막성형술	239. 경피적 승모판 풍선 판막성형술	F161	4
	240. 경피적 대동맥 또는 폐동맥 풍선 판막성형술	F162	4
혈관 기형의 경피적 수술	241. 동정맥 기형의 경피적 색전술(두경부 제외)	F181	4
	242. 관상동맥 및 폐동맥 기형의 경피적 색전술(두경부 제외)	F182	4
말초동맥의 경피적 수술	243. 말초동맥 색전증 및 혈전증의 경피적 수술	F192	4
	244. 말초동맥 동맥류 및 박리의 경피적 수술	F193	4
	245. 말초동맥 만성 폐쇄성 질환의 경피적 수술, 여러 개	F194	4
	246. 말초동맥 만성 폐쇄성 질환의 경피적 수술, 한 개	F195	4
기타 경피적 심혈관 수술	247. 기타 경피적 심혈관 수술	F200	4
체내 심박조율기 설치술(급성 심근경색증, 심부전, 쇼크의 경우)	248. 영구적 심박조율기 설치술	F211	5
	249. 영구적 심박조율기 교환술	F212	5
	250. 심박조율기 제거 및 전환술	F213	1
기타 혈관 복구 수술	251. 기타 혈관 복구 수술	F220	2
순환 장애 절단술(수족부 제외)	252. 순환 장애 절단술(수족부 제외)	F230	7
순환 장애 수족부 절단술	253. 순환 장애 수족부 절단술	F240	3
정맥 결찰 및 스트리핑	254. 정맥류 광범위 절제술(여러 개)	F253	1
	255. 정맥류 광범위 절제술(한 개)	F254	1
	256. 정맥류 국소 절제술	F252	1
기타 순환기계 수술	257. 기타 순환기계 수술	F260	1
식도 수술	258. 식도 악성종양 근치 수술 및 식도 재건술	G011	7
	259. 기타 주요 식도 수술	G012	5
	260. 기타 단순 식도 수술	G013	4
직장절제술(림프절 절제 동반)	261. 복강경을 이용한 직장절제술(림프절절제 동반)	G021	7
	262. 개복에 의한 직장절제술(림프절절제 동반)	G022	7

직장절제술(림프절 절제 미동반)	263. 복강경을 이용한 직장절제술(림프절절제 미동반)	G031	7
	264. 개복에 의한 직장절제술(림프절절제 미동반)	G032	7
경향문 및 경천골 접근 직장절제술	265. 경향문 및 경천골 접근 직장절제술(악성종양의 경우)	G041	7
	266. 경향문 및 경천골 접근 직장절제술(악성종양 제외)	G042	7
주요십이지장수술	267. 주요 십이지장 수술	G050	7
식도정맥류수술	268. 식도 정맥류 수술	G060	5
위전절제술	269. 복강경을 이용한 위전절제술	G071	7
	270. 개복에 의한 위전절제술	G072	7
위아전절제술	271. 복강경을 이용한 위아전절제술	G081	7
	272. 개복에 의한 위아전절제술	G082	7
기타 위절제술	273.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위절제술	G091	5
	274. 개복에 의한 기타 위절제술	G092	5
	275.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설상절제술	G093	5
	276. 개복에 의한 기타 설상절제술	G094	5
소화성 궤양 수술	277. 복강경을 이용한 소화성 궤양 수술	G101	4
	278. 개복에 의한 소화성 궤양 수술	G102	4
기타 위 및 식도 수술	279.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위 및 식도 수술	G111	4
	280. 개복에 의한 기타 위 및 식도 수술	G112	4
결장 및 직장 전 절제술	281. 복강경을 이용한 결장 및 직장 전 절제술	G121	7
	282. 개복에 의한 결장 및 직장 전 절제술	G122	7
결장절제술(림프절 절제 동반)	283. 복강경을 이용한 결장절제술(림프절절제 동반)	G131	7
	284. 개복에 의한 결장절제술(림프절절제 동반)	G132	7
결장절제술(림프절 절제 미동반)	285. 복강경을 이용한 결장절제술(림프절절제 미동반)	G141	5
	286. 개복에 의한 결장절제술(림프절절제 미동반)	G142	5
기타 대장 수술	287.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대장 수술	G151	4
	288. 개복에 의한 기타 대장 수술	G152	4
소장 및 장간막 수술	289. 복강경을 이용한 주요 소장 및 장간막 수술	G171	5
	290. 개복에 의한 주요 소장 및 장간막 수술	G172	5
	291. 장폐쇄 수술 및 기타 장 수술	G173	3
장루 수술	292. 장루 수술	G180	3
횡격막 탈장 수술	293. 횡격막 탈장 수술	G190	4
탈장 수술, 서혜 및 대퇴부 제외	294. 복강경을 이용한 탈장 수술, 서혜 및 대퇴부 제외(장절제 동반)	G201	1
	295. 개복에 의한 탈장 수술, 서혜 및 대퇴부 제외(장절제 동반)	G202	1
	296. 복강경을 이용한 탈장 수술, 서혜 및 대퇴부 제외(장절제 미동반)	G203	1
	297. 개복에 의한 탈장 수술, 서혜 및 대퇴부 제외(장절제 미동반)	G204	1
총수절제술	298. 복강경을 이용한 총수절제술(복잡 주진단의 경우)	G211	3
	299. 복강경을 이용한 총수절제술(복잡 주진단이 아닌 경우)	G212	3
	300. 개복에 의한 총수절제술(복잡 주진단의 경우)	G213	3
	301. 개복에 의한 총수절제술(복잡 주진단이 아닌 경우)	G214	3

재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302. 복강경을 이용한 재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한쪽	G221	1
	303. 복강경을 이용한 재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양쪽	G222	1
	304. 개복에 의한 재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한쪽	G223	1
	305. 개복에 의한 재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양쪽	G224	1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절제 동반)	306.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절제 동반)	G230	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절제 미동반)	307.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절제 미동반), 한쪽	G241	1
	308.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절제 미동반), 양쪽	G242	1
개복에 의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절제 미동반)	309. 개복에 의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장절제 미동반, 복잡 주진단의 경우), 한쪽	G251	1
	310. 개복에 의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장절제 미동반, 복잡 주진단이 아닌 경우), 한쪽	G252	1
	311. 개복에 의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절제 미동반), 양쪽	G253	1
복수 항문 수술	312. 복수 항문 수술	G260	1
치핵 수술	313. 주요 치핵 수술	G271	1
	314. 단순 치핵 수술	G272	1
항문 주위 농양 수술	315. 주요 항문 주위 농양 수술	G281	1
	316. 단순 항문 주위 농양 수술	G282	1
치루 수술	317. 주요 치루 수술	G291	1
	318. 단순 치루 수술	G292	1
치열 수술 및 항문협착증 수술	319. 치열 수술 및 항문협착증 수술	G300	1
경향문 및 질접근 수술	320. 직장 질루 수술	G311	1
	321. 직장 탈출증 수술 및 괄약근성형술(직장류교정술 포함)	G312	1
화농성한선염 수술	322. 화농성한선염 수술	G320	1
기타 소화기계 수술	323. 기타 소화기계 수술	G332	1
소화기계 질환의 혈관색전술	324. 소화기계 질환의 혈관색전술	G340	3
위내시경 시술	325. 위내시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의 경우)	G503	1
	326. 위내시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이 아닌 경우)	G504	1
	327. 위내시경 시술, 당일퇴원	G505	1
결장경 시술	328. 결장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의 경우)	G523	1
	329. 결장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이 아닌 경우)	G524	1
	330. 결장경 시술, 당일퇴원	G525	1
구불결장경 시술	331. 구불결장경 시술	G531	1
	332. 구불결장경 시술, 당일퇴원	G532	1

소화기 내시경 시술, 화학요법을 동반한 경우, 재원기간 2일 이상	333. 소화기 내시경 시술, 화학요법을 동반한 경우, 재원기간 2일 이상	G540	1
소장내시경 시술	334. 소장내시경 시술	G550	1
소화관 협착을 위한 방사선하 시술	335. 소화관 협착을 위한 방사선하 시술	G560	2
소화기계 질환의 경피적 배액술	336. 소화기계 질환의 경피적 배액술	G570	2
간담도췌장 복합수술	337. 간담도췌장 복합수술	H010	7
간담도 복합수술	338. 주요 간담도 복합수술	H021	7
	339. 기타 간담도 복합수술	H022	5
담도췌장 복합수술	340. 담도췌장 복합수술	H030	7
간 절제술	341. 복강경을 이용한 주요 간 절제술	H041	7
	342. 개복에 의한 주요 간 절제술	H042	7
	343.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간 절제술	H043	5
	344. 개복에 의한 기타 간 절제술	H044	5
간 수술	345. 복강경을 이용한 간 수술	H051	4
	346. 개복에 의한 간 수술	H052	4
간담도계 질환 치료를 위한 단락술	347. 간담도계 질환 치료를 위한 단락술	H060	4
담도 절제술(림프절 절제 동반)	348. 복강경을 이용한 담도 절제술(림프절 절제 동반)	H071	7
	349. 개복에 의한 담도 절제술(림프절 절제 동반)	H072	7
담도 절제술(림프절 절제 미동반)	350. 복강경을 이용한 담도 절제술(림프절 절제 미동반)	H081	5
	351. 개복에 의한 담도 절제술(림프절 절제 미동반)	H082	5
주요 담도 수술	352. 복강경을 이용한 주요 담도 수술	H091	5
	353. 개복에 의한 주요 담도 수술	H092	5
담낭절제술	354.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및 경피적담낭조루술 동반)	H101	4
	355. 개복에 의한 담낭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및 경피적담낭조루술 동반)	H102	4
	356.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동반)	H103	4
	357. 개복에 의한 담낭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동반)	H104	4
	358.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경피적담낭조루술 동반)	H105	4
	359. 개복에 의한 담낭절제술(경피적담낭조루술 동반)	H106	4
	360.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및 경피적담낭조루술 미동반)	H107	4
	361. 개복에 의한 담낭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및 경피적담낭조루술 미동반)	H108	4
췌장절제술	362. 복강경을 이용한 췌장절제술	H111	7
	363. 개복에 의한 췌장절제술	H112	7

체장 수술	364. 복강경을 이용한 체장 수술	H121	4
	365. 개복에 의한 체장 수술	H122	4
기타 간담도 및 체장 시술	366. 역행성담체관내시경 시술	H142	3
	367. 담석 제거를 위한 체외충격파쇄석술	H143	1
	368. 기타 간담도 및 체장 수술	H144	3
	369. 경피적 담관경 시술	H145	3
	370. 경피적 담관 시술	H146	3
간담도 및 체장의 경피적 시술	371. 경피적 혈관 시술(간의 악성종양 제외)	H152	3
	372. 담도협착을 위한 경피적 시술	H154	3
	373. 담석제거를 위한 경피적 시술	H155	3
	374. 경피적 혈관 시술(간의 악성종양의 경우), 소작술 동반	H156	6
	375. 경피적 혈관 시술(간의 악성종양의 경우), 소작술 미동반	H157	6
출혈성 정맥류에 대한 내시경 시술	376. 출혈성 정맥류에 대한 내시경 시술	H500	1
간암의 경피적 치료술	377. 간암의 경피적 치료술	H510	6
간담도 및 체장 질환의 경피적 배액술	378. 간담도 및 체장 질환의 경피적 배액술	H520	3
양쪽 또는 복수 주요 관절 수술	379. 양쪽 또는 복수 주요 관절 수술(치환술의 경우)	I011	4
	380. 양쪽 또는 복수 주요 관절 수술(치환술 제외)	I012	3
고관절 재치환술 및 치환술	381. 고관절 전재치환술	I021	4
	382. 고관절 전치환술	I022	4
	383. 고관절 부분치환술	I023	4
슬관절 재치환술 및 치환술	384. 슬관절 전재치환술	I031	3
	385. 슬관절 전치환술	I032	3
	386. 슬관절 부분치환술	I033	3
기타 관절 재치환술 및 치환술	387. 기타 관절 전재치환술	I041	2
	388. 기타 관절 전치환술	I042	2
	389. 기타 관절 부분치환술	I043	2
	390. 인공관절삽입물 제거술	I044	2
혈관부착 골피부판 이식 및 사지 재접합술	391. 혈관부착 골피부판 이식 및 사지 재접합술	I050	4
척추강내 병소절제술	392. 척추내 종양절제술	I061	6
	393. 척추강내 병소절제술(척수병증 동반)	I062	6
	394. 척추강내 병소절제술(척수병증 미동반)	I063	6
	395. 척추강내 병소절제술(척추고정술 동반)	I064	6
척추변형 척추고정술	396. 청소년기 척추변형 척추고정술	I071	5
	397. 성인기 척추변형 척추고정술(감압술 동반)	I072	5
	398. 성인기 척추변형 척추고정술(감압술 미동반)	I073	5

기타 척추 수술	399. 척추고정술(척수병증 동반)	I081	4
	400. 척추고정술(척수병증 미동반)	I082	4
	401. 척추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척수병증 동반)	I083	2
	402. 척추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척수병증 미동반)	I084	2
	403. 기타 척추 수술(척수병증 동반)	I085	1
	404. 기타 척추 수술(척수병증 미동반)	I086	1
척추 중재시술	405. 척추 중재시술(뼈에 시행한 경우)	I091	1
	406. 척추 중재시술(신경에 시행한 경우)	I092	1
신경절술 및 척추강내 약물주입 펌프이식술	407. 척수신경자극기 및 약물주입 펌프의 설치술 또는 교환술	I101	3
	408. 척수신경자극기 및 약물주입 펌프의 시험적 거치술 또는 제거술	I102	1
절단술	409. 주요 절단술	I111	7
	410. 기타 절단술	I112	3
골종양의 절제술	411. 골악성종양의 광범위 절제술(재건술 동반)	I121	7
	412. 골악성종양의 광범위 절제술(골반골, 대퇴골, 하퇴골)	I122	7
	413. 골악성종양의 광범위 절제술(기타)	I123	7
	414. 골양성종양의 소파술 또는 절제술	I124	2
골수염 및 농양 수술	415. 골수염 및 농양 수술(골반골, 대퇴골, 하퇴골, 상완골, 전완골, 쇄골)	I131	2
	416. 골수염 및 농양 수술(기타)	I132	1
	417. 근농양 배농술	I133	1
고관절 및 대퇴부 수술	418. 양쪽 또는 복수 고관절 및 대퇴부 수술	I141	3
	419. 한쪽 고관절 및 대퇴부 수술	I142	2
상완골, 경골 및 비골 수술	420. 상완골, 경골 및 비골 수술	I160	2
단단성형술	421. 단단성형술(수족지 제외)	I171	2
	422. 단단성형술(수족지)	I172	2
견부 수술	423. 회전근개 수술	I181	1
	424. 관절와순 수술	I182	1
	425. 복수 진단 견부 수술	I183	1
	426. 기타 견부 수술	I184	1
슬부 수술	427. 십자인대 수술	I191	1
	428. 반달연골 수술, 양쪽	I192	1
	429. 반달연골 수술, 한쪽	I193	1
	430. 기타 슬관절 수술	I194	1
주관절 및 전완부 수술	431. 주관절 및 전완부 수술	I200	1
측부 및 족관절 수술	432. 측부 및 족관절 힘줄인대 수술	I211	1
	433. 족관절 골연골 병변 수술	I212	1
	434. 기타 측부 및 족관절 수술	I213	1
체내고정장치 제거술	435. 체내고정장치 제거술	I220	1
완관절 및 수부 수술	436. 주요 완관절 및 수부 수술	I251	1
	437. 단순 완관절 및 수부 수술	I252	1

미세혈관 조직이식 또는 피부이식	438. 미세혈관 조직이식	I261	3
	439. 기타 피판술	I262	2
	440. 피부 및 지방 이식술	I263	2
연조직 수술	441. 복잡한 연조직 수술	I271	1
	442. 주요 연조직 수술	I272	1
	443. 단순 연조직 수술	I273	1
기타 골절 수술	444. 골반 및 비구 골절 수술	I281	3
	445. 대퇴부 골절 수술	I282	3
	446. 슬관절 및 하퇴골 골절 수술	I283	3
	447. 족관절 및 족부 골절 수술	I284	2
	448. 견부 및 상완골 골절 수술	I285	3
	449. 전완부 골절 수술	I286	2
	450. 수부 골절 수술	I287	1
기타 결합조직 수술	451. 기타 결합조직 수술	I290	1
복잡 인공관절치환술	452. 복잡 양쪽 또는 복수 인공관절치환술	I301	4
	453. 복잡 인공관절전재치환술, 주요(고관절, 슬관절)	I302	4
	454. 복잡 인공관절전재치환술, 기타(견관절, 주관절, 족관절)	I303	2
	455. 복잡 인공관절전치환술, 주요(고관절, 슬관절)	I304	4
	456. 복잡 인공관절전치환술, 기타(견관절, 주관절, 족관절)	I305	2
	457. 복잡 인공관절부분치환술	I306	3
복잡 척추 수술	458. 복잡 척추고정술	I311	4
	459. 복잡 척추후궁절제술	I312	2
복잡 관절 수술	460. 복잡 사지골절정복술	I321	2
	461. 복잡 관절고정술	I322	2
	462. 복잡 사지관절절제술	I323	1
	463. 복잡 가관절수술	I324	2
복잡 근골격계 염증성 질환 수술	464. 복잡 반월판연골절제술	I325	1
	465. 복잡 화농성관절염절개술	I331	1
근골격계 질환의 경피적 배액술	466. 복잡 골수염 및 농양수술	I332	1
	467. 근골격계 질환의 경피적 배액술	I500	1
피부, 피하조직 및 유방 질환에 대한 미세혈관 조직이식	468. 피부, 피하조직 및 유방 질환에 대한 미세혈관 조직이식	J010	3
피판술, 피부이식술 및 변연절제술(피부궤 양, 봉소염의 경우)	469. 피판술(피부궤양, 봉소염의 경우)	J021	2
	470. 피부 이식술(피부궤양, 봉소염의 경우)	J022	2
피판술, 피부이식술 및 변연절제술(피부궤 양, 봉소염 제외)	471. 피판술(피부궤양, 봉소염 제외)	J031	2
	472. 피부 이식술(피부궤양, 봉소염 제외)	J032	2

기타 피부, 피하조직수술	473. 피부 및 연조직 악성종양 적제술	J041	4
	474. 피부 및 연조직 수술	J042	1
	475. 기타 피부, 피하조직수술	J043	1
유방재건술	476. 자가조직을 이용한 유방재건술	J051	3
	477.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재건술	J052	3
주요 유방 수술	478. 근치 유방절제술	J061	7
	479. 유방절제술(악성종양의 경우)	J062	7
	480. 유방절제술(악성종양 제외)	J063	2
단순 유방 수술	481. 진공흡입보조장치를 이용한 단순 유방 수술	J071	1
	482. 절개에 의한 단순 유방 수술	J072	1
액와 수술	483. 액와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J081	4
	484. 액와 수술(악성종양 제외)	J082	1
기타 유방 및 액와 수술	485. 기타 유방 및 액와 수술	J090	1
항문 주위 및 모소 수술	486. 항문 주위 및 모소 수술	J100	1
	487. 교감신경절제술	J110	2
내분비, 영양 및 대사장애 절단술	488. 내분비, 영양 및 대사장애 절단술(수족부 제외)	K011	7
	489. 내분비, 영양 및 대사장애 수족부 절단술	K012	3
뇌하수체 수술	490. 천막상부 종양 절제술	K021	8
	491. 복잡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절제술	K023	8
	492. 단순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절제술	K024	8
부신 수술	493. 복강경을 이용한 부신수술	K031	4
	494. 개복에 의한 부신수술	K032	4
내분비, 영양 및 대사장애 피부이식 및 상처변연절제술	495. 내분비, 영양 및 대사장애 유리 피판술	K041	2
	496. 내분비, 영양 및 대사장애 기타 피판술	K042	2
	497. 내분비, 영양 및 대사장애 피부 이식술	K043	2
부갑상선 수술	498. 내시경을 이용한 부갑상선 수술	K051	2
	499. 절개에 의한 부갑상선 수술	K052	2
주요 갑상선 악성 종양 수술	500. 주요 갑상선 악성 종양 수술(양쪽)	K063	4
	501. 주요 갑상선 악성 종양 수술(한쪽)	K064	4
주요 갑상선 악성 종양 제외 수술	502. 주요 갑상선 악성 종양 제외 수술(양쪽)	K075	2
	503. 주요 갑상선 악성 종양 제외 수술(한쪽)	K076	2
기타 갑상선 수술	504. 기타 갑상선 수술	K080	1
기타 내분비, 영양 및 대사장애 수술	505. 복강경을 이용한 비만대사수술	K091	1
	506. 개복에 의한 비만대사수술	K092	1
	507. 기타 내분비, 영양 및 대사장애 수술	K490	1
복막투석 도관 삽입술	508. 복막투석 도관 삽입술	L010	2
신장 및 비뇨기계 신생물 수술	509. 주요 신장, 신우 및 요관 신생물 수술	L021	7
	510. 기타 신장, 신우 및 요관 신생물 수술	L022	7
	511. 주요 방광 및 골반 신생물 수술	L023	7
	512. 기타 방광, 골반 및 요도 신생물 수술	L024	5
	513. 경요도 요관 및 방광 신생물 수술	L025	4
	514. 전립선 신생물 수술	L026	4
	515. 복강경을 이용한 신장 및 비뇨기계 신생물 수술	L027	7

신장 및 신우 수술	516. 복강경을 이용한 신장 및 신우 수술	L031	4
	517. 개복에 의한 신장 및 신우 수술	L032	4
	518. 경피적 신장 및 신우 수술, 한쪽	L033	3
	519. 경피적 신장 및 신우 수술, 양쪽	L034	3
요관 수술	520. 요관 수술	L040	2
방광 수술	521. 개복에 의한 방광 수술	L051	4
	522. 경피적 방광 수술	L052	2
	523. 경요도 방광 수술	L053	1
전립선 수술	524. 전립선 수술	L060	2
요도 수술	525. 주요 요도 수술	L071	1
	526. 요도경하 요도 수술	L072	1
	527. 기타 요도 수술	L073	1
	528. 복잡 요실금 수술	L074	1
	529. 단순 요실금 수술	L075	1
요로 결석 수술	530. 복강경을 이용한 요로 결석 수술	L081	4
	531. 신장, 신우 및 요관 결석 수술	L082	4
	532. 경요도적 요관 결석 수술	L083	2
	533. 방광 및 요도 결석 수술	L084	4
	534. 연성내시경하 수술	L085	2
요로결석 제거를 위한 체외충격파쇄석술	535. 요로결석 제거를 위한 체외충격파쇄석술, 복잡	L091	1
	536. 요로결석 제거를 위한 체외충격파쇄석술, 단순	L092	1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신경 자극기 설치술	537.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신경 자극기 설치술	L101	3
	538.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시험적 거치술	L102	1
요로 질환 수술	539. 경요도 요로 질환 수술	L111	1
	540. 외상 및 감염성 요로 질환 수술	L112	1
기타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경피적 시술	541. 기타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경피적 시술	L120	2
기타 신장 및 비뇨기계 시술	542. 혈액투석을 위한 단락 또는 동정맥루 조성술	L131	2
	543. 혈액투석 동정맥루의 경피적 수술, 복잡	L132	2
	544. 혈액투석 동정맥루의 경피적 수술, 단순	L133	2
	545. 기타 신장 및 비뇨기계 시술	L134	1
방광요도경 시술	546. 방광요도경 시술	L510	1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경피적 배액술	547.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경피적 배액술	L520	1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경피적 경화술	548.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경피적 경화술	L530	1
남성 골반 수술	549. 남성 골반 수술	M010	1
전립선 적출술	550. 주요 전립선 적출술	M021	4
	551. 기타 전립선 적출술	M022	3
기타 전립선 수술	552. 기타 전립선 수술	M030	1

음경 수술	553. 복잡 음경 수술	M041	1
	554. 단순 음경 수술	M042	1
	555. 페이로니 병 수술	M043	1
포경 수술	556. 포경 수술	M050	1
요도 수술	557. 주요 요도 수술	M061	1
	558. 단순 요도 수술	M062	1
음낭 수술	559. 복잡 음낭 수술	M071	1
	560. 단순 음낭 수술	M072	1
고환 수술	561.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 고환 수술	M081	4
	562. 개복에 의한 복잡 고환 수술	M082	4
	563. 단순 고환 수술	M083	1
기타 고환 수술 및 생식기 적출술	564. 복강경을 이용한 정계정맥류	M091	4
	565. 개복에 의한 정계정맥류	M092	4
	566. 고환 및 생식기 적출술	M093	7
기타 남성생식기계 시술	567. 기타 남성생식기계 시술(악성종양의 경우)	M101	4
	568. 기타 남성생식기계 시술(악성종양 제외)	M102	1
방광요도경 시술	569. 방광요도경 시술	M500	1
자궁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570.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N011	7
	571. 개복에 의한 자궁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N012	7
주요 자궁절제술(악성종 양 제외)	572. 복강경을 이용한 주요 자궁절제술(악성종양 제외)	N021	2
	573. 개복에 의한 주요 자궁 절제술(악성종양 제외)	N022	2
단순 자궁 수술(악성종양 제외)	574. 복강경을 이용한 단순 자궁 수술(악성종양 제외)	N031	2
	575. 개복에 의한 단순 자궁 수술(악성종양 제외)	N032	2
난소 및 부속기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576. 복강경을 이용한 난소 및 부속기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N041	7
	577. 개복에 의한 난소 및 부속기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N042	7
난소 수술(악성종양 제외)	578. 복강경을 이용한 난소 수술(악성종양 제외)	N051	2
	579. 개복에 의한 난소 수술(악성종양 제외)	N052	2
부속기 수술(악성종양 제외)	580. 복강경을 이용한 부속기 수술(악성종양 제외)	N061	2
	581. 개복에 의한 부속기 수술(악성종양 제외)	N062	2
자궁경부, 질 및 외음부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582.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경부, 질 및 외음부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N071	6
	583. 개복에 의한 자궁경부, 질 및 외음부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N072	6
자궁경부, 질 및 외음부 수술(악성종양 제외)	584.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경부, 질 및 외음부 수술(악성종양 제외)	N081	1
	585. 자궁경부, 질 및 외음부 수술(악성종양 제외)	N082	1
기타 골반 수술 복원술	586.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골반 수술	N091	1
	587. 개복에 의한 기타 골반 수술	N092	1

주요 여성생식기계 복원술	588. 복강경을 이용한 주요 여성생식기계 복원술	N101	1
	589. 개복에 의한 주요 여성생식기계 복원술	N102	1
기타 여성생식기계 복원술	590. 기타 여성생식기계 복원술	N110	1
복강경 수술 및 기타 난관 결찰술	591. 복강경 수술	N121	1
자궁경 수술	592. 자궁경 수술	N130	1
자궁소파술	593. 치료적 자궁소파술	N141	1
기타 여성생식기계 수술	594.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여성생식기계 수술	N161	1
	595. 개복에 의한 기타 여성생식기계 수술	N162	1
여성생식기계 경피적 혈관 수술	596. 여성생식기계 경피적 혈관 수술	N180	2
제왕절개분만(단태아)	597. 일반 제왕절개분만(단태아)	O011	1
	598. 고위험 제왕절개분만(단태아)	O012	1
	599. 질식분만 시도 후 제왕절개분만(단태아)	O013	1
제왕절개분만(다태아)	600. 질식분만 시도 후 제왕절개분만(다태아)	O022	1
	601. 일반 제왕절개분만(다태아)	O023	1
	602. 고위험 제왕절개분만(다태아)	O024	1
자궁외 임신 주요 수술	603.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외 임신 주요 수술	O081	4
	604. 개복에 의한 자궁외 임신 주요 수술	O082	4
자궁외 임신 기타 수술	605.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외 임신 기타 수술	O091	4
	606. 개복에 의한 자궁외 임신 기타 수술	O092	4
자궁경관봉축술	607. 치료적 자궁경관봉축술	O102	1
분만 및 유산 후 관련 장애(수술시행)	608. 분만 및 유산 후 관련 장애(수술시행)	O110	1
자궁소파술 및 흡인소파술	609. 자궁소파술 및 흡인소파술	O120	1
분만 및 유산 관련 자궁적출술	610. 분만 및 유산 관련 자궁적출술	O130	2
비장 절제술	611. 성인의 복강경을 이용한 비장 절제술	Q012	4
	612. 성인의 개복에 의한 비장 절제술	Q013	4
림프종 및 백혈병(주요 수술 시행)	613. 림프종 및 백혈병(주요 수술 시행)	R010	4
기타 신생물 질환(주요 수술 시행)	614. 기타 신생물 질환(주요 수술 시행)	R020	4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개두술	615.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개두술	W010	8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근골격계 주요 수술	616.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근골격계 주요 수술	W020	5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복부 수술	617.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복부 수술	W030	6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기타 수술	618.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기타 수술	W040	4
하지 손상의 미세혈관 조직이식 및 피부이식	619. 하지 손상의 미세혈관 조직이식	X011	3
	620. 하지 손상의 국소 피판 및 피부이식	X012	2
수부 손상의 미세혈관 조직이식 및 피부이식	621. 수부 손상의 미세혈관 조직이식	X021	3
	622. 수부 손상의 국소 피판 및 피부이식	X022	2
기타 손상의 미세혈관 조직이식 및 피부이식	623. 기타 손상의 미세혈관 조직이식 및 피부이식	X030	3
하지 손상의 기타 수술	624. 하지 손상의 골 및 관절 수술	X041	2
	625. 하지 손상의 기타 수술	X042	1
수부 손상의 기타 수술	626. 수부 손상의 골 및 관절 수술	X051	2
	627. 수부 손상의 기타 수술	X052	1
기타 손상의 수술	628. 기타 손상의 수술	X060	1
중증 화상(피부 이식 동반)	629. 중증 화상(피부 이식 동반)	Y010	5
중등도 화상(피부이식 혹은 흡입손상을 동반)	630. 중등도 화상(피부이식 혹은 흡입손상 동반)	Y020	2

주1) 상기의 「수술시술코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수술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하고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분류체계에서 부여된 「ADRG(Adjacent DRG)」중 회사가 정한 코드를 말합니다.

주2) 이 특별약관은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에서 분류된 「ADRG」중 다음의 「ADRG」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ADRG」에서 주진단 범주(MDC)에 해당하는 첫번째 자리(알파벳)를 제외하고 2,3번째 자리에 해당하는 숫자가 “60” ~ “99”에 해당하는 경우

예시

「ADRG」가 “B601”의 경우 첫번째 자리(알파벳(B))를 제외하고 2,3번째 자리에 해당하는 숫자가 “60”이므로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아래 표에 기재된 「ADRG」

수술 시술 코드	수술 및 시술명
B501	치료적 성분채집술
B502	신경계 면역요법
B510	뇌전증의 지속적 비디오 뇌파검사 감시
B520	자기뇌파검사 지도화
D070	교성형술

D180	구순열 및 구개열 수술
D191	치조골 수술
D192	구강내 점막수술
D193	단순 혀 수술
D300	발치
D502	치아 보존치료
E031	호흡기 질환을 위한 진단적 시술
E501	침습적 인공호흡기 96시간 이상(신대체요법 동반)
E502	침습적 인공호흡기 96시간 이상(신대체요법 미동반)
E511	침습적 인공호흡기 96시간 미만(신대체요법 동반)
E512	침습적 인공호흡기 96시간 미만(신대체요법 미동반)
E540	경기관지 폐생검
E550	폐흉부질환의 침습인 생검
F051	심장 중격결손증 수술
F052	기타 복잡 심장 기형 교정술
F171	선천성 심장병 협착 질환의 경피적 혈관성형술(스텐트 사용)
F172	경피적 심장내 혈관성형술(스텐트 사용)
F173	순환기계의 경피적 풍선 혈관성형술
F501	심장 전기 생리 검사
F502	심장질환을 위한 심도자술 및 혈관조영술
F503	진단적 관상동맥 조영술
F504	심근생검
F505	심낭천자
G161	선천성 거대결장 및 장무공증 수술
G162	주요 직장항문 기형 수술
G163	기타 직장항문 기형 수술
G331	소화기계 질환을 위한 진단적 시술
H131	간담도 진단적 시술(악성종양의 경우)
H132	간담도 진단적 시술(악성종양 제외)
H530	진단적 역행성담체관내시경
I230	관절경검사
I240	생검을 포함한 골과 관절의 진단적 수술
I510	근골격계 질환의 침생검
J053	유두 및 유륜재건술
J500	유방 질환의 침습인생검
K500	갑상선 질환의 침습인생검
L113	선천성 요로 질환 수술
L500	요관경검사
M094	정관 수술
M510	전립선 생검
N122	복강경 검사 및 기타 난관 결찰술
N142	진단적 자궁소파술
N151	복강경을 이용한 여성생식기계 질환을 위한 진단적 수술
N152	개복에 의한 여성생식기계 질환을 위한 진단적 수술
N170	방사선원삽입요법(악성종양의 경우)

O041	일반 질식분만(초산)
O042	고위험 질식분만(초산)
O051	일반 질식분만(경산)
O052	고위험 질식분만(경산)
O061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일반 질식분만
O062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고위험 질식분만
O073	질식분만(복합 수술 동반)
O101	예방적 자궁경관봉축술
O141	분만 및 유산 관련 경피적 혈관 수술
O142	산욕기 관련 기타 경피적 혈관 수술
P010	입원후 5일 미만에, 사망하거나 전원된 신생아(중요 수술 시행)
P020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심흉복부/혈관 수술
P030	신생아, 입원시 체중 < 750g(중요 수술 시행)
P040	신생아, 입원시 체중 750-999g(중요 수술 시행)
P050	신생아, 입원시 체중 1000-1249g(중요 수술 시행)
P060	신생아, 입원시 체중 1250-1499g(중요 수술 시행)
P070	신생아, 입원시 체중 1500-1999g(중요 수술 시행)
P080	신생아, 입원시 체중 2000-2499g(중요 수술 시행)
P090	신생아, 입원시 체중 > 2499g(중요 수술 시행)
Q011	소아의 비장 절제술
Q020	기타 혈액 및 조혈기관 수술
R030	림프종 및 백혈병(기타 수술 시행)
R040	기타 신생물 질환(기타 수술 시행)
R500	치료적 성문재집술
T011	패혈증 수술(합병증 동반)
T012	패혈증 수술(합병증 미동반)
T013	외상 후 감염 수술
T014	수술 후 감염 수술
T015	기타 감염 질환 수술
U010	정신장애 치료목적의 수술
W050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복부 혈관색전술
Y030	기타 화상(피부이식 동반)
Z010	기타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수술

③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에서 규정한 “Error DRG” 및 “960 DRG”
- Error DRG : 961, 962, 963, 990, 999

※ “Error DRG”라 함은 “주진단 범주(MDC)”와 일치하지 않는 수술 등을 뜻합니다.

거미막하출혈로 진단받고 경피적 심장판막성형술을 받은 경우는 주진단 범주(MDC)와 수술이 일치하지 않아 Error DRG가 생성되어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960 DRG”라 함은 “Error DRG”는 아니지만 입원 2일 이내에 조기 사망한 환자(신생아 제외)를 뜻합니다. 다만, 통원일 또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는 「수술시술코드」는 보장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시술코드 및 ADRG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발·관리하는 KDRG 버전 4.4(2021.1.1 기준)에서 정의된 ADRG코드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호, 2021.1.22.)에서 정의된 수가코드,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에서 정의된 분류번호 기준이며, 향후 ADRG코드 및 수가코드, 분류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ADRG코드 및 수가코드, 분류번호에 준하여 수술시술코드 및 ADRG를 결정합니다.

【별표103】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Ⅱ

구분	수술 및 시술명	수술 시술 코드	수술 시술 종류
간 이식	1. 간 이식	A010	8
폐 이식	2. 폐 이식	A020	8
심장 이식	3. 심장 이식	A030	8
장 이식	4. 췌장 이식	A040	8
소장 이식	5. 소장 이식	A050	8
조혈모세포 이식	6. 조혈모세포 이식, 동종이식	A061	8
	7. 조혈모세포 이식, 자가이식	A062	8
신장 이식	8. 신장 이식	A070	8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개심술미동반	9.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개심술 미동반	A080	5
기관절개술	10.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장애의 경우), 인공호흡기 장기 사용	A091	1
	11.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장애의 경우), 인공호흡기 단기 사용	A092	1
	12.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장애의 경우), 인공호흡기 미사용	A093	1
	13.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장애 제외), 인공호흡기 장기 사용	A094	1
	14.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장애 제외), 인공호흡기 단기 사용	A095	1
	15. 기관 절개술(안면, 구강, 경부 장애 제외), 인공호흡기 미사용	A096	1
사지 이식	16. 사지 이식	A100	8
뇌동맥류수술	17. 복잡 뇌동맥류 수술(뇌졸중 동반)	B011	8
	18. 단순 뇌동맥류 수술(뇌졸중 동반)	B012	8
	19. 복잡 뇌동맥류 수술(뇌졸중 미동반)	B013	8
	20. 단순 뇌동맥류 수술(뇌졸중 미동반)	B014	8
	21. 뇌동맥류 색전술(뇌졸중 동반)	B015	6
	22. 뇌동맥류 색전술(뇌졸중 미동반)	B016	6
	23. 뇌동맥류 복합 수술(뇌졸중 동반)	B017	8
	24. 뇌동맥류 복합 색전술(뇌졸중 동반)	B018	6
뇌혈관수술	25. 두개내 혈관 수술(뇌졸중 동반)	B021	8
	26. 두개내 혈관 수술(뇌졸중 미동반)	B022	8
	27. 뇌신경계 혈관기형 및 동정맥루 색전술(뇌졸중 동반)	B023	6
	28. 뇌신경계 혈관기형 및 동정맥루 색전술(뇌졸중 미동반)	B024	6
	29. 경피적 뇌혈관 수술(협착·폐쇄 및 혈전제거 동시의 경우)	B025	6
	30. 경피적 뇌혈관 수술(협착 및 폐쇄의 경우)	B026	6
	31. 경피적 뇌혈관 수술(혈전제거의 경우)	B027	6

혈종제거술 및 기타개두술(외상제외)	32. 혈종제거술(외상 제외)	B031	8
	33. 두개내 감압술(외상 제외)	B032	8
	34. 두개골 성형술(외상 제외)	B033	8
두개외 혈관수술	35. 두개외 혈관수술(뇌졸중 동반)	B041	4
	36. 두개외 혈관수술(뇌졸중 미동반)	B042	4
	37. 경피적 두개외 혈관수술	B043	4
뇌기저부 수술	38. 뇌기저부 수술	B050	8
뇌종양 절제술	39. 복잡 천막상부 종양절제술	B061	8
	40. 단순 천막상부 종양절제술	B062	8
	41. 복잡 천막하부 종양절제술	B063	8
	42. 단순 천막하부 종양절제술	B064	8
	43. 경피적 뇌신경계 종양 수술	B065	6
	44. 경비적 뇌하수체 종양 절제술	B066	8
신경계 신경자극기 설치술	45. 신경계 신경자극기 설치술	B070	7
뇌전증 수술	46. 뇌전증 수술(전극삽입술 시행)	B081	7
	47. 뇌전증 수술(전극삽입술 미시행)	B082	7
정위수술	48. 중추신경계 정위수술(뇌종양 및 기타 병소발생술)	B091	6
	49. 중추신경계 정위수술(두개내출혈)	B092	6
	50. 뇌정위 방사선 수술(두개내출혈 및 뇌혈관기형)	B093	6
	51. 뇌정위 방사선 수술(양성 뇌종양)	B094	6
	52. 뇌정위 방사선 수술(기타)	B095	6
	53. 중추신경계 체부 정위 방사선 수술	B096	6
뇌신경 수술	54. 뇌신경 수술	B100	6
뇌척수액 우회로조성술	55. 뇌척수액 우회로조성술	B110	4
외상 개두술	56. 혈종제거술(외상관련), 경막외 출혈	B121	7
	57. 혈종제거술(외상관련), 경막하 출혈	B122	7
	58. 혈종제거술(외상관련), 기타 뇌내 출혈	B123	7
	59. 두개내 감압술(외상관련)	B124	8
	60. 두개골 성형술(외상관련)	B125	8
기타 개두술	61. 기타 개두술	B130	7
천두술	62. 천두술(경막하 또는 경막외)	B141	4
	63. 천두술(뇌내)	B142	4
	64. 천두술(기타)	B143	4
척추강내 병소절제술	65. 척수내 종양절제술	B151	6
	66. 척추강내 병소절제술(척수병증 동반)	B152	6
	67. 척추강내 병소절제술(척수병증 미동반)	B153	6
	68. 척추강내 병소절제술(척추고정술 동반)	B154	6
척추변형 척추고정술	69. 청소년기 척추변형 척추고정술	B161	5
	70. 성인기 척추변형 척추고정술(감압술 동반)	B162	5
	71. 성인기 척추변형 척추고정술(감압술 미동반)	B163	5

기타 척추 수술	72. 척추고정술(척수병증 동반)	B171	4
	73. 척추고정술(척수병증 미동반)	B172	4
	74. 척추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척수병증 동반)	B173	2
	75. 척추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척수병증 미동반)	B174	2
	76. 기타 척추 수술(척수병증 동반)	B175	1
	77. 기타 척추 수술(척수병증 미동반)	B176	1
척추 중재시술	78. 척추 중재시술(뼈에 시행한 경우)	B181	1
	79. 척추 중재시술(신경에 시행한 경우)	B182	1
신경절술 및 척추강내 약물주입 펌프이식술	80. 척수신경자극기 및 약물주입 펌프의 설치술 또는 교환술	B191	3
	81. 척수신경자극기 및 약물주입 펌프의 시험적 거치술 또는 제거술	B192	1
기타 신경계수술	82. 주요 말초 및 뇌 신경 수술	B201	1
	83. 기타 말초 및 뇌 신경 수술	B202	1
	84. 수근관 이완술	B203	1
	85. 기타 근육, 건 및 인대 이완술	B204	1
	86. 기타 신경계 수술	B205	1
복잡 척추수술	87. 복잡 척추고정술	B211	4
	88. 복잡 척추후궁절제술	B212	2
안부 관통상 수술	89. 복잡 안부 관통상 수술	C011	1
	90. 전안부 관통상 수술(수정체 수술 동반)	C012	1
	91. 전안부 관통상 수술(수정체 수술 미동반)	C013	1
	92. 후안부 관통상 수술	C014	1
안와 수술	93. 복잡 안와 수술, 한쪽	C021	2
	94. 복잡 안와 수술, 양쪽	C022	2
	95. 단순 안와 수술	C023	2
안구 수술(종양 수술 포함)	96. 안구 수술(종양 수술 포함)	C030	2
망막 및 유리체 수술	97. 망막 및 유리체 수술(망막주위막 제거술 동반, 수정체 수술 동반)	C043	2
	98. 망막 및 유리체 수술(망막주위막 제거술 동반, 수정체 수술 미동반)	C044	2
	99. 망막 및 유리체 수술(망막주위막 제거술 미동반, 수정체 수술 동반)	C045	2
	100. 망막 및 유리체 수술(망막주위막 제거술 미동반, 수정체 수술 미동반)	C046	2
안구 표면재건술	101. 주요 각막이식수술	C051	2
	102. 기타 각막이식수술	C052	2
	103. 공막 및 각막윤부이식수술	C053	2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104. 주요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한쪽	C061	1
	105. 기타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한쪽	C062	1
	106. 주요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쪽	C063	1
	107. 기타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쪽	C064	1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108. 주요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한쪽	C071	1
	109. 기타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한쪽	C072	1
	110.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쪽	C073	1
후발성 백내장 수술	111. 후발성 백내장 수술	C080	1
녹내장 수술	112. 복잡 녹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동반)	C091	2
	113. 복잡 녹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미동반)	C092	2
	114. 단순 녹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동반)	C093	2
	115. 단순 녹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미동반)	C094	2
기타 안구내 수술	116. 기타 주요 안구내 수술	C101	1
	117. 기타 단순 안구내 수술	C102	1
사시 수술	118. 복잡 사시 수술	C111	1
	119. 단순 사시 수술	C112	1
안검 수술	120. 복잡 안검 수술, 제1형	C121	1
	121. 복잡 안검 수술, 제2형	C122	1
	122. 복잡 안검 수술, 제3형	C123	1
	123. 주요 안검 수술, 제1형	C124	1
	124. 주요 안검 수술, 제2형	C125	1
	125. 주요 안검 수술, 제3형	C126	1
	126. 기타 안검 수술	C127	1
눈물길 수술	127. 복잡 눈물길 수술	C131	1
	128. 주요 눈물길 수술, 한쪽	C132	1
	129. 주요 눈물길 수술, 양쪽	C133	1
	130. 기타 눈물길 수술(경비내시경 포함), 단안	C135	1
	131. 기타 눈물길 수술(경비내시경 포함), 양안	C136	1
결막 수술	132. 결막낭 재건술	C141	1
	133. 복잡 결막 수술	C142	1
	134. 단순 결막 수술	C143	1
기타 안구외수술	135. 기타 안구외 수술	C150	1
내이 수술	136. 귀 이식술	D011	5
	137. 주요 내이 수술	D012	3
	138. 단순 내이 수술	D013	2

중이 및 유양돌기 수술	139. 고실유양돌기 수술	D021	2
	140. 유양돌기 수술	D022	2
	141. 고실 수술	D023	2
	142. 이소골 재건술	D024	2
	143. 등골수술	D025	2
	144. 환기관삽입 고막절개술	D026	2
외이 및 귀 수술	145. 주요 외이 및 귀 수술	D031	1
	146. 단순 외이 및 귀 수술	D032	1
귀 및 코의 악성종양 수술	147. 귀 및 두개저 악성종양 수술	D041	7
	148. 비강, 부비동, 비인강 악성종양	D042	7
부비동개방 수술	149. 부비동 개방 수술(한 개, 한쪽)	D051	1
	150. 부비동 개방 수술(한 개, 양쪽)	D052	1
	151. 부비동 개방 수술(여러 개, 한쪽)	D053	1
	152. 부비동 개방 수술(여러 개, 양쪽)	D054	1
내시경을 이용한 부비동 수술	153. 내시경을 이용한 부비동 수술(한 개, 한쪽)	D061	1
	154. 내시경을 이용한 부비동 수술(한 개, 양쪽)	D062	1
	155. 내시경을 이용한 부비동 수술(여러 개, 한쪽)	D065	1
	156. 복잡 내시경을 이용한 부비동 수술(여러 개, 한쪽)	D066	1
	157. 내시경을 이용한 부비동 수술(여러 개, 양쪽)	D067	1
	158. 복잡 내시경을 이용한 부비동 수술(여러 개, 양쪽)	D068	1
코 수술	159. 주요 코 수술	D081	1
	160. 비중격 및 비갑개수술	D082	1
	161. 단순 코 수술	D083	1
구강 및 타액선 악성종양 수술	162. 구강 및 타액선 악성종양 수술	D090	7
후두 및 인두 악성종양 수술	163. 주요 후두 및 인두 악성종양 수술(경동맥소체 포함)	D101	7
	164. 단순 후두 및 인두 악성종양 수술	D102	7
경부림프절절제술	165. 경부림프절절제술, 한쪽	D111	4
	166. 경부림프절절제술, 양쪽	D112	4
안면골 수술	167. 악관절 수술	D121	2
	168. 주요 안면골 수술	D122	2
	169. 단순 안면골 수술	D123	2
두경부 재건술	170. 두경부 재건술	D130	2
타액선 수술	171. 이하선수술	D141	2
	172. 악하선 및 설하선 수술	D142	2
	173. 기타 타액선 수술	D143	1
	174. 타석제거술	D144	1
경부 수술	175. 경부 수술	D150	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176. 주요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D161	1
	177. 단순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D162	1
구강, 인후두 수술	178. 주요 구강 및 인두, 후두 수술	D171	1
	179. 단순 구강 및 인두, 후두 수술	D172	1
	180. 구순열 및 구개열 수술	D180	1

기타 이비인후, 구강 질환 수술	181. 기타 이비인후, 구강질환 수술	D200	1
주요 흉부 수술	182. 기관 및 기관지 수술	E011	7
	183. 주요 폐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E012	7
	184. 주요 폐 수술(악성종양 제외)	E013	7
	185. 기타 폐 수술	E014	7
	186. 종격동 수술	E015	7
	187. 주요 흉곽 수술	E016	7
	188. 기타 흉곽 수술	E017	3
	189. 흉강경을 이용한 주요 수술	E018	7
	190. 흉강경을 이용한 기타 수술	E019	7
기관지경 및 방사선하 수술	191. 기관지경 및 방사선하 수술	E020	2
기타 호흡기계 수술	192. 수면무호흡증후군 수술	E032	1
	193. 호흡기계 기타 단순 수술	E033	1
	194. 기타 호흡기계 수술	E034	1
폐농양 배액술	195. 폐농양 배액술	E520	1
흉막삼출 배액술	196. 흉막삼출 배액술	E530	1
자동체내제세동기 시술	197. 자동체내제세동기 설치술 또는 제거술	F011	5
	198. 자동체내제세동기 교정술	F012	5
심장판막 수술(심도자술 사용)	199. 대동맥판 수술(심도자술 사용)	F021	8
	200. 승모판 또는 삼첨판 수술(심도자술 사용)	F022	8
	201. 폐동맥판 수술(심도자술 사용)	F023	8
심장판막 수술(심도자술 미사용)	202. 대동맥판 수술(심도자술 미사용)	F031	8
	203. 승모판 또는 삼첨판 수술(심도자술 미사용)	F032	8
	204. 폐동맥판 수술(심도자술 미사용)	F033	8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	205.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심도자술 사용, 인공심장폐장치 사용)	F041	8
	206.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심도자술 미사용, 인공심장폐장치 사용)	F042	8
	207.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심도자술 사용, 인공심장폐장치 미사용)	F043	8
	208.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심도자술 미사용, 인공심장폐장치 미사용)	F044	8
기타 심흉부 수술	209. 심장 종격결손증 수술	F051	8
	210. 기타 복잡 심장 기형 교정술	F052	8
	211. 기타 심흉부 수술(인공심장폐장치 사용)	F053	7
	212. 기타 심흉부 수술(인공심장폐장치 미사용)	F054	5
주요 혈관복구 수술(인공심장폐장치 사용)	213. 파열 동맥류 또는 대동맥 축착 교정술(인공심장폐장치 사용)	F061	8
	214. 비파열 동맥류 또는 대동맥 축착 교정술(인공심장폐장치 사용)	F062	8
	215. 기타 주요 혈관복구 수술(인공심장폐장치 사용)	F063	8

주요 혈관복구 수술(인공심장폐장치 미사용)	216. 파열 동맥류 또는 대동맥 축착 교정술(인공심장폐장치 미사용)	F071	8
	217. 비파열 동맥류 또는 대동맥 축착 교정술(인공심장폐장치 미사용)	F072	8
	218. 기타 주요 혈관복구 수술(인공심장폐장치 미사용)	F073	7
대동맥 경피적 수술	219. 복부대동맥 및 장골동맥류 경피적 수술(파열 미동반)	F081	4
	220. 복부대동맥 및 장골동맥류 경피적 수술(파열 동반)	F082	4
	221. 흉부대동맥류 경피적 수술	F083	4
	222. 대동맥박리 경피적 수술	F084	4
정맥 및 대정맥 경피적 수술	223. 심부정맥혈전증 경피적 수술	F091	4
	224. 대정맥 필터설치를 위한 경피적 수술	F092	4
경도관 심장결손 폐쇄술	225. 경도관 심방중격결손 폐쇄술	F101	4
	226. 경도관 동맥관개존증 폐쇄술	F102	4
	227. 기타 경도관 심장 결손 폐쇄술	F103	4
급성 심근경색증의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심각한 합병증 동반)	228. 급성 심근경색증의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심각한 합병증 동반, 단일혈관)	F111	4
	229. 급성 심근경색증의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심각한 합병증 동반, 다발혈관)	F112	4
급성 심근경색증의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심각한 합병증 미동반)	230. 급성 심근경색증의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심각한 합병증 미동반, 단일혈관)	F121	4
	231. 급성 심근경색증의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심각한 합병증 미동반, 다발혈관)	F122	4
급성 심근경색증이 아닌 기타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	232. 급성 심근경색증이 아닌 기타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단일혈관, 만성폐쇄성병변의 경우 제외)	F133	4
	233. 급성 심근경색증이 아닌 기타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단일혈관, 만성폐쇄성병변의 경우 포함)	F134	4
	234. 급성 심근경색증이 아닌 기타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다발혈관, 만성폐쇄성병변의 경우 제외)	F135	4
	235. 급성 심근경색증이 아닌 기타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다발혈관, 만성폐쇄성병변의 경우 포함)	F136	4
부정맥의 경피적 수술(3차원 지도화 기능 포함)	236. 심실빈맥 전극도자 절제술(3차원 지도화 기능 포함)	F141	4
	237. 심방세동 전극도자 절제술(3차원 지도화 기능 포함)	F142	4
	238. 발작성 심실상빈맥 및 심방조동 전극도자 절제술(3차원 지도화 기능 포함)	F143	4

부정맥의 경피적 수술(3차원 지도화 기능 미포함)	239. 심실빈맥 전극도자 절제술(3차원 지도화 기능 미포함)	F151	4
	240. 심방세동 전극도자 절제술(3차원 지도화 기능 미포함)	F152	4
	241. 발작성 심실상빈맥 및 심방조동 전극도자 절제술(3차원 지도화 기능 미포함)	F153	4
경피적 풍선 판막성형술	242. 경피적 승모판 풍선 판막성형술	F161	4
	243. 경피적 대동맥 또는 폐동맥 풍선 판막성형술	F162	4
	244. 선천성 심장병 협착 질환의 경피적 혈관성형술(스텐트 사용)	F171	4
	245. 경피적 심장내 혈관성형술(스텐트 사용)	F172	8
	246. 순환기계의 경피적 풍선 혈관성형술	F173	4
혈관 기형의 경피적 수술	247. 동정맥 기형의 경피적 색전술(두경부 제외)	F181	4
	248. 관상동맥 및 폐동맥 기형의 경피적 색전술(두경부 제외)	F182	4
말초동맥의 경피적 수술	249. 말초동맥 색전증 및 혈전증의 경피적 수술	F192	4
	250. 말초동맥 동맥류 및 박리의 경피적 수술	F193	4
	251. 말초동맥 만성 폐쇄성 질환의 경피적 수술, 여러 개	F194	4
	252. 말초동맥 만성 폐쇄성 질환의 경피적 수술, 한 개	F195	4
기타 경피적 심혈관 수술	253. 기타 경피적 심혈관 수술	F200	4
체내 심박조율기 설치술(급성 심근경색증, 심부전, 쇼크의 경우)	254. 영구적 심박조율기 설치술	F211	5
	255. 영구적 심박조율기 교환술	F212	5
	256. 심박조율기 제거 및 전환술	F213	1
기타 혈관 복구 수술	257. 기타 혈관 복구 수술	F220	2
순환 장애 절단술(수족부 제외)	258. 순환 장애 절단술(수족부 제외)	F230	7
순환 장애 수족부 절단술	259. 순환 장애 수족부 절단술	F240	3
정맥 결찰 및 스트리핑	260. 정맥류 광범위 절제술(여러 개)	F253	1
	261. 정맥류 광범위 절제술(한 개)	F254	1
	262. 정맥류 국소 절제술	F252	1
기타 순환기계 수술	263. 기타 순환기계 수술	F260	1
식도 수술	264. 식도 악성종양 근치 수술 및 식도 재건술	G011	7
	265. 기타 주요 식도 수술	G012	5
	266. 기타 단순 식도 수술	G013	4
직장절제술(림프절절제 동반)	267. 복강경을 이용한 직장절제술(림프절절제 동반)	G021	7
	268. 개복에 의한 직장절제술(림프절절제 동반)	G022	7
직장절제술(림프절절제 미동반)	269. 복강경을 이용한 직장절제술(림프절절제 미동반)	G031	7
	270. 개복에 의한 직장절제술(림프절절제 미동반)	G032	7
경향문 및 경천골 접근 직장절제술	271. 경향문 및 경천골 접근 직장절제술(악성종양의 경우)	G041	7
	272. 경향문 및 경천골 접근 직장절제술(악성종양 제외)	G042	7

주요십이지장수술	273. 주요 십이지장 수술	G050	7
식도정맥류수술	274. 식도 정맥류 수술	G060	5
위전절제술	275. 복강경을 이용한 위전절제술	G071	7
	276. 개복에 의한 위전절제술	G072	7
위아전절제술	277. 복강경을 이용한 위아전절제술	G081	7
	278. 개복에 의한 위아전절제술	G082	7
기타 위절제술	279.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위절제술	G091	5
	280. 개복에 의한 기타 위절제술	G092	5
	281.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설상절제술	G093	5
	282. 개복에 의한 기타 설상절제술	G094	5
소화성 궤양 수술	283. 복강경을 이용한 소화성 궤양 수술	G101	4
	284. 개복에 의한 소화성 궤양 수술	G102	4
기타 위 및 식도 수술	285.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위 및 식도 수술	G111	4
	286. 개복에 의한 기타 위 및 식도 수술	G112	4
결장 및 직장 전 절제술	287. 복강경을 이용한 결장 및 직장 전 절제술	G121	7
	288. 개복에 의한 결장 및 직장 전 절제술	G122	7
결장절제술(림프절절제 동반)	289. 복강경을 이용한 결장절제술(림프절절제 동반)	G131	7
	290. 개복에 의한 결장절제술(림프절절제 동반)	G132	7
결장절제술(림프절절제 미동반)	291. 복강경을 이용한 결장절제술(림프절절제 미동반)	G141	5
	292. 개복에 의한 결장절제술(림프절절제 미동반)	G142	5
기타 대장 수술	293.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대장 수술	G151	4
	294. 개복에 의한 기타 대장 수술	G152	4
기타 선형성 수술	295. 선천성 거대결장 및 장무공증 수술	G161	7
	296. 주요 직장항문 기형 수술	G162	7
	297. 기타 직장항문 기형 수술	G163	3
소장 및 장간막 수술	298. 복강경을 이용한 주요 소장 및 장간막 수술	G171	5
	299. 개복에 의한 주요 소장 및 장간막 수술	G172	5
	300. 장폐쇄 수술 및 기타 장 수술	G173	3
장루 수술	301. 장루 수술	G180	3
횡격막 탈장 수술	302. 횡격막 탈장 수술	G190	4
탈장 수술, 서혜 및 대퇴부 제외	303. 복강경을 이용한 탈장 수술, 서혜 및 대퇴부 제외(장절제 동반)	G201	1
	304. 개복에 의한 탈장 수술, 서혜 및 대퇴부 제외(장절제 동반)	G202	1
	305. 복강경을 이용한 탈장 수술, 서혜 및 대퇴부 제외(장절제 미동반)	G203	1
	306. 개복에 의한 탈장 수술, 서혜 및 대퇴부 제외(장절제 미동반)	G204	1

총수절제술	307. 복강경을 이용한 총수절제술(복잡 주진단의 경우)	G211	3
	308. 복강경을 이용한 총수절제술(복잡 주진단이 아닌 경우)	G212	3
	309. 개복에 의한 총수절제술(복잡 주진단의 경우)	G213	3
	310. 개복에 의한 총수절제술(복잡 주진단이 아닌 경우)	G214	3
재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311. 복강경을 이용한 재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한쪽	G221	1
	312. 복강경을 이용한 재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양쪽	G222	1
	313. 개복에 의한 재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한쪽	G223	1
	314. 개복에 의한 재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양쪽	G224	1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절제 동반)	315.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절제 동반)	G230	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절제 미동반)	316.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절제 미동반), 한쪽	G241	1
	317.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절제 미동반), 양쪽	G242	1
개복에 의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절제 미동반)	318. 개복에 의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절제 미동반, 복잡 주진단의 경우), 한쪽	G251	1
	319. 개복에 의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절제 미동반, 복잡 주진단이 아닌 경우), 한쪽	G252	1
	320. 개복에 의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절제 미동반), 양쪽	G253	1
복수 항문 수술	321. 복수 항문 수술	G260	1
치핵 수술	322. 주요 치핵 수술	G271	1
	323. 단순 치핵 수술	G272	1
항문 주위 농양 수술	324. 주요 항문 주위 농양 수술	G281	1
	325. 단순 항문 주위 농양 수술	G282	1
치루 수술	326. 주요 치루 수술	G291	1
	327. 단순 치루 수술	G292	1
치열 수술 및 항문협착증 수술	328. 치열 수술 및 항문협착증 수술	G300	1
경항문 및 질접근 수술	329. 직장 질루 수술	G311	1
	330. 직장 탈출증 수술 및 괄약근성형술(직장류교정술 포함)	G312	1
화농성한선염 수술	331. 화농성한선염 수술	G320	1
기타 소화기계 수술	332. 기타 소화기계 수술	G332	1
소화기계 질환의 혈관색전술	333. 소화기계 질환의 혈관색전술	G340	3

위내시경 시술	334. 위내시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의 경우)	G503	1
	335. 위내시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이 아닌 경우)	G504	1
	336. 위내시경 시술, 당일퇴원	G505	1
결장경 시술	337. 결장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의 경우)	G523	1
	338. 결장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이 아닌 경우)	G524	1
	339. 결장경 시술, 당일퇴원	G525	1
구불결장경 시술	340. 구불결장경 시술	G531	1
	341. 구불결장경 시술, 당일퇴원	G532	1
소화기 내시경 시술, 화학요법을 동반한 경우, 재원기간 2일 이상	342. 소화기 내시경 시술, 화학요법을 동반한 경우, 재원기간 2일 이상	G540	1
소장내시경 시술	343. 소장내시경 시술	G550	1
소화관 협착을 위한 방사선하 시술	344. 소화관 협착을 위한 방사선하 시술	G560	2
소화기계 질환의 경피적 배액술	345. 소화기계 질환의 경피적 배액술	G570	2
간담도췌장 복합수술	346. 간담도췌장 복합수술	H010	7
간담도 복합수술	347. 주요 간담도 복합수술	H021	7
	348. 기타 간담도 복합수술	H022	5
담도췌장 복합수술	349. 담도췌장 복합수술	H030	7
간 절제술	350. 복강경을 이용한 주요 간 절제술	H041	7
	351. 개복에 의한 주요 간 절제술	H042	7
	352.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간 절제술	H043	5
	353. 개복에 의한 기타 간 절제술	H044	5
간 수술	354. 복강경을 이용한 간 수술	H051	4
	355. 개복에 의한 간 수술	H052	4
간담도계 질환 치료를 위한 단락술	356. 간담도계 질환 치료를 위한 단락술	H060	4
담도 절제술(림프절 절제 동반)	357. 복강경을 이용한 담도 절제술(림프절 절제 동반)	H071	7
	358. 개복에 의한 담도 절제술(림프절 절제 동반)	H072	7
담도 절제술(림프절 절제 미동반)	359. 복강경을 이용한 담도 절제술(림프절 절제 미동반)	H081	5
	360. 개복에 의한 담도 절제술(림프절 절제 미동반)	H082	5
주요 담도 수술	361. 복강경을 이용한 주요 담도 수술	H091	5
	362. 개복에 의한 주요 담도 수술	H092	5

담낭절제술	363.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및 경피적담낭조루술 동반)	H101	4
	364. 개복에 의한 담낭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및 경피적담낭조루술 동반)	H102	4
	365.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동반)	H103	4
	366. 개복에 의한 담낭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동반)	H104	4
	367.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경피적담낭조루술 동반)	H105	4
	368. 개복에 의한 담낭절제술(경피적담낭조루술 동반)	H106	4
	369.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및 경피적담낭조루술 미동반)	H107	4
	370. 개복에 의한 담낭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및 경피적담낭조루술 미동반)	H108	4
췌장절제술	371. 복강경을 이용한 췌장절제술	H111	7
	372. 개복에 의한 췌장절제술	H112	7
췌장 수술	373. 복강경을 이용한 췌장 수술	H121	4
	374. 개복에 의한 췌장 수술	H122	4
기타 간담도 및 췌장 시술	375. 역행성담관내시경 시술	H142	3
	376. 담석 제거를 위한 체외충격파쇄석술	H143	1
	377. 기타 간담도 및 췌장 수술	H144	3
	378. 경피적 담관경 시술	H145	3
	379. 경피적 담관 시술	H146	3
간담도 및 췌장의 경피적 시술	380. 경피적 혈관 시술(간의 악성종양 제외)	H152	3
	381. 담도협착을 위한 경피적 시술	H154	3
	382. 담석제거를 위한 경피적 시술	H155	3
	383. 경피적 혈관 시술(간의 악성종양의 경우), 소작술 동반	H156	6
	384. 경피적 혈관 시술(간의 악성종양의 경우), 소작술 미동반	H157	6
출혈성 정맥류에 대한 내시경 시술	385. 출혈성 정맥류에 대한 내시경 시술	H500	1
간암의 경피적 치료술	386. 간암의 경피적 치료술	H510	6
간담도 및 췌장 질환의 경피적 배액술	387. 간담도 및 췌장 질환의 경피적 배액술	H520	3
양쪽 또는 복수 주요 관절 수술	388. 양쪽 또는 복수 주요 관절 수술(치환술의 경우)	I011	4
	389. 양쪽 또는 복수 주요 관절 수술(치환술 제외)	I012	3
고관절 재치환술 및 치환술	390. 고관절 전재치환술	I021	4
	391. 고관절 전치환술	I022	4
	392. 고관절 부분치환술	I023	4
슬관절 재치환술 및 치환술	393. 슬관절 전재치환술	I031	3
	394. 슬관절 전치환술	I032	3
	395. 슬관절 부분치환술	I033	3

기타 관절 재치환술 및 치환술	396. 기타 관절 전재치환술	I041	2
	397. 기타 관절 전치환술	I042	2
	398. 기타 관절 부분치환술	I043	2
	399. 인공관절삽입물 제거술	I044	2
혈관부착 골피부판 이식 및 사지 재접합술	400. 혈관부착 골피부판 이식 및 사지 재접합술	I050	4
척추강내 병소절제술	401. 척수내 종양절제술	I061	6
	402. 척추강내 병소절제술(척수병증 동반)	I062	6
	403. 척추강내 병소절제술(척수병증 미동반)	I063	6
	404. 척추강내 병소절제술(척추고정술 동반)	I064	6
척추변형 척추고정술	405. 청소년기 척추변형 척추고정술	I071	5
	406. 성인기 척추변형 척추고정술(감압술 동반)	I072	5
	407. 성인기 척추변형 척추고정술(감압술 미동반)	I073	5
기타 척추 수술	408. 척추고정술(척수병증 동반)	I081	4
	409. 척추고정술(척수병증 미동반)	I082	4
	410. 척추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척수병증 동반)	I083	2
	411. 척추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척수병증 미동반)	I084	2
	412. 기타 척추 수술(척수병증 동반)	I085	1
	413. 기타 척추 수술(척수병증 미동반)	I086	1
척추 중재시술	414. 척추 중재시술(뼈에 시행한 경우)	I091	1
	415. 척추 중재시술(신경에 시행한 경우)	I092	1
신경절제술 및 척추강내 약물주입 펌프이식술	416. 척추신경자극기 및 약물주입 펌프의 설치술 또는 교환술	I101	3
	417. 척추신경자극기 및 약물주입 펌프의 시험적 거치술 또는 제거술	I102	1
절단술	418. 주요 절단술	I111	7
	419. 기타 절단술	I112	3
골종양의 절제술	420. 골악성종양의 광범위 절제술(재건술 동반)	I121	7
	421. 골악성종양의 광범위 절제술(골반골, 대퇴골, 하퇴골)	I122	7
	422. 골악성종양의 광범위 절제술(기타)	I123	7
	423. 골양성종양의 소파술 또는 절제술	I124	2
골수염 및 농양 수술	424. 골수염 및 농양 수술(골반골, 대퇴골, 하퇴골, 상완골, 전완골, 쇄골)	I131	2
	425. 골수염 및 농양 수술(기타)	I132	1
	426. 근농양 배농술	I133	1
고관절 및 대퇴부 수술	427. 양쪽 또는 복수 고관절 및 대퇴부 수술	I141	3
	428. 한쪽 고관절 및 대퇴부 수술	I142	2
상완골, 경골 및 비골 수술	429. 상완골, 경골 및 비골 수술	I160	2
단단성형술	430. 단단성형술(수족지 제외)	I171	2
	431. 단단성형술(수족지)	I172	2

견부 수술	432. 회전근개 수술	I181	1
	433. 관절와순 수술	I182	1
	434. 복수 진단 견부 수술	I183	1
	435. 기타 견부 수술	I184	1
슬부 수술	436. 십자인대 수술	I191	1
	437. 반달연골 수술, 양쪽	I192	1
	438. 반달연골 수술, 한쪽	I193	1
	439. 기타 슬관절 수술	I194	1
주관절 및 전완부 수술	440. 주관절 및 전완부 수술	I200	1
족부 및 족관절 수술	441. 족부 및 족관절 힘줄인대 수술	I211	1
	442. 족관절 골연골 병변 수술	I212	1
	443. 기타 족부 및 족관절 수술	I213	1
체내고정장치 제거술	444. 체내고정장치 제거술	I220	1
완관절 및 수부 수술	445. 주요 완관절 및 수부 수술	I251	1
	446. 단순 완관절 및 수부 수술	I252	1
미세혈관 조직이식 또는 피부이식	447. 미세혈관 조직이식	I261	3
	448. 기타 피판술	I262	2
	449. 피부 및 지방 이식술	I263	2
연조직 수술	450. 복잡한 연조직 수술	I271	1
	451. 주요 연조직 수술	I272	1
	452. 단순 연조직 수술	I273	1
기타 골절 수술	453. 골반 및 비구 골절 수술	I281	3
	454. 대퇴부 골절 수술	I282	3
	455. 슬관절 및 하퇴골 골절 수술	I283	3
	456. 족관절 및 족부 골절 수술	I284	2
	457. 견부 및 상완골 골절 수술	I285	3
	458. 전완부 골절 수술	I286	2
	459. 수부 골절 수술	I287	1
기타 결합조직 수술	460. 기타 결합조직 수술	I290	1
복잡 인공관절치환술	461. 복잡 양쪽 또는 복수 인공관절치환술	I301	4
	462. 복잡 인공관절전치환술, 주요(고관절, 슬관절)	I302	4
	463. 복잡 인공관절전치환술, 기타(견관절, 주관절, 족관절)	I303	2
	464. 복잡 인공관절전치환술, 주요(고관절, 슬관절)	I304	4
	465. 복잡 인공관절전치환술, 기타(견관절, 주관절, 족관절)	I305	2
	466. 복잡 인공관절부분치환술	I306	3
복잡 척추 수술	467. 복잡 척추고정술	I311	4
	468. 복잡 척추후궁절제술	I312	2
복잡 관절 수술	469. 복잡 사지골절정복술	I321	2
	470. 복잡 관절고정술	I322	2
	471. 복잡 사지관절절제술	I323	1
	472. 복잡 가관절수술	I324	2
	473. 복잡 반월판연골절제술	I325	1

복잡 근골격계 염증성 질환 수술	474. 복잡 화농성관절염절개술	I331	1
	475. 복잡 골수염 및 농양수술	I332	1
근골격계 질환의 경피적 배액술	476. 근골격계 질환의 경피적 배액술	I500	1
피부, 피하조직 및 유방 질환에 대한 미세혈관 조직이식	477. 피부, 피하조직 및 유방 질환에 대한 미세혈관 조직이식	J010	3
피판술, 피부이식술 및 변연절제술(피부궤양, 봉소염의 경우)	478. 피판술(피부궤양, 봉소염의 경우)	J021	2
	479. 피부 이식술(피부궤양, 봉소염의 경우)	J022	2
피판술, 피부이식술 및 변연절제술(피부궤양, 봉소염 제외)	480. 피판술(피부궤양, 봉소염 제외)	J031	2
	481. 피부 이식술(피부궤양, 봉소염 제외)	J032	2
기타 피부, 피하조직수술	482. 피부 및 연조직 악성종양 적제술	J041	4
	483. 피부 및 연조직 수술	J042	1
	484. 기타 피부, 피하조직수술	J043	1
유방재건술	485. 자가조직을 이용한 유방재건술	J051	3
	486.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재건술	J052	3
주요 유방 수술	487. 근치 유방절제술	J061	7
	488. 유방절제술(악성종양의 경우)	J062	7
	489. 유방절제술(악성종양 제외)	J063	2
단순 유방 수술	490. 진공흡입보조장치를 이용한 단순 유방 수술	J071	1
	491. 절개에 의한 단순 유방 수술	J072	1
액와 수술	492. 액와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J081	4
	493. 액와 수술(악성종양 제외)	J082	1
기타 유방 및 액와 수술	494. 기타 유방 및 액와 수술	J090	1
항문 주위 및 모소 수술	495. 항문 주위 및 모소 수술	J100	1
	496. 교감신경절제술	J110	2
내분비, 영양 및 대사장애 절단술	497. 내분비, 영양 및 대사장애 절단술(수족부 제외)	K011	7
	498. 내분비, 영양 및 대사장애 수족부 절단술	K012	3
뇌하수체 수술	499. 천막상부 종양 절제술	K021	8
	500. 복잡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절제술	K023	8
	501. 단순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절제술	K024	8
부신 수술	502. 복강경을 이용한 부신수술	K031	4
	503. 개복에 의한 부신수술	K032	4
내분비, 영양 및 대사장애 피부이식 및 상처변연절제술	504. 내분비, 영양 및 대사장애 유리 피판술	K041	2
	505. 내분비, 영양 및 대사장애 기타 피판술	K042	2
	506. 내분비, 영양 및 대사장애 피부 이식술	K043	2
부갑상선 수술	507. 내시경을 이용한 부갑상선 수술	K051	2
	508. 절개에 의한 부갑상선 수술	K052	2
주요 갑상선 악성 종양 수술	509. 주요 갑상선 악성 종양 수술(양쪽)	K063	4
	510. 주요 갑상선 악성 종양 수술(한쪽)	K064	4
주요 갑상선 악성 종양 제외 수술	511. 주요 갑상선 악성 종양 제외 수술(양쪽)	K075	2
	512. 주요 갑상선 악성 종양 제외 수술(한쪽)	K076	2
기타 갑상선 수술	513. 기타 갑상선 수술	K080	1

기타 내분비, 영양 및 대사장애 수술	514. 복강경을 이용한 비만대사수술	K091	1
	515. 개복에 의한 비만대사수술	K092	1
	516. 기타 내분비, 영양 및 대사장애 수술	K490	1
복막투석 도관 삽입술	517. 복막투석 도관 삽입술	L010	2
신장 및 비뇨기계 신생물 수술	518. 주요 신장, 신우 및 요관 신생물 수술	L021	7
	519. 기타 신장, 신우 및 요관 신생물 수술	L022	7
	520. 주요 방광 및 골반 신생물 수술	L023	7
	521. 기타 방광, 골반 및 요도 신생물 수술	L024	5
	522. 경요도 요관 및 방광 신생물 수술	L025	4
	523. 전립선 신생물 수술	L026	4
	524. 복강경을 이용한 신장 및 비뇨기계 신생물 수술	L027	7
신장 및 신우 수술	525. 복강경을 이용한 신장 및 신우 수술	L031	4
	526. 개복에 의한 신장 및 신우 수술	L032	4
	527. 경피적 신장 및 신우 수술, 한쪽	L033	3
	528. 경피적 신장 및 신우 수술, 양쪽	L034	3
요관 수술	529. 요관 수술	L040	2
방광 수술	530. 개복에 의한 방광 수술	L051	4
	531. 경피적 방광 수술	L052	2
	532. 경요도 방광 수술	L053	1
전립선 수술	533. 전립선 수술	L060	2
요도 수술	534. 주요 요도 수술	L071	1
	535. 요도경하 요도 수술	L072	1
	536. 기타 요도 수술	L073	1
	537. 복잡 요실금 수술	L074	1
	538. 단순 요실금 수술	L075	1
요로 결석 수술	539. 복강경을 이용한 요로 결석 수술	L081	4
	540. 신장, 신우 및 요관 결석 수술	L082	4
	541. 경요도적 요관 결석 수술	L083	2
	542. 방광 및 요도 결석 수술	L084	4
	543. 연성내시경하 수술	L085	2
요로결석 제거를 위한 체외충격파쇄석술	544. 요로결석 제거를 위한 체외충격파쇄석술, 복잡	L091	1
	545. 요로결석 제거를 위한 체외충격파쇄석술, 단순	L092	1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신경 자극기 설치술	546.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신경 자극기 설치술	L101	3
	547.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시험적 거치술	L102	1
요로 질환 수술	548. 경요도 요로 질환 수술	L111	1
	549. 외상 및 감염성 요로 질환 수술	L112	1
	550. 선천성 요로 질환 수술	L113	7
기타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경피적 시술	551. 기타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경피적 시술	L120	2
기타 신장 및 비뇨기계 시술	552. 혈액투석을 위한 단락 또는 동정맥루 조성술	L131	2
	553. 혈액투석 동정맥루의 경피적 수술, 복잡	L132	2
	554. 혈액투석 동정맥루의 경피적 수술, 단순	L133	2
	555. 기타 신장 및 비뇨기계 시술	L134	1

방광요도경 시술	556. 방광요도경 시술	L510	1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경피적 배액술	557.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경피적 배액술	L520	1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경피적 경화술	558.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의 경피적 경화술	L530	1
남성 골반 수술	559. 남성 골반 수술	M010	1
전립선 적출술	560. 주요 전립선 적출술	M021	4
	561. 기타 전립선 적출술	M022	3
기타 전립선 수술	562. 기타 전립선 수술	M030	1
음경 수술	563. 복잡 음경 수술	M041	1
	564. 단순 음경 수술	M042	1
	565. 페이로니 병 수술	M043	1
포경 수술	566. 포경 수술	M050	1
요도 수술	567. 주요 요도 수술	M061	1
	568. 단순 요도 수술	M062	1
음낭 수술	569. 복잡 음낭 수술	M071	1
	570. 단순 음낭 수술	M072	1
고환 수술	571.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 고환 수술	M081	4
	572. 개복에 의한 복잡 고환 수술	M082	4
	573. 단순 고환 수술	M083	1
기타 고환 수술 및 생식기 적출술	574. 복강경을 이용한 정계정맥류	M091	4
	575. 개복에 의한 정계정맥류	M092	4
	576. 고환 및 생식기 적출술	M093	7
기타 남성생식기계 시술	577. 기타 남성생식기계 시술(악성종양의 경우)	M101	4
	578. 기타 남성생식기계 시술(악성종양 제외)	M102	1
방광요도경 시술	579. 방광요도경 시술	M500	1
자궁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580.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N011	7
	581. 개복에 의한 자궁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N012	7
주요 자궁절제술(악성종양 제외)	582. 복강경을 이용한 주요 자궁절제술(악성종양 제외)	N021	2
	583. 개복에 의한 주요 자궁 절제술(악성종양 제외)	N022	2
단순 자궁 수술(악성종양 제외)	584. 복강경을 이용한 단순 자궁 수술(악성종양 제외)	N031	2
	585. 개복에 의한 단순 자궁 수술(악성종양 제외)	N032	2
난소 및 부속기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586. 복강경을 이용한 난소 및 부속기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N041	7
	587. 개복에 의한 난소 및 부속기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N042	7
난소 수술(악성종양 제외)	588. 복강경을 이용한 난소 수술(악성종양 제외)	N051	2
	589. 개복에 의한 난소 수술(악성종양 제외)	N052	2
부속기 수술(악성종양 제외)	590. 복강경을 이용한 부속기 수술(악성종양 제외)	N061	2
	591. 개복에 의한 부속기 수술(악성종양 제외)	N062	2

자궁경부, 질 및 외음부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592.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경부, 질 및 외음부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N071	6
	593. 개복에 의한 자궁경부, 질 및 외음부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N072	6
자궁경부, 질 및 외음부 수술(악성종양 제외)	594.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경부, 질 및 외음부 수술(악성종양 제외)	N081	1
	595. 자궁경부, 질 및 외음부 수술(악성종양 제외)	N082	1
기타 골반 수술 복원술	596.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골반 수술	N091	1
	597. 개복에 의한 기타 골반 수술	N092	1
주요 여성생식기계 복원술	598. 복강경을 이용한 주요 여성생식기계 복원술	N101	1
	599. 개복에 의한 주요 여성생식기계 복원술	N102	1
기타 여성생식기계 복원술	600. 기타 여성생식기계 복원술	N110	1
복강경 수술 및 기타 난관 결찰술	601. 복강경 수술	N121	1
자궁경 수술	602. 자궁경 수술	N130	1
자궁소파술	603. 치료적 자궁소파술	N141	1
기타 여성생식기계 수술	604.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여성생식기계 수술	N161	1
	605. 개복에 의한 기타 여성생식기계 수술	N162	1
여성생식기계 경피적 혈관 수술	606. 여성생식기계 경피적 혈관 수술	N180	2
제왕절개분만(단태아)	607. 일반 제왕절개분만(단태아)	O011	1
	608. 고위험 제왕절개분만(단태아)	O012	1
	609. 질식분만 시도 후 제왕절개분만(단태아)	O013	1
제왕절개분만(다태아)	610. 질식분만 시도 후 제왕절개분만(다태아)	O022	1
	611. 일반 제왕절개분만(다태아)	O023	1
	612. 고위험 제왕절개분만(다태아)	O024	1
자궁외 임신 주요 수술	613.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외 임신 주요 수술	O081	4
	614. 개복에 의한 자궁외 임신 주요 수술	O082	4
자궁외 임신 기타 수술	615.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외 임신 기타 수술	O091	4
	616. 개복에 의한 자궁외 임신 기타 수술	O092	4
자궁경관봉축술	617. 치료적 자궁경관봉축술	O102	1
분만 및 유산 후 관련 장애(수술시행)	618. 분만 및 유산 후 관련 장애(수술시행)	O110	1
자궁소파술 및 흡인소파술	619. 자궁소파술 및 흡인소파술	O120	1
분만 및 유산 관련 자궁적출술	620. 분만 및 유산 관련 자궁적출술	O130	2
비장 절제술	621. 성인의 복강경을 이용한 비장 절제술	Q012	4
	622. 성인의 개복에 의한 비장 절제술	Q013	4
림프종 및 백혈병(주요 수술 시행)	623. 림프종 및 백혈병(주요 수술 시행)	R010	4
기타 신생물 질환(주요 수술 시행)	624. 기타 신생물 질환(주요 수술 시행)	R020	4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개두술	625.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개두술	W010	8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근골격계 주요 수술	626.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근골격계 주요 수술	W020	5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복부 수술	627.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복부 수술	W030	6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기타 수술	628.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기타 수술	W040	4
하지 손상의 미세혈관 조직이식 및 피부이식	629. 하지 손상의 미세혈관 조직이식	X011	3
	630. 하지 손상의 국소 피판 및 피부이식	X012	2
수부 손상의 미세혈관 조직이식 및 피부이식	631. 수부 손상의 미세혈관 조직이식	X021	3
	632. 수부 손상의 국소 피판 및 피부이식	X022	2
기타 손상의 미세혈관 조직이식 및 피부이식	633. 기타 손상의 미세혈관 조직이식 및 피부이식	X030	3
하지 손상의 기타 수술	634. 하지 손상의 골 및 관절 수술	X041	2
	635. 하지 손상의 기타 수술	X042	1
수부 손상의 기타 수술	636. 수부 손상의 골 및 관절 수술	X051	2
	637. 수부 손상의 기타 수술	X052	1
기타 손상의 수술	638. 기타 손상의 수술	X060	1
중증 화상(피부 이식 동반)	639. 중증 화상(피부 이식 동반)	Y010	5
중등도 화상(피부이식 혹은 흡입손상을 동반)	640. 중등도 화상(피부이식 혹은 흡입손상 동반)	Y020	2

주1) 상기의 「수술시술코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수술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하고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분류체계에 따라 부여된 「ADRG(Adjacent DRG)」중 회사가 정한 코드를 말합니다.

주2) 이 특별약관은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에서 분류된 「ADRG」중 다음의 「ADRG」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ADRG」에서 주진단 범주(MDC)에 해당하는 첫번째 자리(알파벳)를 제외하고 2,3번째 자리에 해당하는 숫자가 “60” ~ “99”에 해당하는 경우

예시

「ADRG」가 “B601”의 경우 첫번째 자리(알파벳(B))를 제외하고 2,3번째 자리에 해당하는 숫자가 “60”이므로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아래 표에 기재된 「ADRG」

수술 시술 코드	수술 및 시술명
B501	치료적 성분채집술
B502	신경계 면역요법
B510	뇌전증의 지속적 비디오 뇌파검사 감시
B520	자기뇌파검사 지도화
D070	코성형술
D191	치조골 수술
D192	구강내 점막수술
D193	단순 혀 수술
D300	발치

D502	치아 보존치료
E031	호흡기 질환을 위한 진단적 시술
E501	침습적 인공호흡기 96시간 이상(신대체요법 동반)
E502	침습적 인공호흡기 96시간 이상(신대체요법 미동반)
E511	침습적 인공호흡기 96시간 미만(신대체요법 동반)
E512	침습적 인공호흡기 96시간 미만(신대체요법 미동반)
E540	경기관지 폐생검
E550	폐흉부질환의 침습인 생검
F501	심장 전기 생리 검사
F502	심장질환을 위한 심도자술 및 혈관조영술
F503	진단적 관상동맥 조영술
F504	심근생검
F505	심낭천자
G331	소화기계 질환을 위한 진단적 시술
H131	간담도 진단적 시술(악성종양의 경우)
H132	간담도 진단적 시술(악성종양 제외)
H530	진단적 역행성담체관내시경
I230	관절경검사
I240	생검을 포함한 골과 관절의 진단적 수술
I510	근골격계 질환의 침생검
J053	유두 및 유륜재건술
J500	유방 질환의 침습인생검
K500	갑상선 질환의 침습인생검
L500	요관경검사
M094	정관 수술
M510	전립선 생검
N122	복강경 검사 및 기타 난관 결찰술
N142	진단적 자궁소파술
N151	복강경을 이용한 여성생식기계 질환을 위한 진단적 수술
N152	개복에 의한 여성생식기계 질환을 위한 진단적 수술
N170	방사선원삽입요법(악성종양의 경우)
O041	일반 질식분만(초산)
O042	고위험 질식분만(초산)
O051	일반 질식분만(경산)
O052	고위험 질식분만(경산)
O061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일반 질식분만
O062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고위험 질식분만
O073	질식분만(복합 수술 동반)
O101	예방적 자궁경관봉축술
O141	분만 및 유산 관련 경피적 혈관 수술
O142	산욕기 관련 기타 경피적 혈관 수술
P010	입원후 5일 미만에, 사망하거나 전원된 신생아(중요 수술 시행)
P020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심흉복부/혈관 수술
P030	신생아, 입원시 체중 < 750g(중요 수술 시행)
P040	신생아, 입원시 체중 750-999g(중요 수술 시행)
P050	신생아, 입원시 체중 1000-1249g(중요 수술 시행)

P060	신생아, 입원시 체중 1250-1499g(중요 수술 시행)
P070	신생아, 입원시 체중 1500-1999g(중요 수술 시행)
P080	신생아, 입원시 체중 2000-2499g(중요 수술 시행)
P090	신생아, 입원시 체중 > 2499g(중요 수술 시행)
Q011	소아의 비장 절제술
Q020	기타 혈액 및 조혈기관 수술
R030	림프종 및 백혈병(기타 수술 시행)
R040	기타 신생물 질환(기타 수술 시행)
R500	치료적 성분채집술
T011	패혈증 수술(합병증 동반)
T012	패혈증 수술(합병증 미동반)
T013	외상 후 감염 수술
T014	수술 후 감염 수술
T015	기타 감염 질환 수술
U010	정신장애 치료목적의 수술
W050	다발성 중요 외상 치료목적의 복부 혈관색전술
Y030	기타 화상(피부이식 동반)
Z010	기타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수술

- ③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에서 규정한 “Error DRG” 및 “960 DRG”
 - Error DRG : 961, 962, 963, 990, 999

※ “Error DRG”라 함은 “주진단 범주(MDC)”와 일치하지 않는 수술 등을 뜻합니다.

거미막하출혈로 진단받고 경피적 심장판막성형술을 받은 경우는 주진단 범주(MDC)와 수술이 일치하지 않아 Error DRG가 생성되어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960 DRG”라 함은 “Error DRG”는 아니지만 입원 2일 이내에 조기 사망한 환자(신생아 제외)를 뜻합니다. 다만, 통원일 또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는 「수술시술코드」는 보장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시술코드 및 ADRG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발·관리하는 KDRG 버전 4.4(2021.1.1 기준)에서 정의된 ADRG코드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호, 2021.1.22.)에서 정의된 수가코드,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에서 정의된 분류번호 기준이며, 향후 ADRG코드 및 수가코드, 분류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ADRG코드 및 수가코드, 분류번호에 준하여 수술시술코드 및 ADRG를 결정합니다.

【별표104】 심근병증(허혈성제외)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심근병증	I4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I43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형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05】 주요심장염증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급성 심장막염	I30
심장막의 기타질환	I3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I32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I33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8
급성 심근염	I4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I41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형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06】 특정순환계질환(1-5종)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특정순환계질환 (1종) (당뇨병및이상 지질혈증포함)	본태성 고혈압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이상지질혈증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E78
	당뇨병	1형 당뇨병	E10
		2형 당뇨병	E11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
특정순환계질환 (2종)	특정 고혈압성 질환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
		고혈압성 심장병	I11
		고혈압성 신장병	I12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I13
	심장판막질환	이차성 고혈압	I15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	I34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장애	I35
		비류마티스성 삼첨판장애	I36
		폐동맥판장애	I3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 장애	I39
	특정 방실 · 좌각차단 및 전도장애	방실차단 1도	I44.0
		좌전성유속차단	I44.4
		좌후성유속차단	I44.5
		기타 및 상세불명의 섬유속차단	I44.6
		상세불명의 좌각차단	I44.7
		기타 전도장애	I45
	심장병 합병증 및 심장장애	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I5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I52
	죽상경화증	죽상경화증	I70
	말초 및 모세혈관 질환	기타 말초혈관질환	I73
		모세혈관의 질환	I7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동맥, 세동맥 및 모세 혈관의 장애	I79
	특정 정맥혈관 질환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I80
		기타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I82
		기타 부위의 정맥류	I86
	림프절 질환	기타 부위의 정맥류	I86
		비특이성 림프절염	I88
	특정 순환계통의 기타장애	림프관 및 림프절의 기타 비감염성 장애	I8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순환계통의 처치후 장애	I97
		심혈관매독	I98.0
		달리 분류된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서의 심혈관장애	I98.1

특정순환계질환 (3종)	급성 류마티스열	심장침범에 대한 언급이 없는 류마티스열	I00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	I01
		류마티스무도병	I02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류마티스성 승모판질환	I05
		류마티스성 대동맥판질환	I06
		류마티스성 삼첨판질환	I07
		다발판막질환	I08
		기타 류마티스심장질환	I09
	심장염증질환	급성 심장막염	I30
		심장막의 기타 질환	I3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I32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I33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8
		급성 심근염	I4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I41
	중증 방실차단	방실차단 2도	I44.1
		완전방실차단	I44.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심방실차단	I44.3
	부정맥	발작성 빈맥	I47
		심방세동 및 조동	I48
		기타 심장부정맥	I49
	특정 동맥혈관 질환	기타 동맥류 및 박리	I72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I74
		동맥 및 세동맥의 기타 장애	I77
	문맥혈전증	문맥혈전증	I81
특정순환계질환 (4종)	협심증	협심증	I20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4
		만성 허혈심장병	I25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폐색전증	I26
		기타 폐성 심장질환	I27
		폐혈관의 기타 질환	I28
	심근병증	심근병증	I4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I43
	심부전	심부전	I50
	경증 뇌혈관질환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기타 뇌혈관질환	I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I71
	식도정맥류	식도정맥류	I85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식도정맥류	l98.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출혈을 동반한 식도정맥류	l98.3
특정순환계질환 (5종)	급성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l21
		후속심근경색증	l22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l23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l46.0
	뇌출혈	거미막하출혈	l60
		뇌내출혈	l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l62
	뇌경색증	뇌경색증	l63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07】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협심증	I20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4
만성 허혈심장병	I25
발작성 빈맥	I47
심방세동 및 조동	I48
심부전	I50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08】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기타심장부정맥	I49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09】 난청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H90.3
한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반대편 청력은 정상	H90.4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H90.5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양쪽 청력소실	H90.6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한쪽 청력소실, 반대편 청력은 정상	H90.7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H90.8
기타 청력소실	H91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10】 과잉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과잉치	K00.1
과잉매복치	K01.18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11-1】 뇌심장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뇌질환	[뇌혈관질환] 1.거미막하출혈 2.뇌내출혈 3.기타 비외상성두개내 출혈 4.뇌경색(증) 5.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졸중 6.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7.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8.기타 대뇌혈관 질환 9.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대뇌혈관 장애 10.대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I60 I61 I62 I63 I64 I65 I66 I67 I68 I69
	[두개내손상] 1.두개내손상	S06
	[뇌전증] 1.간질 2.간질 지속상태	G40 G41
	[일과성허혈발작] 1.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및 관련 증후군	G45
	[파킨슨병] 1.파킨슨병 2.속발성 파킨슨증	G20 G21
	[뇌수막염]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4
심장 질환	[허혈성심장질환] 1.협심증 2.급성 심근경색증 3.속발성 심근경색증 4.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5.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 질환 6.만성 허혈성 심장 질환	I20 I21 I22 I23 I24 I25
	[대동맥류 및 대동맥류 박리] 1.대동맥류 및 박리	I71
	[흉부 혈관 및 심장의 손상] 1.흉곽의 혈관의 손상	S25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2.심장의 손상		S26
[기타 형태의 심장병]		
1.급성 심낭염		I30
2.심낭의 기타 질환		I31
3.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낭염		I32
4.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I33
5.비류마티스성 승모판 장애		I34
6.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 장애		I35
7.비류마티스성 삼첨판 장애		I36
8.폐동맥판 장애		I37
9.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8
10.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 판막 장애		I39
11.급성 심근염		I40
12.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I41
13.심근병증		I42
14.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I43
15.심방실 차단 및 좌각 차단		I44
16.기타 전도 장애		I45
17.심장 정지		I46
18.발작성 빈맥		I47
19.심방세동 및 조동		I48
20.기타 심장성 부정맥		I49
21.심부전		I50
22.심장 질환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I51
23.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 장애		I52
[류마티스 심장질환]		
1.심장 침습이 있는 류마티스 열		I01
2.류마티스성 승모판 질환		I05
3.류마티스성 대동맥판 질환		I06
4.류마티스성 삼첨판 질환		I07
5.다발성 판막 질환		I08
6.기타 류마티스성 심장 질환		I09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11-2】 급어 뇌심장질환 검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어 뇌심장질환 검사」로 분류되는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어·비급어 목록 및 급어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대 상 치 료		수가코드
뇌CT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조영제를사용하지않는경우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조영제를사용하는경우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제한적 CT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중재적시술유도 제2회부터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특수검사-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특수검사-삼차원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특수검사-CT 혈관조영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특수검사-Cine CT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특수검사-뇌조 CT	HA451 HA461 HA441 HA851 HA511 HA521 HA531 HA551 HA561
뇌MRI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일반-촬영료 등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뇌혈관-일반-촬영료 등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뇌혈관-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촬영료 등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뇌혈관-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일반-판독료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뇌혈관-일반-판독료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뇌혈관-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판독료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뇌혈관-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뇌혈관-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뇌혈관-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I101 HI135 HI201 HI235 HI301 HI401 HI501 HI535 HJ101 HJ135 HJ201 HJ235 HJ301 HJ401 HJ501 HJ535 HJ601 HJ635 HJ701 HJ735
뇌척수액검사	요추천자[뇌척수압측정포함]	C8000
뇌파검사	각성뇌파검사-18채널미만 각성뇌파검사-18채널미만(이동뇌파를실시한경우)	F6141 F6142

대 상 치 료		수가코드
	각성뇌파검사-18채널이상	FA141
	각성뇌파검사-18채널이상(이동뇌파를 실시한 경우)	FA142
	수면뇌파검사-18채널미만	F6145
	수면뇌파검사-18채널미만(각성뇌파검사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	F6144
	수면뇌파검사-18채널이상	FA145
	수면뇌파검사-18채널이상(각성뇌파검사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	FA144
	특수뇌파검사-약물 또는 물리적 유발 뇌파검사-18채널미만	F6147
	특수뇌파검사-약물 또는 물리적 유발 뇌파검사-18채널이상	FA147
	특수전극뇌파검사[비인두, 단축나비뼈, 나비뼈전극뇌파검사]-18채널 미만	F6148
	특수전극뇌파검사[비인두, 단축나비뼈, 나비뼈전극뇌파검사]-18채널 이상	FA148
	특수전극뇌파검사[비인두, 단축나비뼈, 나비뼈전극뇌파검사]-18채널 이상-나비뼈전극뇌파검사를 실시한 경우	F6140
	보행뇌파검사-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F6143
	보행뇌파검사-8시간 초과	F6146
	지속적 뇌파 감시[1일당]	F6149
	지속적 비디오 뇌파검사[두개강외, 1일당]-64채널미만	F6151
	지속적 비디오 뇌파검사[두개강외, 1일당]-64채널이상	F6153
심장CT	지속적 비디오 뇌파검사[두개강내, 1일당]-64채널미만	F6152
	지속적 비디오 뇌파검사[두개강내, 1일당]-64채널이상	F6154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고해상력	HA424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기타의 경우	HA434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HA464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제한적 CT	HA444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중재적 시술 유도 제2회부터	HA834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특수검사-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HA514
심장MRI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특수검사-삼차원	HA524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특수검사-CT 혈관조영	HA534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특수검사-Cine CT	HA554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일반-촬영료 등	HI124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24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중재적 시술 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24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일반-판독료	HJ124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24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중재적 시술 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24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24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24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일반-촬영료 등	HI140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40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3차원 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40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일반-판독료	HJ140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40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3차원 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40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외부병원 필름 판	HJ640

대 상 치 료		수가코드
	독-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40
심장 초음파 검사	심장-선천성 심질환 경흉부 심초음파	EB430
	심장-경흉부 심초음파-단순	EB431
	심장-경흉부 심초음파-일반	EB432
	심장-경흉부 심초음파-전문	EB433
	심장-부하 심초음파-약물부하	EB434
	심장-부하 심초음파-운동부하	EB435
	심장-태아정밀 심초음파	EB436
	심장-경식도 심초음파	EB611
	심장-선천성 심질환 경식도 심초음파	EB610
	심장-심장내 초음파	EB612

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11-3】 급여 뇌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조영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여 뇌혈관조영술」로 분류되는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대 상 치 료		수가코드
뇌혈관 조영술	두경부동맥조영-추골동맥	HA601
	두경부동맥조영-총경동맥	HA602
	두경부동맥조영-외경동맥	HA603
	두경부동맥조영-내경동맥	HA604
	두경부동맥조영-내경동맥폐색검사(조영술료 포함)	HA606
	두경부동맥조영-전뇌동맥	HA605
관상동맥 조영술	흉부동맥조영-우심방조영	HA610
	흉부동맥조영-우심실조영	HA611
	흉부동맥조영-좌심실조영	HA612
	흉부동맥조영-좌심방조영	HA613
	관상동맥조영	HA670
	이식된관동맥우회로조영촬영[환자본래의관상동맥조영촬영포함]	HA680
	이식된관동맥우회로조영촬영[환자본래의관상동맥조영촬영포함]-2개월관부터최대 3개월관	HA681
	이식된관동맥우회로조영촬영[환자본래의관상동맥조영촬영포함]과 동시촬영된좌 심실조영촬영	HA682

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12-1】 8대기관 양성신생물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간, 담관 및 췌장	간의 양성신생물, 간내담관의 양성신생물	D13.4
	간외담관의 양성신생물	D13.5
	췌장의 양성신생물	D13.6
갑상선	갑상선의 양성신생물	D34
위십이지장	위의 양성신생물	D13.1
	십이지장의 양성신생물	D13.2
	위 및 십이지장의 용종	K31.7
대장	맹장의 양성신생물	D12.0
	충수의 양성신생물	D12.1.
	상행결장의 양성신생물	D12.2
	횡행결장의 양성신생물	D12.3
	하행결장의 양성신생물	D12.4
	구불결장의 양성신생물	D12.5
	상세불명의 양성신생물	D12.6
	직장구불결장의 양성신생물	D12.7
	직장의 양성신생물	D12.8
	직장용종	K62.1
	결장의 용종	K63.5
기관지 및 폐	기관지 및 폐의 양성신생물	D14.3
남성생식기관	남성생식기관의 양성신생물	D29
여성생식기관	자궁의 평활근종	D25
	자궁의 기타 양성신생물	D26
	난소의 양성신생물	D27
	기타 및 상세불명 여성생식기관의 양성신생물	D28
	여성생식기관의 용종	N84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12-2】 8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 수술(급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8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 수술(급여)」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내 용		수가코드
내시경 종양제거 수술		Q7611~Q7789, QX706
간	간농양(낭종) 수술	
	가. 개복에 의한 흡입 또는 주입술	Q7211
	나. 배액을 위한 간절개술	Q7212
	다. 조대술	Q7213
	라. 낭종적출술	Q7214
담낭 및 담도	담도낭종수술	
	가. 우회술	Q7331
	나. 절제술	Q7332
	담도종양수술	
	가. 양성	Q7341
췌장	췌장가성낭종수술	
	가. 조대술	Q7541
	나. 외부배액법	Q7542
	다. 내부배액법	Q7543
	췌장양성종양(낭종, 선종) 절제	Q7550
갑상선	갑상선수술	
	가. 갑상선염 전절제술	
	(1) 편측	P4551
	(2) 양측	P4552
	나. 갑상선염 아전절제술	
	(1) 편측	P4553
	(2) 양측	P4554
	갑상선설관낭종절제술	P4558
위십이지장	위용종절제술	Q2521
대장	소장 또는 결장의 용종절제술	Q2645
	장간만종양적출술	
	가. 장관절제를 동반하는것	Q2761
	나. 기타의 것	Q2762
	직장종양의 절제술	
	가. 경항문 접근	Q2891
	나. 경천골 또는 방천골 접근	Q2890
	다. 복부접근	Q2892
	라. 경항문 내시경적 미세수술	Q2893
기관지 및 폐	폐쇄기절제술	
	가. 단일	O1401
	나. 2-3개	O1403
	다. 4-5개	O1404
	라. 6개 이상	O1405

내 용		수가코드
	폐구역절제술	O1410
	폐엽절제술	
	가. 단일폐엽절제술	O1421
	나. 쌍폐엽절제술	O1422
	다. 폐엽과 폐구역절제술	O1423
	라. 소매폐엽절제술	O1424
남성 생식기관	외성기 종양적출술	
	가. 양성	R4001
여성 생식기관	외음부 종양적출술	
	가. 양성	R4066
	질 종양적출술	
	가. 양성	R4070
	자궁근정절제술	
	가. 복부접근	
	(1) 단순	R4124
	(2) 복잡	R4127
	나. 질부접근	R4123
	다. 복강경술	
	(1) 단순	R4128
	(2) 복잡	R4129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	
	가. 3cm 미만	R4125
	나. 3cm 이상(다발성 포함)	R4126
	자궁경관점막용종절제술	R4240
	자궁경하 자궁내막용종절제술	R4241
	부속기 종양 적출술	
	가. 양성	R4421

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13】 갑상선기능항진증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갑상선독증(갑상선기능항진증)	E05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14】 뇌전증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뇌전증	G40
뇌전증지속상태	G41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15】 특정귀어지럼증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메니에르병	H81.0
양성 발작성 현기증	H81.1
전정신경세포염	H81.2
기타 말초성 현기증	H81.3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16】 원형탈모증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원형탈모증	L63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17】 특정폐혈증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연쇄알균폐혈증	A40
기타 폐혈증	A41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형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18】 급성신우신염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급성세뇨관-간질신장염	N10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형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19】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선천성 포함)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무증상 요오드결핍성 갑상선기능저하증	E02
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	E03
자가면역성 갑상선염	E06.3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20】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선천성 제외)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무증상 요오드결핍성 갑상선기능저하증	E02
의약품 및 기타 외인성 물질에 의한 갑상선기능저하증	E03.2
감염후 갑상선기능저하증	E03.3
갑상선의 위축(후천성)	E03.4
점액부종혼수	E03.5
기타 명시된 갑상선기능저하증	E03.8
상세불명의 갑상선기능저하증	E03.9
자가면역성 갑상선염	E06.3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21】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내 용	수가코드
갑상선생검-침생검	C8591

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22】 특정4대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소화성궤양	K25~K26
- 위궤양	K25
- 십이지장궤양	K26
2. 점막 관련 림프모양조직의 림프절외 변연부 B-세포림프종[MALT-lymphoma]	C88.4
3. 위의 악성 신생물, 조기	
- 분문(噴門)의 악성 신생물, 조기	C16.00
- 위의 저부의 악성 신생물, 조기	C16.10
- 위의 체부의 악성 신생물, 조기	C16.20
- 유문동의 악성 신생물, 조기	C16.30
- 유문의 악성 신생물, 조기	C16.40
- 상세불명의 위의 소만부의 악성 신생물, 조기	C16.50
- 상세불명의 위의 대만부의 악성 신생물, 조기	C16.60
- 위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조기	C16.80
-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조기	C16.90
4.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	D69.3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환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환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23-1】 카티(CAR-T) 보장 대상 암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	C83.3
2.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ALL]	C91.0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형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이 특별약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에 따라 「카티(CAR-T) 보장 대상 암」을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23-2】 카티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분류표

- ① 아래 "카티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은 2022년 7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 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 "카티치료제" 해당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の内容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명과 성분명		
- 성분명은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티치료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1	티사젠렉류셀 Tisagenlecleucel	김리아주(티사젠렉류셀)

【별표124】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6호, 2024. 1. 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산정특례대상 및 적용기간	특정기호
1. 【별표124-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표124-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수술)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V191
2. 【별표124-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에서 I60~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단, 【별표124-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수술)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68
3. 【별표124-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에서 I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단, 【별표124-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수술)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75

- 주) 1. NIHSS란,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의 약자로 의료 제공자가 뇌졸중으로 인한 손상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하는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대상 해당여부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표124-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6호, 2024. 1. 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별첨1]에 해당하는 아래의 상병을 말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뇌혈관질환	I60~I67
경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	I72.0
후천성 동정맥루	I77.0
순환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28.0 ~ Q28.3
두개내손상	S06

주) 향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에 해당하는 상병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

【별표124-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수술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수술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6호, 2024. 1. 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별첨1]에 해당하는 아래의 수술을 말합니다.

내 용	수가코드
혈중제거를 위한 개두술	S4621,S4622
뇌동맥류수술	S4641,S4642
뇌동정맥기형적출술	S4653~S4658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S4661,S4662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S4711~S4715
뇌엽절제술	S4780
뇌 기저부 수술	S4801~S4803
중추신경계정위수술 -혈중제거	S4756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	M6593,M6594, M6597
경피적뇌혈관약물성형술	M6599
경피적혈관내 금속스텐트삽입술	M6601,M6602, M6605
경피적혈전제거술	M6630,M6632, M6635,M6636, M6637,M6639
혈관색전술	M1661~M1663, M1676, M1677, M1667 M6644
천두술	N0322~N0324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	N0333
혈관내 죽종제거술	O0226,O0227, O2066
경동맥결찰술	S4670
뇌내시경수술	S4744
뇌 정위적 방사선수술	HD113~HD115

주) 향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에 해당하는 상병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

【별표125】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6호, 2024. 1. 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산정특례대상 및 적용기간	특정기호
【별표125-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표125-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수술)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별표125-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약제성분)에 해당하는 약제를 투여받은 경우 최대 30일. 단, 【별표125-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에 해당하는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별표125-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수술)에 해당하는 수술 중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V192

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 대상 해당여부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표125-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6호, 2024. 1. 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별첨2]에 해당하는 아래의 상병을 말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심장의 양성 신생물	D15.1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	I01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05~I09
허혈심장질환	I20~I25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 I28
기타 형태의 심장병	I30~I51
대동맥의죽상경화증	I70.0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I7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동맥, 세동맥 및 모세혈관의 장애	I79.0, I79.1
대동맥궁증후군[다카야스]	M31.4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Q20~Q25
대정맥혈관의 선천기형	Q26.0~Q26.4, Q26.8, Q26.9
흉부 혈관의 손상, 심장의 손상	S25~S26

주) 향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에 해당하는 상병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

【별표125-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수술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수술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6호, 2024. 1. 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별첨2]에 해당하는 아래의 수술을 말합니다.

내 용	수가코드
동맥관 우회로 조성술	OA640,OA641, OA647~OA649, O1640~O1641, O1643~O1649
심장 창상봉합술	O1660
동맥관개존폐쇄술	O1671, O1672
대동맥축착증수술	O1680
폐쇄식 승모판 교련 절개술	O1690
심혈관단락술	O1701, O1702
폐동맥결찰술	O1703, O1704
심방중격결손조성술	O1705
심방, 심실중격결손증수술	O1710, O1711, O1721~O1723
판막협착증수술	O1730, O1740, O1750, O1760
심방중격결손증 겸 폐동맥판막협착증수술	O1770
판막성형술	O1781~O1784
인공판막치환술	O1791~O1793, O1797
인공판막재치환술	O1794~O1796, O1798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O1799
활로씨 4 증후군 근본수술	O1800
심실중격결손증 겸 폐동맥판막협착증수술	O1810
심내막상결손증 수술	O1821, O1822
좌심실류질제술	O1823
좌심실용적축소성형술	O1824
좌심실, 우심실 유출로 성형술	O1825, O1826
관상동맥 내막절제술	O1830
발살바동 동맥류파열수술	O1840
동정맥기형교정술	O1841
기타 복잡기형에 대한 심장수술	O1851, O1852
좌우폐동맥 성형술	O1861
기능적 단심실증 교정술	O1873, O1874

라스텔리 수술	O1875
총 폐정맥 환류이상증 수술	O1878
대혈관전위증 수술	O1879, O1881, O1882, O1883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O0881, O0882, O0883, O0886, O0887, O0888, O0889
인공심폐순환	O1890, O1891
개흉심장마사지	O1895
부분체외순환	O1901~O1902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O1903~O1904, O1907
국소관류	O1910
대동맥내풍선펌프	O1921, O1922
심낭루조성술	O1931
심낭창형성술	O1932, O1935
심막절제술	O1940
폐동맥혈전제거술	O1950
대동맥-폐동맥 창 폐쇄술	O1960
심내이물제거술	O1970
심장종양제거술	O1981, O1982
심박기거치술	O2001, O2004, O2005, O2009, O0203~O0210, O0236, O0237, O0241~O0243
부정맥수술	O2006, O2007
심율동전환 제세동기거치술	O0211, O0212, O2211, O2212
동맥류 절제술	O0231, O2021, O2022, O2031~O2033
혈전제거술-심장	O0260
경피적 동맥관개존 폐쇄술	M6510
경피적 심방중격결손폐쇄술	OZ751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M6513
경피적 심방중격절개술	M6521, M6522
경피적 심장 판막성형술	M6531~M6533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냉각절제술	M6541~M6543, M6546~M6548, M6550 및 M0651, M0657, M0658, M0661, M0662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M6551,M6552, M6553,M6554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M6561~M6564, M6565~M6567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	M6571,M6572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M6580,M6581, M6582
경피적 폐동맥판 삽입술	M6585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M6595~M6597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삽입술	M6603~M6605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설치술	M6611~M6613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	M6651, M6652
경피적 혈관내 죽종제거술	M6620
경피적 혈전제거술	M6632,M6634, M6638,M6639
혈관색전술	M6644
심장이식술	Q8080
심장 및 폐이식술	Q8103
디케이에스수술	O1853
관상동맥성형술	O1854
대동맥박리수술	O0232~O0234
대동맥근부수술	O0235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 거치술	O2221~O2224

주) 향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에 해당하는 상병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

【별표125-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약제성분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약제성분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6호, 2024. 1. 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별첨2]에 해당하는 아래의 약제성분을 말합니다.

약제성분명	주사제
Alteplase	주사제
Tenecteplase	주사제
Urokinase	주사제

주) 향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에 해당하는 상병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

【별표126】 급여 창상봉합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창상봉합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분 류	수가코드
창상봉합술	
가. 안면 또는 경부	
(1) 단순봉합	
(가) 표재성인 것	
3)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S0027
4)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S0028
5)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S0029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52.00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52.00점을 추가 가산한다.	S0030
(나) 근육에 달하는 것	
1) 길이 1.5cm 미만	S0031
2) 길이 1.5cm 이상~3.0cm 미만	S0032
3)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S0037
4)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S0038
5)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S0039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52.00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52.00점을 추가 가산한다.	S0040
(2) 변연절제를 포함	
(가) 표재성인 것	
3)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SA027
4)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SA028
5)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SA029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63.81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63.81점을 추가 가산한다.	SA030
(나) 근육에 달하는 것	
1) 길이 1.5cm 미만	SA031
2) 길이 1.5cm 이상~3.0cm 미만	SA032
3)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SA037
4)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SA038
5)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SA039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63.81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63.81점을 추가 가산한다.	SA040
나. 안면과 경부 이외	
(1) 단순봉합	
(가) 표재성인 것	
3) 길이 5.0cm 이상~10.0cm 미만	SB029

분 류		수가코드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78.50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78.50점을 추가 가산한다.	SB030
	(나) 근육에 달하는 것	
	1)길이 2.5cm 미만	SB031
	2)길이 2.5cm 이상~5.0cm 미만	SB032
	3)길이 5.0cm 이상~10.0cm 미만	SB039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78.50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78.50점을 추가 가산한다.	SB040
	(2) 변연절제를 포함	
	(가) 표재성인 것	
	3)길이 5.0cm 이상~10.0cm 미만	SC029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103.14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103.14점을 추가 가산한다.	SC030
	(나) 근육에 달하는 것	
	1)길이 2.5cm 미만	SC031
	2)길이 2.5cm 이상~5.0cm 미만	SC032
	3)길이 5.0cm 이상~10.0cm 미만	SC039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103.14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103.14점을 추가 가산한다.	SC040

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27】 급어 안면부 창상봉합술(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창상봉합술」은 「건강보험 행위 급어·비급어 목록 및 급어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분 류		수가코드
창상봉합술		
가. 안면 또는 경부		
(1) 단순봉합		
(가) 표재성인 것		
3)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S0027
4)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S0028
5)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S0029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52.00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52.00점을 추가 가산한다.		S0030
(나) 근육에 달하는 것		
1)길이 1.5cm 미만		S0031
2)길이 1.5cm 이상~3.0cm 미만		S0032
3)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S0037
4)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S0038
5)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S0039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52.00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52.00점을 추가 가산한다.		S0040
(2) 변연절제를 포함		
(가) 표재성인 것		
3)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SA027
4)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SA028
5)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SA029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63.81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63.81점을 추가 가산한다.		SA030
(나) 근육에 달하는 것		
1)길이 1.5cm 미만		SA031
2)길이 1.5cm 이상~3.0cm 미만		SA032
3)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SA037
4)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SA038
5)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SA039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63.81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63.81점을 추가 가산한다.		SA040

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어·비급어 목록 및 급어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28】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6호, 2024. 1. 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외상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V273

주) 향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해당하는 경우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

【별표129】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로 분류되는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대 상 치 료	수가코드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패널검사-비유전성 유전자검사-고형암-Level I	CB003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패널검사-비유전성 유전자검사-고형암-Level II	CB004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패널검사-비유전성 유전자검사-혈액암-Level I	CB005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패널검사-비유전성 유전자검사-혈액암-Level II	CB006

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30】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6호, 2024. 1. 1시행)" 제5조의 2 별표5(결핵질환의 적용 범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가. 대상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결핵질환자 중 결핵치료가 진행 중인 자가 항결핵제 내성(U84.3) 및 결핵(A15~A19)상병으로 확진 받아 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된 자 나. 적용기간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 산정특례 종료일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서 치료결과 구분항목이 “완치” 또는 “완료”일 경우는 치료종료일을, “사망”은 사망일을, “진단변경”은 진단변경일로 “중단 및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은 해당 요양기관의 최종 진료일로 한다.	V000

주) 향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의 2 별표5(결핵질환의 적용범위) 해당하는 경우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

【별표131-1】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 명	분류번호
악성신생물(C00~C97)	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D00~D09
수막의 양성신생물	D32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양성신생물	D33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D48)	D37~D48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31-2】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제외))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6호, 2024. 1. 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산정특례대상 및 적용기간	특정기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관한 기준)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 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대상 해당여부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표131-3】 특정소액암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암)	C53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암)	C54
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	C61
방광의 악성신생물(암)	C67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31-4】 뇌·수막의 양성신생물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수막의 양성 신생물	D32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D33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32】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6호, 2024. 1. 1시행)" 제5조 별표4(희귀질환자산정특례 대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희귀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아래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진료는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1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 진료		
	유전성 제8인자결핍	D66	V009
	제8인자결핍(기능적 결핍을 동반)	D66	V009
	혈우병 NOS	D66	V009
	A형혈우병	D66	V009
	고전적 혈우병	D66	V009
	유전성 제9인자결핍	D67	V009
	크리스마스병	D67	V009
	제9인자결핍(기능적 결핍을 동반)	D67	V009
	혈장트롬보플라스틴성분결핍	D67	V009
	B형혈우병	D67	V009
	폰빌레브란트병	D68.0	V009
	혈관혈우병(Angiohaemophilia)	D68.0	V009
	혈관결손이 있는 제8인자결핍	D68.0	V009
	혈관혈우병(Vascular haemophilia)	D68.0	V009
	유전성 제11인자결핍	D68.1	V009
	C형혈우병	D68.1	V009
	혈장트롬보플라스틴전구물질결핍	D68.1	V009
	기타 응고인자의 유전성 결핍	D68.2	V009
	선천성 무피브리노겐혈증	D68.2	V009
	AC글로불린결핍	D68.2	V009
	프로악셀레린결핍	D68.2	V009
	제1인자[피브리노젠]의 결핍	D68.2	V009
	제2인자[프로트롬빈]의 결핍	D68.2	V009
	제5인자[불안정]의 결핍	D68.2	V009
	제7인자[안정]의 결핍	D68.2	V009
	제10인자[스튜어트-프라워]의 결핍	D68.2	V009
	제12인자[하게만]의 결핍	D68.2	V009
	제13인자[피브리노겐]의 결핍	D68.2	V009
	이상피브리노겐혈증(선천성)	D68.2	V009
	저프로콘버틴혈증	D68.2	V009
	오우렌병	D68.2	V009
2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크로이츠펔트-야콥병	A81.0	V102
	아급성 해면모양뇌병증	A81.0	V102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가족성선종성용종증	D12.6 (M8220/0)	V281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결핍에 의한 빈혈	D55.0	V163
	잠두중독	D55.0	V163
	G6PD결핍빈혈	D55.0	V163
	해당효소의 장애에 의한 빈혈	D55.2	V164
	용혈성 비구상적혈구성 (유전성) II형 빈혈	D55.2	V164
	헥소카이네이스결핍빈혈	D55.2	V164
	피루브산염카이네이스결핍빈혈	D55.2	V164
	삼탄당인산염이성화효소결핍빈혈	D55.2	V164
	알파지중해빈혈	D56.0	V232
	베타지중해빈혈	D56.1	V232
	쿠올리빈혈	D56.1	V232
	중증 베타지중해빈혈	D56.1	V232
	중간형 지중해빈혈	D56.1	V232
	중증 지중해빈혈	D56.1	V232
	델타-베타지중해빈혈	D56.2	V232
	지중해빈혈 소질	D56.3	V232
	태아헤모글로빈의 유전적 존속	D56.4	V232
	비정형 용혈-요독증후군	D59.3	V219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D59.5	V187
	만성 후천성 순수적혈구무형성	D60.0	V023
	원발성 무형성(순수)적혈구	D61.0	V023
	가족성 저형성빈혈	D61.0	V023
	판코니빈혈	D61.0	V023
	블랙판-다이아몬드증후군	D61.0	V023
	영아 무형성(순수)적혈구	D61.0	V023
	기형을 동반한 범혈구감소증	D61.0	V023
	체질성 무형성빈혈	D61.0	V023
	선천성 무형성(순수)적혈구	D61.0	V023
	특발성 무형성빈혈	D61.3	V023
	골수형성저하	D61.9	V023
	범골수황폐	D61.9	V023
	저형성빈혈 NOS	D61.9	V023
	선천성 적혈구조혈이상빈혈	D64.4	V220
	이상조혈성 빈혈(선천성)	D64.4	V220
	항인지질증후군	D68.6	V253
	정성적 혈소판결손	D69.1	V106
	베르나르-술리에[거대혈소판]증후군	D69.1	V106
	글란즈만병	D69.1	V106
	그레이혈소판증후군	D69.1	V106
	혈소판무력증(출혈성)(유전성)	D69.1	V106
	혈소판병증	D69.1	V106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에반스증후군	D69.3	V188
	선천성 무과립구증	D70	V108
	선천성 호중구감소	D70	V108
	영아 유전성 무과립구증	D70	V108
	무과립구증	D70	V108
	무과립구성 안지나	D70	V108
	호중구감소 NOS	D70	V108
	주기성 호중구감소	D70	V108
	코스트만병	D70	V108
	순환성 호중구감소	D70	V108
	호중구감소성 비장비대	D70	V108
	베르너-슐츠병	D70	V108
	선천성 이상식작용증	D71	V109
	만성 (소아기) 육아종성 질환	D71	V109
	다형핵호중구의 기능장애	D71	V109
	진행성 패혈성 육아종증	D71	V109
	세포막수용체복합체[CR3]결손	D71	V109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D76.1	V110
	가족성 혈구탐식세망증	D76.1	V110
	단핵탐식세포의 조직구증	D76.1	V110
	세망조직구증(거대세포)	D76.3	V110
	심한 림프선병증을 동반한 동조직구증	D76.3	V110
	X-연관무감마글로불린혈증[브루튼](성장호르몬결핍을 동반)	D80.0	V111
	보통염색체열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스위스형)	D80.0	V111
	유전성 저감마글로불린혈증	D80.0	V111
	원발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	D80.0	V111
	공통가변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	D80.1	V111
	저감마글로불린혈증 NOS	D80.1	V111
	비가족성 저감마글로불린혈증	D80.1	V111
	면역글로불린을 지닌 B-림프구가 있는 무감마글로불린혈증	D80.1	V111
	면역글로불린A의 선택적 결핍	D80.2	V111
	면역글로불린G 서브클래스의 선택적 결핍	D80.3	V111
	면역글로불린M의 선택적 결핍	D80.4	V111
	면역글로불린M의 증가를 동반한 면역결핍	D80.5	V111
	거의 정상의 면역글로불린 또는 고면역글로불린혈증을 동반한 항체결핍	D80.6	V111
	항체결손이 현저한 기타 면역결핍	D80.8	V111
	카파경쇄결핍	D80.8	V111
	세망세포발생이상을 동반한 중증복합면역결핍	D81.0	V111
	T- 및 B-세포수가 감소된 중증복합면역결핍	D81.1	V111
	B-세포수가 정상이거나 감소된 중증복합면역결핍	D81.2	V111
	아데노신탈아미노효소결핍	D81.3	V111
	네젤로프증후군	D81.4	V111
	퓨린뉴클레오사이드인산화효소결핍	D81.5	V111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주조직적합성복합체 I 형결핍	D81.6	V111
	노출림프구증후군	D81.6	V111
	주조직적합성복합체 II 형결핍	D81.7	V111
	바이오틴-의존카복실레이스결핍	D81.8	V111
	오멘증후군	D81.8	V111
	중증복합면역결핍장애 NOS	D81.9	V111
	혈소판감소 및 습진을 동반한 면역결핍	D82.0	V111
	비스코트-얼드리치증후군	D82.0	V111
	디조지증후군	D82.1	V111
	흉선성 림프조직무형성	D82.1	V111
	면역결핍을 동반한 흉선무형성 또는 형성저하	D82.1	V111
	인두낭증후군	D82.1	V111
	짧은사지체구를 동반한 면역결핍	D82.2	V111
	엡스타인-바르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성 결손반응에 따른 면역결핍	D82.3	V111
	X-연관 림프증식성 질환	D82.3	V111
	고면역글로불린E증후군	D82.4	V111
	B-세포 수 및 기능의 현저한 이상에 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0	V111
	현저한 면역조절T-세포장애에 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1	V111
	B- 또는 T-세포에 대한 자가항체를 동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2	V111
	상세불명의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9	V111
	림프구기능항원-1결손	D84.0	V111
	C1에스터레이스억제인자결핍	D84.1	V111
	보체계통의 결손	D84.1	V111
	폐의 사르코이드증	D86.0	V111
	림프절의 사르코이드증	D86.1	V111
	림프절의 사르코이드증을 동반한 폐의 사르코이드증	D86.2	V111
	피부의 사르코이드증	D86.3	V111
	사르코이드관절병증(M14.8*)	D86.8	V111
	사르코이드심근염(I41.8*)	D86.8	V111
	사르코이드근염(M63.3*)	D86.8	V111
	포도막귀밑샘염	D86.8	V111
	사르코이드증에서의 홍채섬모체염(H22.1*)	D86.8	V111
	기타 및 복합부위의 사르코이드증	D86.8	V111
	사르코이드증에서의 다발성 뇌신경마비(G53.2*)	D86.8	V111
	한랭글로불린혈증성 혈관염	D89.1	V294
	말단비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V112
	말단비대증과 관련된 관절병증 (M14.5*)	E22.0	V112
	성장호르몬의 과잉생산	E22.0	V112
	취한증후군	E23.0	V165
	콜만증후군	E23.0	V165
	뇌하수체 부신피질자극호르몬의 과다생산	E24.0	V114
	뇌하수체-의존 쿠싱병	E24.0	V114
	뇌하수체-의존 부신피질기능항진증	E24.0	V114
	넬슨증후군	E24.1	V114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이소성 부신피질자극호르몬증후군	E24.3	V114
	효소결핍과 관련된 선천성 부신생식기장애	E25.0	V115
	염류소실 선천성 부신증식증	E25.0	V115
	선천성 부신증식증	E25.0	V115
	21-수산화효소결핍	E25.0	V115
	부신생식기증후군 NOS	E25.9	V115
	바터증후군	E26.8	V254
	원발성 부신피질부전	E27.1	V116
	애디슨병	E27.1	V116
	자가면역성 부신염	E27.1	V116
	가족성 부신코티코이드결핍	E27.1	V116
	애디슨발증	E27.2	V116
	부신피질발증	E27.2	V116
	부신발증	E27.2	V116
	부신출혈	E27.4	V116
	부신경색증	E27.4	V116
	저알도스테론증	E27.4	V116
	부신피질부전 NOS	E27.4	V116
	안드로젠저항증후군	E34.5	V166
	송과선 기능이상	E34.8	V166
	조로증	E34.8	V166
	활동성 구루병	E55.0	V207
	영아골연화증	E55.0	V207
	연소성 골연화증	E55.0	V207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E70.0	V117
	기타 고페닐알라닌혈증	E70.1	V117
	타이로신대사장애	E70.2	V117
	타이로신혈증	E70.2	V117
	타이로신증	E70.2	V117
	조직흑갈병	E70.2	V117
	알카톤뇨증	E70.2	V117
	눈피부백색증	E70.3	V117
	눈백색증	E70.3	V117
	교차증후군	E70.3	V117
	체디아크(-스타인브링크)-히가시증후군	E70.3	V117
	헤르만스키-푸들라크증후군	E70.3	V117
	바르덴브르그 증후군(백색증을동반한)	E70.3	V117
	히스티딘대사장애	E70.8	V117
	트립토판대사장애	E70.8	V117
	단풍시럽뇨병	E71.0	V117
	프로피온산혈증	E71.1	V117
	메틸말론산혈증	E71.1	V117
	아이소발레린산혈증	E71.1	V117
	고발린혈증	E71.1	V117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고류신-이소류신혈증	E71.1	V117
	지방산대사장애	E71.3	V117
	부신백질디스트로피[애디슨-윌더]	E71.3	V117
	근육카르니틴팔미틸트랜스퍼레이스결핍	E71.3	V117
	장쇄수산화아실코에이탈수소효소결핍증(VLCAD)	E71.3	V117
	아미노산운반장애	E72.0	V117
	로베증후군	E72.0	V117
	시스틴증	E72.0	V117
	판코니(-드토니)(-드브레)증후군	E72.0	V117
	시스틴뇨증	E72.0	V117
	하르트넵병	E72.0	V117
	시스틴축적병(N29.8*)	E72.0	V117
	유황함유아미노산대사장애	E72.1	V117
	호모시스틴뇨	E72.1	V117
	아황산염산화효소결핍	E72.1	V117
	시스타타이오닌뇨증	E72.1	V117
	메타이오닌혈증	E72.1	V117
	고호모시스테인혈증	E72.1	V117
	요소화로대사장애	E72.2	V117
	아르지닌숙신산뇨	E72.2	V117
	시트룰린혈증	E72.2	V117
	아르지닌혈증	E72.2	V117
	고암모니아혈증	E72.2	V117
	라이신 및 하이드록시라이신 대사장애	E72.3	V117
	하이드록시라이신혈증	E72.3	V117
	글루타르산뇨	E72.3	V117
	고라이신혈증	E72.3	V117
	오르니틴대사장애	E72.4	V117
	오르니틴혈증(Ⅰ, Ⅱ형)	E72.4	V117
	오르니틴트랜스카바미라제결핍	E72.4	V117
	글라이신대사장애	E72.5	V117
	사르코신혈증	E72.5	V117
	비케톤고글라이신혈증	E72.5	V117
	고하이드록시프롤린혈증	E72.5	V117
	고프롤린혈증(Ⅰ, Ⅱ형)	E72.5	V117
	감마글루타밀회로의 장애	E72.8	V117
	베타아미노산대사장애	E72.8	V117
	선천성 젖당분해효소결핍	E73.0	V117
	글리코젠축적병 1b형 A	E74.0	V117
	글리코젠합성효소결핍	E74.0	V117
	코리병	E74.0	V117
	타루이병	E74.0	V117
	폼페병	E74.0	V117
	맥아들병	E74.0	V117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글리코젠축적병	E74.0	V117
	포르브스병	E74.0	V117
	폰기에르케병	E74.0	V117
	간인산화효소결핍	E74.0	V117
	허스병	E74.0	V117
	심장글리코젠증	E74.0	V117
	안데르센병	E74.0	V117
	갈락토스혈증	E74.2	V117
	갈락토스대사장애	E74.2	V117
	갈락토카이네이스결핍	E74.2	V117
	포스포에놀피루브산염카복시카이네이스의 결핍	E74.4	V117
	피루브산염대사 및 포도당신합성 장애	E74.4	V117
	탈수소효소피루브산염의 결핍	E74.4	V117
	카복실레이스피루브산염의 결핍	E74.4	V117
	옥살산뇨	E74.8	V117
	샌드호프병	E75.0	V117
	GM ₂ -강글리오시드증	E75.0	V117
	연소형 GM ₂ -강글리오시드증	E75.0	V117
	테이-삭스병	E75.0	V117
	GM ₂ -강글리오시드증 NOS	E75.0	V117
	성인형 GM ₂ -강글리오시드증	E75.0	V117
	강글리오시드증 NOS	E75.1	V117
	유코지질증 IV	E75.1	V117
	GM ₁ -강글리오시드증	E75.1	V117
	GM ₃ -강글리오시드증	E75.1	V117
	파브리(-앤더슨)병	E75.2	V117
	니만-픽병	E75.2	V117
	화버증후군	E75.2	V117
	크라베병	E75.2	V117
	설파테이스결핍	E75.2	V117
	이영성 백질디스트로피	E75.2	V117
	고체병	E75.2	V117
	신경세포세로이드라이포푸스신증	E75.4	V117
	스필마이어-보그트병	E75.4	V117
	쿠프스병	E75.4	V117
	바텐병	E75.4	V117
	얀스키-빌쇼스키병	E75.4	V117
	월만병	E75.5	V117
	대뇌간의 콜레스테롤증[밴보게르트-쉐러-엡스타인]	E75.5	V117
	I 형 점액다당류증	E76.0	V117
	할러증후군	E76.0	V117
	할러-샤이에증후군	E76.0	V117
	샤이에증후군	E76.0	V117
	II 형 점액다당류증	E76.1	V117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헌터증후군	E76.1	V117
	모르키오 (-유사)(고전적) 증후군	E76.2	V117
	마로토-라미 (경도)(중증) 증후군	E76.2	V117
	베타-글루쿠론산분해효소결핍	E76.2	V117
	III, IV, VI, VII형 점액다당류증	E76.2	V117
	산필립포 (B형)(C형)(D형) 증후군	E76.2	V117
	유코지질증III[거짓혈러다발디스트로피]	E77.0	V117
	유코지질증II[Ⅰ-세포병]	E77.0	V117
	라이소솜효소의 번역후 수정의 결손	E77.0	V117
	푸고스축적증	E77.1	V117
	시알산증[유코지질증Ⅰ]	E77.1	V117
	당단백질분해의 결손	E77.1	V117
	아스파르틸글루코사민뇨	E77.1	V117
	마노스축적증	E77.1	V117
	레쉬-니한증후군	E79.1	V221
	유전성 코프로포르피린증	E80.2	V118
	포르피린증 NOS	E80.2	V118
	급성 간혈성 (간성) 포르피린증	E80.2	V118
	구리대사장애	E83.0	V119
	멘케스(꼬인모발)(강모)병	E83.0	V119
	월슨병	E83.0	V119
	혈색소증	E83.1	V255
	산성인산분해효소결핍	E83.3	V189
	가족성 저인산혈증	E83.3	V189
	저인산효소증	E83.3	V189
	비타민D저항골연화증	E83.3	V189
	비타민D저항구루병	E83.3	V189
	인대사 및 인산분해효소 장애	E83.3	V189
	폐증상을 동반한 남성 섬유증	E84.0	V120
	장증상을 동반한 남성 섬유증	E84.1	V120
	남성 섬유증에서의 대변장폐쇄 (P75*)	E84.1	V120
	원위장폐쇄증후군	E84.1	V120
	유전성 아밀로이드 신장병증	E85.0	V121
	비신경병성 유전가족성 아밀로이드증	E85.0	V121
	가족성 지중해열	E85.0	V121
	아밀로이드다발신경병증(포르투갈)	E85.1	V121
	신경병성 유전가족성 아밀로이드증	E85.1	V121
	상세불명의 유전가족성 아밀로이드증	E85.2	V121
	기관한정아밀로이드증	E85.4	V121
	국소적 아밀로이드증	E85.4	V121
	카다실	F01.1	V122
	레트증후군	F84.2	V122
	뇌전증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失語症)[란다우-클레프너]	F80.3	V256
	헌팅톤병	G10	V123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헌팅톤무도병	G10	V123
	선천성 비진행성 운동실조	G11.0	V123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전)	G11.1	V123
	X-연관 열성 척수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보류된 힘줄반사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마이오클로누스[헌트운동실조]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본태성 떨림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프리드라이히운동실조(보통염색체열성)	G11.1	V123
	만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후)	G11.2	V123
	DNA복구결손을 수반한 소뇌성 운동실조	G11.3	V123
	모세혈관확장성 운동실조[루이-바]	G11.3	V123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마비	G11.4	V123
	기타 유전성 운동실조	G11.8	V123
	상세불명의 유전성 운동실조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변성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병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증후군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운동실조 NOS	G11.9	V123
	영아척수성 근위축, I형[베르드니히-호프만]	G12.0	V123
	기타 유전성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소아기의 진행성 연수마비[파지오-론데]	G12.1.	V123
	원위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어깨종아리형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소아형, II형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연소형, III형[쿠겔베르그-벨란더]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성인형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운동신경세포병 (단,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동신경세포병(G12.28)은 제외)	G12.2	V123
	가족성 운동신경세포병	G12.20	V123
	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	G12.21	V123
	케네디 병	G12.28	V123
	기타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8	V123
	상세불명의 척수성 근위축	G12.9	V123
	할러포르덴-스파츠병	G23.0	V257
	색소성 담창구변성	G23.0	V257
	진행성 핵상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울스제위스키]	G23.1	V190
	아급성 과사성 뇌병증[리이]	G31.81	V208
	다발경화증	G35	V022
	뇌간(~의) 다발경화증	G35	V022
	척수(~의) 다발경화증	G35	V022
	다발경화증 NOS	G35	V022
	전신성(~의) 다발경화증	G35	V022
	파종성(~의) 다발경화증	G35	V022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시신경척수염[대박병]	G36.0	V276
	레녹스-가스토증후군	G40.4	V233
	웨스트증후군	G40.4	V233
	긴장-간대성 뇌전증지속상태	G41.0	V125
	대발작 뇌전증지속상태	G41.0	V125
	소발작뇌전증지속상태	G41.1	V125
	뇌전증 압상스지속상태	G41.1	V125
	복합부분뇌전증지속상태	G41.2	V125
	기타 뇌전증지속상태	G41.8	V125
	상세불명의 뇌전증지속상태	G41.9	V125
	기면병 및 탈력발작	G47.4	V234
	멜커슨증후군	G51.2	V167
	멜케르손-로젠탈증후군	G51.2	V167
	데제린-소타스병	G60.0	V169
	루시-레비증후군	G60.0	V169
	영아기의 비대성 신경병증	G60.0	V169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I-IV형	G60.0	V169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G60.0	V169
	샤르코-마리-투스질환	G60.0	V169
	비골근위축(축삭형, 비대형)	G60.0	V169
	길랭-바레증후군	G61.0	V126
	밀러휘셔증후군	G61.0	V126
	다초점 운동신경병증	G61.8	V126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	G61.8	V126
	중증근무력증	G70.0	V012
	선천성 및 발달성 근무력증	G70.2	V012
	조기수축을 동반하는 양성 어깨종아리[에머리-드라이프스]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뒤센 또는 베커와 유사한 보통염색체열성, 소아형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눈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어깨종아리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중증[뒤센]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양성[베커]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눈인두성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지대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원위성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얼굴어깨팔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근긴장장애	G71.1	V012
	거짓근긴장증	G71.1	V012
	신경근육긴장[아이작스]	G71.1	V012
	증상성 근긴장증	G71.1	V012
	선천성 근긴장증 NOS	G71.1	V012
	열성[베커] 선천성 근긴장증	G71.1	V012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우성[통승] 선천성 근긴장증	G71.1	V012
	연골형성장애성 근긴장증	G71.1	V012
	근긴장디스트로피[스타이너트]	G71.1	V012
	선천성 이상근긴장증	G71.1	V012
	다발심 병	G71.2	V012
	선천성 근병증	G71.2	V012
	근섬유의 특정 형태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근디스트로피(G71.2)	G71.2	V012
	미세심 병	G71.2	V012
	네말린근병증	G71.2	V012
	선천성 근디스트로피 NOS	G71.2	V012
	근세관성 (중심핵성) 근병증	G71.2	V012
	중심핵 병	G71.2	V012
	근섬유형 불균형	G71.2	V012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립체 근육병증	G71.3	V012
	멜라스증후군	G71.3	V012
	유전성 근병증 NOS	G71.9	V012
	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혈성	G72.3	V258
	람베르트-이튼증후군(C00-D48†)	G73.1*	V259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형	G90.5	V177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	G90.6	V168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G95.0	V172
	폭스디스트로피	H18.5	V307
	원추각막	H18.6	V307
	맥락막결손	H31.2	V295
	코초망막병증	H35.0	V260
	색소망막염	H35.51	V209
	스타르가르트병	H35.58	V209
	레베르선천성흑암시	H35.59	V209
	상세불명의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	H35.59	V209
	컨스-세이어증후군	H49.8	V261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I27.0	V202
	아이젠멘거복합	I27.8	V226
	아이젠멘거증후군	I27.8	V226
	비가역적 확장성 심근병증	I42.0	V127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I42.1	V127
	비대성 대동맥판하협착	I42.1	V127
	비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I42.20	V127
	심내막심근(호산구성)병	I42.3	V127
	심내막심근(열대성)섬유증	I42.3	V127
	뢰플러심내막염	I42.3	V127
	심내막탄력섬유증	I42.4	V127
	선천성 심근병증	I42.4	V127
	긴QT증후군	I49.82	V296
	모야모야병	I67.5	V128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I73.1	V129
	유전성 출혈성 모세혈관확장증	I78.0	V297
	랑뒤-오슬러-웨버병	I78.0	V235
	버드-키아리증후군	I82.0	V173
	폐포단백질증	J84.0	V222
	특발성 폐섬유증	J84.1	V236
	불완전상아질형성	K00.51	V310
	소장의 크론병	K50.0	V130
	대장의 크론병	K50.1	V130
	소장 및 대장 모두의 크론병	K50.8	V130
	가성 장 폐색	K56.0	V312
	원발성 담도간 경변증	K74.3	V174
	자가면역성 간염	K75.4	V175
	원발성 담관염/경화성 담관염(두 상병 진단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	K83.0	V262
	보통천포창	L10.0	V132
	낙엽천포창	L10.2	V210
	수포성 유사천포창	L12.0	V211
	홍터유사천포창	L12.1.	V212
	양성 점막유사천포창	L12.1.	V212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L12.3	V176
	전신농포건선	L40.1	V313
	중증 화농성 한선염	L73.22	V309
	성인발병 스틸병	M06.1	V298
	류마티스인자가 있거나 없는 연소성 류마티스관절염	M08.0	V133
	연소성 류마티스관절염	M08.0	V133
	연소성 강직척추염	M08.1	V133
	전신적으로 발병된 연소성 관절염	M08.2	V133
	(혈청검사음성인) 연소성 다발관절염	M08.3	V133
	만성 연소성 다발관절염	M08.3	V133
	결절성 다발동맥염	M30.0	V134
	폐침범을 동반한 다발동맥염[처그-스트라우스]	M30.1	V134
	연소성 다발동맥염	M30.2	V134
	굿파스처증후군	M31.0	V135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	M31.1	V135
	혈전성 미세혈관병증	M31.1	V135
	베게너육아종증	M31.3	V135
	괴사성 호흡기육아종증	M31.3	V135
	대동맥궁증후군[다카야스]	M31.4	V135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M31.7	V238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M32.1	V136
	심내막염 동반 전신홍반루푸스(I39.8*)	M32.1	V136
	리브만-삭스병(I39.0*)	M32.1	V136
	루푸스 심장낭염(I32.8*)	M32.1	V136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폐침범 동반 전신홍반루푸스(J99.1+)	M32.1	V136
	사구체질환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08.5*)	M32.1	V136
	세뇨관-간질신장병증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16.4*)	M32.1	V136
	신장침범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08.5*, N16.4*)	M32.1	V136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뇌염(G05.8*)	M32.1	V136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근병증(G73.7*)	M32.1	V136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대뇌동맥염(I68.2*)	M32.1	V136
	연소성 피부근염	M33.0	V137
	기타 피부근염	M33.1	V137
	다발근염	M33.2	V137
	진행성 전신경화증	M34.0	V138
	크레스트증후군	M34.1	V138
	석회증, 레이노현상, 식도기능장애, 경지증(硬指症), 모세혈관확장의 조합	M34.1	V138
	폐침범을 동반한 전신경화증(J99.1*)	M34.8	V138
	근병증을 동반한 전신경화증(G73.7*)	M34.8	V138
	근병증(를) 동반한 췌그렌증후군(G73.7*)	M35.0	V139
	폐침범(를) 동반한 췌그렌증후군(J99.1*)	M35.0	V139
	건조증후군[췌그렌]	M35.0	V139
	각막결막염(를) 동반한 췌그렌증후군(H19.3*)	M35.0	V139
	신세뇨관-간질성 장애(를) 동반한 췌그렌증후군(N16.4*)	M35.0	V139
	혼합결합조직병	M35.1	V139
	베체트병	M35.2	V139
	류마티스성 다발근통	M35.3	V139
	미만성(호산구성) 근막염	M35.4	V139
	다초점 섬유경화증	M35.5	V139
	재발성 지방층염[웨버-크리스찬]	M35.6	V139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	M61.1	V224
	두개골의 파젯병	M88.0	V213
	기타 뼈의 파젯병	M88.8	V213
	상세불명의 뼈의 파젯병	M88.9	V213
	수근반달뼈의 골연골증(연소성) [킨빅]	M92.2	V299
	성인의 킨빅병	M93.1	V299
	재발성 다발연골염	M94.1	V178
	소사구체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0	V263
	최소변화병변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0	V263
	초점성 및 분절성 사구체병변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초점성 및 분절성 유리질증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초점성 및 분절성 경화증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초점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2	V263
	미만성 메산지음 증식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3	V263
	미만성 모세혈관내 증식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4	V263
	미만성 메산지음 모세혈관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N04.5	V263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신증후군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1형, 3형 또는 NOS를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5	V263
	신증후군		
	고밀도침착병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6	V263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2형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6	V263
	미만성 반월형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7	V263
	모세혈관외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7	V263
	신장성 요붕증	N25.1	V141
	덴디-워커증후군	Q03.1	V239
	무뇌이랑증	Q04.3	V214
	큰뇌이랑증	Q04.3	V214
	분열뇌증	Q04.6	V240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경추	Q05.0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흉추	Q05.1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흉요추	Q05.1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척추	Q05.1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요추	Q05.2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요천추	Q05.2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천추	Q05.3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이분척추	Q05.4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경추	Q05.5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흉추	Q05.6	V179
	이분흉요추 NOS	Q05.6	V179
	이분척추 NOS	Q05.6	V179
	이분요천추 NOS	Q05.7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요추	Q05.7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천골	Q05.8	V179
	상세불명의 이분척추	Q05.9	V179
	척수이개증	Q06.2	V180
	아놀드-키아리증후군	Q07.0	V143
	(외)이도의 선천성 결여, 폐쇄, 협착	Q16.1	V291
	소이증(小耳症)	Q17.2	V291
	충동맥관	Q20.0	V144
	동맥관존속	Q20.0	V144
	타우시그-빙증후군	Q20.1	V144
	이중출구우심실	Q20.1	V144
	이중출구좌심실	Q20.2	V144
	대혈관의 (완전)전위	Q20.3	V144
	심실대혈관연결불일치	Q20.3	V144
	대동맥의 우측전위	Q20.3	V144
	단일심실	Q20.4	V225
	수정혈관전위	Q20.5	V144
	방실연결불일치	Q20.5	V144
	좌측전위	Q20.5	V144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심실내번	Q20.5	V144
	방실중격결손	Q21.2	V269
	총방실관	Q21.2	V269
	심내막융기결손	Q21.2	V269
	제1공심방중격결손(Ⅰ형)	Q21.2	V269
	팔로네징후	Q21.3	V269
	폐동맥 협착 또는 폐쇄, 대동맥의 우측위치 및 우심실비대를 동반한 심실중격결손	Q21.3	V269
	대동맥폐동맥창	Q21.4	V269
	대동맥폐동맥중격결손	Q21.4	V269
	대동맥중격결손	Q21.4	V269
	아이젠멘거결손	Q21.8	V226
	폐동맥판폐쇄	Q22.0	V145
	삼첨판폐쇄	Q22.4	V146
	에브스타인이상	Q22.5	V146
	형성저하성 우심증후군	Q22.6	V146
	대동맥판의 선천협착	Q23.0	V147
	선천성 대동맥판폐쇄	Q23.0	V147
	선천성 대동맥판협착	Q23.0	V147
	이첨대동맥판막	Q23.1	V147
	선천성 대동맥판기능부전	Q23.1	V147
	대동맥판의 선천성 기능부전	Q23.1	V147
	선천성 대동맥판류역류	Q23.1	V147
	선천성 승모판협착	Q23.2	V147
	선천성 승모판폐쇄	Q23.2	V147
	선천성 승모판기능부전	Q23.3	V147
	(승모판 협착 또는 폐쇄와 함께) 상행대동맥의 형성저하와 좌심실의 결손발육을 동반하는 대동맥구멍 및 판막의 폐쇄 또는 현저한 발육부전	Q23.4	V147
	형성저하성 좌심증후군	Q23.4	V147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기타 선천기형	Q23.8	V147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Q23.9	V147
	선천성 대동맥판협착	Q24.4	V270
	관상동맥혈관의 기형	Q24.5	V148
	선천성 관상동맥류	Q24.5	V148
	선천성 심장차단	Q24.6	V271
	대동맥의 축착	Q25.1	V272
	대동맥의 축착(관전, 관후)	Q25.1	V272
	대동맥의 폐쇄	Q25.2	V272
	판막상부 대동맥협착	Q25.3	V272
	대동맥의 협착	Q25.3	V272
	폐동맥의 폐쇄	Q25.5	V149
	대정맥의 선천성 협착	Q26.0	V150
	(하)(상)대정맥의 선천성 협착	Q26.0	V150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좌상대정맥존속	Q26.1	V150
	전폐정맥결합이상	Q26.2	V150
	부분폐정맥결합이상	Q26.3	V150
	상세불명의 폐정맥결합이상	Q26.4	V150
	문맥결합이상	Q26.5	V150
	문맥-간동맥루	Q26.6	V150
	무설증(無舌症)	Q38.3	V241
	담관의 폐쇄	Q44.2	V181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열성	Q61.1	V264
	다낭성 신장, 영아형	Q61.1	V264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Q61.2	V264
	방광외반	Q64.1	V227
	방광이소증	Q64.1	V227
	방광외번	Q64.1	V227
	선천성 다발관절만곡증	Q74.3	V292
	두개골유합	Q75.0	V265
	뿔족머리증(Acrocephaly)	Q75.0	V265
	두개골의 불완전유합	Q75.0	V265
	뿔족머리증(Oxycephaly)	Q75.0	V265
	삼각머리증	Q75.0	V265
	크루존병	Q75.1	V151
	두개안면골이골증	Q75.1	V151
	하악안면골이골증	Q75.4	V182
	프란체스체티 증후군	Q75.4	V182
	트레처-콜린스 증후군	Q75.4	V182
	연골무발생증	Q77.0	V228
	연골발생저하증	Q77.0	V228
	치사성 단신	Q77.1	V228
	질식성 흉부형성이상[쥐느]	Q77.2	V228
	짧은늑골증후군	Q77.2	V228
	점상 연골형성이상	Q77.3	V228
	어깨고관절 점상 연골형성이상(1형-3형)	Q77.3	V228
	X-연관 우성 연골형성이상	Q77.3	V228
	연골무형성증	Q77.4	V228
	연골형성저하증	Q77.4	V228
	선천성 골경화증	Q77.4	V228
	디스트로피성 형성이상	Q77.5	V228
	엘리스-반크레벨트증후군	Q77.6	V228
	연골외배엽형성이상	Q77.6	V228
	척추골단형성이상	Q77.7	V228
	만발성 척추골단형성이상	Q77.7	V228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기타 골연골형성이상	Q77.8	V228
	말단왜소 형성이상	Q77.8	V228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연골형성이상	Q77.9	V228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불완전골형성	Q78.0	V183
	골취약증(Fragilitas ossium)	Q78.0	V183
	골취약증(Osteopsathyrosis)	Q78.0	V183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Q78.1	V154
	얼브라이트(-맥군)(-스텐버그)증후군	Q78.1	V154
	골화석증	Q78.2	V229
	알베르스-쾨베르그증후군	Q78.2	V229
	카우라티-앵겔만증후군	Q78.3	V266
	내연골종증	Q78.4	V230
	마푸치증후군	Q78.4	V230
	올리에르병	Q78.4	V230
	필레증후군	Q78.5	V215
	다발선천외골증	Q78.6	V242
	골간병적조직연결	Q78.6	V242
	유전성 다발외골증	Q78.6	V242
	선천성 황격막탈장	Q79.0	V155
	황격막결여	Q79.1	V155
	황격막 탈출	Q79.1	V155
	황격막의 기타 선천기형	Q79.1	V155
	황격막의 선천기형 NOS	Q79.1	V155
	배꼽내장탈장	Q79.2	V155
	선천복벽탈장	Q79.2	V155
	복벽파열증	Q79.3	V155
	말린자두배증후군	Q79.4	V155
	복벽의 기타 선천기형	Q79.5	V155
	엘러스-단로스증후군	Q79.6	V155
	근골격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79.8	V155
	부근	Q79.8	V155
	선천성 짧은힘줄	Q79.8	V155
	근육의 결여	Q79.8	V155
	폴란드증후군	Q79.8	V155
	힘줄의 결여	Q79.8	V155
	선천성 근위축	Q79.8	V155
	선천성 협착띠	Q79.8	V155
	근골격계통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Q79.9	V155
	근골격계통의 선천이상 NOS	Q79.9	V155
	근골격계통의 선천변형 NOS	Q79.9	V155
	X-연관비늘증	Q80.1	V300
	X-연관비늘증; 스테로이드설파타제결핍	Q80.1	V300
	할리퀸태아	Q80.4	V300
	치사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1	V184
	헤를리츠증후군	Q81.1	V184
	디스트로피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2	V184
	탄력섬유성 거짓황색증	Q82.8	V314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신경섬유종증(비악성)	Q85.0	V156
	폰렉클링하우젠병	Q85.0	V156
	신경섬유종증(비악성) 1형, 2형	Q85.0	V156
	결절성 경화증	Q85.1	V204
	에필로이아	Q85.1	V204
	부르느뷰병	Q85.1	V204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Q85.8	V216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Q85.8	V216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Q85.8	V216
	(이상형태성) 태아알코올증후군	Q86.0	V157
	고린-샤우드리-모스 증후군	Q87.0	V185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	Q87.0	V185
	잠복안구증후군	Q87.0	V185
	골덴하 증후군	Q87.0	V185
	로빈 증후군	Q87.0	V185
	첨두다지유합증	Q87.0	V185
	첨두유합지증	Q87.0	V185
	단안증	Q87.0	V185
	외비우스 증후군	Q87.0	V185
	입-얼굴-손발 증후군	Q87.0	V185
	휘파람부는 얼굴	Q87.0	V185
	카펜터 증후군	Q87.0	V185
	안치지의 형성이상	Q87.0	V185
	드 랑즈 증후군	Q87.1	V158
	두보위츠 증후군	Q87.1	V158
	프라더-윌리 증후군	Q87.1	V158
	로비노-실버만-스미스 증후군	Q87.1	V158
	시클 증후군	Q87.1	V158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증후군	Q87.1	V158
	아르스코그 증후군	Q87.1	V158
	코케인 증후군	Q87.1	V158
	누난 증후군	Q87.1	V158
	러셀-실버 증후군	Q87.1	V158
	스미스-렘리-오피츠 증후군	Q87.1	V158
	셰그렌-라손 증후군	Q87.1	V158
	루빈스타인-데이비 증후군	Q87.2	V243
	바테르 증후군	Q87.2	V243
	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 증후군	Q87.2	V243
	홀트-오람 증후군	Q87.2	V243
	손발톱무릎뼈 증후군	Q87.2	V243
	소토스 증후군	Q87.3	V244
	위버 증후군	Q87.3	V244
	마르팡증후군	Q87.4	V186
	알포트 증후군	Q87.8	V267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로렌스-문(-바르데)-비들 증후군	Q87.8	V267
	젤웨거 증후군	Q87.8	V267
	차지 증후군	Q87.8	V267
	21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Q90.0	V159
	21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Q90.1	V159
	21삼염색체증, 전위	Q90.2	V159
	21삼염색체증 NOS	Q90.9	V159
	18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Q91.0	V160
	18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Q91.1	V160
	18삼염색체증, 전위	Q91.2	V160
	13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Q91.4	V160
	13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Q91.5	V160
	13삼염색체증, 전위	Q91.6	V160
	13삼염색체증후군	Q91.7	V160
	5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Q93.4	V205
	고양이울음증후군	Q93.4	V205
	캐취22증후군	Q93.5	V217
	엔젤만증후군	Q93.5	V217
	스미스-마제니스 증후군	Q93.5	V217
	윌리엄스 증후군	Q93.5	V217
	핵형45, X	Q96.0	V021
	핵형46, X동인자(Xq)	Q96.1	V021
	동인자(Xq)를 제외한 이상 성염색체를 가진 핵형46, X	Q96.2	V021
	섞임증, 45, X/46, XX 또는 XY	Q96.3	V021
	섞임증, 이상성염색체를 가진 45, X/기타 세포열	Q96.4	V021
	클라인펠터증후군, 핵형 47, XXY	Q98.0	V218
	클라인펠터증후군, 두 개 이상의 X염색체를 가진 남성	Q98.1	V218
	클라인펠터증후군, 핵형 46, XX를 가진 남성	Q98.2	V218
	취약X증후군	Q99.2	V245
3	제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극희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00
4	제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01
5	제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상세불명희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99

- 주) 1. 항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별표4(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 하는 질병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해당여부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표133】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6호, 2024. 1. 1시행)" 제5조 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구분 1-5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아래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진료는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V001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V003
2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 진료		
	후천성 응고인자결핍	D68.4	V284
3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간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3
	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4
	심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5
	신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05
	폐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7
	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8
4	정신질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편집조현병	F20.0	V161
	편집분열성 조현병	F20.0	V161
	파과형조현병	F20.1	V161
	해체성 조현병	F20.1	V161
	파과증	F20.1	V161
	긴장성 조현병	F20.2	V161
	긴장성 혼미	F20.2	V161
	조현병성 카탈렙시	F20.2	V161
	조현병성 긴장증	F20.2	V161
	조현병성 납굴증	F20.2	V161
	미분화조현병	F20.3	V161
	비정형조현병	F20.3	V161
	조현병후우울증	F20.4	V161
	잔류조현병	F20.5	V161
	만성 미분화조현병	F20.5	V161
	레스트추스탄트(조현병성)	F20.5	V161
	조현병성 잔류상태	F20.5	V161
	단순형조현병	F20.6	V161
	기타 조현병	F20.8	V161
	체감장애조현병	F20.8	V161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조현양상장애 NOS	F20.8	V161
	조현양상정신병 NOS	F20.8	V161
	상세불명의 조현병	F20.9	V161
	조현형장애	F21	V161
	잠재 조현병성 반응	F21	V161
	경계성 조현병	F21	V161
	잠재성 조현병	F21	V161
	전정신병적 조현병	F21	V161
	전구성 조현병	F21	V161
	거짓신경증성 조현병	F21	V161
	거짓정신병증성 조현병	F21	V161
	조현형인격장애	F21	V161
	망상장애	F22.0	V161
	편집증	F22.0	V161
	편집증정신병	F22.0	V161
	편집증상태	F22.0	V161
	망상분열증(만기의)	F22.0	V161
	민감망상	F22.0	V161
	기타 지속성 망상장애	F22.8	V161
	망상성 이상형태공포증	F22.8	V161
	퇴행성 편집상태	F22.8	V161
	불평편집증	F22.8	V161
	상세불명의 지속적 망상장애	F22.9	V161
	조현병의 증상이 없는 급성 다형성 정신병장애	F23.0	V161
	조현병 및 상세불명의 증상이 없는 순환형 정신병	F23.0	V161
	조현병 증상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부폐 델리랑뜨	F23.0	V161
	조현병의 증상이 있는 급성 다형성 정신병장애	F23.1	V161
	조현병의 증상이 있는 순환형 정신병	F23.1	V161
	조현병 증상이 있는 부폐 델리랑뜨	F23.1	V161
	급성 조현병-유사정신병장애	F23.2	V161
	급성 (미분화형) 조현병	F23.2	V161
	단기 조현양상장애	F23.2	V161
	단기 조현양상정신병	F23.2	V161
	몽환정신병	F23.2	V161
	조현병성 반응	F23.2	V161
	기타 급성 주로 망상우세성 정신병장애	F23.3	V161
	편집반응	F23.3	V161
	심인성 편집정신병	F23.3	V161
	기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F23.8	V161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F23.9	V161
	단기 반응성 정신병 NOS	F23.9	V161
	반응성 정신병	F23.9	V161
	유도망상장애	F24	V161
	감응성 정신병	F24	V161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유도편집장애	F24	V161
	유도정신병장애	F24	V161
	조현정동장애, 조증형	F25.0	V161
	조현정동정신병, 조증형	F25.0	V161
	조현양상정신병, 조증형	F25.0	V161
	조현정동장애, 우울증형	F25.1	V161
	조현정동정신병, 우울증형	F25.1	V161
	조현양상정신병, 우울증형	F25.1	V161
	조현정동장애, 혼합형	F25.2	V161
	순환성 조현병	F25.2	V161
	혼합형 조현병성 및 정동성 정신병	F25.2	V161
	기타 조현정동장애	F25.8	V161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	F25.9	V161
	조현정동정신병 NOS	F25.9	V161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F28	V161
	만성 환각성 정신병	F28	V161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F29	V161
	정신병 NOS	F29	V161
5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도슨 붕입체뇌염	A81.1	V282
	아급성 경화성 범뇌염	A81.1	V282
	밴보게르트 경화성 백질뇌병증	A81.1	V282
	진행성 다초점백질뇌병증	A81.2	V282
	다초점백질뇌병증 NOS	A81.2	V282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8	V282
	쿠루	A81.8	V282
	중추신경계통의 상세불명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9	V282
	중추신경계통의 프리온질환 NOS	A81.9	V282
	마이코박테리아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0	V103
	결핵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0	V103
	기타 세균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1	V103
	거대세포바이러스병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2	V103
	기타 바이러스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3	V103
	칸디다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4	V103
	기타 진균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5	V103
	폐포자충폐렴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HIV disease resulting in Pneumocystis jirovecii pneumonia)	B20.6	V103
	폐포자충폐렴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HIV disease resulting in Pneumocystis carinii pneumonia)	B20.6	V103
	디발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7	V103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8	V103
	상세불명의 감염성 또는 기생충성 질환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9	V103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NOS	B20.9	V103
	카포시육종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0	V103
	버킷림프종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1	V103
	기타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2	V103
	림프성, 조혈성 및 관련 조직의 기타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3	V103
	다발성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7	V103
	기타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8	V103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9	V103
	뇌병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0	V103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치매	B22.0	V103
	림프성 간질폐렴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1	V103
	소모증후군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2	V103
	슬림병	B22.2	V103
	성장장애를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2	V103
	달리 분류된 다발성 질환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7	V103
	급성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증후군	B23.0	V103
	(지속성) 전신림프선병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3.1	V103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혈액학적 및 면역학적 이상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3.2	V103
	기타 명시된 병태를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3.8	V103
	상세불명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4	V103
	후천면역결핍증후군 NOS	B24	V103
	에이즈-관련복합 NOS	B24	V103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D35.2	V162
	악물유발 무형성빈혈	D61.1	V283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결핍	D68.4	V311
	악물유발 호중구감소	D70	V285
	과당대사장애	E74.1	V286
	유전성 과당불내성	E74.1	V286
	과당-1, 6-이인산분해효소결핍	E74.1	V286
	수크레이스결핍	E74.3	V286
	장성 탄수화물흡수의 기타 장애	E74.3	V286
	포도당-갈락토스흡수장애	E74.3	V286
	신생물말림 신경근육병증 및 신경병증	G13.0	V287
	신생물말림 변연부뇌병증(C00-D48+)	G13.1	V287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을 침범하는 계통적 위축	G13.8	V287
	파킨슨병	G20	V124
	특발성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G20	V124
	원발성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G20	V124
	편측파킨슨증	G20	V124
	떨림마비	G20	V124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NOS	G20	V124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국소발병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01	V279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21	V279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전신성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31	V279
	결핵(~에서의) 다발신경병증(A17.82†)	G63.0	V170
	디프테리아(~에서의) 다발신경병증(A36.8†)	G63.0	V170
	감염성 단핵구증(~에서의) 다발신경병증(B27.-†)	G63.0	V170
	나병(~에서의) 다발신경병증(A30.-†)	G63.0	V170
	라임병(~에서의) 다발신경병증(A69.2†)	G63.0	V170
	볼거리(~에서의) 다발신경병증(B26.8†)	G63.0	V170
	포진후(~에서의) 다발신경병증(B02.2†)	G63.0	V170
	만기매독(~에서의) 다발신경병증(A52.1†)	G63.0	V170
	만기선천매독(~에서의) 다발신경병증(A50.4†)	G63.0	V170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G63.0	V170
	독성근신경장애	G70.1	V288
	노년성 황반변성(삼출성)	H35.31	V201
	울혈성 심근병증	I42.0	V289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I42.28	V289
	기타 제한성 심근병증	I42.5	V289
	궤양성 (만성) 범결장염	K51.0	V131
	궤양성 (만성) 직장염	K51.2	V131
	좌측 결장염	K51.5	V131
	기타 궤양성 대장염	K51.8	V131
	상세불명의 궤양성 대장염	K51.9	V131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L20.85	V308
	중증 보통건선	L40.00	V280
	비장림프절비대 및 백혈구감소가 동반된 류마티스관절염	M05.0	V223
	펠티증후군	M05.0	V223
	류마티스폐질환(J99.0*)	M05.1	V223
	류마티스혈관염	M05.2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관절염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장막염(I32.8*)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다발신경병증(G63.6*)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근염(I41.8*)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근병증(G73.7*)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내막염(I39.-*)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장염(I52.8*)	M05.3	V223
	기타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5.8	V223
	상세불명의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5.9	V223
	절단성 관절염(L40.5†)	M07.1	V237
	건선척추염(L40.5†)	M07.2	V237
	기타 건선관절병증(L40.5†)	M07.3	V237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과민성 혈관염	M31.0	V290
	강직척추염, 척추의 여러 부위	M45.0	V140
	강직척추염, 후두환축부	M45.1	V140
	강직척추염, 경부	M45.2	V140
	강직척추염, 경흉추부	M45.3	V140
	강직척추염, 흉추부	M45.4	V140
	강직척추염, 흉요추부	M45.5	V140
	강직척추염, 요추부	M45.6	V140
	강직척추염, 요천부	M45.7	V140
	강직척추염, 천추 및 천미추부	M45.8	V140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P22.0	V142
	유리질막병	P22.0	V142
	신생아의 기타 호흡곤란	P22.8	V142
	신생아의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P22.9	V142

- 주) 1. 향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구분1~5에 해당하는 질병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 대상 해당여부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표134-1】 외측상과염(테니스엘보)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상병 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 상병 명	분류번호
외측상과염	M77.1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상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34-2】 내측상과염(골프엘보)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상병 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 상병 명	분류번호
내측상과염	M77.0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상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34-3】 특정팔근육염증(데니스엘보,골프엘보제외)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상병 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 상병 명	분류번호
손 및 손목의 만성 염발음윤활막염	M70.0
손의 윤활낭염	M70.1
주두윤활낭염	M70.2
팔꿈치의 기타 윤활낭염	M70.3
손바닥근막성 섬유종증(뮌트트랑)	M72.0
손목의 관절주위염	M77.2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상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35-1】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족저근막염)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상병 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 상병 명	분류번호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M72.2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상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35-2】 특정다리근육염증(족저근막염제외)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상병 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 상병 명	분류번호
무릎뼈앞윤활낭염	M70.4
무릎의 기타 윤활낭염	M70.5
대퇴골돌기윤활낭염	M70.6
경골측부 윤활낭염[펠레그리니-스티다]	M76.4
무릎뼈힘줄염	M76.5
아킬레스힘줄염	M76.6
비골힘줄염	M76.7
발을 제외한 다리의 기타 골부착부병증	M76.8
상세불명의 다리의 골부착부병증	M76.9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상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36】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 분류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결장경하 종양 수술-용종 절제술	Q7701
결장경하 종양수술-용종절제술(1개이상시초과되는용종1개당)	Q7702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Q7703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	QX706

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예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에 해당하는 수가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코드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별표137】 골절철심제거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철심제거술」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아래의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진료행위			수가코드
사지체내고정용 금속제거술	골에 삽입한 금속핀이나 금속정 등을 근막절개 하에 간단히 제거한 경우		N0978
	골에 삽입한 금속핀이나 금속정 등을 근막절개 없이 간단히 제거한 경우		N0979
	대퇴골		N0972
	상완골,견갑골		N0973
	전완골,하퇴골	요골과 척골중 하나, 경골과 비골중 하나	N0977
		요척골 동시, 경비골 동시	N0974
	쇄골, 슬개골, 수근골, 족근골		N0975
	중수골, 중족골, 지골		N0976

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예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38】 특정안면마비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벨마비	G51.0
슬신경절염	G51.1
멜커슨증후군	G51.2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39】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급여)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급여)」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진 료 행 위	수가코드
베일리영아발달측정	FZ695

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40】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뇌하수체기능저하	E23.0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41】턱장애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턱장애	F95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42】턱장애 약물분류표

의약품분류번호	의약품 분류
112	최면진정제
113	항전간제
115	각성제, 흥분제
117	정신신경용제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122	골격근이완제

【별표143-1】 성조숙증Ⅱ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조발사춘기	E30.1
2. 기타 뇌하수체의 기능항진	E22.8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 형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43-2】 성조숙증Ⅱ약제치료(급여) 분류표

- ① 아래 「성조숙증Ⅱ약제치료(급여)」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은 2021년 8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성분명	주성분코드
goserelin acetate (as goserelin 10.8mg)	167201BIJ
goserelin acetate (as goserelin 3.6mg)	167202BIJ
leuprolide acetate 14mg(5mg/mL)	182630BIJ
leuprolide acetate 3.75mg	182602BIJ
leuprolide acetate 11.25mg	182604BIJ
leuprolide acetate (as leuprolide 7.5mg)	182605BIJ
leuprolide acetate (as leuprolide 22.5mg)	182606BIJ
leuprolide acetate (as leuprolide 45mg)	182608BIJ
leuprolide acetate 22.5mg	182611BIJ
triptorelin acetate 0.105mg (0.105mg/mL)	244930BIJ
triptorelin acetate (as triptorelin 3.75mg)	244902BIJ
triptorelin pamoate (as triptorelin 11.25mg)	467501BIJ
triptorelin pamoate (as triptorelin 22.5mg)	467502BIJ

【별표144-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분류표

① 아래와 같은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를 따릅니다.

1. 지체장애인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마.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다음 각 목의 장애·질환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 및 재발성 우울장애 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별표144-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① 다음의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에서 정하는 [별표1] 및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따릅니다.

1. 지체장애인	가. 절단장애가 있는 사람 (상지절단장애)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하지절단장애) 1)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상지관절장애) 1)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6)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7)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8)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9)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1)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하지관절장애) 1)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4)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지체장애인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상지기능장애) 1)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3)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4)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5)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7)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8)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하지기능장애) 1)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 (척추장애) 1) 목뼈와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2)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3)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4)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2번 이하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2.뇌병변장애인	1)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 5) 한쪽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6)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 ~ 53점인 사람 8)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0)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 ~ 69점인 사람

3. 시각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청력장애)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평형기능장애) 1)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다가 쓰러지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 언어장애인	1)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2) 말의 흐름에 심한 방해를 받는 말더듬(SS-I 97%ile 이상, P-FA 91%ile 이상) 3) 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 조음장애 4)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6. 지적장애인	1)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 장애인	1)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 척도 점수가 20이하인 사람 2)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 척도 점수가 21 ~ 40인 사람 3) 1호 내지 2호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 ~ 50인 사람

8. 정신장애인

-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3) 재발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4) 조현정동장애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5)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 6)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 7) 재발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 8) 조현정동장애로 5호 내지 7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9)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 변화나 퇴행은 심하지는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10)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11)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12) 조현정동장애로 9호 내지 11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별표145-1】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6호, 2024. 1. 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산정특례대상 및 적용기간	특정기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화상환자가 적용일부터 1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 단, 등록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별표145-2】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의 수술을 받는 경우 1년간 재등록 할 수 있음(V306은 제외)	
【별표145-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에서 중등도 기준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상병에 해당하면서 체표면적 기준의 제 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V247
【별표145-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에서 중등도 기준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상병에 해당하면서 체표면적 기준의 제 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V248
【별표145-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에서 중등도 기준의 제3호에 해당하는 상병(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V305
【별표145-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의 상병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상병(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에 대해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가 수상(受傷)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원하여 【별표1】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의 수술을 받는 경우	V306
【별표145-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의 상병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V250

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화상 산정특례 대상 해당여부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표145-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증화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 2023-286호, 2024. 1. 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별첨3에 해당하는 아래의 상병명 및 수술명을 말합니다.

<중증도 기준>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T20.2
몸통의 2도 화상	T21.2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	T22.2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T23.2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	T24.2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	T25.2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2도 화상	T30.2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	T20.3
몸통의 3도 화상	T21.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3도 화상	T22.3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T23.3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	T24.3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T25.3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3도 화상	T30.3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 중 안면부에 수상한 경우	T20.3
몸통의 3도 화상 중 성기 또는 회음부에 수상한 경우	T21.3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T23.3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T25.3
눈 및 부속기의 화상	T26.0~T26.4
호흡기도의 화상	T27.0~T27.3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T28.0~T28.3

<체표면적 기준>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신체표면의 10~19%를 침범한 화상	T31.1
신체표면의 20~29%를 침범한 화상	T31.2
신체표면의 30~39%를 침범한 화상	T31.3
신체표면의 40~49%를 침범한 화상	T31.4
신체표면의 50~59%를 침범한 화상	T31.5
신체표면의 60~69%를 침범한 화상	T31.6
신체표면의 70~79%를 침범한 화상	T31.7
신체표면의 80~89%를 침범한 화상	T31.8
신체표면의 90% 이상을 침범한 화상	T31.9

<수술명 및 수술코드>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반흔구축성형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N0241
반흔구축성형술 및 식피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N0242
	N0243
	N0244
	N0245
	N0246
	N0247
	NA241
	NA242
	NA243
반흔구축성형술 및 국소피판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N0249

주) 향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별첨3에해당하는 상병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

【별표146】 특정허혈성심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협심증	I20
2. 급성심근경색증	I21
3. 후속심근경색증	I22
4.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5. 오래된 심근경색증	I25.2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47】 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통합심장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장출혈성 대장균감염	A04.3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로타바이러스장염	A08.0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위장병증	A08.1
장내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아데노바이러스 장염	A08.2
백일해	백일해	A37
성홍열	성홍열	A38
수두	수두	B01
수족구병	발진을 동반한 엔테로바이러스소수포구내염	B08.4
유행성이하선염	볼거리	B26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폐렴	J12.1
	다른 장에서 분류된 질환의 원인으로서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B97.4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	J20.5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세기관지염	J21.0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폐렴	J12.3
	다른 장에서 분류된 질환의 원인으로서의 기타 바이러스감염체	B97.8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세기관지염	J21.1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48】 특정면역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분류표

1. 아래 「특정면역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은 2022년 5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신규 또는 허가 취소 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험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 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 「특정면역항암제」 해당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용기전 분류	성분명 (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면역 관문 억제제	아테졸리주맙 atezolizumab	티센트릭주(아테졸리주맙)
	니볼루맙 nivolumab	옵디보주20mg(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
		옵디보주100mg(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
		옵디보주240mg(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
	팜브롤리주맙 pembrolizumab	키트루다주(팜브롤리주맙, 유전자재조합)
	이필리무맙 ipilimumab	여보이주200밀리그램/40밀리리터 (이필리무맙, 유전자재조합)
		여보이주50밀리그램/10밀리리터 (이필리무맙, 유전자재조합)
	더발루맙 durvalumab	임핀지주(2.4mL)(더발루맙)
		임핀지주(10mL)(더발루맙)
항체 약물 중합체 항암 치료제	트라스투주맙엠탄신 trastuzumabemtansine	캐싸일라주100밀리그램 (트라스투주맙엠탄신)
		캐싸일라주160밀리그램 (트라스투주맙엠탄신)
	브렌톡시맙베도틴 brentuximab vedotin	애드세트리스주(브렌톡시맙베도틴)
	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 inotuzumabozogamicin	베스폰사주(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
	겜투주맙오조가마이신 gemtuzumabozogamicin	마일로탁주4.5mg
	폴라투주맙베도틴 PolatuzumabVedotin	플라이비주

3. 성분명은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4. 의약품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5.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면역항암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표149】 통합뇌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통합뇌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통합뇌질환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뇌전증	뇌전증	G40
	뇌전증지속상태	G41
일과성뇌허혈발작	척추-뇌기저동맥증후군	G45.0
	경동맥증후군(대뇌반구성)	G45.1
	다발성 및 양쪽 뇌전동맥증후군	G45.2
	일과성 흑암시	G45.3
	기타 일과성 뇌허혈발작 및 관련 증후군	G45.8
	상세불명의 일과성 뇌허혈발작	G45.9
뇌졸중 II	거미막하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타 비외상성 두 개내 출혈	I62
	뇌경색증	I63
뇌혈관질환 (협착증)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혈관질환 (뇌졸중제외)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기타 뇌혈관 질환	I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50】 통합심장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통합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통합심장질환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심근병증 (허혈성제외)	심근병증	I4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I43
심장판막협착증 (대동맥판막)	류마티스성 대동맥판협착	I06.0
	기능부전이 있는 류마티스성 대동맥판협착	I06.2
	대동맥판협착	I35.0
	기능부전을 동반한 대동맥판협착	I35.2
심장질환(특정 I)	급성 심근경색증	I21
	후속 심근경색증	I22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I46.0
심장질환(특정 II)	협심증	I20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4
	만성 허혈심장병	I25
	급성 심장막염	I30
	심장막의 기타질환	I3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I32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I33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8
	급성 심근염	I4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I41
	발작성 빈맥	I47
	심방세동 및 조동	I48
	심부전	I50
특정심혈관질환 (기타심장부정맥)	기타 심장부정맥	I49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환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환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51】 시각기능검사(급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시각기능검사(급여)」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항 목	수 가 코 드
1. 안검하수검사-열음검사	E0791
2. 정밀안저검사[편측]	E6660
3. 기본 안저촬영[편측]	E6670
4. 시신경유두입체검사[편측]	E6671
5. 전안부촬영[편측]	E6672
6. 시신경섬유층사진[편측]	E6673
7. 광각 안저촬영[편측]	E6674
8. 자가형광안저촬영[편측]	E6675
9. 기본 형광안저혈관조영술[편측]	E6681
10. 광각 형광안저혈관조영술[편측]	E6682
11. 공간섭단층혈관영상[편측]	E6683
12. 망막전위도검사-표준	E6685
13. 망막전위도검사-패턴	E6686
14. 안구전위도검사	E6687
15. 정밀시야검사[편측]	E6690
16. 자동시야검사[편측]	E6691
17. 엠식 변형시 검사	E6695
18. 굴절및조절검사[안경처방전교부포함]	E6710
19. 조절마비굴절검사	E6720
20. 부하조절마비굴절검사	E6730
21. 녹내장부하시험	E6740
22. 안압측정-정밀측정	E6751
23. 안압측정-기타	E6752
24. 안압측정-일일반복안압측정	E6755
25. 광각검사[암순응검사]	E6760
26. 색각검사[색각이상검사표예의한것은제외]	E6770
27. 안근기능검사및폭주검사-정밀검사[눈모음검사포함]	E6781
28. 안근기능검사및폭주검사-랑카스터검사	E6782
29. 안근기능검사및폭주검사-마독스검사	E6783
30. 안근기능검사및폭주검사-프리즘가림검사	E6784
31. 망막중심혈관압측정-간단한것[오프달모다이나모메트리]	E6791
32. 망막중심혈관압측정-복잡한것[기아프메타]	E6792
33. 양안시기능정밀검사-일반검사[위드4점검사;티트무스검사포함]	E6801
34. 양안시기능정밀검사-특수검사[약시경,프리즘,복시,약시,강제견인,레드그라스검사포함]	E6802
35. 세극등현미경검사	E6810
36. 전방우각검사	E6820
37. 눈물분비기능검사	E6831
38. 눈물배출기능검사	E6832
39.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편측]	E6836
40. 각막지각검사	E6840

대 상 이 되 는 항 목	수가코드
41. 안구돌출측정	E6850
42. 안구벽경성측정	E6860
43. 각막곡률측정	E6870
44. 토노그래피[방수유출율측정]	E6880
45. 각막내피세포검사	E6899
46. 눈의 계측검사[편측]-초음파 이용	E7800
47. 눈의 계측검사[편측]-레이저 간섭계 이용	E7801
48.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편측]	E7810
49. 동공부등검사-약물을 이용한 경우	E7951
50. 동공부등검사-중성필터를 이용한 경우	E7952
51. 빛산란시광학특성분석검사[편측]	E7980
52. 형광 전안부 혈관조영술[편측]	EX792
53. 저시력검사	EX793
54. 안검하수약물검사	EX794
55. 다초점망막기능지형도검사	EX798
56.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로즈벵갈]	EY791
57.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홀루오레신]	EY792
58.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기타]	EY799
59. 전산화각막형태검사[편측]	EZ791
60.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편측]	EZ794
61. 인도시아닌 안저 혈관조영술 [편측]	EZ795
62. 안구광학단층촬영[편측]	EZ796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별표152】 청각 및 평형기능검사(급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청각 및 평형기능검사(급여)」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 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항 목		수가코드
청각기능검사	1. 음장검사-음장역치검사	F0341
	2. 음장검사-음장역치검사-편측으로 시행하는 경우	F0342
	3. 음장검사-음장어음검사	F0343
	4. 음장검사-음장어음검사-편측으로 시행하는 경우	F0344
	5. 언어청각검사	F6300
	6.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	F6301
	7. 청력검사[순음청력계기에의한검사]-표준순음청력검사-불쾌강도 역치 검사를 시행한 경우	F6340
	8. 청력검사[순음청력계기에의한검사]-표준순음청력검사	F6341
	9. 청력검사[순음청력계기에의한검사]-순음소실검사	F6342
	10. 청력검사[순음청력계기에의한검사]-역치상피로검사	F6343
	11. 청력검사[순음청력계기에의한검사]-소증폭인지도검사	F6344
	12. 청력검사[순음청력계기에의한검사]-양이교대성음량평형검사	F6345
	13. 청력검사[순음청력계기에의한검사]-이명도검사	F6346
	14. 청력검사[순음청력계기에의한검사]-간별역치검사	F6347
	15. 청력검사[순음청력계기에의한검사]-요지경검사	F6348
	16. 청력검사[자기청력계기에의한검사]	F6350
	17. 청력검사[임피단스오디오메트리에의한검사]-고막운동성계측	F6361
	18. 청력검사[임피단스오디오메트리에의한검사]-등골근반사검사	F6362
	19. 청력검사[임피단스오디오메트리에의한검사]-등골근반사소실 검사	F6363
	20. 유소아청력검사	F6370
	21. 이음향방사검사-자발	F6381
	22. 이음향방사검사-변조	F6382
	23. 이음향방사검사-크릭유발	F6383
	24. 전기와우도검사	F6390
	25.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	F6400
	26. 청성지속반응검사	F6410
	27. 전정유발근전위검사-경부,외안근 동시 검사	F7340
	28. 와우전기자극검사	FX732
	29. 인공와우조절검사	FY331
	30. 인공와우조절검사(원격신경반응검사를실시한경우)	FY332
	31. 보청기조절검사	FY333
	32. 전정유발근전위검사	FZ734
	33. 청각검사(선별)-자동화 이음향 방사검사	FZ735
	34. 청각검사(선별)-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	FZ736
평형기능검사	1. 평형기능검사[직립밟음의검사]	F6310
	2. 평형기능검사[Frenzel안경안진검사]-자발및주시안진검사	F6321
	3. 평형기능검사[Frenzel안경안진검사]-두위및두위변환안진검사	F6322
	4. 평형기능검사[Frenzel안경안진검사]-두진후안진검사	F6323
	5. 평형기능검사[Frenzel안경안진검사]-온도안진검사	F6324

대 상 이 되 는 항 목		수가코드
6. 평형기능검사[Frenzel안경안진검사]-누공검사		F6325
7.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F6330
8.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자발및주시안진검사		F6331
9.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두위및두위변환안진검사		F6332
10.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두진후안진검사		F6333
11.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온도안진검사(단일검사)		F6334
12.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온도안진검사(냉온교대검사)		F6335
13.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누공검사		F6336
14.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시운동성안진및시운동후안진검사		F6337
15.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급속안구운동검사		F6338
16.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시표추적검사		F6339
17. 자동평형검사		FX731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별표153】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태아의 (의심되는) 중추신경계통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5.0
태아의 (의심되는) 유전성 질환에 대한 산모관리	O35.2
모체의 바이러스병으로 인한 (의심되는) 태아손상에 대한 산모관리	O35.3
방사선으로 인한 (의심되는) 태아손상에 대한 산모관리	O35.6
기타 의학적 처치로 인한 (의심되는) 태아손상에 대한 산모관리	O35.7
태아저산소증의 징후에 대한 산모관리	O36.3
자궁내태아사망에 대한 산모관리	O36.4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54】 전신마취 의료행위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전신마취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내 용		수가코드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마취관리기본[1시간 기준]	L1211
	마취유지	L1221
	마취유지(상급종합병원)	L1231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마취관리기본[1시간 기준]	L1212
	마취유지	L1222
	마취유지(상급종합병원)	L1232

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예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55】 특정6대질병Ⅱ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바이러스결막염	B30
2. 맥립종 및 콩다래끼	H00
3. 결막염	H10
4. 외이염	H60
5. 귀통증 및 귀의 삼출액	H92
6. 티눈 및 굳은살	L84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56】 특정8대질병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바이러스결막염		B30
2. 맥립종 및 콩다래끼		H00
3. 결막염		H10
4. 외이염		H60
5. 귀통증 및 귀의 삼출액		H92
6. 티눈 및 굳은살		L84
7. 용종	결장의 용종	K63.5
	결장, 직장, 항문 및 항문관의 양성 신생물	D12
	(항문 및 항문관 제외)	(D12.9제외)
8. 백내장	노년성 백내장	H25
	기타 백내장	H26
	수정체의 기타장애	H27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57】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급성 류마티스열	심장침범에 대한 언급이 없는 류마티스열	I00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	I01
	류마티스무도병	I02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류마티스성 승모판질환	I05
	류마티스성 대동맥판질환	I06
	류마티스성 삼첨판질환	I07
	다발판막질환	I08
	기타 류마티스심장질환	I09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폐색전증	I26
	기타 폐성 심장질환	I27
	폐혈관의 기타 질환	I28
심장염증질환	급성 심장막염	I30
	심장막의 기타 질환	I3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I32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I33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8
	급성 심근염	I4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I41
심근병증	심근병증	I4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I43
중증 방실차단	방실차단, 2도	I44.1
	완전방실차단	I44.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심방실차단	I44.3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I46.0
부정맥	발작성 빈맥	I47
	심방세동 및 조동	I48
	기타 심장부정맥	I49
심부전	심부전	I50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I71
특정 동맥혈관질환	기타 동맥류 및 박리	I72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I74
	동맥 및 세동맥의 기타 장애	I77
문맥혈전증	문맥혈전증	I81
식도정맥류	식도정맥류	I85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식도정맥류	I98.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출혈을 동반한 식도정맥류	I98.3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58】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급성 류마티스열	심장침범에 대한 언급이 없는 류마티스열	I00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	I01
	류마티스무도병	I02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류마티스성 승모판질환	I05
	류마티스성 대동맥판질환	I06
	류마티스성 삼첨판질환	I07
	다발판막질환	I08
	기타 류마티스심장질환	I09
허혈성심질환	협심증	I20
	급성심근경색증	I21
	후속심근경색증	I22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4
	만성 허혈심장병	I25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폐색전증	I26
	기타 폐성 심장질환	I27
	폐혈관의 기타 질환	I28
심장염증질환	급성 심장막염	I30
	심장막의 기타 질환	I3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I32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I33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8
	급성 심근염	I4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I41
심근병증	심근병증	I4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I43
중증 방실차단	방실차단, 2도	I44.1
	완전방실차단	I44.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심방실차단	I44.3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I46.0
부정맥	발작성 빈맥	I47
	심방세동 및 조동	I48
	기타 심장부정맥	I49
심부전	심부전	I50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뇌혈관질환	거미막하출혈	160
	뇌내출혈	161
	기타 비외상성 두 개내 출혈	162
	뇌경색증	163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164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6
	기타 뇌혈관 질환	1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168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169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171
특정 동맥혈관질환	기타 동맥류 및 박리	172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174
	동맥 및 세동맥의 기타 장애	177
문맥혈전증	문맥혈전증	181
식도정맥류	식도정맥류	185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식도정맥류	198.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출혈을 동반한 식도정맥류	198.3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59】 특정급여치료 I 대상 수가코드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급여치료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구분	내용	수가코드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부정맥의 냉각절제술-심방세동-냉각풍선절제술	M065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심방세동-냉각풍선절제술-중격천자	M0652
	부정맥의 냉각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중격천자	M0653
	부정맥의 냉각절제술-심방세동-중격천자	M0655
	부정맥의 냉각절제술-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중격천자	M0656
	부정맥의 냉각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	M0657
	부정맥의 냉각절제술-심방세동	M0658
	부정맥의 냉각절제술-심방세동-하대정맥-삼첨판륜 협부 선형절제술	M0659
	부정맥의 냉각절제술-심실성 부정맥	M066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0662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	부정맥의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절제시 하대정맥-삼첨판륜 협부에 대한 선형절제술)	M0654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중격천자	M6540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	M6541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	M6542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실성 부정맥)	M6543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중격천자	M654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중격천자	M6545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	M6546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	M6547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실성 부정맥)	M6548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중격천자	M6549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550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중격천자	M6556
관상동맥 확장술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단일혈관	M6551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추가혈관	M6552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일차적중재술 등]	M6553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	M6554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단일혈관	M6561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추가혈관	M6562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및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동시)-단일혈관	M6563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및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동시)-추가혈관	M6564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일차적중재술 등]	M6565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M6566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및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동시)	M6567
관상동맥 죽상반 절제술	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단일혈관	M6571
	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추가혈관	M6572
혈관성형술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대동맥	M6595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폐동맥	M6596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M6597
	혈관내죽종제거술[혈관성형술 포함]-복부동맥 또는 장골동맥	O2064
	혈관내죽종제거술[혈관성형술 포함]-기타	O2065
	혈관내죽종제거술[혈관성형술 포함]-복부동맥 또는 장골동맥-제거후 팻취이용하여불합한경우	O2067
	혈관내죽종제거술[혈관성형술 포함]-기타-제거후 팻취이용하여 불합한 경우	O2068
	혈관성형술(직접봉합)-개흉에의한것	OA631
	혈관성형술(직접봉합)-개복에의한것	OA632
	혈관성형술(직접봉합)-기타	OA633
	혈관성형술(팻취이용한경우)-개흉에의한것(인조혈관이용)	OA634
	혈관성형술(팻취이용한경우)-개흉에의한것(자가혈관이용[채취료포함])	OA635
	혈관성형술(팻취이용한경우)-개복에의한것(인조혈관이용)	OA636
	혈관성형술(팻취이용한경우)-개복에의한것(자가혈관이용[채취료포함])	OA637
	혈관성형술(팻취이용한경우)-기타(인조혈관이용)	OA638
	혈관성형술(팻취이용한경우)-기타(자가혈관이용[채취료포함])	OA639
	혈관성형술(개흉에의한직접봉합)-대동맥교차감자(Cross-Clamping) 동시실시	OB631
	혈관성형술(개복에의한직접봉합)-대동맥교차감자(Cross-Clamping) 동시실시	OB632
	혈관성형술(기타직접봉합)-대동맥교차감자(Cross-Clamping)동시실시	OB633

혈관성형술	혈관성형술(팻취이용-개흉에의함인조혈관이용)-대동맥교차감자(Cross-Clamping)동시실시	OB634
	혈관성형술(팻취이용-개흉에의함자가혈관이용[채취료포함])-대동맥교차감자(Cross-Clamping)동시실시	OB635
	혈관성형술(팻취이용-개복에의함인조혈관이용)-대동맥교차감자(Cross-Clamping)동시실시	OB636
	혈관성형술(팻취이용-개복에의함자가혈관이용[채취료포함])-대동맥교차감자(Cross-Clamping)동시실시	OB637
	혈관성형술(팻취이용-기타인조혈관이용)-대동맥교차감자(Cross-Clamping)동시실시	OB638
	혈관성형술(팻취이용-기타자가혈관이용[채취료포함])-대동맥교차감자(Cross-Clamping)동시실시	OB639
혈관내 스텐트 삽입술	경피적혈관내금속스텐트삽입술-대동맥	M6603
	경피적혈관내금속스텐트삽입술-폐동맥	M6604
	경피적혈관내금속스텐트삽입술-기타혈관	M6605
	경피적혈관내스텐트-이식설치술[대동맥]	M6611
	경피적혈관내스텐트-이식설치술[대동맥및장골동맥]	M6612
	경피적혈관내스텐트-이식설치술[기타혈관]	M6613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시 그래프트 고정	M6651
혈전제거술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후 그래프트고정	M6652
	경피적혈전제거술-혈전용해술[기타혈관]	M6632
	경피적혈전제거술-혈전용해술[관상동맥]	M6634
	경피적혈전제거술-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관상동맥	M6638
	경피적혈전제거술-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기타혈관	M6639
	혈전제거술(심부정맥-하지)	O0218
	혈전제거술-심장	O0260
	폐동맥혈전제거술	O1950
	혈전제거술(동맥-흉부)	O2053
	혈전제거술(동맥-복부)	O2054
	혈전제거술(동맥-기타)	O2056
	혈전제거술(심부정맥-흉부)	O2057
	혈전제거술(심부정맥-복부)	O2058
	혈전제거술(심부정맥-기타)	O2059

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치료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60】 특정급여치료Ⅱ 대상 수가코드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급여치료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구분	내용	수가코드
뇌정위적 방사선 수술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HD113
	뇌정위적방사선수술-사이버나이프	HD114
	뇌정위적방사선수술-선형가속기	HD115
혈관 색전술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동맥류-보조물지지	M1661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동맥류-기타의경우	M1662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동정맥기형[동정맥루포함]-뇌혈관	M1663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동정맥기형[동정맥루포함]-두경부	M1667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동정맥기형[동정맥루포함]-척추	M1668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동정맥기형[동정맥루포함]-척추경막	M1669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종양-뇌에 화학요법제를 주입한 경우	M1671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종양-두경부에 화학요법제를 주입한 경우	M1672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종양-뇌	M1673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종양-두경부	M1674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동정맥기형[동정맥루포함]-뇌경막동정맥루 [내경동맥해면동루포함]-동맥경류	M1676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동정맥기형[동정맥루포함]-뇌경막동정맥루 [내경동맥해면동루포함]-정맥경류	M1677
	혈관색전술-기타혈관	M6644
부정맥의 냉각 절제술	부정맥의 냉각절제술-심방세동-냉각풍선절제술	M065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심방세동-냉각풍선절제술-중격천자	M0652
	부정맥의 냉각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중격천자	M0653
	부정맥의 냉각절제술-심방세동-중격천자	M0655
	부정맥의 냉각절제술-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중격천자	M0656
	부정맥의 냉각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	M0657
	부정맥의 냉각절제술-심방세동	M0658
	부정맥의 냉각절제술-심방세동-하대정맥-삼첨판륜 협부 선형절제술	M0659
	부정맥의 냉각절제술-심실성 부정맥	M066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0662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절제시 하대정맥-삼첨판륜 협부에 대한 선형절제술)	M0654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중격천자	M6540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	M6541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	M6542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실성 부정맥)	M6543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중격천자	M654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중격천자	M6545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	M6546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	M6547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실성 부정맥)	M6548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중격천자	M6549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550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중격천자	M6556
관상동맥 확장술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단일혈관	M6551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추가혈관	M6552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일차적중재술 등]	M6553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	M6554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단일혈관	M6561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추가혈관	M6562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및경피적관상동맥죽상 반절제술과동시)-단일혈관	M6563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및경피적관상동맥죽상 반절제술과동시)-추가혈관	M6564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일차적중재술 등]	M6565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M6566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및경피적관상동맥죽상 반절제술과동시)	M6567
관상동맥 죽상반 절제술	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단일혈관	M6571
	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추가혈관	M6572
혈관 성형술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뇌혈관	M6593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경동맥[주골동맥포함]	M6594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대동맥	M6595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폐동맥	M6596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M6597
	경피적뇌혈관악물성형술	M6599
	혈관내죽종제거술[혈관성형술 포함]-경동맥(내막박리술 포함)[단순]	O0226
	혈관내죽종제거술[혈관성형술 포함]-경동맥(내막박리술 포함)[복잡]	O0227
	혈관내죽종제거술[혈관성형술 포함]-복부동맥 또는 장골동맥	O2064
	혈관내죽종제거술[혈관성형술 포함]-기타	O2065
	혈관내죽종제거술[혈관성형술 포함]-경동맥(내막박리술포함)[복잡]-제거후 팻취이용하여 봉합한 경우	O2066
	혈관내죽종제거술[혈관성형술 포함]-복부동맥 또는 장골동맥-제거후 팻취이용하여 봉합한 경우	O2067
	혈관내죽종제거술[혈관성형술 포함]-기타-제거후 팻취이용하여 봉합한 경우	O2068
	혈관성형술(직접봉합)-개흉에의한것	OA631
	혈관성형술(직접봉합)-개복에의한것	OA632
	혈관성형술(직접봉합)-기타	OA633
	혈관성형술(팻취이용한경우)-개흉에의한것(인조혈관이용)	OA634
	혈관성형술(팻취이용한경우)-개흉에의한것(자가혈관이용[채취료포함])	OA635

	혈관성형술(팻취이용한경우)-개복에의한것(인조혈관이용)	OA636
	혈관성형술(팻취이용한경우)-개복에의한것(자가혈관이용[채취료포함])	OA637
	혈관성형술(팻취이용한경우)-기타(인조혈관이용)	OA638
	혈관성형술(팻취이용한경우)-기타(자가혈관이용[채취료포함])	OA639
	혈관성형술(개흉에의한직접봉합)-대동맥교차감자(Cross-Clamping) 동시실시	OB631
	혈관성형술(개복에의한직접봉합)-대동맥교차감자(Cross-Clamping) 동시실시	OB632
	혈관성형술(기타직접봉합)-대동맥교차감자(Cross-Clamping) 동시실시	OB633
	혈관성형술(팻취이용-개흉에의한인조혈관이용)-대동맥교차감자(Cross-Clamping) 동시실시	OB634
	혈관성형술(팻취이용-개흉에의한자가혈관이용[채취료포함])-대동맥교차감자(Cross-Clamping) 동시실시	OB635
	혈관성형술(팻취이용-개복에의한인조혈관이용)-대동맥교차감자(Cross-Clamping) 동시실시	OB636
	혈관성형술(팻취이용-개복에의한자가혈관이용[채취료포함])-대동맥교차감자(Cross-Clamping) 동시실시	OB637
	혈관성형술(팻취이용-기타인조혈관이용)-대동맥교차감자(Cross-Clamping) 동시실시	OB638
	혈관성형술(팻취이용-기타자가혈관이용[채취료포함])-대동맥교차감자(Cross-Clamping) 동시실시	OB639
혈관내 스텐트 삽입술	경피적혈관내금속스텐트삽입술-뇌혈관	M6601
	경피적혈관내금속스텐트삽입술-경동맥[주골동맥포함]	M6602
	경피적혈관내금속스텐트삽입술-대동맥	M6603
	경피적혈관내금속스텐트삽입술-폐동맥	M6604
	경피적혈관내금속스텐트삽입술-기타혈관	M6605
	경피적혈관내스텐트-이식설치술[대동맥]	M6611
	경피적혈관내스텐트-이식설치술[대동맥및장골동맥]	M6612
	경피적혈관내스텐트-이식설치술[기타혈관]	M6613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시 그래프트 고정	M6651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후 그래프트고정	M6652
혈전 제거술	경피적혈전제거술-혈전용해술-두개강내 혈관	M6630
	경피적혈전제거술-혈전용해술[기타혈관]	M6632
	경피적혈전제거술-혈전용해술[관상동맥]	M6634
	경피적혈전제거술-혈전용해술-두개강외 경부혈관	M6635
	경피적혈전제거술-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두개강내 혈관	M6636
	경피적혈전제거술-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두개강외 경부혈관	M6637
	경피적혈전제거술-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관상동맥	M6638
	경피적혈전제거술-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기타혈관	M6639
	혈전제거술(심부정맥-하지)	O0218
	혈전제거술-심장	O0260
	폐동맥혈전제거술	O1950
	혈전제거술(동맥-흉부)	O2053
	혈전제거술(동맥-복부)	O2054

	혈전제거술(동맥-경부)	O2055
	혈전제거술(동맥-기타)	O2056
	혈전제거술(심부정맥-흉부)	O2057
	혈전제거술(심부정맥-복부)	O2058
	혈전제거술(심부정맥-기타)	O2059

- 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치료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61】 특정순환계질환Ⅱ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고혈압성 질환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고혈압성 심장병	I11
	고혈압성 신장병	I12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I13
	이차성 고혈압	I15
심장판막질환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	I34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장애	I35
	비류마티스성 삼첨판장애	I36
	폐동맥판장애	I3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	I39
특정 방실·좌각차단 및 전도장애	방실차단, 1도	I44.0
	좌전섬유속차단	I44.4
	좌후섬유속차단	I44.5
	기타 및 상세불명의 섬유속차단	I44.6
	상세불명의 좌각차단	I44.7
	기타 전도장애	I45
기타 심장정지	급성 심장사로 기술된 것	I46.1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I46.9
심장병 합병증 및 심장장애	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I5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I52
죽상경화증	죽상경화증	I70
말초 및 모세혈관질환	기타 말초혈관질환	I73
	모세혈관의 질환	I7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동맥, 세동맥 및 모세혈관의 장애	I79
특정 정맥혈관 질환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I80
	기타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I82
	하지의 정맥류	I83
	기타 부위의 정맥류	I86
	정맥의 기타 장애	I87
림프절 질환	비특이성 림프절염	I88
	림프관 및 림프절의 기타 비감염성 장애	I89
저혈압	저혈압	I95
특정 순환계통의 기타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순환계통의 처치후 장애	I97
	심혈관매독	I98.0
	달리 분류된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심혈관장애	I98.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순환계통의 기타 명시된 장애	I98.8
	순환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장애	I99

1.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62-1】 뇌졸중 혈전제거술(급여)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뇌졸중 혈전제거술(급여)로 분류되는 진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다음의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구분	의료행위	의료행위 수가코드
혈전제거술	가. 동맥	
	(4) 기타	O2056
	나. 심부정맥	
	(4) 기타	O2059
경피적 혈전제거술	나. 기계적 혈전제거술[카테터법]	
	(1) 두개강내 혈관	M6636
	(2) 두개강외 경부혈관	M6637
	(3) 관상동맥	M6638
	(4) 기타혈관	M6639

【별표162-2】 특정허혈성심질환 혈전제거술(급여)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허혈성심질환 혈전제거술(급여)로 분류되는 진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다음의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구분	의료행위	의료행위 수가코드
폐동맥 혈전제거술	폐동맥 혈전제거술	O1950
혈전제거술	다. 심장	O0260
경피적 혈전제거술	나. 기계적 혈전제거술[카테터법]	
	(1) 두개강내 혈관	M6636
	(2) 두개강외 경부혈관	M6637
	(3) 관상동맥	M6638
	(4) 기타혈관	M6639

【별표163】 폐렴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폐렴	J12
2. 폐렴연쇄알균에 의한 폐렴	J13
3.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J14
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J15
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J16
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J17
-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J17.1*)	B25.0†
- 폐렴이 합병된 홍역(J17.1*)	B05.2†
- 수두폐렴(J17.1*)	B01.2†
- 폐톡소포자충증(J17.3*)	B58.3†
7.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J18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64】 백반증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백반증	L80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65】 전이암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이외의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C77
2. 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
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
4.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	C80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 색인

0	
11대특정감염병진단비(수족구포함)(연간1회한,10일면책) 특별약관	926
142대특정질병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567
2대질병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778
2대질병주요치료비(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892
2대질병주요치료비(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10년후10배보장) 특별약관	911
31주이내출생진단비 특별약관	640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00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302
3대질병 MRI 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509
3대질병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477
3대질병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484
3대질병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467
3대질병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472
3대질병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496
3대질병통원비(연간30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501
5대골절수술비 특별약관	115
5대골절수술비(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136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	101
5대기관지질병수술비Ⅱ(감액없음) 특별약관	406
5대장기이식수술비 특별약관	1026
5대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556
70대특정질병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51
7대희귀난치성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416
8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수술비(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607
8대장대(선천성포함)진단비 특별약관	1066
ADHD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389
ㄱ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갱신형_1년) 특별약관	1139
각막이식수술비 특별약관	1027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 특별약관	224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 특별약관	229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 특별약관	216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 특별약관	213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 특별약관	221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지원비(요양병원)(간병인비용연간200만원이상) 특별약관	193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지원비(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연간200만원이상) 특별약관	189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 특별약관	854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 특별약관	837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 특별약관	83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 특별약관	828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180일) 특별약관	854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비(요양병원)(간병인비용연간200만원이상) 특별약관	768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비(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연간200만원이상) 특별약관	763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219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60일) 특별약관	17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 특별약관	177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특별약관	23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종합병원)(1일-60일) 특별약관	174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829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60일) 특별약관	703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60일) 특별약관	709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특별약관	760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종합병원)(1일~60일) 특별약관	706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_연간1회한)(면책없음) 특별약관	618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 특별약관	608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95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545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II(갱신형_10년) 특별약관	541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	1154
결핵진단비 특별약관	461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 특별약관	631
계약전환 특별약관	1159
고도근시및원시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1102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109
골절수술비(1~5급)(연간1회한) 특별약관	111
골절수술비(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135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특별약관	98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1~5급)(연간1회한) 특별약관	99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연간1회한) 특별약관	101
골절철심제거수술비(급여_연간1회한) 특별약관	167
골절철심제거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_연간1회한) 특별약관	168
과잉치 발치치료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1097
근시및원시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1101
급성신우신염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615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246
기흉진단비 특별약관	466
갑스치료비 특별약관	1025

ㄴ

뇌성마비진단비 특별약관	408
뇌심장질환 CT,MRI,초음파,뇌파,뇌척수액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603
뇌심장질환 혈관조영술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605
뇌전증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611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240
뇌출혈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242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44
뇌혈관질환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505
뇌혈관질환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782
뇌혈관질환 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786
뇌혈관질환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40
뇌혈관질환수술비(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670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244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658

ㄷ

다발성3대혈관질환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50
다발성소아암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04
다운증후군 출산진단비 특별약관	1128
당뇨병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57
대장용종제거수술비(급여,용종개수당) 특별약관	638
대중교통이용종교통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96
독감(인플루엔자) 입원비(1일~30일)(갱신형_10년) 특별약관	485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치료비(연간1회한,10일면책)(갱신형_10년) 특별약관	490

□

만기태아사망진단비 특별약관	1122
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465
말기만성폐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464
모성사망 특별약관	1112
모아모아병개두수술비 특별약관	373

ㄴ

발치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1095
배상책임 관련 공통약관	1133
백반증진단비 특별약관	920
베일리영아발달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 특별약관	641
보험금대리청구인 지정서비스 특별약관	1158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1152
보험료 페이백(5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장해(50%이상)) 특별약관	1040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5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장해(50%이상)) 특별약관	1045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5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장해(50%이상))(면책없음) 특별약관	1049
보험료납입지원보장(유사암진단) 특별약관	821
부양자관련 공통약관	1107
부양자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1108
부양자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특별약관	1108
부양자질병사망(감액없음) 특별약관	1110
부양자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 특별약관	1110
부정교합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1103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965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971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858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863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868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872

ㄸ

산후우울증치료비 특별약관	1129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182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738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200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775
상급종합병원 상해수술비 특별약관	185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125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751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특정6대질병 II 제외) 특별약관	794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412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802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797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 II(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987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포함) 암주요치료비 II(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993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 II(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1019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 II(유사암)(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1004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 (감액없음) 특별약관	1013
상해1~5중수술동반입원비 특별약관	205
상해1~5중수술동반입원비(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209
상해1~5중수술비(1사고당) 특별약관	146
상해1~5중수술비(1사고당)(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148
상해1~5중수술비Ⅳ 특별약관	121
상해1~5중수술비Ⅳ(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138
상해1~8중수술비(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특별약관	150
상해1~8중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특별약관	154
상해수술비 특별약관	108
상해수술비(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133
상해수술비(치아파절 및 치아탈구제외) 특별약관	202
상해수술비(치아파절 및 치아탈구제외)(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204
상해재활치료비(급여_연간20회한) 특별약관	164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104
상해질병수술비 특별약관	1032
상해질병수술비(선천기형포함) 특별약관	1038
상해질병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1030
상해질병입원비(선천성노질환포함)(1일-180일) 특별약관	1036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	116
상해흉터복원수술비(안면부) 특별약관	159
생활질환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332
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	1153
선천이상수술비 특별약관	401
선천이상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399
선천이상진단비 특별약관	397
성장장애관련질병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370
성장판손상골절진단비 특별약관	140
성조숙증Ⅱ약제치료비(급여_연간1회한) 특별약관	646
성조숙증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394
소아·청소년 특정 성인병 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388
소아백혈병진단비 특별약관	306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치료비(급여_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643
소아탈장수술비 특별약관	362
수두진단비 특별약관	459
수족구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461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807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888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10년후10배보장) 특별약관	909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836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1008
순환계질환진단비(특정질병 및 2대질환제외)(감액없음) 특별약관	811
순환계질환진단비(특정질병제외)(감액없음) 특별약관	841
스쿨존내어린이교통사고보장 특별약관	227
시각기능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 특별약관	1068
시각질환수술비 특별약관	366
식중독입원비(4일-120일) 특별약관	328
신갑스치료비 특별약관	1035
신생아난청진단비 특별약관	592
신생아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404
신재진단양진단비Ⅱ(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포함, 5회한) 특별약관	427
신재진단양진단비Ⅱ(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포함, 5회한)(면책없음) 특별약관	432
신통합암(전이포함)진단비Ⅱ(유사암제외)(감액없음) 특별약관	258
신통합암방사선약물치료비Ⅱ(유사암제외)(감액없음) 특별약관	314

신화상수술비 특별약관	142
신화상진단비 특별약관	141
심근병증(허혈성제외)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581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555

○

아나필락시스진단비(연간1회한)(갱신형_10년) 특별약관	144
암수술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 특별약관	291
암수술비(유사암제외)(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298
암수술비(유사암제외)(최초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288
암수술비(유사암제외)(최초1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296
암주요치료비(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745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740
암주요치료비 II(유사암)(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904
암주요치료비 II(유사암)(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988
암주요치료비 II(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 특별약관	899
암주요치료비 II(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976
암주요치료비 II(유사암제외)(치료별 연간1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982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443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447
암직접치료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437
암직접치료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440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감액없음) 특별약관	265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268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210일)(감액없음) 특별약관	270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210일)(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273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491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30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494
암진단비(유사암제외)(5회지급형)(감액없음) 특별약관	928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 특별약관	253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655
암진단비(유사암제외)(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255
암후유장해(3~100%)(감액없음) 특별약관	649
암후유장해(3~100%)(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651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진단비 특별약관	462
양성뇌종양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20
양수색전증진단비 특별약관	1126
양전자 단층촬영(PET) 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1055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 특별약관	365
어린이심장관련특정질병진단비 특별약관	248
영구적고도이상난청진단비(갱신형_10년) 특별약관	600
영구적중등고도이상난청진단비(갱신형_10년) 특별약관	597
영구적중등고도이상난청진단비(갱신형_10년) 특별약관	594
영구치상실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1087
영구치치수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1084
영구치치아보존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1075
영구치치아보철치료비 II(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1080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감액없음) 특별약관	276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277
요양병원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입원비(1일-90일) 특별약관	563
원형탈모증진단비 특별약관	612
유괴,납치,인질피해처리비용 특별약관	1100
유사암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294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257
유산수술비 특별약관	1118

유산입원비(4일-120일) 특별약관	1116
유치치아보존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1071
응급실내원비(응급) 특별약관	1034
의료사고법률비용 특별약관	1099
이륜자동차 운전중(탑승포함) 상해 부당보 특별약관	1151
인공관절수술비 특별약관	1029
인공와우이식수술비 특별약관	1052
인술린의존당뇨병진단비 특별약관	249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 특별약관	105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선천기형포함)(1일-20일) 특별약관	130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103
일반상해입원비(1일-20일) 특별약관	143
일반상해입원비(1일-210일) 특별약관	128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특별약관	187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 특별약관	95
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 특별약관	94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특별약관	129
일상생활폭력상해 특별약관	119
임신관련특정혈액질화진단비 특별약관	1121
임신성당노진단비 특별약관	1127
임신중독증(자간포함)진단비 특별약관	1119
임신출산질환수술비 특별약관	1114
임신출산질환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1113

ㅈ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특별약관	1165
재발암 및 잔여암진단비(2년대기형)(감액없음) 특별약관	722
재진단암Ⅲ진단비 특별약관	377
재진단암Ⅲ진단비(면책없음) 특별약관	383
저체중아육아비용 특별약관	1105
전반발달장애진단비 특별약관	303
전신마취암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754
전이암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921
전자서명 특별약관	1169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특별약관	308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180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735
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198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773
종합병원 상해수술비 특별약관	183
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123
종합병원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749
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409
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583
중기이상 만성폐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463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특별약관	250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특별약관	118
중대한화상및부식치료비 특별약관	120
중증갑상선암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619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 특별약관	1061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특별약관	252
중증아도피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391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 특별약관	165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1056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 특별약관	719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제외))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 특별약관	634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1059
중증질환자(중복암 및 재등락암)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 특별약관	712
중증턱장애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392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보장 특별약관	170
질병1~5중수술동반입원비Ⅲ 특별약관	812
질병1~5중수술동반입원비Ⅲ(선천이상포함) 특별약관	817
질병1~5중수술비Ⅱ(동일질병당) 특별약관	338
질병1~5중수술비Ⅳ 특별약관	281
질병1~5중수술비Ⅳ(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284
질병1~8중수술비(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특별약관	572
질병1~8중수술비(선천기형포함)(급여,시술포함,연간1회한) 특별약관	576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 특별약관	324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682
질병수술동반입원비(선천이상포함)(1일-20일) 특별약관	419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336
질병수술비(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675
질병수술비(선천이상포함) 특별약관	924
질병수술비(특정6대질병Ⅱ제외) 특별약관	798
질병수술비(특정8대질병제외) 특별약관	792
질병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321
질병입원비(1일-20일) 특별약관	487
질병입원비(1일-210일) 특별약관	414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 특별약관	425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20일) 특별약관	565
질병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210일) 특별약관	423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특별약관	758
질병재활치료비(급여_연간2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627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323
질병중환자실입원비(선천성뇌질환포함)(1일-180일) 특별약관	418
질병후유장해(20~100%)(감액없음) 특별약관	239
질병후유장해(3~100%)(감액없음) 특별약관	235
질병후유장해(50%이상)(감액없음) 특별약관	237
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 특별약관	236
ㄷ	
창상봉합술치료비(급여,안면부,연간3회한) 특별약관	162
창상봉합술치료비(급여,연간3회한) 특별약관	161
척추측만증수술비 특별약관	371
천식지속상태(급성중증천식)진단비 특별약관	417
청각 및 평형기능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 특별약관	1069
청각질환수술비 특별약관	368
추간판장애수술비 특별약관	363
출산위험Ⅱ 특별약관	1104
출산전 선별검사 결과 이상소견 진단비 특별약관	1123
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	1143
총수염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58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1089
치아촬영비(X-ray 및 파노라마)(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1091
치주질환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1093
치핵(치질)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55
ㄱ	
카티(CAR-T) 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623
카티(CAR-T) 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842

ㄷ

대반조기박리진단비 특별약관	1124
통합 뇌질병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732
통합 심장질병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733
특별조건부(할증보험료법 / 보험금감액법) 특별약관	1167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1150
특정4대질환 헬리코박터제균치료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621
특정NGS유전자패널감사지원비Ⅱ(급여_연간1회한) 특별약관	629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선천성 제외)(감액없음) 특별약관	617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선천성 포함)(감액없음) 특별약관	616
특정귀어지럼증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612
특정다리근육염증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1065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_10년) 특별약관	727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면책없음,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846
특정선천이상수술비 특별약관	403
특정선천이상진단비 특별약관	398
특정순환계질환(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진단비(감액없음)(1종) 특별약관	584
특정순환계질환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47
특정순환계질환수술비(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679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2종) 특별약관	585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3종) 특별약관	586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4종) 특별약관	587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감액없음)(5종) 특별약관	589
특정심·뇌(선천성뇌질환포함)및9대혈관질환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 특별약관	560
특정심·뇌및9대혈관질환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 특별약관	557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591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진단비(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664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590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진단비(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662
특정안면마비진단비 특별약관	639
특정전염병치료비 특별약관	330
특정정신질환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460
특정팔근육염증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1064
특정폐혈증진단비 특별약관	614
특정장애약물치료비(30일이상약물처방) 특별약관	645

ㄹ

폐렴진단비 특별약관	919
폭력피해(사망제외)보장 특별약관	127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면책없음,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454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갱신형_10년) 특별약관	449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연간1회한)(갱신형_10년) 특별약관	512
플래티넘 건강 리셋월렛(3대고액치료,간병및상급병실입원)(갱신형_20년) 특별약관	933
플래티넘 건강 리셋월렛Ⅱ(3대질병고액및중환자실치료,특정질병수술및동반입원)(갱신형_20년) 특별약관	949
피보험자 추가 특별약관	1149
피부질환수술비(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374

ㅎ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10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666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312
항암방사선치료비(감액없음) 특별약관	880
항암방사선치료비(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882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면책없음,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525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토모테라피)(면책없음,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530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토모테라피)Ⅱ(갱신형_10년) 특별약관	527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Ⅱ(갱신형_10년) 특별약관	522
항암약물치료비(감액없음) 특별약관	884
항암약물치료비(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886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면책없음,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520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Ⅱ(갱신형_10년) 특별약관	517
항암정위방사선치료비(면책없음,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553
항암정위방사선치료비Ⅱ(갱신형_10년) 특별약관	550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감액없음) 특별약관	875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면책없음,감액없음) 특별약관	878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이외의 암)(면책없음,감액없음)(갱신형_10년) 특별약관	537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이외의 암)Ⅱ(갱신형_10년) 특별약관	533
허혈성심질환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507
허혈성심질환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784
허혈성심질환 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788
허혈성심질환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43
허혈성심질환수술비(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673
허혈성심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247
허혈성심질환진단비(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660
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687
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694
혈전용해치료비Ⅱ(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689
혈전용해치료비Ⅱ(1회한)(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697
혈전용해치료비Ⅱ(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691
혈전용해치료비Ⅱ(연간1회한)(감액없음)(납기후2배보장) 특별약관	699
혈전제거치료비(급여_연간1회한)(감액없음) 특별약관	917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특별약관	375
화상수술비 특별약관	113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102
환경성질환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331
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감액없음) 특별약관	360
희귀난치성질환입원비(1일~120일) 특별약관	33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 특별약관	717